

피노키오의 상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3권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경기도, 서울)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피리산만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3권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경기도, 서울)

초판 1쇄 발행 2013년 9월 1일

펴낸 곳  청소년활동가상징 **활기**

이메일 hwalgy@daum.net

전화번호 070-4228-190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ife2010>

가격 1질 전5권 100,000원

파란만장했던 6년의 발걸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를 발간하며

우리는 오늘, 이제는 역사의 심연 속으로 사라져간 한 조직의 파란만장했던 숨결과 발걸음을 담은 기록물을 세상에 내 놓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 한국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자부심,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실천과 고민의 흔적들이 오늘과 내일의 청소년운동에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유산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 책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파란이 있는 곳엔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첫 돛을 올렸던 2006년의 뜨거웠던 여름,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을 나서며 발표한 출범선언문에 담긴 구절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구절만큼 네트워크의 처음과 끝을 함께 밀어왔던 활동가들, 네트워크라는 함선에 잠시라도 승선했던 활동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변방에서도 가장 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청소년 인권 의제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을 형성해내고 말겠다는 다부진 욕심으로 출범했습니다. 청소년인권이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파란(波瀾)을 준비하자, 사회가 청소년을 설명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청소년인권론을 만들고 더 큰 파란을 조직하지는 마음으로 네트워크는 6년간 힘차게 노 저어 왔습니다. 때로는 주춤했고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단언컨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버팀목이자 ‘파란을 만들어내는 장’(파란만장)이었고, 청소년운동의 한 전선(front)을 확장해온 개척자였으며,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만들어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2012년 3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년간의 항해를 멈추고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통합/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운동의 성장과 함께 네트워크의 소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른 청소년 단위로 옮겨가기도 했고,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재정적, 교육적,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할 조직의 결성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마감은 네트워크의 후신(後身)이라 할 ‘활기’의 시작과 함께 결정된 일이기에 서글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유산은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운동의 밑불이 될 것이기에 뜨거운 안녕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떠나보낸 지 1년을 훌쩍 넘긴 오늘에서야, 늦었지만 네트워크의 역사와 활동을 한 눈에 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엄선한 백서를 내놓습니다. 백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네트워크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모음입니다.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도움닫기 워크숍을 거쳐 네트워크가 결성된 2006년 3월부터 ‘활기’로의 전환을 결정한 2012년 3월까지 이어진 활동과 조직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권은 학생인권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네트워크의 활동 기록을 모았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녔던 전국행진에서부터 청소년 거리행동의 날 행사를 비롯한 광장에서의 움직임, 폐쇄적 학교를 뒤흔든 스쿨어택(School Attack)과 청소년 저항 지원 활동 등 긴장감과 신선함이 가득했던 사건들의 현장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3권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수 여론의 포화 속에서 일구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역사를 되짚다 보면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갖가지 고비를 넘겨온 활동가들의 놀라운 역량과 끈기, 그리고 그 고단했던 숨결을 함께 맞볼 수 있습니다.

4권은 학생인권 이외에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의 새로운 의제와 실천을 발굴하면서 남긴 유산을 묶었습니다. 청소년인권과 반(反)차별감수성의 만남을 시도했던 십대 여성주의(걸 페미니즘) 팀, 2008년 촛불정국을 통과하면서 본격화된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린 보호주의팀, 청소년이 말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운동을 일구어내고자 했던 노동(빈곤)팀의 다채로운 시도가 남긴 결실이 이 한 권에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네트워크가 시도했던 다양한 교육/연구 사업과 연대활동 관련 자료들의 꾸러미입니다. 청소년인권캠프, 청소년활동가대회, 잊힌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재발굴한 연구사업 등을 다룬 자료들을 따라 읽다 보면,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 이론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한 눈에 보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제 가고 없지만, 청소년을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인권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운동을 조직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또 네트워크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지혜의 보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1일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발간팀

1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2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주요 경과」, 2010. 10. 05.		27
박기성 기자,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연합뉴스, 2009. 05. 18.		31
다산인권센터 외 2개 단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2009. 08. 12.		32
임정훈 기자, 「진보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본격 시동- 경기도교육청, 2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열어」, 오마이뉴스, 2009. 09. 25.		35
하우, 「[내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인권오름 제174호, 2009. 10. 14.		37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10문 10답」, 2009. 10.		42
안종현 기자, 「道 학생인권조례 사전협의회- 학생·교사등 120명 참석」, 수원일보, 2009. 11. 02.		50
유명식 기자, 「경기 중·고생 35%, '매일 맞아요'...초등생 80% 일기장 검사」, 뉴시스, 2009. 11. 20.		52
강이현 기자, 「걸핏하면 무너지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국내 최초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추진」, 프레시안, 2009. 11. 23.		54
김경태 기자,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내용과 의미」, 연합뉴스, 2009. 12. 18.		5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의견조사 결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초안 발표 자료』, 2009. 12. 17.	60
경향신문 사설,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의미 있다」, 경향신문, 2009. 12. 18.	66
동아일보 사설, 「'김상곤 조례' 만든 사람들, 학생 미래 책임질 건가」, 동아일보, 2009. 12. 19.	67
박상규 기자, 「"체벌·손찌검 금지는 절대 양보 못한다"- [인터뷰]곽노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장...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학생을 키우자"」, 오마이뉴스, 2009. 12. 21.	68
강이현 기자, 「누가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가- [기자의눈] "학생 인권=좌파 교육"?...<조선일보>의 인권 의식」, 프레시안, 2009. 12. 21.	72
김대현 기자, 「홍역치르는 학생인권조례 초안- 두발·복장 단속하자 "선생님 고발할수도 있어요"」, 경인일보, 2009. 12. 22.	75
김경태 기자,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도교육위서도 논란」, 연합뉴스, 2009. 12. 22.	76
박상규 기자, 「학생 머리칼, 가위 아닌 이념이 먼저 자른다 [쟁점 기획-두발 자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향한 보수의 공격... '좌파 프레임'에 갇히나」, 오마이뉴스, 2009. 12. 23.	78
권박효원 기자, 「"지금도 '안습'인 학생인권조례, 수정한다고?"- [쟁점 기획-두발자유 : 좌담] 학생참여기획단이 본 경기도교육청 인권조례 논란」, 오마이뉴스, 2009. 12. 28.	81
공현,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인권오름 제185호, 2010. 01. 06.	87
공현,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참세상, 2010. 01. 07.	92
이계삼, 「"여기에 무슨 '좌파', '포퓰리즘'이 있는가"- [학생도 인간이다] "언제까지 '상처와 무기력'만 가르칠 텐가"」, 프레시안, 2010. 01. 12.	96

김진, 「"학생 인권과 교권은 '비례'한다"- [학생도 인간이다] "두발 자유화, 언제까지 미룰 건가"」, 프레시안, 2010. 01. 13.	101
김인봉, 「"제자 보기 부끄러워 피하는 교사였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다] "'블랙홀' 일제고사 선택권도 보장하길"」, 프레시안, 2010. 01. 14.	104
김순천, 「어른들이여, 제발 더 이상 잔인해지지 말자- [학생도 인간이다] 그들의 고통은 인권조례로도 모자라다」, 프레시안, 2010. 01. 21.	109
조영선, 「두발 검사 대신 인사 나눌 수 있겠구나. 서울 교사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패재를 부르는 이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조례가 생겨나기를」, 한겨레21 제794호, 2010. 01. 15.	114
임지선 기자, 「2010년 학생도 사람 선언!- 눈 오는 날 만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기획단...」, 한겨레21 제794호, 2010. 01. 15.	116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2010. 01. 15.	125
박상규·유성호 기자, 「"21세기 경쟁력은 머리털이 아니라 머릿속" [현장]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 보수단체·학생·교사·학부모 토론」, 오마이뉴스, 2010. 01. 20.	133
장혜욱, 「[기고] 학생 인권, 활짝 피어나라」, 경향신문, 2010. 01. 21.	137
허환주 기자, 「"생머리는 '모범 엄마', 파마머리는 '불량 엄마'입니까? [현장]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청회...청소년이 말하는 인권 실상」, 프레시안, 2010. 01. 25.	139
배경내, 「[학교와 인권] 통제가 멈춘 곳에서 비로소 교육은 시작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갖는 의미」, 『교회와 인권』,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 01. 27.	143
공현, 「[교육이야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요구가 낳은 당연한 제도」, 열린 전북, 2010년 2월호	147

임지선 기자, 「반대하던 이들은 어디로 갔나 [보도 그 뒤] 200여 명의 도민들 몰려 ‘긍정의 에너지’ 넘쳤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첫 공청회 현장」, 한겨레21 제796호, 2010. 01. 29.	150
김주용 기자 외, 「우리들의 인권조례, 당당하게 목소리 내요」, 한겨레신문, 2010. 02. 07.	152
홍용덕 기자, 「학생 체벌금지…헌법내 집회 보장」, 한겨레신문, 2010. 02. 10.	15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최종안과 초안 비교」, 2010.	15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초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 결과와 조례 제정의 병행조치 제안」, 2010. 02. 10.	160
김경태 기자, 「경기도교육청 "두발·복장·체벌 학교규정에 명문화"」, 연합뉴스, 2010. 02. 23.	169
김경태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연합뉴스, 2010. 03. 07.	170
김경태 기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집회조항 삭제」, 연합뉴스, 2010. 03. 22.	173
안종현 기자, 「학생인권조례 결국 ‘심의보류’- 학원심야교습제한도… 내달 구성 도의회서 새로 상정」, 수원일보, 2010. 06. 08.	174
이주연 기자, 「알몸 체벌·말죽거리 잔혹사 사라진다 [바로 이 맛! 투표하면 바뀐다③] '진보벨트' 지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신호」, 오마이뉴스, 2010. 06. 13.	175
김경태 기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확정」, 연합뉴스, 2010. 09. 07.	180
진현권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공감한 결과”」, 뉴시스, 2010. 09. 08.	181

경기교육운동연대 ‘꿈’ 외,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서, 2010. 09. 08.	182
교육희망 사설, 「경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교육희망, 2010. 09. 12.	184
신영근 기자,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교육현장 변화 예고」, 연합뉴스, 2010. 09. 17.	185
다산인권센터 외,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논평, 2010. 09. 17.	189
홍용덕 기자, 「학교서 ‘체벌’ 추방 학생인권조례 첫선」, 한겨레신문, 2010. 09. 17.	192
홍용덕·박경만 기자, 「두발자유·체벌금지...아이들이 밝아졌다」, 한겨레신문, 2010. 09. 26.	193
권우성·이주연 기자, 「『머리카락에 쓴 에너지, 이젠 온전히 공부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학생교사 관계 부드러워져" v s. "학생지도 벌써부터 고민"」, 오마이뉴스, 2010. 10. 05.	195

2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199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탄생과 시행 경과」, 2012. 06. 22	203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2010. 10. 27.	210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서명 양식)」, 2010. 10. 27.	211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우편 서명 양식)」, 2010. 10. 27.	212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후납 우편 서명 양식)」, 2010. 10. 27.	213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광고>, 2010. 10. 27.	214
<서울 학생인권조례 사진전>, 2010. 10. 27.	215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홍보 전단지>, 2010. 10. 27.	22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 협약 체결식 참여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제안서」, 2010. 05. 06.	222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자료집, 2010. 05. 10.	230
권우성 기자, 이주연 기자, 「억압·경쟁·차별 밟고 선 궤노현·김상곤·이청연 진보진영 교육감 예비 후보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약속」, 오마이뉴스, 2010. 05. 11.	245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참여 제안서」, 2010. 06. 14.	247
김원정 기자, 「조선·동아, 이젠 중고생에게도 '좌빨타령'? [아침신문 속아보기] 학생인권조례 운동에 "인권 포퓰리즘... 학생 흥위병 키우나」, 미디어오늘, 2010. 07. 02.	250
「[사설]자기 지식이라도 '피켓시위' 보고만 있겠나」, 동아일보, 2010. 07. 03.	25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토론회> 웹자보, 2010. 07. 07.	25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 서울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토론회」 자료집, 2010. 07. 07.	255

최인성 기자, 「"밥 늦게 먹었다고 벌 서고, 머리 길다고 뺨 맞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2010. 07. 07.	31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홍보자료」, 2010. 09. 11.	321
배경내, 「학생인권조례 쟁점 따라넘기 1 -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논리 개발」,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자료집』, 2010. 09. 11.	322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100인 위원회 위원 참여 요청」, 2010. 09. 27.	332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 홍보 웹자보, 2010. 10. 06.	335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 명단(총 125인)」, 2010. 10. 06.	336
윤지연 기자,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시민제안마당’ 개최...학생인권조례 내용 풍성해진다」, 민중언론 참세상, 2010. 10. 06.	338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 소장 사진, 2010. 10. 06.	342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 2010. 10. 18.	343
강성란 기자,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공감" 학생 88.6% 교사 88.7%」, 교육희망, 2010. 10. 17.	369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웹자보, 2010. 10. 18.	372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자료집 中 ‘모시는 글」, 2010. 10. 18.	373
심혜리 기자, 「“학내 집회 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안」, 경향신문, 2010. 10. 18.	375

손기영 기자, 「“집회 자유, 체벌-야자 금지” 시민단체 등 학생인권조례 초안…사회적 논쟁 예고」, 레디앙, 2010. 10. 19.	377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안)」, 2010. 10. 27.	380
손기영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돌입」, 레디앙, 2010. 10. 28.	404
강성란 기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불 지핀다 - 서울 서명운동 돌입…경기조례 수정·보완」, 교육희망, 2010. 10. 31.	406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각 주체의 역할> 웹자보, 2010. 11. 02.	408
최대현 기자, 「학생 인권 조례 정착하려면 교사 역할 중요 - 2일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교육희망, 2010. 11. 04.	409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81돌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0. 11. 02.	411
조영선, 「『학생인권조례, 교육의 숨통 틈을 갓』 [기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0. 11. 09.	476
공현, 「‘교사 폭행한 학생’ 선정적 언론보도 문제 있다 - 왜곡된 보도로 학생인권에 대한 건강한 논의 막고 있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0. 12. 31.	479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내부 워크숍」 자료, 2011. 01. 07.	483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규탄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1. 01. 20.	485
한지연 기자, 「교육·시민단체 "학생 인권침해 소지 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면폐지" 촉구 - 20일 긴급 기자회견.."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하는 개악"주장」, 민중의소리, 2011. 01. 20.	496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청소년 긴급 성폭토크대회> 웹 자보, 2011. 01. 25.	498
손기영 기자, 「“간접체벌은 없다”」, 레디앙, 2011. 01. 25.	499
조미담·이서화 기자, 「[현장에서]“간접체벌과 직접체벌 뭐가 다르죠?”」, 경향신문, 2011. 01. 26.	501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웹자보, 2011. 02. 16.	502
김도연 기자,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사의 소통 방식은? - “교사 체벌에 학생 응대했다면 ‘정당방위’ 맞잖아”」,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2. 17.	503
손준현 선임기자, 이유진 기자 「인권위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우려”」, 한겨레, 2011. 03. 03.	507
정유진·박준철·박효재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上) 변하지 않는 학교」, 경향신문, 2011. 03. 06.	508
정유진·이서화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上) ‘차별’을 배우는 아이들」, 2011. 03. 06.	511
심혜리·박효재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차별’ 왜 심해지나」, 경향신문, 2011. 03. 06.	514
심혜리·이서화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우리는 공부기계… 아플 수도 없어요”」, 경향신문, 2011. 03. 06.	515
정유진·심혜리·박효재·이서화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바리깡’은 살아있다」, 경향신문, 2011. 03. 07.	517
정유진·박효재·이서화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下)인권 없는 아이들의 미래」, 경향신문, 2011. 03. 07.	519
정유진·박효재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下) 자율 억압하는 학칙」, 경향신문, 2011. 03. 07.	521
심혜리·이서화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이름뿐인 학생회’… 학교 사사건건 개입해 무력화」, 경향신문, 2011. 03. 07.	524

배명재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공부 잘하던 그 아이가 왜... 목포서 고교생 분신 시도」, 경향신문, 2011. 03. 07.	526
심혜리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외국 사례·대안」, 경향신문, 2011. 03. 07.	528
「[사설]아직도 먼 학생인권, 학교의 발상을 바꿔야」, 경향신문, 2 011. 03. 08.	530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중암중학교 학생인권침해사안 에 대한 입장발표 및 사례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1. 03. 08.	531
김혜영 기자,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뺨 때리고 머리채 잡고」, 한국일보, 2011. 03. 08.	537
김도연 기자, 「빗자루 부러질 때까지 매질...학생 '체벌' 의혹 - "신고해. 질리기밖에 더 해?"...학생인권조례본부, 서울 A 중 체 벌 의혹제기」,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08.	539
이재훈 기자, 「서울 공립중서 '금지된 체벌' 주장 나와」, 한겨레, 2011. 03. 08.	542
김도연 기자, 「내 손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현장을 가다 - 청소년, "인권조례 절실"...4월26일까지 8만2천명 서명필 요」,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09.	544
임정훈 기자, 「"학생 40명 한 곳에 모아놓고..무서웠어요" - [보 도 후] 서부교육청, 망치·쇠파이프 체벌 2중 감사서 인권침해 사건축소 의혹」, 오마이뉴스, 2011. 03. 11.	547
<학생인권 시민연속특강 '학생인권으로 여는 행복교육의 오늘'> 웹자보, 2011. 03. 14.	551
심혜리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한국사회 학생인권 운운하 는 것 창피하다"」, 경향신문, 2011. 03. 15.	552
정유진 기자,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의 '폭력 트라우마와 체벌 없 는 교육' 강연회」, 경향신문, 2011. 03. 28.	554

정용주,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1)」,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21.	557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의미하는 것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2)」,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23.	569
김희옥, 「학생의 권리, 권리의 학습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3)」,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26.	577
배이상현,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4)」,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29.	582
익명,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의 위기,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5)」,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31.	589
홍세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위해」, 한겨레, 2011. 04. 03.	596
뚝코, 「학생인권조례, 당신과 내가 믿는 것」, 인권오름 제 245호, 2011. 04. 05.	598
이현주 기자, 「"니네 부모 모자란 사람이냐"...교사들 언어 폭력 '여전」, 뉴스시스, 2011. 04. 07.	601
김도연 기자, 「“중·고생 다섯 중 하나는 매주 언어폭력 당해”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 침해 학교 시교육청에 감사 요청」,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4. 07.	602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학생인권,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사회를 여는 첫 걸음”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각계 대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1. 04. 11.	604
이병우 외,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각계 대표 기자회견 발언록」, 2011. 04. 11.	609
김도연 기자, 「카이스트의 비극...하지만 청소년들은 더 일찍 죽어간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 보름 동안 5만명 받아야...각계 대표 동참 호소」,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4. 11.	616

정유진 기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서명운동 호소 도보행진」, 경향신문, 2011. 04. 19.	618
배경내, 「[기고] 민주주의의 비참과 학생인권조례」, 한겨레, 2011. 04. 25.	620
양새술, 「김태원의 멍꽃과 학생인권조례 - [기고] 학생인권조례 서명지에 8만 2천 명의 이름을 채워넣자」,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4. 25.	622
황철환 기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2주 연장」, 연합뉴스, 2011. 04. 26.	625
이계삼, 「[경향파당]학생인권조례, 2주간의 ‘희망 고문’을 생각하며」, 경향신문, 2011. 05. 02.	626
김민경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한겨레, 2011. 05. 12.	628
김도연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 8만5천 명 서명...“학생인권은 이제 시대적 대의”」,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5. 12.	629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 시민들의 힘으로 꽃피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1. 05. 20.	631
김도연 기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5. 20.	653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 시민들의 힘으로 꽃피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뉴시스 소장사진, 2011. 05. 20.	656
정유진 기자,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죠”」, 경향신문, 2011. 05. 20.	659

오승훈 기자, 「성숙한 청년, 끈대들을 타이르다 - [사람과 사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도운 청소년인권운동가 공현 씨… 고3부터 시작한 운동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젊음의 단단함」, 한겨레 21, 2011. 05. 30.	66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검토 결과 안내> 취재요청서, 2011. 06. 13.	66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청구인 서명 심사 결과 및 보정 일정 통보」 공문, 2011. 06. 18.	668
<학생인권조례 추가서명> 홍보용 이미지, 2011. 06. 22.	669
참세상 편집팀, 「“학생인권조례 추가서명 받아요..딱 5일만” - 위기의 학생인권조례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6. 23.	670
김태균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연합뉴스, 2011. 07. 01.	671
홍세화, 「서울특별시학생인권 조례 제정 청구 보정 청구인 명부」, 2011. 07. 05.	673
이현주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추가서명 3만여장 제출」, 뉴시스, 2011. 07. 05.	67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청구 요건 심의 결과 통보」 공문, 2011. 08. 10.	675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서」, 2011. 08. 18.	676
김연정 기자, 「집회허용·복장자유..학생인권조례 논란예고」, 연합뉴스, 2011. 09. 07.	679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성명서, 2011. 09. 13.	681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에 대한 의견」, 2011. 09. 16.	683

김연정 기자, 「주민발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 이송」, 연합뉴스, 2011. 09. 30.	688
금태섭, 「세상 읽기 '도가니'와 학생인권조례」, 한겨레, 2011. 10. 02.	689
<경기도는 1주년, 광주는 오늘! 서울도 서두르자!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보도 자료, 2011. 10. 05.	691
이현주 기자, 「[종합]서울학생인권조례 지문委, '학칙으로 인권 제한' 삭제」, 뉴시스, 2011. 10. 19.	706
윤근혁 기자, 「'저주' 받는 서울시의원들 "기독교단체들이..." - 서울 학생인권조례 반대자들 막말 문자 폭탄, '인권탄압' 맞네」, 오마이뉴스, 2011. 11. 23.	70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교육시민사회단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2011. 11. 23.	711
이하나 기자, 「교총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 연대' 결성 - 학부모단체 등과 공동 추진」 MK뉴스, 2011. 11. 24.	717
김연정 기자, 「내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여부 이번주 결정」, 연합뉴스, 2011. 12. 12.	718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훼손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성명서, 2011. 12. 14.	720
박수진 기자,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해야”」, 뉴시스, 2011. 12. 14.	722
천용길 기자, 「16일 심사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요구 높아 - 폐지 요구한 보수단체들, 점거농성중인 활동가들에게 고성 질러」, 민중언론 참세상, 2011. 12. 15.	723
전혜원, 「서울학생인권조례, '애정남'이 결정한다고? - [서울시학생인권조례①] 인권조례, 원안 그대로 제정돼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2011. 12. 15.	725

박소라, 「'소수자' 차별하는 학교가 '미친학교'다 - [서울시학생인권조례②]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다」, 오마이뉴스, 2011. 12. 16.	729
홍권호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라』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비공개 심의 중...결과 기다리며 3일째 농성 이어가」 민중언론 참세상, 2011. 12. 16.	731
김영민 기자, 「[포토뉴스]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사 보류」, 경향신문, 2011. 12. 16.	73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민주당에 묻는다 - 민주시민의 뜻,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무산시킬 것인가」, 2011. 12. 17.	735
송현숙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내년 시행 무산 위기」, 경향신문, 2012. 12. 18.	73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 의 미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훼손하지 말라」, 2011. 12. 19.	738
김민경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의회 통과」, 한겨레, 2011. 12. 19.	740
윤근혁/홍현진, 「『성적지향 명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 -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성적 지향·임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그대로』, 오마이뉴스, 2011. 12. 19.	742
천용길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가결, 내년 3월 발효 예정 - 차별금지조항 원안대로 통과, 집회·복장 규제 등 일부 조항 수정」, 민중언론 참세상, 2011. 12. 19.	746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 우려 표명」, 2011. 12. 19.	748
김민경 기자,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압박」, 한겨레, 2012. 12. 22.	749

윤근혁, 「학생인권조례 재의? 의원들 똘똘 뭉쳐야」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장 첫 공식 발언, 「역사적 의미 있는 조례 통과에 가슴 뿌듯」, 오마이뉴스, 2012. 12. 27.	751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검토에 관한 질의서」 2012. 12. 29.	753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검토 질의에 대한 답변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2012. 01. 06.	755
이현주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되나」, 뉴시스, 2012. 01. 05.	757
장서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시대착오’ - 본회의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조속히 시행되길」, 여성주의저널 일다, 2012. 01. 05.	759
신준희 기자, 「학생인권조례 속히 공포하라」, 연합뉴스, 2012. 01. 05.	765
이상원 기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서울인권조례지지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 서한..."청소년 권리 보장 환영"」, 민중언론 참세상, 2012. 01. 06.	766
김연정 기자,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 찬반 갈등 격화」, 연합뉴스, 2012. 01. 08.	768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규탄 성명」, 2012. 01. 09.	770
이지현 기자, 「제1회 이돈명인권상에 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 연합뉴스, 2012. 01. 09.	773
김연정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하라(종합2보)」, 연합뉴스, 2012. 01. 09.	774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 학교폭력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촉구 집회> 웹자보, 2012, 01. 16.	776

이상원 기자,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 “네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탓도 아니야”」, 민중언론 참세상, 2012. 01. 16.	777
조성봉 기자,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집회 사진 모음」, 뉴시스, 2012. 01. 16.	780
전누리, 「[이슈논쟁] 정치적 논리로 시민·의회 결정 무시」, 한국일보, 2012. 01. 18.	783
배경내, 「두 번의 기적과 어이없는 추방... 감사합니다 - 학생인권조례 운동, '이돈명인권상' 받아... "청소년활동가들이 큰 노력"」, 오마이뉴스, 2012. 01. 20.	785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기획안, 2012. 01. 25.	789
정환보 기자,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해결책 될 수 있어”」, 경향신문, 2012. 01. 25.	792
강혜란, 「"일진 해체시키면 뭐하나... '특진' 있는데" -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집담회 개최...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에 비판 목소리 높아」, 오마이뉴스, 2012. 01. 26.	793
권우성/윤근혁, 「교과부 태클 걸었지만...인권조례 공포 - 시의회 조례 통과 38일 만에 공식 공포... 교과부·교총 반발이 변수」, 오마이뉴스, 2012. 01. 26.	796
이제훈, 「조카를 위하여」, 한겨레 21, 2012. 01. 30.	799
김민경 기자, 「“머리라도 내맘대로”-“머리 풀리면 무방비”」, 한겨레, 2012. 01. 31.	801
검은빛,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훑어보기 ①」, 인권오름 제 281호, 2012. 01. 04.	803
जू리, 「‘청소년 성소수자’, 그 부대낌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야기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훑어보기 ②」, 인권오름 제 282호, 2012. 01. 10.	806

오리, 「성소수자들의 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③」, 인권오름 제 282호, 2012. 01. 10.	810
호림, 「공격의 도구가 된 에이즈를 바라보며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④」, 인권오름 제 282호, 2012. 01. 10.	813
어쓰, 「학생인권조례의 훼손은 내 경험에 대한 훼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⑤」, 인권오름 제 283호, 2012. 01. 18.	817
채효정,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분노와 정의가 만난다면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⑥」, 인권오름 제 283호, 2012. 01. 18.	820
공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⑦」, 인권오름 제 283호, 2012. 01. 18.	824
조성범,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⑧」, 인권오름 제 283호, 2012. 01. 18.	830
배경내,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⑨」, 인권오름 제 284호, 2012. 02. 01.	833
진냥, 「방방곡곡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지역별 조례 제정 운동이 가지는 의미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⑩」, 인권오름 제 284호, 2012. 02. 01.	838
오윤주 기자, 「서울발 학생인권조례 논쟁 4·11 총선 이슈로 ‘전국화」, 한겨레, 2012. 02. 12.	841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규탄 기자회견 자료」, 2012. 02. 23.	843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다산인권센터,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성명서, 2012. 04. 17.	857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거리 서명전> 소장사진, 2010. 10. 27~2011. 05. 10.	859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개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2008년 교육감 직선제도가 도입되면서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김 교육감은 이후 교육·인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했고, 2009년 7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초기 자문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교장, 교사, 학부모 단체 등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요구로 인권활동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추가로 선임되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09년 조례 제정 작업 착수 시점부터 2010년 9월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전력을 쏟아부었다. 자문위원으로 결합한 활동가를 통해서도 조례안이 인권의 원칙에 충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다른 활동가들은 조례안 작성의 기초를 제공한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연구원 참여, 학생참여단 활동, 언론 기고, 조례 공청회 참여와 대응,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례 내용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이 시작되었으나, 2011년 9월 마침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주요 경과」, 2010. 10. 0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주요 경과

-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인선은 민감한 문제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문위원들이 더해지고 빠지는 과정을 통해 조정됨. 자문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전망을 세워나가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자문위원들은 교육 현실과 학생인권 에 관한 공통의 인식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가지고 자체 인권 학습을 수행하는 등 긴 사전 작업을 거쳤음.

- 2009년 10월~11월의 두 달 동안 연구용역팀이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외국과 다른 지역 사례 연구 등을 거쳐 12월 초에 연구보고서를 제출.

- 2009년 10월부터 학교 공지 등을 통하여 학생참여기획단을 모집, 11월말쯤에 학생참여기획단 구성을 완료 이후 4가지 미션으로 학생참여기획단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경험이나 학생인권조례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나 캠프 등도 논의 되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함.

- 2009년 10월 말~11월 동안 지역별로 사전협의회 개최. 특수교육 등 여러 분야들에 관해서도 사전협의회 개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 2009년 12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2010년 1월에 자문위원회 주최 공청회가 3차례 개최 됨. 2월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A안과 B안 두 가지 안을 제출. 이후 교육청 주최로 3월에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 1회 추가 개최.

- 2010년 3월 23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 집회의 자유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B안으로 입법 예고. 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2010년 6월 7일 심의 보류 처리됨.

□ 2009. 05.28(목)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09.07.30(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교육감)**
 - 자문위원 9인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위원장: 궤노현 교수, 부위원장: 김인교 교장)

- 2009.08.20(목) : **자문위원회 제3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 4명 추가 위촉(오동석 아주대 교수 외 3명)
 - 교장, 교감, 생활지도교사, 경기도교육위원, 법학교수,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 학생대표는 포함되지 않음.

- 2009.09.25(금) :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 및 제6차 협의회 실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개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경기교육가족의 영상 의견/ 조례 제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조례 제정 관련 설문지 작성

- 2009.09.28(월) : **위탁연구용역 계약 체결(성공회대학교 평화인권센터)**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 연구 개발 경력이 선택 기준으로 작용

- 2009.10.6(화)~10.20(화) : **찾아가는 생활지도 연수**
 - 중·고등학교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연수 실시

- 2009.10.16(금) : **자문위원회 제7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회 자문기구로 학생참여기획단을 500명으로 확대하여 모집·운영기로 결정

- 2009.10.23(금) : **학생인권조례 관련 10문 10답 완성**

- 2009.10.28(수)~11.3(화) : **학생인권조례제정 사전협의회 개최**
 - 경기도 지역을 9개 권역(용인, 의정부, 고양, 수원, 안산, 안양과천,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으로 나누어 자문위원 4명을 한 팀으로 구성, 현장 방문
 - 권역별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 약 1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팀별로 자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설문조사를 실시

· 6개 권역은 실시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 지역은 실시하지 못함

□ 2009.10.26(월)~11.05(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학생 작품 공모전 실시**

·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 각 영역별 우수 작품 교육감상 시상키로

□ 2009.11.20(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중간발표회 및 일본 가와사키 아동권리조례 제정팀과의 협의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중간 보고회 개최
- 학생작품공모전 입상자 발표
- 일본가와사키 조례 제정팀 8명과의 협의회 개최

□ 2009.11.26(목) : **시민단체 및 특수집단과의 사전협의회 실시**

· 전문상담교사, 대안학교 교원, 특수학교 및 학부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가와 4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전협의회 실시

□ 2009.12.10(목) :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학생공모전 수상작 발표

- 교육감상 시상. 작품 결과는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탑재

□ 2009.12.17(목) : **자문위원회 초안 발표**

- 자문위원회 초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0.01.11(월) : **자문위원회 제11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회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자문위원회 입장문 검토 이후 홈페이지 탑재
- 초안에 대한 전문가 15인(한국외대 교육학 유성상 교수 외) 의견조회

□ 2010.01.19(화) : **자문위원회 초안 1차 공청회 개최**

- 경기 남부지역,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청회 개최

□ 2010.01.24(일) : **자문위원회 초안 2차 공청회 개최**

- 학생참여기획단 중심, 학생 대표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 2010.01.25(월) : **자문위원회 초안 3차 공청회 개최**
 - 경기북부 지역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 2010.02.10(수) : **자문위원회 최종안 발표**
 -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은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교육감 선택의 몫으로 남겨둠.

- 2010.03.07(일) : **경기도교육청 주최 공청회 개최**

- 2010.03.23(화)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
 -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B안으로 입법 예고

- 2010.04.30(금) : **경기도교육청 내부 법제 심의**

- 2010.06.07(월) : **경기도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보류**
 -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

- 2010.09.07(월)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2010.09.17(금)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0.10.05(화)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박기성 기자,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연합뉴스, 2009. 05. 18.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고교평준화 확대 시행은 2012년부터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는 현재의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생 자치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특별과제팀을 구성해 학부모, 학생,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발 단속, 체벌 등 교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조례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선 학교가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생활규정을 상위 개념인 이 조례에 맞게 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김 교육감의 20대 추진과제에 들어 있는 만큼 서둘러서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시책보고를 통해 혁신학교 설립, 무상급식 확대, 고교 평준화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광명, 안산, 의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 평준화 확대 시행은 지역별 추진 기구를 구성, 타당성 조사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대입제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 마련, 생활일체형 공부방 지원 확대, 경기교육발전특별기금 조성 등 20대 과제를 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 설립 문제와 관련, 김 교육감은 "현재까지 설립 승인된 사항은 존중하되 학생 선발, 교육과정, 예산 문제 등 특목고 설립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수 신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참 조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제 목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에 인사드립니다.

2.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인권단체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맞서 대응하고, 인권운동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3. 다산인권센터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귀청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4.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

시행 다산2009-08-01 담당 : 한지혜(031-213-2105) 접수

우 442-2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13번지 Tel. 031-213-2105 Fax. 031-215-4395

홈페이지 <http://rights.or.kr> 블로그 humandasan.tistory.com E-mail.
humandasan@gmail.com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문 의 : 다산인권센터 한지혜(010-9916-1461) / 김산(010-9852-4944)

얼마 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그 동안 몇몇 지역에서 추진된 바 있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하였거나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감이 부족하여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낸 지역은 없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두발규제나 체벌, 강제야자 등 학생인권침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기대가 큼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의 인권을 피부로 느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문위원회에는 교장, 교사 등은 참여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학생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사자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 및 학생인권조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 학생들과의 공청회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더 적극적인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도 지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지역별로 참여기획단을 구성하게 하고, 이 참여기획단이 학생인권 현실에 대해 사례를 발굴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등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인권단체도 참여해야 합니다. 인권단체는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고, 많은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기준에 맞는 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중요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학생과 인권단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2일

다산인권센터/인권교육센터 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임정훈 기자, 「'진보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본격 시동- 경기도교육청, 2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열어」, 오마이뉴스, 2009. 09. 25.

'진보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본격 시동

경기도교육청, 2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열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교육청은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를 열었다.

학생·교사·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은 보호와 양육만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학생인권조례는 김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사업이다.

이미 지난 7월 30일 교육관계자와 인권전문가 13인을 자문위원회(위원장 박노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위원으로 위촉하고 현재까지 5차에 걸친 협의회와 연찬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공모에 선정돼 본격적인 인권조례안 개발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헌법과 법률 및 국제 인권 기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하며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보호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자문위원회 역시 위원들만의 논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교사·학부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를 열었다. © 임정훈

모의 의견을 듣고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 인터넷 누리집과 전용 전자우편을 개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23일 개설한 누리집에는 벌써부터 강제야자와 보충을 안하게 해달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생참여기획단'도 만들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안양의 1고교 학생부장이라고 밝힌 한 교사는 "일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 조례를 만들어 면학 분위기를 흐리게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수원 1고교에서 온 박아무개 학생은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겠다는 것이다. 자문위원회 누리집은 물론 학생참여기획단 등에 적극 참여해 학생인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도 적극 알리고 함께 하자고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에서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다 좌초된 바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 주도로는 최초로 시도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선생님도 학생들도 관심 집중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영상과 설명이 진행되자 선생님도 학생들도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임정훈



▲ 행복한 학교 '소통과 나눔 속에 인권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 임정훈

하우, 「[내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인권오름 제174호, 2009. 10. 14.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하우 (수원시에 사는 고등학생)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대입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말이 저 뒤로 밀려나버린 현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 저에게 나름 기대를 갖게 합니다. 조례가 학교의 교칙보다 상위법이니깐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교칙들도 수정이 될 수 있고 게다가 학생인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품고 지난 9월 25일 있었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조례제정위원회를 소개할 때 보니 의아한 생각이 들더군요. 위원 중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일하시는 분, 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사, 인권활동가들까지 계셨지만, 정작 학생대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분들-선생님부터 인권활동가까지 이 모두 계셨지만 막상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최우선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이왕 추진하는 거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끔 제대로 조례가 만들어졌음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의견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바라는 점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좀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해요.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학교를 예로 들어 보면, 여학생들의 바지 착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조건이 달려있어요. 다리에 꼭 가려야 할 상처나 흉터가 있어

서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온 경우 선생님들이 상처나 흉터 정도를 보고 최종 판단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다 되니 사실상 바지를 입고 싶어도 못 입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정확한 조사 없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런 상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조례에 담긴 조항들이 구체적이어야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개선 요구를 할 때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 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달 25일 열렸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조례 추진 계획을 관심있게 듣고 있다. (사진 출처: 교육희망)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학생참여단에 들어가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실태조사 중간 집계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아예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학생이 '안다'는 학생에 비해 6배쯤 많은 걸로 확인된 거죠 결국 대부분 학생이 조례 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제정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봐도, 경기도 학생들이 지난달 25일 추진대회 현장에 가야 조례가 추진 중이라는 걸 겨우 알았다는 의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객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학생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10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단'의 영향력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차원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학생참여단을 만들고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대표의 발언과 교장선생님의 발언이 동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또 다른 의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에서 나누어준 책자를 보니, 일본 가와사키 시(市)에서 제정했던 '아동인권조례안'이 부록으로 실려 있더라구요 가와사키 시(市) 조례안에는 일종의 실행기구인 '권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례안이 그저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권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만들어진 뒤에는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구요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잘 만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살 때까지 머리와 옷은 물론 심지어 가방에서부터 신발, 양말, 속옷까지 남들이 정해준 대로 따르던 아이들보고 20살이 되면 땡! 하고 “자, 이제 너는 성인이니 자유와 책임을 줄께.”라고 말한다고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홍보 포스터

[끄덕끄덕 맞장귀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하우 님, 글 잘 읽어보았어요 저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예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우 님의 말처럼 자문위원으로 결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학생대표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저 역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의견으로 그 제안은 실현되지 못했답니다.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아무리 역할을 잘 해낸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제 몫의 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학생참여기획단’이 곧 구성될 테니까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게요. 하우 님도 학생참여기획단에 꼭 함께하셔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에서, 지난 5년 사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학생 수가 4.25배나 증가한 나라에서, 차별이나 강제야자, 부당징계가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분노의 출구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약자를 찾아 괴롭히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는 나라에서, 학생 인권은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꿈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인권과는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는 각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교육기본법도, 초중등교육법도 모두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권리가 의미 있으려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절한 절차와 수단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법률은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교육청과 학교가 법의 정신을 거슬러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도 이를 막을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권리 회복절차를 담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김상곤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안을 만들기까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

겠다는 것이 자문위원회가 다짐한 약속인데..... 아직까지 그 약속에 걸맞은 발걸음이 이어지지 못했네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학생참여기획단의 본격적인 구성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스페인 오렌세 지방에 위치한 <벤포스타>라는 어린이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시민법 조항을 추가해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 왔다고 합니다. 그 시민법 1조는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라는 조항이라고 해요. 자유의 공기를 흡입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이라면, 권리를 존중받고 제대로 행사해볼 기회를 가진 시민이라면 성숙할 기회를 충분히 누린 결과로서 책임을 질 줄 알겠지요. 학생인권조례가 꿈꾸는 교육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경기도 의회 통과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의 참여와 활발한 의견 개진은 꼭 필요합니다. 설령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제정 시도가 주저앉는다 해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인권에 관한 관심과 대안 모색의 기운이 후끈 달아오를 수 있다면 결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테고 말이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요.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10문 10답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09년 10월)

1.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만 생각하다 보면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학교생활이 즐거워야 공부도 즐겁고, 공부가 즐거워야 몰입도 가능하겠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가고 싶은 공간으로, 폭력이나 차별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 면학분위기도 한껏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규제 일변도로 학생을 통제한다고 해서 공부에 대한 몰입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갖고 몰입하기를 원한다면 통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발규제를 없애면 공부는 안 하고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될 거라고 우려하시지만, 이미 많은 대안학교들과 몇몇 일반학교의 선도적인 실험으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이지 않은 우려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려 규제 일변도로만 가다보면 학생들이 더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억눌리는 지점에서 더 자극을 받는 법이니까요.

☞ 공부라고 하면 교과 공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람살이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리고 인권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익힐 때 가장 잘 학습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과나 도덕과 등의 교과에서 인권의 가치와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시민이란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자유로운 사람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인권에 대한 공부는 시끌시끌한 공부입니다. 조용한 시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권에 대한 공부도 시장처럼 시끄러워야 제대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적, 정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권교육을 열심히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수업 방해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2. 우리 학생들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도록 의무에 대한 교육이 먼저이지 권리가 먼저 주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 학생들이 인권을 서툴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가 되시나 봅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을 방임하거나 무책임한 존재로 기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와 방임, 의무와 무책임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그 길,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걸어가지 않아 좁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길을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인권을 배우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나 갈등이 빚어질지도 모릅니다. 학생들만큼이나 교사들에게도 인권은 아직까지 충분히 경험되지 못한 가치이기 때문에 서투름이 부르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 없듯이, 학생도 교사도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학생도 교사도 인권에 대해 성숙할 수 없습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가정을 꾸린 이후 고스란히 폭력을 대물림하듯이, 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이 없는 교육’은 질서정연해보일지 몰라도 학생들의 영혼에 대한 보살핌은 없는 교육이 아닐까요?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교육이 아닐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도 하겠지만,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아볼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권리 주체들의 인식과 힘을 키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동시에 길러줍니다. 인권교육과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함께 간다면, 우려되는 혼란과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인권은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권이 부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권리가 주어질 때 책임 또한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 안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학생에게는 인권이 더욱 필요합니다.

3. 학생들 사이에 장난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폭력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통제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요?

☞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로서는 당연히 제기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 가운데 학생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 성적이나 생활을 비판한 학생 자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등일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사의 경우 종종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십니다. 보호자의 경우 학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불만을 터뜨리십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지는 것이 방임 내지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드시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일일이 규제하고 훈계해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장난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고삐를 죄고 꾹꾹 묶어두고 울타리를 친다고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외려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목장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기와 타인의 몸을 돌볼 줄 아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일일이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학생은 자기 몸은 물론 타인의 몸을 제대로 살피고 돌볼 줄 모릅니다. 교사가 아무리 일일이 살핀다 하더라도 매순간 모든 학생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과 예방교육은 학생의 안전뿐 아니라 교사의 업무 피로도와 부당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4.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건 교사들을 문제집단으로 보기 때문 아닌가요? 요즘 과잉체벌 교사처럼 큰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 인격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사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교사의 과잉 생활지도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국제인권기준에서는 교육권의 본질적 요소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규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 인권의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어야 할 인권을 좀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교사들이 문제집단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인권의 지지자이자 옹호자로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사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교사 개개인의 인식과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고 나면, 종종 교사 집단 전체가 비난을 받곤 합니다. 학생 인권이 무시된 사례를 보면 해당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구조나 ‘군사부일체’로 대표되는 사회의식의 문제가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구조와 사회의식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학생인권이 무시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사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 지지를 표하고 나서주신다면, 오히려 교사 전체를 문제집단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학생 지도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권리를 당당하고도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당연히 교사들에게도 즐거운 학교일 것이고, 교사들의 자긍심이 지켜질 수 있는 학교일 것입니다.

5.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학생인권만 얘기하고 교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당하는 교사들도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교사들도 상처받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권한 또한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권보다는 의무가 먼저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리를 행사하면서 배우고, 참여하면서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당혹스런 상황이 간혹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생이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학생들도 두려움 때문에 교사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교사에게 상처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교사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기보다는 ‘권력자’로 보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강자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사를 괴롭히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즐기는 학생의 경우는 ‘강자’에게 도전함으로써 주위 학생들에게 힘을 과시하고픈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여교사 등 약해보이는 교사들이 주로 그런 학생들의 표적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문제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변화하고, 교사의 인권에 대한 존중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교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학생은 몸이 아픈 환자에 비유해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몸을 뒤흔는 과정에서 의사의 얼굴을 할퀴었

다고 해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를 부러 괴롭히려 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몇몇 학생들이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도 어쩌면 아픈 환자의 뒤들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나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뿌리를 건드려야지 교권을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나쁜 행동’은 더 약한 사람에게 옮겨갈 뿐 사라지지는 않으니깐요.

☞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의 행동을 죄다 잘못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뜻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사의 뜻이나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당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학생인권을 신경 쓰다 보면 요즘처럼 거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책임도, 지도할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니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지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지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상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인권은 몸에서 떼어낼 수 없지만,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정,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학생 지도’와 학생인권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 ‘지도’라는 말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교사는 늘 옳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을 ‘지도’하려다 보면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지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교칙(학교생활규정 등) 역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한 학생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때, 학생인권 존중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교칙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 ‘지도’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준수와 책임의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위험에 처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때 그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이때 행사되는 힘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힘이니깐요. 다만 학생의 위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교사마다 다를 수 있고,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압이 가해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역할입니다.

7. 학교현실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 지도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내맡겨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인권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란 말입니까? 그럼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입니까?

☞ 수업시간에 교사 혼자서는 대처하기 힘든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요. 그래서 대다수 교사가 차이가 크고 갖가지 사연을 가진 다수 학생을 동시에 수업에 집중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계실 겁니다. 다른 지원책 없이 교사 개인의 역량이나 통제방식에만 내맡겨두고 있는 학교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자주 만나 보였습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개인의 책임만 늘여가는 방향을 지향하지 않을 겁니다. 학생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 역시 수업에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학생이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돌봄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교육의 기본이겠지요. 한 선생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한 학생이 자기 수업시간마다 자고 있기에 앞으로 불러내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포기한 듯해 보이는 그 학생의 모습이 한심해보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홀어머니와 함께 새벽 바닷가에 나가 고깃배에 잡힌 생선들을 껌에 담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새벽일을 하고 학교에 등교하니, 1교시 수업에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연을 알고 나서 그 선생님은 그날로 체벌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답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판단하는 자기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통감하셨던 것이지요. 이 사례에서처럼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고, 수업방식이 그 나이의 특성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일로 고민이나 불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연을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집중을 요구하고 행동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 이면의 마음을 읽었을 때 다양한 대처법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교사의 역량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 교사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학생의 문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는 학교 차원에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을 것입니다.

8.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인권 이야기하는 소수 학생의 의견만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단위에서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

활규정을 정해나가면 되지,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 교사, 학생, 보호자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너무나 반갑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일환으로 단위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도 적극 독려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 독려하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3주체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선으로 지켜져야 할 학생인권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단위 학교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 계획을 입안하고, 학생인권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더라도 고문수사, 불공정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은 기본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또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이 소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학생이 침묵하고 있고 소수 학생만 인권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다수의 학생이 인권에 관심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침묵은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학교 상황이 낳은 결과이지, 학생인권 보장을 미뤄두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아직 인권에 대한 이해나 욕구가 깊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내 던져서도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소수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인권이 돈독히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9. 우리 교육의 방향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까요?

☞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체화함으로써 학교가 고려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분명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숙고에 숙고를 거듭

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제정 등 학교 단위의 자율권은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규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각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는 구체기구 설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바깥에 구체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 안에서 조용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밖으로 알려져 학교가 시끄러워 지지 않을까요?

☞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구제장치가 없는 인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권리구제기구들이 설립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나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 보호자 등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인권조례에는 꼭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제장치의 구체적 형태나 절차, 학교 바깥에만 설치할지 학교 안에도 설치할지 등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학교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학생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 진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칭찬 받을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교 안에서의 자발적인 해결 노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사건이 숨겨지거나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고, 학교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公的) 기구는 요구됩니다.

☞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과정인 만큼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은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에 그칠 것입니다. 또한 그 혼란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 위해서도 학교 밖 권리구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 구체기구의 존재를 혼란을 야기하는 훼방꾼이라고 보지 마시고 학생인권 보장을 지원하는 협력자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道 학생인권조례 사전협의회

학생·교사등 120명 참석

“입시 교육의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쉽지는 않겠죠. 인권이 제정된다면 의무도 함께 만들어야...” 「수원 한 중학교 교감」

“인권조례제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학교가 놓아주질 않는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도 쉽지 않았다” 「수원 한 중학교 학생」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수원북중학교(장안구 영화동)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사전협의회’를 열었다.



▲ 지난달 30일 수원북중학교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협의회'에서 수원지역 각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여 추진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 곽노현)는 그동안 추진한 조례 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을 4그룹(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교장,교감))으로 나눠 각자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선 학생인권조례 대상자 각자의 의견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문위의 의견 수렴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을 시사했다.

우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일부 교사들을 비판했다.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은 자리에서 장발에 점퍼차림으로 참석해 눈길을 끈 한 고등학생이 토론을 시작했다.

대안학교로 알려진 수원대명고에서 왔다고 소개한 이 학생은 “좀 더 자유를 달라고 선생님과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라고 말해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급회의를 해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곳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옆 교실에서 회의를 진행한 교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격양됐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우려를 넘어 ‘극구 반대’를 외쳤다.

한 교사는 “배움이란 본래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현재 학생들의 목소리는 일반 시민의 인권수준을 훨씬 웃돈다”며 “아직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도 않은 것을 굳이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경기도에서 선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관리자(교장·교감)들은 뼈든한 예산을 걱정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그룹의 의견을 청취한 자문위는 이날 수원에 이어 안산, 안양·과천, 성남 등 각 지역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10일 1차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기 자문위원(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은 “대학 입시라는 목표로 소중한 학생의 인권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교육 주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명식 기자, 「경기 중·고생 35%, '매일 맞아요'...초등생 80% 일기장 검사」, 뉴시스, 2009. 11. 20.

경기 중 고생 35%, '매일 맞아요'...초등생 80% 일기장 검사

【수원=뉴시스】 유명식 기자 = 경기도내 중·고교생 35%는 거의 매일, 수시로 체벌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의 80%가 일기장 검사를 받는 등 사생활 침해도 심각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20일간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 도내 초등생 934명과 중·고생 1086명 등 학생 2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20일 조사결과 따르면 중·고교생의 경우 응답자의 35.2%가 거의 매일 수시로 체벌을 경험한다고 답했고, 주 2회 이상 체벌을 경험한다는 의견도 26.4%나 됐다.

반면 체벌을 당하거나 본 적이 없다는 답은 6.2%에 그쳤다. 체벌을 받는 이유는 수업태도와 두발·복장 등의 규정 위반, 지각, 결석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57.3%는 성적에 따라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이나 학년, 외모, 신체적 특징 등으로 차별을 경험한 학생도 30%에 달했다.

두발·복장규제는 응답자의 99.4%가 존재한다고 밝혔고 30%는 강제이발이나 강제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의 처벌까지 받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3가지로 응답자들은 두발규제와 복장규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꼽았다.

초등생(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교사로부터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맞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9%, 단체 벌을 경험한 응답자는 45.9%로 나타났다.

교사가 벌을 줘 수업을 못 듣게 한다는 응답도 24.8%나 됐다.

응답자의 60%이상은 일기장 검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수업시간 이외에 핸드폰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80%를 넘었다.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5개 분야는 ▲언어폭력(12.5%)과 ▲집단 괴롭힘(9.5%) ▲낮은 학교시험(8.1%) ▲벌세우기(7.6%) ▲신체적 폭력(7.3%) 등이 거론됐다.

이 밖에 응답자의 70%이상이 인권을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일기장 검사금지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사생활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인권조례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국내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5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한 뒤 7월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조례안 1차 초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강이현 기자, 「걸핏하면 무너지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국내 최초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추진」, 프레시안, 2009. 11. 23.

걸핏하면 무너지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국내 최초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추진

학생 인권 침해는 해묵은 문제다. 그러나 학생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막혀 있는, 경쟁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 인권은 사건이 터질 때만 잠깐 언급됐을 뿐, 오랜 묵인 속에 외면돼 왔다.

이런 가운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틀을 구체적으로 만드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에서다. 아직 국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적은 없었다.

이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은 마침 유엔(UN)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을 교육 문제의 주체로 세우는 일"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앞서 인권 실태에 대해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2020명, 교사 586명, 학부모 345명 등 총 2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학생 94.9%, 학부모 82%, 교사 66%, 관리자 59.4%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집단 괴롭힘 금지'를 1순위로 꼽았다. 또 학부모와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각종 고민 상담 등 학생 복지 강화'를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학생은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꼽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로 △언어폭력 433명(12.5%) △집단 괴롭힘 330명(9.5%) △갖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일기장 검사 243명(7.0%)를 꼽았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 '체벌을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2%, '1주 2회 이상 경험한다'고 답한 비율이 26.4%로 집계됐다. 강제 전학이나 강제 자퇴 등으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58%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중·고등학생들은 또 30.5%가 '현재 학교운영, 교육환경 등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답했으며, 20.3%가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로 △두발규제 △복장규제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단체기합 및 체벌 순으로 꼽았다. 또 학생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 해소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채택 20년을 맞았던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학생인권조례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학생 인권을 주제로 한 공모전 당선작도 발표됐다. ©프레시안

한편, 교사들 가운데에는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97.1%인 반면, 절반이 넘는 53.8%가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규 수업 외에 특기 적성 수업, 자율학습 등에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96.9%의 교사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전문가와 현직 교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궤노현)'는 이 같은 설문조사 및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조례 초안을 작성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본원칙은 '학생은 인권의 주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을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의 객체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과 관련된 선언적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조례 하나 제정한다고 인권 침해가 없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건강하게 조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세하고 밀착

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놀 권리..." 일본 가와사키시 조례 사례

학생 인권, 또는 아동 인권을 지방 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사실 해외에서는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 '학생 안전 및 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7년에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했다. 또 일본은 총 29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단순한 법률 제정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 구제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는 '옴부즈만(옴부즈퍼슨)'이다. 캐나다는 8개 주에 아동 옴부즈만이 설치돼 있으며, 미국 미시건 주, 일본 가와사키시에도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 가와사키시가 최초로 아동 인권 조례인 '가와사키시 어린이 권리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에는 당시 조례 제정을 맡았던 일본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단이 방문해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하며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관한 조언을 나눴다.

일본에서 '아동 권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 역시 집단 따돌림, 이지메 문제였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임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털어놨다.

아라마키 시게토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무슨 아동의 권리냐, 의무는 어디로 갔냐라는 식의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많은 홍보와 설득, 200번이 넘는 회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은 바로 아동과 청소년이었다. 아라마키 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조례의 내용은 획기적으로 변했다"며 무엇보다도 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와사키시 조례는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자신을 지킬 권리 △놀 권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독창적인 권리 보장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가와사키시 아동회의를 설치해 80여 명의 아동이 정기적인 회의를 열도록 주선하는 한편, 공개 모집한 시민을 포함한 10명이 참여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두고 시의 다양한 정책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라마키 위원장은 "변화를 확연히 느끼진 못했지만, 조례를 통해 다양한 회의 구조가 확립됐다"며 "회의와 참여를 통해서 학교가 조금씩이지만 인권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아라마키 위원장은 "교사를 제재하는 일은 애초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교사에 대한 제재는 다른 법률으로도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구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인권옴부즈퍼슨 제도는 조례 제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쉽게 옴부즈퍼슨에 접근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동을 보호, 구제, 치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와사키시에는 아동 권리와 남녀 차별 문제를 담당하는 2명의 인권옴부즈퍼슨이 3년마다 위촉된다. 자신의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옴부즈퍼슨에게 권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라마키 위원장은 "즉 조례를 움직이는 것은 벌칙이 아니라 모니터링과 감시, 그리고 인권옴부즈퍼슨 같은 구제 제도의 확립, 그리고 협의체"라며 "가와사키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조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내용과 의미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박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두된 주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모든 차별 금지 = 조례안 제7조2항은 '학교에서 차별은 금지한다'고 못박아 일체의 차별을 금지했다.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예외 인정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차별의 폐단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차별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생 인권을 제한 아닌 교권 한계에 대한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집단괴롭힘 역시 모든 교육주체가 5대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와 교육감의 노력을 의무화했다.

◇야차 제한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과잉 학습이나 강제학습 문제는 사전협의와 연구용역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시급한 5대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조례안은 이런 교과외 활동이 학생의 자율 선택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두발 및 복장 자유 = 개성실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 규제를 금지했다. 다만 교육목적상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했다.

최근 골칫거리로 부상한 휴대전화 소지·사용문제의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 및 소지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 =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를 존중해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했다.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교육복지권, 자치 및 참여권, 징계절차 방어권 등을 추가했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제도, 시정권고 등을 운영해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했다.

◇제재수단 있나 = 이번 조례안에는 제재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 권한을 가질 뿐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삼아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 성장, 인권존중 관행 정착,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설명이다.

조례안에 규정된 체벌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경우 인권옹호관의 진상조사와 시정권고가 따르고 징계 또는 형사문제는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 법적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하위조례가 상위법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고 상위법규가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과잉 교과외 학습 금지나 두발·복장 자유조치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 반론이 적지 않아 조례가 현장에서 정착될지도 주목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의견조사 결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초안 발표 자료』, 2009. 12. 17.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의견조사 결과

□ 지역별 간담회 현장 설문조사 결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경기도내 6개 권역을 돌면서(애초 9개 지역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플루 위험으로 3개 지역은 취소됨)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설명하고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 현장 설문조사에는 학생 177명, 보호자 128명, 교사 141명, 학교관리자 69명 등 총 515명이 참여.

- 사전협의회에는 원하는 교사나 학생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장인 보호자,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 학생회장 등 임원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참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확인. 특히 학생, 보호자의 경우 80~90% 이상이 조례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경우에도 높은 공감대를 표현.

<표 1> 경기도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③ 긍정적 대답	④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⑤ 전혀 공감 하지 않음	⑥ 부정적 대답	응답자수
학생	명	108	60	168	8	1	9	177
	비율(%)	61.02	33.90	94.92	4.52	0.56	5.08	
교사	명	38	55	93	36	12	48	141
	비율(%)	26.95	39.01	65.96	25.53	8.51	34.04	
보호자	명	58	47	105	18	5	23	128
	비율(%)	45.31	36.72	82.03	14.06	3.91	17.97	
학교 관리자	명	9	32	41	22	6	28	69
	비율(%)	13.04	46.38	59.42	31.88	8.70	40.58	
계								515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자문위원회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 학생인권 보장에 있으며, “자유로운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는 철학에서부터 출발. 또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을 열 가지 열쇠말을 통해 제시.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학교의 전망’ 10가지 열쇠말

1. 학생은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다.
2. 학교는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배움터여야 한다.
3.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학교는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4. 배움은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5.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6. 학교는 학생의 학습뿐 아니라 삶도 돌봐야 한다.
7. 학생의 모든 권리는 연관되어 있고 돌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의견과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8. 학교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생을 돌봐야 한다.
9.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의 언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10.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의미있어진다.

- 위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기본 정신과 철학에 대해 교육주체들의 공감 정도도 매우 높음을 확인. 이와 더불어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훈련되어야 하고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길러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도 학생 87.56%, 보호자 78.91%에 이르렀고, 교사 역시 절반 이상인 56.3%가 긍정적으로 대답

<표 3> ‘경기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에 담긴 자문위의 기본정신과 철학에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③ 긍정적 대답	④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⑤ 전혀 공감 하지 않음	⑥ 부정적 대답	응답자수
학생	명	72	86	158	18	1	19	177
	비율(%)	40.68	48.59	89.27	10.17	0.56	10.73	
교사	명	31	67	98	31	12	43	141
	비율(%)	24.11	47.52	71.63	21.99	8.51	30.5	

학부모	명	54	47	101	25	2	27	128
	비율(%)	42.19	36.72	78.91	19.53	1.56	21.09	
학교 관리자	명	12	32	44	21	4	25	69
	비율(%)	17.39	46.38	63.77	30.43	5.80	36.23	
계(명)								515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사전협의회에서 학생인권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5가지 과제를 선택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결과, 파악된 교육 주체별 학생인권 과제는 아래와 같음.

<표 4> 학생인권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섯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항목	학생 (177명)		교사 (141명)		보호자 (128명)		학교 관리자 (69명)		계 명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119	67.23	50	35.46	44	34.38	13	18.84	226
2	왕따 등 집단 괴롭힘 금지	85	48.02	84	59.57	84	65.63	43	62.32	296
3	자율적 학생회 · 학생 활동 보장	99	55.93	67	47.52	48	37.5	48	69.56	262
4	무작위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보장	52	29.38	27	19.15	26	20.31	13	18.84	118
5	각종 고민상담, 교육 지원 등 학생 복지 강화	60	33.90	79	56.03	84	65.63	69	100	295
6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59	33.33	29	20.57	61	47.66	30	43.48	179
7	학생인권 침해 구제 수단 강화	39	22.03	18	12.77	38	29.69	21	30.43	116
8	체벌 금지	80	45.20	40	28.37	37	28.91	41	59.42	198
9	가정 형편/성적/용모 차별 금지	66	37.29	49	34.75	43	33.59	31	44.93	189

10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 강제 금지	89	50.28	64	45.39	48	37.5	37	53.62	238
11	각종 문화 활동 접근과 참여 보장	40	22.60	44	31.21	42	32.81	44	63.77	170
12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차별 금지	26	3.09	31	21.99	20	15.63	39	56.52	116
13	인권교육 강화	25	14.12	41	29.08	33	25.78	47	68.12	146
14	기타	3	1.69	0	0	0	0	0	0	3
계		991		723		703		498		2,403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	두발·복장	자치활동	과잉학습	집단괴롭힘	체벌
교사	집단괴롭힘	상담 등 복지	자치활동	과잉학습	두발·복장
보호자	집단괴롭힘 / 상담 등 복지		징계	자치활동 / 과잉학습	
관리자	자치활동	인권교육	문화권	집단괴롭힘	체벌

□ 연구용역팀 설문조사 결과

- 자문위원회는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를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진에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의식 조사와 학생인권 증진 제도에 관한 연구를 의뢰. 연구용역팀은 △학생 2,020명(초등 934명, 중·고 1,086명) △교사 586명 △경기도 거주 보호자 345명 등 총 2,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놓음.

-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학생 당사자(중·고등학생 1086명 중 961명이 응답)의 의견이 87.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표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947	87.4
반대한다	14	1.3
의견없음	123	11.3
합 계	961	88.7.0

※ 진영중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의 언어폭력과 집단괴롭힘을, 중등학생의 경우 두발·복장 규제를, 교사와 보호자는 모두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강제 과잉학습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강제 야자·보충수업 문제나 두발규제 문제에 대해 학생뿐 아니라 상당수의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 교육주체들이 지적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인권문제(복수 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 생	초 등	언어폭력 433명 (12.5%)	학교폭력 330명(9.5%)	잡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 벌) 255명(7.3%)
	중 등	두발규제 770명(24.8%)	복장규제 580명(18.7%)	강제 과잉학습 464명(15.0%)	단체기합 및 체벌 278명(9.0%)	학생의사표현 규제 277명(8.9%)
교사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410명(24.0%)	강제 과잉학습 348명(20.4%)	두발규제 174명(10.2%)	학생의사표현 규제 151명(8.8%)	단체기합 및 체벌 141명(8.3%)
보호자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233명(22.8%)	강제 과잉 학습 152명(14.8%)	학생의사표현 규제 145명(14.2%)	단체기합 및 체벌 109명(10.6%)	두발규제 103명(10.1%)

※ 진영중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또한 연구용역팀은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조사함. 이에 대해 △입

시경쟁 해소 △인권교육 강화 △학생 참여 보장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리구제수단 강화 △보충·야자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고루 선택함.

<표 7>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구 분	중·고등학생		교사		보호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입시경쟁 해소	489	16.0	447	26.0	103	10.1
인권교육 강화	261	8.5	227	13.2	80	7.8
노후한 교육 시설 개선	188	6.2	197	11.4	109	10.6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368	12.0	176	10.2	32	3.1
권리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278	9.1	108	6.3	233	22.8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237	7.8	119	6.9	60	5.9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124	4.1	76	4.4	145	14.2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325	10.6	76	4.4	56	5.5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474	15.5	207	12.0	152	14.8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310	10.2	88	5.1	54	5.3
합 계	3,054	100.0	1,721	100.0	1,024	100.0

※ 진영중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의미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조례에 대해 "학생이 인권주체로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편적 인권을 얘기하면서도 이제껏 아이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해왔던 기성세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어른이 누리는 인권을 어린 학생이라고 예외로 해서 안된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초안은 체벌과 두발규제를 금지하고, 방과 후 학습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또 소지품 검사나 일기장 열람도 인권침해로 간주하며,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 평화적 집회를 열고, 학칙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인권 침해로 다룰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요컨대 지금까지 초·중·고교생에 대한 기성세대의 눈높이를 전면적으로 바꿀 때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물론 초유의 실험인 만큼 초안의 몇몇 조항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인권 존중도 좋지만 학생들의 무절제를 방치해선 안된다고도 하고, 학생 집회 허용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은 교육적이지 않다고도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눈높이를 바꾸고 달리 봐야 한다. '자율'학습이라면서 건강권과 휴식권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앞뒤가 맞는가? 학생들의 평화적 의사표현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학생은 공부나 하고, 입으라는 대로 입고, 깎으라는 대로 깎아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정부의 자율화는 되고, 인권 존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선택권 보장이 안되는 이유는 뭔가?

‘김상곤 조례’ 만든 사람들, 학생 미래 책임질 건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중고교가 지켜야 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내놓았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의 하나”라며 자화자찬(自畫自讚)했다. 그러나 조항을 찬찬히 뜯어보면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초안 16조는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내용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을 두고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까지 거론할 일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조례안을 마련한 자문위원회가 연구보고서라며 소개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는 그 예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거나 특정 국가관을 강요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자문위원회 해석대로라면 경기도 학교에선 학생 조회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키거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관을 가르쳐도 학생인권엔 반(反)하게 된다. 요즘 일부 좌파단체가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민중의례를 하는 흐름과 맥이 닿는 것으로 보인다.

초안 20조는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사고가 미성숙한 초등학교들도 학교 인사와 경영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외의 집회 권리를 허용한 것도 의도가 궁극하다. 신체와 지혜의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성인과 같은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는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김 교육감이 좌파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문서처럼 보인다. 자문위원회의 박노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좌편향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자문위원인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며 나머지 위원들도 대체로 이른바 진보단체 관계자와 김 교육감 지지 인사들이므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좌편향된 초안이 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왜곡된 사고방식을 지닌 김 교육감과 주변 사람들이 경기도 교육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편향된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기도 학생들의 미래까지 과연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박상규 기자, 「"체벌·손찌검 금지는 절대 양보 못한다"- [인터뷰] 곽노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장...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학생을 키우자"」, 오마이뉴스, 2009. 12. 21.

"체벌·손찌검 금지는 절대 양보 못한다"

[인터뷰] 곽노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장...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학생을 키우자"

"학생들을 미성숙의 악순환 속에 놔둬야 하나, 아니면 자유와 책임의 선순환 속에 뒤야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생각이다. 이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자는 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지난 17일 공개됐다. 두발 자유화,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조례안 초안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논란이 됐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여론도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곽노현 위원장은 "예상보다 보수층의 공격과 반발이 적다"며 "초안만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면 고맙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하향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체벌, 특히 손찌검 금지 등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안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학교 교육행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학교가 역동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자료 사진). © 장윤선

"일부 조항 하향 조절할 수도... 두발 자유화 욕구, 상상 이상"

아래는 지난 18일 꼭 위원장과 전화통화로 나는 일문일답이다.

- 인권조례 초안이 상당히 과격적이라는 말이 있다.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다. 자문위원 13명 중 교사가 네 분이나 있다. 학부모와 교사 입장에서 할만한 논의는 다했다. 그 과정에서 보수신분들이 지적하는 이야기도 다 나왔다. 그래도 합의를 이끌어내 만든 초안이다. '인권의 원칙'에서는 물러나지 않겠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과정에서는 하향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 두발 자유화 등 학생들 관심이 크다.

"그렇다. 두발 자유화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내 아이도 고교 1학년인데, '아빠 제발 머리는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라."

-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수정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도 의회의 권한이다. 오는 2월 1일쯤에 최종안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2월 7일쯤에 도교육위원회에 넘길 것이다. 앞으로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공청회를 4회 더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들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지적해주면 고맙게 고민하겠다."

- 앞으로 사회적 토론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논쟁은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 과격적인 자유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이제 과거 기준들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생각해보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체벌, 특히 손찌검 금지 등은 결코 우리가 후퇴할 수 없다.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우리 안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일단 그 정도 수준을 사회에 던져봤다."

학생인권조례 초안 13조(사생활의 자유) 4항은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학생복지와 권리... 학생이 참여해야 학교가 바뀐다"

- 이번 인권조례안 초안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자유화 조치보다 학생복지와 권리다. 사실 비행일탈 위기 청소년들이 많

이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실질적인 인권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행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게 중요하다.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 진정으로 학교가 변한다. 학생들 목소리가 제대로, 그리고 정당하게 들리게 하고, 실제 교육행정에 반영되는 제도적 통로를 학생인권조례에 넣었다. 학생들의 참여권을 시초로 학교에 역동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 락노현 교수(자료 사진)© 권박호원

- 지금도 학생 참여를 위한 규정은 있지 않나.

"있으면 뭐 하나. 일선 학교에서 그런 지침을 안 따라도 문제가 안 됐다. 그래서 학생인권옹호관제도를 만들었다. 인권옹호관이 학교의 문제를 바로 조사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인권옹호관을 개별 학교에 두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 두게 했다.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5명의 인권옹호관이 활동하게 된다. 또 '학생참여위원회'를 교육감 밑에 두고, 교육감이 직접 학생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다."

- 학생 '자유화 조치'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도 큰 것 같다.

"일부 교사들이 걱정하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학생 자유화가 이뤄진 대안학교에 가봐라. 학생들 대부분 행실도 바르고, 머리도 매우 단정하다. 공교육에서 성적 하위 30%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기력하게 잠만 잔다. 그리고 중간 성적의 학생들은 개성 없이 공부만 강요받는다. 상위 30% 학생들은 공부만 한다. 그래도 상위 학생들은 보람이라도 있지, 하위 30%는 학교에 그 어떤 흥미도 없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억압하면서 이런 풍경을 방치할 것인가. 문화활동이 포함된 방과 후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6개월 동안 활동했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나.

"우리 위원회는 1박 2일 연찬회를 열었고, 10번 가까운 사전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지금까지 총 17번 모였

다.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해당사자 그룹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다. 짧은 활동 기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위원회는 없다고 자부한다. 지금까지 많은 조례 제정은 보통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공청회 한번 하는 게 끝이었다. 그렇지만 우린 그렇게 안 했다.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간신히 초안을 냈는데, 앞으로 1개월 동안 더 세련되게 수정 보완할 것이다."

-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의 걱정이 누구보다 큰 것 같다.

"생활지도교사들이 다소 걱정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호의적이다. 교장·교감들이 상대적으로 비판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좋아하시더라. 교사들을 만나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 학교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첫 번째 학교 폭력, 둘째 상담교사 확보, 셋째 학생 참여 보장이었다. 다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 어쨌든 학생인권조례안이 지속적인 공격과 비판을 받을 것 같다.

"솔직히 좀 답답하다. 학생들을 미성숙의 악순환 속에 놔둬야 하나, 아니면 자유와 책임의 선순환 속에 두어야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

강이현 기자, 「누가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가- [기자의눈] "학생 인권=좌파 교육"?...〈조선일보〉의 인권 의식」, 프레시안, 2009. 12. 21.

누가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가

[기자의눈] "학생 인권=좌파 교육"?...〈조선일보〉의 인권 의식

<조선일보>가 요란하게 들고 나섰다.

이 신문은 지난 19일자 1면에 "전교조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중고생에 '교내 집회 허용'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어 5면에는 "학생 맘대로 머리 기르고... 학부모는 '학생 인권 교육 받아라'", "교육계 '교내 집단행동 허용땀 공교육 붕괴'" 등의 기사를 연달아 쏟아냈다.

기사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다. 총 48조로 구성된 조례안에는 야간 자율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체벌과 두발 길이 제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4월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의 논지는 한마디로 '좌파 교육감'이 조례안을 멋대로 만들어 이제 학생들의 집회까지 허용하려 하는 등 '막' 나가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학생 마음대로 머리를 기르게' 허락하는 것을 두고 봐서 되겠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21일 이 신문은 조례안 제정에 '편향적인 인사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김상곤 교육감이 논란을 일으켜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권의 지원사격을 업고 쟁점을 삼을 듯 하다"며 조례안 제정 자체를 정치 이슈로 비화하는 태세다.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자 자타가 한국 보수의 대변자라 부르는 매체다. 그러나 이번 기사들을 보면 눈앞이 캄캄하다. 이 신문의 수준이, 더 나아가 한국 보수가 이렇게 저질이었나 싶다.

인권 유린하면서 내놓은 성과? 폭력의 악순환과 최악의 정신 건강

우선 이 신문은 기성사를 놓고 봤을 때 인권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 기사의 제목으로 뽐으며 문제삼는 '집회와 '두발 길이'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제적으로 보장을 명시한 이동의 권리다. 한국의 학교에서 오랫동안 자의적 기준을 갖고 침해했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인간의 권리'인 것이다.

이 신문은 교장들의 우려를 전한다. 박범덕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교장회 회장(서울 신목고 교장)은 "자

율성도 좋지만 아직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며 "특히 학생회, 자치단체 등 이미 학생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도 교내 집단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장도 "이번 조례가 현실화되면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교들이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체벌과 폭력으로 억압하며 이룬 성과는 무엇인가. 짧은 머리의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월등한 지적 성취를 이뤘는가. 그렇지 않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언제나 지적되는 것은 한국 학생들의 심각하게 낮은 학습 흥미도이다.

학생 자치 기구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학생회 활동은 학생에게는 대입 스펙 쌓기의 도구로, 교사에게는 불합리한 결정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창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결국 오랜 세월 우리가 목격한 것은 높아져만 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소통의 단절, 그리고 학교 폭력의 악순환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학교 현장의 단면을 드러낸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로 '집단 괴롭힘 금지'를 1순위로 꼽았다. 또 학부모와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각종 고민 상담 등 학생 복지 강화'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미성숙한 학생'을 대신해 '성숙한 어른'들이 내린 결정은 어땠을까. 과잉 체벌과 성폭력, 금품 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르는 부적격 교원 문제는 최근 정부가 법규를 강화하면서 수습에 나설 정도로 이미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다. 심지어 교육 당국은 과잉 체벌을 한 교사를 다시 교단에 서도록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일을 거듭했다.

문제는 최근 일제고사가 시행되고 학교의 성적이 공개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사육이 아닌 교육을 받고 싶다'는 학생들의 말이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한 교사·교장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지난 17일 10여 명의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일제고사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집단 진정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은 최악을 향해 달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37명의 학생이 자살했다고 밝혔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 20명 중 1명 꼴로 자살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2009년 통계청은 청소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학생 인권을 주제로 한 학생 공모전 당선작. ©프레시안

"내가 당구공인가" 외치는 학생들...<조선>의 반대 근거는 무엇인가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는 체벌과 두발 규제 실태를 고발하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방학 보충수업에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당구채 100대 체벌을 당하고,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잘린 학생들의 사연이 넘쳐났다. "제가 무슨 당구공인가요? 황비홍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전시회 보도 기사를 쓰자 댓글에는 또 다시 "우린 하키채다", "이런 좋은 글에 왜 답글이 없나" 등 청소년의 아우성이 넘쳐났다.



▲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서는 방학 보충수업에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당구채 100대 체벌을 당하고, 바리깡으로 엉망으로 머리카락을 잘린 학생들의 사연이 넘쳐났다. ©프레시안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한국

보수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기준에서 보면 인권 유린을 옹호하는 최악의 기사다. 실제로 기사에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일부 교장들의 주장을 제외하면 '교육계'라는 이름만 빌려 '좌파 교육감' 때리기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누가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지.

한가지 더.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 있는 건 단순히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몇몇 조항만이 아니다. 이 도조례에는 '어른'이 참여하는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20명의 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경기도학생인권심의회,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참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기자들은 학생 인권 조례안이 영 심기에 거슬린다면 당신들의 의문점이 다 설명돼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만든 10문10답을 정독하라고 권하고 싶다. (☞ 바로 가기)

김대현 기자, 「홍역치르는 학생인권조례 초안- 두발·복장 단속하자 "선생님 고발할수도 있어요"」, 경인일보, 2009. 12. 22.

홍역치르는 학생인권조례 초안

두발·복장 단속하자 "선생님 고발할수도 있어요"

[경인일보=김대현기자]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관련해 교육계 전반에서 찬반논란(경인일보 12월18일자 1·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안발표직후 일부 학생들은 이미 조례가 시행된 것으로 착각해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 등 전교조를 제외한 경기지역 3개 교원노조와 교육단체에서 학생인권 조례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수원 A고교는 학생인권조례 초안 때문에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하는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들먹이며 교사의 단속을 거부한 것. 반별로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한 학생이 거부하면, 다른 학생들도 잇따라 반발하면서 일부 교실에서는 아예 진행을 포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지난 17일 도교육청의 초안발표를 조례 공포로 잘못 알고 장난삼아 "선생님을 고발할수도 있어요" "단체로 집회를 하자"는 등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기까지 하면서 교사들을 황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상당수 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어차피 조례가 공포되면 복장도 두발도 모두 자율인데 왜 그러냐"며 교사들에게 항의하면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한교조 경기본부와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등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상곤 교육감은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교사들의 지도권한이 급격히 떨어지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간 빈부 격차를 드러내 심각한 위화감을 유발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라며 조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초안 수준으로 앞으로 2차례 이상의 현장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도교육위서도 논란

김상곤 교육감 "우려 수용해 신중히 결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도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이후 일선교육현장의 혼선과 반대 여론 등을 지적하면서 김 교육감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런 우려를 포괄적으로 수용해 최종안을 신중히 결정한 다음 도교육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상국 교육위원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사실을 소개하면서 '초안이 발표되고 어떻게 학생지도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조례 초안과 관련한 '일선학교 학생지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3차례 공청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주체 대표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어느 수준에서 학생인권을 논의하고 (초안을) 보강하고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초안에 대해 논란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유옥희 교육위원의 질의에 대해 김 교육감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돼 목숨에 대한 자기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발과 복장부분도 필요이상 제지하는 억압적인 조치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박원용 교육위원의 질문에 대해 "학교마다 학칙이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강제조항이 없고 수용여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두발·복장 자율화를 예를 들며 "완전자율화가 아니다"면서 "개성에 맞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판단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초안을 선불리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관심사안이어서 한번 더

알리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교육할 수 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먼저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한상국), "교육감이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최창희) 등의 까칠한 질문을 던졌다.

김 교육감이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23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및 교권보호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규 기자, 「학생 머리칼, 가위 아닌 이념이 먼저 자른다- [쟁점 기획-두발 자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향한 보수의 공격... '좌파 프레임'에 갇히나」, 오마이뉴스, 2009. 12. 23.

학생 머리칼, 가위 아닌 이념이 먼저 자른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향한 보수의 공격... '좌파 프레임'에 갇히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면서 두발 자유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신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습에도 방해가 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청소년과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안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편집자말]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는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김 교육감이 좌파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문서처럼 보인다."

지난 19일 <동아일보> 사설의 한 대목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좌파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문서처럼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누가 뽑았는지, 사설의 제목도 눈길을 확 끈다.

<김상곤 조례> 만든 사람들, 학생

미래 책임질 건가

사설의 준엄한 비판과 경고를 정리하면, 학생인권조례는 좌파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김상곤 조례'에 불과하다.

보수신문의 학생인권조례 '사냥'이 시작됐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그리고 <문화일보>는 지



▲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으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지난 17일 발표되었다. 사진은 11월 20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을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김상곤 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난 17일 이후 '좌파적', '반교육적' 등의 수사를 사용하며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고 있다. 이들의 공격과 비판은 학생인권조례가 완성되고 도의회에 상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에 이념 덧씌우는 보수의 공격

이런 흐름에 대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보수신문들이) 충분히 비판과 문제점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학생인권 문제를 이념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측근 인사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하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좌파 딱지를 붙이는 건 건강한 토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의 우려가 괜한 걱정은 아니다. 조·중·동과 <문화>의 최근 보도를 보자.

우선 <중앙일보>는 지난 18일자 사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전교조의 지지를 업고 당선됐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교조식 교육실험으로 학생들을 망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역시 '김상곤 경기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는 반교육이다'라는 제목의 18일 사설을 통해 "김상곤 체제로 출범 7개월을 맞은 경기도교육청이 김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채 7개월도 못 되는 현 시점에 '학원(學園) 포퓰리즘'으로 서둘러 치닫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인성(人性),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훈육하는 것이 교육의 본령이라면 김 교육감의 '행복한 학교' 운운은 교육 황폐화의 둔사(遁辭)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하지는 않았다. 대신 "광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2006년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며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좌편향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이들 신문은 학생인권조례를 이념대결 구도 안에 넣으려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무상급식 좌절에 이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신문들의 지적대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는 정말로 좌편향적이고 이들의 활동은 편파적이었을까. 우선 자문위 13명의 면면을 살펴보자.

광노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규영 귀인초등학교 교장, 김영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김인교 동안고등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통과되자 고개를 숙이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학교 교장,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김혜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서미향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사, 안승문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이원일 이충고등학교 교감,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

이 중 이재삼 위원은 전교조 교사 출신이다. 현직 교장과 교감, 교사는 모두 보수성향인 교총 소속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논란이 될까봐 현직 전교조 교사들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어쨌든 교수, 교사, 교장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7월에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 협의회 10차례 개최 ▲ 1박 2일 연찬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사례와 쟁점 연구 ▲ 권역별 사전협의회(2009.10.28~11.3, 6개 권역, 학생 177명, 보호자 128명, 교사 141명, 학교 관리자 69명, 총 515명 참여) ▲ 포스터와 UCC 등 학생작품 공모전 ▲ 성공회대 연구팀에 의뢰해 학생, 학부모, 교육자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좌파 프레임' 공격 말고, 건강한 토론을 하자"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는 앞으로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경기도교육위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곽노현 위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조례 제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좋은 사례로 남겨도 될 만큼 13명 자문위원들은 열심히 활동했다"며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의 의견도 빠짐없이 청취했다"고 밝혔다. 편향된 한쪽의 의견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오동석 자문위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의 정신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좌편향 등 이념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벌써부터 '좌파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다"며 "의견 청취를 통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념 공격을 접고 생산적인 사회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수신문이 지적했듯이,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를 원활하게 통과하기는 무척 어려워 보인다. 이념과는 거리가 먼 무상급식도 도의회에서 좌초했다. 이념 문제가 덧씌워진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더욱 험난할 게 자명하다.

아이들 밥그릇이 엮어진 상황에서 학생인권은 '좌파 프레임'에 포획될 위기에 처했다. 보수 쪽은 그걸 노리고 있다. 학생들 머리 길이는 가위에 앞서 이념이 자르고 있는 셈이다.

권박효원 기자, 「"지금도 '안습'인 학생인권조례, 수정한다고?"- [쟁점 기획-두발자유 : 좌담] 학생참여기획단이 본 경기도교육청 인권조례 논란」, 오마이뉴스, 2009. 12. 28.

"지금도 '안습'인 학생인권조례, 수정한다고?"

[쟁점 기획-두발자유 : 좌담] 학생참여기획단이 본 경기도교육청 인권조례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면서 두발 자유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신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습에도 방해가 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청소년과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안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편집자말]



▲ 27일 오후 1시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열린 학생인권 좌담을 위해 모인 경기도 학생들. © 권박효원

학생들은 아침마다 헤어 아이론(고데기)으로 머리를 펴고 생활지도부(혹은 학생부) 교사가 지나갈 때마다 목을 죽 길게 빼거나 교복 속으로 머리를 감췄다. 정문 두발검사를 피해 아침 7시까지 등교를 한다. 보건실로 도망가거나 아예 결석을 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염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헤집는다. 10여 명의 교사들이 전교생의 머리카락을 감당할 수는 없는 일. 감시의 권한을 일부 학생에게 부여했다. 학생부장은 선도부장을 쫓고 선도부장은 선도부원을 쫓아댄다. "년 왜 10명밖에 안 잡니?"

머리카락을 둘러싼 학생과 교사의 전쟁은 이렇게 치열했다. 이게 다 '학생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역설적인 것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겐 두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학원에 다니느라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 면제 이유다. 시험 기간에도 단속은 줄어들었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학부모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두발인지 두발 단속인지 헷갈린다.

전경 같은 선도부... 학생들 편 가르는 권력

27일 오후 1시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에 모인 청소년들은 "두발 규정 자체도 문제지만, 적용도 교사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좌담 참가자는 고등학생인 거부기, 하우, 태성(이상 별칭), 중학생인 김명진.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만들 때 학생참여기획단으로 활동했던 청소년들이다.

조례 초안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강경했다. 지금도 '안습'('안구에 습기 차다'의 준말, '눈물 난다. 안타깝다'는 뜻)인데 이것조차 수정하는 꼴은 봐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처벌 규정도 없어서 학교장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례 초안 발표 이후에도 경기도의 학교 현장에선 큰 변화가 없었다. 교사들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학생들도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발 단속은 싫어하지만 이것을 인권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고, 학생인권을 주장하는 친구를 '좌파'나 '빨갱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그래도 해법은 직접 나서는 것밖에 없다. 학생들이 내린 결론이다. 이들은 학생참여기획단을 기반으로 지역별 학생모임을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일단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당면과제지만, 오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0번 후보를 내거나 공약을 요구하는 등의 선거 전략도 고민 중이다. 이미 오프라인 모임도 한 번 했다. 100명만 모여서 집회를 한다면 학교 현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이들은 기대를 보였다.

이날 좌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으며, 정리 과정에서 되도록 학생들의 입말을 그대로 살렸다.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며, 대부분 이름을 별칭으로 대신했다. 또한 참가자 중 대안학교 재학 중인 거부기의 사례는 중학교 때의 일이다. 다음은 좌담 내용 요약.

- '두발 단속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봤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김명진 "(등교 검사를 피해서) 선도부 나오기 전에 아침 7시 반에 학교에 들어간다. (하우 "고등학교는 7시까지 가야 한다.") 생활지도부(교사)가 단속 돌면 보건실로 내려간다. 가끔씩 선생님 한 명에 선도부원 2명씩 붙여서 세계 단속하는데, 한 반에 1~2명은 아예 결석한다.

선도부가 선생님보다 심하게 잡는다. 애들도 처음부터 친구들을 잡는 게 아니라 선생님 추천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직에 몰든다. 전경과 비슷하다. 권력을 갖게 되면 애들이 바뀐다. 웃으면서 즐긴다(모두들 "우~ 너무 싫어"). 못 잡으면 '왜 10명밖에 안 잡냐고 학생부장이나 선도부장이 쪼고, 애들한테도 욕먹고... 남학생이 여학생 치마길잡이 잡는 것도 참 말이 안 된다. 선도부의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하우 "매일 아침마다 '고데기로 파마머리' 펴기도 하고, 완전 곱슬 브로콜리 머리라서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데 선생님도 지지분하다고 만날 뭐라 그러다."

거부기 "그런 애들은 아예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 하라고 하더라. 자연 갈색인데 '학주'(학생주임 교사)가 머리 다 헤집는다. 머리뿌리는 검은색인지 아닌지 본다고 애들이 (어깨 위 길이로 보이려고) 목 높이 빼고 교복 칼라 뒤에 머리카락 넣는다. 머리 흘뜨려서 묶기도 한다. 단속은 개학 때가 피크다."

방학 동안 머리 기르고 염색하고 파마했는데, 첫날은 봐주고 경고만 하면서 3일 동안 뺄세계 잡는다. 웃긴게 또 시험기간에는 안 잡는다.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 준다고 학부모가 싫어한다."

태성 "우리 학교는 머리 짧다고 소문이 다 나있어서 각오를 하고 들어온다. 미용실 갈 돈 아끼느라 친구들끼리 함께 '바리깡' 사서 서로 깎아준다."

규정보다 센 단속...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니까"

- 머리 길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하우 "우리는 모른다. 학교에서 정해서 통보만 하니까."

태성 "단속도 일관성이 없고 주관적이다. 지네 마음에 안 들면 다 '빠꾸'다."

김명진 "규정은 '앞머리 눈썹 위까지, 옆머리는 귀 안 덮을 정도, 뒷머리는 와이셔츠까지'인데 걸리면 훨씬 짧게 자른다. 학생부장은 '반삭(반 삭발)하거나 밀라고 한다. 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거다."

하우 "규정은 20cm인데, 학생부장이 지금 통과해도 한 달 뒤면 걸릴 거라면서 15cm부터 잡는다. 그리고선 더 짧게 12cm로 잘라오라고 한다."

거부기 "선생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전날 싸웠거나 하면 단속하는 것 같고 차별도 심하다. 노는 애들은 '뺄세계' 잡고 수업 끝나고 남으라고 해서 미용실에 데려가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 가느라 머리를 시간 없었을 거라면서 다음에 자르라고 한다."

- 두발 자유화가 이뤄지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거나 청소년 탈선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



▲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으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지난 17일 발표되었다. 사진은 11월 20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을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김상곤 교육감. © 경기도 교육청

나. 규제가 풀리면 학생들 머리도 상품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우 "정말 공부에 집중이 잘되면 나도 깎겠다(웃음). 사회 선생님이 '두발 규제를 하면 성매매업소에서 구분이 잘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더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은 소중한 돈으로 가치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명진 "술담배가 잘못이라고 가르치려면 전문 상담교사나 보건교사가 신체 변화를 알려줘야 하는데, 강당에 애들 모아놓고 뻑뻑 소리만 지른다."

거부기 "상품화는 정말 비판해야 한다. 그렇지만 규제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빈부격차 드러난다고 학교에 명품구두나 가방을 못 들고 오게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학생들이) 서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까발리는 게 맞다."

하우 "어른들도 연예인 따라서 '누구누구 백' 같은 가방 산다. 청소년들만 문제가 아니다."

- 교권이 무너진다고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태성 "교권의 정의를 비껴야 한다. 학생 때리고 통제하는 게 교권이 아니다."

거부기 "선생님들도 인권침해 당한다. 잡무가 너무 많아서 수업이 어렵다거나."

하우 "자기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학생들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 때리는 권리가 교권이라면, 그걸 왜 지켜줘야 하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지금도 '안습'

- 학생참여기획단으로서 조례의 과정과 내용을 평가한다면?

거부기 "직접 회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우리 의견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존재를 아는지도 의문스럽다. 오프라인 활동도 우리가 알아서 잡았다."

하우 "적어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는 학생과 교장을 똑같은 인간으로 동등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됐다."

거부기 "당하는 사람은 우리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야 한다."

김명진 "조례안 내용도 수박 겉핥기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교장이 안 지켜도 된다. 결국 학교에서 또 싸우고 선생과 법적 소송해야 한다."

- 조례안이 도의회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모두 "안 된다. 지금 것도 '안습'이다."

김명진 "수정하면 '원칙적으로 체벌 금지',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러면 만날 '예외'라면서 원칙 어기고 체벌할 거다."

거부기 "수정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들고일어나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의미 있다."

- 조례안 발표 이후 학교에서 달라진 게 있다. 교사들이 긴장한다거나 학생인권 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김명진 "(다들 고개를 흔드는 가운데) 학생 부장에게 돌려서 물어봤더니 '왜 그만 놔 뽑아서 귀찮게 만드냐고 (김상곤) 교육감 욕하더라."

하우 "선생님들은 통과 안 될 거라고 한다."

태성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잘 안 알려준다."

김명진 "사실 지금도 도교육청에서 '체벌 및 두발단속 금지' 공문이 내려온다. 우리 학교에도 8월·10월에 계속 왔지만 그대로 쓰레기통에 갔다."

- 이런 활동 하면 주변 반응은 어떤가. 학생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다.

태성 "반 친구들이 진짜 머리 기를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본다. 그렇지만 입시 교육에 찌들어있어서 (조례를) 만들어봤자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김명진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하다. 물어보니까 선도부도 좋아하더라. 그렇지만 두발이나 복장이 '인권 침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적다."

거부기 "학생인권운동에서 가장 오래 했던 주제가 두발인데, 제대로 된 게 없어서 힘 빠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슈가 되면 달라질 것 같기도 하다."

하우 "우리 학교만 규제 풀어주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피해 준다고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다. 우리 학교는 학생회 애들이 보수적이다. 내가 두발 문제를 얘기했더니 학생부장에게 일렀다. 그래서 담임이 학생부장 만나서 '애 되게 착실하고 공부 잘한다고 날 두둔했다고 한다. 그것도 기분 나쁜 게 공부 못하는 애들에 대해선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태성 "좌파'나 '빨갱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자기들이 교육받나? 교육감도 우리가 직접 뽑자"

-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올라온 두발 검사 사진. 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엎드려 뺨치를 하고 있다. © 아수나로

태성 "학생들끼리 단체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학생참여기획단이 400명이 넘는데 이를 기반으로 지역조직을 만들 생각이야. 얼마 전 오프라인 모임을 했고 앞으로도 또 모임이 있다. 몇몇 학생회 친구들과도 얘기를 하고 청소년단체와도 얘기를 해서 학생 자치연합을 만들까 한다. 경기남부는 수원, 경기북부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1차 목적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고"

김명진 "오프라인으로 200~300명(다들 '100명만 모여도 돼') 모여서 집회를 연다면, 큰 쇼크를 입을 것이다."

거부기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철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기호 0번으로 (상징적인) 후보를 내는 운동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교육감 뽑았으면 좋겠다. 교육을 그들이 만나, 내가 받지."



▲ 2007년 청소년 행동의 날, 입시문제와 두발 규제, 비정규직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학생들. © 성하훈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공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제정할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이다. 물론 발표하자마자 학생인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유교원조합, 조중동문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황폐화”, “반교육”, “방종”, “면학분위기 저해” 등등의 수사들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인권에 무개념한 그네들이 어떻게 말들을 쏟아내건 간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사건임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 학생인권 운동의, 길다면 긴 역사가 녹아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에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 경북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어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고, 과거에 연구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등이 함께 검토되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

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나마 탄실한 내용으로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다.

학생인권의 공식적 기준 제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학생인권 지침(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학생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개인들은 꾸준히 수많은 학생인권들을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인권으로 제대로 인정 받지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규범의 제정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적 효과가 있다. 학생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 지역 학생들에게는 희망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의의이다. 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한국의 약 1/4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셈이다.

학교를 변화시킬 계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변화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한 계기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

의 월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훨씬 더!)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이 아닌 조례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이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이다. 그리고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인권조례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외칠 만큼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가 명확한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한계이고, 무엇보다도 학생인권 보장을 강제할 권한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조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는 기껏해야 과태료인데, 학생인권 문제는 그 내용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복잡한 기구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약간은 성급한 추진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 논의하여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연구팀도 고작 2개월밖에 안 되는 연구기간 동안에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국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내려다보니 조사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자문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1달도 못하고 조례안을 내보야 하는 형편이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을 충분히 잘 활용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지역의 좌파적/진보적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당선되었고, 이들과의 어느 정도 공조 속에서 정책들을 추진해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단체나 교육단체들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의 센스 없음 탓도 있겠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한계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우려스럽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다수와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학생인권조례 예산 삭감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막아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학생인권법안,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참여를 포함한) 학교자치법안 등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굳이 의회 상황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엔 친화적이지 못한 분위기도 문제다.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 등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 금지나 두발자유 등에는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금지 등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다. 무개념 반인권 일부 우파들은 어떻게든 김상곤 교육감을 까고 보려는 욕망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전교조의 음모라는 식의 어이없는 빨타도 날리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학생인권엔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과정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며, 설령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되기에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다.

끝내며 : 학생인권을 위한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성사시킬 수 없는 사회적 조건과 운동 조건이라면 교육과 학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학생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변화해갈 가능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두고 있는 조례이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을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걸고 있는 좀 다른 성격의 기대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사실, 내 생각에는 김상곤 교육감이나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도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또 무상교육 급식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의 상황 같은 걸 봐도 딱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설령 도교육위나 도의회를 거치면서 무산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좌초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청에 의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학생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공헌,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참세상, 2010. 01. 07.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너무 쉽게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쉽게 망하는 나라다. 화물연대나 철도노조가 며칠만 파업해도 나라가 흔들린다고 난리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친북 좌파들의 발호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다. 참, 국가보안법 따위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니 이런 막장스런 취약 국가를 봤나. 드디어 이제는 학생들에게 두발자유를 '허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다. 학생들에게 두발복장의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니, 불안해서 이딴 나라 못 살겠다. 역시 이민을 가야 하나?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발이야 익히 예상된 바이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조중동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이나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같은 데들이 보여준 반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 교육감의 '행복한 학교' 운운은 교육 황폐화의 둔사(遁辭)"(문화일보 사설)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비롯하여, 자문위 구성에 대해 좌편향 색깔론을 제기하는 동아일보 등등. 이런 말들 속에서는 현재의 학생인권의 현실과 교육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나 우려는 보이지 않고 막연한 색깔론 및 음모론과 '자유', '다양성', '인권'에 대한 두려움만이 난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무책임하고 별 근거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은 그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교조와 최악의 음모라고?

사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이야기가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획책"이라는 투의 음모론이다. 전교조가 그렇게까지 학생인권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이었다면, 참 나를 비롯해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장담컨대, 그렇게 전교조의 음모랍시고 들이대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 중에 좀 떨떠름해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

여나 학생회 활성화에 대해 반대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많지 않겠으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다. 두발복장자유나 체벌금지 등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 전교조가 일부 지도부나 간부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들 다수가 공감하는 성의 있고 실질성 있는 활동으로서 체벌금지나 두발복장자유를 외친 적은 별로 없다. 일단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얼마만큼 그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의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음모가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열망하는 많은 학생들과 인권활동가들, 개념 있는 학자들의 요구와 견해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들을 학교에 적용해놓은 것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연구팀이 많은 국제기준이나 외국 사례들, 헌법이나 국가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시 안을 제출했으며, 발표된 초안은 이를 기초로 많은 인권전문가나 교육현장의 교육자들이 참여하여 합의한 내용이다. 이러한 근거들 위에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일관하고 있고 보수적인 편견과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만 가득하니, 이 얼마나 개념 없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전교조나 좌익의 음모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하승수 씨가 오마이뉴스에 썼듯이) “유엔도 좌파라고 우길 텐가?” 학생들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나 참여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 아예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오히려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집회의 자유를 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게 명시해놓은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이 부분은 옥외집회의 경우 그냥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게 신고하여 하게 하면 될 텐데, 현재 한국 경찰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금지하는 쪽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책으로 나온 합의점으로 보인다.) 또한 체벌금지나 인권에 부합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 등은 UN아동권리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매년 권고해온 사안이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전교조의 음모라느니 좌익의 망국이라느니 설레발치는 것은 “우리 우익은 인권 개념도 없고 국제 감각도 없습니다.”라고 자폭하는 꼴이다.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정치적 성향이 좌파인 사람들과 단체들이 많다면, 그건 한국에서는 좌파들이 인권감수성이 더 뛰어나고 국제 감각이 더 훌륭한 탓일 것이다.

인권은 교육의 전제조건이자 목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교육에 해가 된다는 주장도,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해괴하기 그지

없다. 학교는 본래 짜는 입시 공부를 하는 입시 학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기본법을 봐도 그렇고, UN아동권리협약을 봐도 교육의 목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의 방식이나 학교의 운영, 규율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UN아동권리협약 제28조, 29조) 이러한 가치들을 도외시해가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는 학교의 본래 목적을 배반하는 일종의 '패륜적' 드립인데, 대놓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므로 강제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꼴을 보니 이게 얼마나 무개념한 발언인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불합리한 교칙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독재정권스럽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조건적 준법, 부당한 규칙이라도 닦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할 능력이다. 인권을 개무시하고 학생들을 개고생시키는 잘못된 규칙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권을 지키며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스스로 함께 만든 규칙을 함께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해야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을 만들 것이라는 말도 비논리적이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놓은 대로 말하는 대로 따르는 노예를 만드는 일이다. 자유가 없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며, 진정한 책임을 교육할 수 없다. 자기 머리카락이나 옷 입는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자유가 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 보장은 교사들의 권리에도 친화적이다. 학생들의 두발복장규제 등 교육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과중하고 불합리한 생활지도 업무에 노출되었던 교사들의 노동조건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은 동시에 교사들의 노동환경 또한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을 보장하며 필요최소한의 규제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가 교육에 더 효율적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교권조례도 같이 만들라고 하는 교사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하고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의 교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더 잘 학생들의 인권을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로서 교권조례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학생들을 교사들의 원수보듯이 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걸로 파악하는 인식은 교권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인권이 무시당하는 학교 현실이 일으키는 착시현상이다.

다양성과 자율,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좀 더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 어가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인권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조건이자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가장 교육적인 것이 가장 인권적인 것이다. 경기도지역 학교의 안습적인 학생인권 상황(내가 학생들로부터 들은 체벌 때문에 뼈가 부러져서 입원한 이야기나, 두발규제 과정에서의 강제이발 사례, 복장규제 과정에서의 변태스런 규제 등등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을 굳이 하나하나 말하면서 독자들의 그로테스크한 취

미를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200대 체벌이 언론을 타지 않더라도(200대를 때리든 1대를 때리든 체벌은 폭력이다. 폭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체벌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두발자유 보장으로 망하는 빈약하고 괴상한 사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계삼, 「"여기에 무슨 '좌파', '포퓰리즘'이 있는가"- [학생도 인간이다] "언제까지 '상처와 무기력'만 가르칠 텐가"」, 프레시안, 2010. 01. 12.

"여기에 무슨 '좌파', '포퓰리즘'이 있는가" [학생도 인간이다] "언제까지 '상처와 무기력'만 가르칠 텐가"

이계삼 경남 밀양 밀성고 교사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보장 등 실제 학생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지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다.

그러나 조례안은 초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찬반양론에 휩싸였다. 특히 보수 언론은 교내 집회 허용, 두발 및 복장 자유 등 세부적인 조항을 문제삼는 것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용 프로젝트 또는 '좌파 교육'을 정착시키려는 프로젝트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권 추락, 통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조례안 심의를 맡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프레시안>은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혹은 학생 인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릴레이 기고를 싣는다. 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나섰다. 편집자

요즘 학교에는 '그린 마일리지'라는 기막힌 제도가 있다. 기존의 '상·벌점제'에 때 빼고 광 년 뒤에 영어로 옷을 입힌 것이다. 학생 지도 담당 교사들에게는 대체로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는 '캐인습'이다.

이 제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아이들의 선행에는 블루 포인트, 악행에는 레드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를 적립하여 블루 포인트가 많은 아이들은 포상하고, 레드 포인트가 많은 아이들은 블루 포인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를 상쇄시켜 '정상'으로 만들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하는 제도다. 지상에서 적립

한 블루 포인트로써 천국 입장권을 받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목표라고 믿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에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제도다. 포인트를 부여하는 '권능'의 주체인 교사가 그날그날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하느님처럼 공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다.

선행을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것도, 악행을 상쇄하기 위한 선행을 하고 그것을 '인증받아야'한다는 발상도,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가. 인간의 행동이란 상점과 별점으로 손쉽게 범주화할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선을 드러내어 행하게 하면 반드시 위선이 된다. 악을 드러난 선행으로 상쇄하게 한다고 해서 그 악이 교정되지도 않는다. 체벌 대체라는 신사적인 명분을 갖추고 있지만, 그저 손 안 대고 아이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제도인데, '그린 마일리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학교 현장으로 진입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학생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준거 기준을 제시한 반가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초안을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공격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이 보장하고 국제적인 기준이 제시하는 만큼이라도 아이들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는 게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인지, 한숨이 나온다.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집단은 '깍두기'?

가장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역시 두발 부분이다. 하긴, 이 세상에는 짧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정돈된 아이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를 '모범적'이라 믿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러나, 그게 '모범생'의 척도라면,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범생 집단은 이른바 '깍두기'들이 아닌가?



아이들은 늘, 언제나, 떠든다. 아이들은 머리 모양을 가꾸고 싶어하고, 연애를 꿈꾸며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아이들은 무엇보다 놀고 싶어한다. 이것은 마치 새가 지저귀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이들이 과하게 비싸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할 때, 수업에 방해가 끼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연애 관계에 빠져들 때, 그것은 박멸해야 할 '교육적 악'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 바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어야 할 '교육적 상황'인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슬한 '교육적 상황'들에 두루 적용될 대단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 "요즘 학교에는 '그린 마일리지'라는 기막힌 제도가 있다. 기존의 '상·벌점제'에 때 빼고 광 년 뒤에 영어로 옷을 입힌 것이다. 학생 지도 담당 교사들에게는 대체로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는 '개안습'이다." ©뉴스시스

권리보다 의무가 우선이라 떠드는 이들이 있다. 서로 배운 바가 다른 것 같으니 따로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께는 자신의 의무는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너까리는 댓글도 보았다. 그렇게 맞는 것이 좋으면, 계속 맞고 살 일이다. 남들까지 그래야 한다고 떠들 필요 없이 말이다.

교권 수호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난 시절로부터 오늘날까지 학생 인권이 없었듯 교권도 없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교권이 군대 지휘관처럼 아이들 앞에서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교권이란 교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했을 때 '부여받게 되는', 지적 도덕적 '권위'이다. 그러나 지난 시절, 그리고 오늘날 교원들에게 요구된 것은 오직 순종과 경쟁에서의 승리 밖에 없지 않았던가.

보수 언론과 일부 인사들은 학생 인권 문제는 학교 자율성에 맡기라고 한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학생 인권을 충분히 유린해오지 않았는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아동에 관한 권리 협약'을 따르자는 것일 뿐이다. 이걸 그렇게들 좋아라 하시는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

아이들을 변호하라!

학생 인권을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사회에 만연한 폭력, 그리고 그 대물림을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20년 전,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선생님을 꿈꿀 때, 나는 내가 교단에 설 때면 두발 단속이나 체벌, 강제 야자나 보충 정도는 당연히 사라져 있을 것이라 믿었다. 당시의 민주화 흐름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부모들은 학교가 아이들 머리를 단속해 주길 학교에 요청하고, 오래오래 붙잡아 두면서 공부를 많이 시켜주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20년 전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공부해야 한다. 밤12시까지 학교에 붙잡혀 공부를 '당하고', 몇 시간 못자고 또 새벽밥 말아먹고 학교에 나와야 한다.

아이들은 여전히 두발 단속, 복장 단속을 당하며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신들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부모들도 학창 시절에 이런 일들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폭력을 내면화시킨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무기력, 순응적 태도, 남성적이고 군사주의적 사고방식들은 대개 학교와 군대를 통과하면서 내면화된 태도들이며,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이 폭력은 대물림되고 있다.

아이들은 기본권이 유린당하는 공간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과장한다. 학교 축제에서 몸빼바지를 입고선 코믹댄스로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는 모범생을 볼 때가 있다. 온갖 말썽을 도맡아 일으키는 사고뭉치가 체육대회 때 질풍 같은 드리블로 멋진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나는 어쩌면 그것이 그 아이의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동안 모범생은 자신의 '모범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 사고뭉치는 '반항과 일탈'로써 부풀려진 자기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과장하게 된다. 그것은 끝내 상처로 남을 것이다.

아이들 본연의 모습은 유희의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충분히 놀아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찍힌 '낙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섞여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때서야 아이들은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교육은 필요 없어
생각을 통제받고 싶지도 않아
교실에서의 음침한 학대도 필요 없어
이봐,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벽돌 하나일 뿐이잖아
당신들도 벽돌일 뿐이야 (핑크 플로이드, <The Wall> 중에서)

아이들을 변호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아야 한다. 되바라진 아이들의 철없는 소리라고 미리 낙인찍지 말고 그 발언들 속에 담긴 중요한 인간적 진실들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도사린 상처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 아니, 그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논란으로써 이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이끌려 나왔으니, 조례의 초안(<http://human.kerinet.re.kr>)이라도 한 번 정독해 보자. 거기에 무슨 좌과가 있고 포폴리즘이 있는지, 앞뒤 없이 내지르는 이야기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토론해 보자.

마지막으로, 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학교의 전망' 10가지 열쇳말 중 다섯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학생은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다.
2. 학교는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배움터여야 한다.
3.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학교는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4. 배움은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5.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이 다섯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



▲ "학생 인권은 우리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사회에 만연한 폭력, 그리고 그 대물림을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국회에서 열린 학생인권 전시회에서 공개된 두발 단속 장면.

는 우리들 모두가 내면 깊은 곳에 안고 있는 어떤 상처, 무기력과 깊이 관련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땅 민주주의의 훼손은 학교가 이 덕목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다섯 줄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김진, 「"학생 인권과 교권은 '비례'한다"- [학생도 인간이다] "두발 자유화, 언제까지 미룰 건가"」, 프레시안, 2010. 01. 13.

"학생 인권과 교권은 '비례'한다" [학생도 인간이다] "두발 자유화, 언제까지 미룰 건가"

김진 경기 부천공고 교사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보장 등 실제 학생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지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다.

그러나 조례안은 초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찬반양론에 휩싸였다. 특히 보수 언론은 교내 집회 허용, 두발 및 복장 자유 등 세부적인 조항을 문제삼는 것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용 프로젝트 또는 '좌파 교육'을 정착시키려는 프로젝트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권 추락, 통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조례안 심의를 맡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프레시안>은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혹은 학생 인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릴레이 기고를 싣는다. 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나섰다. 편집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에 한동안 학생들은 들떠 있었다. 수업시간마다, "선생님, 선생님~" 호들갑스럽게 불러대며 "두발 자유 된대요", 얼마나 기뻐는지 목소리마저 떨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꿈 깨라고 말해주기 너무 미안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 똑바로 알아야지 하는 생각에 말을 이어갔다.

"애들아,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이번에 발표된 학생인권조례는 넘어야 할 벽이 세 가지 있단다. 일단, 이게 '초안'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래.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알지? 지난번에 '무상급식' 예산 통과 안된 거.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 만약에 이대로 별탈 없이 제정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는 거야.

우리 일 년 동안 경기도교육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민원을 얼마나 냈냐? 아무 것도 해결 안 됐잖아. 돌아오는 답변이래곤 학교자율화 조치 어찌구 하는 것 뿐이었잖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인권을 찾아주진 않는단다. 알지? 그래도 인권조례가 없는 것 보다가 낫겠지?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거들 힘이 될 테니 말이야. 자~ 힘내자구~ 이제 수업할까?"

사실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 두발 규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고라서 더 강한 지도가 필요하다', '공고'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단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령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더라도, 내가 경험한 공고 학생들은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착하고 순한 학생들이 없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공고 학생들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오직 그들의 외모였던 것 같다. 강제로 짧게 잘린 머리와 어두운 표정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공고 학생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머리 자르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원성에 "안 자르면 되잖아, 니들 너무 착한거 아니냐? 다른 학교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냥 무시하고 다 기르거든.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진짜 말 잘 듣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아우성이다.

'선생님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싸대기는 기본이고, 9시까지 남기고, 명들도록 때리고, 욕하는데...', '그냥 상대하기 싫으니까 자르고 보는 거죠 3년인데 뭐. 그냥 잘라주지 뭐...' 이런 심경을 토로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기 초에는 머리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도 몇몇 보았다. '자퇴하는 건 도망기는 거다. 도망가지 말고 함께 만들어보자'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학교는 포기하더라도 머리만은 기르고 싶다는 아이들의 생각이 거 정스럽기도 했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나'하는 생각을 하면 무력하게 학생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학생들에게나 이런 현실에 아파하는 교사들에게나 반가운 소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안 발표 이후 많은 걱정과 고민이 밀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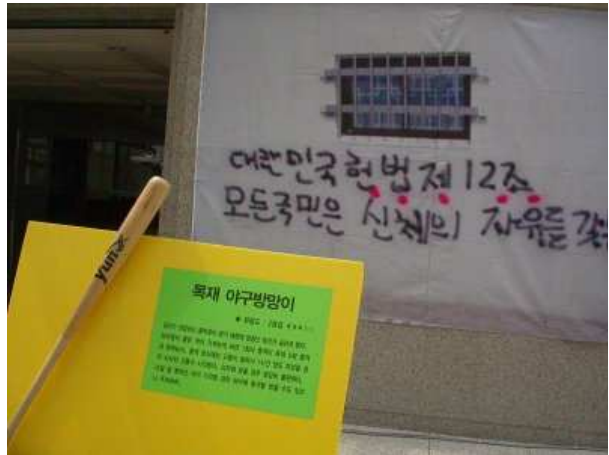
언젠가 '학생 인권 보장 수준을 보면, 그 학교 교사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100퍼센트 공감한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인간적 권리가 억압받는 구조 속에서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따로 없다는 뜻일 것이다. 겉으로는 학생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교사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교사도 그 억압 구조 속에 함께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인식 속에는 여전히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대립적으로 놓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발표 이후, '인권조례의 급진적인 성격 때문에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학교가 인권의 불모지가 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낸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학생의 인권이 곧 교사의 인권이고, 교사의 인권이 학생의 인권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나 교권보호현장은 오히려 학생과 교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게 될지 모른다.

오히려, 이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이슈화시키고,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찾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교에서 인권적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주체들 스

스로 이를 거부하고 제거하는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숨죽이고 누군가 학생과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들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선생님, 두발 자유화 언제 되요?' 이런 물음과 기대를 넘어서, '선생님, 우리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니 반드시 함께 두발자유화 시켜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대화와 실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머리 자르기 싫다는 학생들의 원성에 "안 자르면 되잖아, 니들 너무 착한거 아니니? 다른 학교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냥 무시하고 다 가르거든.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진짜 말 잘 듣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아우성이다." 사진은 2006년 국회 학생인권 전시회 모습. ©프레시안

김인봉, 「"제자 보기 부끄러워 피하는 교사였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다] "'블랙홀' 일제고사 선택권도 보장하길"」, 프레시안, 2010. 01. 14.

"제자 보기 부끄러워 피하는 교사였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다] "'블랙홀' 일제고사 선택권도 보장하길"

김인봉 전북 장수중 교장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보장 등 실제 학생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지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다.

그러나 조례안은 초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찬반양론에 휩싸였다. 특히 보수 언론은 교내 집회 허용, 두발 및 복장 자유 등 세부적인 조항을 문제삼는 것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용 프로젝트 또는 '좌파 교육'을 정착시키려는 프로젝트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권 추락, 통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조례안 심의를 맡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프레시안>은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혹은 학생 인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릴레이 기고를 심는다. 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나섰다.

2008년 10월 일제고사 당일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셀프 인터뷰' 형식으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일선 학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교가 학생인권에 눈을 뜨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근본이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성적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하는 존엄한 인간으로 새롭게 보자는 것이므로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지

지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 찾아주다 학교 교육의 붕괴가 가속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인권 찾아주다 교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교사와 교장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부딪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부축해서 함께 일어서야 할 관계입니다. 교장과 교사들이 인권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더 세심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이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올라가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부쩍 늘어날 겁니다.

교장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인권 침해를 많이 당하셨죠?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경험이 있습니까?

학생으로서도 그렇고 교사로서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군부독재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학생인권이라는 낱말조차 없었어요. 학생인권에 관하여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단에 섰으니 어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가차없이 누르면 누를수록 교사로서 사명감과 열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으니 그 당시 제자들을 면발치에서 보면 부끄러워서 제가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집단 괴롭힘 금지',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학습 선택권', '자치활동 및 참여의 권리', '정계절차에서 학생이 가지는 권리' 등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행복을 유보하지 않고 지금 당장 향유할 수 있는 사람"

몇몇 대안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인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분단과 대결, 군사정권의 안보와 개발독재로 우리 사회 전반이 쫄쫄 얼어붙어 학생인권이 싹틀 수 없었습니다. 특히 봉건질서가 붕괴하고 신분사회가 해체되고 학벌이 새로운 신분제로 대체되면서 학교는 학벌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학벌사회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하여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으로 취급받고 있죠.

이처럼 학생을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 행복을 유보해야 하는 존재로 보면서 아직 사리 분별을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니 학생인권이 설 자리가 없었지요.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첫째, 입시교육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생인권 침해의 대부분은 학생들을 입시교육에 몰아넣기 위한 방편과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학생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자유와 권리, 행복을 유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향유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생을 수험생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생일에 잘 먹으려고 사흘 굶지 말고 평소에 잘 먹는 것이 행복의 요체라고 학교는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규모의 적정화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적정 규모의 학급과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정부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만 추진하지 도회지의 대규모 학교 분할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육 학자와 교사들마다 의견은 분분하 지만 일반적으로 학급당 20명, 학년당 4학급, 학교당 12학급, 총학생수는 240명 정 도를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을 교육하는데 최적의 환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회지는 학급당 35명, 학년당 10학급, 학교당 30학급, 총학생수는 1000명 이 넘는 학교가 대부분 입니다. 이걸 학교가 아니라 수용소입니다. 따라서 교사로서 자질과 능력은 물론 인권 의식이 매우 투철한 소수의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 교사들 은 그 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어요. 학생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 하기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지시와 명령, 억압과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학생인권은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잠', '밥', '똥'을 잡아먹는 괴물, 일제고사"

장수중학교는 대표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입니다. 도회지의 대규모 학교보다 학생 인권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서툰 목수가 연장만 탄한다고 저는 서툰 교장이라서 교육환경을 탓하겠습니다. 우리학교 학생이 210명인데 교사는 저를 포함하여 18명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 12명이니까 수치상으로는 다른 학교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공문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50~60명인 학교나 10명 미만인 학교나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공문의 총량은 같습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사 1인당 1~2개 업무만 맡으면 되는데 소규모학교는 교사 1인당 5~6개 업무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바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적정 규모화에 이어서 잡무를 대폭 줄여야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비롯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까?

▲ 지난달 17일 인권·교육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반대서울시민모임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일제고사 실시로 인권을 침해받은 학생들의 진정서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프레시안

전체적으로는 매우 좋은 데 아쉬운 점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시국을 관통하는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 빠진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학교와 시장을 분간 못하고 불도저처럼 마구 밀어붙이는 핵심 가치가 경쟁과 효율이고, 그걸 학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일제고사인데, 이에 대한 선택권이 빠졌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학습을 선택할 권리는 언급하면서 일제고사를 선택할 권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일제고사와 학생인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일제고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 교사, 학생을 성적이라는 잣대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학생 개인의 특기적성, 바른 품성, 학생자치와 다양한 체험활동 등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교육활동과 성과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누려야 하는 '잠', '밥', '똥'을 먹성도 좋게 잡아먹는 괴물로 머지않아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서 인권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일제고사에서 1점이라도 올려야 하는 학교에서, 그걸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을 구조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의 위험성을 알려 준 교사들을 내쫓고, 일제고사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결석이라는 불이익을 주지 않은 교장을 징계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지요. 즉, 일제고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뚜렷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장수중학교에서도 학생인권 규정을 제정할 생각입니까?

올해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한 연후에 전라북도 모든 학교와 함께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일선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쉽게 제정될까요?

학생인권을 담아낼 환경과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권 인식이 미비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설사 우여곡절 끝에 제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 특히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사문화될 개연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규정을 제정한 자체가 학교교육의 방향과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바퀴 굴리는 것이므로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에 쏟는 행·재정의 1000분의 1만 학생인권 에 쏟아도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신장될 겁니다.

김순천, 「어른들이여, 제발 더 이상 잔인해지지 말자- [학생도 인간이다] 그들의 고통은 인권조례로도 모자라 다」, 프레시안, 2010. 01. 21.

어른들이여, 제발 더 이상 잔인해지지 말자

[학생도 인간이다] 그들의 고통은 인권조례로도 모자라다

김순천 르포작가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보장 등 실제 학생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지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다.

그러나 조례안은 초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찬반양론에 휩싸였다. 특히 보수 언론은 교내 집회 허용, 두발 및 복장 자유 등 세부적인 조항을 문제삼는 것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용 프로젝트 또는 '좌파 교육'을 정착시키려는 프로젝트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권 추락, 통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조례안 심의를 맡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프레시안〉은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혹은 학생 인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릴레이 기고를 실는다. 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나섰다. 〈편집자〉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초안을 읽는데 첫 줄부터 눈물이 핑 돌았다. 예전에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 '시민법전'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무슨 딱딱한 법전에서 감동을 받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시민들이 인간임을 선언한 그 법전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슴에 파고드는 명문장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인간임을 선언한 인권조례초안도 내 마음을 울리게 했다. 사실 이제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법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무안한 일인지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우연한 계기로 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대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공부 잘 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들, 전문계에 다니는 친구들,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 강남의 친구들 등 수십 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통해 10대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인터뷰

하기 전에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그 중 강남에 있는 한 정신과 의사가 기억에 남는다.

"애들을 보면 학습 강도가 정말 엄청나요.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렸더니깐요. 그러니 상담하러 저한테 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의사가 강남에 있는 A고등학교로 현장조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학생들의 검사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였다. 이상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끔찍 앓으면서 그 힘든 환경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 결과를 통보하자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왔다. 그만큼 힘들었고 뭔가 해결책을 찾고 싶어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심한 경쟁으로 인한 긴장, 압박이 학생들에게 불안, 강박증,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난번에 아는 분이 연세대 강사로부터 직접 들은 정 보라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2009년 3월에 그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하도 심각하게 나와서 발표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신입생으로 그 학교에 들어간 자신의 조카도 고2때부터 갑자기 강박증과 불안증세가 나타나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신청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밀리고 밀려 9월에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외국에서는 강박증이 어른들에게서나 나타나는 병이지 학생들에게는 거의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평범한 학생이든, 뛰어난 학생이든 모두가 마음 깊이 병들고 있었다. 과도한 학습 경쟁에서 학생들이 정상이길 바라는 것 자체가 자기기만일 것이다.

학생들이 이렇게 아픈데도 너만 입시경쟁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애들은 잘 견디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면서 아예 아프지 말 것을, 아프다는 말조차 꺼내지 말 것을 강요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참으로 잔인하다. 많이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까지 온 학생들에게 나는 인권조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도 작은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권조례 제11조에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1년을 맞아 열린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자살로 죽어간 친구들을 추모하는 작은 분향소를 설치했다. ©프레시안

내가 인터뷰한 학생 중에 상현이는 "불 다 끄고 닷새동안 실컷 잤으면 좋겠어요", 했다. 어찌 그게 상현이만의 바람이겠는가. 인권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이며 절실한 것인지 어른들은 상상이나 해 보았을까. 인권조례라는 작은 탈출구를 통해 학생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큰 출발이길 바란다.

'우리 자식은 살아남아야 한다'? 당신의 손자도 고통받는다

학생들이 힘들면 힘든 만큼 부모나 교사들도 힘이 든다. 일제고사 두 번을 포함해 1년에 8~10번 살인적인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시험기간에는 스트레스가 심해 몸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면서 부모들에게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들은 시험 때가 되면 자식들 시험공부 시키느라 힘든데 짜증까지 받아내려면 죽을 맛이다.

시험 때는 자식들에게 얹매어 있느라 부모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도 한다. 강남의 부모들은 시험 때는 밥도 안하고 시켜먹어 남편들은 밥도 못 얻어먹는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는데 자식이 공부도 제대로 안하고 논다고 생각되면 역으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

언젠가 <내일신문>에서 시험 기간이 되면 각 가정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르포를 실은 적이 있다. 육과 손찌검은 기본이고 문쩍이 부서진 집도 있었다. 완전히 전쟁터였다. 이번에 경기도 학부모들이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서 82% 찬성이라는 높은 지지를 해 주었다. 그 만큼 학교에서 자식들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학생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보충수업 자율화와 학생들이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입시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겠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폭력과 보충수업 자율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란 게 보충수업 강제로 시키려다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려다가 사용된다. 서로 분리해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시험기간에 사용하는 폭력과 학교의 폭력을 분리할 수 있는가. 어떤 학부모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폭력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반대를 하지만 학원에서 사용되는 폭력은 오히려 지지를 한다. "그래야 공부를 하죠. 다음에 안 맞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말을 듣다가 끄떡했던 기억이 난다. 부모들이 분리해서 사고하는 사이 학생들은 학교, 집, 학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얻어터지고, 욕먹고, 부정당하며 그렇게 10대를 보내는 것이다.

10대들은 자신들이 꾸는 꿈이 온전히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신이 꾸는 꿈이 현실이 되는 청소년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탈락자가 되거나 꿈이 대폭 낮춰질 수밖에 없다. 부모들은 그 10%에 자신의 자식이 끼기를 바라며 이렇게 안위한다.

"남들 다 하는 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너라도 살아남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90%가 버려지는데 그 안에 자식이 속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우면서도 참 대책 없고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뭔가 자식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부모들은 "내 자식은 지금 고등학생인데

언제 교육을 변화시켜 혜택을 보겠느냐. 차라리 그 10%에 살아남기를 바라야지"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자식이 장가가서 손자를 낳는다면 또 이런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멀리보고 10대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줘야한다.

부모들이 자식들 학교 청소 해주러 가거나 선생님들 선물 보내는 일 말고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10대를 행복하게 보낸 청소년들은 그 힘으로 평생 살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10대들이 대학도 가기 전에 이미 지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뭔가 끔찍하지 않는가.

상담에 목마른 학생들..상처는 '방치'로 낫지 않는다

이번 인권조례 중에 내 시선을 끌었던 것은 '학생인권옹호관'이다.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상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사람인데 관할지역별로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다. 그를 보좌할 전문조사원도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내가 현장에 가보면 학생들을 보호할 어떤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많았다. 상담실과 상담을 맡을 교사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폭력으로 피해본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이 학교 다니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얼굴과 마주치면 그 장면이 떠올라 견딜 수 없게 된다.

결국 피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나 충분히 보살펴줘야 하는데 방치상태로 두었다. 상처받은 마음 어느 것도 보살펴 주지 못했다. 미국에서 교사로 있었던 분 이 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는 학교마다 상담실이 있어 항시적으로 상담은 필수라고 했다.

9·11 사건이나 학교에 총기난사 사건이나 학생자살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각 학교에 심리학자들을 2~4명을 긴급 투입하여 3~4일정도 집중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했다. 미국의 교육 제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부러웠다.

학생인권옹호관 이야기 나오면서 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는 문제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다. 조례에는 각 지역에 인권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각 학교차원으로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다. 상담실 역할도 함께 하면서,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들은 더 많이 고민한다.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10대를 인터뷰하고 나서 내가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청소년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뷰하기 전에는 그들이 어리다고 생각했다. 어리니까 내가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로 여겼던 것 같다. 그들은 결코 어리지 않았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보다 더 성숙했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실에 상처를 많이 받고 아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나는 그 사실이 조금 놀라웠다. 현실이 어려우면 생각하기 싫어서 포기할 거라고 지레짐작을 했던 것이다.

그동안 오만하게도 부모인 나나 선생님들이 청소년들 자신보다 더 그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착각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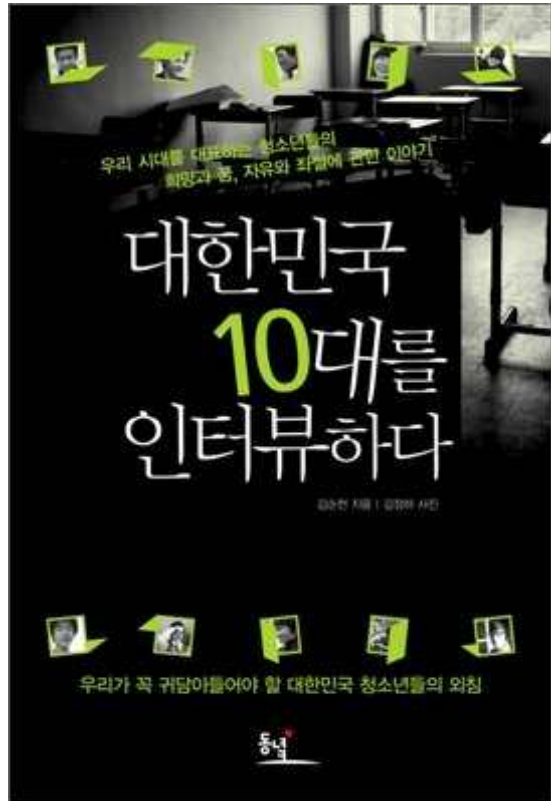
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의 인생도 아니고, 선생의 인생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이 될지 말하지 마라. 아이들은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안다." -리캐롤의 '인디고의 아이들' 중

10대들을 인터뷰한 내용은 책으로 나왔는데 청소년들이 그 책을 읽고 내가 사는 곳으로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미래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서평을 써서 보내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책을 읽고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이 한번도 독후감이란 것을 써 본적이 없었지만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쓴다면서 "책이 참 재미있다. 사실 그 '재미'는 내 삶을 위로하고 공감을 주는 데서 오는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책 내용은 10대들 인터뷰를 그냥 솔직하게 풀어서 실어놓은 것뿐이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재미없고 무료할 수 있는 내용인데 10대 당사자들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었나보다. 그만큼 10대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겪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는 뭔가를 갈구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부모와 선생님과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했다. 그 소통 욕구에는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책 하나로도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하는데 교육적인 큰 틀에서 지금과는 다른 큰 변화를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인권조례가 발표된 날, 인터뷰한 학생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머리 자유화 된대요!" 얼마나 들떠서 이야기 하던지... '헉, 그러려면 몇 가지 더 장치가 필요해. 의회도 통과되어야 하고...' 나는 이 말을 하려다 꿀꺽 삼켰다. 지금 이 순간만은 기쁨을 실컷 누리게 하자. 이 기쁨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하게 하자.



조영선, 「두발 검사 대신 인사 나눌 수 있겠구나- 서울 교사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쾌재를 부르는 이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조례가 생겨나기를」, 한겨레21 제794호, 2010. 01. 15.

두발 검사 대신 인사 나눌 수 있겠구나

서울 교사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쾌재를 부르는 이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조례가 생겨나기를

조영선 서울 경인고 교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일부 보수 신문에서는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들 셈인가’ ‘10대 정치꾼을 양산하는 법’ 등 선정적 제목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방대하지만 언론이 가장 호들갑을 떠는 문제는 ‘두발 자유’ ‘체벌 금지’ ‘학내 집회 허용’이다.

교육 현장의 혼란에 교과부가 한 일은

이게 그렇듯 편향된 내용인가 싶어 인터넷 검색창에 세 단어를 밀어넣었다. 야간자율학습을 빠졌다는 이유로 110대의 체벌을 당한 학생이 자살한 뉴스, 교사의 체벌 장면을 찍은 동영상, “0교시 수업 반대, 두발 자유”를 외치며 20분간 학내 집회를 한 학생들에 관한 뉴스 등이 검색됐다.

이런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두발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사의 합의하에 정하라’는 권고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니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결국 민원이 나지 않게 몰래몰래) 하라’는 지시뿐이었다. 결국 10대를 ‘정치꾼’이나 ‘운동권’으로 만든 것은 학생 인권 문제에 무책임하게 대응해왔던 당국과 ‘체벌할 권리’를 교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교권은 ‘체벌할 권리’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권리’가 아니다. 학생이 휴대전화 대신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만들려면 교사가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기획해야 한다.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 수업이 학생에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권과 그 수업의 평가권을 교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채 학부모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으므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교사는 두발이나 용의·복장 지도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기 위안을 삼는다. 어른들은 ‘단정하고 학생다운’ 두발과 복장으로 학원에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숨 막히는 입시경쟁 속에 ‘재를 이길 수 있을까? 재가 날 괴롭히면 어떡하지?’ 등의 고민으로 어렵게 드리워진 아이들의 상처를 외면한다. 그래서 걸은 멀쩡해 보이는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왕따를 주동한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머리 길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 채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체벌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들이 어찌 자기보다 약한 아이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도덕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며 쾌재를 불렀다.

‘이제 두발 지도를 안 해도 학생부장이나 교장의 따가운 눈초리에 조금 당당해질 수 있겠구나. 체벌 없이 수업하려면 교육과정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교사가 꾸릴 수 있어야 할 테니,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처럼 체벌 없이 굴러가기 어려운 수업은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학내 집회가 허용되면 아이들이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요구하게 되니, 교사가 대신 풀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두발 검사할 시간에 아이들과 인사 한번 더 할 수 있겠다. 두발 검사 때문에 학교 오기 싫다는 우리 반 ○○를 학교에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겠다. 체벌 없이 수업하려면 학생 참여가 많아져야 할 테니, 활동 수업을 하는 것도 덜 눈치 보이겠지?’

‘간수’ 아닌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는 내가 근무하는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나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내가 두발 검사, 체벌 등 학생 관리 노동에서 벗어나 그 시간에 학생과 마음을 여는 대화, 학생과 함께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학생이라는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에서 배우는 사람과의 소통을 꿈꾸는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서울의 한 중학교 등교 시간 풍경. 복장 검사를 하는 교사와 선도부원들의 눈초리가 매섭다. 학생들에겐 매일같이 반복되는 공포의 순간이다. 한겨레 장철규 기자

임지선 기자, 「2010년 학생도 사람 선언!- 눈 오는 날 만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기획단…」, 한겨레21 제794호, 2010. 01. 15.

2010년 학생도 사람 선언!

눈 오는 날 만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기획단..

“악몽을 끝내기 위해” “친구를 가르치는 게 싫어” “어머니가 많이 컸대요”

임지선 기자

오늘도 어김없이 조용한 교정에 ‘뽕뽕’ 소리가 울려 퍼진다. 경기 고양시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는 20여 명의 학생이 일렬로 ‘앞드려뽕쳐’를 하고 있다. 학생주임 선생님은 땀까지 흘려가며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중이다. 그가 손에 쥔 것은 두께 2cm, 길이 1.2m의 오동나무 주걱이다. 주걱은 엉덩이에 맞춤형에 들러붙는다. 얇은 교복 치마와 바지가 허벅지에 휘감기며 살이 부르르 떴다. 가끔은 선생님의 손이 학생 뺨을 때리기도 한다.

7조 2항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선도부장인 김명진(15)군에겐 매일같이 반복되는 악몽 같은 순간이다. 중학교 3학년인 그는 매일 아침 7시 50분부터 ‘감시’를 시작한다. 뒷머리가 셔츠 깃에 닿거나 앞머리가 눈썹을 넘어선 남학생을 잡아내야 한다. 머리가 어깨에 닿는데도 하나로 묶지 않았거나 염색을 한 여학생도 놓쳐선 안 된다. 가슴에 명찰을 차지 않았거나 교복을 줄여 입은 이들도 호출이다. 아무 죄 없는 학생까지 고개를 숙인 채 교문을 들어서며 선도부원의 시선을 피한다. 뭐라도 걸릴까 가슴이 땀다.

선도부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는 심정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로 활약해온 그는 선도부장 활동을 통해 학생 인권 문제를 더 잘 살펴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막상 매일같이 ‘인권침해 가해자’로 살자니 힘들었다. 그는 “인권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친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선도부장으로 살아가니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자살학업을 빼먹었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지시봉으로 110대 맞은 뒤 집에 돌아와 자살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직접적인 학대를 가하는 방식인 체벌은 학생인권 침해의 대표 사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학교에서 공식적인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나서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6년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를 채택하며 “학교, 가정, 사회, 일터 등에서 아동에게 폭력이 만연한 이유는 폭력을 훈육의 한 형태로 관대하게 바라보기 때문”이라며 “아동 폭력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1월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등학교 2학년 김현태군은 “학생인권조례가 흐지부지 끝나지 말고 확실히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겨레21> 류우중 기자

선도부장 일을 하며 괴로워하던 김군은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이 나타났다. 5월 말에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2학기가 되자 관련 홈페이지도 생겼다. 11월 초, 홈페이지에 ‘학생참여기획단’ 모집 공고가 떴다. 그즈음 그는 학생부장 선생님 책상 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송한 ‘체벌 금지 공문’을 발견했다. 공문보다 힘이 센 걸 만들어야 학생주임 선생님의 매질이 멈추리라 어렵듯이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기획단에 참여했다. 모집 공고가 나간 지 일주일 만에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4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지난해 12월17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초안)’은 이렇게 모인 학생참여기획단이 교장·교사·교수·인권단체 활동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와 함께 만든 것이다.

학생참여기획단은 카페(cafe.daum.net/youthhuman)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기획단의 역할은 ‘의견 제시’와 ‘조례 홍보’였다. 자문위원회가 미션을 제안하면 기획단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뤄졌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읽고 소감 쓰기, 우리 학교 인권 점수 매기기, 학생인권조례 기초안 읽고 의견 달기 등의 미션이 ‘의무’이자 ‘권리’였다.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은 한데 모여 자문위원회로 전달됐다.

6조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참여기획단 안에서 학생들이 먼저 발견한 것은 서로의 비슷한 상처였다. 사는 곳과 학교는 달라도 고

민은 닳은꼴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동갑내기 김근영양과 정우미양은 ‘심화반’에 상처를 받아왔다. 경기 안양에 사는 정양은 전교 30등까지 들어가는 심화반 학생이다. 경기 수원에 사는 김양은 전교 40등까지 들어가는 심화반에 들어가지 못했다. 심화반과 평반을 가르는 복도에는 싸늘한 공기만 가득했다.

심화반에 들어가지 못한 김근영양은 얼마 전 심화반에 있는 친구와 싸웠다. 봉사활동에 대한 ‘고급’ 정보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 등이 심화반 게시판에 먼저 걸리는 것이 못마땅했는데, 수학 보충수업 교재까지 다른 것을 확인하니 화가 났다. 심화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자 친구는 “나는 뭐 좋아서 있는 줄 아느냐”며 화를 냈다.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둘 다 울어버렸다. 심화반 때문에 괴로운 건 마찬가지였다.

김양의 꿈은 간호사다. 원래는 의사였다. 아직 수능까지 1년이 남았지만 의대는 꿈꾸지 않는다. 심화반에 들지 못한 채 살았던 지난 1년은 그에게 체념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도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성적 차별은 계속될 것 같아요” 김양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정우미양은 “1년 동안 심화반 학생으로서 다른 친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순간에 특권을 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심화반은 다른 반보다 모든 면에서 쾌적했고 수업의 깊이도 달랐다. 그러나 복도에 나가면 늘 평반 학생들의 기분 나쁜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게다가 심화반이라는 이유로 선생님들은 학생 관리를 더 철저하게 했다. 심화반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한번 빠지려면 ‘담임·담당·학생부장’ 3명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담임 선생님의 허락만 있으면 아자를 빠질 수 있는 평반에 비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너네는 심화반이잖아”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다음 학기부터 심화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생님한테 말한 상태다. “솔직히 심화반에 있는 아이들도 괴로워해요 다들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모여 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상처만 받고, 누구를 위한 심화반인지 모르겠어요”



»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체벌 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내 집회의 자유 보장, 야간자율학습 강제 금지, 두발 자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인일보 제공

18조 3항 학교는 학생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자치권에도 목말랐다.

얼마 전 경기 파주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장혜린(16)양은 큰맘 먹고 학교 선생님께서 따져 물었다. “선생님, 0교시 참가신청서 받으면 뭐해요? 어차피 전부 강제로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의 질문에 선생님은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았다. 다른 선생님을 잡고 다시 물었다. 그 선생님은 “대학 가고 싶으면 잠자코 따라오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0교시는 강행됐다. 정시에 온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고, 지각한 학생들은 매를 맞는 악순환 속에서도 0교시는 유지됐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일지

2009년

7월3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협의회
9월25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 및 6차 협의회
9월28일	위탁연구용역 계약 체결(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10월6~20일	중·고교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연수 실시
10월26일~	학생인권조례제정 학생 작품 공모전 실시
11월5일	
10월28일~	학생인권조례제정 사전협의회(용인·의정부·고양·
11월3일	수원·안산·안양·과천)
11월2~13일	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기획단 모집
11월16일	학생참여기획단 명단 발표
11월2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중간발표회 및 일본 가와사키 인권조례 제정팀과의 협의회
11월26일	시민사회 및 특수집단 사전협의회
12월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2010년(예정)

1월19일	교육학계 및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 공청회
1월20~23일	교사·학부모 의견 수렴 공청회
1월24일	학생 의견 수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11차 협의회
2월1일	교육감에 학생인권조례 최종안 제출
2월 초순	경기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정식 제출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일지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자신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가 변화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은 학교에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자율과 책임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치권도 자율권도 초라하다. 장양의 학교는 방학 중에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의 보충수업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의 자율학습을 실시했다. 학원에 다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참석해야 한다. 그나마 학기 중에는 실시되던 급식이 방학 중에는 없다. 매점도 문을 열지 않는다. 학생들은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나 김밥으로 한 끼를 때운다. 이것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학급 반장인 장양은 0교시와 보충수업 문제에 대해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쪽에 전달하고 싶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학생회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 오래다.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반장을 계속하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반장이라면 무엇 때문에 존재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에서 학생 자치권을 보장해주길 열망했다.

12조 1항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된 뒤 논란의 초점은 △체벌 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내 집회의 자유 보장 △야간자율학습 강제 금지 △두발 자유 등에 맞춰지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주제는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논란이 많은 항목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조례 초안은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두발의 길이만을 명시해 아쉽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의 고등학교 2학년 김유라(17)양은 학교의 복장 검사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하루는 교문을 들어서는데 머리를 제대로 안 말리고 왔다고 한 친구를 잡아내는 거예요 스타킹을 안 신고 온 친구도 벌점을 받았고요” 이상한 마음에 교칙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머리를 말리고 등교해야 한다거나 교복에는 스타킹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그는 “모호한 두발·복장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마구 벌점을 주고 체벌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칙을 만드는 데 학생이 참여할 수 없으니 분통을 터트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 월요일에 국민교육헌장 낭독과 국기에 대한 맹세로 시작하는 애국조회, 학교와 거리에서의 두발 단속 등은 국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훈육하는 병영국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장발 단속이 횡행하던 1970년대 길거리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리던 풍경은 2010년에도 교문에서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두발 제한은 한국 인권침해의 오랜 숙제다.

지난 2008년 2월, 경기 광명시의 한 기숙고등학교 옥상에서 수백 개의 종이비행기가 날아올랐다.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 등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학생 200명의 시위였다. 종이비행기에는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닌 용감한 저항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학교는 교내 방송을 통해 두발 제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알렸다. 경기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시위’로 손

뽑히지만, 당시 학부모와 교사들은 “징계받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집회결사권을 보장한 내용은 보수 언론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다.

17조 2항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수 언론의 공세는 노골적이다. 초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19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전교조, 김상곤 교육감을 묘하게 엮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투표 당시 42만2302표(40.81%)를 얻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장·교감·교사 등은 모두 전교조가 아닌 교총 소속이다.

지난해 12월25일 <조선일보>는 보수 학부모 단체로 알려진 ‘좋은 학교 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 등이 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연 것을 ‘학생인권조례로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 만들 셈인가’란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세간의 뜨거운 관심에 학생들은 어안이 병병하다. 학생참여기획단 카페에는 “이해할 수 없다. ‘학생 인권, 두발 자율화, 체벌 금지’라는 말에 조례안은 읽어보지도 않고 ‘뭘 소리야 학생은 무조건 공부자’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지? 정치적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가 죽으세요”(comora)라는 격앙된 글까지 뿜다. 학생참여기획단에서 활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박성용군은 “이번 인권조례가 교권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어른들의 시각을 극복하는게 가장 시급하다”며 “학생들을 아직 정신적·신체적 미성숙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회의 자유와 인권을 주는 것에 교사들의 지도권이 약해진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모든 사람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데, 여기에 학생은 빠져있다”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도 학교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할 경우 평화적인 집회를 열어 의견을 개진하는 일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경험이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생각은 어른들보다 이미 한참 앞서 나가고 있다. 심화반이 고민이었던 정우미양은 “조례 초안에 5명의 인권옹호관을 둔다는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 학생 수를 생각할 때 고작 5명이 학생들을 위한 실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가정 학생, 장애 학생 등의 인권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조항을 요구했다. 그는 “조례를 만드는 데 참여해보니 ‘현실의 벽’과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을 느끼게 됐다”며 “조례가 당장 제정되지 못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0조 2항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박성용군은 0교시 직후 친구들이 모두 엎드려 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만들어 10월 말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제정 학생 작품 공모전에 출품했다. 상은 못 땀지만 작품

을 준비하면서 학생 인권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심화반 수업을 강요하지 않고 강제 야간 자율학습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까지 내놨지만, 일선 학교의 강제 야간수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요한 학교는 신고를 받은 인권옹호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박군은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했다. 경기도 내 9개 지역별로 학생·학부모·교사·관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학

생인권조례제정 사전협의회’에 지난해 10월 말 어머니 이종희(52)씨와 함께 참석한 것이다. 어머니 이씨는 보수적인 편이다. 집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구독하는데 <조선일보>는 부모가, <한겨레>는 아들이 주로 본다. 2008년 아들이 촛불집회에 간다고 할 때도 위험하다며 말렸던 이씨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도 탐탁지 않다. <조선일보>는 조례가 아이들을 ‘정치꾼’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들이 정치적 문제에 휩쓸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는 학부모 사전협의회에 참석해 “체벌 금지는 찬성하지만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학내 집회 허기는 어린 학생들에게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아들은 사전협의회에서 “현재 두발과 복장을 규제함으로써 개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율학습은 자율이 아니며, 집회 금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집에 오는 길, 아들은 어머니에게 “지금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논쟁이 오고 간 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다. “네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제 보니 많이 컸구나.” 어머니는 조금씩 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후 모자는 함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토론도 자주 한다. 그 자체가 모자에게는 큰 변화다.

1조 이 조례는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인권조례제정 학생 작품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미술작품들. 영상물, 글짓기, 미술 작품 등 총 3개 분야에 걸친 공모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각 학교의 자율적인 교칙에 맡겨도 될 것을 왜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려는 것일까? 자문위원회는 그 이유를 “수사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더라도 고문·불공정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기준’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한다. 학생 인권이 계속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모든 학교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이 되어 줄 것이다.

2010년 1월, 한국의 학생 인권은 기로에 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선 첫 학생인권조례가 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확률은 희박하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청이 낸 예산안과 법안 등이 지나가는 길목을 틀어막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30일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급식 지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건 등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교육청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특위는 조사 한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장은 “20년 전 ‘교사도 노동자’라고 외칠 때와, 2010년 ‘학생도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가시밭길을 내다보며 하는 말이다. 동시에 가시밭길 끝에 이르러 당연히 쟁취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해주는 말이다.

눈 내린 운동장이 새하얗다. 학생들이 뛰어다니며 눈싸움을 한다. 하늘에서 내린 눈은 평등하게 아이들 어깨에, 발등에 와닿는다.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장애, 용모, 임신 여부, 성적 등에 관계없이 머리 위에 내린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학생들의 외침은 어느새 눈처럼 소복히 쌓이고 있다.

비교되는 서울시교육청

직영 급식 전국 최저,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간 걸어온 길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난 1월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 34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직영 급식으로의 전환을 규정한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는 데 오히려 선봉에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직영 급식 전환을 주장해온 기존 위원들을 배제하고 위탁 급식을 옹호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다시 꾸렸다. 1월8일 소집한 첫 회의의 안건은 학교 급식 여건상 직영 급식 전환이 불가피한 사유를 심의하는 것이었다. 운

동본부 쪽은 “결국 직영 급식 전환을 미루는 학교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며 “불법 행위를 한 학교장과 교육청을 오는 1월20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월19일은 2006년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면서 직영 급식 전환 유예기간으로 설정한 3년이 끝나는 날이다.

이미 전국 90.3%의 초·중·고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했는데 유독 서울만 직영 비율이 55%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다. 현재 위탁 급식을 운영하는 서울 시내 학교 565곳 중 지난해까지 교육청에 직영 급식 전환 계획을 밝힌 학교는 57곳뿐이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해 직영 급식을 학생의 권리로 못박으려는 경기도교육청의 행보와 정반대의 분위기다. 2010년 1월8일 현재 경기도내 초·중·고교 2100곳 중 96.9%가 직영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일제고사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자세도 판판이다. 학업성취도평가 등 일제고사 확대를 외쳐온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이는 곧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행정법원은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7명의 교사가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억압하고 학생들을 단편적 기준으로 서열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교사들이 이해하고 서울처럼 반대행동에 많이 나서지 않았다”며 “일제고사에 반대한 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경징계를 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유보했다.

2008년 7월30일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 공정택 교육감을 뽑은 서울시민들은 그가 역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고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현재는 김경희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2010. 01. 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10년 1월 1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저희 자문위가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고 보완 지점을 짚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희 자문위는 초안에 대한 관심과 논쟁 덕분에 우리 사회가 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위원회는 1월에 예정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 경기도 교육위·의회와의 간담회, 서면·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하여 최종안을 만들어 김상곤 교육감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자문위가 마련한 초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잘못 부풀려진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은 저희 자문위가 가진 부동(不動)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향후 조례안을 둘러싸고 진행될 논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발표하는 것입니다.

1.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인권 보장은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인권은 응급환자에게만 공급하는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흡입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권 보장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애당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현실세계에서는 언제나 늦게 시작해서 더디게 진행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 그동안 학교 현장에는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왔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어린 학생들의 외침이 우리 어른들의 심장을 두드린 지도

오래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옹당 보장했어야 할 권리를 한참이나 뒤늦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요구가 없더라도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인 만큼, 모든 교육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권에 관한 한 학생도 교사도 관리자도 보호자도 모두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성숙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성장할 기회에 초대받고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인권 보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준비가 부족한 학교현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준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학생인권조례는 반(反)교육이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국제사회는 유네스코‘교육차별금지협약’, 유엔이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교육이 인권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친화적 교육이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교육 △질 좋은 교육, 그리고 △학생이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학생의 관심과 소질, 성숙 정도 등에 따라 교육적 자극이 주어져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교육은 폭력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설계하지는 제안이지, 교육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요소들을 거둬내고자 합니다.**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교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지 않을 때 어떻게 창조적인 학습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의 삶에 대한 보살핌이 있는 학교, 참여를 통한 변화를 성취하는 경험이 제공되는 학교,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열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자 교육구성원 모두가 염원하는 학교의 상이기도 합니다.

-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주어질 때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방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부당한 통제나 일방적인 지시를 거둬낸 자리에는 대화와 소통이 쉼튼게 마련입니다.**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소통의 과정은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글로벌 창의 인재’는 ‘글로벌 창의 교육’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창의 교육의 초석은 자율성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자율과 확일에 길들여진 학생들을 자율과 다양성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지도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한 교권 행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면 폭력과 강제, 차별에 기댄 교권 행사와는 **단호히 결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부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권 행사로 교사 전체의 자긍심과 권위가 깃뻛힌 사례들을 여러 차례 목도해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불미스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교권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자의성(恣意性)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당한 기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개인의 인격에 내맡겨둘 수 없기에, 사회에 법이 필요하듯 학교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지도가 정당한 기준에 충실하게 행사될 때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방식으로 21세기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할 때 엇갈림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욕적인 처벌이나 강요가 학생들의 반감을 사는 것도 당연합니다. **교사의 지도나 교권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사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교육적 만남과 지도 방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교사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히 ‘No!’라고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위협에 빠뜨리는 학생이 있다면 마땅히 제지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지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힘이 행사되거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살핌이 자의적으로 철회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 부적응이든 공격성 증진이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을 살펴 고 대처방안을 기획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창조적 역량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 교사들이 학생들 머리나 치마 길이를 재러 다니느라 바쁘고, 학생들에게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아내야 간지울학습에 남게 하고, 과반수 이상이 엎드려 자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교권 추락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창조적 역량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정당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요청됩니다.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 누군가 불공정거래 규제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음주

운전이나 과속규제가 운전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기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두 법 모두 학교와 학교의 교육과정,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 법규를 학교현장에서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한 하위규범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 상위 법규도 부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화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학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상위 법규와 그 법규에 따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5. 몇 가지 쟁점 조항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총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빚어진 논란의 대상은 일부 조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우려만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과 조례 제정을 회구해온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가혹하게 들립니다. 더불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우려도 부풀려진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두발 길이 자유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두발의 전면 자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두발 길이 제한만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12조 1항). 또한 그 밖의 두발 제한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2조 2항). 그동안 두발단속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만만 끊어올랐던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술하게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두발 지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학생들이 그 규정의 존재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엄격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따르느라 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도 그 규정을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그 바람에 교사의 권위도 서지 못했습니다.

- 두발 제한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두발에 오히려 집중됩니다. 두발 단속을 피하느라 등교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머리를 자르느라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두발 제한이 오히려 면학 분위기를 흐뜨려온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두발을 풀어주면 탈선이 늘어날

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불이 났기에 연기가 나는 것인데도 ‘연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진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복장 자율에 대하여

- 지문위 초안은 교복, 양말, 신발 등 복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이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학생 참여 등 민주적 절차를 밟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12조). 이는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상당수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교복 착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구성원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교복 착용을 단위 학교별로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양말 색깔, 신발 모양, 교복 바깥에 입는 외의의 착용 여부나 색깔까지 정해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느라 학생과 보호자는 없는 신발이나 외투를 사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또 여학생의 경우 바지 교복은 입지 못하게 하거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복장규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는 교육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3)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보장에 대하여

- 지문위 초안(17조 2항)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집회장소나 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나 신고절차 규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의 하나입니다. 지문위 초안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뿐이며, 다만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면, 학생은 인간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학생들이 집회를 열게 되면 학교가 혼란에 빠지거나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나친 추측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인 정치 이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발언하거나 행동할 것입니다. 반면, 학내에서 집회를 연다면 학교를 대상으로 할 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내집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여는 것이 우려된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절차가 잘 돌아가면 됩니다.** 지문위 초안이 17조 1항에서 먼저 학생들의 의사 표현권을 보장하고, 뒤이어 2항에서 학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항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2항의 권리를 학생들이 굳이 꺼내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 학내 집회 자유 보장으로 학생들이 ‘정치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정치를 정규 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정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나의 정치적 공간입니다. 더구나 학생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것이 ‘정치화’라는 딱지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4) 반성문 강요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에게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16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생각을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갖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교육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몇몇 학교에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진술서가 아니라 교사가 불러주는 대로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학생·보호자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바로 이런 불합리하고 반교육적인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과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이 조항은 결코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성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반성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만드는 행위, 학생의 자기 성찰과 교사와의 교육적 소통은 사라진 채 억지로 쓰인 ‘반성문’만이 교육이 이루어진 증거인 양 남아 행세하는 비교육적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5)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10조 1항)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교육당국이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원하는 학생은 남아서 공부할 수 있고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실제로 ‘동의’한 것도 아닌데 동의한 것처럼 일괄 동의를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비교육적인 일입니다. 이런 기만을 목격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정규교과 외 학습을 강요당할 때 학습 효율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 체벌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체벌이 금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도 포함됩니다.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상해나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교육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체벌을 교육이라고 우기는 일은 없습니다.

-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체벌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몽둥이나 손찌검, 발길질을 행하는 일부 교사의 자의(恣意)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에 대해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교사들도 상담이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될 때 체벌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폭력의 가장 무서운 효과는 그 폭력이 내재화되고 악순환 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출선수범하여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 학생 간 폭력을 예방, 근절하려는 교육적 지도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폰의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13조 4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지는 보장하되 수업시간 중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 휴대폰은 이미 대다수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호신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갈등이 불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휴대폰을 압수했을 경우 그 보관 기간과 돌려주는 방식도 해당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8)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에게 학교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20조 1항)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타인과의 소통 및 조율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유엔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바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의 참여를 가로막음으로써 성숙의 기회를 차단해온 기존 학교 모델’로부터 ‘학생의 참여를 통해 성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한에 걸맞게 깊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학생이 있더라도 권한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정신 아닐까요.

6.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념 공세에 대하여

- 마지막으로 저희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좌파 교육’이라거나 ‘운동권 주장’이라거나 특정 단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거나 하는 이념 딱지를 붙이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좌파나 운동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의 기준으로 합의하여 인류의 양식이 된 ‘인권’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맹비난하는 것은 인권의 반대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자문위는 특정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인권전문가와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복무해온 교장·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위 전체의 명예를 걸고 단호히 부정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 공약이었고, 김 교육감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30일 자문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가운데 조례 초안을 합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주민 직선 교육감이 공약을 이행한 것을 두고 재선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경기도민의 박수를 받아 교육감이 재선에 이른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 지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잘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표를 보낸 주민들의 선택을 ‘포폴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저희 자문위는 부당한 억측이나 이념 공세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이 잘못 흐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델을 고민하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1.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박상규·유성호 기자, 『"21세기 경쟁력은 머리털이 아니라 머릿속" [현장]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 보수단체·학생·교사·학부모 토론』, 오마이뉴스, 2010. 01. 20.

"21세기 경쟁력은 머리털이 아니라 머릿속"

[현장]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 보수단체·학생·교사·학부모 토론

박상규(comune)·유성호(hoyah35)

"어디까지나 학생들은 미성숙의 인격체이므로 사회 또는 학교, 가정에서 보호받고 훈육·지도돼야 할 대상이다." - 윤완 경기교총 정책위원장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대신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학생들은 아직 자아가 미성숙한 배움의 단계에 있는데 정책결정 참여 등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했으면 한다." - 노정근 대한교조 위원장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 공청회'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19일 오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강조했던 내용이다. 여기서 쉬운 질문 한 가지. 위 세 관계자의 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단어는?

'미성숙.'

이들이 청소년과 청소년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이 세 글자로 요약된다.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은

훈육·지도의 대상이고,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그 자체만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인권조례는 너무 과한 혜택(?)이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인권은 시기상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박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국경없는 교육가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유성상 한국외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고, 고교생·학부모·교사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시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어차피 8명의 토론자는 사이좋게 4명씩 학생인권조례 찬반으로 안배됐다. 그렇다면 가장 흥미로운 건 청중들의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 2시간여의 발제와 토론이 끝난 뒤 이어진 자유로운 청중 토론 시간.

드디어 진정한 '토론의 향연'과 청소년 인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다. 흡사 2008년 촛불정국의 초기, 활발한 광장 문화를 이끌던 '촛불소녀'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점령한 듯했다. 주요 비판의 대상은 바로 저위의 세 글자, '미성숙이었다. 포문은 이제 곧 초등학생 학부모가 되는 안병주(38)씨가 열었다.

"8살 아들이 곧 학교에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시험 못 보면 학교에서 혼난데'라는 말을 한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도 우리나라 학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도 자살하는 게 바로 우리 교육 현실이다. 여러 토론자들은 '미성숙한 청소년'이라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의 살벌한 교육제도를 만든 건 바로 여러분들 같은 '성숙한 어른들'이다."

간명한 말에 박수가 터졌다.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청중을 자극했다. 이번엔 한 여성이 나섰다.

"초등학생도 자살하는 교육제도, '성숙한 어른들'이 만들었다"

그녀는 "'미성숙'은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하고, 미성숙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짓눌러서는 안 된다"며 "설령 아이들이 미성숙하더라도 마음대로 위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어른들에게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유경 분당정보산업고 회장은 "토론자들이 참 '미성숙'이라는 말을 많이 거론했는데, 도대체 미성숙의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기준은 무엇이냐"며 "나이만 많으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24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며 10년 동안 학생부에 있었고 4년을 학생부장으로 일한 한 교사는 이런 화두를 던졌다.

"저는 학생시절 천부인권사상을 주장한 철학자의 이름을 대답하지 못해 선생님에게 맞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권교육현실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처벌금지 조항이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묻고, 모르는 학생들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머리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단속을 해도 아이들은 그 이유를 납득 못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학교 문화는 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권한을 돌려줍니다. 그래야 어른들의 권위가 쉽니다."

이어 이 교사는 "21세기 진정한 경쟁력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온다"며 "학생들의 긴 머리가 보기 안 좋으면 이제 어른들의 눈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머리털이 아닌 머릿속이 중요... 학생들 권한 돌려줘야, 어른들 권위 선다"

또 일제교사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윤여강 교사는 이날 끝까지 공청회를 지켜보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윤 교사는 "20여 년 교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의견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도 할 줄 모르는 교장, 교감, 교육감을 많이 봤다"며 "존중의 기본은 상대방을 믿는 것이다, 학생들 의견을 듣고 존중해주면 그들은 어른들보다 잘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고등학생은 "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을 하는 이유로 '머리 말릴 시간에 공부하라고 말한다'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지적은 교사-학생의 신뢰만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청중들의 토론과 지적을 모두 들은 뒤 뉴라이트 학부모 연합의 강대신씨는 "뜻깊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며 "하지만 오늘 들은 견해가 이 나라 대다수 학생들의 견해가 아니길 바란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인물은 바로 토론자로 나선 고등학교 2학년 이재연 학생이었다. 이 학생이 발표한 토론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때린다는 것, 그 자체가 실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 공청회'에서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것이고 일종의 고문입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때리는 교사들은 때려주는 걸 감사히 여기라는 식의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중략) 이렇게 학교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학생이 신고를 할라치면 어른들은 한탄합니다. '교권이 바닥을 치네' '요즘 애들은 대체 왜 이렇게 싸가지 없냐'라고 하지만 이런 체벌들은 선후배, 학생들 간의 폭력적 관계 형성에 모범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오는 24일과 25일도 도교육청과 의정부에서 각각 열린다.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에서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기고]학생 인권, 활짝 피어나라

장혜옥 | ‘학벌없는 사회’ 공동대표



교육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 ‘인권’을 소중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시작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켜낼 천부적인 권리다. 또한, 한 인간이 자유로운 주체로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다.

과연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인간인가? 지나가는 두 사람을 보고 “저기 학생과 사람이 간다”라는 말을 무심코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생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학생’이다. 오직 공부만을 위해 살

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인생이란 유예된 어떤 것일 뿐이다. 명령하면 듣고, 때리면 맞고, 하리는 대로 해야 하고, 머리 모양에서 신발까지, 태도에서 마음까지 규율에 간혀야 한다.

이 땅의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인격도 인생도 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스펙을 쌓기 위해 저당 잡힌 나날을 성적과 등수, 공부와 경쟁에 짓눌려 살면서 불안한 미래를 불안하게 꿈꾸고 있을 뿐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뭘 알아.’ 드디어 1990년 5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인간으로 대접하며 청소년 현장을 제정했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었고, 미성숙한 존재로서 성인의 보호와 지도 아래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본분이었다.

그러한 인식의 한계를 깨닫고 98년 재개정된 청소년 현장의 명제는 무척 고무적이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호명하며, 드디어 바람직하고 정당한 청소년 인권을 선언하게 된다. 하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80년대에 머물러 있고, 학생에 대한 시각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 가혹하다. 학생은 공부를 위해 모든 인격과 삶을 버려야 하는 존재다. 학생에게 공부 이외의 모든 생각은 잡념이기에, 공부의 신 또는 노예로 살아가야만 비로

소 인간으로 대접받는다.

진정 학생들은 인간이 아닌가? 왜 우리 학생들만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생들의 고통과 억압의 현실을 성찰하며, 학생들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기로 한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참으로 놀라운 성과다. 인권 마인드가 부족한 어른들이 온갖 걱정을 60년대식으로 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학생들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이 하는 노력은 타 시·도 교육청을 각성케 할 것이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인권 조례 내용과 실천으로 진화할 것이라 기대한다.

존중받은 학생이 남을 존중하는 존엄한 사람이 되고, 자유로운 학생이 자유로운 발상으로 세상을 발전시키며,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이 참된 경쟁력을 갖춘다. 그렇게 교육하고자 만든 것이 학생 인권 조례안일 것이다. 2010년 새해에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학생 인권’이 소중한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나, 전국 모든 학교에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인권의 꽃이 활짝활짝 피어나길 바란다.

허환주 기자, 「"생머리는 '모범 엄마', 파마머리는 '불량 엄마'입니까?" [현장]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청회...청 소년이 말하는 인권 실상」, 프레시안, 2010. 01. 25.

"생머리는 '모범 엄마', 파마머리는 '불량 엄마'입니까?"

[현장]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청회...청소년이 말하는 인권 실상

"우리는 사람입니다. 개·돼지가 아닙니다. 감정과 이성을 가진 우리가 왜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 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맞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체벌을 해야만 학교가 바로 선다는 건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변명일 뿐입니다." (김명진 화정중학교 3학년)

"두발 자유화가 이뤄진다면 학생들의 탈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중범죄는 10대보다 30, 40대가 월등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40대를 대상으로 두발 규제를 실시해야 타당한 것 아닐까요?" (김효경 분당정보산업고등학생)

지난 12월 17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이 발표된 뒤 일부 교육, 시민 단체와 언론 등에서는 조례가 통과될 시 "학교가 붕괴되고 교권이 무너져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된다"며 강한 반발을 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반응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준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공청회가 24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인권조례에 적용을 받는 경기도 지역 청소년 6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조례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머리 한 엄마는 모범 엄마고, 파마 한 엄마는 '날라리' 엄마인가"

고양시에 위치한 화정중학교를 다니는 김명진 군은 "학생인권조례 12조 두발복장규제가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는 두발 복장을 자유화하면 학생들이 탈선할 가능성이 많고 학습 등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학생의 머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이기에 두발 규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군은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생머리를 한 엄마는 모범 엄마이고 파마를 한 엄마는 '날라리' 엄마입니까. 어른들은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한 것으로 모범 엄마, '날라리' 엄마를 가르치 않으면서 왜 학생들에게는 그런 잣대로 모범생과 '날라리'를

갈라놓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학생들은 머리를 제멋대로 하고 복장을 제멋대로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김명진 군은 "이러한 주장들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어른들의 관점에서 좋지 않다고 해서 두발 복장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두발 복장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부터 먼저 머리카락을 귀 밑으로 자르고 파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효경 양도 거들었다. 김효경 양은 "머리카락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불편할 때가 있다"며 "뭉을 수도 없는 짧은 길이 덕분에 오히려 더 머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경 양은 "또 강제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학교에 반감이 생겨 오히려 학습 동기가 감소되기도 한다"며 주위 학우의 상황도 전달했다.

김효경 양은 "학교는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주체성을 키우며 인격도 배우는 곳이라고 사회에서는 강조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효경 양은 "자신의 머리 모양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학교가 대신 결정해주는 상황이 지금의 학교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체성을 키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성군 군은 교복 자율화와 관련해서 "1982년에 시행된 교복 자율화 조치가 실패했다며 이번에도 안 된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2010년으로, 지금은 예전과 같이 않다. 학생들을 믿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체벌이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수단으로 오남용"

체벌에 관해서도 학생들의 발언은 이어졌다. 이들은 현재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학내 체벌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원 메탄고에 재학 중인 홍석진 군은 "현 교육 실태를 봤을 때, 교사의 매는 훈육보다는 학생 통제의 수단이 더 크다"며 "선생님들은 한 반에 30~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좀 더 편하게 수업에 임하려고 결국 매를 든다"고 평했다.



▲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남양주청학교 1학년생 한소영 양이 인권조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프레시안

홍석진 군은 "이러한 차별은 일시적으로 수업하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러한 편익주의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에서 목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군은 "차별은 교육 현장에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 교육 현장에서 차별은 최선의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석진 군은 "문제는 차별로 인해 아픈 건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린 마음"이라며 "우리의 자유와 인권도 매질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군은 "학생들이 맞아서 정신을 차리고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교실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면, 가끔 우리가 사육장의 동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폭력의 악순환이었다. 홍석진 군은 "우리는 이미 악순환 된 폭력의 희생자이고 10년, 20년 뒤 악순환의 주도자가 될 지도 모른다"며 "꼭 차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성과 사랑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경 양은 "우리가 선생님에게 차별을 받는 경우는 성적과 태도에 관해서"라며 "선생님이 차별을 가할 경우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과연 그에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효경 양은 "차별로 인해 성적이 오르고 차별로 인해 사람의 성품이 옳아 진다면 세상에 전교 꼴등은 왜 있는 것이며 범죄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양시에 위치한 대화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재윤 양은 교육의 가치를 들어 차별을 반대했다. 신재윤 양은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이라고 배웠다"며 "하지만 차별과 같은 행위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윤 양은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이란 가면으로 차별과 같은 반인륜적인 폭행을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누르듯이 자행하고 있다"이라며 "말로 안 되면 맞아야지는 틀린 말이다. 교사는 학생이 말을 듣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숙한 분들이 모인 사회는 왜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가"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일부 언론과 교육 단체에서 "학생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효경 양은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면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성숙한 존재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비롯한 성인들, 즉 어른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궁금한 점은 그렇게 성숙한 분들이 모인 사회는 왜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고, 폭행과 비리 등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효경 양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인권조례 안은 미성숙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재윤 양은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미성숙하다고 쉽게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신 양은 "인권이라는 개념에는 모두가 인간이라는 기준 아래 평등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사람은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어른도,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신재윤 양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도 "교육은 절대로 주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재윤 양은 "교육에 있어 선생님의 역할은 억압과 강요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교육의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교권을 침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함을 나타냈다.

신재윤 양은 "물론 그들이 말하는 교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안다"며 "하지만 그 교권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양은 "그 어디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폭행할 권리나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통해 그 학생의 존엄성을 훼손할 권리를 보장해놓은 법 조항은 없다"며 "그들이 말하는 '교권'은 결국 교사들의 욕심이자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윤 양은 "학교에서무조건 학생들을 때리고 막말을 해가면서 가르쳐야 학생들이 말을 듣는다"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말 한마디에 쉽게 수긍하고 행동을 고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5일 마지막 공청회인 3차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 인권조례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공청회에는 인권조례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대거 몰렸다. ©프레시안

배경내, 「[학교와 인권] 통제가 멈춘 곳에서 비로소 교육은 시작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갖는 의미」, 『교회와 인권』,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 01. 27.

[학교와 인권] 통제가 멈춘 곳에서 비로소 교육은 시작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갖는 의미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2009년이 저물어갈 무렵,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당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12월 17일 구체적 윤곽이 제시됐다. 조례안이 발표되자마자, 보수 언론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학생인권조례는 반(反)교육이다’, ‘좌빨 교육감이 학교를 운동권 합숙소로 만들려 한다’, ‘교육 황폐화 우려된다’, ‘좌빨 교육감의 재선용 작품이다’ 등 과장된 우려와 이념 공세를 쏟아 붓기 시작했다. 자유교원조합과 같은 보수적인 교사단체와 실체도 확인하기 힘든 학부모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철회하라며 독기 품은 언사들을 뱉어댔다. 이는 ‘진보 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상곤 교육감이 하는 일이면 물어뜯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의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닥쳐올 변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 두려움의 실체,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녕 제정되어야 할 이유이고 필자가 서울과 수원을 수차례 오가며 조례 제정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담았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례안은 학생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학생인권의 현실이라는 숨결을 불어넣어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학생 지도 방식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술한 갈등과 논란이 있어왔다. 인권단체들의 새로운 기준 제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몇몇 결정문이 존재해 왔지만 공식적이고 통합된 학생인권 기준이 없다 보니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했다. 일기장, 문자메시지 등 학생의 사적 표현물에 대한 교사의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강제이발이 문제인가 아니면 두발규제 자체가 인권침해인가, 서약서와 반성문을 받아 내는 일은 정당한 교육행위인가 양심의 자유 침해인가, 학교 안에서도 학생은 집회를 열 수 있나, 학생은 언

제 어디에서 휴대폰을 소지·사용할 수 있나, 학생회에 교사가 함께하는 것은 검열인가 지원인가, 학생 징계는 어떤 목적과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 술한 쟁점들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 조례라면, 힘있는 자들의 해석에 휘둘러온 학생인권 현실을 움직일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적, 공식적으로 밝히는 규범 구실을 맡게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교육적 효과를 담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례안은 학생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실천계획 수립, 인권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단번에 학교현장에서 사라질 리는 없다. 오랜 기간 무풍지대로 버텨온 학교 안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과 의식 변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은 학생인권 구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고 그 옹호관의 권한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권리를 회복할 수단과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헛된 선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약자인 학생들이 믿고 기댈 만한 마땅한 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학교 안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학교 재량’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서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나마 기대할 만한 기구였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문턱이 그리 낮지 않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에게 좀더 가까운 구제기구로 자리잡아 조례가 제시한 학생인권 기준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인권조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나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자, ‘학생인권 vs. 교육’이라는 황당한 대립구도로 조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줄을 이었다. ‘좌빨 교육감의 학교 장악 시도’라는 모함에서부터 해묵은 시기상조론, 학교 자율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논리, 미성숙한 학생들에 대한 포퓰리즘적 선동질이라는 맹비난도 쏟아졌다. 말도 안 되는 공세들에 일일이 반응해야 하나, 학생인권을 둘러싼 쟁점이 여전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맹비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가 맡게 될 역할을 내다볼 수 있기도 하다. 겉으로는 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존 질서의 붕괴이지 교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보수 언론과 단체들이 지켜내고 싶은 것은 시민을 길러내는 공(公)교육의 전당이 아니라, 사적(私的) 왕국에 순종할 신민 양성소로서의 학교다. 모든 학생을 고루 지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가혹한 경쟁시스템 안에 학생들을 집어넣고 될성부른 떡잎만 쉼아낼 교육체계가 체신머리도, 효용성도 잃지 않고 돌아가길 원한다. 학교의 진실이 파헤쳐지는 모습, ‘씩수 노란 떡잎들’이 일찌감치 잘려나가지 않고 자유네 참여네 하면서 왈왈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유의 공기를 흡입한 학생들이 정말로 성숙해질까봐,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통제와 폭력에 교육이라는 권위를 부여해줄 독점적인 권력이 무너질까 두려운 것이

다.

학생을 권리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학교, 학생이 육체적·정서적·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이 제공되는 학교, 다양성을 교육의 초석으로 받아들이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학교,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줄 아는 학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밑바탕 철학으로 삼았던 학교의 모델이다. 동료이자 벗인 한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바탕을 둔 철학을 접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고백한다. 그런 교육이 아니라면 어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렇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이라면 응당 품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일 뿐임은,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임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면 교권보호조례도 함께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교사단체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놓고 반감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불편해하는 교사들, 학생인권이 학생들을 망칠까 조심스러워하는 성인들도 많다. 그러나 교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고 교육적 권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필수적이다. ‘몽둥이’를 내려놓는 순간, 교사는 더 이상 간수가 아니라 교사일 수 있다.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검문과 단속이 사라지는 곳에서, 교육적 만남이 시작된다. 평화를 위장한 ‘침묵의 교육’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소통의 교육’이 시작된다. 그럴 때 학생들 앞에 군림하며 으름장 놓는 교권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을 되살리는데 필요한 교사의 정당한 권리가 국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자유를 행사하고 권한있는 자리로 초대받은 학생들은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어린이·청소년이 학습과정에 있는 ‘예비 시민’으로서만 멈추지 않고 바로 지금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 변화의 계기가 열린다.

조례 제정이 좌초되더라도 의미있는 이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과연 제정될 수 있을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1월 중 세 차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교육감에게 조례안을 건넬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안을 넘겨받은 김상곤 교육감이 조례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 발의하면, 도 교육위원회와 도 의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위와 의회 상황을 감안하면, 김교육감의 무상급식정책에 발목을 잡고 나선 그들의 전력을 보면, 조례안 발표 이후 간간이 터져 나오는 반응을 보더라도 조례가 두 개의 큰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학생인권 얘기만 나오면 미성숙과 보호부터 들먹이는 사회 분위기도 여전하다. 어쩌면 올 6월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되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다른 교육감 후보가 당선된다면, 의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 물갈이된다면, 조례 제정을 어느 정도 기대해볼직 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설령 좌초되더라도 이번 제정 시도가 남긴 결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조례 제정 소식과 더불어 경기도 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학생인권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구석진 자리에서만 울려 퍼졌던 학생인권 보장 목소리가 더 큰 비중으로 환기되었고, 학생인권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거나 침묵해왔던 교육·시민단체들도 어떤 방식이든 입장을 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례제정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학생에 대한 이 사

회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학생참여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의 경기도 학생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하고, 인권에 대한 학습을 거쳐 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제안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학생들이 인권을 가깝게 만나고 자기 삶과 연결시켜 고민하는 계기가 된 만큼, 이미 학교는 변화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있어왔던 학생인권운동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계기였고 앞으로 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의식 있는 한 교육감의 개인 작품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애초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도, 비교적 괜찮은 내용으로 조례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비교적 오랜 기간 ‘학생인권’이라는 불모지를 일구어왔던 인권운동의 결실이다. 학생도 인간이라는 당연한 진실이 외면받는 사회에서, 불이익과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추어진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학생인권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온 학생들과 인권활동가, 교사들이 있었기에 그 축적된 역량이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 집약적으로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에서 제시한 조례안과 그 과정에서 생산된 논거들은 향후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 시도들을 지필 밑불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쩌면 다가올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학생인권에 대한 입장과 정책 제시가 여느 교육감 후보도 비껴갈 수 없는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나아가 향후 치러질 총선,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면 좋겠다. 그만큼 학생인권이 중요한 사회 의제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일 테니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요구가 낳은 당연한 제도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들 웬만하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다. 언론 보도만 수차례 되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이래저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 발을 걸치고 있지만, 내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했던 역할을 소개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나마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것은 학생인권조례 연구용역팀 소속이었다는 것 정도? 그 외에는 뭔가 학생 참여기획단 운영에 참여하고 잡일을 거들었다거나,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한 단체들의 공동 논평을 제안했다거나, 기자회견을 같이 준비했다거나, 내가 속한 청소년인권단체에서의 대응 계획을 짜고 있다거나 등등...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 안쪽과 바깥쪽을 넘나드는 곳에서 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데 일조해왔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나는 웬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업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면 살짝 심사가 꼬인다. 거기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는 김상곤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한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 이유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 해온 사람의 한 명으로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가 축적되어 왔는지를 알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말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학생인권을 요구하며 몇 년, 몇십 년 동안 외쳐온 사람들의 역사와 요구가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기 시작한 그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다. 좁게는 2005년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나 국회에서의 학생인권법안 추진 등과, 넓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대해 내려온 여러 결정들(물론 이 결정이 나오도록 진정을 제기한 학생 당사자들도 중요하다.)과 ‘인권교육센터 들’과 같은 인권단체들이 작업한 학생인권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모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안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

는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초중고등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이다. 그 내용에는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쉼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우선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1/4 정도가 살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한국의 약 1/4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셈이다.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했었으나 아직 나오지 못한 ‘학생인권 지침(가이드라인)’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많은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주장들이 제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세부 항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처럼 공식화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며, 공식적인 규범의 제정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적 효과가 있다.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학생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 사회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 사회적 주체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

력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학생참여기획단 등 몇몇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기도 하다.)

언제까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야 할까?

사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다. 보편적인 인권을 학생들도 보장받게 하기 위해 이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문화일보나 동아일보 등이 열심히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중에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으로 대놓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두발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온갖 권리들 또한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고 공인된 것들이다.

내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적 계산이나 교육적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와 행동의 산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언제까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한국 학교의 인권 현실을 표현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인가?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그리고 학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며 (교육답지도 않은) ‘교육’을 강요하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당연하고도 필요한 것임을, 학교 현장에 가서 인권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필자소개

청소년인권활동가. 고등학생 때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해서 아직도 코가 꺾여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자유언론 <오답 승리의 희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이지만 요즘은 또 건강이 걱정,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임지선 기자, 「반대하던 이들은 어디로 갔나 [보도 그 뒤] 200여 명의 도민들 몰려 ‘공정의 에너지’ 넘쳤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첫 공청회 현장」, 한겨레21 제796호, 2010. 01. 29.

반대하던 이들은 어디로 갔나

[보도 그 뒤] 200여 명의 도민들 몰려 ‘공정의 에너지’ 넘쳤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첫 공청회 현장

지난 1월19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가 열렸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조례 초안을 내놓은 뒤(<한겨레21> 794호 표지이야기 참조) 찬반 의견의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자문위가 준비한 세 차례의 공청회 중 첫 번째 자리였다.



‘학생=미성숙자’ 논리에 학생들 성숙한 답변

관심은 뜨거웠다. 150석 정원인 회의실에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 수십 개의 보조 의자가 동원됐다. 토론자로는 조례 제정 찬성 쪽 패널 4명, 반대 쪽 패널 4명, 학생대표 1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곽노현 자문위원장이 맡았다. 자문위는 조례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지 일부 보수 언론이나 학부모, 교원 단체들이 내놓았던 비판을 모두 짚어보고 갈 작정이다. 곽 위원장은 “반대의 뜻을 밝힌 분들을 전부 모셔서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모습. <한겨레21> 윤운식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 핵심 쟁점 사항은 △체벌 금지 △두발 자유화 △휴대전화 소지 허용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의 자유 등이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윤완 경기도교육청 정책위원장(고현초 교장)은 “학생은 미성숙자로서 ‘교육·훈육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대신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호기심 많고 멧내기 좋아하는 청소년기에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부보다는 외모에 신경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이 ‘성숙한 답변’으로 맞섰다. 학생대표로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이재연양은 “학생인 주제에

무슨 사상의 자유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오히려 가치관이 성립할 시기이기에 주입받고 세뇌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 분당정보산업고 학생회장은 “미성숙의 기준이 뭔가, 나이가 많으면 성숙한 존재인가”라고 물었다. 고등학교 2학년 김도연양은 “학생들은 외모보다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성숙한 어른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이도 있었다. 올해 초등학교 학부모가 될 예정이라는 안병주씨는 “8살 짜리 아이가 ‘아빠, 학교 가면 시험 보고 못 보면 선생님한테 혼난대’라고 하더라. 초등학생도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입시 시스템을 만든 이들이 바로 성숙한 어른들”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인권 신장은 교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노정근 대한민국교원노조(이하 대한교조) 위원장은 “두발·복장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도 없다면 현장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교권에 대한 안전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교조는 지난해 12월21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철회·수정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던 경기 지역 3개 교원노조 중 하나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조례 초안을 만들기 전에 3개 교원단체에 의견을 물어오지 않아 비판했을 뿐 학생 인권을 지켜주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했다.

교직 생활 24년에 학생부 담당만 10년을 했다는 강범식 교사(안양 귀인중)는 “중학생 시절, 인권은 하늘이 준 것이라는 천부인권 사상을 말한 이가 누군지 대답하지 못해 교사에게 매를 맞았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라며 “소모적 학교문화를 버리고 아이들에게 권리를 돌려줘야 어른들 권위도 산다. 21세기에 중요한 것은 머리털보다 머릿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현실을 이야기하던 중 울먹여 공청회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반대 쪽 패널도 “찬반 토론 아닌 토의”

이번 공청회에선 좀처럼 날선 반대 의견을 접하기 어려웠다.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반대하는 쪽을 대표해 참석했던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조차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인권은 찬반이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건 토론보다 토의로 봐야 맞다”고 말했다. 노정근 대한교조 위원장도 “교사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 결국 우리 모두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배경내 자문위원은 “일부 보수 언론이 보수 단체들을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맹공격해 찬반 논쟁을 기대했는데, 정작 반대하던 이들은 공청회에 보이지 않아 반대 여론에 거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그동안 여러 공청회에 참석했지만 이번처럼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공청회는 처음 본다”고 했다. 1월24일과 25일에 걸친 2·3차 공청회가 끝나면 자문위는 2월 초에 최종안을 낼 예정이다.

우리들의 인권조례, 당당하게 목소리 내요

매일 아침, 교문 앞에 선 학주(‘학생 주입’의 줄임말)와 선도부의 눈초리가 무섭다. 잘못된 것 없지만 죄지는 듯한 마음으로 걷는 등갓길. 학생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등교해 학교생활 내내 구속을 받는다. 두발규제부터 야간자율학습, 체벌까지. 문제의식을 느끼는 교사들도 많다. 효자고 심우근 교사는 “왜 교육적이지도 않은 잡다한 규정을 갖고 교사와 학생이 눈을 부라리며 이른 아침부터 맞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단

이런 문제에도 학교와 학부모, 교육위원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개선의 여지가 없던 학생인권 문제에 큰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 포함돼 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그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청이 주관하지만 사안이 ‘학생인권’인 만큼 학생들의 소리가 반영되도록 자문위원회 산하에 총 400명 규모의 학생참여기획단을 꾸린다. 지난달 2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공청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기획단(이하 ‘참여단’)을 만났다.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들의 인권엔 관심이 없죠. 공부에만 바빠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길들여지고 있잖아요” 성남 이우고 손유나(17·사진)양의 말이다. 참여단 소속인 손양은 조례 조항 가운데 ‘집회·결사의 조항’을 예로 들며 “참여단 활동 전에는 학생들도 교내에서 학급시간 외에 집회를 열 수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참여단은 네 가지 미션 형태로 조례 제정에 참여한다. 첫째 미션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읽은 뒤 그 내용

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감을 쓰는 것, 둘째는 인권 관련 기사를 읽은 뒤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학교인권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세번째 미션은 시민단체, 교육전문가들의 설문조사와 연구용역팀의 조사를 배경으로 만든 인권조례 예시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미션은 세 번째 미션 참여단의 의견을 포함한 여러 조사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안에서 수정했으면 좋을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참여단은 강제야자에 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 체벌 금지, 두발규제 금지,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학생의 의견 존중과 표현의 자유 보장, 인권교육 실시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으며 웹자보, 다음 아고라 서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문위는 이달 도교육청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새 학기 시작 전에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참여단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손양은 “그냥 모두가 당하는 일을 똑같이 당했다”며 “특히 어이없게 양말 색깔 때문에 체벌을 당한 일이 있다”고 했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두발도 규제하고, 말 잘 듣도록 체벌을 강화하죠. 하지만 그런다고 공부로 더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항만 더 커지고 사제 사이에 불신만 쌓일 뿐이죠. 또 빈부격차를 부른다는 이유로 비싼 돈 들여가며 교복을 입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디카, 엠펜(MP3), 핸드폰 등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로” 닉네임 ‘공기’로 활동중인 남양주 청학고등학교 한아무개(17)양은 “특히 체벌은 학교가 행하는 가장 비인권적인 행위고, 명확한 경계선과 구분이 없고 오로지 선생의 주관적인 판단만이 있기 때문에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참여기획단에는 400여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학생들을 그리 많지 않다. 손양은 “아직 조례 제정 그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돕고 서명운동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양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역시 학생 인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이 제일 중시돼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주용(휘문고 2년) 박지오(상명대부속중 2년) 정현(School Of Tomorrow 3년)
 <아하!한겨레> 학생수습기자 2기

학생 체벌금지...헌법내 집회 보장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최종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인권조례' 최종안 윤곽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될 예정인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학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며, 수업 시간 외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자문위원회'(자문위·위원장 광노현)는 10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자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12월17일 조례 초안을 발표한 자문위는 이날 논란을 일으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를 담은 초안과 삭제한 수정안 등 두 안을 내어 도 교육감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48개 조항 가운데 17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했다.

자문위는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인정하되 복장은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휴대전화는 수업시간 외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학내 체벌을 금지하고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되며,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이밖에 빈곤·장애 학생들에게 특성에 따른 권리를 보장, 학내에서 따돌림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최종안은 도교육청 자체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조례로 만들어진 뒤 다음달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광노현 자문위 위원장은 "그동안 특히 학생들의 집회의 허용 문제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높았다"며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도록 수정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최종안 주요 내용

- 학내 체벌 금지
- 따돌림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서 자유
- 두발·복장의 자유 (교복 착용은 단위 학교별 결정)
- 휴대전화 소지 허용 (단, 수업시간 규제 가능)
-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 진술 강요 금지
-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 빈곤·장애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른 권리 보장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과 초안 비교

<표> 최종안과 초안의 주요 조항 비교

표제	최종안	초안	비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의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언어”의 예시 포함
폭력으로부터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폭력양태의 구체화
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③ <u>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u>학습곤란을 겪는 학생</u>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습권)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에서의 권리 추가 -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예시 추가
정규교과과외 학습활동	제10조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u>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u>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	제10조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의견 수렴 명시

동	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휴식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u>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u>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u>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u>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권을 ‘휴식을 취할 권리’로 명확하게 표현 - 휴식권의 구체화 - 강요 금지
사생활의 자유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신설
사생활의 비밀	제14조 ④ 학교는 <u>교육비 미납사실</u>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적 정보에 교육비 미납사실 등을 예시로 제시
사상양심종교자유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u>반성, 서약</u>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반성문 자체 허용의 의미 명확화 [A안] - 제1항에서 기본권 확인, 제2항에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구체화, 제3항에서 종교의 자유 구체화 [B안] - 표제 등의 “사상” 삭제 -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른 양심의 개념 표현

	<p>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B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표현의 자유		<p>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학생은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A안] - 권리 규정과 학교 의무 조항 분리 [B안]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 삭제</p>
사회복지권리	<p>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21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누구나 인간다운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 - 상담조력에서 적절한 지원으로 확대</p>
교육	<p>제22조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p>	<p>제22조 ② 학교는 청결한 환경의 유</p>	<p>- 도서, 화장실</p>

환경	<p><u>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지, 적절한 탈의 및 휴게 등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예시 추가 - 학교환경에서 ‘녹지공간 확대’ 예시 추가</p>
징계 등 에서 권리	<p>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③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p>	<p>- 학생 지도를 포함하는 표제로 변경 - 징계 내용 공고 금지 포함</p>
청구권 및 청원권	<p>제27조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p>	<p>제27조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p>	<p>- 청구권 등 행사에 대한 비밀 보장</p>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p>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p>		<p>- 소수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신설</p>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 교 내 인 권 교 육 등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노동권 관련 교육 강조
학 생 인 권 용 호 관 설 치	제40조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u>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u> 교육감이 임명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u>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u>	제39조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임명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 요구 - 옹호관 활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제 도입
학 생 인 권 용 호 관 의 직 무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u>직권조사</u>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u>조치 권고</u>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u>공표</u>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3.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4.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5.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옹호관의 직권조사 인정 -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구체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초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 결과와 조례 제정의 병행조치 제안」, 2010. 02. 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 결과와 조례 제정의 병행조치 제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는 지난 2009년 12월 17일 조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자문위원회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1. 15인 전문가들에게 검토 의뢰

- 자문위원회는 인권·헌법·교육·복지 전문가들과 교사단체의 교권 정책 담당자 15인에게 초안의 수정·보완 사항을 짚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초안의 쟁점 조항들에 대한 검토 의견,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병행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의뢰하여 조례안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2.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는 2010년 1월 19일, 24일, 25일 3일간에 걸쳐 각계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일은 경기남부권 종합공청회, 24일은 학생 중심 공청회, 25일은 경기북부권 종합공청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학계·교사·보호자·학생 토론자들과 방청인들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3. 학생참여기획단의 검토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꾸려진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도 이 조례의 직접 당사자로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4.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언론매체, 성명 발표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초안을 적극 환영하고 이른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에서부터 몇몇 조항에 대한 우려 입장,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까지를 두루 아울러 검토하였습니다.

■ 조례에 대한 우려 의견들에 대한 검토 결과

- 조례 초안이 발표된 뒤 다양한 우려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학습분위기가 저해되거나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우려들의 바탕에는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관점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일면 수긍하면서도, 그런 우려야말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이유라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 그동안 학교현장에는 학생인권 관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왔습니다. 그 갈등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관리자, 교사, 보호자, 학생 상호간의 갈등은 물론, 학생지도방식을 둘러싼 교사·학생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학교가 무엇을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으로서 기능함으로써 그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과 학생생활지도 방식이 자리잡힐 때, 학생들도 학교의 규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힐 때, 불필요한 학생통제에 쓰이는 교사들의 역량과 에너지가 학생과 소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데 쓰일 때, 교사의 정당한 권위도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의 시작은 신뢰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만남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요소들을 거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통제나 일방적 지시, 타율과 획일성을 거둬낸 자리에 대화와 소통, 자율과 다양성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 기둥인 교사-학생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학생들이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현실이 불러낸 시대적 응답입니다. 그동안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을 잘 보장해 왔다면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온 학교들은 외려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뒷받침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적극 옹호하지만, 그 자율성이 학생의 인권과 교육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을 때에만 옹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가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미성숙하지 않다면 제정될 수 있고 미성숙하다면 제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권은 학생의 미성숙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며, 연령과 성숙이 자동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누린 학생이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유와 참여를 경험한 학생이 참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또한 학생참여기획단의 활동과 논의 수준을 지켜보면서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입증되지 못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일부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험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자문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 초안의 주요 쟁점조항들에 대한 검토 결과

-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전체 48개 조항 가운데 몇몇 조항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제기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고, 그 결과 두 개의 조항은 손질 가능성을 열어두되, 나머지 조항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항들을 향해 제기된 우려점은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손질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 체벌 금지(7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교사 체벌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학생간폭력, 집단따돌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도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권 실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번 고심을 거듭해 보아도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수단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는 이미 교육당국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도 체벌 대신에 상담이나 다른 교육적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체벌에 의존하여 확립되는 교권은 진정한 교권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가 되어야 학생폭력이 없는 학교, 집단따돌림이 없는 학교도 가능합니다.

2.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10조) 관련

- 지문위원회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 증가,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지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는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참여를 강제·반강제하는 일들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학생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는 반교육적인 일들도 빚어집니다. 지문위원회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학생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 학습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여를 원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때 일시적으로 사교육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원 수강을 이유로 대면 ‘강제’ 야자나 보충수업을 빠질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자나 보충수업을 강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자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남아 추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학원 수강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무작정 강제로 잡아둔다고 사교육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두발·복장의 자유(12조) 관련

- 지문위원회 초안은 두발·복장 등을 통해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탈선 증가나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형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지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탈선 증가나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은 두발·복장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원인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탈선 방지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학생의 두발·복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근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조화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특히 두발 길이의 자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력한 시대적 요청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두발·복장 제한이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고 학교나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두발·복장 제한을 없애고 학생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생활지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청도 강력했습니다.

- 교복과 관련해서는 애초 원안이 교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관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교복 착용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교복 이외에 양말 색깔이나 신발 모양, 외투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학생·보호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나 소지는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업분위기 훼손이 우려될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원안이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 현실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나 규제·압수 방식 등이 학교나 교사마다 달라 불거지는 혼란이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신 수단이나 호신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학교 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보호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조례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사상·양심의 자유와 강요된 반성 금지(16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에게도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허위 반성이 강요되는 일이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적 지도가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을 적극 경청하면서 세간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반성문이라는 형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반성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과 허위 반성 강요’를 금지함을 좀더 명확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조문을 손보았습니다. 학생이 자기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소통은 적극 독려되어야 하되, 거짓 진술과 허위 반성을 강요하는 일은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회는 또한 사상의 자유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나, ‘사상’이라는 말이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겁고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좀더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문을 손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현실에 좀더 적합한 개념의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7. 표현의 자유와 학내 집회(17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가운데 일환으로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는 위협하다거나 학내 질서 혼란, 학생의 정치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고려하였으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 모여 기도 모임을 여는 것도 집회이고 학생회 임원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폭력 예방 캠페인을 여는 것도 집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회의 목적, 형태, 규모 등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도 특정 형태의 집회만을 떠올리며 집회의 자유가 학생들에게는 위협한 권리라고 바라보는 것은 억측입니다. 집회의 자유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학교가 이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부풀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내 집회가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학교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잘만 운영한다면 부러 집회까지 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자문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이 필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례 제정 전체를 발목 잡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초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학교장의 조건 부과’가 외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에 집회의 자유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기도 한 만큼, 일반 표현의 자유 조항으로 권리 보장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20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18조),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19조)에 이어 20조에서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는 무리한 권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학생이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학생인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 권한에 맞는 성숙한 의견 개진

과 책임의식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이 권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학생참여기획단 활동에서도, 세 차례의 공청회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성숙한 의견과 토론 태도를 보여 지켜보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참여의 기회를 계속 차단당해온 현실에서도 성숙한 의견과 태도를 스스로 길러왔습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적극 독려 받는다면, 학생들의 성숙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조례 제정과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조치

- 지문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조화와 공청회, 지문위원회 자체 논의 등을 거쳐 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조치들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담긴 학생의 권리들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으로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인권 보장을 개별 학교나 교사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교별 규정개정위원회 구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시급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럴 때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지문위원회가 제안하는 병행조치들은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일선 학교의 의무 이행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이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과제들입니다.

1. 조례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 제시

1)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 학교 단위에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지침서 마련·보급

- 조례에서는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관행들 중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적 지도인지 등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지침서 형태로 마련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안적 생

활지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학내 권리구제절차 또는 상담체계의 정비 지원

- 학교 단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내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나 행동이 조례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 기구를 구성하여 학생인권문제를 총괄 지원하고 학내 해결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내 구제 절차는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인권상담실이나 학생인권옹호관, 지역사회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교육청-일선학교-지역사회의 상보적 관계 실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 합니다.

- 체벌을 대신할 상담체계 구축과 대안적 교육 지원 방식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학생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절차를 마련할 때, 조례안의 정신에 맞는 학생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학생소수자의 인권증진 방안 제시

- 학생들이 책임있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학생자치기구에게 보장해야 할 구체적 권한을 목록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 취약한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특정 범주의 학생들(학생선수,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시행되어야 합니다.

2. 학생인권과 조례에 관한 적극 홍보와 교육

1) 모범 사례 발굴 소개

- 학생인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교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참고할 만한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모델로 전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이나 정책연구 학교 지정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 연수

- 체벌 없는 학생생활지도 방안, 학생의 문제 행동 발생 시 비폭력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방안, 교사의

정당한 권한의 구체적 내용 등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관리자·교사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구 과정에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 학생생활지도, 교육복지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 연수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할 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조례 내용과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학생인권 교육안 마련과 강사단 구축

- 학생인권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제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3.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 학생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될 때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모델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교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교육적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권한을 정리하여 교사 연수에서 활용한다거나, 교사회의 법정기구화 등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과 창의적 역량에 기초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경태 기자, 「경기교육청 "두발.복장.체벌 학교규정에 명문화"」, 연합뉴스, 2010. 02. 23.

경기교육청 “두발.복장.체벌 학교규정에 명문화”

두발 자유, 체벌 금지, 퇴학 최소화..새학기 시행

학생인권조례 앞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지침 시달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제정에 앞서 두발길이 자유와 체벌 금지, 학생 징계 최소화 등을 담은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3월 새 학기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학생 인권 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교복의 복장의 색깔.모양의 과도한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겼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학생징계 중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학생 징계 최소화 및 절차 준수방침을 강화했다.

불합리성이 지적된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 휴대전화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학생회 선도부 명칭변경(예절부.질서실천부.바른생활부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을 지양하고 자율.자치활동 보장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다양한 사례와 방법도 제시됐다.

학생과 교원의 학기별 2회 이상 인권교육 및 연수를 권장하고 최근 보급한 인권교육자료 '인권, 학교에 가다'를 교과.재량활동 시간에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교내 인권신장 대회, 인권인성 지킴이 동아리 운영, 소식지 발간, 가족교실 운영 등 학교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3~4월 학교공동체의 합리적인 의견에 기초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유도하고, 5~7월 각급학교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일선학교가 개정권고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 수용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나선 것은 조례 통과여부와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교육현장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3월 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조례 필요성엔 '공감' ..세부조항엔 '이견'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쟁점 조항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오후 도교육복지 종합센터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



김칠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교육감 인사말, 기조발언, 지정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조례제정 자문위원인 오동석 아주대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이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약속을 다시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라는 논리에 대해 "헌법교과서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국민에 대해 인격체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교사권한 침해 주장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뿐이다. 학생인권신장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기호 영덕중 교장은 "조례조항이 구체적 사례까지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학교에서 학생 인권보장과 실현은 교사들의 책임과 몫으로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과 조화를 강조하면서 교내집회에 대해 "어린 학생시절부터 시위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해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지도담당 노수진 별내중 교사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적용의 타당성이 낮다"며 "조례로 인해 교사

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오 수성고 학생회장은 두발·복장 자유에 대해 "(짧은 머리 전통을 갖고 있는) 수성고 입장에선 반대하지만 경기도 학생 입장에선 찬성한다"며 노예와 피출부의 차이를 예로 들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자 정천중 학교운영위원장은 정규교과의 교육활동 금지조항 중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교육환경·소수학생 권리 등은 절실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했다.

김인재 인하대교수는 "쟁점 조항에 대한 우려는 기우이거나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며 "기준을 정할 때 학생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사권리를 함께 규정한 학교인권조례 또는 교육인권조례를 제안하면서 시범 시행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청객들은 대체로 조례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정아 명문고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우리의 인권을 존중받고 남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고 대학신입생 청소년 인권활동가는 "제 경험으로 체벌, 폭언을 당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온라인 카페에는 '살려달라'는 인권보장 촉구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 후 관련부서 협의, 교육감 결재,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된 다음 도교육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수원 도(道)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 사헌장모임' 회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10.3.7 << 지방기사참고 >> drops@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수원 도(道)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0.3.7 << 지방기사 참고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조례제정 지문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학습 선택권, 두발·복장 자유, 사상 및 집회결사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집회결사의 자유의 경우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교내 집회허용 문구를 넣은 A안과 이를 뺀 B안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집회조항 삭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을 실현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해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5장 49조로 구성된 입법예고안은 의사표현의 자유(제17조)에서 수업시간의 교내집회 허용 조항,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6조)에서 사상의 자유 조항 등 2개 조항을 삭제했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조항을 포함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복수로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은 학내 질서 혼란과 학생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B안을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쟁점조항 중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정규 교과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 및 복장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 의사표현의 자유 등은 자문위원을 유지했다.

급식에 대한 권리에는 교육감이 직영급식과 더불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학생의 자치활동, 학교규정의 제·개정과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 징계시 대리인 선임권 및 재심요청권 보장, 소수학생 권리 보장 등을 보장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교별 실태조사, 학생인권옹호관제 신설 및 사무국 설치 등 학생인권 진흥 및 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법제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논쟁이 됐던 쟁점조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도교육위 심의과정에서 또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달 도교육위를 통과하더라도 도의회 회기운영 일정상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선거결과가 조례 시행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5월 기본계획을 세우고 7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권역별 협의회와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지난달 10일 도교육청에 복수안을 제출했다.

안종현 기자, 「학생인권조례 결국 ‘심의보류’ - 학원심야교습제한도… 내달 구성 도의회서 새로 상정」, 수원일보, 2010. 06. 08.

학생인권조례 결국 ‘심의보류’

학원심야교습제한도… 내달 구성 도의회서 새로 상정

경기도교육위원회가 7일 도교육청이 상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원 심야교습제한조례를 심의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 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것과 동시에 두 안건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에 상정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09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과 학원 심야교습제한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강관희 교육위원은 “아직 인권조례에 대해 현장에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이재삼 교육위원도 “다시 한 번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류를 주장했다.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에 관련해서도 전영수 교육위원은 “일선 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알몸 체벌'·'말죽거리 잔혹사' 사라진다 [바로 이 맛! 투표하면 바뀐다③] '진보벨트' 지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신호」, 오마이뉴스, 2010. 06. 13.

‘알몸 체벌’·‘말죽거리 잔혹사’ 사라진다

'진보벨트' 지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신호'

시위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굴착기 앞을 가로막습니다. 인천 계양산에는 골프공 대신 맹꽁이와 반딧불이 넘쳐납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촛불을 들고, 콘서트를 열고, 추모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눈칫밥'이 아닌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즐거운 상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6.2 지방선거로 한나라당이 독점했던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내가 사는 동네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오마이뉴스>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편집자말]

담임 선생님은 모두 하복을 입고 오라고 지시했지만 두 학생이 하복을 입지 않았다. 몸살 기운이 있던 한 학생은 비가 오고 날이 추워 하복 대신 춘추복을 입었고, 다른 한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복을 사지 못해 하복을 입고 올 수 없었다. 선생님은 하복을 입지 않은 두 학생을 혼낸 뒤, 상의 탈의를 명령했다. 소명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1교시가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상의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수업을 받았다. 결국 한 학생은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지난 달 18일 서울 A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10일, 알몸 체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 중학교를 찾았다. 그러나 해당 교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점심시간임에도 담임교사가 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 매질을 해도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매질을 하지 않아도 공부할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질은 필요 없습니다. (사진은 영화 <말죽거리잔혹사>의 체벌 모습.)

© CJ엔터테인먼트

반 학생들은 뛰어노느라 정신없는데도 이 반만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착석해 있었다. 1~3학년이 쏟아져 나와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담임교사가 운동장에 나가는 것을 금지해서다. 대신 학생들은 등교하자마자 풀었던 문제 중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있었다.

이아무개(14)군은 "중간고사 성적이 1학년 반 중 꼴찌로 나온 후부터 담임 선생님이 문제 풀기를 시켰다"며 "중간고사가 끝난 후 성적순으로 자리를 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18일에 있었던 체벌에 대해 묻자 이군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친구가 상의를 벗고 있으니 민망했다"라고 답했다.

A 중학교 교사 김중현(가명)씨는 알몸체벌에 대해 "아무리 남학교라지만 너무나도 수치감을 주는 체벌"이라며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올렸지만 학교 윗선에서 담임 선생님께서로부터 해명자료만 받고 더 이상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 측은 교육청과 말을 섞어 무마 시키기 급급하다"며 "이런 문제는 교육 전체의 구조, 조직 아래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교사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보다 과도한 체벌을 묵인하는 잘못된 구조 자체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김씨는 담임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교육할 때 아이들의 창의력이 키워지겠냐"며 답답해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A학교 사례는 체벌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뿐 아니라 경쟁교육에 의해 말살되는 학생 인권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안 마련됐다면 사망·알몸 체벌은 없었을 것"

체벌, 강제 교육 등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가 A학교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경기도 안산의 B초등학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0교시 수업을 하고 엎드려뺀 채 체벌을 가하며 공부를 시켜 논란이 됐다. 체벌로 인해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1일 경기도 김포의 C고등학교 여학생은 지각을 이유로 지도교사로부터 앉았다 일어서기 기합을 받던 중 의식을 잃어 결국 이튿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이전부터 마련됐다면 학생이 사망하는 등의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만든 연구팀에 소속됐던 공현 활동가는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이 인권 침해 상황을 겪었을 때 기댈 근거가 마련되어 쉽게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학생, 교사들이 '학생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학교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로 체벌금지, 두발 길이 규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개	제외부서	상태	만족도
494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	김중주	2010-05-23	비공개	민원실	완료	-
495	체벌(중등) 직설체벌(알몸수업) 및 통속지도문제)	null	2010-05-23	비공개	중등교육과	완료	불만족
496	학원의 법규	김진우	2010-05-23	비공개	중등교육과	완료	만족
491	공공단체 '인어섬' 공표 중단입니다.	조봉기	2010-05-18	비공개	중등교육과	완료	-
490	계절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영 조교에 대한 물리사범입니다.	오승혁	2010-05-14	비공개	중등교육과	완료	-
489	ITSAKE 관봉에 대해서로	최우열	2010-05-14	비공개	중등교육과	완료	-
488	중학교육정책 수립에의 관련 민원 제기	이종하	2010-05-12	비공개	중등교육과	완료	불만족
487	고등학교 간학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은희	2010-05-12	비공개	중등교육과	완료	-
486	소년소년 수업 지역배선관련입니다	이재현	2010-05-07	비공개	중등교육과	완료	-
485	소년소년 지역배선 프로그램	이재경	2010-05-07	공개	중등교육과	완료	-

▲ 한 교육청에 올라온 민원글이다. 해당글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 이주연

금지,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조항을 어겼을 시 구제기관이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고 이 권고를 무시할 경우 교장 등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된 까닭

그러나 입법예고까지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7일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 임기가 세 달 남아 그 안에 1차례 임시 회의를 할 수 있지만 회기 일정이 이틀에 불과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안은 7월 이후 다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만큼 조례안 처리가 뒤로 미뤄진 것.

공현 활동가는 "13명의 교육위원 중 2명만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통과 안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위원들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명의 교육위원은 왜 반대한 걸까. 조돈창 경기도 교육위원은 1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권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지성인이 된 후 찾으려 된다"며 "학생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대 위원 11명 중 조위원을 포함한 7명은 6·2 지방선거 교육의원직에 출마했다(교육의원은 기존 교육위원이 하던 역할의 대부분을 수행하지만 교육청이 아닌 도의회 소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의원을 선거로 선출했다). 하지만 그 중 단 한 명 강관희 위원만이 당선됐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강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오마이뉴스>임을 밝히자 그는 "얘기 안 할게요, 끊으세요"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강 위원의 견해는 다른 매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일 강 위원은 <메디컬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두발자유와 복장자유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의 입장과 같다"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방선거,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밀려 조례안은 폐기될 운명이지만, 앞날마저 캄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희망적이다.



▲ 등교를 서두르고 있는 고등학생들, 과도한 체벌과 강제교육으로 아이들의 인권이 명멸고 있다. © 이주연

지방선거 덕분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추진 의사를 누누히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처리를 담당할 교육의원 7명 중 4명이 진보성향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의원 7명과 함께 경기도의원 6명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체제라 조례안 제정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로 배석되는 도의원 수가 각 정당의 의석수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6·2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의원이 전체 경기도의원 의석수의 63%를 차지했기에,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진보성향 교육의원 4명, 민주당 의원 3명 이상을 합치면 적어도 7명 이상으로 전체 교육위원회 13명의 과반수다.

초기부터 조례안을 찬성했던 교육위원이자 이번에 교육의원으로도 당선된 최창의 당선자가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한 이유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이끌어낼 또 하나의 변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꼽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에서도 추진될 예정이다. 광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든 책임자가 나왔고 거기엔 나의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다"며 "서울도 비슷한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곽 당선자가 추진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뭍은 서울시의회 소속 교육위원회에 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서울교육의원 8명 중 3명이 진보성향으로 꼽힌다. 나머지 5명 중 1명만이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교육의원이다. 김형태 서울교육의원 당선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육위원회에 들어오는 시의원 중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 될 텐데, 교육 측면에서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교육의원 공약이 유사했기에 조례안 추진은 순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례안은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전남·전북·강원·광주 지역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교육감들은 이미 지난 달 10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시민단체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청신호에 학생들 "환영"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자 학생들은 "꼭 통과됐으면 한다"며 환영했다.

A중학교 3학년 전아무개(16)군은 "두발 길이 규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머리가 짧으면 오히려 신경 쓰여서 공부에 방해된다"고 말했다. 서울 D고등학교 2학년 구명희군(18)은 "학생 체벌이 너무 심해 선생님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무릎으로 복부를 맞았다"며 "체벌을 막을 수 있는 조례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의견은 학생들과는 사뭇 달랐다. 경기도 E고등학교 서아무개 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 미루면서 학생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면 힘들다"며 "체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중학교의 박아무개 교사는 "체벌을 금지하면 대드는 아이들을 다룰 방법이 없다"며 "현재 교사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는데 학생 위상만 높인다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수원시 매현중학교 3학년 김성호군은 선생님들의 이 같은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군은 "어느 상황에서도 체벌은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선생님의 권위 상실에 대해서도 "학생을 선생님의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것은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현 활동가도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생활 지도 등 불필요한 부분이 줄어들어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된다"며 인권조례가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임을 강조했다.

아무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교사의 폭력이 난무했던 <말죽거리 잔혹사>가 앞으로는 비디오-영화 속에 서나 볼 수 있는 '무용담'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 공청회'에서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확정

도의회 상임위 통과..전국 최초 시행 임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해온 학생인권 조례안이 7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는 이날 오후 제25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표결에 들어가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체벌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자문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중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과 '사상의 자유' 조항까지 담았으나 논란이 일자 이들 조항을 포함한 A안과 이를 뺀 B안 등 복수안을 김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지난 6월 B안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지난달 말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안건이 승계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학생인권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오전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 조항을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진현권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공감한 결과”」, 뉴시스, 2010. 09. 08.

경기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공감한 결과”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 “1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는 대다수 교육위원들이 조례제정의 상징성과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에는 대한민국 학생 인권 헌법으로 지칭될 정도로 학생인권을 위한 진일보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다. 또 훈련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하는 시각의 변화를 전제한다”라며 “이는 교육의 주체로 학습자를 인정하는 평생교육의 시각에서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또 “산고 끝에 탄생시킨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교육현장에 바람직한 변화들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먼저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학생체벌문제가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재검토되고, 새로운 학생지도를 위한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방식들을 찾는 노력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는 “물론 항간의 우려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인권조례 운영을 위한 세부규칙,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벌의 실효성, 교권과의 충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 전에 교육청 관계자에게 구체적 매뉴얼 및 대안 마련, 조례 제정 이후 실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받았고, 교육위원회도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운동연대 ‘꿈’ 외,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서, 2010. 09. 08.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에 고하고,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지만, 9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 같은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내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이 빠지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표현이 수정된 안인 것은 아쉽다. 너무 당연한 이 야기를 반복하기 입이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명시하지 않았어도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의해 이미 보장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말로만 떠돌았던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힘을 보태 줄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상임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유보되거나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과 지역사회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제는 조례안에 관련하여 불필요한 흠집내기보다는 조례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 등의 생산적인 논의가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앞으로 진행될 17일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과 학생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0년 9월 8일

경기교육운동연대 ‘꿈’(경기교사현장모임, 청소년인권행동‘이수나로’수원지부,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사노위,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안산평학, 수원평학),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사설2]경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해온 학생인권 조례안이 7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체벌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자문위 초안에서 논란이 된 의사표현의 자유 중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과 '사상의 자유'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학생인권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학생인권을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며 시비를 걸었다. 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고 반발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척점에 놓는 우리 사회의 통념은 보수적 교원단체와 교육관료들이 저항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이는 학생을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하기보다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행정당국과 교육관료들의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가 교권침해의 핵심이었다. 이제 학교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지도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우선 각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청 관료는 물론 모든 교직원에게 인권 연수를 강화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정착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학교보다 체벌이 더 심한 사설학원의 인권침해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학생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우리 사회를 한층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근 기자,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교육현장 변화 예고」, 연합뉴스, 2010. 09. 17.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교육현장 변화 예고

학교문화 혁신 기대 속 교권침해 우려도 여전



학생인권조례안 전국 첫 도의회 본회의 통과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77명 중 6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010.9.17 drops@yna.co.k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가 17일 전국 처음으로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시기상조, 교권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해 시행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 강제 아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을 담았다.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도 보장했다.

아울러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인권 실천 및 상담, 구제 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특히 상임직 5명 이내로 임명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으로 구성된 사무기구까지 설치한다는 점에서 활동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통과 즉시 시행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다음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체벌 금지와 관련해선 그린마일리지(상벌점) 확대와 지덕벌(智德罰) 도입 등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당장 이달부터 학칙 개정 을 비롯한 학교별 시행실적이 학교평가에 반영되기에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파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학생인권조례안 전국 첫 도의회 본회의 통과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77명 중 6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010.9.17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자문위원장은 궤노현 서울시교육감(당시 방송대 교수)이 맡았었다.

자문위는 14차례 협의회와 수십 차례의 순회 공청회, 토론, 설명회, 각종 공모 및 홍보영상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원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가장 논란이 된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과 '사상의 자유' 조항을 뺐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바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했다.

김 교육감은 "이제 우리사회의 수준으로 볼 때 학생인권과 체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심지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아프리카를 포함해 80~90개국에 체벌금지를 법제화했다"며 시기상조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달 한 고교에서 체벌사건이 발생하자 긴급 장학관 회의를 소집해 "학생인권 침해 교사와 학교, 시설학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지도감독을 하라"고 특별지침까지 내렸다.

◇교육주체들 찬반 여전 =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는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에서 "천부인권과 헌법의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방지법을 지키는 일은 어른들의 당연한 임무이고 미래 세대를 향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며 조례에 찬성했다.

의정부여성회, 의정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양주지회, 성남지회 등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반면 경기교총은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법령으로 갖춘 다음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도별 조례내용이 달라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인권 보장에 뒤따라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가뜩이나 무너진 학교질서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대책점으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했지만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과정에서 교권 침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77명 중 6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010.9.17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회전반의 인권의식이 더 성숙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며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시기상조론도 있다.

경기교총 윤원(오산고현초 교장) 교육정책위원장은 "학생인권 존중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상충되고 아직 실효성 있는 대체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막말로 대응하는게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교사도 있고 그래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교사도 있을 정도로 혼란이 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

전교조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조례 통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인권존중의 문화가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외,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논평, 2010. 09. 17.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오늘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재석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9월 7일, 경기도교육상임위에 이어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었고, 드디어 통과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통과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과 걱정하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환영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난무했던 학교에서, 인권의 가치가 넘실대는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바뀔 학교가 기대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말로만 떠돌았던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힘을 보태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학생인권보장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유보되거나 미뤄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힐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례안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진행하기보다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어떡해하면 더욱 잘 정착될 수 있을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관심있는 모든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사회 시민 모두의 몫일 것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현장의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또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이들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구성원내부의 교육과 인권문화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는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시급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례

정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경기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학생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어지는 학교, 진정한 소통과 교육이 존재하는 학교,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기도의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이제 출발이다.

2010년 9월 17일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연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 오산용인화성지구협, 제주평화인권센터, 경기교육운동연대, 꿈(경기)교사현장모임,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사노위,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안산평학, 수원평학,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수원지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 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
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
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 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이상 전국43개 단
체]

학교서 ‘체벌’ 추방 학생인권조례 첫선

경기도의회 전국 첫 제정 / 전교조-교총 찬반 엇갈려

초·중·고교 학생 체벌 전면금지과 두발 자유화 등을 뼈대로 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일선 학교에서 관행처럼 유지돼온 학생 체벌 금지 등이 조례로 명문화됨으로써, 학교 문화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제253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 42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77명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경기지역 학생 182만여명이 다니는 초·중·고 2074곳은 조례 공포일부터 6개월 안에 학생 생활규정을 바꿔 이를 시행해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는 모든 체벌 행위가 금지된다.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지름 1~1.5cm, 길이 50~60cm 이하의 나무로 만든 직선형 체벌도구로 체벌을 줄 수 있다”며 학교에 보낸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작성됐던 일선 학교의 생활규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머리 모양도 학교가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파마·염색 허용 여부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수업시간 등을 빼고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지니는 것도 자유로워진다.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퇴학하도록 하는 차별행위도, 특정 종교행사에 참가하도록 강요하거나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을 수강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에는 20명으로 이뤄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를 뒀다 하며, 이 가운데 5명을 학생인권 옹호관으로 선정해 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직권조사할 수 있게 했다. 경기지역 25개 지역교육청에도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 조례를 두고 교사들과 교육단체들 사이에 찬반 견해가 엇갈려,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학생과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숙원인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교사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령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 틀을 갖춘 뒤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며 “학생인권 강화로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수행이 소홀해지면 학교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발자유·체벌금지...아이들이 밝아졌다

생활규정 자율개선 뒤 징계↓ ‘자기 주도 학습’↑

“자유롭게 놔두면 버릇없다는 건 어른들 편견일뿐”

[학생 인권의 시대] ‘학생 인권 보장’ 학교 가보니

쫄쫄이 교복 바지를 입은 더벅머리 남학생, 긴 머리에 짧은 치마로 한껏 멋을 부린 여학생들로 학교는 생기가 가득했다. 외국의 학교도, 대안학교도 아니다. 지난 14일 찾은 공립중학교인 경기 고양시 덕양중학교의 3학년 교실 풍경이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내 2천여개 초·중·고교에서 ‘학생 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등에서 우려와 환영이 엇갈

리는 가운데 이미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화 등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을 시행중인 학교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혁신학교로 지정된 덕양중학교는 2년 전 이미 조례 수준으로 ‘학생 생활규정’을 바꾼 뒤 학교가 ‘180도’ 달라졌다. 전교생 135명, 서울 경계에 위치한 덕양중의 규정 개정에는 학부모·교사·지역사회 대표 등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김삼진 교장은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면 자존감과 책임감이 생기고 이런 과정 자체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학생을 키워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정은 순탄치 않았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역시 ‘두발 자유’. 학생들은 길이와 파마, 염색의 모든 자유를 요구한 반면, 학부모들은 건강상 이유로 파마와 염색을 반대했다. 수차례 토론 끝에 두발을 자유화하되 파마나 염색은 ‘불가’로 뜻을 모았다. 격렬한 토론과 합의 과정은 교내에 방송됐고 모든 학생들이 이를 지켜봤다.



▲경기 고양시 덕양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 구령대에 모여 섰다. 남학생들은 더벅머리에 꼴바지, 하얀 티셔츠 등을 입고 있고 여학생들도 긴 머리에 짧은 치마 차림을 하는 등 편하고 자유로운 모습이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그리고 2년, ‘규정을 고치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2007년 22건이던 학생 징계 건수는 2008년 1건, 2009년 5건으로 줄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교사들의 지도방식은 징계보다 ‘상담’ 위주로 바뀌었다. 이 학교 생활복지부장 이병주 교사는 “과거에는 학생에게 규정 준수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면, 지금은 ‘너희가 만든 규칙이지 않냐’며 학생 지도방식도 바뀌더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전학 온 3학년 이슬(15)양은 “이전 학교에서는 귀밑 3cm를 넘은 학생을 선생님들이 미용실에 데려가 잘랐는데 이제는 그런 실랑이 없이 자유롭다”고 말했다. 윤정민(15)양은 “검정색 머리가 싫어 방학 때는 갈색으로 염색했다가 개학 때 다시 바꾼다”며 “파마나 염색이 학생 본분에 벗어난 것도 아닌데 개성을 존중해달라”고 당차게 말했다.

같은 날 찾은 경기 용인시 흥덕고 올 초부터 학부모·학생·교사가 합의해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화 등 개정된 생활규정을 시행 중이다. 이 학교는 교내흡연 등 잘못이 한두 차례 적발되면 담임 교사와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운동장을 함께 걷고 3회 적발되면 등산한다는 ‘체벌 대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의 자발적 결정이었다. 이 학교 학생자치회 이상우(17) 회장은 “선생님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죄송한 마음에 학생들이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으려 애쓰게 된다”고 했다.

그렇다고 시행 초기에 불안이 전연 없던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자유로워지면서 화장하고 귀걸이를 단 채 등교하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학생자치회 박보현(17) 부회장은 “한 학기가 지나니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학생 스스로 염색도, 화장도 포기하더라”며 “자유롭게 놔두면 공부 안 하고 버릇없게 된다는 것은 어른들의 편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학부모 심정은 어땠을까? “학기 초에는 솔직히 아이 성적이 떨어질까 불안했다”는 학부모 임익균(44·여)씨는 “염색했다고 불량아도 아니고, 자율을 주니까 오히려 책임감과 함께 자기 주도 학습 능력도 더 생기는 것 같아 이제는 안심”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권우성이주연 기자, 「"머리카락에 쓴 에너지, 이전 온전히 공부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학생교사 관계 부드러워져" vs. "학생지도 벌써부터 고민"」, 오마이뉴스, 2010. 10. 05.

"머리카락에 쓴 에너지, 이전 온전히 공부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학생교사 관계 부드러워져" vs. "학생지도 벌써부터 고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인권조례 선포에 맞춰 수백 개의 노란 풍선이 천장으로 띄워졌다. '학생인권' 선포식에 맞게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감이 함께한 자리였다. 5일 오전 수원 청명고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가 이뤄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이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전국 최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 전반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 김 교육감은 "인권과 교육, 학생인권과 교육을 대립적으로 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생들은 인권 조례를 통해 스스로의 인권보호뿐 아니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포식에는 다른 시도교육감들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됐다. 교육감들은 입을 모아 인권조례의 확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환히 웃는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고, 행복한 아이 얼굴이 보인다"며 "학교를 자유와 책임, 민주주의와 인권의 체험 학습장으로 바꿀 새 출발"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나가고 그것을 규범화 시켰다는 것에 인권 조례의 의미가 크다"며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전국 모든 지역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청명고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식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학생대표들이 '학생인권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권우성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학생은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학교 문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행복한 학교를 위해 강원도도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학생인권조례 맞본 학생들 "자율적인 아자, 완화된 두발규정 긍정적"

학생인권 조례 통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학생들은 "우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 같다"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작년에는 두발 규정이 귀밑 5cm라서 공부 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머리카락이 쏠려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젠 묶을 수 있어서 오히려 머리카락에 쓸 에너지를 공부에 쓸 수 있어요"

청명고 2학년 윤인영(18)양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칼을 만지며 두발규정 완화의 이점을 설명했다. 인권조례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변화를 모색해 온 청명고 학생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맞았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학내 인권 규정'을 만들어 귀밑 5cm였던 두발 단속 규정이 어깨까지 기를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학교 3주체가 함께 모여 학교 규정을 만들 것을 명시한 인권조례 18조에 의거한 활동이다.

학생회 일원으로서 학내 규정 완화에 직접 참여한 양유진(19)양은 "예전에는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던 선생님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귀 기울여주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양유진양은 '때리지 않고 어떻게 대학에 보내냐는 일선 교장들의 생각에 대해 "지나치게 간헐 사고"라며 "체벌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화"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청명고 학생들은 때리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청명고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식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참석한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권우성



▲ 김상곤 교육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청명고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식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학생대표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를 선언하고 있다. © 권우성

윤인영양은 "작년에는 강제적으로 이뤄졌던 야간자율학습도 올해부터는 개인이 신청해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하기 싫는데 왜 무조건 해야 하지'라는 반발심이 들었다면 올해에는 '내가 신청해서 하는 건데 시간이 아까우니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자율' 학습이 가져온 변화다. 이성민(17)군은 "자율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 하자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는 대학생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인데 좀 믿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주(18)양 역시 "학생을 조이면 입시 성적이 좋고, 학생을 풀어주면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편견"이라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면 아이들 스스로도 입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선생님-학생 대하는 방식 부드러워져"... "아이들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

선생님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명고에서 학생인권교육시범학교 추진의 실무를 담당해온 박미경 교사는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감에 따라 학생자치회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박 교사는 "물론 학생들은 전면적인 변화를 원하고 학부모들은 급격한 변화를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 입장이 갈린다"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절충점을 찾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는 교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

에 대해 "시범학교로서 미리 인권 조례 내용을 실천해 보니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다"며 "부모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같은 마음은 아니다. 우려는 남아 있다. 영어를 가르치는 김현정(가명) 교사는 "수원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학생과 선생님의 경계가 명확한 지역"이라며 "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교사 역시 "선생님들도 해오던 방식이 있어서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학생인권 시범학교로 선정된 이후 선생님들이 좀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청명고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식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변화의 조짐은 이미 청명고에 일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는 OO다'라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져봤다. 학생들의 답은 모두 달랐지만 같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배려다." 윤인영

"학생인권조례는 변화다." 최영주

"학생과 선생님 간의 믿음이다." 이성민

"학생과 선생님 간의 소통이다." 양유진

2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개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최대 관심사이자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6월 교육감 선거 결과, 전국 6개 도시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탄생하자,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약을 문제삼아 진보교육감을 흠집내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주요 표적은 수도에 자리잡은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이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을 교육감 개인의 의지와 정책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 여러 교육·인권·청소년단체와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를 꾸리고 주민발의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 제안마당, 주민발의안 공청회 등을 거쳐 2010년 10월말부터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으나 소속단체의 조직 서명만 기대하고 있다가 서명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주민발의에 주어진 시간은 단 6개월뿐인데 이미 절반 이상의 기간이 지나간 상황에서, 서울본부는 청소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온갖 어려움과 설움을 딛고 5월 10일 주민발의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후 그해 11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의회에서 심사·통과될 조짐이 보이자, 보수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여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성적지향·임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중심으로 논란이 증폭되자 의회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할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성소수자단체를 포함하여 인권활동가들이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회 농성을 시작했고, 서울본부 활동가들도 조례 원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마침내 2011년 12월 서울에서 주민발의로 성사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최종 공포되었으나 교과부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등으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주민발의운동 과정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탄생과 시행 경과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이르기까지

▷ 80년대 말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움트기 시작.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1년 대한민국 정부 가입.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1차 협약 이행 권고 발표.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시도. 당시 교실붕괴 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중단.

▷ 2000년 이른바 ‘노컷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 온·오프라인 청소년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체를 중심으로 두발자유 서명운동이 전개. 청소년/비청소년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짧은 기간 16만여 명의 서명이 모임.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 권고에 이어 2차 권고 발표. 1,2차 권고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해지면서 유관단체와 교육계, 시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 계기를 마련.

▷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미션스쿨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교과부 지침이 보완되기 시작.

▷ 2005년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이 개최되는 등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 학내 종교 자유, 선거권 인하, 정보인권 보장,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등 청소년인권 운동의 의제 역시 확산되기 시작.

▷ 2006년 17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면서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의 운동이 전개. 각계 단체들이 모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의 법 제정 운동,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전국행진 등을 통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요구. 2007년 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신설되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2008년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과 관련된 교과부 지침이 모두 폐지되고, 교육청 차원의 자율 지침으로 변경.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은 물론,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여건 조성

▷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이 담아내지 못한 구체적인 학생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권리회복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

▷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 당선. 서울, 광주, 전북 등 교육청 산하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구성

▷ 2011년 8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최종 성사

▷ 2011년 10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1년 11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 2011년 12월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요 경과

▷ 2010년 5월,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감 후보들,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협약식’ 개최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 2010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을 계기로 체벌 전면 금지 계획 발표

▷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과부의 체벌 합법화, 학교규정을 통한 학생인권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상위법 개정 시도 움직임.

▷ 2010년 9월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 2010년 10월 5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 2010년 10월 6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 2010년 10월 18일, 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지역 학생 1885명, 교사 1478명, 학부모 959명 대상 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6%, 교사들 88.7%, 학부모는 87.6%가 필요하다고 답해.

▷ 2010년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발의안 확정

▷ 2010년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

▷ 2010년 11월 2일, 81돌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 2010년 11월~12월 :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실시 이후, 몇몇 언론들의 ‘위험한 학생론’, ‘학생 vs 교사 대립’ 보도 급증. 서명운동 주춤.

▷ 2011년 1월 17일,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1월말 학교장의 학생 권리 자의적 제한, 간접체벌 허용 등 반인권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입법 예고

▷ 2011년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120여개교가 학생인권조례 취지와 상반되는 학교생활규정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추진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에 버티기로 일관.

▷ 2011년 1월 25일, <교과부 인권침해 정책, 청소년 긴급 성토크대회> 개최

▷ 2011년 1월 2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 주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1년 2월 8일, 영하의 추위를 뚫고 매일 주민발의 서명전 돌입. 주말 집중서명전, 행사장 서명도 이어져

▷ 2011년 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한다> 집담회 개최. ‘학생인권 vs. 교사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질타

▷ 2011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결정.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 발표.

▷ 2011년 3월 6일·7일,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보도. 서울본부 기획 참여.

▷ 2011년 3월 8일 : 서울 중암중 체벌사건 규탄 기자간담회 개최

▷ 2011년 3월 14일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애초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으로 삭제. 그러나 간접체벌 허용의 불씨 남겨.

▷ 2011년 3월 14일~여31일,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5회 연속 개최(경향신문·오마이뉴스·한겨레 공동 후원).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범희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교장,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하중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백창우 시인/작곡가 초청 강연.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 관련 높은 공감대 형성

▷ 2011년 4월 7일, <학생인권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1주일에 1~2회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 인격 비하 등)을 경험. 16.6%가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하고, 25.7%는 가끔 차별을 당한다고 답해.

▷ 2011년 4월 11일,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2011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

▷ 2011년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애초 4월 26일 마감이었으나 서울 중구, 강남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8만 1885명을 뛰어넘는 **8만5281명의 서명 취합**.

▷ 2011년 5월 11일~19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2011년 5월 20일 10시 30분,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서울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 2011년 6월 22일~26일 **주민발의 보정(추가 서명)** : 유효 서명지가 7만1천여 장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닷새간 추가 서명과 정보가 누락된 서명지에 대한 보정 작업 진행. 1만5천여 장을 목표로 추가 서명을 받았으나 3만장이 넘게 서명지가 모임.

▷ 2011년 6월 27일~7월 4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2011년 7월 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추가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제출**

▷ 2011년 8월 4일, **법제심의 거쳐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 수리. 유효 서명인 수 총 97,702명으로 확정**

▷ 2011년 9월 7일, **곽노현 교육감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 2011년 9월 8일, 교육감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공청회 개최. 주민발의안에 비해 상당수 후퇴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본부 이름으로 강력한 수정 요구

▷ 2011년 9월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 재검토 필요하다’며 의압 행사**

▷ 2011년 9월 1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의압과 불필요한 반대 중단 촉구.

▷ 2011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초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 인권의 원칙에 근거한 조례안 마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 책무 확인.

▷ 2011년 9월 2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학생들 여러 명의 얼굴에 대걸레를 문지르는 ‘대걸레 체벌’ 사건 발생.** 이튿날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해당 교사의 사과가 있었지만, ‘훈육 차원에서 했던 일’이라며 문제를 축소.

▷ 2011년 9월 2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기소. 교육감 직무정지.**

▷ 2011년 9월 28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의제에 대하여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지속 추진과 지연, 무산까지 다양한 해석 나와.

▷ 2011년 9월 2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 11곳,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정책 등을 방조해 온 임승빈 권한대행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교과부에 경질 촉구.**

▷ 2011년 9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로 송부.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입법 예고는 언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 2011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

▷ 2011년 10월 5일, 광주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 2011년 10월 6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 3.4차 보고서(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이행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대해 최종 권고 발표. 차별 금지, 청소년 비혼모·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 마련, 학생의 의견 존중, 종교 자유 보장, 정치활동에 대한 이동의 능동적 참여 보장 등을 권고

▷ 2011년 10월말,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 확정. 그러나 교과부에 의해 새로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육청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

▷ 2011년 11월 17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선포

▷ 2011년 11월 22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후퇴 없는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

▷ 2011년 11월 25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성사

▷ 2011년 12월 13일, 교총 등 보수단체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서울학생인권조례 부결 촉구

▷ 2011년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서울시의회 농성 돌입. 각계 농성 지지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 2011년 1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등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주민발의안 심의하다 결정 연기

▷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통과. 민주시민의 힘을 모아 주민발의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조례 통과에 대한 우려 표명

▷ 2011년 12월 27일, 서울시의회에 조례 제정 감사패 전달

▷ 2011년 12월 29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움직임'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위법 위반, 공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11월 21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때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의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던 것을 뒤집는 것인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지지가 확인되었고 주민발의로까지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아닌지 질의.

▷ 2012년 1월 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축하 공식 서한을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에게 발송

▷ 2012년 1월 5일, 서울시교육청 앞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2년 1월 9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이 경우 서울시의회 2/3 찬성을 얻어야 조례가 확정될 수 있음.

▷ 2012년 1월 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

▷ 2012년 1월 11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제1회 이돈명 인권상' 수상

▷ 2012년 1월 16일,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촉구 촛불집회’ 개최. 죽음을 양산하는 교육을 넘어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호소 터져나와.

▷ 2012년 1월 2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조례 재의 요구 철회.**

▷ 2012년 1월 25일,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개최. 학교폭력에 대한 침묵과 방관, 악순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혁신학교 실험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가 주목 받아.

▷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 조례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바 있으나, 조례가 공포되자마자 곧장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신청.**

▷ 2012년 1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 2012년 1월 30일, 교과부 학칙 개정을 중단하라고 시정명령

▷ 2012년 2월 15일, 교과부, 학칙 개정 지시 정지처분

▷ 2012년 2월 1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칙 규정 사항으로 두발·복장 규정 포함, 학칙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 2012년 2월 2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등, 교과부 시행령 개악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12년 2월 27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2년 2월 2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칙인가권 폐지를 근거로 일선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긴급 논평 발표

▷ 2012년 2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정지처분 취소소송 청구

▷ 2012년 4월 17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정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못 박음. 시행령에서는 다만 학칙의 형식만 정하고 있을 뿐 내용은 정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성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

▷ 2012년 4월 20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 공포

▷ 2012년 5월 3일,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에 학칙을 제·개정하라는 안내문 발송 지시. ‘두발·복장 규

정 등은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고,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각급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사망을 선포. 더불어 시대착오적 학칙개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 2012년 5월 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맞이, 조례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학생인권 수호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개최

▷ 2012년 5월 17일, 서울교육청 학생참여단(참여단 100명) 발대식 개최

▷ 2012년 5월 31일,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발족(위원 19명)

▷ 2012년 6월 22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공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2010. 10. 27.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서울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청구			
대 표 자	성 명	홍세화	주민등록번호	471210-*****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2-37번지 401호 (전화번호 : 010-9992-0641)		
수 입 인	성 명	(정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전화번호 :)		
	기 간	2010 년 10 월 일부터 2011 년 4 월 일까지		
	성 명	(정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전화번호 :)		
	기 간	2010 년 10 월 일부터 2011 년 4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0년 10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의 대표자 홍 세 화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 교육감 귀하</p>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서명 양식)」, 2010. 10. 2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인권은 교육과 민주주의의 주춧돌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구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 서명요령

1. 아래 굵은 선 안을 채워주세요.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인장을 날인합니다. (서명은 꼭 정자로 써주세요)

번호			
성명		서명(정자) 혹은 날인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번호	-	서명날짜	2010년 월 일
핸드폰/전화		이메일	
비고			

※ 기입해주시는 개인정보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에만 사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조례개정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 ①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 학생 역시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
- ① 폭력 없는 교육 | 체벌, 괴롭힘, 언어폭력,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①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육 | 학생의 의사존중/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 보장/ 자치활동 신장
- ① 차별 없는 교육 | 성, 장애, 가족형태, 경제적 지위, 성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장애·다문화·아르바이트청소년·운동선수·성소수자·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① 개성과 사생활이 존중되는 교육 | 두발·복장 등을 통한 개성 실현/ 자의적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개인정보 보호
- ① 자발성의 교육 | 자율적 학습 보장/ 보충수업·야자 강제 금지/ 종교강요·서약강요 금지
- ① 돌봄의 교육 | 심, 안전, 건강, 안전한 먹을거리, 상담과 조력 등을 보장
- ①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교육 | 인권교육 확대/ 학교·교육청의 책임 명시/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02-582-888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우편 서명 양식)」, 2010. 10. 27.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우편 발송 이해조판양식

(이하의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발송하십시오. (필수 기재 사항에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이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필수 기재 사항)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필수 기재 사항)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필수 기재 사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4월 20일까지는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는 사람

□□□□ - □□□□

받는 사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T.02-582-8884)
156-090


우편 접수 확인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 사항에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후납 우편 서명 양식)」, 2010. 10. 27.



http://stunghnwon.net / http://stunghnwon.net / http://stunghnwon.net / http://stunghnwon.net / http://stunghnwon.net / http://stunghnwon.net / http://stunghnwon.net / http://stunghnwon.net / http://stunghnwon.net / http://stunghnwon.net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03.08 ~ 2011.09.07
서울동작우체국송신
제 280 로

6월 28일까지는 꼭!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T.02-582-8884)

156-090

준 극영원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청구인 명부 (후납 우편 서명 양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T.02-582-8884) 발송 (2011.03.08 ~ 2011.09.07)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2011년	년	월	일	시간	분	초	주소	우편번호
2011년	년	월	일	시간	분	초	주소	우편번호
<p>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T.02-582-8884) 발송 (2011.03.08 ~ 2011.09.07)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p>								우편번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청구인 명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개념있는 1%가 되어주세요!

학교에 민주주의·인권이 입학하길 바라세요? 존중·참여·대화하는 교육을 원하세요?
학생들이 함께 학교의 주인,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의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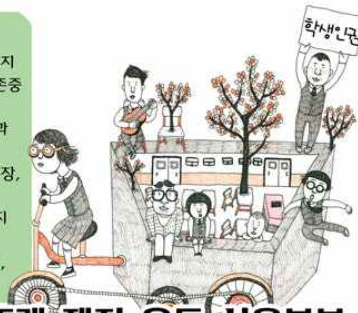
▶▶ 서울시민이라면,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울시민 1%(약8만2천명) 서명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 ① www.sturighnow.net 홈페이지에서 서명용지를 다운받아서 출력합니다.
(또는 다른 어디에서 서명용지를 얻으셔도 됩니다~)
- ② 이름과 서명(이름을 한 번 더 정자로 써주세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쓰고 서명날짜를 씁니다. (이렇게 안 써주시면 무효가 됩니다ㅠㅠ 실제 서울시민이신지 교육청
에서 확인할 때만 씁니다! 컴퓨터에 데이터 입력도 안 하니 유출도 안 돼요)
- ③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호 승지빌딩 8층 학생인권조례서울본부**
(우)159-090 이 주소로 서명한 것을 보냅니다.
(아니면 <교육공동체 벵> 등 단체들을 통해 전달해주시어도 됩니다 ^^)
- ④ 가족들,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같이 서명해주시면 GOOD!

서울 주민발의의 성공 여부가, 전국 학교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학생인권과 학교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주세요!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 ☞ 성적, 경제력, 장애, 성, 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 언어폭력, 체벌, 괴롭힘 등 폭력 NO! 대화하고 존중
하는 교육 만들기
- ☞ 두발복장자유화,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등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학교
- ☞ 학적제정, 학교운영, 교육정책 등에 학생 참여 보장,
언론·표현·집회의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신장
- ☞ 강제적 자율학습·보충수업, 강제중교수업 등 금지
- ☞ 학생들의 건강, 안전, 복지, 상담에 힘쓰는 학교
- ☞ 인권교육 의무화, 교육청과 학교관리자 책임 명시,
구제기구 설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사진전〉, 2010. 1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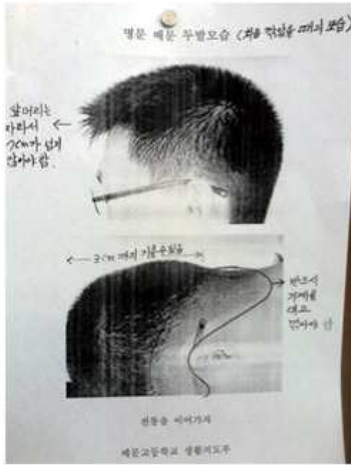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 권리,
질 좋은 급식을 먹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짐승도 돌맹이도 아닌 사람인데 왜 자꾸 굴릴까요?
고통과 공포를 휘두르는 폭력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노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학생들을 같은머리, 같은옷에 가둬놓는 일은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요? 잘리는 건 우리의 개성과 자유입니다.
두발복장자유, 좋은 교육의 시작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2010년 3학년 인문계 모의수능 성적 분석 자료(4월 2)

<2010년 3학년 반별>

반	번호	이름	사회탐구																합(500)
			영어	수리	외국어	문리	국사	한지	법사	기타									
3	1		73	66	89	14	72	85	47	20	129	44	14	40	50	29	394		
3	2		74	63	91	12	89	30	36	106	46	21	48	4	37	65	421		
3	3		74	63	42	104	57	119	35	109	16	97	26	100	37	65	287		
3	4		0	185	0	93	57	119	36	106	129	37	53	26	120	0	262		
3	5		57	118	49	155	0	155	0	155	0	129	0	152	0	155	0		
3	6		0	185	0	155	0	155	0	109	10	113	23	115	35	78	289		
3	7		54	126	61	71	71	89	35	109	11	111	18	130	14	141	261		
3	8		57	118	69	56	69	94	23	142	29	69	14	140	36	75	291		
3	9		57	118	69	56	69	94	23	142	29	69	14	140	36	75	217		
3	10		34	152	23	138	47	135	44	49	129	31	78	30	102	8	401		
3	11		50	136	56	79	66	100	40	87	29	69	14	140	36	75	380		
3	12		34	152	23	138	47	135	44	49	129	31	78	30	102	8	431		
3	13		81	31	63	67	94	12	41	80	44	28	44	14	34	86	382		
3	14		71	74	73	47	71	89	45	29	42	37	43	23	35	78	382		
3	15		81	31	88	18	97	5	43	58	43	32	35	69	44	35	381		
3	16		81	31	88	18	97	5	43	58	43	32	35	69	44	35	234		
3	17		78	45	70	53	82	58	35	109	29	69	40	37	48	8	325		
3	18		85	14	60	72	91	21	42	70	25	79	38	47	40	50	247		

이름을 까발리고, 성적이 공개되고, 일기를 검사하고
 우리의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들.
 우리를 존중한다면 그래선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강제로 해야 하는 입시공부, 강제야자, 보충수업..
아침부터 밤까지 피로에 찢어 사는 학생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렇게 제대로 된 공부일까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자 각 서울시민 누구나 (만 19세 이상)

목표인원 약 81,885명 이상(서울시민의 1%)

중요사항 저별로 서명한 서명용지 원본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학생인권 지킴이가 되는 방법!

서울시민의 1% 약 1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저명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 조세제정 청구가 처음 정치는 아니지만 서울시민의 권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의 주민공인 청소년의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임법청원 서명발동에 동참해주세요!
- ▶ 주변 친구와 이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 ▶ 서울운동본부에 귀속된 청소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으며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의견 수렴(인성) 대성 설문조사 및 학생인권청원서 제출 수진 등, 선진 홍보물(러닝, 토론회, 영상, 캠페인 활동 전개, 포스터 등) 등의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서울학교 만들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시대를 열자



홈페이지 : www.sturighnow.net
 전 화 : 02-582-8884
 이 메 일 : ms3388@gmail.com
 주 소 : (156-03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성지빌딩 8층

이제 학교가 달라집니다.

'학생인권조례'로 130만 서울 학생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생활, 수업부터 강제하지, 양립한 생활-

그동안 학교는 일관된 교문 앞에서 멈추거나 또는 막힌 사람이 살아남는게 최우선으로 보였어야 할 인권의 가치적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 희망적이고 활력적인 학교생활, 기쁨과 도전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승차카드와 담뱃잔 학교 생활에서 학생은 자기 삶의 소중함과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살아가 위해서 학교는 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130만 서울학생들의 인권이 승려 수 있는 서울교육을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교에서 풀려나 싶네요.

● 특이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안합니다. 학생의 신체적 안전을 떠나서는 생활의 질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차별금지 항목 권리의 조소 학생의 권리보장 : 학생이라는 이유, 재, 가나에서는 이유 등 마음의 근근이 차별을 받거나 차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 학생을 살릴 권리의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구분되는 자신의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별규제, 중앙학생규제 등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행동권과 강제가 보장됩니다.

장교와 교직원의 자유 : 학교에서 강제는 금지, 강제교육, 이강제교육 학생의 인권과 배움을 해치는 학생들의 강제를 해치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강제를 없애고 보충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생의 선택을 보장해줍니다. 다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만듭니다.

다문화, 소통의 학교운영이 실현됩니다.

다문화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학생들의 학교규정 제정 참여 권리 : 학교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등한 소통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은 피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책임지는 주체가 됩니다.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책임적 직선,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의 실시가 성공하려면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에 학생인권조례를 지원하고, 또한 학생의 인권교육을 위한 학교에 학생인권조례를 지원하고, 학교 내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학생들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학생들의 학교규정 제정 참여 권리 : 학교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등한 소통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은 피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 협약' 체결식 참여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제안서」, 2010. 05. 06.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 협약’
체결식 참여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제안

수신: 인권·교육·사회단체

발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가) 준비단체

날짜: 2010년 4월 30일(금)

문의: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017-214-3550),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010-2840-3328), 박진(다산인권센터/017-268-0136), 김재석(전교조 서울지부/011-9993-1999)

교육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물결치기를 기대하는 인권·교육단체들입니다. ‘학생인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단체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교육감 예비후보들과의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 협약 체결식’에 연명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예비후보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 때 : 2010년 5월 10일(월) 오후 2시
- 곳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 주요 내용 : 서울 광노현 예비후보, 경기 김상곤 예비후보 등 교육감 후보들 발언/ 협약 참여 단체 대표 발언/ 협약 체결식

□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교육감 예비후보가 등록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울산, 광주 등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상급식에 이어 **바야흐로 전국적인 교육감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3개 모든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장 공약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협약 체결의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하여 학생인권 신장 정책이 전국적인 공동 공약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후보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려면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을 별도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교육감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5월 10일(월) 오후2시에 협약 체결식을 갖고자 합니다. 서울·경기의 경우에는 광노현, 김상곤 두 예비후보가 함께 모여 **합동 체결식을 갖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서울·경기 외 지역의 경우에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함께 오셔도 합동 체결식을 가지셔도 좋고,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체결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만 협약 체결과 관련한 향후 계획과 일정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지역별 상황은 서울 협약식 때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은 5월 6일(목) **낮 12시까지 연명 여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식 당일에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연명 및 참여 여부 보내실 곳 : dlhredu@gmail.com

2)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첫 회의]

- 때 : 2010년 5월 6일(목) 오전 10시
- 곳 : 인권교육센터 '들' (서울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 안건 : 협약 체결식 준비/ 준비모임 구성 취지 공유/ 향후 사업 계획 논의

□ 교육감 후보들이 조례 제정을 약속하더라도 이 일을 **교육감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도 교육 진영이 준비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바닥에서부터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 이에 '협약 체결 단체로의 참여'를 넘어서서 **교육감 선거 이후까지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을 책임있게 벌여나갈 단체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가) 준비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준비모임은 전국 각지의 실천을 연결하고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하는 네트워킹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5월 6일(목) 준비모임 첫 회의에 오셔서 협약 체결식 실무 준비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장소 찾아오시는 길] ☞ 약도 확인 <http://www.dlhre.org/intro.php?no=04>)



※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첨부 자료>

보수는 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의미와 파장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광주, 경남 등지의 교육·인권단체들이 몇 해 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 하면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 되자마자, 보수언론과 보수 교사·학부모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보수진영이 학생인권조례에 붙인 딱지들은 ‘반(反)교육’, ‘교육 황폐화 우려’, ‘좌빨 교육감의 학교 장악 시도’ 등이었습니다. 왜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했던 것일까요? 단지 김상곤 교육감이 미워서였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 학생인권, 왜 교육혁명의 핵심인가?

-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으면서 인권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다양성을 교육의 초석으로 삼아 차별에 맞서는 학교 △자유의 공기를 흡입하면서 책임감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교 △다양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학교 △학생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굴러가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의 반대편에는 통제, 강압, 불평등, 차별, 획일, 특권, 배제, 권력독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보수진영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자유로운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닙니다.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입니다. 그들은 가혹한 경쟁 시스템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학교의 진실이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유와 참여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생 위에 군림하는 교육, 특권과 차별을 양산하는 교육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봐도,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전받고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시민으로,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합니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청소년들을 무대에서 쫓아내기 위해 학생을 억압하는 통제장치들과 경쟁교육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이 교육혁명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 더불어 학생인권이 보장돼야 교사 인권, 학부모 인권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훈육과 경쟁 시스템 속으로 몰아넣고 감시하는 간수(看守)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와 자녀의 관계 역시 피폐해지고 폭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정권과 교육체계가 부여한 간수(看守)의 역할을 그만둘 때, 그들의 삶도 좀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강압과 통제와 차별을 거둬낼 때 진정한 교육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구조적 약자인 학생 위에 군림함으로써 권위를 유지하려는 관행이 사라지고, 정권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교권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담기나?

1)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공식화합니다.

- 학교현장에서는 두발·복장규제, 체벌, 소수자 차별, 강제 야자와 보충, 종교 강요, 학생자치활동 탄압 등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논란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공식적 규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례는 학생의 자유, 복지, 안전, 교육, 참여에 대한 권리는 물론, 성적·성별·장애·빈곤·다문화 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게 될 것입니다.

2)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구제기구를 설치합니다.

- 막상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도, 학생인권을 후퇴시킬 조치가 취해져도 막상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봐도 묵묵부답이고 국가인권위나 사법기관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구조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일례로 ‘학생인권옹호관’(일종의 옴부즈퍼슨 제도)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법제화합니다.

- 학생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생참여 진흥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이런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무엇을 일구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본격화는 조례 제정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학생인권에 관한 고민을 숙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학생인권이 학생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지를 깨닫는 계기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모델을 만드는 실험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2) 학생들을 변화의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 가장 중요하게는 학생들이 변화의 경험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가 학생들 자신의 삶의 문제와 만나 흡입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침묵과 체념의 문화를 넘어 변화의 주역으로 나설 때, 경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교육현장도 바

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온갖 불이익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10년 넘게 학생 인권 보장 목소리를 내어왔던 활동가들에게도 패배적 분위기를 넘어 운동적 결실을 맺는 계기를 열어줄 것입니다.

3) 교육3주체의 연대를 기초로 지역활동을 강화합니다.

- 학생인권이 보장될 때 갈등으로 얼룩진 교육3주체 사이의 실질적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각 지역별 연대활동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자료집, 2010. 05. 10.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지난 5월 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준비모임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어온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청소년단체, 인권단체, 교육단체, 시민 사회단체 등이 함께 결성하였으며,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 협약식’을 제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경기, 인천의곽노현, 김상곤, 이청연 예비후보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 사회단체 참가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 때 : 2010년 5월 10일(월) 오후 2시
- 곳 : 한국건강연대

■ 순서:

1. 여는말
2. 교육감 예비후보 참가자 발언
3. 협약 체결식
4. 기자회견문낭독
5. 학생인권조례 학생 서명운동 전달
6. 준비모임의 이후 사업계획 발표
7. 퍼포먼스

<협약서>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서

2010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에서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과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학생인권은 교육입니다. 학생인권이 교육의 전과정에서 온전하게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시민 사회에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학생 인권 조례를 청소년·인권·학부모·교사 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겠습니다.

하나,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교사의 인권 또한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0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장 은 숙 (서명)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 상 곤 (서명)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곽 노 현 (서명)
인천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이 청 연 (서명)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	민병희	경상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박종훈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장휘국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정만진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박영관	울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장인권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장만채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승환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병우		

2010년을 학생인권의 원년으로!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인권이다. 학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과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인적인 경쟁과 부당한 통제의 관습은 학생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는 초라하게 버려졌다. 학교현장에서 자의적 인권 제한이 넘쳐나고 있다는 유엔의 지적조차 잊힌 지 오래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특권과 강압, 차별과 배제가 넘쳐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두려움과 모멸감에 떨게 만드는 교육에서, 학생을 신뢰 않는 교육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를 볼모로 잡아 절망케 하는 교육에서 희망을 꿈꿀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학생의 인권을 본디 자리인 교육의 주춧돌로 돌려놓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학생 인권은 관행적으로 읊어대는 미사여구여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임시방편도, 진실을 가리는 장식품이어서도 안 된다. 학생 인권은 교육정책의 변방으로 쫓겨나거나 차일피일 유예되어서도 안 된다. 학생 인권은 교육당국의 정책 지원, 학교당국의 변화 노력, 교육3주체의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감시와 협력이 함께 갈 때 비로소 꽃핀다. 오는 6월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을 핵심 교육정책으로 삼을 것을 함께 결의한 이유다.

특히 우리는 학생인권 신장 노력 가운데 하나로서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올 반향에 주목한다. 조례 제정은 자유와 참여, 안전과 복지, 감당할 만한 배움과 다양성을 기치로 학생인권의 세부 기준을 공식화하는 일이다. 조례 제정은 인권문제의 해결을 호소할 공정한 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정책을 법제화하는 일이다. 조례 제정의 과정 역시 학생인권 관련 사회적 논의를 성숙시키고 학생·교사·학부모 상호간의 깨어진 신뢰를 회복할 거름을 뿌리는 과정임에 틀림없다.

오늘 이 협약식에 함께한 우리들은 학생인권정책이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은 학생의 목소리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한다. 오늘의 다짐을 기억하며 학생이 존엄하고 평등한 교육의 밥상에 둘러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년을 학생인권의 원년으로 만들자.

2010년 5월 10일

교육감 예비 후보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이청연(인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정책 협약식 참여 연명 단체 일동

(교육공동체‘나다’, 군인권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동성애자인권연대, 두리하나공부방, 문화

연대, 다산인권센터, 범국민교육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학벌없는사회, 공공노조서경지부학교비정규직분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살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교육자치를 위한 군포시민의 모임, 수원사랑연대, 수원KYC,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관악동작지역학교운동위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경기교육운동연대‘꿈’, 경남교육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학생행진)

<자료 1>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의 의의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학생인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학생이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권리를 맞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상식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86년 오늘은, 교사들이 군사정권의 폭압 아래에서도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한 날입니다. 교육민주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육이 정권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 교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학생이 자유를 누리고 배움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교육의 민주화는 완성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지만, 학생인권은 더더욱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태풍의 눈이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 주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평등하게 밥 먹을 권리는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육되는 동물에게 똑같은 사료를 나눠준다고 해서 동물의 인격이 보장되는 것 일까요? 교육의 밥상에는 먹을 것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 참여, 복지, 안전, 학생이 육체적·정서적·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 이 모든 것이 올라간 밥상이어야 제대로 된 밥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2010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예비후보들이 여럿입니다. 서울, 경기, 전북, 전남, 광주 등. 또한 학생인권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은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대다수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학생인권이 민

주와 진보의 표준으로, 시민사회의 상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온갖 불이익과 모욕을 감수해야 했던 학생인권운동이 작게나마 거둔 결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 공약이 2010 교육감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미 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의해 추진되면서 많은 우려와 갈채를 한 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빚어졌지만, 그 바람에 우리 사회가 학생인권을 좀더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학습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18조4항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교직원 등에게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선언에 불과하지 않도록 구체적 실천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제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힘있게 제정되고 책임있게 이행되고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만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 당사자는 물론, 교사, 학부모, 우리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모시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신장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대사회적으로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상대방으로 참여하는 우리 인권·교육·사회단체들도 학생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을 건인·협력하며 아래에서부터 학생인권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자료2>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사업계획

지난 5월 6일 학생, 학부모, 인권 및 제 교육 시민 사회단체 등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준비모임은 그동안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학생조례제정'을 전국화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공세는 학생인권을 더욱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자율화조치라는 미명하에 부활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권적인 조치들은 일제고사, 교원평가와 같은 평가와 점수를 통한 서열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사고 등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이자 입시몰입학교의 확대는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서열화하고 입시경쟁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제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또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한편 학생인권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발규제는 불가피하다"거나 심지어는 "학생인권에 대한 강조는 교권을 침해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절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간의 소통이 요구됩니다.

□ 더욱 중요하게 조례제정은 형식적인 서명이나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적인 것으로 왜곡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의 제 주체들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생인권의 개선이 단지 학생인권조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학생인권의 문제가 입시경쟁체제를 비롯한 제반의 교육시장화와 그리고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문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의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시민 사회단체 제 주체들이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학생인권침해사례 전국실태조사

□ 조례제정이 몇몇 전문가들의 탁상에서의 작업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의 생생한 요구가 담겨지지 위해서, 그리고 학생인권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실사구시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이를 위해 준비모임은 제 교육주체들과 함께 학생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의 의의를 더욱 대중적으로 확인받고, 조례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와 근거를 만드는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 시민추대방식의 교육감 후보들이 조례 제정을 약속하더라도 이 일을 **해당 지역 교육감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자기 요구로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 나아가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도 대중적인 요구와 참여에 기반한 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순회토론회의 성과에 기반 하여 향후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 청소년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그 의의와 함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조례제정은 학생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틀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입시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례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학생인권조례는 그 의의에도 학교안의 학생에 대한 인권으로 그 공간적인 범위가 제약됩니다. 즉 학생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실이나 학교밖의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은 조례를 둘러싼 협의의 논의와 실천에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 문화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에 취약합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모임은 청소년 인권개선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등을 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주요한 교육주체들이 모여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학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등이 함께 청소년에 억압적인 학교문화와 사회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학생인권, 왜 핵심 교육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 학생인권, 왜 교육혁명의 핵심인가?

-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학생인권의 반대편에는 통제, 강압, 불평등, 차별, 획일, 특권, 배제, 권력독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정책은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인권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다양성을 교육의 초석으로 삼아 차별에 맞서는 학교 △자유의 공기를 흡입하면서 책임감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교 △다양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학교 △학생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굴러가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교육'은 자유로운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닙니다.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입니다. 자유와 참여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생 위에 군림하는 교육, 특권과 차별을 양산하는 교육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봐도,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전받고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시민으로,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합니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청소년들을 무대에서 쫓아내기 위해 학생을 억압하는 통제장치들과 경쟁교육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이 교육혁명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 더불어 학생인권이 보장돼야 교사 인권, 학부모 인권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훈육과 경쟁 시스템 속으로 몰아넣고 감시하는 간수(看守)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와 자녀의 관계 역시 피폐해지고 폭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정권과 교육체계가 부여한 간수(看守)

의 역할을 그만둘 때, 그들의 삶도 좀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강압과 통제와 차별을 거둬낼 때 진정한 교육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구조적 약자인 학생 위에 군림함으로써 권위를 유지하려는 관행이 사라지고, 정권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교권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담기나?

1)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공식화합니다.

- 학교현장에서는 두발·복장규제, 체벌, 소수자 차별, 강제 야자와 보충, 종교 강요, 학생자치활동 탄압 등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공식적 규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례는 학생의 자유, 복지, 안전, 교육, 참여에 대한 권리는 물론, 성적·성별·장애·빈곤·다문화 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게 될 것입니다.

2)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구제기구를 설치합니다.

- 막상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도, 학생인권을 후퇴시킬 조치가 취해져도 막상 어디에 다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봐도 묵묵부답이고 국가인권위나 사법기관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구조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일례로 '학생인권옹호관'(일종의 옴부즈퍼슨 제도)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법제화합니다.

- 학생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생참여 진흥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이런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무엇을 일구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본격화는 조례 제정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학생인권에 관한 고민을 숙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학생인권이 학생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지를 깨닫는 계기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모델을 만드는 실험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2) 학생들을 변화의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 가장 중요하게는 학생들이 변화의 경험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가 학생들 자신의 삶의 문제와 만나 흡입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침묵과 체념의 문화를 넘어 변화의 주역으로 나설 때, 경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교육현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3) 교육3주체의 연대를 기초로 지역활동을 강화합니다.

- 학생인권이 보장될 때 갈등으로 얼룩진 교육3주체 사이의 실질적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각 지역별 연대활동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권우성 기자, 이주연 기자, 「억압·경쟁·차별 밟고 선 광노현·김상곤·이청연 진보진영 교육감 예비 후보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약속」, 오마이뉴스, 2010. 05. 11.

억압·경쟁·차별 밟고 선 광노현·김상곤·이청연

진보진영 교육감 예비 후보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약속

10일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에서는 학생 인권 신장의 움직임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정책 협약식이 있었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는 한 자리에 모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진보진영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책협약 체결식은 교육공동체'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들 등의 단체들이 모여 꾸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에서 마련한 자리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는 협약 체결식에서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다'며 아이들이 누려야 참여의 자유를 부인해 왔다"며 "학생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는 "서울·경인 지역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기 책임 의식을 가지며 건강한 시민으로, 인재로 커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는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인 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진정한 교육을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민주진보진영 수도권 교육감 예비후보인 김상곤(경기도), 광노현(서울), 이청연(인천) 후보가 10일 오후 종로구 건강연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에서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우성

학생 인권 현실 제대로 보라, 수수깡 안경 선물

체결식 자리에는 청소년들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학생인권 제정을 요구하는 1351명의 청소년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집. 무한 경쟁 등 암울한 현실에 가려진 학생 인권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의미인 수수깡 안경.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 귀를 열어두라는 뜻인 귀이개까지. 뼈가 있는, 그러나 정성도 담긴 선물이 예비 후보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예비 후보자들은 선물에 답하듯 수수깡 안경을 직접 끼고 인증샷까지 선보였다.

예비 후보자들이 함께 하는 기발한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준비모임 측은 억압과 차별·경쟁이라는 넘을 수 없는 강을 나타내는 천을 바다에 깔더니 김 예비 후보에게 '학생', 곽 예비 후보에게 '인권', 이 예비 후보에게 '조례'라는 팻말을 들게 했다. 그 후 청소년 활동가들이 징검다리 팻말을 들고 와 후보자들 앞에 놓인 천에 팻말을 나란히 늘어놓았다.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은 징검다리를 밟고 강을 건넜다.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감 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청소년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가자는 뜻이다.

강을 넘은 예비 후보자들 앞에 또 하나의 벽이 생겼다. '얼차려, 소지품 검사' 등 학생들의 인권을 해치는 단어들이 적힌 벽이다. 예비 후보자들은 그 때까지 들고 있던 팻말을 벽에 붙여 벽을 꾸뚼었다. 그 후 후보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뒤집은 큰 벽에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학교'라 적혀 있었다.



▲ 민주진보진영 수도권 교육감 예비후보인 김상곤(경기도), 곽노현(서울), 이청연(인천) 후보가 10일 오후 종로구 건강연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에서 학생들이 '무한경쟁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는 암울한 학생인권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선물한 '안경'을 끼고 활짝 웃고 있다. © 권우성



▲ 민주진보진영 수도권 교육감 예비후보인 김상곤(경기도), 곽노현(서울), 이청연(인천) 후보가 10일 오후 종로구 건강연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차별, 억압, 경쟁, 폭력을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참여를 제안합니다!

수신: 인권·교육·사회단체

발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날짜: 2010년 6월 14일(월)

문의: 배경내(017-214-3550)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인권·교육단체들입니다. 지난 5월 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을 결성한 뒤, 5월 10일 전국 12개 지역 민주진보 교육감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 현재 참여단체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서울지부, 전교조울산지부, 전교조전북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 @ (추가 확인중)

- 지난 6.2 교육감선거를 통해 6개 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 전망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선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를 특권 교육과 신민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보수세력들이 학생인권조례에 강력 반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역풍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관한 튼튼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의 의식도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제정 과정은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학습 과정의 성격을 담보해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진보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도,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어떤 교육감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림없이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닥에서부터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도 교육진영이 준비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저희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펼치기 위한 운동본부가 각 지역 주체들의 힘으로 건설되고 힘찬 물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에 참여해 주세요.

- 가장 먼저 서울에서부터 지역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조례제정의 선례를 일구어내고자 합니다. 7월 7일 출범과 함께 기념 토론회를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부디 서울운동본부에 함께하면서 학생인권 담론 확장과 조례제정운동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향후 주요 일정

: 7월 7일(수) 서울운동본부 발족식 & 발족 기념 토론회

[1부] 서울운동본부 발족식

- 때: 7월 7일(수) 오후 2시
- 곳: 서울시교육청 앞

[2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때: 7월 7일(수) 오후 3:30
- 곳: 프란체스코교육회관(가안)
- 주요 내용: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의와 쟁점/ 기존 선례 검토와 바람직한 서울지역 조례추진 방향/ 청소년 참여권 보장 방안 등
- 토론자 : 학생/교사/학부모/학계/지역 등(섭외중)

-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시고 함께하실 단체들은 6월 17일(목) 낮 1시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고, 같은 시간에 예정된 회의에도 참석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회의에서는 조례 추진 방향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참여 여부 보내실 곳 : dlhredu@gmail.com

☞ 차기 회의 : 6월 17일(목) 1시, 인권교육센터 '들'

[회의 장소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충정로역 5번출구 나와 걸어서 3분 거리

☞ 약도 확인 <http://www.dlhre.org/intro.php?no=04>

김원정 기자, 「조선·동아, 이전 중고생에게도 '좌빨타령'? [아침신문 속아보기] 학생인권조례 운동에 "인권 포폴리즘… 학생 흥위병 키우나」, 미디어오늘, 2010. 07. 02.

조선·동아, 이전 중고생에게도 '좌빨타령'?

[아침신문 속아보기] 학생인권조례 운동에 "인권 포폴리즘.. 학생 흥위병 키우나"

민선 5기 지방정부를 이끌 광역단체장들이 1일 전국에서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를 뺀 15명의 시도 교육감도 이날 일제히 취임식을 했다. 이들 가운데 서울경기 등 6곳의 교육 수장이 '진보 교육감'이다. 이들 6개 시도에는 전체 학교의 52.4%, 전국 학생의 56.3%가 속해 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진보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과 한국 교육을 양분하며 교육의 가치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했다.

'MB식 교육정책 브레이크 걸리나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가 민선 교육감 시대의 막이 올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아 오는 11월7일 취임한다.

세계일보보는 4면에서 이날 취임한 지역별 교육수장은 서울 광노현, 부산 임혜경, 대구 우동기, 인천 니근형, 대전 김신호, 울산 김복만, 경기 김상곤, 강원 민병희, 충북 이기용, 충남 김종성,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경북 이영우, 경남 고영진, 제주 양성언 교육감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에 광노현, 장휘국, 김상곤, 민병희, 김승환, 장만채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6명이나 돼 이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교육정책 수행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벗어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에서 '원조 진보'로 불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참여협육'을 표방했으며,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2012년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민선 첫 여성 교육수장인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섬세한 리더십으로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고, 보수 성향의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유비쿼터스 스테디 환경'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았다.

니근형 인천교육감은 인천이 전국 학력 꼴찌라는 오명을 벗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김신호 대

전교교육감은 '학력 A+' 등 8 가지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교시설공단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고입 연합고사 부활,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상향식 평준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비리 척결,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명품교육,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공제형 교육자산 형성 프로그램, 양성언 제주교육감은 제주국제학교 성공을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 실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일제고사와 관련해 “일제고사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 동아 "학생인권조례=포퓰리즘 발상"

전교조 지역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에서 "경

세계일보

민선교육감시대 개막-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 직무 시작

'MB식 교육정책' 브레이크 걸리나

진보성향 6명 '변화' 움직임- 교과부와 벌서부터 마찰음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이 1일 일제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 민선 교육감 시대 개막이 올랐다. 공화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한 언론 일 교육감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아 오는 11월7일 취임한다. 이날 취임한 지역별 교육수장은 서울 권노훈, 부산 임태경, 대구 우동기, 인천 나균, 대전 김진호, 울산 김복만, 경기 김성근, 강원 민병희, 충북 이기용, 충남 김종성,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석, 경북 이영우, 경남 고영진, 제주 양성언 일 교육감이다.

이 중에 권노훈, 장우익, 김성근, 민병희, 김승환, 임태경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6명이나 돼 이들이 중정영(당)의 권계를 어떻게 상향하고, 교육정책 수행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벗어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일제 관료'로 불리는 김성근 경기교육감은 시범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참여형'을 표방했으며, 전국교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2012년 고교 평준화 실시 이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민선 첫 여성 교육수장인 일제경 부산교육감은 철저한 리더십으로 지역 내 교육자 재호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고, 보수 성향의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유니버시티스타 디 원샷'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나경문 인천교육감은 인건비 확대 공백이라는 오명을 받는 태 총각을 기용하겠다고 밝혔고, 김진호 대전교육감은 '학력 A+' 등 8가지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

복만 울산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교시설공단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고입 연합고사 부활,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상향식 평준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비리 척결,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명품교육,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공제형 교육자산 형성 프로그램, 양성언 제주교육감은 제주국제학교 성공을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 실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일제고사와 관련해 “일제고사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며 교과부와 벌서부터 마찰음이 걸리나”고 말하며 “일제고사 실시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공간이지 교과부가 이해와 재해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전국 일제고사 참여 여부도 학생에게 맡겨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대체 제형학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전주-창주=이은선·박종훈·김종지 기자



이일 취임 첫 공식 업무로 호명여생과제인사를 선취한 김성근 경기교육감이 경기 성남시 보명초등학교를 찾아 학교는 학생들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025 54 19 44

▲ 7월2일자 세계일보 4면

朝鮮日報

2010년 07월 02일 31면 (오리니언)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

전교조 지역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오는 7일 발표하는 이 모임은 참여 제안서에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6개 지역에 민주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망이 밝아졌다”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수진영이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이라며 “학생 인권을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안(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의 자유,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학생 신분에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게다가 이번 제안서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의 것도 아니다. 제안서는 2008년 촛불시위에 나왔던 10대 청소년

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을 ‘정치 주체’로 키워주고 있다고. 초·중·고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내용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을 하기 쉽다. 2년 전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처음 일어났을 때 참가자의 80% 이상이 중·고생이었다. 이들은 병든 소가 주저앉고 고꾸라지는 PD수첩의 선정적 장면과 분유·치즈·라면을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인터넷 괴소문도 이끌려 “이제 열다섯살인데 벌써 죽기는 싫어요”라며 참제전 광장으로 달려나왔다. 10대들은 이번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우측실 좌초실·내부파괴실 같은 인터넷 유언비어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또다른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렸다.

인터넷 선동과 유언비어에 휩쓸리기 쉬운 10대들 ‘정치 주체’로 키우려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은 정치꾼,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이 외부 세력 조종을 받아 ‘평준화 확대하라’ ‘등록금 없애라’ ‘특목고 폐지하라’며 집단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116.94.81cn

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은 차별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의 자유,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등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학생 신분엔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제안서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의 것도 아니라 2008

년 촛불시위에 나왔던 10대 청소년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을 '정치의 주체'로 키우자고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에서 "친전교조 세력은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고, 시도 의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당선자가 대거 나온 데 고무돼 있다"며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교생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후보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條例)'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가 발족한다. 친전교조 세력은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고, 시도 의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당선자가 대거 나온 데 고무돼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김성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했다가 도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보류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담긴 개연성이 높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초안에는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집회결사의 자유 및 교육 정책 참여권 허용, 정규교과 외(外) 학습 선택권이 들어 있었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드시 비교육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교생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만 해도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다. 학생들

에게 교육 대신 사복을 입게 하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는 좌파 세력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채증 간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나 학교 운영 참여권, 정규 교과 외 학습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은 훨씬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최근 서울운동본부 참여제안서에서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정받고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중심을 교방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시민으로,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에는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평우형 촛불시위 때 일부 청소년들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를 이렇게 미화할 일인가. 교육계 전체가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친전교조 세력이 학생 인권의 대변자인 양 행동하는 데는 기존 교육현장의 책임도 크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학부모도 교사들이 실력 열정 도덕심을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17.0*10.1)kr

▲ 7월2일자 동아일보 사설

[사설]자기 자식이라도 ‘피켓시위’ 보고만 있겠나


그제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식에서 중학교 3년 여학생이 축사를 했다. 여학생은 “일제고사는 1점 차로 수천 명의 학생을 줄 세우는 시험이다. 이런 시험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느냐”라며 일제고사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청소년 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청소년단체 소속 청소년들은 ‘인권조례 ○’ ‘무상교육 ○’ ‘일제고사 ×’ ‘교원평가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취임식장이 온통 ‘전교조 구호’로 채워지다시피 했다.

현 정부와 교육관을 달리히는 교육감의 등장을 지축하는 자리라고 해도 너무 심했다. ‘일제고사’를 비판한 여중생은 전교조 교사의 추천으로 축사를 하게 됐다고 한다. 청소년단체 회원들은 비록 자발적으로 참석했다지만 주최 측에서 방조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무관한 교원평가에 대해서까지 ‘피켓시위’를 통해 의견을 나타냈다는 것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여중생의 축사 내용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일제고사’는 전교조가 자신들이 반대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과학습 진단 평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말로 실제 교육정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또 이들 평가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이나 각 과목의 부문별 성취도만 표시할 뿐 점수를 공개하지도, 줄 세우기를 하지도 않는다. 전교조의 왜곡 선전을 그대로 따라한 것인지, 아니면 전교조 교사가 시켜서 한 말인지 궁금하다. 여중생의 축사에 객석에서 “옳소”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광 교육감도 박수를 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학생들에겐 인성 교육도 필요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학습이 더 중요하다. 외국어고에 비판적인 광 교육감이 자기 아들을 외고에 진학시킨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방과 후 수업에 극력 반대하던 어느 전교조 교사는 자기 자식이 방과 후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선 몹시 흐뭇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대상으로 어설픈 이념교육을 실험하려는 것은 역겨운 이중성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특정 이념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학생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광 교육감은 취임식장에 나온 여중생과 청소년들이 자기 자식이었더라도 보고만 있었겠는가.



열령 오세요~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토론회

때 : 2010년 7월 7일 수요일 2시
 곳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 (서대문역5번출구)

두발복장규제, 체벌, 강제야자... 차별, 폭력, 경쟁, 독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외쳐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모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주, 경남,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도 올바른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으려 합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ㅋㅋ


[1부] 발족식 (좀 덜 지루하게..) 오후 2:00 ~ 2:40

- 발족 취지와 경과 보고
- 축사 ○ 퍼포먼스

[2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 오후 3:00 ~ 5:00

- 축사 :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의원
- 발제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과 과제 김재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토론 :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조영년 (서울 경인고 교사)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도상의 변화 하승수 (전 제주법대 교수)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사례의 시사점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학생참여방안 학생 1인 (법외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준비 서울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토론회

일시: 7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

주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 서울모임

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분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토론회 순서

[1부] 서울본부 발족식

- 때: 7월 7일(수) 오후 2시
- 곳: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
- 주요 내용

- 사회 : 상필(장애인교육권연대)

1. 축사 : “함께 응원하는 학생인권조례“ - 함께 하는 이들의 축사 한 마디!
2. 취지와 경과보고 :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3. 창립선언문 낭독 : 청소년1인, 교사1인 공동 낭독
4. 퍼포먼스 : “우리가 만들어갈 학생인권조례” - 청소년, 교사, 학부모, 시민

[2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

- 때: 7월 7일(수) 오후 3시
- 곳: 프란체스코교육회관 3층
- 주요 내용

- 사회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여는말] 박경석(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축사]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의원

[발제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발제 2]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과 과제 : 김재석(전교조서울지부)

[토론]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도상의 변화 : 하승수(전 제주법대 교수)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 조영선(서울 경인고 교사)

학생 참여 방안 : 김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 모임)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 강혜승 (참학서울지부)

지역 추진 사례의 시사점 :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구성 경과보고

- 2010년 4월 23일 ‘범국민교육연대’에서 청소년인권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교육 인권 단체 공동 워킹숍을 제안하여 진행함.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의 필요성을 공유함

: 후속 모임을 진행하기로 함

- 2010년 4월 27일 후속모임 진행.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단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함.

- 2010년 5월 6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구성을 결의. 1차 회의 진행함.

: 준비모임이 제안하여 교육감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중심내용으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함.

- 2010년 5월 10일 교육감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관련 정책 협약식을 진행함

- 2010년 5월 25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2차회의

- 2010년 6월 0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3차회의
 - : 준비모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 : 서울지역을 필두로 지역 준비모임을 결성하기로 함
 - : 서울운동본부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발족식 토론회 일정 확정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예정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사업계획

지난 5월 6일 학생, 학부모, 인권 및 제 교육 시민 사회단체 등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준비모임은 그동안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학생조례제정’을 전국화 하는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공세는 학생인권을 더욱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자율화조치라는 미명하게 부활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권적인 조치들은 일제고사, 교원평가와 같은 평가와 점수를 통한 서열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사고 등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이자 입시몰입학교의 확대는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서열화하고 입시경쟁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제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또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한편 학생인권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발규제는 불가피하다”거나 심지어는 “학생인권에 대한 강조는 교권을 침해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절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간의 소통이 요구됩니다.

□ 더욱 중요하게 조례제정은 형식적인 서명이나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적인 것으로 왜곡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의 제 주체들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생인권의 개선이 단지 학생인권조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학생인권의 문제가 입시경쟁체제를 비롯한 제반의 교육시장화와 그리고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문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의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시민 사회단체 제 주체들이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학생인권침해사례 전국실태조사

□ 조례제정이 몇몇 전문가들의 탁상에서의 작업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의 생생한 요구가 담겨지지 위해서, 그리고 학생인권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실사구시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이를 위해 준비모임은 제 교육주체들과 함께 학생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의 의의를 더욱 대중적으로 확인받고, 조례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와 근거를 만드는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 시민추대방식의 교육감 후보들이 조례 제정을 약속하더라도 이 일을 **해당 지역 교육감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자기 요구로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 나아가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도 대중적인 요구와 참여에 기반한 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순회토론회의 성과에 기반 하여 향후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 청소년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그 의의와 함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조례제정은 학생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틀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입시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례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학생인권조례는 그 의의에도 학교안의 학생에 대한 인권으로 그 공간적인 범

위가 제약됩니다. 즉 학생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실이나 학교밖의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은 조례를 둘러싼 협의의 논의와 실천에 제약 될 수 밖에 없으며,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 문화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에 취약합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모임은 청소년 인권개선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등을 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주요한 교육주체들이 모여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학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등이 함께 청소년에 억압적인 학교문화와 사회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발족 선언문>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우리는 오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교육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교육, 체벌·폭언·차별 등 온갖 인간적 모멸이 판치는 교육, 거짓 동의와 거짓 자백이 강요되는 교육, 격려와 소통은 온데간데없고 강압과 지시만이 지배하는 교육이 우리가 떠나온 출발지다. 존중의 기쁨과 자유의 공기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뱃머리에 서서 우리의 항해를 재촉한다. 부당한 규정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숨바꼭질을 벌이느라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찾을 길 없던 교사들이 함께 승선했다. 가혹한 경쟁과 훈육 시스템에 학생들이 불모잡혀 있는 사이 자신조차 불모가 돼야 했던 학부모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외려 독재와 차별의 가치를 확산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는 시민사회도 우리 항해의 동반자다.

우리 앞에 놓인 기나긴 항해의 첫 정박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자유와 참여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감당할 만한 배움과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 차이가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복원된 학교를 그리는 기본 설계도다. 신민 양성과 특권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교육을 본디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변화의 물꼬다. 이 항해는 '다른 교육은 가능하다'고 믿는 시민들의 열망과 행동을 동력 삼아 전진한다. 교육감의 의지나 교육청의 역할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이유다.

우리의 항해가 순조로울 리 없다. 벌써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보수의 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성숙한 학생에게 인권은 위협하다는 꼬드김이 시민들을 현혹한다.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채질하는 손길도 바쁘다. 교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으름장도 만만찮다. 우리는 '학생도 인간'이라는 소박한 진실, '성숙은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할 기회에 비례한다'는 믿음, '학생이기에 더더욱 풍요로운 권리를 맞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침반 삼아, 저 역풍을 단호히 돌파하면서 힘찬 항해를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항해는 서울에서 멈출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곳곳에서 힘찬 날갯짓을 펴는 그날까지, 힘차게 노 저어 나가자.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저 견고한 학교의 담장을 녹이고 인권이 꽃피는 새로운 교육을 일구어내자.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 축하 메시지

경기도에 이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발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무한입시경쟁 속에서 외면당해 왔던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만큼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학부모들 역시 학내외 인권침해적 상황을 개선할 교육 현장 내 조례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이제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와 힘찬 연대 활동으로,
군계 달힌 교문을 활짝 열고 학생 인권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고 교사는, 몽둥이를 내려놓고 간수가 아니라 진짜 교사가 될 수 있기를!!!
- 전교조서울지부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첩경입니다."
- 문화연대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청소년그대들이 주인입니다. ^^
- 원불교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능력이 발현되는 교육이 아니라,
오로지 '좋은 학벌'이라는 특권계층의 성체에 들어가게끔 강요하는 입시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꿈꿀 권리를 빼앗기고
종종 학교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나 단단한 '학벌사회'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 안에서의 권위주의와 왜곡된 위계 질서를
민주적 관계로 되돌리고 '교육' 본연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학교 운영 주체가, 교사들이
'학생'을 '지금, 현재의 민주 시민'으로 바라보게 될때
비로소 큰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야말로 그러한 움직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벌없는사회' 또한 서울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은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초석입니다.

학생인권의 반대말은 방종도, 방임도, 무책임도 아닙니다.

학생인권으로 그리는 자유롭고 차별 없는 교육이,

사람 냄새 나는 교육이 성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첫 발걸음이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 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 서울 본부 발족을 두손활짝 벌려 환영합니다. 외락 외락!!

광주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꼬물 꼬물 피어났지요? 그 과정에서 옆치락 뒷치락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움직임 때문에 지금의 서울운동본부도 태어나지 않았나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고했나요? no~no~ 어쩌면 조금 늦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소년인권의 주체인 청소년과 그리고 많은 인권 옹호자들이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갔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권이지 않을까합니다.

서울본부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역본부가 그물망이 되어 잘 흐르는 인권의 물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추카 추카~

- 다산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 환경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합니다.

- 친구사이

서울본부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를 기원하며...

-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학 생에게 인권이 어딴어! 공부나 해! 라고

생 각하시는

인 간님들에게 고한다.

권 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떳다!! 무섭지~

-진보교육연구소

학생들은 더이상 어른들의 통제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는 살아있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조례가 자리잡는 그 날까지 공감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첫 걸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으로 시작합니다.

노동자학부모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

- 때: 7월 7일(수) 오후 3시
- 곳: 프란체스코교육회관 3층
- 주요 내용

- 사회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여는말] 박경석(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축사]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의원

[발제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발제 2]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과 과제 : 김재석(전교조서울지부)

[토론]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도상의 변화 : 하승수(전 제주법대 교수)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 조영선(서울 경인고 교사)

학생 참여 방안 : 김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 모임)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 강혜승 (참학서울지부)

지역 추진 사례의 시사점 :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발제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 당신이 필요해요

지난 2009년 12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했었던 몇몇 보수진영의 꽤나 거대한 반발(“반교육적이다”, “시기상조다” 등등)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항들을 통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권리들을 명시했습니다. 광주/경남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일본 가와사키 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야자-보충 금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학생 간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인권 옹호관, 음부즈만 등의 제도를 명시함으로써,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작년에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경기도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의 학생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 ‘아직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글문서에서 ‘두발규제’나 ‘강제야자’, ‘소지품검사’ 같은 말들이 틀렸다고 빨간 줄도 안 그어지는 현실(...)입니다. 입시만을 위한 공부에 0교시, 강제야자, 학원 뺑뺑이까지 슬픔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비판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교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규정에 어긋난 데는 없나’ 자신을 검열하며, 양말색깔까지 신경써야 할 지경입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명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현실들을 바꾸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인권은 어떤 이유로든 유보되어서도 안 되고, ‘미래의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보다 ‘현실’이 필요하다

“경기도는(우리는) 두발자유 된다면서요?”, “새학기부터는 뭐가 좀 바뀐다면서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한창 이슈가 되고, 윤곽을 드러내면서 꽤나 많은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뭔가 좀 되는 동네, 학생인권 보장되는 곳, 이라며 부러운 시선도 종종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의 자신들의 안습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ㅠ_ㅠ” 같은 패배적 분위기가 해를 넘길수록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 중에 오히려, “인권 따위, 지금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꿈쩍도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니까요. 감시와 통제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인권이 억압받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두발자유-no cut’ 운동, 독립적 학생회 보장 요구 등등 거의 10년 가깝게 학생인권에 관한 운동은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저항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아직 학생인권에 대한 강제성 있는 보장 제도는커녕 공식적 기준, 가이드라인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생인권릴레이워크숍”이란 자리에서 ‘두발규제를 찬성하는 논리’를 그 자리에 함께 한 참가자들이 직접 반박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두발규제 찬성 논리’를 깨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후에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그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발규제를 찬성하는 것에 덧붙는 그런 논리는 너무 낡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발자유’의 가능성, 현실성(‘실제 사례’)이 사실 우리 안에도 없어보여서 더 주눅 들었던 것 같다. ‘두발규제 찬성’ 논리는 ‘두발자유’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제부터가 다른 이야기였다.”

이처럼, 학생인권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제법 많이 만들어져왔고, 그 과정에서 끈질기게 논의 되어왔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부족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안될거야’ 하는 패배감이 녹아있는 건 아닐까요.

어쨌거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부족하다고 제도적으로 탄탄히 만들어야 될 거 아냐?” 라는 식의 끊임없는 운동사회의 요구들 속에서 그나마도 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아, 뭔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앞으로 운동을 해나갈 때, ”이 ‘학생인권조례’ 어디를 보면, 학교의 이 같은 조치는 다분히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시정하세요!“라고 요구하기가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 동안의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논의 또한, ”학생인권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이야기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발자유’, ‘체벌금지’로 대표된다 할 수 있는 ‘학생인권’이,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을 사고, “에이, 거봐, 안 되잖아”하는 체념을 낳았던 현실을 넘어, 진짜 가능하다는 것, 현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걸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운동이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보고 싶은 ‘현실’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가로막는 쟁점들 ‘똑바로’ 바라보기!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학생인권조례의 앞엔 정말 험난한 폭풍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아니, 기다리고 있었으니! 아무리 낮다 해도 쉽게 넘을 수 있는 산은 없다고, 우리에게 부딪힐 만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었지요.

특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조항 중에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휴대전화허용,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등이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상 보류상태이지만, 이전에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넘겨지고, 안을 심사할 때, ‘집회·결사의 자유’ 부분이 힘 있게 들어간 A안에 비해 비교적 두루뭉술하게 들어간 B안이 선택된 것을 보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힘들게 부딪히게 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조선일보’ 등에서는 ‘좌익 홍위병(?)’을 운운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이 매우 잘 수렴되고 있는데, 굳이 ’집회의 자유’를 열어놓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등의 이야기로 학생인권조례를 까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허용하다니!” “체벌도 안 된다 그러고, 뭇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럼 학생들 지도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등등.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실 학생인권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들은 그냥 한 번에 다 해소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어찌면 그러한 불안감들은 시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반교육적’이라고들 하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인 것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설득과 ‘비전 제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나갈 이들, 우리들의 몫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완벽한 대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보수언론의 대표주자, ‘조중동’ 등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선 같은 문제 말이지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자!’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반대와 우려들에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생인

권조례는 방임이다!”라는 말에 대해 “아니다, 방임이 아니다.” 혹은 “우려된다”라는 말에 대해, “그런 걱정은 기우다”, 라는 이런 식의 전개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 하면 ‘방임’, ‘우려되는 것’이라는 말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민주다.”, “학생인권조례는 책임이다, 자유다.”, “진짜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래저래 결론은, 잘 얘기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싸우고 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학생 당사자들이 뭘 원하고 있고,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조항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 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이냐, 또는 ‘구제기구 설치’에 중심을 둘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입니다.

가와사키 시의 ‘아동권리조례’를 살펴보면, 세부적 쟁점이 될 만한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쩌보면 그러한 방법이 전략적으로 쟁점을 피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조선일보가 까는 게 ‘학생인권 음부즈만(옹호관)’이라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를 까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쟁점이 될 걸 뻔히 알면서 구체적 권리 조항들을 명시하는 것은, 논쟁이 생길 것을 각오하고,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 권리 조항의 내용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제도적 장치 보장에 대한 내용을 신는 것에 무게를 둔다는 것은, 학생인권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쩌면 안전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하나하나 담았지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는 걸로 끝나면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 or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라기보다, “학교 안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라는 식의 조항들이 담겼던 것이지요.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 현장성도 없을 것이고, 기존의 ‘청소년보호헌장’ 또는 ‘아동권리협약, 무슨무슨 선언’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 권리’에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무게를 둘 것인지, 이러한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도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 ‘교권 실추’에 대한 우려 등입니다. 이 쟁점은 분명히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몇몇 보수언론과 교총 등의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권 침해 사례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만 만들겠다는 것

은 말이 안 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인 안양옥 씨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교권보호헌장’의 초안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며 학교관리자들과 교육청에 대해 교사들의 권리,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하는 쪽으로 나왔다고 하지요 사실 이게 진리죠 우리는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권이 실추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노동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면도 많을 것이라는 점(강제야자 같은 거 할 때 봐요, 교사들도 그 시간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야간노동인거죠),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을 포기하거나 학생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평화적·합리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임을 널리널리 알려야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이 밖에도 ‘실효성,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이들 물어보고,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도, 교장 맘대로 휘두르려 하면 어떻게 해요.” 등의 질문들이 꽤 자주 제기됐었습니다.

조례라는 점에서 권한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옹호관 제도나,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계획 수립 같은 내용이 앞으로의 학생인권 개선에 대해 실효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효성이라 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학생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탄탄하게 함을 말하는 것일테지요.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막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 학교 안의 반인권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닥 효력이 없었던,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그 지역의 학생들, 지역의 단체들을 당사자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청의 의지를 돈구고, 부추기기 위한 운동 또한 제정 과정, 제정 이후에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 당사자, 지역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만 기대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도 학생들의, 지역 주민들의 힘을 실어서 제대로 보장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대상을 어디까지 삼을 것인가,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청소년인권조례’ 또는 ‘아동인권조례’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명칭에 대한 이야기부터, 장애인, 성소수자 등 학교 안팎의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을,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식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한다.”, “학생은 어떠한 이유(성적, 인종, 성별, 장애여부, 성적지향, 가정환경 등등...)로든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식의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학교 안에서의 지원대책 등을 언급한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학교 안에 존재하

는 이러한 차별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수는, 학교 안에서 인권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서도 그랬듯이, 차별에 관한 문제는(위낙에 다른 앞부분(?)에서 논쟁이 불다보니;) 이에 쟁점들에서도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소수자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냐, 등의 이야기들에 대해, 우리 안에서의 고민이 더욱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다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청소년/아동인권조례’라는 명칭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이 조례 내용에 대해, 전사회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주목을 받고 이야기되는 건, 위낙에 학교 안 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바뀌어야 뭐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의 인권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견고한 ‘전제’를 바꿀 운동

그렇다면 이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에 부딪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출범식을 하는 것도, 전국운동본부를 꾸리는 것도, 이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제정하여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힘을 싣고, 보다 든든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초중고등학생들은 만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설령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추진한다고 해도 유효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무상급식, 일제고사 폐지 등의 일정하게 인권적·복지적, 반(反)경쟁교육적인 정책에는 비교적 찬성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망설이게 되는 어른들(유권자들, 학부모들, 교사들 등등.)은 분명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급식조례를 추진하거나 광장조례를 추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한창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될 때, 몇 안 되는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 외에는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모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상급식운동 등에는 적극적이었던 교육/시민운동 진영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열성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망설이게 되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어떠한 ‘벽’이 있어서이진 않을까요?

지금도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 청소년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를 이렇게 미화할 일인가. 교육계 전체가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라는 식의, 뭐라 반박하기도 민망한 이야기들을 아낌없이 쏟아내며, 학생인권조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언론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학생과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는 학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제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인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청소년)인권을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운동사회 내에서도) 잘 들리지 않았던 얘기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위치에 세워두고 있는 지, 청소년을 어떤 주체로 인식하는 지에 대해 돌아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 이야기끼리들을 수면 위로 띄우는 작업입니다. “학생/청소년은 이리러해야 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는 류의 청소년 ‘존재’에 대한 그 견고하고 딱딱한 ‘전제’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그 동안의 청소년 운동이 좀 더 힘을 받고, 그 힘을 밑거름 삼아 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방향과 과제

김재석(전교조 서울지부)

들어가며

서울의 신입 광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공약 이행을 위해 다음 달 8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작성한 뒤 검토를 거쳐 내년 4월 쯤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인권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5월 10일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이던 광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광 교육감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약속 이행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면서 계획대로 학생인권 조례가 순조롭게 제정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학교에 적용해서 학생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나 이번 광 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 발표 이후 바로 많은 이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뒤 따른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는 교육관, 학생관과 같은 가치관의 차이에서부터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얽히면서 추진 과정을 매우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오늘 발족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는 학생인권조례제정 과정에서의 이런 이견과 갈등을 원활하게 풀어내는 장을 만들고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내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다. 학생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하고, 학부모는 자신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위한 활동이 서울운동본부의 역할인데 바로 이것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기본 방향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학생인권을 얘기할 것이다. 우리는 입장이 다른 단체와 토론하는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동네를 찾아다니며 단 몇 명의 학부모들이라도 즐겨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각종 기구를 설치하고 정책을 만들어 학생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광노현 교육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 인권교육감으로서 우리 교육을 성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감시하고 때론 견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분명히 한다.

I. 조례제정 운동의 방향

첫째, 서울운동본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각계 각층 서울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대중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심을 갖고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인생에서의 학창시절의 위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경쟁적 입시체제와 대학서열화’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학생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례제정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거나 광범위한 청원 입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양한 단체와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토론하면서 서울시민을 주체로 하여 학생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조례제정운동에서 청소년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의 자유와 학습과 복지 등에 관한 문제로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주인인 학생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에 주체로 참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학생 단체나 청소년인권운동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학부모, 교사 및 사회 공공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광범위하게 연대한다.

셋째, 교사가 조례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학교가 학생 인권이 가장 많이 침해 당하는 곳이란 사실은 역설적으로 학교가 학생 인권 신장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학교의 교사가 학생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존중받는 학생이 그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고, 국가 권력이 교육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때 교사의 교육권(노동권) 또한 그만큼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과 자신의 교육권이 함께 존

중 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활동주체로 나서야 한다.

넷째, 조례제정 자체를 이 운동의 중심에 놓되 동시에 학생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토론-선전 활동을 전개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한편,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 3주체 및 사회가 학생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제정운동을 계기로 간담회, 토론회, 교육선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다섯째,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신체적·직접적인 인권 신장을 중심 목표로 하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도 함께 추진한다. 즉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복장 자유화, 학생회 활성화 및 학내외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은 일제고사 및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협력교육실현, 궁극적으로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통한 전인적 발달을 위한 배움의 권리 보장 등과 병행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중적 조례제정운동을 서울에서 선도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상대적으로 축적된 역량이 많은 서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례제정운동의 정보와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특히 신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시도에서는 대중적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서울에서의 운동 방식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곱째, 서울운동본부는 교육청과 병행하여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8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운동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울운동본부는 주민 발의나 주민 청원이나 어떤 형태로든 서울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서울운동본부는 자체 조례안을 만들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드는 등 조례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운동본부가 만든 조례안과 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은 함께 검토되어 하나로 교육위원회에 발의될 수도 있고, 각각 발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우선 각각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더 힘 있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흔쾌히 협조하고 함께할 것이다.

II. 조례 제정 운동의 과제

1. 조례제정 방식

1) 조례제정 방식

의원 발의 : 10명 이상 의원 공동 발의

집행부(시장) 발의1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외는 시장에게 발의권

집행부(교육감) 발의2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발의권

주민 발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광역 시도의 경우)의 연서에 의해 청구(서울은 81,885명 이상-2010.1.1 기준) * 지방자치법 15조 ‘주민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에 근거

주민 청원 : 시의회(1명 이상의 시의원 소개), 시장, 교육감에게 1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명하여 청원

2) 주민 발의에 의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의의

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과 지역 주민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례 제정이 주민 발의자들의 자기 요구의 산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능성이 다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

② 조례 제정을 강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③ 조례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청구시 조례안을 주민 발의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시장(교육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로 시의회에 부의(다만 조례안에 대해 의견은 제시 가능)

-시의회(교육위원회)의 공식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제시

-청구인으로서 수시 의견 제시 가능

④ 학생 인권의 사회적 이슈화가 보다 쉽다.

-주민 서명자 조직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한 관심 확대와 사회적 이슈화 용이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기자회견이나 집회, 거리에서의 서명 및 선전 홍보 등을 통해 언론의 조명 가능성 확대

⑤ 지역 시민사회운동 및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활성화에 기여한다.

-학생 인권 운동이라는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운동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운동을 결속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⑥ 정치권 및 행정 관료에 대한 시민 통제의 관행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운동을 통해 일방적인 정치·행정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⑦ 집행부(시장이나 교육감)와 의회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조례가 찬반이 분분하거나 의견이 다양한 경우 조례 제정에 서명한 시민들의 힘에 의해 조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 문제점

① 주민 발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구인 서명 조직이 쉽지 않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 노출로 서명 꺼리는 경향

-남발을 막고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수의 청구인 필요성 인정하나 대중 운동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실거주 주소를 제대로 기록한 8만여 명의 서명은 부담되는 숫자

② 많은 인원과 예산이 소요된다.

-서명 조직하고 이슈화에 많은 비용 소요

-자발적이고 소규모 단체 중심인 시민운동에 큰 부담

③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

-청원 입법 시에는 청소년도 청원 서명 가능

-주민 발의 시에는 청구인 되지 못함으로써 소외될 수 있음

④ 조례 제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청구서 접수에서 시작하여 6개월간 서명 조직한 뒤 시청에 제출하면 청구 수리여부를 심의하여 시의회에 부의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소요된다.

※ 주민 발의시 시의회(교육위원회)에서 내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의회는 누가 발의했느냐에 관계없이 조례안 심의하여 변경 가능하므로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우리의 경우 10만 주민 발의의 힘과 교육청과의 공조가 위력을 발휘할 것임

3) 주민 발의와 주민 청원 비교

구분	주민 발의	주민 청원
대상	시의회	시의회, 시장, 교육감
요건	19세 이상의 주민 일정한 수	모든 주민 1명 이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서명 조직에 대한 목표의식이 강하다. • 조례 제정 및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 • 정치권과 행정 관료를 시민 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인 숫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 • 인원과 예산이 적게 들어 간다. • 19세 미만도 청원할 수 있다. • 조례 제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인 조직에 많은 인원과 예산 필요 • 19세 미만은 발의자로 참가 불가 • 조례 제정 기간이 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 및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 • 서명 조직에 대한 목표의식이 약하다. • 여론 조성의 힘이 약하다.

2.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서 청소년의 역할

-주민 발의시에 조례제정운동본부에 주체로 참여하여 조례안 작성, 선전 홍보 및 청구인 조직 과정에 의견을 내고 실천에 직접 참여한다.(cf. 교육감 발의인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지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학생참여기획단으로 참여)

-조례제정운동본부에 단체, 지역 외에 청소년 추진단(가칭)을 두어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다.

-청소년 추진단(가칭)은 의견 수렴(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학생인권침해사례 수집 등), 선전 홍보(온라인 토론방 운영, 캠페인 활동 전개, 토론회, 집회 등), 서명 조직(거리 서명, 가정 서명 등) 등을 할 수 있다.

3.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서 교사의 역할 (주민 발의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적 교육 체제와 경쟁 중심적 사회구조 속에서 교사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해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교육권 침해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훼손하고 있다. 결국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침해의 상당한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적 교육관이 원인일 수도 있고 억압적 교육체제의 피해자인 교사가 그 억압을 학생에게로 전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에 대해 성찰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신의 존재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 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이 교사에게 그런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적당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방식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 발의 조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청구인 조직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직접 서명을 받으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새삼 눈을 뜨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 발의 방식이 교사에게 학생인권에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방식이다.

4. 조례제정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관계

① 광노현 교육감은 조례 제정 일정 제시 외에도 취임 이후 새로운 학생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학생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자문기구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② 서울운동본부는 교육청의 이와 같은 학생인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관계

-운동본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각각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 조례제정이 주민발의일 경우

- 운동본부는 조례 청구인 명부와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은 주민 발의안에 대해 입장 제시하여 교육위원회에 부의
- 서울시 교육청안은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부의

-운동본부 조례제정이 주민청원의 경우

- 운동본부는 청원인 명단과 함께 조례 청원안을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은 청원안을 반영하여 교육감안을 교육위원회에 부의

④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 수렴 과정 공조 가능

5. 서울운동본부의 구성 및 활동(시안으로서 이후 서울운동본부에서 논의 후 결정)

1) 서울운동본부의 위상과 역할

-서울운동본부는 인권, 청소년, 학부모, 교사 단체 등 제시민노동사회 단체가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 학생인권신장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진지로서 서울에서의 선도적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서울운동본부는 각종 조사, 선전홍보, 정책연구, 조직 활동, 학생인권사안 대응 등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종합적 운동을 전개한다.

-서울운동본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신장 사업에 협조하는 한편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2) 서울운동본부의 구성

□ 참가 단체 조직

① 7월 5일 현재 참가 단체 : 33개 단체

공공노동학교비정규직분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총서서울본부,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

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② 참가 단체 추가 조직

-서울운동본부의 전반적인 활동을 일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에서부터 서명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까지 참가 단체를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25개 구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본부 구성을 감안하여 지역 조직이 있는 단체들의 가입을 적극 조직한다.

-지역본부 구성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시민노동사회단체를 적극 발굴 조직한다.

□ 운동본부 구성

① 공동대표 : 청소년, 인권, 학부모, 교사, 시민, 노동 등의 부문별 대표로 구성

② 집행위원 : 운동본부 활동 전반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무력이 있는 활동가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기획, 조직, 선전홍보, 조례작성, 총무, 카페관리 등)로 역할 분담하고 팀장 선정

③ 청소년 위원회 : 청소년 대상 특화된 사업 추진체, 위원장은 서울운동본부 공동대표 겸함, 지역 본부에도 설치

□ 운동본부 운영

① 회의 체계

-대표자 회의 : 공동 대표, 각단체 대표, 지역운동본부 대표/중요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때 개최

-집행위원 회의 : 집행위원 전체 회의/각종 활동 계획 수립, 집행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해 격주 등 정기적으로 개최

-팀별 회의 : 팀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② 분담금

-단체별 조건에 따라 월별 등 정기적으로 분담금 납부

-사업시 필요 예산을 단체별 조건에 따라 분담

-첫째를 최소로 해서 가입 단체 모두 분담하고 둘째와 결합

□ 지역운동본부 구성

① 서울시 25개 구청에 지역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 /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회 편재에 따라 동부, 북부, 성북, 중서부, 강서, 남부, 관동, 강남, 강송 등 9개로 구성하는 방안 / 11개 지역 교육청별로 구성하는 방안 등

② 지역 조직이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참학, 평화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본부 구성,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계속 참가 요청

③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참가 조직

3) 서울운동본부 활동 계획(안)

◆ 기본 계획(조례제정 방식에 관계없이 추진할 사업)

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 지역 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활동으로 7월 중순부터 지역 토론회 추진

□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한 내용 및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운동 추진 논의

□ 전교조, 민주노총, 학부모단체 등이 준비 단체가 되어 추진하고 서울운동본부에서 자료 및 강사 등 지원

②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조례제정 관련 설문조사

□ 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 작업 및 조례제정의 기본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월에 추진

□ 실태조사는 교육청에 협조 요청/설문조사는 초중고생 대상으로 표집 실시

③ 청소년 인권 신장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학생인권 신장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접근 외에 구조적,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모색하고, 학교 안팎의 학생인권문제 및 학생을 넘어서 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권 문제 등을 학술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행사 개최
- 10월에 교육청과 공동 개최 모색

④ 학생인권조례제정-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 개최

- 수능시험 직후 3회째 개최되어 온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위한 문화제에 학생인권조례제정도 포함하여 학생인권 침해를 필요악으로 수용케 만드는 극도의 입시 경쟁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인권신장의 길임을 여론화
- 범국민교육연대 등 학부모*교사단체와 공동으로 개최

◆ 주민발의 조례제정 추진 계획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경우)

① 조례안 작성

- 운동본부 내에 인권활동가, 청소년,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조례안 작성팀을 구성한다.
- 경기도, 광주, 경남 등 기존 조례안을 참고, 서울 조례안을 작성하여 내부 토론회를 거친다.
- 8월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 교육청에 제출한다. 이후에도 계속 검토를 거듭하여 청구인 명부 제출시 최종 제출한다.

② 서명운동 전개

- 서명 운동 절차(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뒤에 첨부)
- 청구 대표자를 선정하여 교육청에 조례 제정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아 서명 시작
- 이 때 대표자는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위임하여 서명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서명을 위임 받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여 자격

을 획득한다.

□ 서명 조직 목표

-서울시에서 주민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수는 81,885명(2010.1.1 기준)이나 무효 등을 고려 12만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을 조직하고, 유효 청구인 수를 10만 이상으로 하여 19세 이상 서울 주민 ‘10만명이 청구안 조례안’이라는 무게를 갖도록 한다.

□ 운동 본부내 팀별 역할 분담

○ 기획팀

-서명을 받기 위한 토대 구축 사업인 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
-서명을 독려하고 사회적 이슈화를 위한 특별 행사(서명선포대회,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등) 기획하여 추진

○ 선전홍보팀

-학생인권 및 조례제정운동에 대한 활동가용 자료집 제작
-서명을 받기 위한 선단지 제작
-단체 및 지역을 방문하여 학생인권 및 조례제정운동 선전홍보 계획 수립 및 강사 파견
-언론 대응 및 온라인에서 선전 홍보 활동

○ 조직팀

-단체팀, 지역팀으로 역할 분담
-단체별, 지역별 서명 목표 설정하고 점검
-서명지, 선단지 배포 및 서명지 수합 정리 보관
-서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단체 발굴

○ 조례안 작성팀

-조례안 계속 보완
-서명 기간중에는 다른 팀 지원

○ 카페 관리팀

-운동본부내 소통

○ 총무팀

-각종 행사, 선전물 제작 등을 위한 분담금 수합

○ 청소년 위원회

- 청소년 대상 행사 : 설문조사, 청소년 난장, 선전홍보물제작 배포 등
- 거리 및 집회·행사장 서명

□ 서명 조직 및 서명지 수합 방안

- 단체별, 지역별로 자체 서명 목표를 정하고 선전홍보를 통해 서명을 추진한다.
- 거리 및 행사장 서명은 단체별, 지역별로 일정한 횟수를 실시하되, 선전홍보를 주 목적으로 한다.
- 서명자가 많은 단체를 중심으로 인쇄한 서명지와 선전지를 배포(우송)하고, 대부분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명지와 선전지를 직접 복사하여 사용토록 한다.
- 서명한 서명지는 원본을 직접 또는 우송을 통해 서울운동본부에서 수합한다. 다만 직접 수합하는 경우 지역본부에서 일차 수합하여 서울운동본부로 전달해도 된다.

□ 선전 홍보 방안

- 서울운동본부의 공청회나 토론회 및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활동가(수임인) 대상 선전 홍보 : 활동가(수임인)용 선전홍보 자료 제작 활용
- 단체별, 지역별 방문 선전 홍보
- 언론 보도 의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전 홍보
-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전지나 다양한 선전물 제작 활용
- 서명 선포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선전 홍보

□ 구체 사업 일정

○ 7월~8월 : 준비기

- 서울운동본부 발족
- 활동계획 수립
- 조례제정 청구서 제출
- 대표자 증명서 교부, 교육청 조례제정 취지 공표
- 수임인 조직 신고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지역순회토론회 및 지역운동본부 구성
- 단체 방문 선전 홍보

○ 9월~12월말 : 본격적인 서명 운동기

- 각 단체, 학교 및 가정, 거리에서 본격적인 서명 운동
- 지역순회토론회 및 지역운동본부 구성 계속
- 각 단체 방문 선전 홍보 및 서명 조직
- 거리, 지하철 역사 내에서 단체별, 지역별로 일정한 횟수를 정해 선전 홍보 및 서명 조직
- 언론 보도·기획기사 조직,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선전 홍보
- 9월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조례제정 관련 설문조사하여 기자회견
- 10월 청소년 인권 신장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10월 중순 서명 5만 돌파 기념 행사
- 11월 학생인권조례제정-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 개최
- 필요시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등 배치

○ 12월 말~1월 : 서명운동 정리 및 청구 시기

- 서명지를 정리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청구
- 조례안 최종안도 서울시 교육청에 함께 제출
- 서울시 교육청과 조례안 협의하여 단일안 작성한 뒤 최단 시간내에 교육위에 부의

「참고자료」 - <조례제정절차>

주민발의는 이렇게!

※ 주민발의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은(중간 생략)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서울의 경우 81,88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1단계 : 조례안의 작성과 청구 대표자의 선정

- 청구대표자를 선정
- 서명 전 조례 제정 또는 개정할 내용을 확정해서 조례 제·개정청구
-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조례의 주요골자와 제·개정이유 정리



◎ 2단계 : 청구서의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

-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그리고 청구서 제출 시에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



◎ 3단계 : 수입인의 선정 및 신고

-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취지를 공표한 이후 곧바로 서명을 시작
- 서명요청 기간 : 서명요청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광역 시·도는 6

개월, 시·군·자치구는 3개월.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음

- 수임인 선정 :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19세 이상 성인, 해당지역 거주자)



◎ 4단계 : 서명운동

- 청구인 명부에 19세 이상의 주민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청구인 명부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5단계 : 청구인 명부의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



◎ 6단계 :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청구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 명부 접수 후 7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

- 해당 조례가 조례 제·개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수리하여 대표자에게 통지



◎ 7단계 : 조례(안)의 의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 때 단체장의 의견 제시 가능

- 의회 심의하여 의결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

- 가결되면 조례공포, 시행, 부결시 재심신청, 대법 소송

* 이 글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에 제출되었던 문건 및 논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토 론 문

하승수(변호사)

1. 학생인권은 국제적인 인권규범인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도 인간인 이상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조약인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만 18세 이하의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도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즉 이 조항에서는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왜 보장하느냐?는 식의 논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학생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명화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그것이 우리 헌법과 교육법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정치적 색깔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일 뿐이며,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제조약과 헌법, 교육법의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잘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법규범인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몇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으로서, 보다 가까운 규범, 보다 구체성있는 규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학생과 성인들에게 보다 가까우면서도 구체적인 법규범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동안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들을 제도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지역이나 학교, 또는 학급차원에서 교사, 부모,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도하거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아동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려고 노

력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 제도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조례를 통해 이런 활동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그동안 이루어진 노력들이 확산되고 안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의 인권이 실제로 위협받거나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침해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지역 내의 여러 기관, 시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만들 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학생의 참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청소년 참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구규모 등으로 인해 실효성있는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례를 통해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들에는 국제조약이나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현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설 권리를 박탈하게 될 수 있는 과도한 0교시 수업의 제한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기준이나 제한 근거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물론 교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 당혹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잘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든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받을 때에만, 학교폭력, 따돌림,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3. 이처럼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외국에서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8년 1월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종합적인 조례가 제정되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4. 한편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있는 구제장치를 두는 것이다.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상담을 하고 권리구제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아동인권 침해 구제기구와 관련해서는 아동인권에 관한 옴부즈만(옴부즈퍼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추세이다. 옴부즈만은 업무관할 범위에 따라 일반옴부즈만과 전문옴부즈만으로 구분되는데, 전문옴부즈만은 특정한 분야 또는 특정한 기관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옴부즈만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전문옴부즈만 중 하나가 아동옴부즈만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1996년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아동을 위한 유럽의 전략”을 통해 아동을 위한 커미셔너(옴부즈만)의 임명이나 독립성이 보장된 조직을 제안했다. 그 이후 유럽에는 각국에 설립된 독립된 아동인권 관련 기구들간의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줄여서 ENOC)도 설립되었다. ENOC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24개국 32개 기구가 가입해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임기 6년의 아동옴부즈만이 설치되어 있고, 핀란드의 경우에도 임기 5년의 아동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ENOC에 따르면 아동옴부즈만은 독립성(Independence), 명확한 관할권과 적절한 권한(defined jurisdiction and adequate powers), 접근성(Accessibility), 협력(co-operation), 운영의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아동인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이유는 * 아동인권의 특성상 아동인권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 관료기구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 아동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이런 아동옴부즈만은 국가 차원에서 설치되기도 하지만, 지방차원에서도 설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8개 지방에서 아동옹호관 또는 아동옴부즈만(children's advocate/ombudsman)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 미시간의 주의 경우에는 1994년에 제정된 아동옴부즈만법(The Children's Ombudsman Act)에 의해 아동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에 각각 아동커미셔너(Children's Commissioner)를 설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에 「가와니시시 아동인권 옴부즈퍼슨조례」에서는 아동옴부즈퍼슨을 아동 고유의 상담·구제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 이익의 옹호자”, “대변자”, “공적 양심을 환기시키는 사람”으로 위치지우고 있다.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는 아동의 권리구제, 권리침해의 방지,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제언 등이다. ‘옴부즈퍼슨’이라는 단어 대신에 ‘권리옹호위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일본에서 종합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중 하나인 타지미(多治見)시의 경우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아동권리옹호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는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가차원에서나 지방차원에서나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제정 이후에 옴부즈만, 옴부즈퍼슨, 커미셔너, 권리옹호위원 등의 이름으로 아동인권 전담 독립기구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내에는 반드시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상담,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조치기능, 제도개선 권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독립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내용의 권리기준을 조례에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의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독립성이 보장된 학생인권 구제기구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가칭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 학생인권침해 및 예방에 관한 상담 * 학생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 권고, * 관련기관과의 협의·조정 * 학생인권실태조사 * 연차 보고서 발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민간인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의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태가 매우 악화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독임제 형태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토론]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 조영선(서울 경인고 교사)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가?

토론자 조영선 (경인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더니, 교권을 침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학생인권이 아이들을 망칠까? 교사들은 학생인권을 두려워하는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등한 개념이 아니다.

학생인권은 원래 존재했던 말이 아니기에 어원을 가릴 수는 없지만 만약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Human rights for students’ 정도일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교권’을 찾아보면

교권 [教權, educational authority]

right가 아니라 authority, 즉 교육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할 ‘권위’

즉 교권은 교육의 유일한 주체가 ‘학교’이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던 시절, 학교가 학생들에게 내세웠던 권위를 뜻하던 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생에게 인권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교권이 있다라고 말할 때 두 ‘권’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학생인권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존재의 인권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면 교권은 학생을 대상화했던 구시대적 권위 의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 무엇이 교권을 침해하는가?

교권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를 살피기 위해 교총과 전교조에서 발간하는 교권침해사례를 보면

[교총] 2001~2008년도 교권침해사건 유형별 증감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분문제	20	13	17	26	28	13	28	18
학교안전사고	11	37	28	51	42	33	46	59
학부모 부당행위	12	19	32	40	52	89	79	92
명예훼손	29	9	5	17	8	20	15	27
교직원간 갈등	기타에 포함	25	10	24	14	24	30	38
기타	32	12	3	33	34	.	6	15
계	104	115	95	191	178	179	204	249

교총자료의 교권침해사건 유형별 증감현황에서 교권침해의 주원인은 ‘신분문제’였고, 학교 현실을 비추어볼 때 교사의 신분을 관할하는 교육청과 사립학교 당국이 교권침해의 주된 주체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증가한 것은 학교 안전문제와 연관된 사안으로 학생의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비슷한 유형으로 학생의 피해에 대해 학부모가 대신 나서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교조]

구분	항 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학생지도, 교육주체간의 갈등, 학교시설관련 업무	학생지도(체벌,분실, 안전공제,전학)	12	18	18	7	4	1
	학교폭력,성폭행				5	2	1
	평가(학생관련)	3	4	2		1	
	학부모 갈등				8	7	
	관리자 갈등	23	18	13	30	14	3
	교육청 갈등			1	3	1	
	학교시설물 관련	1	4	3	1	2	1
휴가, 휴직	유학,동반연수,간병휴직	14	8	6	14	12	5
	출산휴가,육아휴직	11	10	10	18	16	11
	병가, 병휴직	10	5	8	8	6	8
	연가(해외연수,여행), 보건휴가,특별휴가,조퇴	6	8	6	5	15	6
봉급, 수당, 호봉, 장비 관련	출장비,시간외수당	7	10	4	9	2	3
	봉급,수당계산,호봉정정, 경력	6	4	2	7	3	5

	성과급반납, 평가불만		4	5	2		
	이전비	4	1	1	1		
	연금관련			1			
복무, 징계, 임용, 인사관련	복무,근무,근평문제	8	8	4	3	15	7
	징계(일제고사포함)	4	1	5	3	1	
	임용(전과,폐과포함)	2	2	1	1	1	
	인사관련	3		1		2	
단협, 조합내갈등 교원평가	단협관련	2	2	4			
	지부,지회와 갈등	1	2				
	조합원, 교사간 불화		3		1	2	
	교원평가		2		1		
기간제	기간제 계약, 고충		3	4	3	10	1
기타	기타	9	12	2	14	20	3
계							

전교조의 자료에서도 교권침해의 원인은 ‘관리자 갈등’과 ‘휴직’과 관련된 노동 조건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오히려 언론에서 떠드는 학생 생활지도 상의 갈등은 교권침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침해’는 이미 침해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의해서 행해진다. 아직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는 교권을 ‘침해’할 권력이 없다. 물론 언론에 회자되는 욕설과 폭력도 교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임에 틀림없지만 대부분 그런 사건의 경우 학생의 전학이나 퇴학 등으로 마무리된다. 즉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한도 통로도 없다. 그래서 쌓인 억울함이 폭력적인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언론에서 떠드는 뭐가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만 같은 ‘교권’의 현실은 위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반항에 의해 실추되어 온 것 같은 ‘교권’은 사실 책임소재도 모호하고 오히려 제대로된 시스템이 뒷받침해줘야 할 학교안전사고, 관리자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침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현실 때문이다. 학교 시설에 대한 투지는 도외시한 채 학생 안전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현실, 학생들과 맞지 않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업성취도 위주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야하는 현실이 교사로서 하여금 학생을 억압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저항은 교사 개인에 대한 분노로 폭력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떠나 법률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교사의 권한은 더 열악하다.

교육할 권리 중 핵심인 교육과정은 국가의 권한으로 고정되어있고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 교육 과정에 비해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교사의 재량이 반영될 영역이 부족하다) 교재의 선택, 결정권 역시 검·인정 교과용도서 사용으로 제한되어있다. 1)최근 역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

1) 이미 검·인정을 통과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사용에 대한 논란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교원의 권리·의무

구분	내용	
1. 교원의 권리	1.1 교육할 권리	①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 국가의 권한 ② 교재의 선택·결정권 : 검·인정 교과용 도서 사용 ③ 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 : 초·중등학교 소극적 보장 ④ 성적의 평가권 : 객관적·종합적 기준에 의해 실시 ⑤ 학생지도 및 징계권*
	1.2 신분상의 권리	① 신분 및 직위보유권* ② 직무집행권* ③ 재심청구 및 행정정명승권 : 교원징계재심제도 ④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 ⑤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⑥ 불체포특권* ⑦ 처분사유실명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⑧ 여교원의 동등신분 보장권* ⑨ 교원의 단체결성과 교섭협의권 및 노동조합결성권 -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권 ⑩ 교원의 정치활동 : 대학교수예외적 허용
	1.3 재산상의 권리	① 보수청구권 ② 연금청구권 ③ 실비반상청구권 : 직무수행상 소요되는 비용
2. 교원의 의무	2.1 성실의무	부여된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의무
	2.2 직무상의 의무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직무전념의무 - 직장이탈금지 의무 - 영리 및 겸직금지 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2.3 신분상의 의무	① 비밀엄수의무 ② 청렴의무 ③ 품위유지의무 ④ 영예 등의 제한 ⑤ 정치활동 금지 의무 ⑥ 집단행위 금지 의무

· 인정 교과서의 사용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내용 및 방법 결정권도 소극적으로 보장되어있고 성적의 평가권도 그나마 일제고사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보장되던 것이 학생지도 및 징계권인데 이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원칙을 가지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교원의 의무를 보면 더 왜소해진다. 복종, 직무 전념, 친절, 품위 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교사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들로 가득차 있으려니와 정치 활동 금지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의 의무까지 이러한 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위배된다.²⁾

요즘의 교사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실제로 요즘 교사들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을 억압하거나 학생들과 싸우지 않고서는 교육자로 설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즉, 교육적 보람도 없고 실효도 없는 일거리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일제고사를 보고 학생들의 떨어지는 학업성취도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과후 학습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퇴근 시간을 뒤로 하고 남지만, 실제 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아이들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미 전국 몇 만등 아래인 '미달' 학생이라는 낙인감에 젖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 수업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당근이 필요하다 싶어 간식을 사줘보기도 하지만, 간식만 먹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괜찮은 아

2)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가 있어야 보고 배우는 것도 있을 텐데 비슷비슷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 모여 우리가 열패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서로 확인해야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당근도 안통하면 때려서 억지로라도 남겨야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강제 방과후 수업인가? 학생인권조례인가?

#우리 시대의 학생과 사회, 어느 것이 더 미성숙한가?

흔히 학생들은 권리를 보장받기에는 너무 미성숙하고 책임의식이 없다고 한다.

우리 시민 사회는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성숙해왔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며 상호 존중에 의한 갈등해결, 다양성의 추구를 실현해왔다. 그런데 미래를 기르는 교육의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미성숙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제한하는 구태가 유지되고 있다.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금지한다면 그 미성숙은 무엇을 통해 ‘성숙’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 역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고민 속에서 시민혁명 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지금의 민주주의적 사회로 성숙될 수 있었다. 우리 사회 역시 5.18 민주화 운동, 87년 노동자대투쟁 등 많은 역사적 경험들 속에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학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많은 유의미한 시도들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교는 유의미한 경험들을 전할 수 있는 시도의 기회를 박탈하고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성숙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사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학생들의 시도와 사고의 확장을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자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봤을 때, 학생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미성숙함을 걱정해야되는 대상이 과연 학생들인가?

#학생인권조례에 기대하는바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된 교육의 권위를 세우는 바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는 합리적인 권한 사용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폭력을 동반한 권위주의에 반발해왔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교의 지도에 반항해왔던 이유는 학생지도 방식이 교사나 학교에 따라 너무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학생들의 많은 반발을 사왔던 두발 지도의 기준은 ‘학생답게’였고 체벌의 기준은 ‘교육적으로 필요할 때’였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속에 진행되어온 학생 지도는 지도의 권위를 잃고 폭력만이 남게 되었고 학생들은 이에 반항하여 전반적으로 지도를 거부하여 반항하거나 태업하는 형태로 저항해왔던 것이다. 즉 불합리한 지도 관행에 발목을 잡혀 정말 필요한 권위 조차 짓밟히게 된 상황인 것이다. 3)

3) 불합리한 지도 관행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낳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항과 태업이 이것은 ‘학교붕괴’라는 방식으로 언론에 회자되었다.

두발 지도의 근본은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체벌의 근본 역시 ‘잘못이 있다면’ 폭력으로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적인 입시 지도의 근본은 ‘나를 위해 남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질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힘센 교사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체벌로 다스리듯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 약한 선생님의 잘못을 폭행으로 다스리는 것이며 입시에 들어가지 않는 수업 정도는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일찍부터 알기 때문에 탄압과 태업을 일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약한 대상에게 분풀이 하기’, ‘나서서 말하다가 혼나기 보다는 조용히 태업하기’ 등으로 왜곡되어왔던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제도에 대한 분노를, 사회에 대한 분노를 교사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시켜왔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사회화하고 해소해나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든 이제는 명분이 설 수 있다. 학교가 아닌 사회가 이 정도로 미성숙한 너희들을 존중하는 데 너희는 왜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냐고 말이다.

둘째, 학생인권 조례는 진정한 상호 존중 교육과 평화 교육의 밑바탕이 되어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존중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남을 존중할 수 있다. 자신이 정확히 어떤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추동력이 되어 교사의 제한된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려고 하다보면 학생의 진정한 ‘동의’ 없이 무엇을 교육하기 어려워진다.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안할 수 밖에 없고 교육과정도 아닌 서로가 참여하는 교육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그 의미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시 위주, 지식 교과 위주의 교육 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성의 권한을 진정으로 지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앞에서 제시된 교원의 의무 중 ‘정치적 중립’은 그 의미가 우리 나라에서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지만⁴⁾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정치적선택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을 펼칠 수 있다면 교사의 개인적 견해는 그야말로 여러 정치적 의견들 중 하나의 의견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들 사이의 패싸움은 문화적으로 그러려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행동=폭력’이라는 도식적인 사고 속에서 학생들의 단체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적인 폭력은 용인하

4) 실제 다른 나라에서 원래 쟁점이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든 그 권력의 외압에 관계없이 교육은 그 본래의 모습대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거꾸로 권력이 교사 개인의 소신을 짓밟는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면서 공적인 문제제기를 막는 결과를 낳아 학교 폭력과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학교 사회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하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의 다양한 실천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도 교사의 단체 행동도 ‘아이들을 버린 행동’이 아니라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학교를 감옥, 학생을 죄수라 비유한다. 그렇다면 교사는 간수에 해당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가 죄수와 간수가 아닌 인간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감옥이었던 학교도 진정한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학생 참여 방안 : 김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 모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학생 참여 방안

김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 모임)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는 친구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혹 머리가 길다고 따귀를 맞지는 않을까, 또 이어폰을 끼고 등교하다 입수를 당하지는 않을까, 캐릭터 양말을 신었다고 생활지도에 걸리진 않을까 하며 등교하는 학교는 즐거울 수 없습니다.

교문은 신기한 장소입니다.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인권은 멈추고 21세기는 20세기로 되돌아갑니다. 그 신기한 장소가 다른 방향으로 신기할 수는 없을까요? 들어서는 순간 내가 존중받고 또 상대를 존중해주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회시간에 우리들은 배웁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침해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고 그것은 천부인권이라고 하고, 헌법도 천부인권설을 인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면서도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학생도 사람인데 학생이란 이유로 인권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까요?

캐릭터가 그려진 양말을 신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양말이 없어서일까요?

그런 양말을 신으면 복장불량으로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잉체벌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접하기도 합니다. 등교 길에 규정보다 머리카락 길이가 몇 센치 더 길다고 해서 따귀를 맞는 친구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종교를 믿지 왜 앎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종교수업을 듣고 종교의식을 행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한 교칙을 만들자는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한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들으셨듯이 우리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인권을 침해당합니다.

교육청에서, 인권위에서 구제 받으려고 해도 운이 좋아야 잠깐 상황이 나아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매년 교육청에 신고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기에도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고
그렇게나마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침해들 더 이상 받지 않게,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도 해준다고 하는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요.

학생들은 더 이상 부조리한 현실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 인권조례에 큰 희망을 걸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원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좀 살아 보자고 말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들에게 귀 기울여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교육청 발의의 조례가 되어도, 시민발의 조례가 되어도 학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
래야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온라인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조례에 대한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동시에 학생들이 자
유롭게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은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등과 협력하여 인권에 대한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을 통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동시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를 참고하여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
최해 학생들의 의견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 인권조례 소식지의 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신고, 인권조례에 대한 글을 쓸 학생기자들을 모집해,
학교생활에서 무엇이 인권 침해인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학생들 여론은 어떠한지,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
의 학생인권의 전망은 어떤지 등의 이야기를 학생들 스스로가 작성하고 전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교육
청에서 각 학교에 이 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럼 우리 학생들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고무된 마음으로 조례에 대해 서로 토론할 것이고
집에 가서 조례에 대해 부모님을 설득하는 풍경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홍보대사들을 위촉해 학생들 스스로가 조례에 대해 홍보한다면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움직임입니다. 교육청과 시의회가, 또 단체들이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먼저 나서서 교육청과 의회, 그리고 단체들에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조례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모여서 교육청 앞에서 요구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릴레이로 글을 남기기도 해야 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이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 조례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조례를 직접 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어른들의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동본부에 참여해 조례에 대한 서명운동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 블로그에 조례에 대한 기사를 스캔해서 더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들 스스로가 조례에 대한 정보들을 더 자주 접하고 생각해서 어느 곳에 가셔도 왜 조례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까지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우리들의 열망을 자발적 참여로 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조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또 조례 제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교육청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뽐내야 합니다. 주변에 조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설명해줘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조례를 향한 우리들의 관심과 염원이 커질수록 조례는 더욱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주시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그리하여 당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주인공이 되어보았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층의 촛불홍위병 설과 조례 반대 목소리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조례의 집회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시며 날 선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학생들을 한 없이 무시하시고 계신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도 하나의 주체로서 가치 판단을 할 뿐이지 조례에서 집회 참여를 보장한다 해서

특정인 및 단체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7월 2일자 사설을 보고 경악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일간지가 학생들을 자제력 없고 스스로의 문제인 교육정책에 대해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고 깎아내리다니요,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적용받는 교육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 그와 논조를 같이 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조례의 순수성을 왜곡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학생들 기본권 문제를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정치쟁점화 시키고 이념논쟁으로 만들고 계시는 여러분 스스로 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에서 인권조례를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제정되어 학생들이 억압에 침묵하며 울분을 삭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멈추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 강혜승 (참학서울지부)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조례

강혜승(참교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장)

들어가며.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평등의 기본적 권리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권’이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잠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의 학생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학생들도 한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많은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다. 우선 학생이기에 학교의 생활지도 규범이라는 규칙의 틀 속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이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후 더욱더 가속화된 경쟁교육은 학생들을 더욱더 옥죄고 있다. 한 예로 고등학교의 0교시,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으로 이어지는 장시간의 학습은 교육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학습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 하에 학생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꿈 꿀 시간조차 빼앗긴 학생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 학부모들이 그들이 희망찬 꿈을 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 만든 여러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은 그들을 옥죄는 사슬 속에서 그저 어른들의 논리에 의해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히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조리한 사회의 관념을 바꿔야 할 때이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도 학교가 만들어낸 엄격한 규제와 규칙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찌할 도리없이 순응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많은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의 충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 경상남도에서는 여러 단체에 의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학생인권은 나의 문제이며 내 자녀의 문제이다. 남의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내 자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소중한 새싹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학생인권이라는 문제를 주의깊게 여기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 인권 상담 사례(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

- 전화 상담 / 사이버 상담 / 면접 상담 / 민원 상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이다.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30센티미터 자로 머리카락을 때린다. 이 교사는 내년에 정년을 앞둔 교사이다. 5년 전에 암수술을 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 “우라질, 네 머리를 조개머리겠다” 등의 말을 하니 아이들이 공포감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밥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걸상을 들고 있게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교직생활 중에 몰해 아이들을 제일 힘들다고도 한다. 피해망상증세도 있는 것 같다.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나를 감시한다, 학교 경비들도 나를 감시한다 등의 말도 한다. 이전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일로 경고 비슷한 조치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싶어도 내년 9월에 정년퇴임할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은 줘무리가 있지 않냐는 식이다. 체벌규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사가 하는 이런 종류의 행동은 체벌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또 어떻게 하면 이 교사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상담내용 2 : 두발규제에 관한 상담입니다.

조카가 사립 OO고 2학년 남학생인데 학기초 머리가 길다고 등교시간에 빗을 맞고 벌을 서고 왔다. 아이들 입장에서 한창 옷이나 머리에 신경 쓸 때 아닌가. 그런 것 가지고 벌을 선다는 게 기가 막히고, 부부교사인 조카 부모도 속상해한다. 부모는 각각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기네 학교 두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잘 안되더라고 한다. 부모가 직접 나서기는 힘들어해서 대신 내가 상담한다. 다른 아이도 한번 걸렸는데

반발을 했더니 바로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단다. 교장과 이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학생회도 없나? 아이들의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는 것 같다. 학교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상답내용 3 : 심한 언어폭력은 일삼는 학생부 교사들이 오히려 아이를 전학가라고

나의 아이는 고3이다. 교사들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을 하여 아이가 위경련을 일으킬 정도이다. 물론 우리 아이가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고 말대꾸도 잘한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맞대응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

상답내용 4 : 벌점제로 전학을 강요하는 학교

우리 둘째 아이는 00고 1학년이다. 첫째 아이도 이 학교 3학년이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학교에 도난 사건이 생겼다. 학교장이 순시 중 쪽문으로 나가는 타 학교 학생을 목격한 뒤에 생긴 일이다. 이 학생들의 친구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를 포함한 두 명이 학생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 (중략) 이 학교는 자사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칙이 매우래서하다. 온해부터는 더욱래서격해졌다. 휴대폰을 소지하면 3점, 무단결석 5점, 무단결과 3점, 머리 길이 1점 등 매우래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1이 115점이 이상이면 교내봉사, 25점 이상은 사회봉사, 40점 이상은 특별봉사, 50점 이상은 전학권고, 60점 이상은 퇴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벌점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삭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벌점을 준 교사가 선행을 한 학생에게 삭감이 1 주는 것이다. 수 다 보니 교사의 주관적 해석 / 따라 삭감이 정해진다. 마음 / 드는 학생에게는 유리장이 닦으라고 시킨 후 삭감을 시켜주는 반면, 교사에게 밉보인 학생은 삭감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하고 학생생활 규정이나 학생자치활동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은 학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인권신장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학칙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즉, 학생들이 매 맞지 않을 권리, 개성대로 자유롭게 머리를 기를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밤늦게 까지 학교에 남아있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인권침해

해요소가 있는 각종 규정과 학생인권익의식이 미성숙한 학교 관계자 때문에 학교의 체벌이나 징계, 강제 두발 단속으로 철저히 학생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이다. 따라서 타인은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해칠 수 없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 초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보장 내용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상벌점제, 학생자치활동 등을 상위법의 제도적 근거에 따라 제·개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신장을 담보할 수 있고 교육적 목표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두발규제, 학생 통신권 제한, 상벌점제도, 강제야간자율학습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결정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하여 미성숙한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과거나 지금이나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 안은 무거운 규칙으로 묶인 따분하고 지루한공간이다. 입시라는 목적아래에서 시행되는 무자비 할 정도로 인간미 없는 규칙들은 이미 학교라는 공간을 그저 공부만을 강요하는 대규모의 학원으로 바꿔 버린 지 오래이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더욱 강화된 경쟁이라는 교육의 지향점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이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거둬되는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친구라는 존재를 발판으로 또 자신이라는 존재를 학생이 아닌 일등으로 만들기 위해 본래 자신이 가진 개성과 가져야할 권리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나는 라디오를 통해 어떤 노래를 들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랩이었다. 개인적으로 랩이라는 장르에 그리 흥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마음이 이끌려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랫말에 질려버려 채널을 돌리려고 마음먹은 순간 노래가사의 한 구절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잘 기억나진 않았지만 이런 가사였던 것 같다.

“학교에선 못 배워 학교에선 뭘 배워 학교에서는 딴 걸 배워 친구를 밟고 올라서는 방법
남들과 똑같아지는 방법 적당히 거짓말하는 방법 폭력에 익숙해지는 방법”

노래의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학습의 악습적인 관습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노랫말은 지금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노래를 듣는 동안 나는 10여년 전 유행했던 서태지의 교실이데아가 떠올라 씩씩한 기분이 들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악습이 계속해서 반복

되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바꾸었는가?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노랫말속의 가사처럼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학교 안에서 빼뺏어진 사회의 규칙들을 학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위 앞의 가위라 할지라도 잘못된 편견과 편협된 의견은 언젠가 진실의 검에 의해 깨어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10년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희망의 물감으로 덧칠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나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안이 이러한 모순된 시대상을 꿰뚫어 낼 창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학생인권조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어른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해왔다. 이런 모든 실패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고쳐내야 한다. 우리사회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수많은 날들과 그 날들과 함께할 교육의 현장이 앞으로는 희망과 웃음으로 뒤덮여 그 안에서 학생들의 꿈과 이상이 맘껏 만개하길 바란다.

[토론] 지역 추진 사례의 시사점 :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광주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위 활동 성과와 추진과정 속에서 둘러싼 논쟁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박고형준

○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 활동 성과

1) 1차 시기

광주학생생활연구회는 지난 2003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활동을 포함하여 수 년 동안 학생들의 학생인권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다. 뿐만 아니라 학급자치활동과 문화 및 복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들을 시도하였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만한 외화의 방안이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사회단체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고, 부분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지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지역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와 결과발표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2004년 이후로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 관련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다양한 단체들의 지속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중, 2005년 한 교육위원(현,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당선자)이 인권조례 제정을 염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드디어 조례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 단체들이 연대를 하게 되면서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 되었다. 여기에 광주홍사단, 광주YMCA, 광주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포럼 준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를 비롯하여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조례제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여회에 걸친 회의와 16차례의 내부 논의 및 준공청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조례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의 성격 규정, 각종 조례의 형식 및 내용 검토, 가와사키현 조례 제정과정 확인, 조례안에 들어갈 영역과 항목 설정하였다.

또한 이 지역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 관련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실시하여 공신력 있는 분석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후 조례안 초안 제정 및 수정, 조례안 입법시도, 시민 학생 대상의 홍보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였지만, 교육위원회 조례안 상정 실패로 활동을 잠시 중단하였다. 활동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05년 8월 3일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시작
- 학생인권조례에서 권리조례로 사업명칭 변경
- 흥사단 광주지부, 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포럼준비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 YMCA, 시의원, 교육위원, 교수 등이 참가하여 학생권리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구성
- 2005년 공식 모임 16회(비공식 20여회) - 조례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의 성격규정, 각종 조례의 형식 및 내용검토, 가와사키현 조례 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에 들어갈 영역과 항목설정, 조례안 제정 관련 설문 제작 등
- 한국사회조사 연구소 협조 - 학생인권관련 교사, 학생, 시민 설문조사 실시 (2005년 12월)
- 준공청회 - 참실보고대회(2005. 12. 02. 금. 전남중학교) 통한 준공청회 형식의 토론
- 공청회 전까지 3차례의 수정작업
-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2005. 12. 23)
- 전국참실발표회 학생인권조례 토론(2006년 1월)
- 4차 수정안 완성(2006년 1월)
- 2006년 2월 보수적 시각의 조례안으로 수정
- 1-4월 교육위원회 상정시도, 교육청 협상, 발의실패
- 5·18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학생권리조례부스 설치. 인권지수 설문 및 조례안 내용 홍보 및 의견수렴 (2006년 5월)
- 2006학생회 임원아카데미를 통한 조례안 홍보 방안 모색

2) 2차 시기

2008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1차 시기

교육위원회에 안전 상정조차 힘들었던 상황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이에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기회로 포착하고, 지난 1차 시기 활동을 평가하면서 다시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10월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 학생 인권 관련 제반 단체들이 모여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1차 시기보다 많은 단체들이 추진위 참여에 동의하였고, 특히 권리의 주체인 학생·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청소년 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차 시기를 준비한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조례제정추진 사업과 함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는 1차 시기의 과오로서 추진위 참가 단체에서만 조례 제정활동이 공유되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속 단체별 특성에 따른 활동들도 전개하고, 추진위원회 차원의 대중적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광주전남 교육연대, 청소년공동체희망 광주지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학생생활연구회,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광주지부, 광주홍사단, 학벌없는 사회 광주모임, 광주YMCA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전국청소년학생연합광주지부, 광주YWCA, 문화행동 s#arp 등이 있다.

2차 시기 활동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08년 10월 20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활동 시작
- 11월 3일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및 사업 설명회
- 11월 12일 추진위원회 내부 세미나 실시(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조례안 설명)
- 12월 9일 추진위원회 활동 재개에 관한 기자회견(교육청 브리핑룸)
- 12월 13일 대시민 홍보활동(삼복서점 앞)
- 학교생활규정 분석 및 인권침해적 요소 추출(2009년 1월 활동)
- 2009년 1월 19일 교육감의 인권조례제정 비협조 발언에 관한 대책회의
- 2월 ‘학교인권조례’로의 전환에 관한 토론 : 기존 ‘학생인권조례’로 진행키로 결정
- 3월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4월 4일 대시민 홍보활동(삼복서점 앞)
- 4월 16일 ‘그린마일리지에 관한 토론회’ 개최
- 5월 11일 ‘조대여고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기자회견

- 6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린마일리지제’에 관한 진정서 제출
- 7월 - 11월 조례안 수정 및 검토 작업, 조례안 전문가 검토 후 초안 마련
- 12월 12일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 2010년 3월 4일 KBS TV토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패널참여
- 5월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 2차시기 20여 차례의 내부 회의 및 토론 실시

3) 2010년 6월 2일,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 이후로 진보 교육감 및 진보적 교육의원 다수 당선되었다. 그 중, 추진위원회의 사실상 대표인 장휘국 전교육위원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었고, 교육의원 당선자 4명 중 3명이 학생인권조례 협약에 체결하여 교육위원회 7명중 4명 이상이 학생인권조례에 동의하는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기존 교육위원회 조례안 상정 전략 뿐 만 아니라, 교육감 발의, 주민발의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 추진과정 속에서 들어난 논쟁, 시사점

전국 최초 2005년 광주학생권리조례제정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현재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2009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고군분투한 싸움을 시작으로 2010년 진보세력의 상징이 되는 교육감 당선자들이 주요 의제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수장들이 ‘무상급식’을 공약화하며 ‘한정적 복지’를 기조로 하고 있던 MB 정부를 당황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일시방편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해주는 척 했던 교육청 관료적 방식이 이제 ‘보편적 학생인권’이란 새로운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를 끼고 있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총체적인 청소년의 권리를 환기시키고, 그것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시민사회단체의 공세적인 참여 필요

학생인권조례가 진보성향 정치인의 주요공약이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할지라도, 수동적이고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일부 교육청 관료와 보수적인 교육의원을 극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견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와 교육운동 단체, 사회복지사, 교육복지가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기존 연대방식의 위장되거나 중립적 개입이 아닌, 보다 공세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2) 학생들의 실질적인 권익이 우선

학생인권조례 논의를 할 때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교육적 효과 VS 인권침해’라는 대결 구도를 상정하고, 끝도 없이 미로 속을 헤매다 결국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며 흐지부지 끝을 맺는다는 것이다. 결국, 당파적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이 조례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인권의 보편성, 주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보다 강한 학생인권조례로 추진되어야 한다.

3)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참여보장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례의 올바른 내용이 들어갈지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보수단체에서 한다면 불 보듯 뻔 하지만, 서울추진본부처럼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한다면 암묵적인 동의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례 주체인 청소년 참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경기도처럼 학생참여위원단을 구성했지만 자문위원단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배제한 경우를 어떻게 봐야하나? 학생인권조례의 청소년참여는 핵심이자 기본사항이다.

5) 추진방향에 대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시급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정되는지 또한 중요하다.

먼저 교육의원(광주 사례)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부 교육청 관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더라도 정치적인 개입 및 의견표명을 못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부담이 적었고,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교육위원의 존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상당수의 교육의원들이 많아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힘들었고, 결국 반대하는 쟁점사항을 가지고 몇 차례 중도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상정도 못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차원의 몇 차례 대시민 홍보, 기자회견, 공청회 등 여론작업을 진행했지만, 일선 현장 교육주체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기에는 물리적인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다.

앞서 김재석 선생님이 발제하신 주민발의 경우로 할 경우, 주민자치운동의 형태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서명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인 교육청을 소외시키는 꼴이 되 버리고, 조례안을 받을 보수적인 오세훈 현)서울시장과 시의원이라면 조례안을 무력화 시키거나 교육관련 조례리는 이유로 교육감에게 이송할 우려가 있다. 서울추진 본

부가 서명운동을 위해 투여할 수 있는 예산, 인력이 되는지 또한 타진해봐야 한다.

반면, 교육감 발의(경기도 교육청) 경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례 이슈화 및 여론화, 조례 실행 동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해 조례 추진 기구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성 세부 검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조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년이란 짧은 기간 속에 보수진영의 비판제기에 대한 소모적인 대응에 치중하다보니 찬반논란만 벌린 채 안전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어떠한 방법이던 간에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 지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시민들의 힘을 가진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어찌되던 이 운동에 시작을 알리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추진본부 발족에 큰 의미를 두고 싶고, 향후 서울추진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공조 속에 학생인권조례가 별 무리 없이 제정되길 바라며,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최인성 기자, 「"밥 늦게 먹었다고 벌 서고, 머리 길다고 뺨 맞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 ...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2010. 07. 07.

"밥 늦게 먹었다고 벌 서고, 머리 길다고 뺨 맞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 ...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사례 1]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다.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우라질, 네 머리를 쪼개버리겠다" 등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 아이들이 공포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30센티미터 자로 머리카락이나 손을 때리며 밥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결상을 들고 있게 하기도 한다. 체벌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사가 하는 행동은 체벌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교사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사례 2] 조카가 사립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학기 초 머리가 길다고 등교시간에 뺨을 맞고 벌을 서고 왔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창 옷이나 머리에 신경 쓸 때 아닌가. 그런 것 가지고 벌을 선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부부교사인 조카 부모도 속상해한다. 다른 아이도 한번 걸렸는데 반발을 했더니 바로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단다. 아이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할 길이 없는 것 같다. 학교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운동본부')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학생인권침해 사례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장은 참교육학부모회에 접수된 상담사례들을 제시하며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각종 규정과 학생인권의식이 미성숙한 학교 관계자 때문에 철저히 학생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 남부지회장은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 초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명기돼 있는 학생인권보장 내용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로 인해 학생인권신장을 담보할 수 있고 교육적 목표도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하여 미성숙한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에 앞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발족식을 갖고 이들의 출발을 알렸다. 서울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자유와 참여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차이가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복원된 학교를 그리는 기본 설계도"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역설했다.



▲ 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발족했다. © 최인성

"학생은 미숙한 보호대상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제기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생인권이 어떻게 인식돼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의 학생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교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검열하고, 양말색깔까지 신경 써야 할 지경"이라며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명제가 사라진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생인권은 어떤 이유로든 유효되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발족선언문을 읽은 조은(18, 고등학생)양은 고등학교 3학년임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학생은 "학교의 치마길이 제한, 두발규정 등 사소한 것들에서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청소년들이 미숙한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이 같은 규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양은 "이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등이 최대한 지켜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의 권리 신장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은 떨어진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정말 학생인권이 아이들을 망칠지, 교사들이 학생인권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조영선 서울 경인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가'에 대해 얘기하면서 "학생인권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존재의 인권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면 교권은 학생을 대상화했던 구시대적 권위 의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총자료의 교권침해사건 유형별 증감현황에서 교권침해의 주원인은 '신분문제'였고, 학교 현

실을 비취볼 때 교사의 신분을 관할하는
교육청과 사립학교 당국이 교권침해의 주
된 주체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의 자료에서도 교권침해의 원인
은 '관리자 갈등', '휴직' 등 노동조건과 관
련되는 것이 많다"며 "오히려 언론에서 떠
드는 학생생활지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교권침해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지
적했다.

서울운동본부, 광노현과 함께 간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후보시절 공약
으로 내세웠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실행
하기 위하여 다음달 8월, 자문위원회를 구
성해 조례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운동본부가 광 교
육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함께 실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 서울운
동본부는 "함께 병행하지만 서울운동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석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서
울운동본부는 주민 발의나 주민 청원 등 어
떤 형태로든 서울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자체 조례안을 만들
어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교
육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조직국장은 "서울시 교육청은 나
름대로 조례안을 만드는 등 조례제정 절차
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두 조례안이 함께 검토돼 하나로 발의될 수도 있고, 각각 발의될
수도 있지만 공청회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흔쾌히 협조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 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
포먼스를 하고 있다. © 최인성



▲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시민단체들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 요구'를 위한 학부모·교원·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을 열었다. © 이주연

보수단체 "학생인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학생들 선동"

한편 이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의 발족식에 앞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 요구를 위한 학부모·교원·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현장과 교육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학교 현실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돼 일제고사에 대한 방침에서 교과부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제정 또한 수면 위로 떠올라 시민사회 전반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홍보자료」, 2010. 09. 11.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 때와 곳 : 9월 11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전교조서울지부 9층 강당(이수역)

■ 참가비 : 없음 (식사비는 각자 지급)

■ 주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주요 내용

1) 10:00~10:10 몸 풀기 마음 열기

2) 10:10~11:00 학생인권조례, 왜 필요한가 - 유형별 실태 강연

[강사 :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3) 11:10~13:00 학생인권 기준 이해하기

- 학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문제점

- 학생인권 유형별 관점 정립하기

- 학생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

[강사 : 한낱 (인권교육센터 '들)]

4) 14:00~15:50 학생인권조례 쟁점 따라잡기 1

-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에 관한 대안 논리 개발하기 : 반교권론, 학습분위기저해론, 홍위병론, 위법론, '요즘애들'론 등 비판

[강사 : 배경내 (서울본부 조례안작성팀)]

5) 16:00~17:00 학생인권조례 쟁점 따라잡기 2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안 발표

- 조례안 작성에서의 주요 쟁점 토론 : 최대주의 vs 최소주의 등 조례안 내용 구성에서의 전략 논의

[발표와 사회 : 변춘희 (서울본부 조례안작성팀)]

* 참여 문의 : 배경내 (017-214-3550)

배경내, 「학생인권조례 쟁점 따라넘기 1 -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논리 개발」,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자료집」, 2010. 09. 11.

[셋째 마당]

학생인권조례 쟁점 따라넘기 1

-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논리 개발

배경내 || 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해 보수 단체나 언론이 제기하는 주요 비판논리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논리는 대개 ‘학생은 미성숙하다’(미성숙론), ‘학생은 보호 대상이다’(보호주의)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지만, 좀더 세부적인 반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반교권론 : 학생은 성인과 다르다. 배우는 지위에 있다. 훈육이 필요하다. 조례는 교권을 위축시킨다. 최소한의 학생 지도통제권을 교사가 가져야 한다.
- 학습분위기 저해론 : 멧 부리는 데나 신경 쓰고 아자보충도 맘대로 빠지고 하다 보면 학습분위기가 훼손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압할 수 없다면 학습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 정치화론/ 흥위병론 :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든다. 학생을 선동한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을 촛불흥위병으로 키우려 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 상위법 위반론 : 초중등교육법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례는 체벌을 금지하니 상위법 위반이다. 규정 제정권은 교장에게 있는데 조례가 그 권한을 침해하니 상위법에 저촉된다.
- ‘요즘 애들’ 론 : 요즘 애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많을 줄 아나.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시대다. 폭력적인 학생, 주의력이 결핍된 학생, 여러 증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학생에게는 권리보다 책임과 인성 교육이 우선이다.

아래 주요 신문기사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글을 참고하여 우리 스스로 대안 논리를 개발해 보자.

체벌 전면 금지, 어떻게 봐야 하나 [중앙일보]

2010.07.22 00:27 입력 / 2010.07.22 00:27 수정

학생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일 뿐일까.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한 방침을 놓고 교원·시민단체들이 저마다 환영과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체벌 금지 조치에 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전교조와 한국교총 관계자로부터 각각 들어봤다.

찬성 “인권 존중 교육의 출발점”



조성범
전 교 조 편집실장

체벌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안 된다는 주장과 다만 생활지도상 불가피하다는 일부의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학생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을 고유한 인격체로 보느냐, 아니면 학생을 훈육(訓育)이나 관리 대상으로 보느냐의 차이이다. 요즘 학생들의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행동이 통제 불능의 상태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라는 것은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체벌을 해서라도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자적 소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른바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론’이다.

체벌의 직접적 원인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다.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소통할 수 없고, 갈등의 씨앗이 생기게 마련이다. 야간 자율학습 불참을 둘러싼 갈등, 두발 길이로 인한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갈등이 촉발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불손한 언행이 교사의 심기를 건드려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합리적 지도 기준이 없고,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

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사의 지도가 정당한 기준에 근거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을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학생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체벌에 의한 지도의 효과는 즉각적이다.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교사는 체벌을 포기하기 어렵다.

체벌이 교육적일 수 있을까. 체벌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의 감정을 격화시킨다. 체벌을 당한 학생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 순종하지만 결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불안감과 공포, 정신적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체벌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 폭력의 위험성에 둔감해지면서 학생의 인성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체벌을 당하는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육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체벌을 금지하면 추락한 교권은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체벌의 목적이 교권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논리는 당황스럽다. 체벌 금지가 교권 훼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체벌 금지를 오히려 교권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권은 ‘교사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또 체벌을 금지하면 교사를 교육의 방관자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가 체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심각한 주장이다.

최근의 잇따른 학생 체벌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근거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다. 학생의 인권 보장이 교사의 교권과 충돌하는 게 아니다. 개인의 인권을 다른 사람의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인권이 아니다. 따라서 수업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도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체적 인간으로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행복해 한다면 한쪽의 인권이 보장되고 커진다고 해서 다른 쪽의 인권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는 교사가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기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체벌을 대체할 학생지도 방법을 찾기 위한 교육주체들의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성범 전교조 편집실장

반대 “최소한의 학생지도권 박탈”



하석진

한국교총 교권국장

휴대전화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가 교칙 위반을 이유로 지도를 하자 어차피 의무교육이니 자를 수 있지 않느냐며 항변하고 대드는 학생, 자기보다 약한 학생을 수시로 괴롭히고 폭행하는 학생... 이들은 교사의 주의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규칙에 따라 안전한 부위인 엉덩이를 두 대 정도 약하게 때린다. 그런데 이튿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왜 내 아이를 체벌했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어 경찰에 고소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모습이다.

과연 엉덩이 두 대를 때린 교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학생지도권을 벗어난 것일까.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생 폭행 동영상은 그야말로 처벌받아 마땅한 폭력행위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규칙에 정해진 가벼운 벌, 경미한 체벌조차 교사의 정당한 지도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

우선 상위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방법’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체벌로 인식되고 있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를 무시하고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체벌 금지 방침은 타당성을 잃고 있다. 16개 시·도 중 서울만 전면 금지하는 것도 국가적 수준의 법령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사안의 성격과 결코 맞지 않다. 학생·학부모·교원들의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둘째, 최소한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상실돼 ‘교육 포기’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체벌 전면 금지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 붕괴 현상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무력화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는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일 뿐이다.

셋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의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체벌 규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은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던 체벌 금지 조치를 1998년 사립학교까지 확대한 바 있고,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체벌을 불허하고 있다. 일본은 체벌을 금지했지만 교사 지도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텍사스·미주리주 등 23개 주는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여학생에 대한 체벌과 집단체벌은 금지하면서 학교장의 허락 아래 손바닥이나 옷 위 엉덩이에 가벼운 회초리로 매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허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했던 탓이 크다. 체벌을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할 것인가. 금지한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석진 한국교 총 교권국장

[경인일보] "학생인권조례, 선동적 정책" 김진춘 도의원 쓴소리

데스크승인 2010.09.09 지면보기 김태성 | mrkim@kyeongin.com

[경인일보=김태성기자]경기도교육감 출신이자 교육계 원로인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김진춘 의원(비례)이 지난 7일 도의회 교육위가 원안 가결시킨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진춘 의원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 권리만을 주장하고, 학교의 수업권은 인정하지 않은 선동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대학교수 출신이 작성해서 그런지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대학생을 위한 조례라고 여겨진다"며 "평등이나 역자란 단어를 활용해 학생들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다양한 제도 및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통해 차별은 엄연히 금지돼 있으며,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도 있다"고 이번 조례안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학생들의 자유를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학생들의 교육받아야 할 권리는 왜 주장하지 않냐"고 반문한 후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의 수업권과 교육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조례다"며 본회의 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조례를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포럼> 경기議會, 학생인권조례안 폐기해야

기사 게재 일자 : 2010-09-09 13:58

이성호 / 중앙대 교수·교육학 바른사회 운영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끝내 현실화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議會)는 7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할 개연성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생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스러운 표현 보장, 체벌 금지, 학생들의 학교정책 결정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교육에 있어 훈육의 가치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자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각이 전제돼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훈육은 외적 제재수단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훈육을 교육과 동일시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편협한 시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훈육이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교와 같이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뤄진 조직의 경우, 조직의 통솔과 효율성을 위해 훈육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학교는 교육이라는 목적의 구현을 위해 다소의 강제성이 용인되는 집단으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는 상황에 따라 제한되고 유보될 수 있다. 특히 집단의 공익, 사회성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존재하는 규칙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라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보충학습, 학생 소지품 검사,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 교내 휴대전화 통제, 체벌 등은 모두 학교라는 집단의 공익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들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 밖에도 학생인권조례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이 같은 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조례로 보호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인권이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조례 제정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등의 감독과 관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순리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내용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인데, 이를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하급법인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자칫 교육의 주체들을 편가를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만일 이들 간의 충돌이나 갈등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 자치권과 참여의 권리 등은 학생이라는 집단을 정치집단화할 소지가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교정책 결정에 대해 판단력이 미숙한 단계일 뿐 아니라 관련 정보력 또한 한계가 있는 학생들의 참여권 인정은 자칫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학교는 미성년자들의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그러기에 현재

선진국들은 학교의 안전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훈육에 대한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학생들의 특정 행위가 학교의 교육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것마저도 인권침해라고 본다면 이는 곧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의 결여를 의미한다.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하기 바란다

[동아일보] [기고/김진성]포퓰리즘 인권조례, 교실이 무너진다

2010-08-10 03:00 2010-08-10 03:00

학교현장에 교육은 없고 포퓰리즘이 활개 친다.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교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인권조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92.3%는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첫째, 진보 교육감의 머릿속에는 정치만 있지 교육이란 개념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인 자유와 평등 원리와 교육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하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평등하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둘째, 진보 교육감은 학생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만 알지, 그들이 미성년자로서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셋째, 교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조례와 균형을 잡겠다는 발상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의 가해자는 교사이고 피해자는 학생이다. 교권조례의 가해자는 학생이고 피해자는 교사가 된다. 말하자면 사제 간 갈등을 법과 재판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넷째, 이수나라라고 하는 중고교생이 중심이 된 소위 학생인권단체 대표가 꼭 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하여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등을 반대했다고 한다. 학생의 위치와 본분에서 크게 벗어났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고 교사의 무사안일 풍토가 심화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때로는 학생에게 엄격한 자기 억제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조선일보]

[사설]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

입력 : 2010.07.01 23:01

전교조 지역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 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오는 7일 발족하는 이 모임은 참여 제안서에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6개 지역에 민주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망이 밝아졌다"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수진영이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이라며 "학생 인권은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안(案)은 체벌 금지, 두발 복장의 자유,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의 자유,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학생 신분에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게다가 이번 제안서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의 것도 아니다. 제안서는 2008년 촛불시위에 나왔던 10대 청소년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을 '정치의 주체'로 키우자고 하고 있다.

초·중·고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을 하기 쉽다. 2년 전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처음 일어났을 때 참가자의 80% 이상이 중·고생이었다. 이들은 병든 소가 주저앉고 고꾸라지는 PD수첩의 선정적 장면과 분유·치즈·라면을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인터넷 괴소문에 이끌려 "이제 열다섯살인데 벌써 죽기는 싫어요"라며 청계천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10대들은 이번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오폭설·좌초설·내부과괴설 같은 인터넷 유언비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또다른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렸다.

인터넷 선동과 유언비에 휩쓸리기 쉬운 10대를 '정치 주체'로 키우려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은 정치꾼,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이 외부 세력 조종을 받아 '평준화 확대하라' '등록금 없애라' '특목고 폐지하라'며 집단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100인위원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발신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날짜 : 2010년 9월 27일(월)

제목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100인위원회 위원 참여 요청

문의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017-214-3550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입니다.

우리 서울본부는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가운데 참된 배움과 진정한 돌봄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7일 31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뒤 서울시 의회에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당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선 이후 차별 금지 등 활발하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 현재 우리 단체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도 탄력을 받아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을 풍부하고 심도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워크숍과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본부에서는 조례 최종안을 작성하기 전해 각계 각층 전문가 및 활동가들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학계, 법조계, 교육계, 인권 등 전문가와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 그리고 노동·시민·사회 단체 및 각종 소수자 등이 참여토록 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을 모아 낼 예정입니다.

100인위원회는 조례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실 것입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10월 중순경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주민 서명에 들어가 가능한 한 금년 내로 서명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서울도 내년 9월부터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여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권리와 책임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제대로 된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앞장서 주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역할 : 조례안 검토, 조례에 담길 내용 제안, 서울학생인권조례 홍보 등
- 선정 대상 : 사회적 상징성, 전문성, 부문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 분야 및 단체별 배정
 - 인권·교육·학계·법조·명망가 등 10명
 - 31개 참가 단체에 각 2명
 - 학생과 교사 각 25명 (구청별 각1명)
- 조직(추천) 기간 : 9.29(수)까지
- 위원으로 추천된 분의 **성함/소속단체 및 직책/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 보낼 곳 : 대표 메일 hrs3388@gmail.com 또는 cafe.daum.net/hr-ordinance 에 올려 주셔도 됩니다.
- 연락처 : 배경내(017-214-3550) 공현(010-2840-3328)
김재석(011-9993-1999)

아울러 100인위원들을 모시고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을 다음 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에도 참여하셔서 현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제안해 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

■ 때: 10월 6일(수) 오후 4시-6시

■ 곳: 건강연대 5층강당

■ 모이는 사람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100인위원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1. 여는 말
2. 축하 공연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대로 알아보자!
4. 서울학생인권조례, 더 많은 권리를 상상하자!
 - 학생인권조례 3분 발언대 : 학생인권조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 막간 공연 최
6. 함께 닫기

2010. 9. 2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분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 홍보 웹자보, 2010. 10. 06.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할
위한 **시민제안마당**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사전마당] 학생인권 사진전 & 캠페인
 때 | 2010년 10월 6일(수) 오후 1시~3시
 곳 | 세종문화회관 앞 (혹은 교보문고)

[본마당] 시민제안마당
 때 | 2010년 10월 6일(수) 오후 4시~6시
 곳 | 건강연대 5층강당(경복궁역 4번 출구)

**본마당
행사는!**

- * 서울학생인권조례, 더 많은 권리를 상상하자!
- 각계 전문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조례를 함께 만드는 시간
- * 교사, 청소년들의 축하 공연

건강연대
오시는 길
click!!



주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선전홍보팀 이아 9059 3410 (조상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 명단(총 125인)」, 2010. 10. 06.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 명단(총 125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조례안 작성팀이 마련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
민발의안을 함께 검토해 주신 각계 전문가·교육주체 명단입니다. 총 125분이 합
께해 주셨습니다.

□ 학생·청소년 (22명)

고원우(송곡고) 공기(한소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여성주의팀활동가) 광건호
(용곡중) 구다훈(덕성여중) 김유진(대원외고) 김재석(오산고) 둠코(김해솔, 이수나로) 류
서희(중앙여고) 문일평(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희망지기) 박마리(창일중) 어쓰
(김동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노동빈곤팀활동가) 유남규(건대부고) 이상현(21세
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이주현 정재환(광신중학교) 장주성(서울방송고) 조만
성(고척고) 조세현(명덕고) 조이(이주연, 이수나로) 차민기(송곡고) 한김종희(수명고) 홍
지효(북서울중)

□ 교육 (32명)

강수정(진보교육연구소 운영위원/목정중) 권종현(우신중) 김경옥(대안교육연대운영
위원장) 김민선(신구로초) 김영래(가곡초) 김영승(세화여중) 김용주(신월중) 김한민(우
이초) 김현(국악고) 노년환(중앙고) 마운중(인헌중) 박복선(성미산학교교장) 박수영(거
원초) 손대출(이대병설미디어고) 신창복(광장중) 오석규(고덕중교장) 오원식(종암중) 유
상준(면남초) 유성희(개웅중) 이규동(누원초) 이동욱(신성초) 이복균(신도림중교장) 이
영탁(온곡중) 이주영(마포초교감/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상임이사) 이주형(남강고) 이치
열(대안교육연대사무국장) 이현(진보교육연구소소장) 장우연(수색초) 진영효(상암중)
최화섭(명일중) 한영순(영희초) 황철훈(염광중)

□ 학부모 (11명)

김수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운영위원) 박미향(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
울학부모회관동대표) 박부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상담실장) 박현숙(평등교육실
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대표) 안미경(어린이책시민연대) 이기중(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
협의회) 이미자(구암중학교학부모) 이빈파(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대표) 장문선
(어린이책시민연대)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최정화(참교육을위한전국
학부모회서울지부지부장)

□ 인권 (17명)

광호(동성애자인권연대활동가) 김조광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고문, 청년
필름 대표) 류문수(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 활동가) 민선

(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박래군(인권재단'사람'상임이사)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박재경(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명남(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영림중교사)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정상덕(원불교인권위원회사무총장) 정을(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한날(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현종스님(불교인권위원회)위원 홍의표(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수송초 교사)

□ 시민사회 (17명)

권혜진(홍사단교육운동본부사무처장) 김선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사무처장) 김해원(작가) 김희정(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류상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운영위원/목사) 박경석(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배성인(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소장)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변중용(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사무처장) 유상필(종교자유정책연구원전문위원/목사) 유정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전지협협부설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장) 이향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구로 누리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완숙(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최준영(문화연대사무처장) 홍세화(학벌없는사회공동대표/언론인)

□ 학계 (7명)

김상봉(학벌없는사회운영위원/전남대철학과교수) 박명기(서울교대교수) 심성보(홍사단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부산교대교수) 이윤미(홍대교육학과 교수) 진영중(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소장/경기도학생인권조례개발연구책임자) 최윤진(한국시민청소년학회 회장/중대청소년학과 교수) 한상희(한국입법학회회장/전국대헌법학교수)

□ 법조계(5명)

김인숙(군인권센터운영위원/변호사)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윤지영(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임인섭(종교자유정책연구원자문변호사)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변호사)

□ 노동(8명)

김승태(전공노서울지역본부수석부본부장) 김윤례(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서울분회사무장) 노명우(민주노총서울본부수석부본부장) 변성호(전교조서울지부지부장) 안효안(전공노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희진(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서울분회교선부장) 이민숙(전교조서울지부수석부지장) 이재용(민주노총서울본부본부장)

□ 정당(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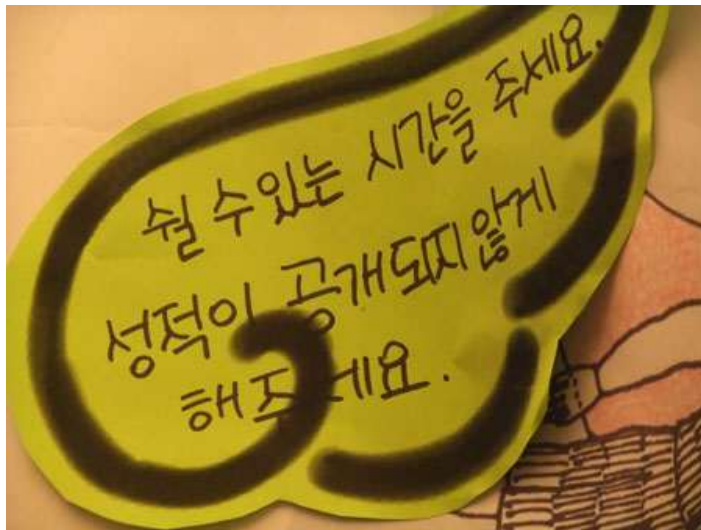
김종민(민주노동당서울시당위원장) 신언직(진보신당서울시당위원장) 전권희((민주노동당서울시당수석부위원장) 정호진(진보신당서울시당부위원장) 차영민((민주노동당서울시당사무처장) 최은희(진보신당서울시당부위원장)

윤지연 기자, 「 ‘시민의 힘’ 으로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시민제안마당’ 개최...학생인권조례 내용 풍성해진다」, 민중언론 참세상, 2010. 10. 06.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시민제안마당’ 개최...학생인권조례 내용 풍성해진다

시민의 의견과 힘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 첫 발을 내딛게 될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6일 오후,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을 개최했다.



이는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어보자는 취지다. 이 행사에는 일반 시민 뿐 아니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했다. 그야말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행사장에 속속 도착한 시민들을 맞은 것은 ‘학생인권은 00이다’라는 피켓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학생인권조례에 생각하는 바를 빈 공간에 적어 넣었다. 곧 ‘학생인권은 공기, 물, 그리고 밥이다’, ‘학생인권은 함께 불러야 재밌다’, ‘학생인권은 교사 인권의 도약대다’, ‘학생인권은 당당히 숨 쉴 권리이다’, ‘학생인권은 희망

이다' 등의 메시지가 가득 찼다.



첫 관문을 통과한 시민들을 맞이한 것은 ‘푸른학교 공부방’ 학생들의 축하공연이었다. 학생들의 춤솜씨를 관람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사회자들이 준비한 콩트에 웃기도 했다. 한날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의 랩핑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껏 들뜬 행사장은 시민들의 제안 마당을 진행하며 다소 진지해졌다. 참가자들은 나뭇잎과 날개 모양의 종이에 ‘학생인권조례에 꼭 담겨야 할 권리’를 써 넣고 각자 발표 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박재송씨는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시설 보완과 예산지원’, 그리고 ‘생리공결제’를 꼭 필요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학교에는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으며, 생리공결제 역시 대학에만 시도되고 있을 뿐,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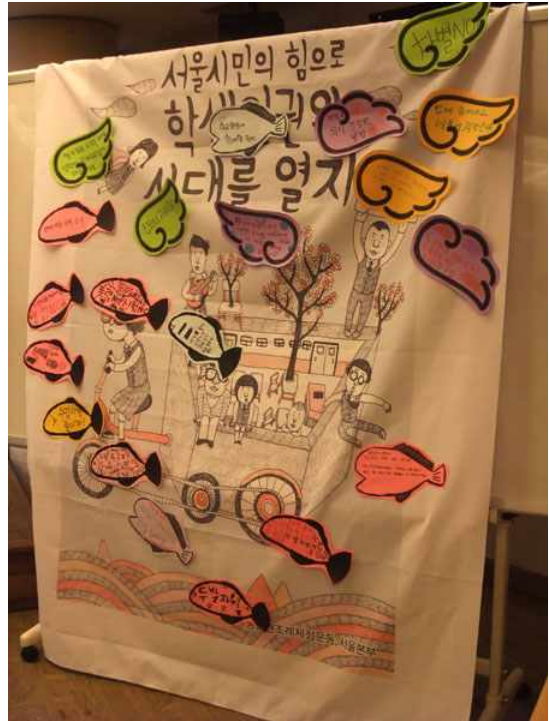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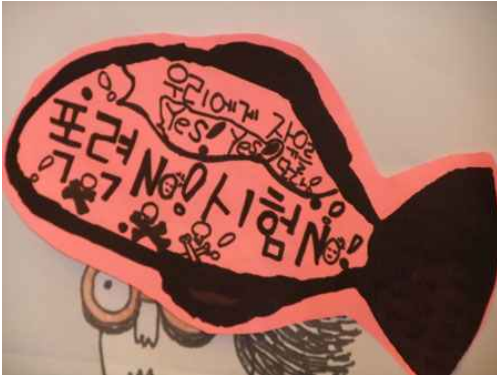
김조광수씨는 청소년 성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그는 “성소수자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상담교사 의무화를 시행해야 하며, 특히 상담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성 소수자가 고민을 선생님과 상담 할 경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청소년들은 고민 상담으로 더 큰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홍의표씨는 ‘누가 학생인권의 지지자, 옹호인가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의표씨는 “현재 인권조례 추진으로 교사들이 위축된 것 같지만, 교사와 학부 모들이 적극적 지지자와 옹호자로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뭇잎과 날개모양 종이에 적힌 시민들의 의견은 플랑을 가득 채웠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안 내용이 풍부해 지는 만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담길 내용도 풍성해 지고 있었다. 지난 5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첫 걸음은 경기도에서 내딛은 셈이지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그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 인권'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 2010. 10. 18.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때 : 2010년 10월 18일(월) 11:00

■ 곳 : 한국건강연대 강당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차 려 ■

1. 조사 결과 발표

-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1 - 학부모

-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2 - 교사

- 서울 교사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 조사기관 : 참교육연구소

구 분	내 용		
	교사	학생	학부모
모 집 단	전국에 있는 교사	수도권 중고등학생	수도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조사기간	2010년 9월 29일~10월 7일		
표본크기	1478명	1885명	959명
표본추출방법	온라인메일을 수신한 응답자	지역별 임의 할당	지역별 임의 할당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2.6%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2.2%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3.1%

◎ 분석 도구 : SPSS12.0K 통계 프로그램

◎ 표본의 특성

교사		빈도	%
성별	남	762	52.8%
	여	680	47.2%
나이	20대	57	4.0%

	30대	445	31.2%
	40대	644	45.2%
	50대이상	279	19.6%
급별	초등학교	433	30.4%
	중학교	437	30.7%
	고등학교	555	38.9%
지역	대도시	685	48.0%
	중소도시	479	33.6%
	읍면지역	262	18.4%
표 합계		1478	100.0%

학생		빈도	%
성별	남	920	49.2%
	여	951	50.8%
구분	국공립	1303	70.1%
	사립	555	29.9%
급별	중학교	669	35.9%
	일반계고	927	49.7%
	전문계고	268	14.4%
지역	서울	888	47.6%
	경기	527	28.2%
	인천	452	24.2%
표 합계		1885	100.0%

학부모		빈도	%
성별	남	206	21.8%
	여	739	78.2%
급별	초등학교	28	3.0%
	중학교	805	85.8%
	고등학교	105	11.2%
나이	30대이하	349	37.1%
	40대	456	48.5%
	50대	132	14.0%
	60대이상	4	.4%
지역	서울	429	46.1%
	경기	271	29.1%
	인천	231	24.8%
표 합계		959	100.0%

- 발표 하 며 -

학생인권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 운동, 특히 2005년부터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차별금지 조치, 학칙 개정 조치 등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환영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시민·인권단체들 또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우려를 보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부각시키는 측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에서는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수도권 학생, 학부모들 그리고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부 언론과 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인식 또한 잘못된 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입시기관이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생과 가치관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길 바란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등이 꼽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앞으로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학생	53.0%	35.6%	3.2%	2.0%	6.3%
학부모	26.6%	61.0%	6.8%	0.9%	4.8%
교사	45.8%	42.9%	8.3%	1.5%	1.4%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모두 물었다. 학생들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53.0%로 그 필요성에 큰 공감을 보였다. 교사들 중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88.7%, 학부모는 87.6%로 역시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에 얼마만큼 동감하는지

“학생인권은 학교에서 알아서 잘 보장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같은 제도는 불필요하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4.2%	15.1%	34.4%	46.2%	
학부모	3.8%	26.3%	46.5%	23.5%	
교사	1.7%	11.3%	34.6%	52.3%	
“인권을 보장하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어 학교폭력이 늘어나게 된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8.1%	28.6%	35.2%	28.1%	
학부모	6.3%	36.6%	39.8%	17.2%	
교사	4.5%	13.4%	34.8%	47.3%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지 않아 사교육이 늘어나게 된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8.0%	29.5%	34.4%	28.1%
학부모	7.7%	35.3%	43.6%	13.4%
교사	2.5%	12.5%	35.0%	50.0%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4.0%	9.4%	25.7%	61.0%
학부모	2.9%	14.9%	44.7%	37.4%
교사	1.4%	5.1%	24.6%	68.9%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6.4%	17.8%	33.2%	42.6%
학부모	4.0%	21.2%	48.2%	26.7%
교사	3.7%	13.7%	35.1%	47.5%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우려의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동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과 사교육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 “대체로 동감한다”라는 답이 다소 높게 나온 것 외에는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이 더 많았다. 학교폭력과 사교육에 관한 우려에서도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이 학생 63.3%, 학부모 57.0% (학교폭력), 학생 62.5%, 학부모 57.0% (사교육) 더 많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우려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 반교육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나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등은 전혀 동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과 사교육의 경우는 학교폭력과 사교육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체 별 높

○ 체 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교사)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여건 가운데서는 불가	있어야 한다
60.3%	32.8%	7.0%

교사들 중 대다수가 체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별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교사는 단 7.0%에 지나지 않았다. 체별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 체별을 없애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에서 체별을 받았는지 (학생) ○ 학교 체별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있었는지 (학생)

받았다	받지 않았다
69.9%	30.1%

그렇다 (영향 있음)	아니다 (영향 없음)
39.1%	60.9%

학생들 중 다수가 체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 중 60.9%는 체별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체별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한 경우에도 그 모두가 체별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도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체별이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체별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빈도로 하는지 (교사) - 학교급별 분석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할 때가 있다	일정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 한계 내에서 교육적 체벌을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체벌하는 편이다
초등학교	30.8% (133)	54.2% (234)	11.3% (49)	3.7% (16)
중학교	19.3% (84)	56.9% (248)	19.5% (85)	4.4% (19)
고등학교	34.7% (192)	45.3% (251)	16.4% (91)	3.6% (20)
합계	28.7%	51.5%	16.0%	3.8%

χ^2 검정 : χ^2 값은 37.865이며 $p=0.00$ 이다. 학교급과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교사들의 경우에 체벌을 전혀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거의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하는 교사들이 51.5%로 과반을 차지하는데, 교사들이 체벌이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면 충분히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학교에 체벌을 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 좀 더 세심한 지원과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2가지 고른 것(교사)

두발-복장 문제	학교에 지각, 결석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지각, 결과	
11.2%	7.7%	6.5%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	성적 문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	학생 간 폭력, 절도, 기물파손 등
54.1%	0.7%	58.8%	27.8%

○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다고 답한 1250명(69.9%)의 학생들이 체벌의 주된 이유로 모두 고른 것

두발-복장 문제	학교에 지각, 결석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지각, 결과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
41.0%	33.2%	19.1%	56.8%
성적 문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	학생 간 폭력, 절도, 기물파손 등	이유없이
18.5%	19.4%	10.6%	12.6%

(※ %는 1250명 중에서의 비율)

교사들은 체벌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 “학생 간 폭력, 절도, 기물파손 등” 이 셋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학생들은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를 선택한 답이 높은 것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였지만 그 외에는 “두발-복장 문제” “학교에 지각, 결석”을 많이 꼽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체벌에 대해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하고 폭력, 절도 등을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체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용의복장단속이나 지각 등을 했을 때 체벌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 규정을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주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체벌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 태도 등과 관련해서 체벌이 많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자발적,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수업을 더 잘 지원할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 요즘 체벌이 줄었는지 (학생) - 지역별 분석

	줄었다	똑같다	늘어났다
서울	62.4% (362)	32.8% (190)	4.8% (28)
경기도	51.8% (226)	41.5% (181)	6.7% (29)
인천	42.1% (159)	51.3% (194)	6.6% (25)
합계	53.5% (747)	40.6% (565)	5.9% (82)

χ^2 검정 : χ^2 값은 39.539이며 $p=0.00$ 이다. 즉 지역과 체벌 감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차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게 해준다. 학생인권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차별금지에 대해 공론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학교에서 차별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2학기에 차별금지 조치를 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차별이 줄지 않고 똑같다거나 늘어났다는 답 또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차별의 대체별로 거론되는 상벌점제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아주 효과가 있다	조금은 효과가 있다	별로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5.2%	36.9%	33.4%	24.5%

대부분의 학교에 존재하는 상벌점제에 대해 학생들 중 다수는 실제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생활을 점수로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학생들이 잘못을 고치게 만들기보다는 점수에 따라 타율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별의 대안은 차별과 같은 발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차별 대신 학생 지도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사) (2개 선택)

교내 청소나 봉사	독서, 글쓰기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	
15.6%	10.9%	68.9%	
사회단체 봉사활동	상벌점제	성찰교실	
13.9%	14.5%	36.7%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대신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이나,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게 6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찰교실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것이 36.7%로 많았다. 상벌점제 등은 역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적었다. 이는 학생이 잘못했을 때 학생들에게 강제로 ‘벌’을 주는 방법보다는 대화,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벌금지 조치는 이러한 대안적이고 교육적인 방법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면서 이루어져야만 더 효과적일 것이다.

○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2개 선택)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 지도 규정 마련	교사의 인식 변화, 통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분담 시스템 확립
46.7%	51.5%	46.0%	15.9%
학교사회사업가, 전문상담사(교사) 충원	생활지도부를 학생인권복지부로 개편	학교관리자의 학생인권연수 의무화	교육청의 교사 직무연수시 학생인권연수 배치
23.1%	2.8%	4.3%	1.9%

교사들은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기 위해 교사들 자신의 인식,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는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 지도 규정의 마련,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체벌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꼽았다.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학교, 민주적인 법치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실태

○ 보충수업, 방과후학습, 자율학습 등에 어떻게 참가하는지 (학생) - 학교별 분석

	학교	강제적	반강제적	자발적	참여하지
--	----	-----	------	-----	------

					없음
방과후학교 · 보충수업	중학교	18.5%	15.3%	30.2%	36.0%
	일반계고	44.8%	24.2%	18.3%	12.8%
	전문계고	7.4%	6.6%	39.3%	46.7%
	합계	30.3%	18.5%	25.3%	26.0%
야간자율학습	중학교	2.6%	3.7%	15.7%	78.0%
	일반계고	30.0%	29.3%	23.2%	17.4%
	전문계고	3.5%	3.5%	23.0%	70.0%
	합계	16.7%	16.6%	20.4%	46.3%
방학 중 보충수업 · 자율학습	중학교	7.9%	11.6%	24.7%	55.8%
	일반계고	35.6%	28.6%	23.1%	12.8%
	전문계고	4.7%	2.3%	28.0%	65.0%
	합계	21.5%	18.7%	24.2%	35.6%
0교시 (아침보충수업)	중학교	7.5%	7.3%	12.9%	72.3%
	일반계고	22.0%	5.6%	8.8%	63.7%
	전문계고	9.4%	5.1%	9.4%	76.2%
	합계	15.0%	6.2%	10.2%	68.6%
주말자율학습 · 보충수업	중학교	2.3%	3.3%	11.5%	82.9%
	일반계고	13.7%	9.0%	14.9%	62.3%
	전문계고	3.5%	1.2%	11.4%	83.9%
	합계	8.3%	5.8%	13.2%	72.7%

	학교	강제적	반강제적	자발적	참여하지 않음
방과후학교 · 보충수업	초등학교	13.9%	23.0%	50.3%	12.9%

	중학교	20.8%	35.0%	42.6%	1.6%
	고등학교	27.0%	46.7%	25.2%	1.1%
	합계	21.3%	36.6%	37.6%	4.6%
야간자율학습	초등학교	11.0%	17.6%	9.1%	62.3%
	중학교	12.3%	17.3%	21.8%	48.8%
	고등학교	18.9%	44.3%	29.9%	6.9%
	합계	14.7%	28.9%	21.6%	34.8%
방학 중 보충수업 · 자율학습	초등학교	13.1%	27.5%	25.1%	34.3%
	중학교	16.6%	30.3%	33.9%	19.2%
	고등학교	19.9%	45.4%	28.4%	6.4%
	합계	16.9%	35.9%	29.0%	18.1%
0교시 (아침보충수업)	초등학교	16.6%	18.0%	9.1%	56.3%
	중학교	17.6%	16.8%	6.9%	58.7%
	고등학교	20.8%	19.5%	6.7%	53.0%
	합계	18.5%	18.6%	7.4%	55.5%
주말자율학습 · 보충수업	초등학교	7.8%	16.4%	12.7%	63.1%
	중학교	7.5%	12.8%	8.8%	71.0%
	고등학교	11.7%	25.4%	22.4%	40.6%
	합계	9.3%	19.3%	15.6%	55.8%

○ 보충수업, 방과후학습, 자율학습 등에 학생들이 어떻게 참가하는지 (교사) - 학교
 급별 분석

정규 수업 외 학습을 강제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애초에 학습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이다. 또한 중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보면 여전히 강제적/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시킨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이 이

제는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제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부모들이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자녀들이 학교에 오래 있기를 바라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학교에서 책임지고 강제로라도 공부시켜주길 바래서	양육·가사 노동이 부담스러워 서	학교 말고는 지역 사회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거나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	일 때문에 집을 비워두는 시간이 많아서	기타
44.5%	5.9%	28.5%	11.9%	8.9%

학교에서 자녀들을 강제로라도 공부시켜주길 바란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역시 입시 때문으로 보인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줄면 그만큼 사교육에 기대야 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 말고는 지역 사회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거나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라는 답 또한 28.5%로 꽤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 이외에 지역사회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학습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보여준다. 학교에서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시키지 않으면 사교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공공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기타 응답 중에서는 “학교에 오래 남아있길 바라지 않는다”와 같은 답이 가장 많았다.

4. 학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 다음 경기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들이 현재 학교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학부모) / 다음 경기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들이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구타·기합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매우 잘	잘	잘 보장되지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

	보장됨	보장됨	않음		음
학생	6.8%	24.1%	24.2%	14.4%	30.4%
학부모	4.7%	38.0%	31.1%	6.4%	19.7%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77.0%	20.0%	2.2%	0.5%	0.3%
복장, 두발 등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2.3%	8.1%	25.4%	56.1%	8.1%
학부모	4.1%	28.1%	40.4%	21.2%	6.4%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35.1%	46.5%	16.4%	1.5%	0.4%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0.6%	23.5%	21.1%	31.2%	13.7%
학부모	10.5%	42.0%	26.9%	14.5%	6.0%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8.1%	37.4%	4.1%	0.3%	0.1%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4.6%	19.0%	30.9%	26.1%	19.5%
학부모	4.3%	36.3%	37.0%	12.5%	9.9%
교사	매우	필요하	그리 필요치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필요하다	다	않다		
	53.3%	40.5%	5.7%	0.3%	0.2%
일기·수첩·휴대전화 등 사적 물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의적인 소지품검사·압수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7.4%	21.7%	23.2%	33.7%	13.9%
학부모	5.8%	39.1%	33.6%	12.0%	9.6%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34.4%	42.6%	18.6%	3.5%	0.8%
명찰 착용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8.1%	23.9%	25.9%	23.5%	18.5%
학부모	7.2%	49.1%	25.1%	8.8%	9.8%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45.7%	41.2%	10.7%	1.7%	0.6%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진술 등을 강요받지 않으며 원하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23.5%	32.0%	10.7%	10.4%	23.3%
학부모	17.0%	54.8%	13.2%	4.1%	10.9%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9.2%	34.8%	4.5%	1.0%	0.6%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9%	28.9%	19.3%	12.4%	26.5%
학부모	9.1%	47.5%	24.4%	5.3%	13.6%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6.2%	38.9%	4.0%	0.7%	0.2%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0.2%	30.5%	19.2%	13.4%	26.7%
학부모	8.4%	48.5%	22.3%	6.7%	14.1%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8.3%	35.2%	5.8%	0.5%	0.3%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5.0%	13.5%	20.3%	31.1%	30.1%
학부모	3.6%	30.1%	32.8%	15.0%	18.5%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38.0%	45.1%	14.9%	1.4%	0.6%
안전하고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받고 급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7%	26.7%	20.0%	24.5%	16.2%
학부모	8.2%	43.8%	25.6%	11.3%	11.1%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8.3%	37.1%	4.0%	0.6%	0.0%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5%	37.2%	20.5%	14.7%	15.2%
학부모	9.8%	57.3%	19.2%	4.6%	9.1%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63.4%	32.5%	3.5%	0.4%	0.2%
성별, 종교, 나이, 출신국가, 언어, 장애, 외모, 임신·출산, 가족상황, 인종, 사상·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8%	24.3%	18.4%	16.9%	27.6%
학부모	9.9%	44.7%	22.9%	5.5%	17.0%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72.5%	25.1%	1.8%	0.5%	0.1%
징계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8.0%	20.1%	16.0%	13.5%	42.4%
학부모	5.4%	39.1%	20.7%	5.1%	29.7%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65.9%	31.3%	2.4%	0.4%	0.1%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학생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다. 학생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많은 수가 답한 항목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잘 보장된다고 답한 것에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권 상황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 상황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인권 상황이나 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 많은 한편으로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잘 모르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진 두발, 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인권 내용들에 대해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교사들이 매우 많았고,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참여할 권리, 강제로 학습하지 않고 쉴 권리 등에서는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5. 교 권

-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52.5%	34.6%	12.0%	0.9%
교육청	40.2%	43.3%	15.6%	0.9%
학교관리자	36.7%	40.5%	20.7%	2.1%
학부모	18.4%	43.8%	33.4%	2.2%
학생	10.2%	29.6%	44.1%	16.0%

보통 교권을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문제로 보는 통념과는 달리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로 교과부, 교육청 등 국가기관이나 학교의 관리자를 더 많이 꼽았다. 학생들은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조금 더 많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사)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행정 개선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 인정
3.0%	60.9%	69.4%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	입시경쟁교육의 해소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 창구 개설
5.3%	38.2%	4.4%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 다음으로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교육행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는 것도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많이 꼽혔다.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교권이 보장된다는 답변은 3.0%로 아주 적어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6. 학생간 폭력

○ 학생간 폭력 해결을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교사)

	학생 통제 · 규 율 강화	인권교 육 실시	효과적 의사소 통 방법 교육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복지제 도 교육제 도, 환경 개선	기타
학부모	12.1%	15.8%	25.6%	21.3%	16.3%	8.3%	0.6%
교사	4.3%	11.2%	22.4%	23.3%	26.3%	10.6%	1.9%

앞서 학생인권 보장이 학교폭력(학생간 폭력)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그리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학생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학부모와 교사에게 묻자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규율강화가 필요하다는 답은 적게 나왔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주로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 교육”,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화”, “인권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간 폭력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7.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

○ 인권교육을 다음의 과정들을 통해 받아본 적이 있는지 (교사)

	교대·사대 교육과정	교육청주관 신규교사 교육과정	교육청주관 1 정연수	자율연수
있다	10.3%	4.8%	6.5%	45.6%
없다	89.7%	95.2%	93.5%	54.4%

교사들의 인권교육 이수 경험은 아주 적었다. 하지만 자율연수를 통해 인권교육을 접한

경우는 비교적 많은 편이었는데 이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열어왔기 때문에, 흥미와 필요를 가진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경우이다. 현재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과정,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거의 인권교육을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교육행정가나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인권친화적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바뀌야 할 점 등

○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학부모)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능한 입시전문기관	학생들을 통제해주는 관리기관	인문학적·과학적·실용적 지식의 전달기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
10.4%	3.7%	11.8%	74.0%

○ 현재 학교가 하고 있는 역할에 가장 가까운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능한 입시전문기관	학생들을 통제해주는 관리기관	인문학적·과학적·실용적 지식의 전달기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
36.4%	29.8%	17.1%	16.7%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그리고 연이어 그럼 현재 학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74.0%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이길 바란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가 하는 역할은 입시기관이거나 통제 관리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 현재 학교가 하는 역할이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

관”이라는 답은 16.7%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가 올바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입시기관이자 학생들을 통제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 학교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식이 가장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교장/교감선생님	선생님	학부모
학생	21.9%	37.9%	31.6%	8.7%
학부모	14.4%	42.2%	32.9%	10.3%
교사	3.6%	65.7%	21.7%	8.9%

학생, 학부모, 교사는 모두가 학교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과의 의식이 가장 많이 변해야 한다고 꼽았다. 현재 학교관리자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학교를 민주적·인권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개 선택)

학생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 등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38.3%	54.1%		14.5%	
	빈부격차, 차별, 불황 등 사회적인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기타	
15.4%	40.5%	25.6%			
학부모	인권교육의 부재와	불합리한 학교 규정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및 징계 등		열악한 교육환경
	45.3%	30.4%		17.7%
	빈부격차, 차별, 불황 등 사회적인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기타
	16.3%	47.9%	22.0%	
교사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 등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44.5%	14.6%		15.8%
	빈부격차, 차별, 불황 등 사회적인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기타
	11.9%	55.1%	28.7%	

학생, 학부모, 교사는 모두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이유로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교육주체들의 의식 변화와 동시에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셈이다. 학생들은 학교 규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많이 꼽았으나 학부모들은 학생들보다 더 적게, 교사들은 그보다도 더 적게 학교 규정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보다 학생들이 자기 생활에 직접 간섭하는 규정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2개 선택)

학생	인권교육 강화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25.9%	46.5%		45.3%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인권침해	교사의 업무	기타

		구제수단 강화	경감 및 지원 강화	
	39.5%	20.3%	10.0%	
학부모	인권교육 강화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27.2%	48.3%	50.2%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기타
	38.1%	10.0%	10.2%	
교사	인권교육 강화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6.1%	54.7%	65.3%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기타
	16.3%	3.5%	45.3%	

다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입시경쟁교육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생 45.3%, 학부모 50.2%, 교사 65.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중에는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고, 교사들은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다. 교육예산을 더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강성란 기자,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공감" 학생 88.6% 교사 88.7%」, 교육희망, 2010. 10. 17.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공감"

학생 88.6% 교사 88.7%

체벌 교사 71.3% - 체벌 효과 믿는 학생 39.1%

참교육연구소, <학생인권의식조사> 결과 드러나

학생과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북, 전남, 서울 등지에서도 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 중·고생 1885명과 전국 교사 1487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 관련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학생설문 :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pm 2.2%$, 교사설문 :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pm 2.6%$).

체벌·상벌점제 효과없고

이번 조사 결과 응답 학생의 69.9%인 1250명이 학교 내 체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이유는 27.1%가 '수업태도 불량 및 과제 미제출'을 택했고, '두발·복장 문제(19.4%)', '지각 및 결석(16.0%)'가 뒤를 이어 교사의 체벌이 학생 생활 지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체벌이 잘못된 행동의 교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는 39.1%인 468명에 불과했다. 최근 체벌 대체 방식으로 각 학교에 도입된 상벌점제(생활평점제, 그린마일리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57.9%의 학생이 부정



▲ 전교조와 인권시민단체가 1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유명민 기자 youngbitd1e@gmail.com ©

적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으로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이나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29.5%)', '교내 청소년 봉사(27.3%)' 등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란 입장을 밝혀 체벌, 상벌점제 등 현행 학교 내 학생 생활지도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교사 60.3% 체벌 반대 - 체벌 교사 71.3%

설문에 참석한 교사의 60.3%는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의 대부분인 32.8%도 "원칙적으로는 없어져야 하지만 교육여건상 불가하다"고 답해 체벌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체벌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3%가 "있다"고 답해 체벌을 필요악처럼 활용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이는 체벌을 대체할 대안적 생활지도 방안 제시가 시급함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학생·교사 "학생인권조례 필요" 한 목소리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 답변 허용)에 학생은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54.1%)'와 '입시위주 교육정책(40.5%)'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지만 교사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53.35%)'과 '인권교육 및 의식 부재(38.3%)'를 택했다. 불합리한 학교 규정을 학생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는 교사는 14.2%에 불과해 학생과 교사 간 의식차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설문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 각각 88.6%, 88.7%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보장 관련 세부 내용 의견차

학생설문 응답자는 경기 학생인권조례 내용 가운데 △복장, 두발 자율(81.5%)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난 적절한 휴식(57%) △수첩,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 불가(56.9%) △야자·보충 선택권(52.3%) △교육정책 결정 참여권(51.4%) △명찰착용 및 성적 등 개인정보 보호(49.4%) △체벌, 따돌림 등 폭력문제 노출(38.6%) 부분에서 학생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답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내용 가운데 꼭 필요한 권리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공정한 징계 절차 보장 △성별,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체벌, 따돌림 등 폭력 금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 △야자·보충의 선택권 △안전한 급식 결정 참여 △아플 때 적절한 치료 보장 등을 꼽아 큰 틀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복장, 두발 자율', '수첩,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 불가'는 교사 설문에서 가장 낮은 호응도를 나타내 학생과 교사의 의식차를 드러냈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생 아닌 교육당국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생각에 대해 학생의 24.2%는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교사의 경우 더 낮은 비율인 17.4%만이 동의했다. 도리어 교사들은 교과부(87.1%), 교육청(83.5%), 학교 관리자(77.2%) 순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장·교감(37.9%), 교사(31.6%)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학생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21.9%에 달해 학교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 서겠다는 각오를 보여줬다. 같은 질문에 교사의 21.7%가 스스로의 의식변화를 꼽았지만 65.7%는 교장·교감의 의식변화를 촉구하고 나서 학교 관리자의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줬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 청 회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 (경복궁역)

“교육의 중심에 사람을!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이런 믿음으로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학생 인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발의운동을 할 것입니다. 주민발의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함께해주세요!

인사말씀 홍세화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
발제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주민발의안 초안 발표
토론 오동석 (아주대 헌법학교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 학생)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김혜정 (학부모)
이복균 (신도림중학교 교장)
서울시교육의원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모시는 글

화창한 가을입니다. 학교에도 화창한 인권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고, 서울과 광주, 전북, 강원 등지에서도 학생인권 신장을 염원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7일 뜻을 올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바지런히 노를 저어 왔습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라는 믿음을 뜻에 새기고, ‘사람의 얼굴을 한 교육’, ‘자유와 민주주의가 넘실거리는 교육’,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지는 교육’에 가닿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지혜와 열망을 모아 왔습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경전으로 자리 잡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주의 깊게 탐독하고, 교육주체들의 고통과 열망을 귀담아 듣는 한편, 그 동안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끌어 모아, 오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발표합니다. 오늘의 주민발의안은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거쳐 수렴된 고견들을 십분 반영하여 보완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박수를 보내며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의 작품’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록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철학과 비전이 시민들이 함께 꾸는 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에 함께하시면서 고견을 나눠주신 분들, 오늘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 주민발의운동의 청구인 대표를 맡아주신 홍세화 선생님, 그리고 먼 곳에서나마 오늘 이 자리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는 분들, 모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심혜리 기자, 「“학내 집회 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안」, 경향신문, 2010. 10. 18.

“학내 집회 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안

· 인권본부, 시안 만들어 광노현 교육감에 제출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40여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인권본부)가 주민 발의로 제정할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시안을 내놓았다. 시안은 학생들의 학내 집회를 허용하고 두발 자유화 등을 명시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지만 보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권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시안을 발표하고,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등에 근거해 조례안 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안은 총 5개장 50개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집회를 여는 등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학생의 두발·복장 자유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이 밖에도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생들이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본부는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례안 시안을 제안한 후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펼 계획이다. 서울시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교육청은 조례안을 정식으로 시의회에 발의해야 한다. 홍세화 ‘학벌없는사회’ 대표는 “반인권적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교육청의 발의를 기다리기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는 취지로 주민 발의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복균 신도림중 교장은 “학생들이 집회를 열 수 있고 교육청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은 추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학생의 인권이 신장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학생의 권리 보장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규정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권리 행사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본부는 이날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의식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전국 교사 1478명, 수도권 학부모 959명, 중·고생 1885명을 대상으로 9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 조사한 결과 학생의 88.6%, 학부모의 87.6%, 교사의 88.7%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연말까지 조례안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손기영 기자, 「“집회 자유, 체벌-야자 금지” 시민단체 등 학생인권조례 초안…사회적 논쟁 예고」, 레디앙, 2010. 10. 19.

“집회 자유, 체벌-야자 금지”

시민단체 등 학생인권조례 초안…사회적 논쟁 예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 인권 보장의 폭이 확대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이 서울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18일 발표됐다.

이번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전문 보기)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 개성 존중 조항(자율화) △‘집회의 자유’ 보장 △성소수자·다문화가정·장애인 학생 등 ‘소수 학생’ 권리 보장 등의 조항이 새롭게 포함돼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초안에는 또 △학생들이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 금지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등 학생 인권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올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사회적 논쟁 예고

또 두발 길이 자유는 명시하되, 염색, 파마 등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이번 초안에는 두발 및 복장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보수성향의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서울지역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30여 개 서울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민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서울본부는 조만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경부터 주민발의 운동에 들어가고, 내년 초에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에 주민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본부는 지난달 10

일 지문위원회 격인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6일 열린 시민공청회(시민제안마당) 등을 거쳐 초안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본부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출발 자료로 삼았고, 경기도 조례가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했으며 경기도 조례가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운동 중인 박노현 현 교육감(사진=손기영 기자)

서울본부는 또 “서울시 교육청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며 “주민발의 서명운동 전개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의 작품’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고 미성년자이기에, 성인들의 기준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적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면 학교의 질서는 무너지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습권도 침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돼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잘 사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발생된다”며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 경우 학교는 ‘교육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잃고, ‘정치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장 될 것" vs "이념논쟁 바람직 않아"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주민 발의로 추진되고 있어, 광범위한 지지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공허한 논쟁 혹은 이념 논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 학교 현장의 부작용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교육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다음은 서울본부 참여 단체 명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비

☞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법으로서 조례의 근거 법규로 명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등이 포함됨

☞ 교육감의 감독 하에 있는 유치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는 학생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학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입학(예컨대 이주아동) 및 퇴학 여부를 다루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본조에서 정의함

☞ 학원 및 탈학교에 대해서도 조례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학원의 경우 그 근거 법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서 초·중등교육법의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고,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교육의 경우 공교육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 및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 제외. 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공교육내에서의 인권 향상이 학교 밖의 청소년 인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함.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조례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열거되지 않은 권리 내용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 방식도 학생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정된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요건을 두고 있음.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안은 '교육목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학칙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감의 학생인권 실현 노력 의무를 명시함

☞ 2항은 초·중등교육법 18조4항의 내용을 옮겨오되, 보호자의 노력 의무도 포함시켜 가정의 책임도 함께 강조. '존중의 의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보호의 의무'는 학생의 인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실현의 의무'는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함.

☞ 학생에게는 권리와 함께 자기 인권을 알고 보호할 책임과 함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도 함께 있음을 명시함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학생인권 보장이 교사에게 '금지 목록'을 부여함으로써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삽입
- ☞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공통의 기반 위에 서 있음을 강조
- ☞ 입시, 경쟁 교육이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교육을 지양할 것을 제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차별 사유의 '예시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관련 규정의 17개 사유에 더하여 학교 내 차별 양태를 고려한 징계, 성적, 경제적 지위 등을 추가함. 또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아울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함께 명시
- ☞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열독실 운영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기능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 체벌 역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한 형태로 보고 금지함
- ☞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은 가해 주체가 교직원인지 학생인지에 구분 없이 금지되어야 할 폭력으로 간주되어야 함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임.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학교의 장과 교직원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궁극적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용,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강제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 교육과정의 편법 운용이나 행사 참석 강요는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인권과 교사 권리의 상호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타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해 심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및 교내외 행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산업체 파견된 현장실습생이 교육적 성격의 현장실습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의 건강, 안전, 노동, 교육권

을 동시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삽입.

☞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예를 비교적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책임을 명시.

☞ 교육관련 국내법 상 권리 향유자가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명시.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1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2항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야자, 보충 강제를 금지하고 있음. 강제교육은 동의에 반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학생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학습부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도 인권침해라고 바라본 것임

☞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정규 교육활동의 다양성 보장 의무를 명시

☞ 현재도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선택권 보장'이 교육당국의 방침임.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동의가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음. 조례를 통해 선택권의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라는 점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학부모이므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와 더불어 학부모의 '비용부담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임. 즉 여전히 선택의 주체는 학생이어야 함

☞ 보충·야자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대해 흔히 사교육을 부추긴다, 학습분위기를 훼손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의사는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러나 이미 사교육 참가는 보충·야자를 빠질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음. 공교육에서 제공되는 정규교과 외 교육이 학생에게 매력적이고 진정한 동의에 기초한다면, 학교에 남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습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봄. 또한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런 비판은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임.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학생들 다수도 과중한 학습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됨. 이런 현실에서 선택권 보장만으로는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의 여건을 만들어내기 힘들. 따라서 학습권에 이어 휴식권도 동시 보장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학습 부담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학생 인권이 상대적 잘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학생의 학습 부담 시간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을 놀이나 문화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는 한편,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관련 조항을 삽입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두발, 복장 등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에 따른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두발 자유란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짧게 자르든 길게 기르든, 염색을 하든 하지 않든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파머, 염색을 금지하면서도, 곱슬머리를 스트레이트로 펴는 파머나 갈색 머리를 검정색으로 바꾸는 염색은 허용하기도 한다. 이는 권리 실현에 차등을 두는 행위일 수 있고, 특정 머리 모양이나 색깔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만들기도 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 길이 자유는 명시하되, 염색이나 파머 등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음.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학생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를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는 함.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안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두발, 복장 등 용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두발, 복장 자유와 관련해서는 탈선 우려,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은 복장, 두발과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됨. 또한 두발, 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

을 방해하기도 함.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우려에 대해서는, 교복을 착용하거나 두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가려지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 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 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성적 공개, 수업료/급식비 미납 공개,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설되는 행위를 금지함
- ☞ 전체 학생을 범죄인 취급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와 압수, 사적 기록물 열람, 박음질된 이름표

착용 강요 등을 금지함.

☞ 일기검사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일기를 통한 글쓰기 교육은 생활글 쓰기로, 학생에 대한 이해는 상담 등을 통해서도 가능.

☞ 학교마다 금지하는 개인 소지 물품의 목록이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음(예: 악세서리 전면 금지 학교도 있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악세서리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규제를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이 조항에서는 학생의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물품 소지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함. 따라서 학교마다 어떤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 휴대전화 이외에 MP4,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에 대한 소지도 가능토록 함. 다만 수업시간(시험 시간) 중 사용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가능한 길을 열어둠.

☞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태. 실제 휴대전화에 대한 규정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임. 학급단위 자체 규칙에 맡길 뿐 학교단위의 규정이 없는 학교도 있는 반면, 수업시간만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사용·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 쉬는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학교도 있음.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휴대전화 학교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 금지 교장단 결의 등이 있기도 했음(휴대전화 금지 조례 제정이 유보된 것은 휴대전화의 호신 기능, 학습 도움 기능 등에 대한 호소가 일정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

휴대전화 소지·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학습 분위기 훼손, 교사 수업권 침해, 휴대전화 중독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이미 중요한 통신수단이자 호신 수단(위급한 상황에서의 연락, 폭력 상황 촬영 등)이 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음.

☞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 역시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봄.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예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봄.

☞ CCTV의 경우에도 설치의 정당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설치 여부나 장소 등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다만, CCTV 설치 가능 장소, 운영 시간, 녹화 테이프에 대한 접근권자 등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

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학생에게 개인 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징계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권 등을 보장.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학생의 정보인권 실현을 보조하고자 할 때 학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실질화하도록 함
- ☞ 학교장에게 청구된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학생의 사상/도서 검열(학생회장 공약, 외부 활동, 소지 도서나 신문 등), 강요된 진술서와 반성문 작성, 서약서 제출(신입생 선서, 순결서약,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등), 종교 강요 등의 관행을 금지

☞ 종교 강요 금지의 내용은 애초 교육부 지침으로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지침을 제정토록 하였음. 종교 강요 금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위상을 상향 조정하는 의미가 있음

☞ 학생도 당연히 사상·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사상의 자유라는 용어가 학생에게 갖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시하였음.

*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양심을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반성문 작성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님. 반성문이라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이나 양심에 반하는 반성 강요’가 금지의 핵심임. 잘못에 대한 성찰과 교육적 소통은 중요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본 것임.

☞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금지 항목을 세부화함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의사 표현, 언론 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피켓팅, 전단지 배포, 교내외 집회, 모임 결성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을 운동권 만든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는다, 교육을 정치화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도(학생조회도 집회에 포함됨),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부풀려진 것임. 또 실제 학생들 중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민주적, 역동적으로 가동된다면, 굳이 집회까지 준비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임.

☞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예컨대 환경·생태 문제, 먹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학습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정치 활동이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 학생자치기구의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재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갖가지 제한 요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

☞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충함.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학칙은 학교 내에서 헌법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는 만큼, 학생의 참여권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초·중·고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나, 지켜지는 학교가 많지 않음. 따라서 조례를 통해 학생의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나아가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49조 참고) 설치를 조례를 통해 보장함

☞ 특히 학생에게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아울러 명시함. 이는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수적 요소라고 본 것임.

☞ 학교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 수렴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수자 학생이나 학생대표의 의견만을 듣거나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일에 대비.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학생자치기구, 학생대표는 물론 학생이 개인적으로, 또는 모임을 통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미성숙한 학생에게 정책 결정 참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20세기 중후반부터 국제사회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과 아울러 자기결정과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추세.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권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 운영과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함. 참여의 기회야말로 가장 유효한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점, 학생의 참여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학생들이 성숙한 판단 능력과 책임 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교육의 목적이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숙론은 참여권을 부정할 명분이 되지 못함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상담 등 지원을 받을 권리,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우선적 예산 배정, 관련 제도의 정비,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보호자 대상 교육 등을 명시
☞ 보호자에 대한 교육,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현장 교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 현재 학생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학교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들을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라는 개념 아래 포괄하여 보장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개인적 문화 활동은 물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요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권리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시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전한 급식뿐 아니라, 급식 관련 정보 접근권과 의견 표명권을 명시.

☞ 직영급식, 의무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위한 노력 의무 조항도 삽입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생리공결제를 조례 수준에서 권리화하는 한편,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더욱 절실한 지역인데도 보건실조차 없는 소외지역 학교를 고려하여 보건실 확충 노력 의무를 명시

☞ 보건교사의 역할, 학생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건강 관련 조치(금연침 시술 등)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음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 ☞ 학생 징계 과정에서 적법성 보장을 명시적으로 요구. 나아가 학생 징계가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 ☞ 학생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변론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장. 현행 초·중·등 교육법 상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변론권만 보장되어 있을 뿐임
-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인 만큼 조례를 통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상벌점제의 벌점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 학생 스스로 학생의 권리를 알 권리, 곧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
- ☞ 학생이 자기나 타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 (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적극적 조치에는 소수자 학생이 처한 특성이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함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학생 등을 고려하여 전문 상담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명시. 개별 학교마다 전문 상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주아동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류자격과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인정이므로 이를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의 날 지정 등을 통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독려함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보장된 학생인권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 내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인권교육은 장기적으로 학생인권에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조례에서 보장한 권리 내용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학생에게는 학기당 2시간 이상의 교육, 교직원에게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려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킴

☞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모임을 권장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 대상 각종 연수에 학생인권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간담회 정도로는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인권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임
☞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매년 학생인권 실태와 조례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학생인권 신장 계획이 보완, 입안될 수 있도록 함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실천 계획이 민주적, 안정적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 심의기구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정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참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함.

☞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추천 선발 방식을 택함으로써 의지를 가진 학생의 참여 통로를 열어둠

☞ 정원의 1/5은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자 학생이 인권정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학교별 학생인권 실태 현황을 세부 점검하기 위하여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추가 조치 의무를 부여

☞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인권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적극적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아울러 삽입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청과 시민활동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 행정감시기구인 옴부즈퍼슨(Ombuzperson)제도를 원용, 학생인권 구제기구로서 상임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
- ☞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은 각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되, 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사안은 옹호관회의를 통해 합의하도록 함.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 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 금지를 통해 직무의 독립성을 두텁게 보장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 시정 권고권, 제도 개선 권고권 등을 부여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 별도의 조례 제정과 재정 확보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토록 함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과 전문조사원 등을 별도로 두도록 정함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인권상담실을 통해 학생인권옹호관과 지역교육청의 협조체계를 구축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유사. 강제조치는 취할 수 없음. 또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는 두지 않는 대신, 시정권고를 이행·보고하고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활동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권, 질의권, 방문조사권 등을 아울러 규정함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학교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생대표와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규정 개정이 조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 부칙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조례 발효 이후 6개월 이내 구성되어야 함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손기영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돌입」, 레디앙, 2010. 10. 28.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돌입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최종안을 마련한 서울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7일부터 주민발의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최근 보수진영도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1일 확정된 최종안(▶전문 보기)은 초안의 내용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7조) △건강에 관한 권리 조항(제24조) △성소수자·다문화가정·장애인 학생 등 소수 학생 권리 보장(제28조) 조항 등의 내용이 더욱 강화됐다.



▲후보 시절 학생들과 만난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광노현 선거본부)

내용 강화된 최종안, 주민발의 돌입

서울본부 측이 지난 18일 발표한 초안에는 △체벌 금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개성 존중 조항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행위 금지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행위 금지 등의 조항도 포함된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울시민 8만여 명(서울시민의 1%)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을 뒤, 내년 4~5월경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에 주민발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누리 서울본부 활동가는 28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주민발의운동을 위한 수입인(청구인 서명을 받는 이)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이다. 서울시민 10만 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는 게 목표”라며 “주민발의안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학생들의 권리보장 측면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속도가 붙자, 초조해진 보수진영의 공세도 본격화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28일 배인준 주필의 칼럼을 통해 “이 땅의 좌파는 학생인권조례라면서, 배우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규율마저 내던지고 무한자유, 그것도 홍위병 식 정치자유까지 쥐야 한다고 설친다”고 맹비난 했다.

초조해진 보수진영, 공세 본격화

<조선닷컴>도 지난 22일 ‘학생 인권 vs 교사 교수권, 학생인권조례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후죽순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다보니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권리 충돌’이 이어지며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일부 교사들의 우려를 집중 부각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28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오는 29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교총은 항의 방문에 앞서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본부의 교내집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교과부가 이를 조속히 추진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 이후, ‘수업과 학생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는 교사가 점차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인권 문제를 학칙으로 제한하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상위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불 지핀다

서울 서명운동 돌입...경기조례 수정·보완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서울본부)가 교내 집회의 자유와 조건 없는 두발 복장 자율화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완성하고 홍세화 씨를 청구인 대표로 하는 주민발의 운동에 나선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이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완료한 경기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조례와 서울조례안 비교표〉

	경기조례	서울조례안
대상	- 초중고교 - 재학생	- 유치원(만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초중고교 - 재학생 및 입학학 여부 다루는 시율
인권보장 원칙	학생 인권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없는 범위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제 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정함.	삭제
학생 인권 보장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		- 경쟁교육 지양, 학생인권 실질적 보장 여건 마련(신설)
두발복장 자율	- 정당한 사유와 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학교의 규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삭제
양심종교 자유	-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 종교자유 침해 행위 구체적 명시 및 학교장의 지도 감독 의무 - 종교과목 수업 대체과목 마련
의사 표현의 자유		(신설) - 서명, 설문조사 통한 학교구성원 의견 모을 권리 - 학교 안팎의 집회 자유 - 학교 안팎의 모임, 단체활동, 자치활동 자유
소수자 학생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학생
학생인권옹호관 직무	규정도도 불구하고 4가지 경우에 한해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중구를 각하할 수 있다	삭제

서울본부는 지난 달 18일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서울조례안)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지난 27일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울본부는 서울 지역 9개 권역별로 학생인권 순회 토론회를 진행해 서울조례안을 알리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학생인권조례(경기조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친 서울조례안은 조례 적용 대상을 초·중·고교에서 만 3세 이상의 유아 및 유치원까지, 대상 학생 역시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루는 사람까지로 확대했다. 배려 받아야할 소수에는 외국인,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도 포함시켰다.

서울조례안은 경기조례의 인권 보장 원칙에 명시됐던 '인권 제한 허용' 단서 조항을 자의적이며 기준이 모

호하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이 밖에도 경기조례 조항 곳곳에 명시됐던 단서 조항들 대부분을 삭제해 인권 보장에 예외가 없도록 했다. 논란 끝에 경기조례에서 삭제된 교내 집회의 자유와 정치활동 참여 권리를 인정하고, 조건 없는 두발·복장 자율회는 부활시켜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양심·종교의 자유 조항에는 이들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를 넘어 대체 과목 신설 의무를 명시했다.

자치활동 관련 전반에 필요한 예산,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및 의견 개진의 권한이 주어졌고 학생회의 경우 △임원 선임 △대의원회의 소집 △학생 복지 전반에 걸친 의견 개진 △학생회 예결산 심의·의결 △학생회 의결 사항 학교 및 학운위에 전한 뒤 답변청취 △학생회 담당교사 추천 등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인권실천계획 시행을 위해 교육감이 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제시했음에도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도·감독해야한다는 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김재석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주민발의안을 "학생도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며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학생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상세화 했다"고 설명했다.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하게 힘들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조례안으로 학교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 14개 시도지역에서도 이미 제정된 경기조례와 주민발의를 위한 움직임이 한창인 서울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 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각 주체의 역할〉 웹자보, 2010. 11. 02.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제 :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각 주체의 역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고 서울 지역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고 무사히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이에 81돌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시대를 맞아 각 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자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시 : 2010. 11. 2(화) 늦은 5시 30분**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진행내용>

- * 학생인권의식조사 결과발표 : 공현 아수나로 활동가
- * 발제
 -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 오동석 아주대 교수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교육현장의 모습과 안착화를 위한 주체들의 과제 : 최형규 수원 유신고 교사
- * 집중토론
 -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정착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최대현 기자, 「학생 인권 조례 정착하려면 교사 역할 중요 - 2일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교육희망, 2010. 11. 04.

학생 인권 조례 정착하려면 교사 역할 중요

2일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81돌 학생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흥사단에서 ‘학생인권조례시대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7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대현 기자

81돌 학생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흥사단에서 ‘학생인권조례시대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공동으로 연 이번 토론회에는 중·고교생과 청소년,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해 각자 입장에서 앞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했다. 상대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학생인권조례, 학생과 교사 관계 새로운 기준

발제를 한 최형규 수원 유신고 교사는 “조례를 단순한 법규로만 인식하거나 학생들의 생활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 변화는 물론 나아가 우리 교육에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형규 교사는 “체벌 금지는 학생과의 관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과 지도에 임하는 교사나 학교의 가치관관 자세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체벌 없는 학교나 교실은 교사의 교육관이나 태도, 학교 시스템과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조례가 망국적으로 작금의 교육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교육청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팀장을 지낸 김영삼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학생관을 교사에게 묻고 있는데 교사는 현실이 어떻다는 답을 보내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담은 내용을 성찰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당위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교사 권리 부정되는 건 학생 권리 부정되기 때문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의 의식조사에서 교권 침해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교사의 상당수가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관리자를 지목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데 다수의 교사들이 이런 문제보다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위를 둘러싼 문제에 더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경내 활동가는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의 문제이다”라며 “그런데도 최근 서울의 체벌금지 정책 이후 빚어지는 모양새를 보면 교육의 기본 철학, 만남과 소통의 조건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문제가 된 ‘행위양식’만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81돌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0. 11. 02.

81돌 학생의 날 맞이 토론회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

* 일시 : 2010년 11월 2일(화) 오후 5시 30분

* 장소 : 홍사단 3층 강당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글심는순서

* 토론회 순서

* 발제

- | | |
|---|----|
| 1.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
|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혁신의 마중물이다: 최형규(수원 유신고 교사) | 15 |

* 주제별 토론

1.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 | |
|---------------------------------|----|
| - 서울지역 : 전 누 리(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 21 |
| - 전북지역 : 오 이(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 23 |
| - 광주지역 : 박고형준(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 활동가) | 25 |
| - 울산지역 : 우 기 택(울산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29 |

2.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정착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

- | | |
|-------------------------------------|----|
| - 학 생 : 클 린 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 31 |
| - 학 부 모 : 최 주 영(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 32 |
| - 교 사 : 김 영 삼(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 | 38 |
| - 시민사회 : 배 경 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43 |

* 참고자료

- | | |
|--|----|
| 1.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 55 |
| 2. 서울학생인권조례안 | 71 |
|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 82 |
| 4.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안 | 91 |
| 5. 교과부의 학생인권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추진 과정과 문제점 | 98 |

토론회순서

* 사회 :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1. 인사나누기

2. 학생인권 의식조사 결과 발표 :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3. 주제발제

1.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혁신의 마중물이다 : 최형규(수원 유신고 교사)

4. 주제별토론

1)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서울지역 : 전 누 리(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 전북지역 : 오 이(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 광주지역 : 박고형준(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 활동가)
- 울산지역 : 우 기 택(울산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2)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정착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

- 학 생 : 클 린 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회원)
- 학 부 모 : 최 주 영(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 교 사 : 김 영 삼(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
- 시민사회 : 배 경 내(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 자유토론

발제 1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여는 말

2010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그리고 광주와 경남 등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그 노력의 결실이다. 서울과 전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학생 인권의 문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이미 시작되었다.

II. 학생인권조례의 의의

1. 왜 ‘학생의 인권’인가?

가.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주체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자격과 처우 그리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헌법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성인과 다르게 처우할 수 있다고 예정하지 않았다. 법률에 의해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학생이 인권의 주체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대놓고 그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실제로는 그것을 뒤집어버린다. 학생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라는 원칙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항상적이고 일상화된 예외 앞에서 빛을 잃는다. 그렇게 성인들은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권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제2항 위반이다. 예를 들면, 2010년 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회 경기교육포럼에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란 주장을 제기하였다.¹⁾ 그는 “인권조례안은 배우는 지위에 있는 학생을 사회계약설에서나 논의되는 자연상태의 자연인이나 이상적인 인격체로 전제하고 있다”며 “도덕권과 자연 상태를 강조하면 조례의 지위가 아니라 법률을 넘어서 초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²⁾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원리는 윤리적·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의미하지만, 법철학적 차원에서는 초국가적 자연법원리를 의미하며, 또한 현행헌법처럼 실정헌법에 수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 가치화하여 법규범성까지 가지게 된다.”³⁾

헌법 제10조 제1문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본질로서의 존귀한 인격주체

-
- 1) 발표문 또는 자료집을 구하지 못하여 신문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잘못 인용되었다면 당사자의 양해를 바랄 뿐이다.
 - 2) 세계일보, 2010.3.3,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00302005112&subctg1=01&subctg2=>>, 검색일: 2010.3.3.
 -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75.

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격주체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개인의 현실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갓난아이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것은 인류가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고 얻은 반성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규범의 필수적인 전제이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제”⁴⁾이다.⁵⁾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존엄을 “기본권보장의 핵”,⁶⁾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⁷⁾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나. 학생은 신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의 잔재이다.⁸⁾ 그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권위주의적인 비스마르크헌법체제 공법이론에서 유래한다. 그 특징은 일반적인 국가-시민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기본권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구체적 법률의 근거가 없이 포괄적인 지배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이었다.⁹⁾ 특별권력관계론은 군주 또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이었다.¹⁰⁾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시민 또는 공민이 아니라 신민의 신분만이 존재하며, 국민이 되지 못하고 국가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 특별권력관계는 국가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¹¹⁾

4)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9, 566.

5)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515.

6) 헌재 1992.10.1. 선고 91헌마31 결정.

7) 헌재 1990.9.10. 선고 89헌마82 결정.

8)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7, 120.

9) 김유환, “특별권력관계의 해체와 법리적 대안,”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184; 홍정선, 앞의 책, 114.

10) 특별권력관계론은 “군주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9, 109]해 줌으로써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법의 보호영역으로부터 군주의 폭정 아래로 추방한 셈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되며, 다만 구체적 행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가중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학교제도에서 진급·유급 여부¹²⁾ 또는 새로운 교육과목(성교육)의 도입,¹³⁾ 교육내용과 목표, 학교조직의 기본구조(예컨대 학교의 종류, 교육과정, 교사와 부모의 공동결정 등) 및 학생의 법적 지위(예컨대 입학, 퇴학, 시험, 진급), 징계처분 등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행정청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입법자 역시 그것을 함부로 정하지 못하고 인권에 기속되어야 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행정청 또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¹⁴⁾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¹⁵⁾이다.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법률행위의 제약성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개별적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제한할 수는 없다.¹⁶⁾ 학생은 일방적으로 훈육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다. 학생도 당연히 그리고 엄연히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의 인권이 먼저인가? 학생은 학교의 관리자, 교사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들보다 약자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 보장이 여타 주체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자칫 교육의 주체들을 편가를 가능성이 크다’¹⁷⁾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른바 ‘분할지배(divide and rule)’술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각자의 인권의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 최선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의 한 사람인 학생이 학교에서 자유·자율·참여·평등·비차별·안전·복지 등의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적 梘이나 근거 없이 조례로써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1)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09.

12) BVerfGE 58, 258.

13) BVerwGE 47, 194; BVerfGE 47, 46.

14)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며, 학생에는 당연히 교복을 입지 않는 초등학교도 포함된다.

15)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9, 110.

16) 같은 의견: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14.

17) 이성호, “경기議會, 학생인권조례안 폐기해야,” 문화일보 2010.9.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0901033137191004>>, 검색일: 2010.9.9.

2. 왜 조례인가?

가. 학생 인권의 법적 근거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1991년 12월 23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조약 제1072호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확인되었다.¹⁸⁾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⁹⁾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비준·공포하면 자동적으로 국내적 효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국회의 동의는 법률 형식일 필요가 없이 단순한 의결로 충분하다(헌법 제60조 제1항).

문제는 학생의 인권을 확인·선언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법률일 수 있다. 2006년 3월 13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른바 ‘학생인권법안’, 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 내용은 학교장에게 학칙의 학생 인권 침해 방지 의무 부과, 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보장, 학생인권의 보장, 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교육공무원 및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이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적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다만 2007년 12월 14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로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

18)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1990년 9월 25일 서명, 1991년 12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19) 헌재 2001.09.27. 선고 2000헌바20 결정, 판례집 제13권 2집, 322.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관행 또는 학교 규정을 근절할 수 없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권력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규범은 권력제한규범으로 명시·변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인권을 둘러싼 조례와 법률의 관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그 전례는 1992년 6월 23일 대법원이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적법한 것으로 판결한 데서 찾을 수 있다.²⁰⁾ 이 판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보공개조례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²¹⁾ 대법원은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²⁾ 그 이후 1994년 3월 2일에 ‘행정정보공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가 제정·발령되었고, 1996년 12월 31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기도 하였다. 이 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법률이 정하는 내용에 비하여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²³⁾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보다 더 넓은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²⁴⁾

사실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성격을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행정을 수행케 하기 위한 교육행정직무조례’이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자치법규범이다. 국가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다.²⁵⁾

20)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 사건, 대법원 1992.6.23. 선고 92추17 판결.

21) 1997년까지 17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1998, 5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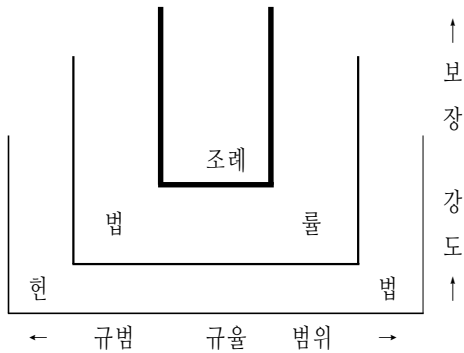
22)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모음집, 1996, 68, 70.

23) 오준근, 앞의 책, 524.

24) 정보공개조례의 제정방향에 대하여는 정준현, “정보공개조례제정의 가부 및 그 방향,” 제25회 학술발표회, 한국공법학회, 1992.2.29, 35 아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²⁶⁾ 학생인권조례에 법률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 등보다 낮은 기준을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조례의 인권보장 수준 관계를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그릇 쌓기’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문화의 격의 문제이다.

<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법률은 ‘전국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으로서 작용하여 그보다 낮은 보장 수준을 최저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실을 한다. 법률 기준보다 높은 기준의 인권조례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물론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헌법 제37조 2항)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과제는 남는다.

다. ‘법률적 불법’에 대한 경계

2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26)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임은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헌재 2004.9.23. 선고 2002헌바76 결정; 대판 2006.9.8. 선고 2004두947 판결;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317.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률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칙에 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이른바 ‘백지위임’(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사이다. 히틀러가 1933년 3월 24일 통과시킨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안’(이른바 授權法)과 다를 바 없다. 법률은 의회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제정될 수 있으며, 그것은 헌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교과부가 시도하는 법률 또는 시행령이야말로 학교장에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주려는 수권법이다. 나치스가 법률로써 불법을 자행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위헌적 행태는 낫설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²⁷⁾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체벌의 법적 근거이다.

그런데 먼저 법률의 “기타의 방법”은 교사가 학생에게 징계 외에 지도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므로 징계보다 더 가혹한 체벌의 근거일 수 없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권규정이 될 수 없다. 설령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위헌 판단을 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체벌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을 보면, 체벌론자들은 이른바 ‘교육의 목적’을 들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자율적 인격체의 양성에 있다면, ‘폭력에 의한 인간 교정’이라는 체벌은 이미 교육의 정당한 목적을 상실하였다. 또한 폭력이 주는 인간의 수단화, 인격에 대한 모욕감 등 때문에 체벌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 아니다. 또한 아직 법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벌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체벌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려우므로 체벌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률에 체벌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는 순간 그 법률은 위헌이다. 나로서는 전근대적 형벌인 태형(笞刑)이나 군대에서 금지된 일차려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문으로부터 체벌(아무리 고상한 목적을 수식으로 가져다 붙인다 해도)의

27) [시행 2010. 6.29]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29, 일부개정]

차이점을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겠다.

시행령의 규정을 반대해석을 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자체로 또한 위헌이다. 법률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 등보다 가벼운, 말 그대로 ‘지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말 그대로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구는 헌법해석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한편 학생인권, 학교 그리고 교육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로 끝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밑거름으로 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토대를 다지고 교육정책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인 학생인권의 수준을 높이는 기폭제일 뿐이며, 입시 위주 무한경쟁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왜 지침이 아니고 조례인가? 만약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지침을 발하면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실 교사의 학생지도권한은 직무상의 권한으로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교육감의 행정규칙으로써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학생인권을 확인하는 것은 조례에는 교육감에 대한 권한 제한의 규범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Ⅲ. 학생인권조례의 과제

1. 조례의 구체화

아무리 헌법을 잘 만들어도 법률이 헌법 위반하기를 밥 먹듯 하면 헌법은 ‘무늬만 헌법’인 것으로 전락한다. 조례의 진정한 의미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서 일깨우고 교사,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민주시민으로 일깨우는 일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이후 조례를 구체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학생인권이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생활교육 프로그램(제6조 체벌 금지 관련), 안전관리체계(제7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제8조 3항), 학습곤란학생 학습 프로그램(제8조 4항),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운영 프로그램(제9조 2항), 인권교육프로그램(제3장 제1절) 등의 마련

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실천계획을 통하여 발현되어야 하며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한다. 매년 행하는 학생인권 침해 조사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존 교육 관료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진보교육감'을 뽑는 것을 넘어 관료의 장막에 균열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 힘은 학생과 교사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연착륙은 그동안 위계적인 학교문화에서 교육자로서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던 선생님들에게 발언의 힘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고군분투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인권활동가를 묶어냄으로써 '각개전투'가 아니라 각 지역이 함께 고민하는 네트워크형 협동작업이어야 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에서는 시행을 위해서, 제정과정 중인 곳에서는 제정 후 시행착오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아직 제정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곳에서는 제정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로하고 토론하고 각자의 처지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2. 교사의 민주시민권 회복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 '교사인권조례'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 나는 일단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과 교사의 인권을 확보하는 길은 좀 다르다.

자신의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하여 보호자, 교사, 학교장이 가지는 권리 또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결정권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 내 의사결정, 특히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학생은 학교 정책 전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주변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함께 결정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는 어렵다.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신민(臣民)이 아니라 이미 시민으로서 대접받아야 하고, 인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시민(공민)의 활동을 최대한 학습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물론 대학에서조차 학생들이 참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또는 대학교에서 교수조차 제대로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실이 헌법규범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어쩌면 교사 또는 교수들의 현재 처지가 그러하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그리고 많은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보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교사의 경우 지금도 ‘정치적 한정자산자’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자의 태도와 그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연구자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공화국의 관점에서는 정치를 모든 시민에게 열어두고, 공무원을 ‘제복 입은 시민’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시민’으로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의 수비범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판단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특별권력관계론에 투항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은 공무원인 교사에게 단지 그 공무원 신분만을 이유로 하여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²⁸⁾ ‘정치운동 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5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이 그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법률상의 포괄적 의무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헌법적 권리를 압도하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 신분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이유로 하여 공무원에게 그리고 곧 교사에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교사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포괄적인 법률상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법률이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신인하건대 그것은 신분에 의한 차별이자 기본권 박탈 계급의 창설이며, 모호하기 때문에 무효 또는 축소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명목적으로는 모든 교사(공무원)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비판적인 교사(공무원)의 비판적 정치 활동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는 교사(공무원)는 굳이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비판적인 정치적 활동을 한 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법을 적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사보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사에게 수사가 집중되었던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²⁹⁾

28) 교육과학기술부, “민노당 가입 등 관련 교사 조치방안”(전국 시도감사담당과장 회의, 2010.5.19), 4.

29) 2009년 7월 3일 경찰은 전교조 본부와 사당동 서울지부 사무실을 수색하여 8년치 자료와 3년치 개인 이메일까지 압수하였다. 권영국,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 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 4 의원실 주최 토론회, 2010.2.4), 1-2. 한나라당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대응에 대해서는 김행수,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3. 학교에서 교사의 제자리 찾기

국가 영역에서의 직업적 정치활동에서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조정하는 ‘정치적인 것’은 모든 인간생활의 형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법학적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학교를 영조물로 이해하였다. 그것은 주로 국가와 학교의 지휘·감독 관계 그리고 시설 및 학생을 관리하는 행정권력 중심체제였다.³⁰⁾ 교사는 교육서비스 ‘기계’였고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자였고 학생은 교육사업에 투입된 ‘원자재’로 취급되었다. 학교 내 의사결정 방식에서 교사와 학생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었다. 학교 내부관계에서의 참여민주주의는 서양에서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의 경우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사실 교육 현장의 부담이 온통 교사에게 집중되는 한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사들이 공민으로 거듭날 때 교육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학생을 대등한 공민으로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시민 및 공민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민주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육의 이름으로 주체와 객체로 서로를 소외시켰던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군주의 지배 및 특권계급의 지배를 극복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헌법이 등장하였듯 학교정치에서 소외되었던 교사와 학생이 정치적 기본권 주체로서 복권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첫 단추이다.³¹⁾ 교사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육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학교에서 교사회를 법정기구화하여야 한다. 학교관리자의 지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난다.³²⁾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 같은 자료집, 40-51.

30) 오토 마이어(Otto Mayer)의 영조물 이론에 대하여는 이상덕, “영조물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2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4, 284-285.

31) 그런 점에서 보호자나 학생과의 관계에서만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사의 고충 처리나 분쟁 조정 또는 법률적 처리에 주안점을 두는 방안[노기호, “교원의 교육권 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2호, 2008, 271 아래]은 너무 협소하다.

32) 학교 자율화 정책이 학생 인권과 정비례 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학생 인권의 안전망이 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발래, “학생인권과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일고찰,” 토지공

또한 교사회를 학생회와 보호자회 그리고 주민대표회와 더불어 교육현장의 주체로 세워 학교 내에서 민주주의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³³⁾ 또한 학교간 네트워크는 풀뿌리민주주의에 더 잡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될 것이다. 그 네트워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그리고 의회의원이 교육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방향타로서 기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문제점이 입시 위주의 무한경쟁 정책에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치킨 게임 하듯이 아무도 먼저 멈추려 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히려 이러한 소모적 게임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와 함께 교육감에 대한 주민직선제 도입 그리고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등장은 무한경쟁 교육정책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2010년 6.2 지방선거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진보 교육감의 수가 늘어났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재고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관계의 핵심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보호자의 의식 변화 및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교육정책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학교의 민주화가 추동하는 동력만이 아래로부터 위로의 교육민주주의를 창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다시 여는 말: 민주시민의 민주시민에 의한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양성함에 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교육이다. 민주시민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그렇다면 교사에게 민주시민권을 인정하고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민주시민에 의한 교육이 성립한다. 청소년인 학생은 이미 시민이며 국가 수준에서는 미래의 민주시민이다. 그 미래의 민주시민을 위하여 학교 교육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은 최소한 학교 안에서는 민주시민이어야 하며, 학교 밖에서도 최대한 민주시민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법연구 제43집 3호, 2009.2, 462.

33) 이것은 공무원의 맹목적 복종의무에 대항하는 ‘시민으로서 공무원의 불복종’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내부민주화’를 강조하는 견해(이계수,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 165)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독일 학교법상 교사협의회와 학교협의회에 대한 소개는 허종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론과 헌법 제31조 제4항: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 관련 법제 개정을 위한 공법적 접근,” 교육법학연구 제7호, 대한교육법학회, 1995, 263-264. 독일 학교협의회의 경우 교사 수가 학생 및 보호자 수의 합보다 많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독일 법제에 따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학생생활규정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 수가 교사 및 보호자 수의 합보다 많거나 최소한 동수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수동적인 학습권이 아니며, 또한 보호자의 양육권 또는 교사의 수업권의 하위에 자리한 권리도 아니다. 교사의 수업권이 오히려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³⁴⁾ 학생은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최선의 교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보호자·교사는 물론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국가에 대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의 실현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길은 교사의 민주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민주시민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민주시민권자로서 학생과 교사가 연대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게 민주주의의 정치적 공간으로서 학교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의 자주성이다. 학교의 자율성 강화는 학교의 민주화를 필요충분조건으로 한다.

학교정치의 민주주의가 튼튼해야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학생 및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제거함으로써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공유를 통하여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교권 보장이 중요한 까닭이다. 그래야만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수업권으로서의 교권을 보호받는 일이다. 마침내 그 끝에 스승으로서의 권위인 교권이 학생으로부터는 물론 보호자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4) 독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노기호, “독일학교법(Schulrecht)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 개념과 권한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3호, 2004, 359]. 그러나 교육관련 당사자로서 학생은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국가와 교사 그리고 보호자의 권한관계만이 다루어지고 있다.

발제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혁신의 마중물이다.

최 형 규 (수원 유신고 교사)

1. 조례 이후 학교 현장의 모습과 전망

‘경기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오히려 특별하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매우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엇갈린 현실이 있어서 조례는 제정과 공포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학생들에게 자유와 권리 즉 인권이 있다고 별도로 조례를 공포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지금 우리에게 조례의 내용이 유별나거나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학생들의 권리가 그 동안 조금도 의심없이 제한되고 침해되었다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 아파서 조례는 더 각별하고 그 가야할 길이 험난함을 예견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우파에 가깝다. 한마디로 변화를 싫어한다. 학교도 교사도 학부모도 그저 지금 이 상태가 가장 편하고 좋다. 그런데 조례는 이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한참 잘못 들어선 길을 다시 돌아 원래대로 바로 잡고자 한다. 그러나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변화의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벌써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조례의 급진성과 위험성을 부각시키느라 혈안이 되어있다. 학교 현장의 관리자나 일부 교사들도 ‘그래 조례가 얼마나 훌륭한지 법대로 해보자’식의 ‘준법투쟁(?)’을 통해 조례의 위험성을 부각시킬 태세이다. 당장이라도 조례를 핑계로 지도 불가, 수업 불가, 교육 불가를 외치며 아이들을 내 쫓아낼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럼 학부모는 어떤가? 경기도의 어느 인권시범학교는 그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년 신입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혹시나 인권이라는 명패대문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까봐서이다. 일부 아니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공부를 반비례한다고 여기는 현실을 인정하고 조례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전과는 달리 교육청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교육청은 이와 비슷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과 관련한 교육청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단위 학교에서 조례에 대해 내놓고 거부하는 못하겠지만 은밀하게 저항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어렵다는 핑계로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등 준법투쟁(?)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저항이 보수 언론을 타고 일반화 된다면 조례에 대한 저항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등에 업고 더욱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의 경우 그동안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으로 쌓였던 불만을 분출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머리는 대부분 길게 할 것이고 교복은 줄이거나 다양하게 변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학교 곳곳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학교 내 갈등과 사회 일각에서 탈선(?)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과대 포장해 조례로 그 뜻을 돌릴 것이고,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조례의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례를 지지하는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와 교사, 학생들의 움직임 또한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전과는 다르게 교육청의 지지와 후원(?)이 함께 할 경우 수세적으로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 자발적인 학생자치조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생운동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학생의 조직화, 세력화)할 것이다. 다만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조례에 긍정적인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도 보수적인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논리의 개발과 실천적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이 진보와 보수의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학

생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이다.

2.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단기간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지말자.

우리가 체벌 규정 하나 없애는 건 쉬운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조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청에서 지침 하나로 학교 규정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규정이 추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너무 조급하게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도 일방적인 명령으로만 여긴다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리고 조급하게 접근할수록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어려워진다. 오히려 교육부에서 조례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한 대처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조례를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후속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교육청만의 문제는 단연 아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례 이후의 규칙 제정과 매뉴얼, 해설서 작업을 위해 준비팀을 구성, 현재 작업 중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준비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예를 들어 팀을 구성하고 한 두달 안에 무언가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내년 3월에 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조급함의 방증이다.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좀 더 신중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작업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자발적으로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 몇 명이 모여서 똑딱 해치우는 (예를 들어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주어 해결한다든지)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조례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교육을 개혁시킬 불씨다.

조례를 단순한 법규로만 인식하거나, 학생들의 생활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 조례는 우리 교육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계기(불씨)가 될 수 있다. 물론, 조례는

대부분 학생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생들의 머리카락 자율학습, 체벌 등 학생들의 생활만 변화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 생활의 변화는 학교 전체, 나아가 우리 교육에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 대한 체벌 금지는 학생과의 관계, 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과 지도에 임하는 교사나 학교 당국의 가치관과 자세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왜냐하면 체벌 없는 학교나 교실은 교사의 교육관이나 태도 및 학교 시스템과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부모와의 관계도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나 복장 두발의 자유는 학생들과 교사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 그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교육목표와 입시위주의 교육, 폐쇄적인 학교 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례가 망국적인 작금의 교육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 학교문화를 바꿔갈 교사운동-조직-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 한 것처럼 조례는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호응없이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조례가 단순한 학생생활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례에 부정적인 교사나 관리자의 저항에 맞서기 위해서도 교사 지원단(가칭)의 구성이 필요하다. 교사 지원단은 교육청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교사 지원단에서 해야 할 일은 조례 제정 이후 학교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와 대안 준비, 그리고 실천이다. 단순하게 체벌 금지이후를 준비하거나 생활 규정 몇 개를 바꾸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자치 조직 구성과 운영은 물론, 교사들의 교육관과 수업 방식, 생활 지도, 학부모와의 관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심도있고 생생한 논의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상향식이라는 말은 맘에 들지 않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야한다. 교육청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학교 현장 중심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 학생들의 기대를 체념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참여하니까 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조례 공포 이후 학생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각 학교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리에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기대는 현실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례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생활규정의 변화가 기대치를 밑돌거나 학교 현장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학생들은 엄청난 좌절감과 배신감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교사가 학생을 선도해 나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밥이 아니라 당분간은 죽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일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만 경험한다면 우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학생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한다면 이 조례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학생의 인권 실현이 교사의 인권 침해라는 인식도 학생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도 교사와 같은 인간이고 서로 소통해야 하는 존재다, 그게 교육이고 인권이다.

- 가정, 학교, 사회의 통합적인 사고와 연대가 필요하다.

조례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학생과 관련된 교육문제는 각 주체별로 분리된 채 접근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문제 학생’은 학교는 학교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따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알아서 때리던, 벌을 주던 해결을 하고 가정에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교육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조례는 학생 교육을 학교에서 가정과 사회로 확대 적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학생의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도 가정만의 문제도 아니다. 머리를 기르면 비행이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야 한다가 아니라 머리가 비행의 원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사회의 직무 유기를 반성해야 한다. 머리가 길어 유해업소에 출입한다고 청소년을 규제하는 사고에서 유해업소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조례는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례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과 가치를 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가 난리가 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건 바로 조례가 기존의 일그러진 한국교육에 큰 파열음을 낼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이다. 조례를 통해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두발, 체벌 등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치 활동 및 다양한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주체적 자기 결정권이 높아질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조례의 제정과 시행은 학교와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에게는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교육에 일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는 기존의 교육 목표나 교육방법,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등에 필연적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면서도 그 제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원칙과 철학이 빠진 채 껍데기만 도입되고 시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이번에도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체벌을 대신하는 벌점제 등의 제도(대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체벌을 금지하는가에 대한 교육적이고 원칙적인 고민과 반성이 먼저여야 한다. 이런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앞에서 너절하게 제시한 대안들은 모두 쓰레기에 불과하다. 조례가 입시위주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학교 현장을 바꾸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입시 경쟁에서 뒤쳐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탈선과 무규범의 아노미 상태를 우려하는 상반된 두 입장이 존재한다. 이런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현실에서 교육 주체들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 이후의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례가(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끝>

주제별토론

주제 I.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경과

전 누리 (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 2010. 04.23(금) : 청소년인권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교육 인권 단체 공동 워크숍 진행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의 필요성을 공유함
 - 후속 모임을 진행하기로 함
- 2010. 04.27(화) : 후속모임 진행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단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결정
- 2010. 05.06(목)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구성 결의, 1차회의 진행
 - 지역순회토론회, 전국실태조사, 조례제정 서명운동, 학술대회 등을통해 사업 추진해나가기로

결정

- 준비모임이 제안하여 교육감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중심 내용으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함.
 - 2010. 05.10(월) : 6.2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 후보 초청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충북, 광주, 전남, 전북 후보 12명 협약 체결
 - 2010. 05.25(화)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2차회의
 - 2010. 06.08(화)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3차회의
 - 준비모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 서울지역을 필두로 지역 준비모임을 결성하기로 함
 - 서울운동본부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발족식 토론회 일정 확정
 - 2010. 06.28(월)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 4차회의
- 2010. 07.07(수)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이하 서울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개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2010. 07.15(목) : 서울본부 1차회의(준비모임 5차회의)
 - 조례제정운동 방식에 관한 확정, 주민발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 2010. 07.26(월) : 서울본부 2차회의(준비모임 6차회의)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마련을 위한 집중 워크숍
 - 서울본부 주요 조직체계를 확정, 공동집행위원장 선출하고 3개 팀과 청소년위원회를 두기로 함
- 의
 - 워크숍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집중 분석하고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 검토
- 2010. 08.19(목) : 서울본부 3차회의(준비모임 7차회의)
 - 하반기 주민발의 서명운동 국면을 대비해 교육, 간담회, 토론회에서 활동한 강사진 양성을 위한 강사단 양성 워크숍 열기로 결정
- 2010. 09.11(토) :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진행(전교조 서울지부)
- 2010. 09.16(목) : 서울본부 5차회의 (전국모임 9차회의)
 -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도에 대한 대응 결정 및 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함.

- 2010. 09.27(월) :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0. 10.6(수) : ‘학생인권 요기 있네’ 학생인권 거리사진전 진행(광화문 4거리)
 -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125인 참여)
-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 진행(한국건강연대)
- 2010. 10.11(월) : 서울본부 5차회의(전국모임 9차회의)
 - 주민발의 운동에 돌입하기 전 조례안에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결정함.
- 2010. 10.18(월)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학생인권의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건강연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 발표 공청회 진행’ (한국건강연대)

전북지역 학생인권조례 관련 상황공유

오 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1. 전라북도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계획과 진행 내용

- 10월 21일 학생 인성/인권 신장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시작
- TF팀은 전북대 법대 송기춘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학생 2인, 학부모 2인, 인권단체 2인, 교사 2인, 교육청 담당 2인으로 구성
- TF팀의 역할은 도교육감 공약이었던 △학교의 인성/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생활 규정 정비 자문(2011년 2월 말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2011년 6월까지, 6월 제정 후 2012년 3월 시행)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자문(2012년 2월 29일까지) △ 교사의 인권 증진 방안을 위한 대책 자문(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마찰 최소화 방안)
-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관련 추진 계획
 - / 11월 중순까지 전북지역 학생인권 실태 조사(학생대상 설문조사)
 - / 12월 3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공청회
 - / 2011년 2월 학생인권조례 안 마련
 - / 3월~4월 학생인권조례 안 의견 수렴(학생, 학부모, 교사)
 - / 5월까지 공청회(4회 이상 혹은 권력별 순회 공청회)
 - / 6월 학생인권 조례 안 의회 제출 및 입법예고, 조례 제정
 - / 2012년 3월 학생인권조례 시행

-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에 앞서 학생생활규정을 내년 2월까지 정비해서 3월 각 학교에 보급 예정이고, 학생인권교육원은 2011년 준비해서 2012년 3월에 개소한다는 계획

- TF팀 카페 개설 <http://cafe.daum.net/hrjb>

***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듯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실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있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함.

2. 전북지역 학생인권 조례 제정 운동과 관련한 상황

- 지자체 선거 이후 진보교육감 추대위를 구성했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사업으로 잡혀 있으나 추진해오지 못함.

- 11월 중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에서 지역의 청소년 단체나 관련 활동 단체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지역 청소년 모임이나 청소년 관련 활동 단체들을 만나가고 있음. 이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화할 듯. 그러나 운동본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가져갈 것인지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음.

-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점,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공유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구성 제안의 내용을 진행 예정.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 활동 성과

박 고 형 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

1) 1차 시기

광주학생생활연구회는 지난 2003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활동을 포함하여 수 년 동안 학생들의 학생인권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다. 뿐만 아니라 학급자치활동과 문화 및 복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들을 시도하였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외화의 방안이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사회단체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고, 부분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지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지역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와 결과발표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2004년 이후로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에 관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다양한 단체들의 지속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중, 2005년 한 교육위원(현,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당선자)이 인권조례 제정을 염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드디어 조례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 단체들이 연대를 하게 되면서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 되었다. 여기에 광주홍사단, 광주YMCA, 광주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포럼 준비위원회,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를 비롯하여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조례제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여회에 걸친 회의와 16차례의 내부 논의 및 준공청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조례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의 성격 규정, 각종 조례의 형식 및 내용 검토, 가와사키현 조례 제정과정 확인, 조례안에 들어갈 영역과 항목 설정하였다.

또한 이 지역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 관련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실시하여 공신력 있는 분석 작

업을 시도하였다.

이후 조례안 초안 제정 및 수정, 조례안 입법시도, 시민 학생 대상의 홍보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였지만, 교육위원회 조례안 상정 실패로 활동을 잠시 중단하였다. 활동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05년 8월 3일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시작
- 학생인권조례에서 권리조례로 사업명칭 변경
- 흥사단광주지부, 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포럼준비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 YMCA, 시의원, 교육위원, 교수 등이 참가하여 학생권리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구성
- 2005년 공식 모임 16회(비공식 20여회) - 조례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의 성격규정, 각종 조례의 형식 및 내용검토, 가와사키현 조례 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에 들어갈 영역과 항목설정, 조례안 제정 관련 설문 제작 등
- 한국사회조사 연구소 협조 - 학생인권관련 교사, 학생, 시민 설문조사 실시 (2005년 12월)
- 준공청회 - 참실보고대회(2005. 12. 02. 금. 전남중학교) 통한 준공청회 형식의 토론
- 공청회 전까지 3차례의 수정작업
-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2005. 12. 23)
- 전국참실발표회 학생인권조례 토론(2006년 1월)
- 4차 수정안 완성(2006년 1월)
- 2006년 2월 보수적 시각의 조례안으로 수정
- 1-4월 교육위원회 상정시도, 교육청 협상, 발의실패
- 5.18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학생권리조례부스 설치.
인권지수 설문 및 조례안 내용 홍보 및 의견수렴 (2006년 5월)
- 2006학생회 임원아카데미를 통한 조례안 홍보 방안 모색

2) 2차 시기

2008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1차 시기 교육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힘들었던 상황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이에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기회로 포착하고, 지난 1차 시기 활동을 평가하면서 다시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10월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 학생 인권 관련 제반 단체들이 모여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1차 시기보다 많은 단체들이 추진위 참여에 동의하였고, 특히 권리의 주체인 학생·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청소년 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차 시기를 준비한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조례제정추진 사업과 함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는 1차 시기의 과오로서 추진위 참가 단체에서만 조례제정활동이 공유되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속 단체별 특성에 따른 활동들도 전개하고, 추진위원회 차원의 대중적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광주전남 교육연대, 청소년공동체희망 광주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학생생활연구회,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광주지부, 광주홍사단,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광주YMCA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전국청소년학생연합광주지부, 광주YWCA, 문화행동 s#arp 등이 있다.

2차 시기 활동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08년 10월 20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활동 시작
- 11월 3일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및 사업 설명회
- 11월 12일 추진위원회 내부 세미나 실시(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조례안 설명)
- 12월 9일 추진위원회 활동 재개에 관한 기자회견(교육청 브리핑룸)
- 12월 13일 대시민 홍보활동(삼복서점 앞)
- 학교생활규정 분석 및 인권침해적 요소 추출(2009년 1월 활동)
- 2009년 1월 19일 교육감의 인권조례제정 비협조 발언에 관한 대책회의

- 2월 ‘학교인권조례’로의 전환에 관한 토론 : 기존 ‘학생인권조례’로 진행키로 결정
- 3월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4월 4일 대시민 홍보활동(삼복서점 앞)
- 4월 16일 ‘그린마일리지에 관한 토론회’ 개최
- 5월 11일 ‘조대여고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기자회견
- 6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린마일리지제’에 관한 진정서 제출
- 7월 - 11월 조례안 수정 및 검토 작업, 조례안 전문가 검토 후 초안 마련
- 12월 12일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 2010년 3월 4일 KBS TV토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패널참여
- 5월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 2차시기 20여 차례의 내부 회의 및 토론 실시

3) 3차시기~현재

2010년 6월 2일, 광주 교육자치 선거에서 진보적 교육감과 다수의 교육의원이 당선되었다. 그 중, 추진위원회의 사실상 대표인 장휘국 전)교육위원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었고, 교육의원 당선자 4명 중 3명이 학생인권조례 협약에 체결하여 교육위원회 7명중 과반수가 학생인권조례에 동의하는 인사로 구성되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기존의 교육위원회 조례안 상정보다,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교육감 발의를 지원 및 견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준비한 자료를 참고하여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학생인권팀>이 받아 앉았고, 현재는 인수위원회 단계로 넘어와 시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11월 8일 교육감 취임식 이후 경기도와 같이 교육청 주도 속에 학생인권조례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발맞추 추진위는 경기도의 추진사례(문제점)를 참고해 학생참여단 강화, 학내적용시 가이드라인 구축, 학생인권교육 주체 형성,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방안 수립 등 ‘원활한 조례제정’을 위한 여론형성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 적용했을 시를 대비해 ‘장기적인 학생인권사업’을 마련 중에 있다.

울산학생인권조례 경과

우 기 택 (울산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1. 제안 배경

1) 울산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 학생인권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의 해소 ·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실효성이 부족한 선언적 법률에 대해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효성 확보
- 학생 · 교사 · 학부모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
- 인권을 존중받고 자발적 책임을 배우는 학교

2) 추진 경과

울산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04년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인권조례 운동과 2010년 학생인권조례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교육위원과 울산교육연대에서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자 시작되었다. 지난 여름에 교육연대 하반기 사업으로 정했으며, 빠른 시일에 제정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울산학생인권조례는 지역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의 인권 현실과 침해가 어느 정도이며 무엇을 담을 것인가이다. 그래서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능한 많이 갖고자 한다.

- 2010년 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시민추대후보들에게 공동 공약으로 제안
- 교육연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준비모임을 진행
- 교육관련 단체를 넘어서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해서 진행하기로 결의
- 7월 27일(화) : 교육연대 회의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결정, 연구모임구성

- 8월 23일(월) : 1차 연구모임을 진행
- 8월 31일(화) : 2차 연구모임
- 9월 15일(수) : 조례안(경기도조례안을 바탕으로 함)에 대한 연구모임
- 10월 6일(수) : 교육연대회의(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학습 및 추진회의),
- 10월 20일(수) :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교육연대 회의
- 10월 28일(목) : 발족 기자회견을 위한 1차 사전 준비 모임
- 10월 29일(금) : 발족 기자회견을 위한 연구모임 겸 2차 준비 모임
- 11월 3일(수)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울산시민모임(준) 발족 기자회견 예정

2. 활동방향과 이후 일정

1) 조례제정의 원칙

- 학생은 일방적 훈육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출발
-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 등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안 성안
-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거친 조례제정
- 조례 내용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도 포함
- 특히 조례제정 이후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중점(인권옹호관제의 운용에 대한 문제)

2) 조례제정 방식

- 주민 발의, 교육감 발의, 의원 발의(울산시 유권자의 1/85 : 울산시 19세 이상 약 84만명) 중에서 모두 검토 후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

3) 이후 일정

- 11월 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기자회견(참여단체 20여개 단체와 교육의원3명으로 구성)
- 11월 10일경 교육감 면담(교육감 발의 타진)
- 11월 중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회(의회 공동 추진)
- 12월 이후 일정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결정(각 구마다 순회 공청회, 토론회를 준비)

II.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정착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

학생의 역할과 과제

클린 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

최 주 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토론회 : 학생인권조례 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정착과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

참교육학부모회 최주영

차 례

1.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2. 조례의 인권 기준
3.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4. 전국 학생인권조례 지역현황
5. 보호자 관련 쟁점
6. 1) 보호자의 개념
7. 2) 보호자 인권교육
8. 3)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9.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

1-1.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전남 ○중 두발규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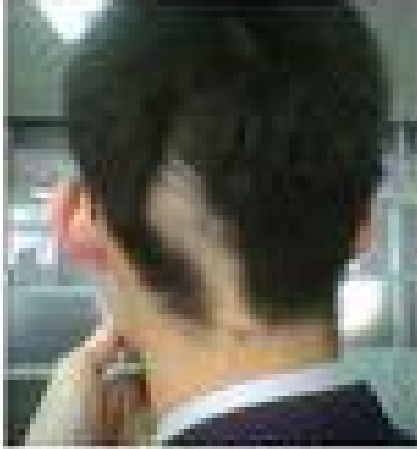
男

- 단정한 스포츠형
앞머리 5cm, 뒷머리는 스포츠형, 가르마 금지
- 젤, 무스, 스프레이, 기타 헤어용품 사용 금지
- 염색, 피어 금지

女

- 귀밑 10cm이하의 단발형이나 스포츠형 커트
- 머리 묶음 불허
- 애교머리, 칼 커트 머리, 피어, 염색 금지
- 머리핀: 검은색·갈색 계통 핀 허용, 큐빅 박힌 것 금지
- 머리띠: 검은색·갈색 계통만 허용, 큐빅 박힌 것, 그림그려진 것, 천 금상 사용금지

1-2.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이렇듯 이렇듯

- 인권 문개는 바리깡 폭력
- 서울 ㅇ고 김모군(18세)

1-3.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 두발단속이 체벌로 이어져
- 인천 부평 ○중학교



2.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기준

- 1989년11월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정
- 우리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 헌법 31조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교육기본법 12조(학습자)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 체벌금지
- 두발 자유
- 복장 자유
- 야간자율,보충수업 선택권
- 집회 결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휴대폰 소지여부
- 대체매뉴얼 보급
- 두발 규제
- 교복 유지
- 학습 분위기 훼손
- 학생 '정치화'
- 사학 자율성
- 통신의 자유 침해

4. 전국 학생인권조례 지역현황

- 경기도조례안:
- 부산조례안 :
- 광주조례안:
- 경남조례 제정안 :
- 서울조례안 :
- 기대감 : 강원/전북
- 전남
- 경북, 충남
- 울산

5-1. 보호자 관련 쟁점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제33조 (보호자 교육)
 -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5-2. 보호자 관련 쟁점

□ 제10조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

- 학부모의 인권의식, 감수성 신장 교육
- 학생회 법제화 등 학생자치권 강화 지원
- 학생이 선택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내 의사소통 활성화(학교에서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 대한 동의를 학생 아닌 학부모에게 받고 있음)
- 초등1학년 등 저학년의 경우 선택권 행사를 학부모가 대리할 때 학생의견 충분히 수렴

교사의 역할과 과제

김 영 삼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

경기도에서 시작되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 학교, 학생, 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 학생이나 교사로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교와 학생, 교사의 삶을 답답해하고 때로는 측은(?)하게 생각한 운동 세력들의 노력으로 일정한 결실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과 교사들의 요구가 없었다는 것을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87년 6.10 항쟁 이후 소위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우리사회 상식의 기준이 바뀌어 나간 기간 동안, 학교는 점점 사회 발전 속도보다 뒤쳐지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희생을 담보로)미래의 주역을 길러낸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들을 현재화하고 있는 집단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요구하고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밖에서부터 강제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야기 되어오던 익숙한 내용들이 담긴 학생인권조례이지만 구체적 실천 상황에 직면한 학교는 한 번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낯선 내용에 맞닥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현실 진단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될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가 내적 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제도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학생은 교사는 심각한 자기 분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적 강제, 행정적 조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운동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진보 교육감의 출현이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다.

1.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당위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지난 7월 서울에서 광노현 교육감이 체벌 금지 원칙을 천명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았다. 체벌금지 반대를 천명한 교원단체조차 체벌금지의 당위성은 받아들이지만 체벌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적 절차적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자기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후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여러 교사들조차 방법적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체벌금지 조치에 대한 성토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모두들 체벌금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라는 전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적어도 본인은 이런 전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체벌 금지가 당위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와 실천을 만들어내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운동을 해왔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진보적이라는 전교조조차 체벌 금지에 대한 원칙적 천명만 했을 뿐 교육운동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성명서 한 장 발표하는 것으로 상대적 진보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중적 조직운동이 아닌 입장 표명만으로도 그 존재 이유를 갖게 하는 다른 형태의 운동 방식을 택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집단적 실천으로서의 교육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대중조직으로 거듭난 전교조가 조합원들과 함께 체벌 금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한 번 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본래 운동은 사회적 금기에 도전해서 평등과 자유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허용과 금기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긴장이 운동의 동력 아닐까? 그런 경험을 통해 교육운동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져 나 자신부터 스스로의 금기를 깨고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체벌 금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걸어오는 많은 내용들이 익숙한 자기 논리의 반복에 불과한 ‘현실적 어려움’(이건 교육감이 현실을 모른다는 조롱의 다른 표현이다)과 ‘절차적 미숙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아쉬움을 갖게 한다. 체벌 금지와 관련지어 이야기 했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현실적이지 아니라 당위적으로도 학생인권조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척박한 상황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현실을 빗대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2.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다. 교사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는 학생 교사간 관계 맺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니 학생들이 새로운 기준에 걸맞는 자기 권리와 책임을 다한다면 많은 어른들의 우려는 말 그대로 우려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별로 전망이 밝지 않다.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로 만들어내는 과정과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주어진(?) 잘 차려진 밥상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모두 고민하고 있으니 차츰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희망적인 전망을 가져본다.

경기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뒤, 서울에서 차별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모든 언론은 학교와 교사들의 고민과 우려들만을 기사화한다. 정작 이러한 조치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발견할 수 없다. 학생들은 무조건 환영하고 마음껏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교사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다.(사실 차별 금지와 관련한 학교 논의과정에서 여러 학생들이 절제된 차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학생들은 미숙한 존재여서 교사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기본권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 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는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 언론이 이런 학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가? 앞에서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내용들을 당위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우 무례한 말이고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담고있는 내용들에 대한 성찰적 고민을 집단적으로 진행시킨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학생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이 어떻다는 답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사들조차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허용적인 교사에 불과하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존재 자체를 다르게 사고하는 분명한 학생관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교육적 상황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학생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자기 노력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것이니 그들의 사회적 성취를 축하해 주고 교사들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이야기 없이 학생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공허하다.

3. 학교 민주주의 발전,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교인권조례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교사들은 공허해 진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교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학교 자율성 확대는 거의 독재에 가까운 학교 관리자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교사들을 짓누르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육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교사 개인이 떠맡아야하는 숨 막히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마디로 학교 정치에서의 권한은 없고 오로지 머슴같이 학교 관리자와 학생 학부모로부터 이리저리 떠밀려 술 취한 듯 휘청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체벌 금지를 말하면서 교권 추락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기우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체벌 금지 등과 관련하여 교사 집단이 보이고 있는 방어적 태도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사들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밖으로부터 강제되는 제도적 도전이자 일상의 삶의 모습의 변화를 스스로 가져와야 하는 안으로부터의 도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밖으로부터 강제된 도전은 교사 자신에게 자기 존재를 되묻는 반성적 성찰을 촉발시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에게 허용된 권리로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사들에게는 일상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교사인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학생들에게 보장하라고 하는 낯선 상황은 아닐까? 사회적으로 교사들은 ‘정치 활동’을 금지당한 반신 불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들이다. 월 1,2만원의 정당한 후원금을 낸 것을 가지고도 해직을 당해야 하는 하찮은 존재들이다. 학교 내에서도 자신들의 교육적 견해를 모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교사들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사각지대에 (의도적으로)방치된 정치적 미숙아들이다. 교사들의 존재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현장이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수준, 상식의 기준에서 한참 뒤떨어진 낙후된 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한 우회적 표현인 것이다. 민주적인 제도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역할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학교 민주주의의 지체가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을 틀 지웠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구현해 내는 교육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지금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외부로부터 강제된 도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생들은 투표로 자신들의 대표를 뽑고 ‘학생회’를 구성하는데 교사들은 ‘교사회’는 커녕 투표 행위 자체를 낯설어 하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

학교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오동석 교수가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동안 교육 운동 진영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또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제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집단적 요구와 실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논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으로부터의 도전은 사실 좀 미묘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논의를 출발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운동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교사들과의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아주 단순화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다. 교사들의 학생 지도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어떤 수업 시간에는 허용되는 것이 다른 수업 시간에는 그렇지 않고, 어떤 선생님은 야단치지 않는 머리 상태가 다른 선생님에게는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사 중 아이들과 관련한 교육적 판단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동의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각 교사들의 주관적인 교육적 판단과 교육행위에 대해 주변 어느 교사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은 그저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형태의 개입과 입장 표명은 금기시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학생들과 직접 마주치는 일상적 교육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은 공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경우 아이들은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이들 표현으로 ‘짜증나고 재수 없지만’ 뒤돌아 욕하는 것으로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신뢰와 상호존중의 관계 맺음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바뀐 상황 속에서는 이런 형태의 교육 활동은 많은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적어도 적지 않은 도전으로 학교와 교사를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이 내적 도전 역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합의

점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교사들의 개인적 주관적인 교육적 신념을 사회적 기준과 상식에 비추어 객관화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합의된 교육활동을 집행하는 공적 활동을 자기 신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더 구체화할 것이며 교사들의 자기 성찰적인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진전되어야 한다. 외부적 도전에 대해서는 뭔가 담론적인 논의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으나 내적 도전으로 고민되는 지점은 교사와 학생 모두 주관적인 자기 생각과 익숙한 자기 행동 방식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쉽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문화와 교육적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대한 도전이다. 어디까지는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소극적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학생이란 교사란 또 학교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역시 익숙한 자기 문법에서 벗어나 낯선 시선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돌아보는 근본적 성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진보교육감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학생인권, ‘인권 vs. 교육’ 또는 ‘학생 vs. 교사’의 다툼인가?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1. 학생인권과 교육권

□ 학생인권은 교육권의 필수요소

- 유엔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음. 국가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존중(respect)의 의무’,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보호(protect)의 의무’, 그리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실현(fulfill)의 의무’가 바로 그것임. 우리 교육기본법 12조와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가 학습자의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국가의 학생 인권 보장 책임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선언적 조항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 법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물론 정부 차원에서 2003년 학생생활지도의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2006년 「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일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 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함. 이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권장만으로는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임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보완과 아울러 지방 조례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함.

-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학생인권의 보장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³⁵⁾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P의 원칙에

35) 학생인권과 교육권에 관한 국제인권준칙에 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자와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개발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국가인권위원회, 2007) 1부를 일독할 것을 권한다.

기초하고 있음. 4P란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제공(Provision), 그리고 참여(Participation)을 말함. 18세 미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차별없이 보장하고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인권 실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 모든 과정이 어린이·청소년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1.2차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주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교육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한 대상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이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나, 학칙 등 학교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음.³⁶⁾

-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권의 실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학생 인권의 보장은 필수적임. 유엔사회권위원회와 ‘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4대 의무(4A)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

36)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1996년 2월)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2003년 1월).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52-53항).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36-37항).

'(Availability)을 보장할 것, 교육기회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차별없는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할 것, 교육의 형태와 내용이 학습자와 보호자가 육체적·정신적·문화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 되도록 '수용성'(Acceptability)을 보장할 것,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 최선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용성'(Adaptability)을 보장할 것이 바로 '4A'에 해당함.³⁷⁾ 이 가운데, 우리 교육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2항³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학교의 규율이 과연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학습의 양과 학교규율의 정도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됨.

-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이나 학교규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은 학교의 자율성을 우리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낮은 일이 아님. 일례로 「뉴욕시 징계 및 중재 기준(규율규정과 학생의 권리·책임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청 지침을 통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³⁹⁾

- 우리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수준이 아니라 조례 제정이 별도로 요구되는 이유는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학생 인권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 2008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부 지침들⁴⁰⁾

37)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6-7항, 그리고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을 참고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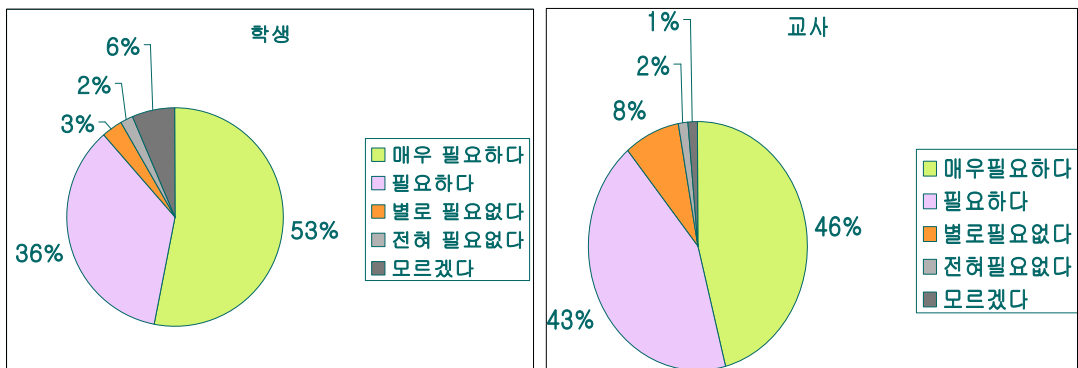
38) "학교규율이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 뉴욕시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의 권리로는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차별, 괴롭힘, 편견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권리, 개인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표현 및 개인의 자유(학생회 또는 각종 모임을 구성, 참여할 권리, 학교생활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위원회를 대표할 권리(필요시 투표권도 행사),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배지, 완장 등을 착용할 권리,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위험하거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몸 수색 등 부당한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명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등)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징계조치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성인 또는 대리인과 동반 출석할 권리 등)가 포함된다.

40) △수준별 이동수업, 0교시·심야보충과 관련한 학사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 △사설모의고사

이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위임되는 한편, 학교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까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2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이러한 조치는 단위 학교의 민주적 참여 통로와 의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의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인권이라는 중대 사항을 개별 학교 단위에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야간 12시까지 또는 토·일요일에도 강제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0교시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 쉬는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한 학교 등이 증가하기도 하였음. 이렇듯 정부 차원의 각종 지침들이 폐지되고 있는 환경에서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보호 지침을 수립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성을 지닌다고 봐야 할 것임.

-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교육주체들 사이에 보편적 인식이 되어가고 있음. 2010년 10월 1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교사 15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53.6%, 교사는 45.8%였고,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35.6%, 교사가 42.9%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였음. 학부모도 ‘매우 필요하다’가 26.6%, ‘필요하다’가 61.0%로 집계됨.



- 교육 관련 주체들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생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

참여 금지 지침 △촌지 지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고 학교안 민주적 소통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자율’이란 법치(法治)나 협치(governance)가 아니라, 인치(人治)나 지배(domination)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임. 학교의 자율성이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반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8조(교육의 목표) 조항을 통해 교육이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인권을 위한 교육,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은 도달해야 할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교육권의 핵심적 요소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임.

- 우리 교육 역시 공식적으로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는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고 봐야 할 것임. 곧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안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행사하는 기회와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책임감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야 할 것임.⁴¹⁾ 또한 ‘법의 지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수적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는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by law)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후자가 실정법에 대한 기계적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국가가 아닌 국민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살피고 실정법에 대한 형식적 적용보다는 법의 이면에 놓여있는 ‘법의 일반원리’에 충실한 법적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법의 일반원리 가운데 최고의

41) “배움에 동기를 부여하고 양질의 교육에 버팀목이 되는 가치(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능력, 능동적 시민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 과정의 행위자인 학생과 교사의 요구가 확인돼야 하며,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학교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권의 행사는 교육당국의 명령 또는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117항)

원리에 해당함.

- 학교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또한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살피고 참여할 기회 역시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하여 학교생활에서 준수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과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10월초 교과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은 학교 단위의 학교규정 마련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임. 학교 단위의 규정 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학교 현실에서 이 권고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더 구체적인 법제화가 요청됨. 또한 진정한 참여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이고, 학생 참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것임. 교과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목표와 전통’에 맞는 규정은 ‘하면 좋은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아님.

□ 학교공동체의 신뢰 회복

-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 상호간에 불신과 다툼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높아가는 반면,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융통성 있게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학교가 제시한 규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깔려 있음.

- 학생인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진정, 민원 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진정 사례들을 살펴보다도,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이는 더 이상 시민들이 학교의 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인권의식이 성장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임. 그러나 소송과 진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부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국가인권위 주요 결정례]

-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결정(2003년)
- 초등학생 일기검사 관행이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육적 수단을 마련하라는 결정(2005년)
- 학생에게 두발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결정(2005년)
- 여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해 생리공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정(2005년)
-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근거도 없이 휴대폰을 수거,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2007년)
- 학생선수에 대한 신체적·성적 폭력 근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발표(2007년)
- 학생에 대한 조기 등교 강요는 학생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결정(2008년)
- 학생에게도 평화로운 학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2008년)
-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에게만 자율학습 전용실(정독실)을 제공하는 일, 성적 우수자만을 별도 편성하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형 공립학원(인재숙)을 운영하면서 성적 우수자만 선발·지원하는 것 등은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2008년)
- 수업 도중 학생을 불러내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결정(2008년)
- 학생 명찰을 고정 부착시켜 학교 밖에서도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2009년)
- 학생 비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정(2010년)

2. 학생인권과 교사

□ 교사의 정당한 권리란 무엇인가

- 교사의 권위는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됨. 반면, 권리는 권리의 주체, 내용, 그리고 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할 의무 대상자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 개념임. 이러한 권리 개념에 기초할 때 교사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교사라는 신분(직책)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일할 권리(노동권), 그리고 교수권(수업권)을 들 수 있음.

-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권리 모두가 교사에게는 잘 보장되지 않고 있음. 교사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박탈당한 채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교수권(수업권)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교육의 자유’와 ‘학생에 대한 평가권’ 역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교사의 직권(職權)인 교육의 자유가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교육 바깥의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교육이 ‘주입’이 아니라 ‘서로 배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교권 논의는 ‘학생 지도권’ 또는 ‘학생 통제권’에 주로 집중되어 있을 뿐임.

- 최근 참교육연구소의 의식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침해’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음. 교권 침해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상당수가 교과부, 교육청, 학교관리자를 지목했다는 사실,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의 자율성과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 개선을 폄였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52.5%	34.6%	12.0%	0.9%
교육청	40.2%	43.3%	15.6%	0.9%
학교관리자	36.7%	40.5%	20.7%	2.1%
학부모	18.4%	43.8%	33.4%	2.2%
학생	10.2%	29.6%	44.1%	16.0%

○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사)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행정 개선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 인정
3.0%	60.9%	69.4%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	입시경쟁교육의 해소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 창구 개설
5.3%	38.2%	4.4%

- 일명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에 이어 9월 초등학생 운동선수 체벌 사망사건, 10월 수원에서 발생한 ‘떡매’ 체벌 사건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학생인권이 학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사집단의 문제인 양 호도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기는 더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좀더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서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어떨까 제안함.

□ 학생지도권, 과연 권리인가

- 교사의 학생 지도권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책무가 있음. 만약 교사의 지도 내용과 방식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교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물론

교사가 정당한 지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공격적(문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이것은 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입을 수 있는 일종의 ‘산업재해’(노동재해)와 같은 것임. 학생의 공격적 행동 이면에는 다양한 맥락과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음. 이때는 교사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변화를 기다려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접근법을 택해야 함. 그동안 이러한 시스템 마련이 긴급한 교육 의제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을 ‘교사의 학생 지도력 문제’로만 접근해 왔고, 그에 따라 교사들이 체벌이나 강압적 교육 수단을 통한 순간적 행동 통제에만 매달리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임. 그래서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 행동을 제압하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 교사’라는 낙인까지 부여받아야 했음. 문제의 뿌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교사의 신분도 안정돼 있어야 함. 그래야 불이익에 대한 압박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임.

- 좀더 근본적으로는 교사의 ‘학생 지도권’이 과연 권리인지 아니면 교사에게 부여된 ‘의무’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지난해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한 사건이나 올 9월초 한 사립학교 교장이 학생들 복장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 지도권은 교사에게 부여된 의무인 측면이 더 강함.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하는 일은 없기 때문임. 2008년 강릉에서 학생회장 선배에게 맞아 후배가 사망한 사건은 학교의 비합리적 규정과 폭력적 선도가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증가는 물론 학교 현장에 어떤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조차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를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었음.⁴²⁾ 그러므로 학생인권은 학생지도권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부여된 과중한 ‘학생 통제 업무’를 줄이고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화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2) 조회 시간 불참자를 단속 중이던 강릉 K고 학생회장은 교실에 남아있는 2학년 후배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후배를 숨지게 하였다. MBC PD수첩은 이 사건을 후속 취재하였는데, 당시 인터뷰에 응한 3학년 학생 상당수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선배에게 대든 후배는 손을 봐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평소의 인식이 비극적인 사건을 키웠다.

-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의 증가 역시 학교 안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교육에 힘써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음. 최근 ‘교권 실추 사건’으로 공개된 사건들도 살펴보면, 피해 교사가 신규·여교사에 집중되어 있음⁴³⁾을 알 수 있음. 이는 단순히 교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기준에서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학교 안 폭력 문화를 바로잡고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먼저 공식적 가치로 인권을 선언하고 예방 교육에 힘쓰는 것이 필요함.

3. 대안을 찾는 접근 방식

- 학생인권은 학생을 가혹하게 다루지 말자, 인격적으로 대우하자는 수준을 넘어, 교육의 원칙과 철학을 다시 구성하는 일이기도 함.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질문을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임. 그럼에도 최근 서울의 체벌금지 정책 이후 빚어지는 모양새를 보면 교육의 기본 철학, 만남과 소통의 조건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문제가 된 ‘행위양식’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우려가 큼.

-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체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별점제와 학생자치법정임. 상벌점제와 관련해서는 별점 부과와 주관성, 학생 ‘순종’의 계량화, 동료 고발의 일상화(선도부 학생들에게 상점 부과, 위반 학생 고발 시 별점 상쇄 등), 보호자 통보를 통한 학생 통제의 강화 등 많은 문제점이 이미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교육적 효과 역시 그다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앞선 참교육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답하고 있음이 확인됨.

○ 체벌의 대체별로 거론되는 상벌점제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43) 지난 2010년 7월 19일 수원 D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인 A모 여교사가 평소 행실이 불량한 B군을 꾸중하던 중 B군이 반발하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말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누나 사귀자’라면서 희롱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아주 효과가 있다	조금은 효과가 있다	별로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5.2%	36.9%	33.4%	24.5%

- 별점제의 실효성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지도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는 교육 철학의 문제일 것임.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 중에는 주의력 집중 훈련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협동수업의 형태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학생도 있고, 관심을 받고 싶은 학생도 있고,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도 있음. 그런데 행동의 이면을 살피지 않고 겉면만 보고 별점을 부과하는 방식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던져질 필요가 있음.

- 경미한 사안의 경우 일정 정도 별점이 쌓인 학생을 법정에 회부하는 학생자치법정에 대해서도 그 운영방식이나 원칙이 세밀하게 점검될 필요가 있음. 학생자치법정은 사생활 노출의 우려, 준비된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부족, 긍정벌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된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예: 교문 앞에 서 있기, 반성문 쓰기 등)도 있음.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 생활 속에서 불거진 다툼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별점(징계)을 부여받은 과 별점자에게 별점을 면해주는 대가로 친구들이 세운 법정에 서도록 하는 것은 기본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규정 자체의 정당성은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만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임. 무엇보다 학생자치법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법권’이란 무서운 힘을 행사하게 된 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조영선, 「"학생인권조례, 교육의 숨통 틈을 것" [기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0. 11. 09.

"학생인권조례, 교육의 숨통 틈을 것"

[기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편집자 주] 필자 조영선님은 경인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회원이기도 합니다.

6.2 지방 선거 이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고,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서울에서도 최근, 초등학생에게 교실에서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가한 동영상 인터넷에 공개돼 화제가 된 일명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학생인권법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사실 전 국민의 인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전 국민에게 당연하게 보장된 인권이 유독 10대 학생들에게만 교육의 이름으로 제한되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학생다움'이라는 미명아래 똑같은 머리와 복장을 요구 받고, '사랑의 매'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폭력이 용인되어왔다. 더 이상 이러한 것이 '교육'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될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법의 내용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담은 조례의 형식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고자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선동조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성향의 신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선동조례'라며 이상한 색깔을 덧씌우고 있고, 포퓰리즘에 근거한 무분별한 정책이라며 진보교육감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

또한 두발과 복장자유화 등 개성의 실현이 빈부 격차를 드러낼 것이며 보충야간자율학습 선택권이 사교육을 더 기승을 부리게 할 것이라는 등,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등 계속 탄축을 걸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제'며 '자율형사립고'가 확대되면서, 어느 학교 학생인가를 보여주는 교복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드러내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대졸자의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른 진로 교육은 도외시한 채 강제 보충과 야지를 통해 학교를 대입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은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아닌가?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학교에서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권이 추락한다고 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 머리카마 길이를 재러 다니느라 바쁘고, 학생들에게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아내 야간자율학습에 남게 하느라 수업이나 상담에 힘을 쏟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제고사나 모의고사 등 일제식 문제풀이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교육과정 하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반수 학생들이 엎드려 지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풍경이야말로 교권 추락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를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교권’은 교육과정편성권이냐 평가권이 아니라 오직 ‘학생지도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억압할 권리인 것이다. 교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체벌금지’를 교권침해로 보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어느 민주국가에서 다른 존재에게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힘에 ‘권리’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이것은 결국 학교라는 사회가 ‘폭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사회임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일 뿐이다.

교사를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필요해

모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누나 사귀자’고 희롱했던 사건은 이런 힘의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여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힘의 구조로 유지되는 학교를 그대로 둘 때, 교권 역시 힘에 따라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사는 교육자라기보다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새끼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용의복장 지도를 위해 학생들 앞에서 교장이 교사를 체벌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들의 창조적 역량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하여 정당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교사들 8명이 해임, 22명이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학생을 교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백치로 보기에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이렇듯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학생들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침묵의 교실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사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이미 보장되었을 것이다.

흔히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던 시절에 여성의 권한이 제한된 이유는 ‘여성들이 미숙하고 판단력이 없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은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나가야 할 시기에 자신의 몸조차 ‘학생답다’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재단되어야하는 현실이 청소년의 미성숙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학생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 백치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에 숨 쉴 곳을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교사들을 간수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좀비에서 인간으로 깨어나게 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 여교사에게 한 남학생이 '누나 사귀자'고 희롱한 사건은 힘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학교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여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공현, 「 '교사 폭행한 학생' 선정적 언론보도 문제 있다 - 왜곡된 보도로 학생인권에 대한 건강한 논의 막고 있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0. 12. 31.

‘교사 폭행한 학생’ 선정적 언론보도 문제 있다

왜곡된 보도로 학생인권에 대한 건강한 논의 막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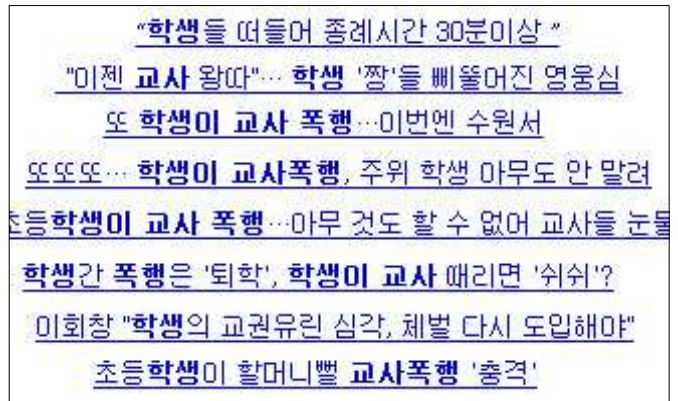
공현

※필자 공현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의 활동가입니다.—편집자 주

최근에 언론에서는 연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라 '교권 실추'를 우려하며 학생인권 보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유통되고 있는 교권 실추 담론은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

‘요즘 학생들 무섭다’ 부르짖는 언론들의 오류

사실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교사를 폭행할 학생들의 수만 극소수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만 해도 몇 십 건도 채 되지 않으며, 전교조나 교총 등의 교원단체들이 발표하는 '교권 침해' 건수를 봐도 몇 백 건도 채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교권 침해'는 폭행 외에도 말다툼이나 욕설이나 소극적 저항, 학생들이 교사를 놀리는 것 등등도 포함된 경우가 많다. 몇 백 건이면 많은 것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대략 500만 명이니, 몇 백 건이면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동원해야 할 수치이다.



▲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을 보도하는 최근 신문기사 헤드라인들.

오해는 마시기 바란다. 0.01%이든 0.1%이든,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적 현상이고,

또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이 대체로 증가 추세인 것도 맞다. 그러나 적어도 0.1%나 0.01%를 가지고서 그 집단 전체를 문제집단으로 낙인찍거나 호들갑을 떨면서 체제의 위기를 예언하는 것은 오류이고 과장이다.

지금 몇몇 언론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를 찾아서 보도하며 교육의 위기를 부르짖고 “요즘 학생들”의 무서움을 설파하는 모습이 딱 그렇지 않은가? 사실 지금처럼 몇 년 전 몇 달 전 사건들까지 지역을 막론하고 찾아다닌다면, 거의 1년 내내 그런 선정적인 보도로 지면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화된 교사 폭력’

그런데 반대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자. 2010년 10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와 참교육연구소에서 전국 교사 14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약 70%가 체벌을 한다고 응답했다.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교사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20%의 교사들은 체벌을 ‘자주’ 한다. 전체 교사의 수가 대략 40만 명이니, 집단에 이 비율을 적용시켜보면 $400,000 \times 70\% = 280,000$. $400,000 \times 20\% = 80,000$. 28만 명의 교사가 체벌을 하고, 8만 명의 교사가 ‘자주’ 체벌을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칙이나 한계 없이 ‘자유롭게’ 체벌한다고 답한 교사도 3.8%나 되니까, 이 역시 1만 명이 넘는다.

게다가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사 1명은 학생 수십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학생 1명이 교사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폭력의 영향력은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체벌금지 이후에도 여전히 체벌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추적하기보다는 굳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의 선정적인 몇몇 사례들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언론은 얼마나 공정한 것일까.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일상이라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것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센세이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전형적인 황색 언론의 논리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폭력 행사’는 문제

나는 학생인권운동을 하면서 지난 몇 년 간 교사가 학생의 뺨이나 머리를 때린 사건, 체벌 중에 학생이 골절상을 입은 사건 등 수십 건의 ‘선정적인’ 체벌 사례들을 접해왔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사정이나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전혀 공론화하지 못한 사례들이 태반이다.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맞는 것은 잘 문제가 되지 않고 교사 집단 전체를 낙인찍을 이유도 되지 않으며 교사들의 인권을 부정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다가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고 학생 집단 전체를 욕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부정할 이유가 된다. 그 모습이 이미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쓰고 있으니 학생들도 교사들에게 폭력을 쓰는, 폭력과 폭력이 맞부딪치는 교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학부모이든 누구든,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선정적인 사례들만을 부각시키며 어떤 사람들을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것은 긍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폭력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 언론들은 정작 그런 식의 보도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들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해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때문에 지금처럼 선정적 사건들을 캐내서 계속 뿌려대기만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은, 불공정하며 무책임하다. 혹시 그 몇몇 언론들의 그런 보도 방침이야말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꺾어놓기 위한 ‘계산’에 따른 것은 아닌가?



▲ 2006년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열린 십대들의 '가면' 기자회견.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십대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 일다

‘학교 붕괴’의 진짜 이유

한국의 학교 교육이 붕괴해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요즘 애들이 이기적이고 선생님을 우습게 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연일 교사를 폭행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학교 붕괴의 상징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더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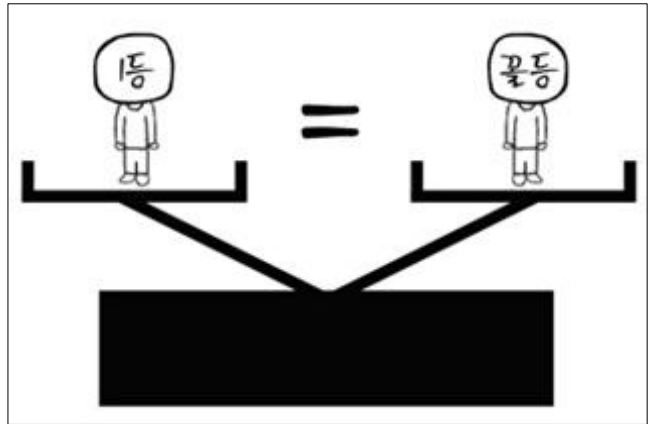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는 학생들, 학교가 부여하는 과업과 수행하는 교육 활동에 냉소적이거나 불참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학교 풍경이 되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소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 현실이 학교 붕괴의 근본적 현상이고,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례 등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현상에 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육이 노골적으로 계급재생산의 도구가 되고 학교에 차별과 억압이 심할 때, 학교 교육과 사회 현실이 학생들에게 삶에 관한 희망을 주지 못할 때, 학교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학교 수업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주지 못하고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할 때 — 이럴 때 학교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이유를 잃고 학교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미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이야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학교 붕괴’ 담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계

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입시경쟁, 취업경쟁의 모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는 ‘학교 붕괴’ 현상을 확산시키고 가속화시키고 있다. ‘승자독식’의 원리가 득세하고 학교는 입시·취업기관 혹은 졸업장 발급 기관이 된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열의를 갖고 따르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나 또한,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부동산 투기나 해라.”라고 대놓고 말하고, 학생들은 성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 UCC 공모전 수상작(장기중 김근태 학생) 중 한 장면.

통제와 억압, 경쟁 강화로 문제 풀 수 없다

이와 같은 ‘학교 붕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뭔지, 여기에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입시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평준화라거나 복지정책 및 경제정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커다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안교육이나 탈학교론, 공교육 재편론 등 여러 가지 교육계 내에서의 논의들이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 그리고 학교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은 ‘학교 붕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학교생활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 학생인권 보장이야말로 학교가 가기 싫고 믿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좀 더 재밌고 자발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바뀌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누구든 진정으로 학교 교육이 붕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내부 워크숍

□ 때: 2011년 1월 7일(금) 오후 2시

□ 곳: 전교조 서울지부

1. 학생인권조례의 철학과 열쇳말 / 진행 - 배경내

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 넘어서기

1) 권리 조항별 쟁점 짚어보기 / 진행 - 공현

: 서명 작업에서 주שוב로 받게 되는 질문들 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토론

- 어디까지가 체벌인가? 간접체벌은 체벌이 아닌가?
-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관찰을까? 휴대전화 압수는 가능한가?
- 복장 규제 금지는 교복을 입지 말자는 소리냐?
- 두발 길이 자유는 좋지만, 염색까지 허용하자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 학생 신분엔 집회는 너무 오버 아닌가?
- ???

2) 학생인권의 부작용(?)에 관한 우려들 넘어서기 / 진행 : 전누리

- 최근 언론의 기획 보도 실태(교사에 대한 폭행, 교실 붕괴 담론 등)의 문제점 - 학생인권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장면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논의 과제]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폭력적인 문제해결 방식에 의존해온 문화, 교사와 학생 서로간의 불신, 낮은 인권의식, 교사들의 병소적 태도 등

○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으로 정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예)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 교사의 자율성을 어떻게 봐야 하나? ‘조례’는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가? 조례는 교사를 문제집단 혹은 개혁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교사들의 주체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 수업규칙, 핸드폰 이용 규칙 등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는 일이 교육을 인권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3. 학생인권조례, ‘문제행동’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진행 : 경내

: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이후 ‘생활지도의 혼란’ 또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지도 불가’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그 가운데 정부나 교육청 등에서 조급하게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음. 학생인권운동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논의 과제]

○ 상벌점제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키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선도부인가?

○ 문제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제도와 강제전학 등 엄벌주의적 대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성찰교실에 간 학생들,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 대규모 강연식으로 내리먹이는 인권교육, 반공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규탄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1. 01. 20.

<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규탄

긴급 기자회견

□ 때: 2011년 1월 20일(목) 오전 11시

□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학생인권 · 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저지 대책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조,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노조,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당, 서울교육시민추진본부, 입시폐지국본, 전교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다함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홍사단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협의회), YMCA 전국연맹)

사회당,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교육 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차 레 □

- 사회 : 최주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 [여는말]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사회자

2.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문제점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3. [규탄발언 1]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도경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서리)

4. [규탄발언 2]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 등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정책 무력화를 중심으로

-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5. [규탄발언 3] 시행령 개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학생의 입장에서

- 어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6. 향후 투쟁계획 발표

-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7. 기자회견문 낭독

[자료 1]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와 학생인권조례무력화가 선진화?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관련
주요 경과 및 문제점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추진 주요 경과

- 2010.07.07 : 교과부,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두발, 체벌 등 학생생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힘. ‘획일적 조례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혀 학생인권조례 대응용 조치임을 내비침.
- 2010.07.12 : <메디컬투데이>, 교과부가 이례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법 충돌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
- 2010.07.19 :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 정책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시교육청 지침이 법령에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받겠다’고 엄포.
- 2010.08.18 : 한국교육개발원, <학생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여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 발표. 강인수 교수(수원대 부총장)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시안을 발표. ‘교과부가 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으로 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 내용을 들여보다보면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반인권적 개정안이 연구보고서로 발표된 것임.
- 2010.09.09 : <문화일보>, 교과부 관계자 말을 인용, 10월 중 권역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11월말 교과부의 ‘학생권리신장방안’이 확정될 예정이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0.09.10 : 교과부,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 강인수 교수안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본격화

- 2010.09.15 : 교과부, 학교지원국 학교생활문화팀장과 관계자 전교조 방문
 - 학생인권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입법 발의 예정, 내년 2월까지 개정 완료하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공지함
- 2010.09.16 : 교과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방문
- 2010.09.19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 5개 교원단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 ‘우려되는 사태’라며 정부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안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
- 2010.09.27 :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점 폭로 및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0.10.07 : 교과부, <학생권리신장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 개최함.
 - 학생권리신장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 8월 18일 교육법연구팀(강인수 교수)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교과부는 시행령만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최종 마련함.
 - 권역별 공청회 계획을 없애고 협의회로 대체한다고 발표함. 전교조 관계자 항의하며 퇴장.
- 2010.10.12 : 시민사회단체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0.10.29 : 교과부,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개최
- 2010.12.29 : 교과부, 바른인성함양을 위한 학교문화선진화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동국대 조벽 교수팀은 현행체벌대안으로 얼차려 등의 체벌 허용과 출석정지 도입을 언급함.
- 2011.01.17 :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 학교규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 삭제 추진 경과

- 2008.11.12 : 교과부, ‘학교자율화조치’의 후속 조치로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이 개정안에 ‘학교규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을 폐지하는 조항이 삽입됨.
- 2008.11.13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
- 2009.01.12 :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결정
- 2010.07.27 : 법안심사소위 상정
- 2010.09.07 : 법안심사소위 상정

■ 교과부의 학교문화선진화 방안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주요 문제점

○ 학교장에게 통제되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권력 부여

: 지금의 학교는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평교사 및 일반 학부모들의 권한이 교장의 권력보다 취약한 것이 사실임. 위계적인 권력 구조 속에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부여는 사실상 교장의 ‘절대 권력’을 강화해주는 것임. 특히 교육감의 학칙에 대한 인가권을 폐지(현재 국회 교과위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중)가 함께 진행된다면 견제·통제되지 않는 교장의 자의적 권력행사 속에 학교운영이 진행될 것이고, 이 결과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 권리 제한의 이유로서 교육 활동 보호, 학내 질서 유지 등을 두었으나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함.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두어야 하나 이 같이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단위학교 현장에서 남용의 위험이 큼.

: 무엇보다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권은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같이 시행령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헌 가능성이 높음.

○ 간접이든 직접이든 체벌은 폭력일 뿐임

: 벽보고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 간접체벌로 예시된 것은 사실상 학생에게 모욕을 주고,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끼치는 기합, 얼차려식의 폭력일 뿐임.

: 일례로 2007년 부산의 배정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음. 2010년 김포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앉았다 일어서기’ 체벌을 받다가 사망하기도 했었음.

: 중요한 것은 체벌은 교육학계나 심리학계에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교육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임. 오히려 학생들에게 폭력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을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며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벌은 폭력이라 할 수 있음.

: 상벌점제를 도입해서 안착화시키는 것도 교과부의 방안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체벌과 벌점을 주는 이중의 불합리한 처벌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임. 상벌점제 자체도 비교육적 반인권적 요소가 지적 받고 있음.

* (참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논평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까지 100개국 이상이 학교 및 아동에 대한 형사체제에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할 것으로 생각한다(5항). 본 위원회는 체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징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분명히 확인하였다(7항). 본 위원회는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제화하거나 법률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8항). 본 위원회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된 모든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은 손이나 도구-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 손가락 등으로 때리는 것("찰싹찰싹 때리는 것", "뺨을 때리는 것 혹은 철썩하고 때리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예를 들면, 차는 것, 흔드는 것 혹은 아동을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것,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게 하는 것 혹은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신체적인 처벌은 항상 굴욕적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 비 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11항). 본 위원회는 아동의 양육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잦은 물리적인 행동과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일정한 정도의 고통, 불편함 혹은 굴욕을 유발하는 고의적이고 징벌적인 힘의 사용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행동과 징벌적인 폭력과의 차이를 알고 있다. 아동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국가에서 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간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비징벌적이며 필요한 물리력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14항). 아동 혹은 기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촉발된 물리력의 사용과 처벌을 위한 물리력의 사용간의 분명한 구별이 존재한다. 필요한 최단기간동안의,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사용이라는 원칙

은 항상 적용되어야만 한다. 제재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사용되는 모든 방법이 안전하고, 상황에 대해 비례적이며, 통제의 형태로서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과 훈련이 또한 필요하다(15항). 더욱이 협약 제28조 2항에서는 학교규율을 언급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에게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19항). 유엔사회권위원회도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1999년의 일반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본위원회의 견해로는 차별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양 규약의 각 전문에 기술된 국제인권법의 근본적인 지도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학교 규율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 역시 인간존엄성에 위배될 수 있다”(22항).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련의 판결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점진적으로 유죄판결을 해왔으며, 첫 번째는 형사체제에서 두 번째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에서, 가장 최근엔 가정에서의 차별을 인권침해로 결정했다(23항). 아동의 발달상의 필요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아동은 성인들의 말뿐 아니라 성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학습한다.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굴욕을 준다면 성인들은 인권의 경시를 보여주며 이러한 것들이 갈등의 해결이나 행동의 변화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는 강력하고 위협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46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 학생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

: 현행 시행령에서는 교내봉사가 최저 수위의 징계. 그런데 개정을 통해서 간접차별 등 학칙이 정하는 훈육, 지도 방식까지 징계가 됨으로써 기록에 남게 되고 향후 진학지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수위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특별교육 이수 다음 단계로 출석 정지 제도가 부활. 그런데 현행 ‘학교폭력에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도 ‘10일 이내 출석정지 제도가 있음. 결국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석 정지되는 학생은 동료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나 학교에 밍보인 학생이 대상으로 포괄될 가능성이 높음. 일종의 ‘괘씸죄’를 물을 수 있는 독소조항.

: 출석정지는 특별교육이수 이상, 퇴학 바로 전의 중징계임. 때문에 일상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에 있어서도 특별교육이수와 큰 차이가 없어서 도입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출석 정지 기간 동안 Wee센터 등과 연계한다고는 하나, 학생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낙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무엇보다 출석정지가 도입되었을 때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 원인을 찾고 그것을 치유·해결하기 보다는 쉽게 학생을 배제할 수 있는 출석정지징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음. 결국 회복과 복귀 등 교육적 지도를 목표로 한 징계가 아닌 배제와 낙인만의 목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것임.

: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계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금의 징계제도가 교육적·민주적인지, 또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민주적인지 점검하고 이를 개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

* 참고: 특별교육이수와 출석 정지 제도의 차이 - 출석정지 징계 기간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무단결석' 처리되어 수업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 학생인권조례의 무력화

: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안착화와 제정움직임이 일어나고,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의 후퇴된 학생인권정책의 발표는 그 저의를 의심케 함.

: 무엇보다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교육감의 인가권이 폐지되고 나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칙의 비민주성과 반인권성을 조정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이미 통과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상위법 위반에 휘말려 학교현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 질 것임. (참고로 이미 교과부는 발표를 통해 시행령 개정방향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조치의 수정을 요구했음.)

○ 악법을 지키라고? 학칙 준수 서약식에 대한 문제점

: 그동안 학칙 위반 사례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칙자체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제한하고 변화된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교과부는 학칙 준수 서약식을 운운하는 등 학생들의 준법 의식을 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즉 악법에 대해 무조건적인 준법 촉구만을 요구하는 것임.

: 문제는 간단함. 학칙이 민주적 정당성, 인권적 정당성을 얻는다면 굳이 서약식과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지키는 자율 규범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임.

[자료 2]

‘학교 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싹을 지키자!’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

■ **교과부 앞 1인 시위 돌입**

- 반인권적 반민주적 시행령 개악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20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돌입할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저명한 사회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악에 대한 학생성토대회 개최**

- 시행령 개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학생임. 학교현장에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고자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시행령 개악에 대한 학생성토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일시: 1월 24, 25일 (양일 중 하루) 장소: 미정 (추후 일시 및 장소 공지할 예정임)

■ **시행령 개악 문제점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에 대한 긴급토론회**

- 시행령 개악의 문제점과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짚어보고자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 토론회는 대책모임 뿐 아니라 국회 교과위 의원실, 교과부의 개악시도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정당들과 함께 준비할 것임.
- 일시: 1월 26일 2시(예정) 장소: 미정(추후 확정된 일시 및 장소 공지할 예정임)

■ **법률대응 검토**

- 시행령 개악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혹은 위헌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검토 중임. 이에 따라 향후 늦어도 입법예고 기간 안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등 동원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

* 이후 과정 속에서 교과부의 시행령 개악의 철회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다.

[성 명 서]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 무력화, 폭력 합법화 그게 교과부가 할 일인가?

지난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른바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그럴듯한 이름과 달리,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도구 등으로 때리는 것 외의 체벌을 허용하는 등, 그 계획의 핵심 내용은 학교문화를 후진화하는 것이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변화에 휘방을 놓고, 안 그래도 낮은 수준인 한국 학교들의 인권 상황과 민주주의를 더욱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계획인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의 학칙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학내 질서 유지, 교육활동 보호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악안 부분이다. 이처럼 학교장에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유신헌법이나 독재를 연상케 한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학교가 민주적으로, 교육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학생들의 인권이 잘 존중되고 있는지 감독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이다.

교과부는 그 대신에 학칙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 역시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하게 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을 부여하지 않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학칙 준수 서약 등 ‘무조건 준법’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대부분의 한국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와 문화는 안 그래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는데, 이제 교과부는 노골적으로 학교를 학교장의 독재기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가?

또한 교과부는 이번 발표에서 도구를 이용하거나 직접 손발 등으로 때리는 것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체벌은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처벌’로서 체벌은 그것이 때리는 것이든, 굴리고 ‘얼차려’를 주는 것이든, 아무 차이가 없다.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 역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세-동작을 강요하거나 굴욕적 행위를 하는 것 모두를 체벌이자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모든 체벌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교과부의 체벌 허용 방침은 폭력 없는 교육을 만들려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이며, 폭력을 합법화해주는 것일 뿐이다.

출석정지 제도의 도입 역시 악용이 우려된다. 학교에서는 징계가 학생들의 변화와 복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문제 학생들’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데 남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학생이 징계 기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무단결석’ 처리하는 출석정지 제도는, 학생들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학교의 현실에서는 무작정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징계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 무력화, 폭력 합법화 계획은, 결국 최근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등 변화의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임이 명백해 보인다.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의 신장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인권을 더 잘 짓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지 골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에 반대하며, 시행령 개악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2011년 1월 20일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조,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노조,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 서울교육시민추진본부, 입시폐지국본, 전교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다함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홍사단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협의회), YMCA 전국연맹)

사회당,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지연 기자, 「교육·시민단체 "학생 인권침해 소지 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면폐지" 촉구 - 20일 긴급 기자회견..."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하는 개악"주장」, 민중의소리, 2011. 01. 20.

교육·시민단체 "학생 인권침해 소지 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면폐지" 촉구

20일 긴급 기자회견..."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하는 개악"주장



©민중의소리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악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등을 비롯한 69개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학교를 허가된 독제구역으로 몰아넣는 세련된 개악일 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저지 대책모임은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교장의 절대권력을 강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전면폐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이번 교과부의 시행령은 차별하지 않으면 교육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 나온 매우 수공업적인 지도방식일 뿐”이라며 “교사입장에서도 초중등교육법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와 권위를 위협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태균 씨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며 “학교현장을 폭력이 난무하는 살인적 공간으로 만드는 시행령의 전면폐지를 학부모들의 연대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 어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는 진보교육감의 당선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라며 “그때 스스로 자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처벌이었는데 학생에게 교장의 재량에 맡긴 학칙을 강요하는 현실은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교과부는 간접체벌을 합법화하겠다고 말하는데 과연 간접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이번 시행령 개악은 민주적인교육감과 학부모의 노력을 짓밟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은 가장 후진적인 인권침해 행태이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가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한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시민단체로부터 ▲학교장에게 초헌법적 권력부여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출석정지제 도입 등의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앞서 거절된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면담요청을 재신청하고 향후 학생토론회 개최와 정당인들과 함께하는 긴급토론회, 법령 효력정정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학교장 독재력 강화
폭력 허용 정책??

자유?

청소년 성토크대회

★ 때 : 2011.01.25. 화요일 오전 11시
★ 곳 : 혜화역 흥사단본부 강당
★ 문의 : 010-2840-3328

동성중고교, 동숭아트센터, 흥사단본부,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대학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장이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 패는 것 외의 체벌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대요!!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도 무효로 만드는 내용이라네요??? 헐 - ㄱ
학생들, 청소년들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발표한 정책.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모여서 자유롭게 떠들어봅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sturightnow.net

손기영 기자, 「 “간접체벌은 없다” 」, 레디앙, 2011. 01. 25.

“간접체벌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추진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체벌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어른들의 논쟁을 ‘언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간접체벌 문제에 ‘할 말 많은’ 중고생들과 탈학교 청소년들(스스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이 답답함을 참지 못해, 25일 오전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 본부에 모여 ‘청소년 긴급 성토대회’를 열었다. 행사 진행도, 발언도 모두 학생들이 ‘주체’가 된 자리였다. 다만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저지 대책모임’(대책모임)이 이들의 행사를 지원해줬다.



▲25일 흥사단 본부에서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한 중고생, 탈학교 청소년들의 성토대회가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청소년의 시각으로 본 간접체벌

어른들의 간섭이 없었던 자리였던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거침없고 발칙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간접체벌 허용방침을 밝힌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나 이를 반기는 보수성향의 일선 학교장들은, 이날 중고생,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까이는 날’이었다. 우선 팔굽혀펴기, 운동장 돌기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이란 용어에 대한 참가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경기 의정부고 1학년 김석민 군은 “교과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데, 도대체 간접체벌과 직접체벌과 뭐가 다른지, 이 말을 지어낸 이주호 장관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따졌고, 탈학교 청소년인 ‘어쓰’(닉네임·19)는 “간접체벌은 교과부가 발명한 말이다. 몽둥이로 때리는 건 직접체벌, 기함을 주는 건 간접체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체벌 허용 방침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일종의 ‘꼼수’이다. 간접체벌이란 말 대신, 앞으

로 솔직히 까놓고 기합이나 일차려라는 말을 쓰라”고 꼬집었다.

신체 단련 등 ‘교육적 훈육’을 위해 간접체벌을 허용하지는 주장을 비판하는 농담 섞인 주장도 제기됐다. 수원 매현중 3학년 김성호 군은 “진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팔굽혀펴기나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돌기 등 무식하고 굴욕적인 방법 말고, 차라리 공짜로 헬스장에 다니게 해달라. 언제 시간이 된다면, 이 문제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신"

일선학교의 학칙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하기 위해,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교과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 삼각산중 3학년 최훈민 군은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신’이다. 말 한마디면 학교의 모든 일이 백지화된다”며 “학생들이 교장선생님한테 말 한마디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장 선생님한테 과도한 재량이 주어진 것 같다”고 자신의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영상고에 다니는 남학생도 “학교 교장선생님께 ‘해맑게’ 인사를 하면, 받아주지 않고 ‘씹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학교는 사립 학교이자 기독교재단 학교여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독재’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숨 쉴 공간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성토대회에서는 (간접)체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참가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바꿔 학생들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서울 삼각산중 3학년 최훈민 군은 “학생이 먼저 바뀌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사회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바뀔 수 있다. ‘잘 못된 입시제도’ 때문에 오늘 오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가 변해야" vs "학생이 행동해야"

반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남학생은 “‘노동계의 전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려 간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서, 결국 ‘호랑이’가 돼서 나왔다”며 “체벌 문제를 어른들에 맡길 게 아니라, 차라리 ‘권력의 맛’을 모르는 우리의 힘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매현중 3학년 김성호 군은 “교과부, 교육청이 체벌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것에 항의하고, 친구들과 팀을 짜서 교장선생님과 ‘맞장’을 뜨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토대회에는 중고생, 탈학교 청소년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2시간 가량 간접체벌 문제 등에 대한 열띤 발언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간접체벌과 직접체벌 뭐가 다르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건 똑같은데, 간접체벌이 직접체벌과 뭐가 다른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해명해야 합니다.”(김석민군·17)

“차라리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낫지, 오리걸음 하고 운동장 도는 건 더 싫습니다.”(김성호군·16)

25일 서울 동승동 흥사단본부 강당에 15명의 중·고생이 모여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 방침에 반대하는 ‘청소년 긴급 성토대회’를 열었다. 간접체벌 허용을 둘러싸고 교과부와 서울·경기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체벌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박영양(17)은 “우리를 훈련받는 강아지로 여기는 것 같다. 잘하면 간식 주고 못하면 혼내고... 우리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인간임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둠코(18·가명)는 “어떻게든 우리를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교정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군(18)은 “예방주사를 맞은 직후엔 열이 나는 것처럼, 체벌 금지도 현재 과도기이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에서 온 이예반군(16)은 “그래도 간접체벌이라는 꼼수를 쓰게 만든 걸 보면 ‘사랑의 매’ 운운하던 때에 비해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은 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성은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다영이라고 소개한 여고생(18)은 “이번 교과부 방침은 교장이 필요할 때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은 학생 인권에 관심이 없다”고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공헌 활동가(24)는 “이번 성토대회는 청소년들이 간접체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바야흐로 학생인권조례의 시대입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고, 서울에서도 체벌금지 조치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늘 '학교'에 대한 묘사가 있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학교'의 모습 속에는 진짜 학생과 진짜 교사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학생이든 교사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학교를 희망하는 많은 선생님들, 저들이 만들어놓은 경쟁교육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교사-학생들을 더욱더 우롱하는 언론보도에 분노하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월16일(수) 저녁 5시
장 소 흥사단 (4호선 혜화역)
초대손님 각지역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고민하는 초·중·고 선생님들
문 의 조영선 019-210-4640

1부 | 현장에서 말한다.

- '못된 남학생 vs 악한 여교사'의 싸움인가?
- 체벌 금지 이후 초등은?
- 나는 왜 매를 놓게 되었나?
- 실업계는 매가 필요하다?
- 진짜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2부 | 길을 말한다.

- 수업혁신도 존중의 생활지도로부터
- '병해자' 70%를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 생활지도부가 앞장선 인권존중
- 실업계 아이들일 수록 존중부터 시작한다.
- 약속강식의 학교문화에서 존중으로 살아남기
- 학교별로 생활규정이 달라진다면

3부 | 질의 응답 및 청중 토론

주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 외 32개단체)

김도연 기자,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사의 소통 방식은? - “교사 체벌에 학생 응대했다면 ‘정당방위’ 맞잖아”」,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2. 17.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사의 소통 방식은?

“교사 체벌에 학생 응대했다면 ‘정당방위’ 맞잖아”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서울의 체벌금지 시행 이후 각종 매체들이 연일 ‘대드는 학생’ ‘매 맞는 교사’ 등 ‘교사들의 수모’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이렇게 교사들의 ‘권리’에 관심 가졌던 적이 있던가 싶은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교권의 추락’을 우려했다.

‘체벌이 금지’된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권은 정말로 추락하고 있

는가. 교사들이 직접 입을 열었다.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주최로 홍사단 강당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사가 말하다’ 토론회에서 교사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해냈다.

“‘체벌금지’를 ‘체벌금지’라 말했을 뿐인데 언론은 ‘짜가지 없다’ 하네”

이기규 교사(서울 수송초) 체벌 하던 교사들도 ‘금지’를 강조하니까 체벌 안 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방법은 안 해왔으니까 힘들어하긴 한다. 그래도 생활지도를 아예 못하겠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씩 고민하는 게 사실이다. 근데 언론은 생각이 좀 달랐던 거 같다. 체벌금지 시행 이후 나에게도 몇몇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었다. ‘체벌이 금지됐는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없느냐’고 묻더라. 그때마다 별 문제 없다고 답하면서 우리학교 사정을 설명해드렸는데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던지 한 번도 인용되지는 않더라.

조영선 교사(서울 경인고) 언론보도 보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은 애들이 교사를 때리고, ‘짜가지’ 없게 군다



고 지적하는 거다. 우리학교에도 비슷한 사례 있었다. 어떤 교사가 체벌을 했고 거기에 대해 애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터치가 있었던 거다. 나중에 그 친구하고 얘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자기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아니냐고 그러더라. 폭력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가 맞았으면 방어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다. 근데 그건 사실 ‘팩트’다. 때리려는 교사 앞에서 ‘체벌금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체벌금지를 체벌금지라고 하는 게 팩트가 아니면 뭐냐.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짜가지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언론이 웃기는 서사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과정에서 교사로서 소외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 주체로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위로부터의 개혁’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기규 교사(서울 수송초) “학생인권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하는 과정도 되게 ‘인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 대부분은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체벌금지’를 선언하면서 마치 모든 교사들이 체벌을 해왔다는 분위기로 말하니까 여기저기서 푸념이 있었다. 체벌을 하나 안하나와 상관없이, 체벌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약간 위축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사들의 의견 공유되면서 결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조례 하나 만들고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교사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하는 기회 마련해주는 것, 천천히 가더라도 교사와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걸 교육청, 교육단체 모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인권조례와 체벌금지, 학교문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시행이 무척 ‘유의미’한 일이며, 이를 오히려 생활지도 방식의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는 교사들도 이견이 없어 보였다. 교사들은 억압적인 학교문화를 교사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고, 혹자는 ‘체벌출 교사’였던 자신의 감동적인 ‘체벌 탈출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오혜원 교사(경기 호계중) 언론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발표 후에 ‘당하는 여교사’ ‘맞는 여교사’ 등 교권 추락의 대표사례로 약한 여교사를 거론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젊고 약한 여교사만의 문제 아니라 학생들과 인간적 관계 형성하지 못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문제인 것 같다. 억압적이고 남성적인 학교 구조에서 억지로 애들을 통제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 역할을 맡아왔던 이들은 인권조례가 발표되고 나서 오랫동안 수행해온 여교사 역할을 이제라도 버려야 하는 건지 혼란에 빠진 건 사실인 거 같다. 그중 일부는 때리지 말라고 하니깐 대신 벌점을 강하게 주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더 우스워지더라. 그런 역할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이번 인권조례 시행을 교사와 학생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서 새롭게 만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김현석 교사(서울 당산초) 나는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금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체벌을 많이 하는 교사였다. 우리 반에 지각을 잘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엔 왜 지각하니 물어보다가 하루 늦을 때마다 한 대씩 맞자

고 했다. 연속 30일 지각해서 30일 동안 때렸다. 그렇게 때리면서도 나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고, 체벌이 벌점보다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체벌금지가 되고 주변인들과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어른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경찰이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비인간적으로 벌금 물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 대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횡단보다 앞에 엮어놓고 때린다면



정말 비인간적인 것이었겠다, 나는 그걸 여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을 때려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해지더라. 그래서 2학기 때 아이들에게 그동안 내가 때려온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다. 매 때문에 너희들에게 정말 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열더라.

사실 내가 체벌 교사였어서 체벌금지 이후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다. 교사한테 연수도 좀 시키고 교사 동기도 좀 얻고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건 정말 야만이 인간다움으로 가는 거라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나의 경우 체벌 금지가 아이들을 다른 눈으로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결국 학교를 바꾸는 것은 학생들의 힘”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학교들의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다양한 학교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열패감을 갖고 입학한 아이들에게 신뢰와 미래에 대한 꿈을 실어주려 노력하는 홍덕고, 학생인권조례를 이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조례를 강독했고 올해는 학교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원종고, 학교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직접 행동이 있었던 소사고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만주 교사(경기 홍덕고) 입학식 할 때 아이들을 만났는데 눈에 불신과 분노가 가득하더라.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의심을 가진 거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학생들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던 생활규정을, 용의복장규정을 빼고 학생들의 인권, 권리를 보장 쪽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이다 보니 진학의 문제나 학력의 문제가 역시 주요 관심사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택한 건 ‘진학문제가 진로문제’라는 거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자기 비전을 갖고 또 자존감을 지키게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진로교육이나 성취를 높이는 역동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입하려고 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선생님과 학교가 진짜 우리를 생각해준다는

믿음 갖고 아이들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자존감도 회복된다.

이용석 교사(경기 원종고) 우리 학교가 작년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 초점을 둔 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조례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였다.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현관에 조례 내용을 크게 뽑아서 전시회도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는 인권주간을 뒤서 일주일 동안 인권조례를 활용한 가위바위보,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부모총회에서 조례 내용을 강독하기도 하고 교사들도 매주 수요일마다 인문학강좌 연수를 60시간 진행했다. 올해 화두는 학교문화의 변화다. 학생, 교사, 학교 구성원이 같은 인간으로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머리는 자율화해놓고 교실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해서는 인권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주안점 두는 게 학생자치 활성화다.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 갖고 인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와 동아리활동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교실 내에서 작동하는 미세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은 교육제도,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면 대학입시 문제들도 다 손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육제도, 교육정책에 전면으로 맞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성애 교사(경기 소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더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로 많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해야 한다는 두 입장이 4대 7로 매번 부딪혔다. 학생 대표도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리한 싸움이 계속됐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몇몇 위원들이 학생공청회를 제안했는데 이 공청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다. 교사들이 소사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멋진 말들을 많이 했다. 공청회 뒤에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학생들이 회의 참관도 요구했고, 참관을 거부당하자 다음날 바로 아침 교문 앞에서 행동에 돌입했다. 아침 8시 20분 종이 치니까 아이들이 다 같이 운동장에 뛰어나가서 줄 맞춰 서더니 ‘근조 인권 정의’라고 쓰인 피켓 앞에서 묵념을 했다. 그걸 마치고 들어가는 학생들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정말 ‘해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 이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11년 학교 다니는 동안 이렇게 학교가 오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더라. 그게 터닝포인트가 됐다. 학생들은 개학 이후 회의에 참관했고, 위원들 간에 이견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지만 비밀투표에서 6대 5로 이겼다. 학부모들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학생 대표들이 대표성의 문제를 많이 고민한 것 같더라.

결국 생활인권규정을 만든 주인공들은 위원들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해낸 학생들의 힘이었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인권을 스스로 얻어나가는 과정이 소중한 것이다. 이 힘이 올해 어떻게 발현될지 궁금하다.

손준현 선임기자, 이유진 기자 「인권위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우려」」, 한겨레, 2011. 03. 03.

인권위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우려”

“직접체벌과 경계모호” 개정안 수정의견 전달 / 교과부, 수정불가 입장 분명히 해..논란 일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내놓은 ‘간접체벌’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교과부는 간접체벌 규정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간접체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 담은 간접체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직접체벌과의 경계도 모호하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권리제한 조처가)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체벌을 할 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체벌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문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한번에 10일,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심 청구권 보장 등 보완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교과부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은 허용하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간접체벌을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이라고 규정한 뒤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인권위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다면서도 기존 개정안을 수정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적 벌은 인권침해와 무관하며, 출석정지 제도 역시 교육 지도의 연장으로 학생을 퇴출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것 역시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사 개인에게 훈계·훈육의 방식을 맡겨 놓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교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것은 체벌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겼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위가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적 가치만을 가지고 의견을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上) 변하지 않는 학교

정유진·박준철·박효재 기자

·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일상'... 벌점 쌓이면 퇴학

공부, 공부, 그리고 또 공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건 공부뿐이다. 어른들은 말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나도 겪어봤다”고 과연 그런가. 행복은 성적 순일까. 머리가 길면 공부를 못할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차별을 받아도 되는 걸까. 대한민국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고민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학생은 1분, 1초도 방심할 수 없다. 학교 측의 배려는 인색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등굣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드러내야 한다. 교복 상의 가슴 부분에 박음질한 이름표 때문이다. 서울 口중학교 김모군(14)은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에게나 내 이름을 알도록 하는 게 조금 무섭다”고 했다. 명찰 박음질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의 자유 제한과 범죄 노출 우려’를 이유로 시정을 권고한 사항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가 “탈·부착식 명찰은 쉽게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학칙으로 박음질을 규정하고 있다.

교문 앞에 도착하면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해야 한다. 교문 양옆으로 늘어선 선도부는 머리 길이, 치마 길이를 cm, mm 단위까지 잰다. 경기 안양 교고 김모양(17)은 자로 잰 결과 치마가 규정보다 1cm 짧아 교사에게 적발됐다. 규정에 맞추려 밑단을 수선해 늘려놓기까지 했는데, 또 벌점이다. 교사는 “걸리기 싫으면 허리 치수 하나 더 큰 거 사든가”라고 말했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날을 잡아 검사하는 날이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인천 사고는 개학하자마자 실시한 복장검사에서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 150여명을 쫓아냈다. 쫓겨난 학생들은 4교시까지 수업을 받지 못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머리를 깎아도 ‘바리깡’을 댄 흔적이 없으면 다시 깎게 하고, 심지어 자퇴까지 권유했다”고 말했다.

선도부와 전쟁을 치르고 겨우 도착한 교실. 난방을 하지 않아 너무 춥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교복 재킷 위에 코트나 점퍼를 입을 수 없다. 학칙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무릎담요를 두른

다. 이것도 걸리면 압수다. 서울 ㄷ여고 이모양(18)은 “추워서 못살겠다고 항의했다니, 학교에서 5만원씩 건어 ‘학교 패딩’을 사자고 제안했다. 집에서 가져온 패딩 점퍼는 몽땅 압수해가면서 왜 돈 내고 새걸 사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서울 ㅎ여고 〇교사는 “수업시간에 담요나 점퍼를 뒤집어쓰고 자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뒤집어쓰고 있으면 시선이 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대학생들도 교수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벌점으로 수치화된다. 학생증을 안 가져와도 벌점, 학생용 화장실이 뽀뽀 교사용 화장실에 들어가도 벌점, 줄다가 걸려도 벌점이다. 벌점이 쌓이면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 상(賞)점도 있긴 하다. 담배 피우는 친구를 금연의 길로 이끌면 상점 1을 받아 벌점을 만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친구가 담배 피웠다는 사실을 고자질하는 셈이 된다.

수업 중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생활지도 교사와 선도부 4~5명이 들이닥치면 소지품 검사가 시작된다는 신호다. 인천 ㅈ중을 졸업한 이모양(16)은 “선도부가 책상속, 사물함, 교복 주머니까지 탈탈 뒤지는 동안 우리는 범죄 용의자들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모든 규제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 단지 이해 안되는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머리가 규정보다 1~2cm 길다고, 치마 길이가 1cm 짧다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른들은 학창시절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거면서 왜 우리에게만 똑같은 걸 강요하나요?”

자살한 학생들이 남긴 유서

어른이 아버지는 (이름 동경) 2011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이일 나는 27시간30분 공부하고 20시간30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숙제가 태산 같다. 공부를 하는데 덩달아 약 불라 고민스럽다. 그만 다니고 싶다. 비웃속의 물고기가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 2002년 자살한 초등학생 유키

좁디 좁은 교실에 텅블링 4대, 히터 2대,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오직 학 가지말 배우고 있었어. '대학 가는 법.'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선생님들의 강령할 몸종이도, 선생님들의 강령할 두발 꼭대도, 선생님들의 공부공부소리, 사회의 공부공부공부공부... 같은 머리, 같은 옷, 그리고 같은 공부. 슬퍼, 이 세상에서, 그리고 너내에서. - 2007년 대구의 중학생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멧하는 경찰, 선생님들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교복제도도 못간다. 어떻게든 잘 사행해도 그 법에 그 나물이다. 학생들을 생각해서 교복제도 잘 만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 2003년 전주 지역의 고등학교생



서울 ㄷ중학교의 학칙상 복장규정

두발

- 남학생은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는 정도(5cm) 스포츠형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 여학생은 귀밑 15cm 단발, 머리끈으로 뒷머리를 묶어서 안되며, 머리끈은 부착물이 없는 검정색 머리끈만 가능
- 염색·발색 금지, 무스·젤 사용 금지

신발

- 관색, 검정, 갈색 계통의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
- 발보다 3cm 이상 크거나 발꿈 1.5cm 이상, 힐높 3cm 이상 금지

기타

- 실내에서 외투를 입지 않는다
- 원색 또는 사각형 기원은 메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학교만 그대로예요” 인천 1중을 졸업한 김모군(17)이 고등학교 입학에 포기한 이유다. 중학교 3년도 겨우 버텼는데, 고교 예비소집일날 학교에 가니 신입생 모두에게 “학칙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했다. 그 길로 미련없이 학교를 떠났다. “용기가 없어서 문제 제기는 못하겠고, 그냥… 도망친 거죠”

그러나 김군 같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든 말든 오늘도 학교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굴러간다. 장기하의 노래처럼 학교 측이나 교사들은 “별일 없이 산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上) ‘차별’을 배우는 아이들

정유진·이서화 기자

· 선생님·기숙사·냉난방까지 성적순인 ‘계급교실’

학교는 철저한 ‘계급사회’다. 성적에 따라 접근이 허락되는 학교 시설이 다르고, 성적에 따라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달라진다. 학생들 사이에서 “전교 몇 등까지는 ‘귀족’, 나머지는 ‘평민’이거나 ‘들러리’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의 비평준화 지역에서 명문고로 꼽히는 ○고교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을 철저히 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비평준화 지역 학교인 만큼 다른 시·군에서 통학하는 학생



▲고단한 하루는 이제 끝난 것일까. 지난 3일 인천 사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들도 있지만, 집이 먼 학생들을 배려하는 부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 모의고사 언어·수학·외국어 성적 60%와 기말고사 국·영·수 성적 40%를 반영해 기숙사생을 선발하는데 원거리 가산점은 2%에 불과하다. 이 학교 김모군(17)은 “집이 멀어 기숙사에 꼭 들어가야 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점수가 모자라 기숙사 입실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부천의 7여고 기숙사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일반실과 전교 1~40등만 들어갈 수 있는 ‘○○관’으로 나뉘는데, ○관 학생에게는 온갖 특혜가 주어진다. 임모양(16)은 “잘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선생님은 방과후학교 때 늘 ○관 학생들만 모아놓은 수업에 들어간다. 가끔 ○○

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특강도 개설되는데 일반 학생들이 듣는 강의보다 수업료도 훨씬 싸다”고 말했다.

‘수준별 수업’은 정규수업에서도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천 7여고는 컴퓨터와 연동돼 학습에 필요한 자료나 동영상은 곧바로 칠판에 띄울 수 있는 전자칠판을 들여왔는데, 이 최신식 학습도구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모아놓은 A반에서만 사용된다. 원어민 영어강사도 공부를 잘하는 A반 위주로 배치된다. 역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서울 8여고의 김모양(17)은 “난 다행히 A반이라서 영어시간에 원어민 수업을 받는데, 다른 반 아이들은 그것도 못 듣는다”고 했다.

성적 분반에 따라 수업 환경도 달라진다. 서울 2여고 이모양(18)은 “A반은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고 밀착지도를 하지만, C반이나 D반은 선생님이 ‘잠만 자지 말라’며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판짓을 해도 제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각자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도입한 ‘수준별 수업’이 공부 잘하는 반에만 학교 역량을 집중시켜 수준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 따라 무리지어 이동해야 한다. 인천 0여고에는 ‘빨간 독서실’로 불리는 방이 있다. 전교 1~10등만 출입이 허락되는 자습실이다. 전교 11~60등은 일반 독서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실에서 공부한다. 교실은 중앙난방 시스템이라 쓸쓸한 경우가 많지만 ‘빨간 독서실’은 다르다. 여기에는 에어컨·온풍기 겸용 기기가 있어 학생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방 안에 정수기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설치돼 있다. 안모양(18)은 “원래 등수 안되는 아이들은 드나들면 안되는데, 가끔 친구 만나러 그 방에 다녀온 아이들이 ‘거긴 완전 별세계’라고 하더라. 다 같은 친구들인데 너무 위화감이 든다”고 했다. 인천 2고는 전교 1~50등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자습실을 만들어 점심을 먼저 먹게 한 뒤 점심시간을 통째로 공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이 말하는 [학교는 ~이다]

학교는 차별 공화국이다. 똑같이 복장이

불량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선생님도 좋게 타이르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한심하다는 듯한 선생님의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만날 말로만 차별 안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뻔한 거지랄. 공부를 못하고 싶은 학생은 없다. 어른들도 (힘들게) 공부해왔으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되잖아주고 싶어? (우리에게) 똑같이 치사하게 공부로 차별하지만, 우리들이랑 역할 바꿔볼래?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 학교는 우리에게 등급을 매긴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고기가 아니다.

/ 학교는 학생을 피곤하게 한다. 등교 시간은 이르고, 학교 시간은 늦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화시간부터 책상에 엎드려 잔다. / 학교는 앉아 있는 시간 밖에 없다. 체육은 일주일에 두번뿐이다. / 학교는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내가 안했는데도...

/ 학교는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

/ 학교는 추울 땐 에어컨 틀어주고, 더울 땐 히터를 틀어준다. / 학교는 추운 방을 뺏겨서 통제하기 때문이다. / 학교는 교복을 너무 규정에만 맞추려고 한다. 학교 규칙은 모두가 지킬 수도 없고

남들도 안가는 것들이다. / 학교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 학교는 집이 먼 학생이나 가까운 학생이나 똑같이 밤 11시까지 야자를 시킨다. 집에 가면 피곤해서 바로 뺏어버린다. 집에 있을 시간이 없다. 학교에 규칙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끔 '이런 규칙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다.

겨울에 교실과 복도는 추워서 입김이 난다. 하지만 교무실에 가보면 선생님들은 얇은 옷을 입고 따뜻하게 지낸다.

/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식으로 건의한 건데도, 어린이들이라고



무시하고 귀를 막을 때 정말 학교가 답답하다.

/(초등학생) 여러다는 이유로 장애희망이나 직업을 부모님이 정해주듯이 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꿈을 바라고 있다.

/(초등학생) 학원 반대! 학원을 다녀도 성적은 그대로. 인간적으로 수요일은 4교시, 토요일은 쉬자.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특별대우도 문제다.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각종 경시대회나 외부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알려진다. 지난해 서울 비고에는 전주의 유명한 자립형 사립고에서 한 학생이 전학을 왔다. 담임교사의 편애는 반 1등에서 전학생으로 옮겨갔다. 황모양(17)은 “워낙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라 학교의 기대가 큰 것 같다”면서 “그동안은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1등에게만 고급 정보를 몰아줬는데, 전학생이 오자 우리 반 1등이 ‘이제 나한테는 국물도 없더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 ‘차별’ 왜 심해지나

· 학교별 성적 공개로 가속… 우열반 편성 장려도 문제

학교나 교사의 학생 차별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늘 고달팠다. 하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로 학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우열반 편성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차별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학교정보 공시제도로 지난해부터 전국의 학교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성적과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을 공개하게 됐다. 전국 학교가 성적을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서게 된 것이다. 교육 수요자들은 ‘공부 잘하는 학교’와 ‘못하는 학교’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도 야간 자율학습과 정규수업 전 0교시 수업, 문제풀이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당국이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를 강조하며 우열반 편성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동훈찬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현 정부는 비교육적 줄 세우기와 차별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누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간사는 “반드시 우열반을 만들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적성과 학습성향을 고려한 효과적 교육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적에 따른 차별이 고교에만 퍼져 있는 것도 아니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증가로 고입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학교·초등학교 단계로도 차별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둘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한 학부모는 “외국어고나 과학고 합격생을 많이 배출해야 명문으로 소문나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만 감싸고 도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오로지 명문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되면서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구분하게 되고 차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년 간 차별이 존재하기도 한다.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서울 0고의 3학년 민모양(18)은 “선생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자율고로 바뀐 뒤 들어온 1학년과 이전 일반고일 때 들어온 2·3학년을 차별한다”고 말했다. 민양은 “1학년에는 명문대를 나오거나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선생님을 배치하고, 급식도 1학년을 먼저 먹게 한다. 2·3학년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심혜리·이서화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 “우리는 공부기계… 아플 수도 없어요”」, 경향신문, 2011. 03. 06.

[아직도 먼 학생인권]“우리는 공부기계… 아플 수도 없어요”

심혜리·이서화 기자

· 요통·소화불량·두통 시달려… “분위기 깬다” 보건실도 막아

올해 인천 ㄷ고교에 진학한 이모양(16)은 지난해 중학교에 다닐 때 소화불량이 생겨 계속 고생하고 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을 앞두고 점심시간에도 자율학습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양은 식사를 대충 하고 교실로 돌아와 문제집을 풀어야 했다. 이양은 “점심시간만이라도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산책을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선 허락하지 않았다”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해서 그런지,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되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ㄷ고 2학년 유모균(17)은 지난해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학교에 나가야 했다. 방학에는 오전 6시까지 나와 교과 진도를 나가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자율학습을 했다. 몸이 약한 유균은 주말에는 집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학교 측은 “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학교에 나와야 한다”며 막무가내였다. 수업에 빠질 경우 벌금까지 내야 했다.

학생들에게 예외 없이 강요되는 입시몰입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허리통증이나 소화불량, 만성피로나 두통 등을 호소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파도 아픈 티를 낼 수 없다. 서울 ㄷ고 김모양(17)은 “보건실에 가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며 허락을 안 해준다. 아파도 참으면서 교실 책상에 앉아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ㄷ고 1학년 박모양(16)은 “지난해 스트레스 때문인지 생리통이 너무 심해져 엄마와 한의원에 가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조퇴를 시켜주지 않았다”며 “심지어 선생님은 ‘다른 여학생들도 생리를 하지만 (너처럼) 유난 떨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해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서울 ㄷ고 2학년 김모양(17)은 “머리가 너무 아파 조퇴하거나 보건실에 가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피병 아니냐’고 말해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늘 잠이 부족하다. 서울 ㅎ여고 2학년 서모양(17)은 지난해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놓은 ‘특별반’에 들어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했다. 서양은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자, 선생님은 ‘2시가

지 자율학습한 뒤 집에 가서 과외받는 친구도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중·일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 잔다'는 한국 고교생은 16.1%에 그쳤다. 반면 미국 학생들은 46.7%, 중국은 32.8%였다.

방승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생활지도장학관은 "청소년기에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은 만성적 질병으로 굳어지기 쉽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심혜리·박효재·이서화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 ‘바리깡’은 살아있다」, 경향신문, 2011. 03. 07.

[아직도 먼 학생인권] ‘바리깡’은 살아있다

정유진·심혜리·박효재·이서화 기자

- 두발 규제·강제 ‘야자’... 수십년 변한 게 없어
- 성적주의에 면죄부 “기성세대 인식 바꿔야”

25년 전,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소녀는 유서에 “난 내 동생들을 방황에서 꺼내줘야 해. 나의 죽음이 남에게 슬픔만 주는 헛된 것이라면, 난 가지 않을 거야”라고 적었다. 자신의 죽음이 사회에 경종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대한민국 학교는 변한 게 없다. 경향신문이 서울지역 초·중·고교 4개 학급에 ‘학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돌린 설문지에는 25년 전 아이들의 고민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학교는 우리에게 등급을 매긴다. 그렇지만 우리는 쇠고기가 아니다.”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딴? 우리랑 역할 바꿔볼래?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만날 말로만 성적으로 차별 안 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뻔한 거짓말.” “학원 반대! 학원을 다녀도 성적은 그대로 토요일은 쉬자!” “약간의 개성을 살려 웃을 입고 싶은 학생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할까.” “잠을 자고 싶다...”

학생인권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모두가 “개선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수십년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성적이 한 등급이라도 오를 수 있다면 아이가 잠을 좀 덜 지는 것은 상관없는 부모들, 명문대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 학교 이름을 빛낼 수 있다면 학생들을 억눌러도 된다는 학교와 교사들은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앞에서 면죄부를 받는다.

인천 사고교는 지난 3일 두발검사에서 적발된 학생들을 모두 학교 밖으로 내쫓았다.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올 때까지 교문 안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했다. 포항 C고교 학생들은 방학 때도 매일 오전 9시까지 학교에 나와야 했다. 인천 J중학교는 보충수업 신청서의 부모님 동의란에 학교 측에서 마음대로 ‘동의’한 것으로 표시했다. 학생들이 “나는 보충수업을 듣지 않을 건데 왜 강제로 체크하느냐”고 항의하자, 학교 측은

“계속 문제 제기할 경우 징계하겠다”고 했다. 이번 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 경기지역에서도 “여전히 강제 ‘야자’를 시킨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는 웬만한 기업보다 더 철저한 성과제로 운영된다. 우등생은 온풍기가 설치된 특별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열등생은 김이 나오는 추운 교실에서 공부한다. 이 같은 부조리를 학생들은 견뎌야 한다. 가장 교육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가 가장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공간이 됐지만 저항은 꿈도 꾸기 어렵다. 학생들의 인권은 대학에 입학하는 그날까지 유예돼 있기 때문이다.

한승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옛날에는 한 교실에서 70~80명이 수업을 받았으니 획일적 통제방식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성세대가 가진 학교와 교실에 대한 개념을 해체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의 저자 김민아씨는 “인권은 유예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청소년은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下)인권 없는 아이들의 미래

정유진·박효재·이서화 기자



· 학부모·학교·사회 '침묵의 카르텔' 反인권적 사회 낳아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조례제정본부)에 폭력적 체벌 사건이 접수됐다.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3명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 빗자루 3개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체벌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폭력'으로 학생을 통제하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체벌을 비롯한 학교의 비인권적 문제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뒤편에는 학부모·학교·사회의 암묵적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은 대학 가서 배우라고요?>의 저자 김민아씨는 “‘학교는 원래 그래드 되는 공간’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런 생각은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아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랑의 딱메’ 체벌로 물의를 빚은 경기 수원 사고가 단적인 예다. 이 학교는 수십년간 경악할 만한 ‘전통’을 자랑해왔다.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일부 학부모들이 길이 1m, 넓이 10cm, 두께 1cm가량의 딱메에 리본을 달아 “아이를 잘 가르쳐 달라”며 교사에게 전달해온 것이다.

이른바 ‘사랑의 딱메’는 이 학교의 자랑거리였다. 아이를 두들겨 패서라도 성적만은 확실히 올려준다는 ‘전문성’을 상징했다. 교사들은 제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딱메 폭력’을 합리화했다. 여기에 “그 학교가 무섭긴 하지만, 공부 하나는 확실히 가르친다더라”는 학부모들의 동조가 있었기에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학창시절의 안 좋은 추억’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인권의식 없는 어른이 되고, 인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간다.

사대학 사회체육학과 최모씨는 “체육대학에서는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선배가 호출한 집합에 지각하면 ‘얼차려’를 주거나 원산폭격을 시킨다. 처음에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학창시절 체벌의 피해자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벌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전·의경들 사이의 폭력도 ‘체벌의 추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학창시절 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성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 7대 법학과 3학년 이모씨(21)는 선거권을 행사할 첫 기회였던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에 참여했는데, 무슨 활동 하나 하려면 선생님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선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학생 자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다. 작은 의사결정이라도 스스로 해보는 경험, 공동체 안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보는 경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인격이나 사회성을 완성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며 “학창시절 성장기 동안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성장한 학생들은 사회인이 된 이후 자신의 인권은 물론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뚜렷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학생들이 명령과 복종, 체벌을 통한 위협과 순종에 길들여지면 자신도 그 위치에 놓이게 될 때 타인에게 똑같은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는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훈육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호하라고 명문화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학생인권 보호 장치가 없는 현 상황은 학생들에게는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下) 자율 억압하는 학칙

정유진·박효재 기자

· ‘자치는 없고 ‘금지’만 수두룩... 외부활동 꿈도 못꿔



학교의 규칙은 ‘금지’투성이다. 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외부활동도 할 수 없고, 학생회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복장 규정은 세밀화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만, 선도 규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모호하기 그지없다. 서울 ㄷ중학교 학칙을 중심으로 중·고교의 학칙을 분석해봤다.

◇ 학생회 규정 = 이 학교 학칙에 포함된 학생회 규정 1장 5조에는 ‘금지활동’ 항목이 명문화돼 있다.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학교장의 행정사항’이라는 것은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교의 운영·교육방침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막아버린 셈이다.

학교가 학생회에 바라는 기능은 ‘심부름꾼’ 수준이다. 7조 학생회의 기능 규정에 따르면, 학생회의 역할은 각종 봉사활동,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등으로 국한돼 있다. 학생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교장, 교감, 부장교사 및 학생회 지도교사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가 모두 쥐고 있다. 학칙 4장 21조에 따르면 학생지도위원회는 회칙 재·개정, 예·결산, 학생회 임원 임면,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학생회가 대의원회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미리 안건을 작성해 회의 3일 전까지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회 예·결산안도 모두 지도위원회 ‘승인’ 사항이다.

ㄷ중에서 학생회 임원 후보로 등록하려면 교사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다른 상당수 학교도

학급 임원 자격에 자의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 B고 ㅎ양(17)은 “반장은 전교 석차 30% 이내만 할 수 있다. 선생님께 반장 선거 나가고 싶다고 하면 ‘잠깐만, 네 성적 좀 먼저 보고’라고 말한다”고 했다. 인천 D고 ㅇ양(16)은 “중학교 때 우리반 반장이 별점을 많이 받아 임원직을 박탈당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선거운동도 교사의 감시 아래 이뤄진다. C중의 학생회운영세칙 10조 4항에 따르면 합동연설회 연설문 내용은 2일 전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설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했다가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 학교생활규범 = 학칙에 들어 있는 학교생활규범은 금지규정이 가장 구체적이다. C중 학교생활규범 3장 1조는 ‘교실에서는 외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추위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패딩점퍼나 코트를 입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또 여학생의 두발에 대해서도 묶는 것은 허용하지만 ‘말아 올려서’ 묶으면 안된다.

특히 5장 19조 ‘집회’ 부분은 학교장 허가 없이 각종 조직·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허가 없이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단체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내 문제를 외부에 공론화하는 길도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과거 서울 대광고의 강 의석군 사례처럼 학교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며 1인 시위라도 했다가는 학칙에 의거해 징계 대상이 된다.

◇ 학생선도규정 = 각 학교의 학생선도규정에서 징계 단계는 대체로 학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전학권고로 이뤄진다. 그러나 징계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또 다른 서울 C중의 선도규정에 따르면, 경찰에 연행돼 훈방되거나 타인을 구타한 학생, 도박을 한 학생은 학내봉사 대상자이다. 그러나 학교장 허락 없이 외부행사에 참가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학내봉사보다 높은 징계인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보편적인 사회규범을 어긴 학생보다 학교장 ‘허락 없이’ 외부행사에 참가한 것이 더 나쁜 일이 되는 셈이다.

서울C중 학칙(예시)

I. 학생회 규정

(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학생회 기능)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가.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나. 정서함양,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

2.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뤄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지도위원회 기능)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가.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 다. 학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II. 학생생활규범

제3장 용의복장

제1조 복장

3. 겨울철 등·학교시 교복 위에 짙은색 짐바(코트) 착용은 가능하나, 교실에서는 입을 수 없다.

제9조 두발

4. 여학생은 귀밑 15cm 이내로 하며 단순한 끈으로 귀선보다 높지 않도록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 (단, 말아올려서 묶지 않는다)
5. 여학생의 경우 머리핀과 머리띠를 할 수 있으며, 부착물이 없는 단순한 검정색 종류만 사용 가능하다.

제11조 교표·명찰

3. 명찰은 교복 상의 주머니 상단에 박음질하여 단다.

제12조 기타 규정

5. 원색 또는 사각형 가방은 매지 않는다.

제19조 집회

1. 학교장의 허가 없이 각종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2.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허가 없이는 집회를 하지 않는다. 단, 학교생활에 필요한 집회를 할 경우에는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상당수 학교에서 교권을 모독한 사람은 흉기를 사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과 같은 전학권고 대상자가 된다. 인터넷에 학교 불만사항을 올리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 부천 7여고의 ○양(17)은 “학교 선배가 ‘화장실이 더럽다’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학생주임 선생님이 그 선배가 글을 쓴 것을 알아내고는 지우라고 종용했다”면서 “선배가 글을 지우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교감 선생님까지 나서 ‘지우지 않으면 벌점을 주겠다’고 협박해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문제의 글을 지운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심혜리·이서화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 ‘이름뿐인 학생회’ … 학교 사사건건 개입해 무력화」, 경향신문, 2011. 03. 07.

[아직도 먼 학생인권] ‘이름뿐인 학생회’… 학교 사사건건 개입해 무력화

심혜리·이서화 기자

· 입시부담에 학생 참여도 줄어

최근 인천의 한 고교에서는 학교 내 일부 동아리가 말없이 사라졌다. 학생회장 수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지정한 ‘10대 명문고’로 선정되면서 “학업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래패나 춤 동아리를 해산하는가 하면, “축제를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학생회에 통보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회 활동 모범학교로 자주 인용됐던 서울 A여고도 지금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학교 학생회는 당시만 하더라도 매년 1800만원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스스로 축제와 체육대회, 4·19 행사 등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흘러간 옛이야기에 불과하다. 학교 측은 각종 행정적 이유로 학생회의 예산권을 거둬갔다. 지난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홍모양(19)은 “밤늦게까지 남아 축제를 준비하려 하면 부모님들의 항의전화가 학교로 걸려왔다”면서 “학생회 활동에 시간을 뺏기면 입시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심적 갈등이 컸다”고 했다.

비민주적인 학교의 의사 결정과 입시 부담으로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학생 자치활동이 실종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최근 경기 B고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린 학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부결된 일이 발생했다. 이 학교 교장은 두발·복장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복장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학운위에 학생대표의 참관을 의무화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을 교무·학사 행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학교문화에서 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학생 자치활동은 각종 학내 문제를 해결하고, 입시에 대한 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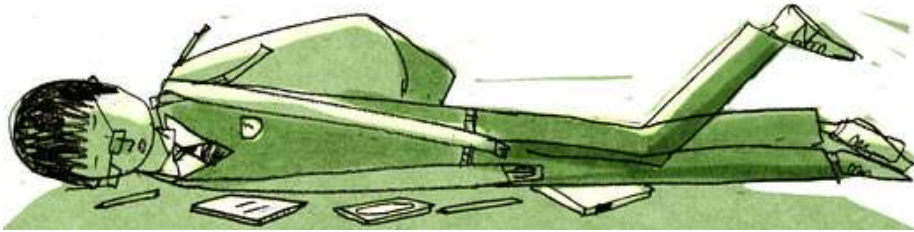
박을 학생 스스로 해소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치공간과 함께 실질적 권리와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아직도 먼 학생인권]공부 잘하던 그 아이가 왜... 목포서 고교생 분신 시도」, 경향신문, 2011. 03. 07.

[아직도 먼 학생인권]공부 잘하던 그 아이가 왜... 목포서 고교생 분신 시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 성적 하락 비판... 중태 빠져



학생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고교생이 길거리에서 분신자살을 시도, 중태에 빠졌다. 이 학생은 반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우수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10분쯤 전남 목포 용해동 골목길에서 임모군(17·고교 2년)이 갑자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길 가던 주민들이 달려가 불을 꺾으나 순식간에 임군의 옷이 모두 타는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출동한 119구조대 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뒤 대전으로 긴급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임군은 이날 외출을 나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책가방과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 라이터를 수거했다. 경찰은 임군의 몸에서 진한 시너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으나, 시너를 담은 통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이미 몸 깊숙이 시너를 뿌린 후 길을 걷다가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군은 책가방에 넣어둔 유서를 통해 “부모님 죄송합니다”라고 밝히고, 20여명의 친구 이름을 일일이 적은 후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임군은 또 학교 성적을 고민한 듯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쓴

다른 메모도 남겼다. 경찰은 임군이 학교 성적에 대해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군의 분신 소식을 전해들은 교사들은 “새학년 들어 임군이 ‘반 1등’으로 배정됐다”면서 “임군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외국 사례·대안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 선진국, 학생인권 법으로 보호 '체벌금지법' 83개 국가서 시행

주요 국가에서는 헌장 및 조례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 자치를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의 경우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을 만들었다. 뉴욕시 교육국은 "모든 학생이 의견을 표현하고 특정 주장을 지지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 집회를 열고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책임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 학생들은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징계 규정 및 학교규칙과 규정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학교 내 '이지메(집단따돌림)' 문제와 등교 거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가와사키시는 '아동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 조례는 "아동은 학대·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집단따돌림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아동은 개성 및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프랑스는 학생 인권 선진국이다. 학생들은 법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도 고교생들이 주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부모, 지역대표와 동수로 학교협의회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 제화돼 있다. 학칙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실질적 학교 운영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법령으로 학교 내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 총 83개국에 이른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선 체벌 대신 구두 경고, 수업 배제, 과제 부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 나라는 학교생활규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를 발족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학기 중 조례안을 완성, 시의회 의결을 거쳐 2학기에 각 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제

정운동 서울본부는 지난해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등 학교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내가 바라는 학교생활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내가 바라는 학생 생활규정'이란 주제로 만든 모자이크 작품. '두발은 자유다' '청소년은 꿈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선생님들은 교사가 아닌 은사가 되어야 한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권리'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사설]아직도 먼 학생인권, 학교의 발상을 바꿔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체벌을 금지한 지난해 2학기 이후에도 한 중학교에서 심한 체벌이 자주 가해졌다는 진정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교사들이 쇠막대나 망치는 물론 주먹 등으로 학생을 체벌하는가 하면, 복도에서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언급하면 “신고하려면 해라”며 더 체벌했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라고도 볼 수 없는 명백한 폭행이다. 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어디 이 학교뿐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수십년간 묵은 인권침해 행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엿그제 기획보도한 ‘아직도 먼 학생인권’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그 실태를 잘 알 수 있다. 교문에서 두발검사를 해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머리와 치마 길이를 cm, mm 단위까지 재 벌점을 매기기 일쑤다. 교실 난방을 하지 않아 아무리 추워도 교복 위에 코트나 점퍼를 입을 수도 없다. 부모나 학생의 동의 없이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는 일도 여전하다. 심지어 이번 학기부터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경기지역에서도 강제 야간자율학습 신고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학생이 학교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자율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가 학생을 명령과 복종, 획일적인 통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체벌이나 엄격한 복장 규정을 없애면 마치 학교 질서가 엉망이 될 것이란 우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학교에 비인권적인 환경이 고착화하고, 그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는 학부모의 암묵적 동의도 한몫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학생인권 신장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체벌부터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 기성세대의 시각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복장 규정도 과감하게 없애 학생의 자율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에 따른 문제점만 거론하며 학생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은 교육적인 발상일 수 없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란 의미를 진정으로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싶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중암중학교 학생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입장발표 및 사례보고 기자회견> 보도 자료, 2011. 03. 08.

<보도자료>

중암중학교 학생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입장발표 및 사례보고

- 때: 2011년 3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곳: 중암중학교 앞

중암중학교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입장문

1.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중암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작년 11월 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체벌이 계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 잔혹한 형태의 체벌이 심각하게 이루어져 왔었다는 증언,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 이후에도 체벌의 강도만 줄어들었을 뿐 계속되었다는 증언, 단체기합이나 얼차려 등 가혹행위도 계속 있어왔다는 증언,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를 회화화하며 체벌을 계속하겠다는 위협을 학생에게 가했다는 증언 등은 공교육에서의 체벌 금지 조치가 얼마나 절실하고 당연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2. 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게 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진상조사와 대응이 필요하였는데, 중앙중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긴급하게 진상조사에 돌입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학생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서둘러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중앙중학교처럼 학생에 대한 폭력이 계속되는 학교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3. 중앙중학교 역시 거짓 없이 시교육청의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은 물론 체벌금지조치 이후에도 체벌 등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학교 규정에도 명시돼 있는 학생고충처리센터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학교가 형식적으로 규정만 바꾸었을 뿐 체벌 이후의 대안적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더 이상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다시 한 번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스스로 재발방지 조치를 적극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4. 한편 서울본부는 체벌금지 조치 이후에도 이러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 보면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벌 금지 조치에 그치는 않고 학교의 제도와 문화 전반이 변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및 학교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바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인권교육 등이 학교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의 의무화 등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실천을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서울본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5. 또한 서울본부는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유엔의 기준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상기시키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중앙중학교 사례는 '직접체벌'을 가해왔던 교사가 강도만 줄이거나 방식만을 바꾸면서 계속 학생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교육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간접체벌'을 합법화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6. 마지막으로 서울본부는 중앙중의 사례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생에 대

한 폭력 혹은 학생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온라인에서 학생인권침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2011년 3월 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중암중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사례 보고

종류	내용
체벌, 언어폭력	<p>● 사회 김00 교사가 2010년 10월 말에 쪽지 시험 성적으로 틀린 갯수대로 학생들을 때린 적이 있음. 11월에 주변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주변 학생들을 3대씩 때린 일 등이 있었음. 12월에 왕따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 학생들을 체벌함.</p> <p>김00 교사는 여학생들의 종아리 등을 때려서 치마 밑에 자국이 남게 함. 엉덩이 부분을 때릴 때는 속치마, 체육복 등을 벗게 하거나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많음. 남성들은 머리카락을 때림. 다리 등을 때리기 전에는 체육복을 꺼입거나 하진 않았는지 검사해서 벗으라고 하고, 지갑이나 손수건도 모두 빼라고 함.</p> <p>김00 교사는 체벌 금지 이후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네 신고해봤자 나 찢리기 밖에 안 한다.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한 적 있다고 함.</p> <p>● 기술 안00 교사는 10월에 학생 목을 잡고 심하게 흔들다가 목에서 뚝 소리가 나고 학생이 울었지만 학생에게 오히려 울 자격이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고 청소를 시킨 적이 있음. 이후 11월에는 또한 학생들 2명이 장난을 치다가 걸리자 서로의 손바닥을 때리게 시키는 체벌을 가함. 체벌 금지 이후에는 직접 때리는 것은 줄었지만 옆드려뻥쳐 등으로 기합을 주고 서로 때리게 하거나 서로 머리를 박게 하는 등의 체벌을 한 적이 있음. 11월에 교실에 문을 안 닫고 들어왔다는 이유로도 때린 적이 있음. 2010년 2학기에도 계속 출석부로 학생들을 때렸음. 기술 안00 교사가 2학년 학생들(2010년 무렵)에 대해서는 작은 망치로 학생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들었음.</p> <p>안00 교사는 체벌 금지 된 이후, 체벌을 계속한 것 때문에 교장에게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음. 바뀌기는커녕 자기 자리에 와서 경고장 구경하고 가라고 학생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함.</p> <p>● 과학 남00 교사는 2010년 1학기 때 학생들의 뺨을 때린 적이 있음. 2010년 10월에는 수업 중 떠들었다고 해서 반 학생들 중 3명을 복도로 데려가서 빗자루를 세 개 가져가서 때리는데 세 개가 모두 망가질 때까지 때린 적 있음. 남00 교사는 2010년 2학기에는 교실 밖 복도에서 무릎 꿇고 있도록 하는 등의 벌을 세우거나, 허벅지를 꼬집음.</p> <p>● 별명이 ‘죽도’인 이00 한문 교사는 2010년 2학기에도 그 전보다 강도는 약해졌지만 계속 때림. 한자를 쓸 때 획순이 틀렸다는 이유나 한자를 하나 잘못 썼다는 이유로 “공부하세요.”라고 하며 학생들을 때림. 시험 대비 쪽지 시험을 보고 못 본 학생들</p>

	<p>을 때림. 그리고 2010년 중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학생들을 엮드려 뺨쳐 하게 하고 죽도로 체벌한 적이 있었음.</p> <p>2011년 3월 이후에는 3일에 남학생 1명이 이00 교사에게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맞고, 5일에 학급 회장 선거 때 무효표가 나왔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 전원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는 체벌을 함.</p> <p>2011년 3월에 “여러분, 앞으로 ‘체벌금지’나 ‘학생인권’ 등 운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수의 선인을 위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수의 선인이 공부하는 데 방해되는 학생들에게만 체벌을 하고, 부모님을 소환하여 전출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여러분은 꿀값 떨어지 마십시오.”라고 말함. 그리고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자신은 계속 체벌을 할 것이라고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00, 안00 등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욕이나 언어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잦음.
<p>벌점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얘기가 나온 이후에는 대신에 벌점을 많이 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벌이 사라진 것은 아님. 맞거나 기합을 받으면서 벌점까지 받거나 교내봉사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음. ● 벌점이 많이 쌓이면 강제로 전학을 보냄. ● 사회 김00 교사가 2010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반의 사회 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반 학생 전체에게 모두 벌점을 준 적 있음. 학부모 항의가 들어와도 무시함.
<p>방과후학교, 꿈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자율이긴 하지만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웬만하면 해라”, “학원 없으면 해”라고 하도록 종용하며, 학원을 안 다니면서 방과후학교 신청을 안 하는 학생은 교무실에서 상담을 하며 하도록 계속 설득함. ● 학생 ‘꿈터’라는 제도가 있어서 50여 명 학생들, 학부모들이 신청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오전에 7시 30분까지 등교하여 자습을 하고, 매일 밤 10시 시험기간에는 12시까지 자습을 함. 토요일에도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자습을 해야 함. 교관과 아버지회 분들이 배치되어서 학생들을 감독함.

* 이상의 사례들은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서 정리한 후,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서 지나다니는 중암중학교 학생 분들 약 10명 정도를 만나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서 증언을 들어서 추가·보완한 내용들임.

* 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많고 선후배 사이에 폭력도 많다는 증언도 있음. 학생들이 폭력에 무뎌져 있고 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 2학기, 체벌금지 이후에도 체벌이 강도가 약해지거나 줄어들기는 했으나 없어지지 않았고, 학생들이 서로 때리게 하거나 단체로 '기합'을 주는 등의 체벌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벌점제 등이 강화되고 남용된다는 증언도 있음.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뺨 때리고 머리채 잡고

체벌금지 후에도... 서울 中교사 '학생 구타' 의혹
"학생끼리 머리 부딪치게 하고 죽도·빗자루 등 사용" 증언도
인권조례제정운동 의혹 제기
해당 학교선 "있을 수 없는 일"

김혜영기자 shine@hk.co.kr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 일부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 이후에도 구타 수준의 체벌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벌금지 규정을 들어 반발하는 학생에게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제정운동)는 "서울 마포구 A중학교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폭력, 인권침해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2학기 체벌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죽도 등 다양한 도구로 학생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증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정운동은 이 학교 학생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A중학교 학생인권침해 상황' 자료에서 "학생들이 인권 이야기나 체벌금지 이야기를 하면 교사가 주먹을 쥔 후 그 주먹에 학생이 돌진해서 박게 하고 두 학생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는 등의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증언은 모두 지난 학기 A중학교에서 교사 2,3명에 의해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또 "수업시간에 조금이라도 떠들거나 키득거리면 이유도 묻지 않고 '일단 너 맞아리는 식으로 때렸다', '쪽지시험 틀린 개수대로 학생들을 때렸다', '출석부 빗자루 교과서 등을 학생에게 던지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동영상을 보는 수업 중 떠들었다고 복도에서 빗자루로 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들이 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 말하면 (교사가) '신고하려면 해라, '나 잘리기밖에 안 한다, '지랄하지마'라고 말했다', "학생이 맞은 후 울자 '너는 울 자격도 없다 이런 ○만도 못한 ○○들'이라며 욕을 했다"는 것이다.

제정운동은 8일 오전 A중학교 앞에서 접수된 추가 피해사례와 학생 증언 녹취록을 공개한 뒤 학교장을 향한 방화할 계획이다. 제정운동 관계자는 "가해교사 2,3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나 과장된 증언이다"라며 "일부 고령의 교사들이 지도 차원에서 지휘봉으로 손바닥을 때리는 사례는 과거에 있었지만 체벌금지 이후 그조차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바닥을 때리기만 해도 학부모 항의가 있어 해당 교사를 불러다 교장, 교감 입회 하에 경고장을 썼고, 이번에 언급된 교사 중 한 사람 역시 지난해 9월 경고장을 썼다"며 "그런(신고된) 체벌은 도저히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7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지난달 팔 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만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김도연 기자, 「빗자루 부러질 때까지 매질...학생 ‘체벌’ 의혹 - “신고해. 잘리기밖에 더 해?” ...학생인권조례본부, 서울 A 중 체벌 의혹제기」,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08.

빗자루 부러질 때까지 매질...학생 ‘체벌’ 의혹

“신고해. 잘리기밖에 더 해?”...학생인권조례본부, 서울 A 중 체벌 의혹제기

김도연 기자 2011.03.08 16:01

서울 A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을 30대 이상 때리고, 한 교사는 빗자루가 망가질 정도로 체벌을 가하는 등 일부 교사들이 심각한 정도의 체벌과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학교 교사들은 서울 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체벌금지 조치를 내린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체벌을 계속했으며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문제 들리면 30대, 빗자루 부러질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서울본부)는 8일 오전,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A 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학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 잔혹한 형태의 체벌이 이루어져 왔으며 체벌금지 조치 이후에도 체벌의 강도만 줄어들었을 뿐 계속되었다”며 해당학교 학생들로부터 증언 받은 일부 교사들의 체벌 사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서울본부는 “A 중학교 김 모 교사는 지난해 10월 70여 문항의 쪽지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학생들의 다리를 땀게는 30대까지 때렸으며, 체벌 금지 이후 체벌하는 것에 대해 ‘너네 신고해 봤자 나 잘리기밖에 안 한다. 신고하려면 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같은 학교의 안 모 교사는 지난 10월 목에서 뚝 소리가 날 정도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학생이 울자 ‘울 자격도 없는 새끼’라며 청소를 시켰으며, 체벌금지 이후에는 엎드려뺨쳐 등으로 기함을 주고 학생들에게 서로 때리게 하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고 전했다.

또 “남 모 교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수업 중 떠든 학생 세 명을 복도에서 빗자루 세 개가 망가질 때까지 때린 적이 있으며, 별명이 ‘죽도’인 이 모 교사는 학생들을 엎드려뺨쳐 하게 한 상태에서 죽도로 체벌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서울본부는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교 규정이 바뀌었지만 규정만 형식적으로 바꾸었을 뿐 체벌 이후 대안적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후 더 이상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스스로 재발방지 조치를 적극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는 이후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생에 대한 폭력 혹은 학생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온라인에서 학생인권침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A 중학교 교감 “학생들도 기분 좋게 맞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는 해당학교 학부모 20여 명이 찾아와 서울본부가 체벌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교사들에 대해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때리겠냐. 이게 말이 되느냐. 서울본부의 주장은 과장되고 왜곡돼 있다”고 이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기자회견진행 자체에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이전 김 교사와 안 교사가 학생들에게 심각한 체벌을 가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A 중학교 김 모 교감도 인정했다. 김 교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교사와 안 교사는 심각한 체벌이 문제가 돼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학교장으로 부터 ‘학생지도에 있어서 지나친 체벌은 용납할 수 없는 교육적 지도 이기에 학교장 경고로 엄정한 주의를 줌’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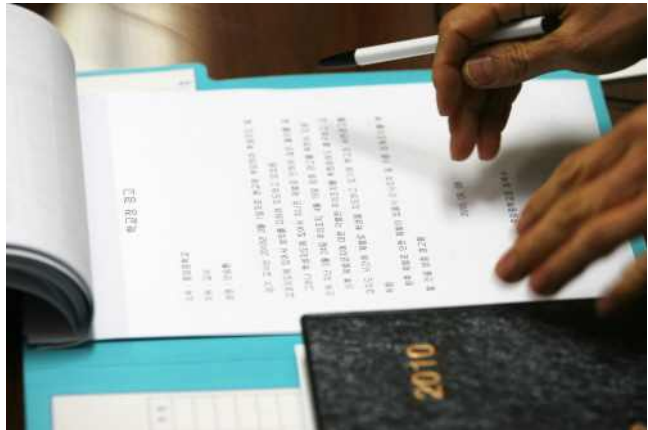
하지만 11월 이후 ‘심각한 체벌’이 가해진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김 교감은 “당시 ‘심각한 체벌’ 사실을 알았다면 주의조치를 주었을 것”이라면서도 체벌금지규정 만들어진 이후 체벌이 지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적 상황 이루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교육적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교사들이 바뀐 교육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교감은 남 모 교사가 빗자루가 세 개나 망가질 정도로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남 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남 교사는 수업시간 소란을 피운 7~8명의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나는 너희를 때릴 수 없으니 성찰교실로 보내겠다’고 했고, 여기에 학생들은 ‘절대 말 안할 테니 한 대 맞고 끝내 달라’고 간청해 한 대씩 때렸을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체벌 과정에서 빗자루가 망가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가 플라스틱 빗자루로 학생들을 한 대씩 때리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빠진 것뿐이며, 맞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맞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학생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감은 “나는 체벌금지에 100% 동의한다.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김 교감은 이날 서울본부와의 면담은 거부했다. 애초 서울본부는 교감과 면담을 약속하고 왔으나 김 교감은 언론과 한 시간여에 걸친 인터뷰만 진행한 채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학생들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람들”이라며 “이 사안을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교육청에 가감 없이 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해당 학교에 감사를 나가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 안 모 교사가 지난해 학교장으로부터 받았던 경고장 [출처: <오늘의 교육> 최승훈 기자]



▲ A 중학교는 이날 서울본부와의 면담을 거부했다. [출처: <오늘의 교육> 최승훈 기자]

이재훈 기자, 「서울 공립중서 ‘금지된 체벌’ 주장 나와」, 한겨레, 2011. 03. 08.

서울 공립중서 ‘금지된 체벌’ 주장 나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활동가들(왼쪽에 앉은 이들)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중학교 앞에서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이 체벌금지 조처 이후에도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학교 관계자(오른쪽)와 면담을 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학생들 “선생님 4명이 때려” / ‘체벌금지 끝값말라’ 폭언도 / 교육청 조사나서…감사검토

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처 이후에도 학생들을 체벌하고, 체벌금지 조처를 조롱하는 투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8일 서울 마포구 자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10명 이상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이 학교 교사 4명이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처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학기 들어서도 한 교사는 ‘체벌금지나 학생인권 운운하지 말라. 끝값 떨지 말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 쪽이 공개한 증언 녹취자료를 보면,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 11월 주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 학생들을 세 대씩 때렸으며, 맞은 학생들에게 “신고해 봤자 나 잘리기밖에 안 한다.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체벌금지 조처 이후 체벌을 하다 교장에게서 경고장을 받은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 자리에 와서 경고장을 구경하고 가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시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은 최아무개 장학관은 “학생들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한 교사가 지난해 1학기에 효자손으로 아이들을 툭툭 치는 걸 보고 경고장을 준 적은 있지만, 다른 주장들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거중학교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날 거중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당 교사들과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복수의 학생들이 교사의 이름이나 체벌 방법, 폭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감사 여부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내 손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현장을 가다 - 청소년, “인권조례 절실” ...4월26일까지 8만2천명 서명필요」,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09.

내 손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현장을 가다

청소년, “인권조례 절실” ...4월26일까지 8만2천명 서명필요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엔 동참해 주세요.”

쌀쌀한 바람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8일 오후, 신촌역 앞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서명을 받고 싶지만 3월 답지 않게 추운 날씨 때문에 지나치는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발의 기한을 49일 남겨둔 이날, 여섯 시간 동안 거리에서 받은 서명지는 100여 장 남짓. 조례 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서울시 유권자 1%, 8만 2천 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매일같이 서울 곳곳을 돌며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 모임, 노동단체 집회, 강연, 문화공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거리에서 서명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 활동가들이다. 이날도 신촌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한 일곱 명 중 다섯 명이 청소년이었다. 정작 자신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이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 시내를 누비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들에게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청소년 활동가들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에서 활동하는 디영은 거리 선전전 시작부터 대부분을 함께하고 있다. 그는 지금 이 활동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활동보다 재미있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건 우리끼리 한 활동을

언론에 알리는 정도였는데, 이번 학생인권조례 선전전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대일로 이야기하고 반응을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렇다고 결코 쉽지는 않다.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은 시민들의 무관심에 무수히 상처받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막막한 벽을 느끼기도 한다.

다영은 “수모도 많이 겪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말을 꺼냈다. “서명을 하고는 서명지를 찢어서 내 얼굴에 던지는 사



람도 있었고, 서명해 준다고는 서명지에 엑스를 찍찍 긋고 비웃으면서 가는 사람도 봤다. ‘애들은 맞아야 돼!’ 이런 분도 많이 봤고,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상처받는 건, 눈썹 완전 찡그리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속’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기피대상이 된 게 너무너무 슬프더라.”

청소년 활동가 ‘매미’도 자신의 경험을 보냈다. “대학로에서 서명을 받는데 현직 교사라는 분과 10여 분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왜 이게(학생인권조례) 중요한지, 그 사람은 왜 이게 되면 안 되는지. 토론 끝에 그 사람이 ‘아, 그럴 수도 있군요’ 하더라. 그래서 ‘그럼 서명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근데 전 동의 안 해요’ 하고 가버리더라. 허무했다.”

청소년 활동가 ‘아즈’는 교대에서의 ‘쓰디쓴’ 경험을 잊지 못하는 듯 거듭 이야기 했다. 그는 “교대 졸업식에서 서명을 받는데, 교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니들이 교생실습 한번 나가봐라, 애들은 맞으면서 키워내야지. 학생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학생은 인권 없어도 돼’ 이러더라”며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 먹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도 주민발의에 참여할 수 있고 효력이 있었으면 벌써 8만 명한테 서명 다 받고 주민발의도 통과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례 발의자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매미는 “지나가다 교복 입은 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청소년을 위한 법인데 청소년이 직접 관여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향해 “본인이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아즈는 “인권조례 제정으로 자녀나 조카, 동생 등 학교 다니는 지인이 숙제 안 해왔다고 이십 대씩 맞는 일 없이, 좀 더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영도 “우리가 선전전을 할 때, ‘교육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학교부터 인권적인 공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겠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학교 다닐 때 그

분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민발의 서명운동으로 터뜨려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작업을 펼쳐왔다. 서울시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교육청은 조례안을 정식으로 시의회에 발의해야 하며, 서명 기한은 오는 4월 26일까지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용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홈페이지(www.sturightnow.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만19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정훈 기자, 「"학생 40명 한 곳에 모아놓고...무서웠어요" - [보도 후] 서부교육청, 망치·쇠파이프 체벌 4중 감사서 인권침해 사건축소 의혹」, 오마이뉴스, 2011. 03. 11.

"학생 40명 한 곳에 모아놓고...무서웠어요"

[보도 후] 서부교육청, 망치·쇠파이프 체벌 4중 감사서 인권침해 사건축소 의혹

일부 교사들이 망치, 쇠파이프 등의 도구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욕설을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의 한 중학교에 감사를 나간 교육청이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사건 축소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체계적인 감사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첫보도 "선생님이 망치로 때리고...속 치마 벗으세요")



▲ 영화 <투사부일체>의 한 장면. © (주)시네마 제니스

체벌조사 한다면서 특정반 학생 40명만 모아놓고..

체벌 논란이 일었던 서울 4중학교에 감사를 나간 것은 서울서부교육지원청(서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해당학교에 나가 체벌 논란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 같은 반이었던 학생 40여명을 한 곳에 불러모아놓고 서부교육청에서 준비한 질문지에 예/아니오를 쓰도록 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말고 다른 학생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9일 확인해 주었다.

이 관계자는 "체벌 논란이 일었던 교사 4명이 지난해에 모두 이 학급에 수업을 들어갔고 해당 학급에서 논란이 된 체벌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은 이 학급뿐 아니라 다른 학년 다른 학급에서도 수업을 했고 그곳에서도 체벌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서부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급에서만 일어

난 일로 보고 다른 상황은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학교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로, 사실상 특정 학생들을 체벌 논란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셈이다.

과학실에 불려온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장학사가 준 에이포(A4) 용지 4장 분량(가해 교사 1인당 1매)의 질문지로 조사를 받았다. 질문지에는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규정을 어는가 ▲교사가 '꿀값떨지마'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가해 교사한테 체벌 받는 모습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가해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는가 등 인권단체가 제보한 내용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일부를 정리한 15문항 남짓이 들어있었다. 이 질문지를 회수하는 것으로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끝났다.

이와 관련, 서부교육청이 감사 시작단계부터 이미 조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고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것은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행위로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침해인 줄 몰랐다, 그렇다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는 없지 않나,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부교육청과 함께 감사를 나가겠다고 밝혔던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감사에는 나가지 않아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해 교사들 대변해주고, 학교 측 말만 믿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에만 체벌했다"는 교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2학기과 올 3월에도 일부 교사들의 체벌이 있었음을 일부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교사들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았다"면서 "작년 1학기 때 특별실에서 작업하다가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었다"고 망치와 쇠파이프로 학생들을 체벌한 것을 시인했던 교사와 관련해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그 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 분이 말한 '작년'이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일 수도 있다"면서 대신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배경내 위원장은 "여러 차례 주의·경고를 받았던 교사들을 학생부 생활지도 담당으로 계속 두었다는 건 학교가 이들의 체벌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학생고충신고센터를 만든다는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정작 설치하지 않았던 학교의 모습을 보면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특정반 학생들만 조사한 건 사건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며 "구조적 약자이고 불이익에 민감한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고 조사를 강행한 건 교육청의 인권감수성이 낮다는 증거다. 피해자인 학생들에 대한 보호 장치와 일정한 조사 매뉴얼도 없이 교육청의 편의대로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강력 항의하고 재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은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감사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해당 교육청이나 감사를 나간 장학사 등의 생각이나 능력에 따라 감사의 과정과 내용은

물론 결과까지도 좌우될 수 있다는 뜻이다. 2중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사를 나가는 장학사들이 학교 측의 주장을 먼저 듣고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 관련 관계자들의 말이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사 실시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2중, 징계 및 재발방지 뒷전 "누가 제보했어? ×발!"

한편 언론 보도와 서부교육청 감사 등이 잇달아 이루어지자 학교 내 일부 학생회 간부와 선도부원들이 언론에 제보하고 방송 인터뷰를 한 사람을 색출해 잡아내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교사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오마이뉴스>의 취재 과정에서도 0교사와 1교사 등이 기자에게 제보자가 누구냐고 따지거나 누가 제보했는지 알 것 같다며 제보자에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제보자 색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학생회가 비상 소집됐고 그 이후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 이로 인해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3학년 학생들 명의로 "저희는 OO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기사에 휩쓸리지 말고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세요...(생략)... 파이팅. 사랑해"라고 써 붙인 8절지 크기의 자보도 등장했다.

제보자 색출과 관련해 이 학교 1교감은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럴 리가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당장 중단시키겠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확인 결과 1교감은 10일 오전 아침 조회시간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해서 죄송하다, 신고자 색출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교내 방송을 했다. 가해 교사로 지목된 이들은 따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중에서는 언론 보도와 서부교육청 감사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사들이 여전히 수업 중에 "누가 그랬어?(제보했어) ×발!"이라고 하거나 "입조심해라!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말고, 나는 하던 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 교사 중 한명이 학교에서 잘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제대로 나올까...체벌감사 매뉴얼은 어디에?

서부교육청에서는 이틀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별점을 많이 받도록 돼 있는 2중 생활평점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수정·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9일 서울시교육청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재조사 여부 등 사후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그 후 제보자 색출 등의 분위기가 감지된 상황에서, 조건을 갖추어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주장도 일부에서는 나

오고 있다.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돼 말문을 닫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체계적인 감사매뉴얼이 없이 진행된 교육청의 부실한 초동조사와 대응으로 가해 교사와 학교 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 시민연속특강 학생인권으로 여는 행복교육의 오늘



박노현



이별희

3/14(화) 오후 7시 / 새대문구청 강당
박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교육의 희망을 찾다”
 혁신학교-무엇보다 학생인권문제에 담긴 교육철학, 학생의 인권을 지지 약속 강하게 교사의 학부모들에게 기대를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3/16(수) 오후 7시 / 송곡중학교 강당
이별희 공인 출판교사 “혁신학교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수업혁신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 혁신을 일구어내고 있는 공인교사의 사례를 통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정혜선

3/22(화) 오전 10시 / 성동교육청 4층 강당
정혜선 장신대 전문의 “폭력 트라우마와 체벌 없는 교육”
 학생인권 쟁점의 중심이 우리 사회 문화 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로서 체벌 없는 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박창유



이중경

3/23(수) 오후 7시 / 새대대 광개토태권 105호
이중경 한울노년문제연구소 소장 “노년의 기쁨, 학교”
 학교는 노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 사회 만(만)을 본받는 학교의 역할과 상권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녀의 성취 아닌 학교문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이유를 살펴본다.

3/31(목) 오전 10시 / 홍사단 3층 강당
백창유 시인/작가 “아이들 감성을 꽃피우는 노래 이야기”
 시의 노래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성을 꽃피게 만드는 부모의 교육의 역할을 살펴본다.

“

우리는 꿈입니다. 학생들이 모욕당하고 상처 입지 않는 교육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웃게 만드는 교육을, 제아더의 차이가 원만하고 우애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을,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을,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풍뎉 열어붙었던 틀란에서 새순이 움트듯, 이제 학생의 인권과 행복이 활짝 꽃피는 학교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 제발규지 정책으로 시작된 학생인권 정책이 시민들과 교육수혜자들의 열정과 지혜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배움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함께해주세요.

”

주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지역 교육/시민단체 공동 주최
 후원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문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02-532-8884/ 017-214-3550)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한국사회 학생인권 운운하는 것 창피하다”

심혜리·사진 김정근 기자

· ‘학생인권’ 시민특강

· ‘학업성취도 세계 1등이지만 구성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 국영수 출세우기 바뀌어야’

“인권이라는 개념은 제대로 인간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사람이라고 부르짖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 인권 운운한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학생인권 시민연속특강에서 ‘서울 교육의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체벌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법령에 따르면 교육적으로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 여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제 인권조약이 아닌 국내 법령의 이름으로 체벌금지가 획득된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학생들은 이제 체벌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체벌금지 정책으로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이 많아져 일반 학생들은 피해를 본다는 학부모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탈출구가 없다.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구조를 이기는 길은 개개인의 실천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체벌금지 정책을 시행하며 느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사람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이었다는 데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아이들은 그동안 공부기계나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돼왔다.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적지상주의 세태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세계 1등을 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허리를 졸라매고 이룩한 성과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또 “상위 20%에게는 그나마 약간의 만족을 주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겐 한없는 상처를 주는 학습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국·영·수 주지과목 암기에서 창의력과 민주시민 덕성으로의 교육 개념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렇듯 공부와 학생들에게 억압이 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모른다면 그 사회는 가장 큰 격차 사회가 된다. 그런 교육풍토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배움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두 자녀를 키운 아버지로서 학부모들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자녀가 책 읽고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하십시오”

그는 “방송대 청소년교육과가 최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상담심리학, 청소년의 이해와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 자녀를 이해할 수도 있을뿐더러 아이들도 공부하는 부모 옆에서 같이 책을 읽게 된다”고 했다.

이날 곽 교육감의 강연으로 시작된 학생인권 시민연속특강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등이 강사로 참여해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정유진 기자,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의 ‘폭력 트라우마와 체벌 없는 교육’ 강연회」, 경향신문, 2011. 03. 28.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의 ‘폭력 트라우마와 체벌 없는 교육’ 강연회

· “체벌은, 간접체벌이든 직접체벌이든 굴종 강요하는 폭력과 같은 메커니즘 평생 걸친 트라우마 남길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사진)는 지난 22일 ‘폭력 트라우마와 체벌 없는 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체벌은 ‘간접체벌’이든 ‘직접체벌’이든 굴종과 복종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폭력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간의 정신은 매우 예민해서 이는 한 청소년에게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주최한 ‘학생인권으로 여는 행복 교육의 오늘’ 연속 강연회의 세번째 행사였다. 강연회 내용과 참가 학부모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아이를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적 체벌과 폭력의 경계는?

“군사정부 시절 무고하게 받은 고문으로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다. 고문자들은 일단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며칠 동안 무자비하게 팬다. 그러면 사람은 극도의 공포에 질리게 되고, 말 그대로 ‘바닥’을 내보이게 된다. 기라면 기고, 고문자가 원하면 없는 것도 지어서 대답해준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순간 느꼈던 ‘나는 벌레 같은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란 자기 모멸감과 혐오감에 시달리

고 있었다. 맞은 흔적은 이미 수십년 전에 사라졌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빼앗긴 채 굴종해야 했던 그 기억이 그의 인생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것이다. 고문이나 체벌은 ‘굴종과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체벌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란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런 굴종과 복종은 사람에게 요구해선 안되는 것이다.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이 맞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반해 굴복한다는 느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고문 피해자 분이 끝까지 털어놓는 것을 망설였던 기억이 뭔지 아느냐. 고문자들이 그분을 실컷 때린 후에 ‘나 담배 피우면서 쉬는 동안 노래나 불러봐라’고 했단다. 그분은 그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래했는가를 털어놓으면서 괴로워했다. 그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심한 구타가 아니라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자신이었다.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 ‘간접 체벌인데’라는 식으로 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는 이유다.”



- 요새 아이들은 너무 ‘오나오나’ 식으로 키워 정신적으로 나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때론 체벌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키워야 할 것 같은데.

“체벌은 오히려 아이들을 내적으로 병들게 한다. 전공의 수련 과정 동안 학대와 폭력으로 대인관계에 장애가 생긴 여의사 분을 알고 있다. 폭력은 성인조차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는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뼈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성인의 뼈는 외부에서 일정한 압력이 들어와도 버티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허용치를 넘어서면 부러져버린다. 그래서 어른들은 부러지면 금방 아파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어린이는 다르다.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뼈를 치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충격만큼 휘기 시작한다. 서서히 계속적인 변형과 뒤틀림을 경험하다가 성장판이 닫힐 만한 나이가 되면 그 비틀어진 상태 그대로 굳어져버린다. 그렇게 전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다. 학교 선생님의 체벌과 언어폭력에 대해 집에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한다. 우리 아이는 모범생인 편이라서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적은 없는데도 집에서 심한 욕설을 섞어가며 교사를 비난한다. 엄마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걱정이다.

“어른들은 흔히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로 쉽게 나누지만 사실 아이들은 개개인이 매우 다른 심리적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타고난 감수성이 발달해 타인의 고통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똑같이 불합리한 상황과 맞닥뜨리더라도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자녀가 SOS신호를 보낼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0대 후반의 한 직장 여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다. 이 분은 남자에게 공포심을 느끼는 심리적 공황을 겪고 있었다. 알고보니 이 분은 중학교 3년 동안 운동부를 하면서 코치에게 받은 심한 체벌의 기억 때문에 성인 남성에게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보통 폭력으로 인한 내상은 1차와 2차 트라우마에 걸쳐 나타난다. 1차는 폭력을 당한 사실 그 자체, 2차는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 분은 당시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 괴로움을 호소했는데, 엄마의 반응이 문제였다. “문제만 커지니 학교에서 절대 반항하지 마라. 좀 있으면 졸업이니까 그때까지 참자”고 했다고 한다.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구원을 기대한 사람에게서 거부 당하는 경험이 바로 2차 트라우마다. 사실 개개인이 부당한 체벌과 폭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같은 사회의 제도적 틀이 중요한 것이다.”

- 우리 아이가 친구에게 자꾸 폭력을 쓴다. 적당히 혼을 내서는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아이들은 폭력이 일상화되고 욕도 굉장히 많이 한다. 아이들이 갖는 공격성이 높아졌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공격성은 개인적 욕구의 만성적 좌절로 인한 반응이다. 아이들이 공격적이 되고, 서로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현상의 근원에는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깊은 좌절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또다시 체벌로 억누르고 통제하려 하면, 공격성이 더욱 강화가 된다. 이럴 땐 한발 떨어져서, 마치 가해자인 아이가 피해자인 양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따뜻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욕구의 좌절을 치유해줄 필요가 있다.

- 아이들이 자신은 존중받기를 요구하면서 어른에게는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있다.

“먼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사춘기 때 나타나는 일시적 반항심리인지, 아니면 앞서 말한 공격성이 발현된 케이스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부터 길러야 한다. 전자라면 이는 누구나 거치는 시기적 특성으로 억박지르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생리학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인간은 잠이 많아지게 되는데,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도 안하고 게으르다”며 혼을 내선 안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 그러나 만약 만성적 욕구 불만으로 인한 공격성이라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줄 필요가 있다.”

정용주,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1)」,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21.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1)

정용주(서울 백석초)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돼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체벌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업, 소위 ‘체벌 대체 규정’ 마련 문제로 한동안 학교가 떠들썩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곳에서 인권의 보루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정책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적어도 체벌 자체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업은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을 주었다.

“저기, 정 선생, 이제 학교가 염색하고 머리 기른 아이들로 넘쳐나도 아무말 못하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지. 문 닫아야지 뭐. 교육감이 학교에 대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냐? 학교를 몰라도 한참 몰라. 어떻게 머리 기르도록 가만 놔두고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둘 수 있어. 그게 학교야? 그게 선생이 할 것이야? 학교가 뭐야. 싫어도 하게 하고,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은 참고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거 아냐? 미국을 봐. 개네들 얼마나 규정이 많아. (...) 았튼 맘에 안 들어.”

이러한 혼란은 교사뿐 아니라 체벌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에게서도 감지된다. 체벌대체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나에게 자주했다.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못 때린대요. 그게 가능해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선생님 인권조례 생기면 중학교 가서 머리 길러도 되나요?”

“선생님 인권조례 생기면 중학교 가서 치마 짧게 입어도 되나요?”



교육적 체벌, 우리 안의 관습 헌법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이 각 학교에서 발표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체벌은 사라졌다. 아니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체벌을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실제로 큰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진다는 것,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거의 사라진 체벌에 대해 ‘사망선고’를 선언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왔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사회 각계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 대신에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활규정에서 체벌규정을 삭제하고, 체벌 대체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체벌 대체 규정〉

1단계/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단계/ 교실 안 지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 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을 격리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교실 뒤에 서서 공부하기, 생각하는 의자 활용 등).

3단계/ 노란색 생활카드

교실 내에서 교사의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상담실로 이동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고, 상담 교사는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노란색 카드를 이용하여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지도한 사항을 알리고, 가정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4단계/ 학부모 상담

‘교실 밖 격리Time-Out’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토의한다.

5단계/ 빨간색 생활카드

‘학부모 상담’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학생은 봉사 및 노작 활동을 하거나 ○○경찰서, 청예단 등의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별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다.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빨간색 카드를 이용하여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지도한 사항을 알리고, 가정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몇몇 선생님들과 체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신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토해 냈다.

나 선생님, 한 달 동안 체벌 대체 규정 만드느라 고생했겠네요

생활부장 예. 지금은 마지막 가정통신문 발송하고 학생고충처리센터 신고함 만들고 있어요 학교에 두 개를 설치하려고요

라. 체벌 발생 시 조치

1. 학생고충처리센터

- 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도록 교내에 학생고충처리센터 신고함을 운영한다.
- 학생고충처리센터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2. 체벌 발생 시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고 : 체벌 발생 시 학생은 학생고충처리센터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신고한다.
- 조사 :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 중재 : 교감은 교사 학생 간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한다.
- 조치 :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하고, 방학을 이용해 자비연수를 이수하도록 명령하며,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평화 교육 등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체벌 행위가 반복될 때에는 해당 교사에 대해 법령과 규칙에 따라 상급 기관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교사 1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활부장 어디까지나 학교 자체적으로 체벌 금지 규정과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 중인 겁니다.

교사 2 솔직히 원칙적으로 체벌 금지에 찬성하지만 체벌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교육감도 교실 속의 권위를 이야기했는데 체벌이 교사들의 권위적인 문화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 체벌을 교사와 학생의 문제로 개인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완전히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부대장 직속으로 구타 신고함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교사 1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 체벌이 교사 한 사람이 ‘사이코’라서 생기는 거냐고. 정 선생도 알 거 아냐. 출근해 봐. 애들 서른 명이 와글와글대지. 나가야 할 진도는 좀 많아. 이것저것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많지. 성적 올리라고 쪼이지. 아이스크림 같은 인터넷 사용하지 말고 교사들이 교재 개발해서 ‘창의적’으로 수업하라고 하는데 가르쳐야 할 교과는 좀 많냐고. 애들은 학원 다니면서 선행 학습 해서 이미 배울 내용 다 배워 가지고 오니까 반의 삼분의 일 정도는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보란 듯이 학원 문제집 꺼내 놓고 학교 수업은 다 아는 거라고 비웃지. 그런데 학교장은 교육청 지시라며 한다는 소리가 “수행평가 적기 실시, 체육 수업 철저, 생활지도 철저,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 준비 철저, 아이들 사랑으로 대하기, 체벌하지 않기……” 순 이런 무슨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만 하잖아. 내가 공정택 교육감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꺾노현 찍었는데, 이건 뭐, 교사를 체벌하는 사람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 아냐? 왜 애들을 때리게 되나, 이런 문제를 성숙하게 짚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리 급하다고 일선 교사들을 다 ‘오장풍 교사’로 만들어…….

생활부장 선생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체벌 금지는 대세이니까 따라야 하고, 또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어린 학생이 직접 교감 선생님께 신고할 수 없으니까요. 그건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고충처리센터 신고함을 만들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거죠. 비밀이 보장되는 창구죠.

나 그런데 학생이 신고하면 교감이 학생과 교사 사이를 중재한다는 이런 식의 접근이 좀 문제 아닌가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교감, 교장이 바로 체벌 유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군대에서 구타를 사

병들 사이의 비합리적 행위로 개인화시키고 언제든 구타를 고발하라고 하면서 군대 자체가 폭력을 생산하는 기제임을 은폐하는 것처럼, 지금 체벌 금지 문제는 마치 체벌 문제는 정신 이상 교사들의 문제로 개인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사 2 아니,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자면 공정택 교육감 때 학력 신장 강조하면서 학교별로 창의적인 통지 방법 전시회 했는데 꼭 그때 같아. 그때 지역교육청별로 학력 신장 전시회 하면서 학교마다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통지 방법을 개선하고 통지표도 칼라에, 그래프에 별 게 다 나왔잖아. 지금 체벌 대체 규정도 그래. 학교마다 경쟁하는 거 같아. 누가 더 창의적인 안을 내나 하고 이게 무슨 인권이야. 안 때리면 인권인가?

생활부장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학운위에 안건 상정해야지, 가정통신문 몇 번 내야죠. 또 의견서 가져오면 모아서 내용 취합해야죠. 다른 학교 상황 비교하면서 빼겠다는 이야기 안 들어야 하지만 또 큰 원칙은 같이 가야 하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좀 더 강력하게 교사의 교육권을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시고, 또 학부모들 중에서는 안 때리면 모범적인 우리 아이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세요.

나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라는 게 말이 쉽지 여기저기서 의견이 막 터져 나오는 거 같아요. 또 체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려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학교에서 교사 체벌을 정당화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체벌 금지 이후 교실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나요? 교과실에서 이야기해 보면 학생들 중에서 대놓고 ‘선생님, 이제 못 때리잖아요’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던데…….

교사 1 어떤 새끼야. 그걸 가만둬? 그러니까 내 말은 초등은 체벌 금지해도 별 영향 없다는 거야. 특별히 규제할 것이 없잖아. 체벌 거의 안 해 왔고 그런데 분위기가 이진 아니라는 거지.

나 어떤 분위기요?

교사 1 글썽, 뭔가 관계가 깨진 느낌? 방어자와 감시자의 관계가 된 느낌……, 대다수의 교사들이 이제까지 폭력 교사였나 하는 느낌. 어쨌든 때리는 거 금지하는 거 좋다 이거야. 원래 안 때렸으니까 규정을 바로 잡는다고 생각하자고. 그럼 교사의 권리도 좀 분명히 해야지. 진짜 개판인 애들에게 좀 더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나 그게 뭘까요? 문제 학생들을 위한 보다 강력한 수단, 그것도 체벌 아닌 수단이라는 게.

교사 2 저는 체벌 금지 규정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허탈감을 보면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사실은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학생의 관계는 없고 관리해야 할 재소자들만 있었던 거죠. 말 잘 듣는 재소자들은 법 없이도 살지만 규정을 어기는 재소자들에게는 언제나 신체적 체벌과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 교도관에게서 몽둥이를 빼앗아 가니까 이진 뒤 재소자들이 금세 달려들고 저항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생활부장 저도 그게 생활규정 만들면서 고민이었어요. 저부터도 드는 생각이 체벌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영망이 되니까 보다 강력한 대체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권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교사 2 저는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이라는 게 일종의 ‘관습 헌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목적상 체벌은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교사들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관습으로서 헌법 말이에요.

체벌 금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 목적상 체벌’과 관습 헌법, 교사의 권위, 학생들의 저항 이런 단어들 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

체벌과 권위 : 비동시성의 동시성

학생의 입장에서 본래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는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학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참여와 결정을 혼련할 수 있는 학교,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교육,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인권의 상호 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권 조례 어디에서도 ‘머리 길러도 된다’, ‘파마해도 된다’, ‘염색해도 된다’, ‘웃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기 결정권으로서 자유’를 ‘마음대로 할 자유’로 생각하여 체벌이 금지되는 순간 문제이들은 통제가 안 될 것이고 인권조례가 공포되는 순간 학교는 ‘개관 오분 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민주주의가 마음대로 할 자유라고 말하며 우려했던 플라톤의 문법과 유사하다. 자유가 주어지면 학교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개인들로 넘쳐나야 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자유가 아닌 체벌 대체 규정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른들의 거울인 학생들도 교사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
- 체벌은 있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제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 체벌을 하지 않아 모범적인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반대한다.

‘교육 목적상 체벌이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과 관련하여 작년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으로 재판 수업을 할 때 한 아이가 던진 질문이 기억난다. 체벌 금지 시대에 체벌과 권위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다.

“엄석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엄석대 반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석대의 책상 위에 썬 고구마와 달걀, 땅콩, 사과 같은 것들을 갖다 놓았고 매일 돌아가면서 엄석대에게 물을 떠다 주는 물 당번이 있었습니다. 엄석대는 반장으로서 청소 및 숙제 검사를 했고, 싸움과 같은 일이 교실에서 벌어졌을 때 즉석 벌칙을 주었으며, 규칙 위반을 감시하거나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엄석대는 전 학년 주먹 쥘이라서 우리 반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얻어맞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싸우는 아이들이 코피가 나자 응급조치를 취한 후 코피를 나게 한 아이를 팔을 들고 끌어앉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손톱이 길어도 며칠만 이발이 늦어져도 위생 불량자로 매도했습니다. 엄석대가 그렇게 해서 그 반이 전교에서 가장 깨끗한 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석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엄석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엄석대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 말해 손톱 검사를 해서 위생 상태가 안 좋은 학생을 벌서게 하고, 청소 제대로 안 하면 통과 안 시키고 코피 나게 한 아이를 팔 들고 끌어앉게 한 석대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학생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가?”

이 학생이 제기한 질문의 핵심은 잘못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처벌은 교육 목적상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엄석대가 잘못되었다면 그가 학생들에게 반인권적이었기 때문이지 학생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엄석대가 반인권적이라면 교사의 교육 목적상 처벌도 반인권적인 것이고 교사의 처벌이 교육 목적상 정당화된다면 친구들끼리 행해지는 ‘교육 목적상’ 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답을 대신해서 학급회장이 아이들에게 경고를 주고 잘못하면 불러내 ‘체벌’을 하는 것도 교육 목적상이라면 용인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나는 이 질문을 받고 꽤 오랫동안 멍한 상태로 있어야 했다.

위 사례는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의 문제, 즉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나를 비롯한 많은 교사들은 교사의 권위가 ‘강제적 수단으로서 제재와 처벌’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처벌 또는 제재 가능성에서 찾았다. 그래서 이번 체벌 대체 규정 마련 과정에서 (그동안 아이들을 체벌하지는 않았지만) 체벌 금지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질문을 다른 식으로 하면 한국의 학교는 왜 체벌이라는 형식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위를 제도화해 올 수밖에 없었는가로 바꿀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독일의 사회학 어니스트 블로흐(ernst bloch)에게서 찾고 싶다. 독일의 사회학 어니스트 블로흐는 나치 정권이 본격적인 맹위를 떨치기 전 1935년 출판한 《우리 시대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란 개념을 들어 독일 사회를 분석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즘, 즉 국가사회주의라는 진보적 명칭으로 탄생한 반동적 극우민족주의의 대두를 빚댄 것인데, 급속히 형성된 자본주의 구조와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문화적 구조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괴리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틀로 차별 금지 이후의 학교 체제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학교 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적 질서가 중첩적으로 병존하는 사회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학교는 미군정기에 일제시대의 강압적 권력과 구분되는 민주적인 권위를 표방했음에도 실상은 일제시대와 같은 폭력과 강압적 권력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를 모델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교 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사와 학생 상호 간의 신뢰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학교 내 규칙과 규정, 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작동해 왔다. 사실상 치외법권적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감, 부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카르텔 속에서 교육을 통제와 복종의 문제로 접근했다. 학생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목적상’ 차별을 광범위하게 용인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온 것이다. 일제가 이승만으로, 이승만이 박정희로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로 그리고 최근의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 차별에 기반한 권위의 확보라는 상황은 반복되었다. 한국의 학교 사회에서 권위와 민주주의는 실천된 이념이 아니라 표방된 이념으로 남아 있었으며 미래에 실현되어야 것으로 끊임없이 유예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차별 금지가 현실화되었다. 블로흐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대로라면 지금의 상황은 당연히 오래전에 사라져야 했을 차별이라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학교 체제 속에 과거의 낡은 심성이 집요하게 존속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의 근대 학교 사회가 차별을 금지하고 근대적 훈육과 규율 양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낡은 심성을 소지해 왔던 우리 교사들은 차별 금지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신성한 신화’, ‘좌절된 기대’, ‘비합리적 설명’에 사로잡혀 있다.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저항하는 이유 그리고 인권

학생 차별과 교사의 권위에 대해 생각을 하던 중 폴 윌리스라는 사람이 생각났다. 그는 《학교와 계급재생산》에서 노동 계층의 아이들이 반항학교 문화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저항을 조직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언어로 그들의 일상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차별과 교사의 권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반학교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권위’에 대해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집요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싸나이luids”들의 일상 언어에서 쉽게 드러난다.

교사들에 대한 그룹 토론 중에서

조이 ……그들은 우리를 벌줄 수 있죠 그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우리보다 더 거대한 제도 편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뭐 보잘 것 없고, 그들은 거대한 모든 것을 등에 업고 있구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복수하려 들지요. 그쵸, 권위란 게 티끌지 않나요.

에디 그들은 자기들이 선생이기 때문에 높고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별볼 일 없어요. 보통사람들에 불과해요. 안 그래요?

빌 선생님들은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누리지요. 자기들이 훨씬 더 높은 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스팽키 우리는 선생들 이름을 막 부르고 싶지만…….

페트 정말로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자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말은 선생님들의 지위가 더 높다는 뜻이군요. 여러분 모두는 선생님들이 더 유식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까?

조이 그래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더 똑똑하다고 더 높은 것은 아니지요.

빌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우리를 대접해 주어야만 해요.

(…)

조이 그런데 자기들 꼴리는 대로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면 우리는 해야 하죠. 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말예요. 한번은 여선생님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모두 반지나 팔찌 한두 개씩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선생님이 ‘그거 전부 끌러 놓아!’ 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 폴 윌리스 《학교와 계급재생산》 51쪽, <권위에 대한 반항과 순응적 아이들에 대한 거부> 중에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할 것은 학생들 또한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집단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 가면서 끊임없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폭력이나 권위에 완전히 지배당하거나 종속되는 주체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위의 조이의 말처럼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우리보다 더 거대한 제도 편에서 있는 교사, 학생들을 보잘 것 없이 여기고, 거대한 모든 것을 등에 업고 있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저항은 교사보다 제도와 학교 당국을 향해 있는 것이다.

학생들,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에 관심이 없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공장, 병원, 군대와 같은 근대적 제도이다. 이러한 근대적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연습, 훈련, 시간 사용, 평가, 사회적 자원, 기록 등의 방식으로 신체의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작용하여 신체의 동작을 통제하며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한편으로는 권위에 기초한 사회화 기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계질서적 감시와 규격화하는 제재를 통해 근대적 주체를 생산하는 공간이다. 학교는 개인의 행위를 특정화하고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규범을 작성하고 세밀하게 조문화하며, 그러한 규범에 따라 일정한 정상적 질서를 정해 놓고 위반하면 처벌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체벌 대체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체벌과 멀리 있었던, 예의 바르고 학교가 정해

놓은 규칙을 잘 지켰던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인권조례와 차별 금지는 귀찮은 것일 수도 있다. 왜냐? 충분히 존중받았고 차별은 그들에게서 멀리 있었으니까!

그러나 인권의 문제는 늘 주변과 경계에 선 주체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당연히 주변과 경계에서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고작해야 18세기의 발명품에 지나지 않는다. 귀족과 남성, 다수자들, 그리고 고문을 명령하던 법관들과 고문을 정당화하던 경찰들에게, 여성·노동자·소수자·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인권에 대해 매우 역겨워했다. 인권은 언제나 귀족들과 다수자들, 그리고 남자들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사람들, 즉 고상하고 품격 있는 자들만이 소유한 인간의 권리였다. 그들에게 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인권, 지금 우리의 논의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학생들에 대한 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문제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걱정하면서 강력한 차별 대체 조항을 만들고 있고 여전히 학교라는 공식적 제도를 존중하는 ‘범생이’들만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인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범생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왕따, 괴롭히기, 개기기, 거짓말하기, 까발기와 같은 반학교 문화를 그들이 왜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 표면에 나타나는 행동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단죄하는 조항을 세밀화함으로써 ‘학교 가치에 순응하는 모범생’들의 인권만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차별 대체 규정이 마련된 이후, 중학생이 된 제자를 만났다. 공부도 못하고 가정형편도 어려운 이 친구에게 차별 금지, 학생인권에 대해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선생님! 학생인권이고 차별 금지고 이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학교는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공부하는 놈들을 위한 곳이죠 저 같은 애들은 차별 금지, 학생인권 이런 거 보장된다고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인권 이야기할 때 웃겨요 학교에서 인권이라니……. 수업시간의 선생님의 눈빛, 공부 못해서 받는 멸시……. 결국 때리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학교가 어떤 인권을 보장할 수 있죠? 선생님들은 인권 이야기하면서 ‘너네들한테도 인권이 있냐?’ 하고 말하면서 저를 보세요 전 솔직히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학생인권이에요”

인권, 자유로운 주체로서 학생의 문제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제한하고 교육 목적상 차별을 허용한 것은 교사의 학생 징계가 부모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차별은 공교육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라는 자연권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관습 헌법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원칙하에 많은 판례에서는 교사가 악의적인 방법을 쓰거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차별은 전적으로 교사의 자유재량으로 인정해 주었다.

물론 교육 목적상 체벌을 정당화하는 패러다임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양심,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비롯하여 학교가 인권의 보루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문제는 학생인권 차원에서 체벌대체 규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도, 아니 솔직히 나조차도 ‘교육 목적상’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데에 너무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인권과 체벌의 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자유와



▲ 체벌 당한 학생의 모습(자료사진) [출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남부 학부모회]

자기 결정권의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수 진영인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촛불 집회에서 보여 준 중고등학생들의 자발적 행위였다. 이들은 이 촛불 집회에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하면서 학생이 기본권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는 교육 목적에 비추어 재조명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보장된 자유의 내용이 교육 목적에 반하고 다른 학생의 신체나 정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그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뭐 굉장하고 상하게 말하고 있지만 ‘빨갱이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을 제도화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미국의 채피Chafee 교수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비롯한 인권이 보장됨으로써 얻어지는 두 가지 종류의 이익을 거론하고 있다. 하나는 개인적 이익으로, 만약 삶이 살 만하려면 자신에게 필수적인 문제들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획득하는 데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이다.

긴 역사에 걸쳐, 개인들은 억압적인 세력에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왔고 이러한 자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이 어리석음과 부당함과 위협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체험해 왔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체벌이 금지됨으로써 학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과 동의와 복종 그리고 폭력에 관한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고 자유롭게 두려움 없는 추론의 힘을 확신하는 용감하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이 교사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배움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

다. 다시 한 번 반복하면, 학생인권 문제의 출발은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학생을 전제로 하여,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교육,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인권의 상호 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데 핵심이 있다. 학교가 체벌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 교사는 권위가 아니라 폭력과 강제적 처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권의 한계는 곧 교육의 한계다.

덧붙이는 말

* 정용주 님(edcom234@hanmail.net)은 이메일이 서너 개쯤 되고 혈액형은 성격 파악 어렵다는 AB형인 교사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지만 의식은 점점 노동자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물질적인 부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이 글은 <오늘의 교육> 창간준비호(1,2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의미하는 것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2)」,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23.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의미하는 것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2)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 <학교에서 배운 것>, 유하

“나 좀 도와줘야겠어.”

2009년 여름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광노현 교수였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회에 들어와 도와달라는 얘기였다. 뭔가 시름하면서도 달달한, 이름 모를 음료수를 꿀꺽한 느낌이랄까? 10년 넘게 활동을 해 오는 동안, 학생인권은 늘 ‘장외 선수’ 처지였다. 썰렁한 잔칫집 풍경마냥 학생인권은 교육정책은 물론 정책을 풀무질하는 교육 운동에서도 즐겨 찾지 않는 문제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약간 훈풍이 부는가 싶은 적도 있었다.

2005년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결정처럼 몇 가지 의미 있는 기준이 쌓이기 시작했고,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시도됐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몸을 사리기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 교체 이후 아예 맛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니 반가우면서도 가능할까 미심쩍은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 나올 수밖에.

교육청이 나선다고 새로운 길이 열릴까? 1998년 ‘인권 대통령’을 내세웠던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학생인권선언을 만들려던 교육부 시도가 어이없이 백지화됐는데……. 그냥 몇 사람 모여서 보고서 만들어 올리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닐까?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 해도 의회가 설득될까?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저 지랄 맞은 학교가 바뀌거나 할까? 모든 게 미심쩍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수원행 기차에 벌써 오르고 있었다. 서울과 수원을 수십 차례 오가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로부터 1년 반 가량이 지난 지금, 학생인권을 잠재워 온 봉인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여럿 당선됐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운데, 추석을 얼마 앞두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서울, 광주, 전북 등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에서는 조례 제정에 앞서 하반기부터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물결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다다른 곳이 어디일지 짐작하긴 힘들다. 장외 선수였던 학생인권이 장내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교권이 무너진다”, “애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아우성에서부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손질해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인 반격까지 공세가 만만치 않다. 학생인권의 부작용을 과장되게 부풀리고 사건화함으로써 진보 교육감들은 물론 교사 운동, 마침내는 진보와 인권의 가치 자체를 공격하는 일들도 속속 기획되고 있다.

게다가 현장의 준비 없이 밀고 들어온 정책을 탓하는 교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런 악조건에서 이제 갓 입학한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도대체 학생인권조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기에 이토록 엄청난 반발이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학생인권조례가 던지는 질문들

학생인권조례를 훑어보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 조례에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어떤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담겨 있다. 정기적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교육 등 학교의 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해야 할 과제가 담겨 있다.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이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구로 ‘학생인권옹호관’(일종의 ombudsman)도 설치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렇게 단 몇 장의 문서로 끝나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학생을 바라보던 관점, ‘학교’ 하면 떠오르는 익숙했던 관행들, 무엇보다 현 교육

의 프레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소로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참뜻을 묻고 있듯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참뜻을 묻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규정이란 게 학생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해 온 문서였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그 학교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거는 문서다. 많은 이들이 교육을 걱정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폭력들이 진정 교육이란 이름에 걸맞은 것이었는지를 묻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교육, 체벌·폭언·차별 등 인간적 모멸이 판치는 교육, 거짓 동의와 자백이 강요되는 교육, 격려와 소통은 온데간데없고 강압과 지시만이 지배하는 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는가 하는 질문 말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던지는 질문만으로는 학교는 크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들은 좀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도 뿌리 깊다. 학생인권이 제한되어야 할 이유를 만들기관 너무나 쉽고, 인권에 관한 한 학생도 교사도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피해 나갈 구멍을 찾는 일도 참으로 쉽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제한은 가능하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학교 일과 시간 전체를 수업 시간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을 손질하는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 체벌이 금지된다고 하자, 상벌점제와 각종 수업 규칙으로 학생을 통제하려는 또 다른 법치의 물결도 일고 있다. 교문지도가 공격받자 똑같은 지도의 공간을 현관으로, 교실로만 옮겨 버리는 일도 일어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도 복종을 강요하던 기존의 교육은 기어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조례 자체가 아니라, 조례를 통해 바꾸고자 했던 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환기하는 일이 아닐까?

많은 이들이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면 사교육비가 늘면 어쩌나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학원과 피시방 외에는 갈 곳이 없는 황량한 심대의 삶이어야 하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체벌이 사라지면 교사가 일부 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제지할 수 없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외부의 ‘통제자’를 불러들이지 않고는 불안해하는 학생들 아닌가? 많은 이들이 학교 안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가 시끄러워질까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날개로 흩어진 채 변화를 구걸하거나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낙담밖에는 모르는 학생들 아닌가? 많은 이들이 두발 규제를 풀면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될까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두발 규제와 함께 학생들이 통제하는 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보다 자기가 통제되어야 할 이유를 찾는 데 익숙해지는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학교가 정치에 휩쓸릴까 걱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중립’을 가장하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데 익숙해지고 결국 학교가 독점하고 있는 진실만이 유일한 진실로 남는 것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는 이처럼 많은 질문들을 이끌고 다닌다. 어쩌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질문들이 낳게 될 변화 아닐까? 모든 학생을 고루 지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가혹한 경쟁 시스템 안에 학생들을 집어넣고 될성부른 떡잎만 숙아 내고 있는 교육의 진실이 파헤쳐지는 모습, ‘씩수 논란 떡잎들이 일찌감치 잘려 나가지 않고 자유네 참여네 하면서 알알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자유의 공기를 흡입한 학생들이 정말로 성숙해질까 봐,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까 봐, 통제와 폭력에 교육이라는 권위를 부여해 준 독점적인 권력이 무너질까 두려운 것 아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의미

사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제대로 던져지지 못했다. 고백하자면 조례 제정 위원으로 참여할 때 가장 큰 관심은 인권 활동가로서 그동안 이야기해 온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괜찮은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례 제정 권한을 거머쥔 다른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를 걱정했다. 생활지도부장으로 잔뼈가 굵은 교사 출신 위원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 여러 차례 워크숍과 논의를 거듭하면서 비교적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조례

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가까스로 합의를 본 조례 초안을 교육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까가 염려됐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꾸준히 들으려 노력했지만, 교육청이 주최한 간담회와 토론회가 그리 깊이 있는 논의를 할 만한 공간은 못 되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꾸려 이 조례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지만, 학교 현장까지 그 흐름은 미치지 못했다. 교육 운동 진영이 자기 운동의 의제로 삼고 적극 뛰어드는 모습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학생인권 정책’이 가져올 파장을 가장 깊이 꿰뚫어 본 이들은 다름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 잃을 게 많은 이들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떠오르자 그들은 조례를 불청객 수준을 넘어 폐강도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인권 정책을 내세웠던 다른 교육감들도 그 정책의 깊은 의미를 몰랐을 수 있고, 그토록 많은 반발이 터져 나올 줄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일이 도대체 무얼 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잃을 게 많은 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 교사들이 ‘지지하는 척하기’ 내지는 ‘시기상조론’에 여전히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다. 현장의 준비됨 없이, 교사들의 지지 없이 학생인권조례는 결코 학교에 뿌리내릴 수 없다. 물론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준비 단계 없이 이루어졌던 것은 맞다. ‘위로부터 주어진 개혁’의 전형적 한계를 학생인권조례는 분명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푸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위기감까지 들게 만든다. 언제까지 푸념만 하며 한발 뒤로 물러서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관찮은 교육감 아래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작품이 아니라, 학생인권 운동의 길다란 역사가 녹아 있는 성과물이다. 그동안 학생인권 운동은 외로웠고 주변부의 목소리였기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학생인권 운동의 요구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는 ‘하면 좋지’ 정도의 추상적 지지만 보내다가 이제 그 운동이 중요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순간 ‘준비부터 하고 나중에’를 이야기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동안은 왜 준비하지 못했나? ‘나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머뭇거릴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하지 않다는 것 아닐까? ‘완벽한 준비’와 ‘조례 이후의 혼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이 필요한 것 아닌가?

감옥에 갇힌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의 시민권 보장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백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누구에게는 시기상조가 누구에게는 오래된 간절함이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변화에 대한 시도는 시기상조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분리의 괴로운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악랄한 폭도가 여러분의 부모에게 합부로 린치를 가하는 것을 볼 때, 증오로 뿔뿔 몽친 경찰이 흑인 형제자매를 욕하고 발로 차고 야만스럽게 다루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별조차 받지 않을 때, 변명하는 사회 한가운데서 숨 막히는 가난으로 허덕이는 2천만 흑인들을 볼 때, ‘백인 전용’,

‘유색인종 전용’이 표시된 지긋지긋한 간판을 매일 보면서 수치심을 느낄 때, 백인들이 여러분을 ‘깜둥이’라 부르고 나이에 상관없이 ‘눔boy’이라고 부를 때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발의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의 본무대는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일구어 내고자 선택한 서울이 아닐까 싶다. 서울에서는 3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꾸려 서울시민 1%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1월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학생인권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청소년·인권 단체들도 있지만, 이 운동의 의제에 이제 갓 공감하기 시작한 단체들도 함께하고 있다.



주민발의 서명에 주어진 시간은 단 6개월. 이제 불과 1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 있다. 학생을 불신하는 데 익숙해진 사회에서, 경쟁교육의 가치가 하늘을 찌르고 탈락에 대한 공포로 인권을 기꺼이 반납하는 데 익숙해진 교육현실에서 8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발의서명을 얻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는 중이다. ‘학생도 인간’이라는 소박한 진실과 ‘학생이기에 더욱 풍요로운 권리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는 믿음은 ‘애들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과 ‘애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의 벽 앞에서 나아갈 길을 가로막히고 있다. 학생이 자유와 참여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감당할 만한 배움과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 차이가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복원된 학교 어찌면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운동마저도 체념하는 데 익숙해진 현실에서 ‘다른 교육’에 대한 열망부터 환기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2010년 6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건 학생회장 후보가 학교의 탄압으로 징계위기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하지 말라는 교장과 학생부장의 ‘지도’에 따라 후보 연설문을 수정해야만 했던 학생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학교는 학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교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하고자 했다. 이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끈질긴 문제 제기, 주위 단체들의 비판, 교육청의 해결 노력으로 학교가 학생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와 같은 결말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학생회장 후보를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비록 좌초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런 학생들에게 열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닐까?

학생인권 침해는 학생을 불신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란을 배경으로 한 만화 《페르세폴리스》에서 주인공 마르잔은 말한다. 집을 나서면서 베일은 잘 씌워졌나, 화장이 너무 진한 것은 아닌가, 나를 때리면 어찌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생각의 자유는 어디로 갔지, 내 삶은 살 만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던지지 않게 된다고. 질문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곳에서 교육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학생을 침묵시켜 온 ‘학생지도·통제권’이 교사의 권리였는지, 아니면 지금의 교육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교사에게 주어진 의무였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물어 보아야 한다.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 문제로 무더기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짐작 가능하다. 학생이 미성숙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미성숙한 학생들을 감독해야 할 교사 역시 미성숙을 강요받고 정치적 자유와 같은 중요한 권리마저 박탈당했던 것은 아닌가? 가혹한 경쟁과 훈육 시스템에 학생들이 불모로 잡혀 있는 사이, 학부모 역시도 자녀를 양육하고 탈락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삶에 불모로 잡힌 것은 아닌가?

소로는 노예제의 문제점을 계속 토론만 하고 있는 한 변화는 없다고, 수만 수천 명이, 아니 단 한 명이라도 노예를 소유하기를 멈출 때 노예제는 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은 자신을 노예로 삼고, 교사는 학생과 자신을 노예로 삼고, 학부모도 자녀와 자신을 노예로 삼는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한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럼에도 최근 ‘기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학생의 교사 폭력 사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는 듯하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교사의 참다운 권위는 바로서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수업 분위기가 이미 엉망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마음 둘 곳 하나 없고 폭력에 멎든 학생들이 ‘핫 버튼 Hot Button’을 누르는 교사에게 ‘대드는’ 일들은 비밀비재했다. 그럼에도 그 모든 현상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보도들이 줄을 잇는다. 학생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맥락을 살펴보고 ‘교권’만을 내세워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몰고 올 결과가 무엇일지 암담하다.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면서,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런 불공평한 대

접을 받는 학생들이 과연 교사를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 못 때린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요청도 거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학생들이 맞지 않으면 교사가 지시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체벌이 끝나야 할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닌가? ‘교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때리냐 때리지 않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곳에서 교육은 가능한가? 사실 이런 현상들은 ‘체벌의 시대, 폭력 교육의 시대’를 보내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끝물 장면’이지, ‘학생인권 시대의 서막에서 나타나는 장면’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행의 시대에는 장면들이 겹쳐 떠오르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 내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생각의 혼돈을 비집고 ‘기존 교육으로의 회귀’를 외치는 이들이 맹렬히 일어서고 있다. 학생이 생각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싫은 학교가 교사가 생각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과연 반길까?

울산에서 만난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교장이 점심시간까지 반에 들어와 머리 잡고 지습하라고 야단치고 간다고 불평하기에 교장실 가서 항의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못하겠대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지금 교육이 하는 것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는 시간, 들어올 때마다 했던 말들을 꼬박꼬박 적어 두라고 했지요. 교장실에 들어가 우리 애들이 다 기록하고 있으니 해 볼 테면 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교장이 우리 반은 건드리지 않더군요.” 서울의 한 청소년은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보니 괜히 눈물이 나대요. 학생인권 주장이 동물과 인간의 경계에서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 하는 거구나 싶어서……. 그리고 나니 조례가 말하는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 밀양에서 만난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인권으로 인한 가장 비싼 부작용도 가장 싼 폭력의 교육보다는 낫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빛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학생인권조례 운동, 아직은 포기하기 이룰 때가 아닌가 싶다.

덧붙이는 말

* 배경내 인권을 만나고 제 삶이 충만해졌습니다. 인권과 교육의 만남, 인권과 청소년의 만남이 제가 주로 영감을 받고 저를 달뜨게도 만드는 주제입니다.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주로 동지를 틀고 있고,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일에 발품을 팔러 다닙니다. 쓴 책으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가 있고, 함께 쓴 책은 《대한민국 1%》, 《뚝뚝뚝 인권짓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오늘의 교육> 창간준비호(1,2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김희옥, 「학생의 권리, 권리의 학습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3)」,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26.

학생의 권리, 권리의 학습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3)

김희옥(하자작업장학교)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뭘까? 공부할 권리? ‘공부할 권리’라는 것이 의미 있는 말인가? 하자센터haja.net에서 일하는 동안 ‘학습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있기는 했다. 학생이었다가 (탈학교) 청소년이 되면, 학습 기회도 별로 없거니와 학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전무하므로, 청소년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습권’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종종 토론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학생’에게 공부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겠지. 그렇다면, 학생으로서 권리란, ‘할인’의 권리일까? 버스 요금, 영화관 입장료, 휴대폰 요금 등. 거의 본능적인 소비 욕구를 갖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길들이는 장치들. 그리고 보면 청소년이든 학생이든 십대들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것은 상품소비사회의 자본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하자작업장학교 종강 파티에 참석한 졸업생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하자센터를 찾아오고 탈학교하고 하자작업장학교productionschool.org에 입학하기까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고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갔던 어떤 NGO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그 NGO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모임을 만들고 지원해 보려고 시도하면서 ‘청소년인권모임’같은 것을 시작했는데, 이 졸업생은 그 NGO의 위계적 질서/문화가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다고 한다.

일반 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갑’의 질서는 참으로 완강하다. ‘나랑 갑이나?’라는 질문. 동갑이 아니면 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두 살 차이가 나더라도 ‘나이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고, ‘학년’보다 힘이 세다. 이 질서는 엄연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교사가 개입하면 사정이 좀 달라진다. 교사의 개입은 나이 위에 ‘성적’이라는 서열 기준을 둔다. 학부모가 개입하면? 성적 위에 ‘돈’이 온다. 그런 세상이다.

그 졸업생은 NGO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단다. 게다가 인권 모임이니까. 그런데 그곳의 엄격한 상하질서도 그렇고, ‘청소년이 뭘 알아?’ 하는 분위기도 다르지 않아 대단히 실망했단다. 그리고 하자에 왔다. 하자의

일곱 개 약속 중 “성 차별, 나이 차별, 지역 차별 안 한다”는 문구가 중요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생각하게 된 것, ‘아, NGO의 어른들이 청소년과 일하는 법을 전혀 모르셨구나.’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 그는 NGO에서 일을 하고 있다. NGO의 문화가 여전하다는 것 때문에 무척 속상해했지만, 그때처럼 다시 하자를 찾지는 않는다. 이제는 하자에서 배우고 익힌 것, 청소년으로서 깨우쳤던 것,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며 나아가고 싶다고, 배운 것을 가꾸고 발전시키며 나아가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한다.

차별 의식은 권리가 제한되고, 억압되고 있으며, 그것이 부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책으로 배워서 권리의 종류를 줄줄 읊 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류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관심이 있는 NGO라도 그 사회가 가진 상식적 수준에서 아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크게 다를 수는 없다. ‘권리’란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아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러나 내게 무엇이 없는지는 논리나 경험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부재’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확인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무엇(의 부재)을 부당하게, 불편하게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인가?



[출처: 하자장업장학교 홈페이지]

하자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던 2001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아버지를 따라 하자에 왔다. 그는 불량 학생으로 낙인찍혀 자주 매를 맞곤 했는데 얼마 전에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체육 교사에게 걸려 30분 넘게 매타작을 당했다. 그 교사는 다 때리고 난 뒤 안티프라민 한 통을 던져 주더라.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보고 부모가 나서서 자퇴를 시켜 버렸다고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번번이 교사에게 맞고 들어오는 자식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이 다닐 만한 곳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하자에 들른 터였다.

그런데 그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데 밖에 여학생 하나가 기다리고 서 있었다. 이번에도 딱 걸렸다. “왜 숨어서 피워? 화장실에서 냄새나잖아. 화장실에 금연이라고 쓰여 있잖아. 2층 배란다가 흡연실이니까 거기서 피워.” 그 여자가 욕박지르며 2층 흡연실로 데리고 갔다. 열결에 따라가 본 2층 흡연실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흡연 욕구도 이미 가신 상태라, 어색한 마음에 입술도 마르고 바닥에 침부터 뚱- 뱉는다. 다시 여자가 야단친다. “여기 청소하는 어르신들, 연세도 많고 힘드신데 왜 침을 바닥에 뱉어, 더럽게. 여기 재떨이에 얌전히 뱉든지 뱉지 말든지 해.” 한편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싸움은 나지 않았다. ‘내가 무섭지도 않나?’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여자가 이상하고, ‘화장실이 속 편하지 끈대들이랑 어떻게 한 자리에서 맞담배를 피우냐, 여기 완전 공기루구나’ 했단다.

그러나 얼마 후 하자센터 내에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인 하자작업장학교가 개교할 때 그 남학생도 슬며시 지원서를 냈고, 이미 영상작업장에서 영상을 배우고 있었던 그 여자에 ‘밀’에서 영상 작업을 배우고, 자기가 맞던 장면을 극화한 독립영화를 찍었고, 그 여자에와는 ‘절친’이 되었다.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숨어 피우는 자신이 갑자기 무척 초라하고 ‘후지계’ 느껴지더라고 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의 친구들이 하자를 찾아왔을 때 흡연실로 안내했다. “야, 여기가 어디냐, 하자다. 침 뱉지 마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하자에서 지켜야 하는 7가지 약속 : 권리와 의무

-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할 거다
- ② 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안 한다
- ③ 어떤 종류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을 거다
- ④ 내 뒤통수까지 내가 할 거다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⑤ 정보 때문에 치사해지지 않을 거다 / 정보와 자원은 공유한다
- ⑥ 입장 바꿔 생각할 거다 / 배려와 친절
- ⑦ 약속은 지킬 거다 / 못 지킬 약속은 안 할 거다.

하자센터를 찾는 어른들은 첫 번째 규칙을 아주 좋아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할 거다”라는. 그러나 청소년들은 두 번째 규칙을 더 좋아한다. 차별 금지 조항. 그런데 이 규칙이 어쩐지 좋기는

한데, 그 차별 문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느끼느냐 하는 건 아주 다른 문제다. 권리에 대한 태도는 생물학적 성장만큼이나, 사회적 성장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터득되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차별’ 혹은 ‘권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자마자, 센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흡연 문제, 음주 문제, 성 문제, 취업 문제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센터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흡연 문제는 나이/성별을 막론하고 흡연실에서만 흡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당시에는 금연 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 청소년센터나 학교 건물 안에서 ‘꼰대’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청소년센터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실이라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지난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 숨비꼭질해 가며 숨어 피우다 걸리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흡연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자센터 ‘일곱 개 규칙’을 본뜬 ‘흡연자들의 일곱 개 규칙’도 만들었다. ‘금연할 것인지 담배 피우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하라’ ‘자기 담배를 피우되 나누지도 권하지도 않는다’ 같은 규칙은 걱정 많은 ‘꼰대’들과의 절충안이다.

그 외의 것들도 아주 긴 시간의 의논을 통해 결정되었다.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뒤풀이에서 어른들만 술을 마시거나 따로 뒤풀이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청소년들의 지적에 따라, 공식 자리에서는 무조건 금주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제대로 된 성과 성 문화에 대하여 청소년/어른 구분 없이 모두 전문가(산부인과/비뇨기과 의사, 문화 이론가,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성교육 전문가 등)와 함께 학습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알바와 노동에 관한 프로젝트를 조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어쨌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일을 가지고 여러 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냐고? 바로 그 토론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NGO에서 일하고, 교사가 되었고, 영화감독이나 디자이너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하자라는 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며 배운 것들을 가지고,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배려하는 문화를 가진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청년들로 성장해 가고 있다.

전국이 ‘일제고사’ 문제로 시끄러웠던 지난해 3월, 막 고등학생이 된 한 여학생이 이런 글을 올렸다. “학교 분위기 죽이네요 선생님들도 첫 시간부터 너희들 중 반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하고…….” 공부깨나 하는 이 여학생은 스마트폰에 힘입어 종종 문자를 포스팅하곤 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다. 중학교 다니는 동생이 “언니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다른 생각은 엄두도 못 내더라는 문자를 올렸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안 다니려고 준비 중이에요”라는 글과 함께.

어떤 교사 모임에 갔더니, 한 교사가 수업을 하다 보면 1/3은 참여하고 있고, 1/3은 수업 분위기를 흐릴까 봐 염려되는 (차라리 잠을 자 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Wee클래스 같은 데 보내고 싶은) 문제 학생들이고, 나머지 1/3은 별 볼일 없는 학생들이라고 했다. 교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과 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희들 중 절반은 이미 다 끝났다”는 ‘막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교사라면, 그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일까? 그 학교가 꽤 입시 명문이라고 하니, 나름대로 재미있게 시험에 나오는 예상 문제를 집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선생일까? 1/3만 수업에 참여하는 현실을 너무

나 무감하게 받아들이는 교사라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교를 졸업하며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서도 잘 지키고 실현하고 발전시키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긋지긋한 학교라는 감옥에서 벗어났다면, 밀가루 뿌리고 옷을 찢는 졸업생들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반가우면서도 문득 학교에서 그 인권조례에 대한 학습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다. 조례라는 건 사실 상당한 범위에서 ‘해석’의 문제로 드러날 텐데, 인권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나 학습의 기회 없이, 아전인수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맹목적으로 외우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는 않겠지?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덧붙이는 말

* 김희옥 히옥스, 필통 sibylle 트위터 @hiiocks, 페이스북 sibylle hiiocks 이런 이름들을 쓰고, 하자센터에서 ‘판돌’이라는 분류 안 되는 직업을 갖게 되어 항상 직업 필드를 보면서 고심한다.

배이상현,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4)」,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29.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4)

배이상현(교사)

2010년 10월 5일 국내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렇게 빨리 제도화에 성공할지 몰랐다. 무상급식과 달리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움직였고, 교육계의 진보 세력이라 할 전교조조차도 조심스레 대응하는 과제였기에 경기도 의회의 결정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목할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몇 가지 것들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보다 학교를 지탱했던 전통적인 수직적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 내 교육 주체들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즉 창조를 향한 다양한 실험의 지점에 학교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라는 관료 조직을 ‘학교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작전의 시작이다.

학생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봉건적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며, 학생인권조례는 늦게나마 우리 교육 체제를 진정으로 근대화하는 과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한국 사회의 뒤늦은 근대화를 성취하는 문제라면, 변화의 동력은 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다. 체벌에 대한 찬성-반대가 쟁점이 아니다. 어떤 개선안이 나오느냐가 문제이다. 두발 규정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신체의 자유’를 받아들이며, ‘청소년과 아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성숙 여부가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학교가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이드라인이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희망하는 학교의 변화상

학생인권조례가 진정으로 희망하는 학교의 변화는 무엇일까?

첫째, 학생에게 학교는 인권의 산실이어야 한다. 학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초·중등 시기는 존중받음을 통하여 발달음하고 성장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 계약의 기본 전제를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존재 자체가 인권의 역사를 전하고,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을 형성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인권과 민주시민이란 무엇보다 체험을 통한 배움의 대상이다. 공기 마시듯 들이마셔야 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듯 인권과 민주주의는 인간의 생태계로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에게 인권은 교사의 전문성의 산실이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도 좋지만, 교사의 교권은 어찌라고”와 같은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큰 흐름에서 비례한다. 교사의 교권은 학생의 인권에 근거를 두는 것이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약속과 세부적 장치가 없다면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규칙이나 틀도 불가능하다. 돌아보면 그동안 교사에게 교권이 없었던 이유는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거나 학교를 권리 실현의 사회 계약 시스템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의 그 어떤 명시적 규정과 상관없이 학교는 맹목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편리를 교사 자신의 수완에 내맡겼다. 학생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오로지 교사 개개인의 능력이었다.

결국 교사는 교육의 전문성과는 다른 길로 내몰렸다. 보호 관리하는 자이거나, 교과 지도의 기능적 일꾼이었다. ‘생활지도’가 지배하는 학교 현실에서 ‘생활교육’의 자리는 없었다. 면학 분위기 형성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생활지도’가 강조될 때 학생 내면의 다양한 성장을 읽어 내고 지원하는 ‘생활교육’은 불가능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생활교육이 살아나고 부흥할 것을 기대한다. 생활교육 관련 ‘사이비’ 전문성들을 쫓아내는 담론도 활발해질 것이다. 손쉬운 통제,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카리스마, 교사 간 협력보다는 개인의 수월성으로 전문성을 구가하는 것이나 사육사나 조련사 수준의 탁월하지만 목적이 불순한 그 모든 방법들에 이르기까지.

결국 교육행정의 논리에까지 학생인권조례는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학생을 까다롭고 섬세한 존재로 바라볼 때 학생을 다루는 교사의 깊고 심오한 전문성도 요구된다.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이 정립될 때에 교사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셋째, 학부모에게 학교는 연대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 고민을 발전시켜 갈 것이며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공부를 못하거나 가난한 학생의 학부모도,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부모도 학교에 아쉬운 소리 구걸하지 않고 학교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교사와 협력하는 주체로서 학부모와 학부모 조직의 역할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운동)에게 학교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게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학생이 학교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보호하는 정도의 열매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백화점의 종업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친절 수행 규정이 아니다. 학교를 인권 친화적 민주 시민 교육의 터전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 설계가 필요하다. 성 평등 교육이 없는 남녀 합반이 갖는 역기능처럼 인권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의 적극적 설계 없이 학생인권조례만 선포될 때, 그 결과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변화를 향한 다음 단계의 시나리오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린마일리지’와 인권 담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의 기본 가이드라인이지 목표가 아니다. 학교는 인권조례를 발판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정보와 자치활동의 권리, 종교·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권리 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발표가 무력무력 터져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담론은 현장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체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단지 ‘체體’에 ‘벌罰’하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인가? ‘체’만 아니라 ‘벌’ 중심의 관계도 문제 아닌가?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자체가 ‘인격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감시하고 감독하는 설정이 타당한지, 교육적 가치를 발현시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발표되는 내용의 골자는 ‘격리’ 또는 계량적 점수 누적제로 치닫고 있다. 성찰 교실과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 드러난 ‘출석 정지’는 일정 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시스템과 내용 개발, 학생의 선택권 등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는 그야말로 ‘격리’의 다양한 패턴으로 그칠 것이다. 그린마일리지라 미화된 표현이 확산되는 것도 우려된다. 이는 이미 몇 년의 시행 과정을 통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고가 있었다. 상벌점 제도가 있어서 체벌이, 교사의 폭언이,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없어졌는가. 종종 체벌과 상벌점은 함께 공존한다. 벌점을 발급하는 것은 교사의 임의(주관성)에 맡겨지며, 그 규정이란 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린마일리지의 취지를 위반하는 자 3점’이라는 기상천외한 문구도 발견된다.

이러한 ‘격리’와 ‘그린마일리지’에 ‘사랑’과 ‘대화’, ‘만남’의 휴머니즘은 없다. 생활교육의 르네상스도 없다. ‘생활교육’과 ‘법치’, ‘자치’로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그 어떤 해법도 진정한 해결책일 수 없다.

학생인권 운동의 동력과 연대의 필요성

잠시 지금까지 학생인권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자. 교육 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초기와 전교조 건설 시기(1987년~1990년대 전반)에 학생들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마찬가지로 교사 집단의 참교육 실천 운동 중에는 학생 자치 운동 및 학급 운영 운동 등이 다양한 교과 모임과 주제 영역 운동, 문화 소모임 운동과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학생 자치와 학급 운영 운동의 주체들이 중요하게 공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 했던 문제의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학생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자. 학생관을 새로이 하자.

학생은 개인입과 동시에 집단이다. 자치를 통해 학생은 성장한다.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만남이 참교육의 출발이다.

학급 운영 운동을 통해 교사의 교육관과 전문성을 새로이 하고, 생활교육을 되찾자.

청소년의 인권 운동도 부침을 거듭하며 꾸준히 이어져 왔다. 6월항쟁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활발해진 중·고등학생 운동은 ▲90년대 학생 자치 운동과 학생 언론 운동 ▲1995년 원주고등학교 최우주 군의 강제 야간 자율학습 위헌 소송 이후 하이텔의 학생 복지회 활동 ▲2000년경의 두발 자율화 서명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운동 ▲2004년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 군의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투쟁, 학생회 법제화, 학벌 사회 철폐 등의 운동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연합>,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등의 운동 주체들을 만들어 왔다.

청소년 인권 운동이 비록 소수 활동가와 선진 학생 조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학교의 학생인권 문제 관련 입장을 제시하고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 주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지위 또한 크다 할 것이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를 공약화하고 정책화하는 데서도 이들은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내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현실화 국면에서 과제는 ‘생활교육 운동’과 ‘청소년 인권 운동’의 문제의식을 소통하고 전망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정책을 주도하는 교육청 또는 교육부를 견인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청소년 인권 운동의 주체들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장외 대변자 수준을 벗어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자각과 주체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생활교육 운동 주체들은 교사와 교육청, 학부모의 정책적 과제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그 경로와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학생 인권’을 교육 운동의 중심 과제로 이해하고 실천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확대될 때 학교는 입시 시장의 보수 세력에 대한 대응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는? ① ‘계약 사회로서 법치’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는 어찌 해야 하나? 생활교육의 두 가지 과제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와 ‘자치’이다.

‘법치法治’는 ‘인치人治’와 대비된다. 현재의 학교는 학생에게 ‘인치’로 시작해서 ‘인치’로 끝난다. 인치의 공간에서 학생은 ‘누가 권력자인가?’, ‘권력자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힘센 자가 누구인가, 힘센 자의 성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물음이다. 1교시부터 9교시까지 들어오는 많은 교사들이 제각기 다른 원칙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거나 통일된 학교의 일반 규칙이 있기보다는 다양한 교사만큼 다양한

규칙들이 학생들을 규율한다. “왜 국어 선생님의 규칙과 영어 선생님은 달라요?”와 같은 질문은 있을 수가 없다. 오랜 학교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발달하는 정치 감각은 ‘처세’이지 ‘철학’이 아니다.

‘인치’를 언급하는 것은 학교 사회의 ‘봉건적 통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인치’의 문제는 교무실 또한 마찬가지이다. 결국 ‘봉건적 통제’란 학교 체제에 대한 수사적 묘사가 아니라 전체 사회와 학교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사실적 묘사이며, 그렇기에 학교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성찰의 과제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에 힘입어 학교는 학생을 ‘인치’의 공간에서 ‘법치’의 공간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법치’는 결국 학교의 근대화하고 근대적 계약 사회로서 학교 구성 주체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료하게 할 것이다.

‘법치’는 학교 조직이 사회적 계약에 근거한 ‘학교 사회’로 크게 변화해 가는 바탕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도화되는 현실은 ‘법치’의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구체화하는 학교 시스템의 설계도를 필요로 한다. 학교에 상응하는 ‘법치’의 포괄적 개념은 관료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학교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중·장기 과제로서 정책 과제는 참여 자치 활동이 구체화된 생활교육 과정이 제정되고, 교사·학부모·학생회가 법제화되며 제 주체의 권리와 권한, 책무 등이 공식화되는 일이다. 또 행정적 과제는 교사 간 협력(의사소통) 구조와 절차를 규칙화하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 구조와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현재의 학급 담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문화적 과제는 교사와 학생의 사적 관계 방식이 아닌 공공적 교사상의 확립이며, 지역과 학부모가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 협력하는 경험의 누적이다.

‘법치’는 ‘수평적 계약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법’은 ‘보편적 약속’이다. 학생들이 학교 제도의 체험을 통해 ‘시민 사회의 보편 약속’을 체험하고 가꾸는 경험을 배우는 것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의 핵심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는? ② ‘학생 사회의 형성과 자치’

‘법치’가 인권적 학교의 시스템과 규칙, 의사 절차를 의미한다면, ‘자치’는 다양한 참여 활동과 그 과정, 성과를 학생이 주체가 되어 총화해 내는 학생 활동이다. ‘법치’가 하드웨어라면 ‘자치’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다.

조례가 인권 지향적 학교의 실제적 동력일 수 있다면 그것의 최고의 목표는 ‘자치’이다. ‘자치’는 학생을 공동체로 회생시키며, 그때에 교사와 학부모 또한 공동체로서 자기 규정력을 높인다. 학생-교사-학부모의 만남이 생태적으로 복원되는 것이다. ‘자치’를 지향하는 가운데 인권은 이제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 적극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자치를 지향하는 눈높이에서 학생은 비로소 ‘학생 사회’를 주체적으로 눈뜨게 된다. 국어를 가르치든, 미술, 역사, 통일, 성 평등, 그 밖의 그 무엇을 가르치든 교사는 ‘학생’과 만나며, ‘학생 사회’와 만난다는 교육의 방법론을 깨우쳐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참여 자치권은 18조(자치활동의 권리), 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로 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 시행 규칙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고, 권장하며, 감독하는 후속 과제가 요청된다. 학생 자치화

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던 내용 인지라 조례 내용은 미흡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는 좀 더 내실 있는 자치활동의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육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이야기를 해 보자. ‘자치’와 ‘참여’를 병기한 것은 참여권이라는 인권

적 개념으로부터 ‘자치’를 이해해 줄 것과, ‘자치’의 개념이 ‘학생 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발전시켜 가는 과정의 총체로서 이해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자치’를 고등학생 발달 단계의 적용 과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치’를 단지 ‘총학생회 관련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는 ‘학생 사회’를 발전시켜 가는 제반 참여 활동을 의미한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또는 그 이하의 유치원 단계에서도 각각의 발달에 맞게 가능한 경험을 부여하고 발전시켜야 인간의 내면도 총체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학생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학생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인권과 복지는 기본 전제를 형성한다. 바야흐로 ‘인권’, ‘복지’, ‘문화’, ‘자치’ 등이 삶과 교육의 고도한 생태계를 이룩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은 미흡하다. 시행착오 과정도 당연히 예상되며, 그 이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교육 활동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만 교육 활동이며, 학교 교육인 것은 아니다.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 또한 교육 활동이다. 왜 자주성은 강조하면서, 독립적 실천이나, 저항을 통해 주체의 책임 의지가 숙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가?

‘자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며 책임지는 일련의 정치가 학생 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들과 갈등할 때에 교사의 위치는 더욱 소중하게 조명된다. 입시 위주의 암기 교육으로 학생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들면서 교사는 자신의 생명력을 어디서 찾겠다는 것인가? 현재의 학교 문화에서 보여 주는 다수 학생들의 냉소와 무기력은 자치와 참여가 없는 학교의 필연적 귀결이다. 그나마 무기력보다 냉소가 낫다. 교사에게는 아픔을 주지만 그래도 살아 있다는 증거이니까. 이제 교사와 학생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집단과 학생 집단이 대립하고 교사는 상생의 공존을 위해 새 역할을 훈련해야 한다. ‘친구들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해 주셔야지요’라는 전통적 학생상을 극복해 가는 구체적 기획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급하다. 학급 단위에서, 동학년 단위에서, 또는 함께 화장실을 쓰는 같은 층의 학생 단위에서 자치활동을 구상해야 한다. 혹은 교과 수업의 평가 방식과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까지도 학생 대표와 학생 집단의 의사소통을 기획하고 교사와 학생 자치의 협력을 기획할 수 있다. 학교 내 학생인권의 실태와 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학생들 스스로 찾아서 발표하는 것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자치 설계의 핵심은 ‘자치의 영역과 지원 내용’, ‘역할과 권한’, ‘대표의 선출’, ‘회의와 학생 언론’, ‘교육’이다. 학생생활규정을 손보는 것이 급한 과제로 부상하겠지만, ‘법치’와 ‘자치’를 근간으로 한 생활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는 해빙기의 살얼음판이 될 것이다. 학생 사회의 형성을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서울, 경기도의 조례에는 ‘학생참여위원회’가 있고, 광주 ‘학생의회’를 구상하고 있다. 또 교육청 계획으로 학생 자치 지원 활동이 언급되는 바, 지역의 학생 참여 구조와 학교 단위 학생 자치 구조를 긴밀히 연결할 수 있다면 학생은 학교의 선처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 단위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의 개혁을 압박하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폐쇄된 학교의 옷을 벗기는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학교 개혁의 전략에도 큰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납부금 고지서에 학생회비가 독립 회계로 부과되었다. 전교생이 1,000여 명이 넘는 경우에 학생회 예산으로 연간 1,400만 원 정도의 회계가 집행되었다. 많은 경우 학생생활부에서 학생회장 도장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기도 했지만, 학생 활동이 활발한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직접 집행하고 회계감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요란해지면서 학생회 독립 회계는 폐지되고, 학생 자치는 더욱 퇴행의 길을 걸었다. 우리 교육개혁의 앞이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등에 업고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지 않으면 조례는 죽 썰서 개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분명 우리에게 신작로를 열고 있다. 발길은 우리가 떼는 것이다.

덧붙이는 말

배이상현(chamtear@hanmail.net) 어눌하지만 진실한 교육 해방의 방랑자, 성 평등의 새 미래를 꿈꾸는 원시인, ‘차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누는 교사입니다. 두 사내아이와 한 여인의 의문스런 벗이며 성 평등의 일상을 최고의 진보로 봅니다.

* 이 글은 <오늘의 교육>에 게재된 글입니다.

익명,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의 위기,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5)」,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3. 31.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의 위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획연재] 학생인권조례, 우리 손으로 (5)

○○○(교육운동 활동가)

마음이 무겁다. 정말 무겁다는 말밖에는 지금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주민발의운동(이하 주민발의 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로 이 주민발의 운동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작년 9월 27일부터 시작된 주민발의 운동은 올해 4월 26일까지 서울시민의 1%인 약 8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안을 시의회에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명운동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이 실패할 여지가 커졌다’는 지난 1월 24일 <동아일보>의 1면 기사가 나온 것은 괜한 일이 아니다. 기사의 내용 중 현재까지 5,000여 명의 서명 밖에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1만 명의 서명을 약간 넘게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4월 26일까지 약 2개월 동안 7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기사가 지적한 대로 솔직히 쉽지 않은 엄연한 현실이다.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 학생인권 운동의 실패!

물론 운동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법이다. 실패할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운동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 아니었나? 또 어떤 이들은 주민발의 운동이 실패하더라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할 것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가 ‘주민발의 운동 자체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의 주민발의 운동은 전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상징이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일군의 보수 언론이 주민발의 운동의 성패에 스톱커 같은 관심을 보이면서 주민발의 운동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틈틈이 보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주민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주민발의 운동이 실패한다고 생각해 보자. 분

명 보수 언론은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를 두고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식의 논조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내보낼 것이고 이는 무시 못 할 여론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차별 금지나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 추진이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정치적 후폭풍은 서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북, 경북, 광주, 경남,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물론 올해 3월부터 발효될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추진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에도 정치적 정당성을 키워 줄 수도 있다. 결국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나아가 학생인권을 위한 운동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기의 원인: 운동 주체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쩌나 주민발의 운동이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까? 의제 자체의 어려움? 일전에 주민발의 운동에 성공한 친환경급식조례와 광장조례의 경우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과 더불어 누구든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컸다. 그와 반대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담긴 내용이 방대하여 그 전반을 소개하는 것이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구시대적 시각이 남아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 몇몇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부각된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사건들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여론도 악화된 것 역시 사실이다. 이 가운데 주민발의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의문이 명쾌하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조례 제정 운동이 의제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위기에 처하지만은 않았다는 의문. 나는 이 문제를 짚어 보고 싶다. 주민발의 운동을 해 왔던 운동 주체들의 문제는 없었을까? 주민발의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매진해야 할 지금 이 시점에 논란을 만든다는 건 솔직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사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은 기간 동안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어 결국 주민발의 운동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깊은 고민과 우려가 있다. 나는 운동 주체의 문제, 특히 학생인권운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전교조와

교육운동의 문제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전교조, 실천 없는 고민

교육감 선거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는 다른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조례 제정 운동의 방식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주장하면서 본부가 주민발의 운동을 결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주민발의 운동과 더불어 서명 조직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전교조 본부 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전교조의 앞선 결정들에 대해 그때도 그러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런 결정만큼 실천도 이루어졌는가?

지금까지 받은 서명의 수를 언급하고 거기에서 전교조가 원래 얼마를 책임지기로 했는지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 내고 해결하는 데 불필요할 뿐더러 서로의 구차함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짚어야 할 점은 전교조란 조직 내부에서 이 주민발의 운동에 대한 실천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전개되었는지, 아니 그러기 위한 시도라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다. 전교조 지도부는 주민발의 운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학생인권에 소극적인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를 꼽았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조합원들의 의식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회-분회 차원에서 교육과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했는가? 참여가 배제된 권력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하향식으로 추구된 것은 아닌가? 아니 하향식이라도 주민발의 운동을 제대로 집행하려는 시도라도 했는가?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 최근 경악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집행위원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대한 진로를 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바로 주민발의 운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는 주민발의 형식의 운동을 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모색한다는 안을 내놓고, 다수가 이를 찬성하는 가운데 표결을 통해 결정하려 했으나 소수의 지회장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결국 다음 집행위로 유예되었다고 한다. 올해 집행부가 교체되었다고 하지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갑자기 바꾸려는 시도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실천을 해 보지도 않은 채 조례 운동의 중단을 선언해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특히 이 집행위 회의는 서울본부가 다시 회의를 통해 주민발의 운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진행되었다. 서울지부가 서울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연대 단체에게 어떠한 의견을 구하거나 상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주민발의 운동의 중단을 추진했던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대 운동에 기본적 신의, 아니 상식이 남아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전교조 운동이 학생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수준을 드러내 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인권은 교사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민 혹은 철학의 수준을 보여 주는 리트머스시험지라고 생각한다.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교사라는 노동자는 학생들을 만난다. 학생이 없으면 교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만큼 교사에게 학생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규정짓는 중요한 대상이다. 학생인권은 바로 교사가

만나는 학생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를 드러낸다.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하나의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최근의 학생인권 담론은 교사에게 학생관의 변화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었는가?

장석웅(5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신입 위원장은 5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체벌 전면 금지를 전격적으로 시행해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임기 2년의 전교조 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본지와 의 첫 단독 인터뷰에서 “‘오장풍’ 교사 파문 직후 곽 교육감이 교사들에게 대비할 기간도 주지 않고 체벌 금지를 도입하는 바람에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위원장이 친전교조 성향인 곽 교육감의 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

- 곽노현 교육감의 체벌 전면 금지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애로를 호소한다.

“교사 생활을 30년 했다. 나도 문제 아이들은 자장면을 함께 먹고 뉘시도 가서 도닥인다. 때로는 한 대씩 두드려 패기도 하고 소통한다. 체벌은 물론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다. 이 사안을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다.”

장석웅 “곽노현 체벌금지 우려”, <중앙일보>, 2011년 1월 6일자

한 차례 이슈가 되었던 신입 전교조 위원장의 인터뷰. 나는 그가 두 가지를 솔직히 고백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가끔은 ‘한 대씩 두드려 패기도 하며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체벌 금지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을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 우리 후자의 경우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학생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이 어떻다는 답을 보내고 있다.”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실론’을 언급할 뿐인 무기력한 교사운동의 문제를 짚은 어느 교사의 표현은 이에 대한 평으로 굉장히 적절하다. 장 위원장의 인터뷰는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그러한 답을 하는 것이 적절한기는 둘째 치고) 전교조 조합원이 학생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일반적 수준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전교조 운동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철학의 빈곤은 고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철학, 특히 운동의 철학은 고민을 넘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천 없이 사변에만 머물러 있는 철학의 빈곤 속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다. 현실은 변화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체들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곤혹스런 상황을 모면 하려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지금의 상황이 전교조 운동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알리는 신호는 아닐까? 그동안 길게는 2006년 전교조가 주도해서 만든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때부터 최근 전교조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2의 참교육운동

선언'을 발표한 때까지 매년 학생의 날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학생인권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전교조는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 다짐들이 의례적 수사였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는 차마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조직은 커녕, 교육이나 토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학생인권이란 가치가 요구되고 있는 이 시기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당위론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다. 오히려 학생인권 정책의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혁 요구를 공세적으로 내세웠다면 어땠을까? '학생인권 보장 요구에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동안 주야장천 요구해 왔던 교실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임용 확대 등 시스템적 개편 운동으로 전전화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것은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아니 이런 고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벌 금지나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충격적이었나?

교육운동, 실천 없는 운동

나는 최근 주민발의 운동과 나아가 지금의 학생인권 정국 속에서 (감히 표현하건데) 전교조 운동을 포함해 교육운동 진영이 가지고 있던 밀천 역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본부에도 몇몇 교육운동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어떠한 찬사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단체들도 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비판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움마저 자아낸다.

북극을 정확히 찾기 위해 끊임없이 떨어지는 나침반처럼 언제나 그 단체들은 원칙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스스로의 운동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옳은 입장을 내놓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주장을 사람들이 잘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칙을 운운하며 강하게 소리 높여 얘기함에도 그 주장에 사람들이 잘 수긍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들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지만 서명을 얼마나 받아 냈냐는 책망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이 왜 정착 자기 조직 내에서 아래로부터의 실천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일가에 대한 물음일 뿐이다.

나는 이것이 특정 단체, 특정 개인만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교육운동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어떤 사안이 터지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지만, 그 사안을 정말로 막기 위한 구체적 실천도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채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 어쩌면 지금의 교육운동이 어떠한 구체적 실천도 하지 못하는 것은 발로 뛰는 행동 없이 입으로 엮어만 외쳐 왔던 운동의 결과는 아닌지 고민해 본다.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울본부에 이름을 걸고 참여하는 교육운동단체는 그나마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조차 하지 않는, 아니 주민발의 운동에 관심조차 없는 교육운동단체들이 수도 록하다. 각각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 이해하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그렇게 높은 참여도를 보인 이 단체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쉬움을 숨기기는 어렵다. 이 단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학생인권 정책에 무관심한 단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면 되는 일을 왜 고생을 사서

하나고 판단하는 단체들.

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 최근 교육운동을 넘어 진보운동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운동이 재산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나는 교육운동이 이 현실에 대해 큰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체제가 끊임 없이 유지되고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재생산 구조가 바로 교육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바꾸는 교육운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계층만이 특권을 누리는 이 사회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주체를 생산해 내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감수성을 불어넣는 작업, 즉 학생인권을 중요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작업에 이른바 교육운동을 한다고 하는 단체가 관심이 없다면 사회 전체 혹은 교육 전체의 변화는커녕 자기 단체의 존립은 가능한지 걱정될 따름이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 주민발의 운동이 실패했을 때 교육청의 정책 추진 역시 힘들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변화가 교육감 선거에서 이겼다고, 교육행정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변화는 위에서부터는 물론 아래에서부터도 진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지지하는 민주진보 교육감을 당선시켰다 하더라도 주민발의 운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의 학생인권 조치에 교총 등 보수적 교육단체들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 준다. 이들의 반인권적인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청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더불어 주민발의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위세를 압도할 만큼 학생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주민발의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 이것이 주민발의 운동에 교육운동단체들이 손 놓고 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역전 만루 홈런을 기대하며

다소 거칠게 얘기를 던졌다. 물론 주민발의 운동의 위기는 전교조 운동, 교육운동의 문제만이 원인은 아니다. 시민사회, 인권, 노동, 그리고 청소년 운동 자체도 너무나 관성적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 줬다. 어느 누구도 지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전교조 운동과 교육운동의 진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교육의 변화를 최우선적으로 꿈꾸고 지금까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해 온 이들이 그들이기 때문이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기대가 없었다면 이러한 비판도 없었을 것이다.

주민발의 운동은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이 존재해도 실패해서는 안 된다. 주민발의 실패가 가져올 부담을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서울본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주민발의 운동을 추진하기로 다시금 결의했다. 이제 서울본부는 반드시 4월 26일까지 8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운동을 성공시켜야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풀뿌리 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게 서명을 받아 우편으로 보내 주거나 웹은 물론 거리에서 지지와 후원을 전해 주고 있다. 운동 진영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조금씩 주민발의 운동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중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진행된 일꾼 연수에서 주민발의 운동을 이어 가는 것으로 분위기가 모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에 진행될 집행위의 결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이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리라 믿는다. 아니 믿고 싶다.



남은 2개월 동안 말뿐인 연대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는 교육운동 진영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다. 주민발의 운동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이자 더불어 운동의 변화를 위한 계기여야 한다. 교사와 교육운동이 청소년의 삶과 연대하는 계기, 교사와 교육운동이 관성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거듭나는 계기. 그 계기는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전교조 운동과 교육운동이 다시금 부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11년 4월 27일, 전교조와 교육운동 진영의 변화를 통한 주민발의 운동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말

- * 글의 성격상 필자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 * 이 글은 <오늘의 교육>에 게재된 글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위해

홍세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는 점을 독자들은 용납해주시기 바란다. 시민의 힘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청구인 명부 작성을 시작한 게 작년 10월27일이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겠지만 서울시 투표권자의 1%인 8만2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6개월 법적 시한이 4월26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4월3일 현재 취합된 서명자 수는 3만도 채 되지 않는다. 자칫 6개월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판이다. 수구세력의 “너희들, 목소리만 클 뿐, 역시 무능해!”라고 비아냥대는 소리는 집어삼킨다 해도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남이 대신 마련해주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진 주체적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겠다.

우리는 광신자들보다 더 열성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광신자의 뒤를 이어 열성적인 사람은 극우세력과 사익추구집단이다. 거둬 강조하지만, 광신과 극단주의, 그리고 사익추구는 그 자체에 열성이 담겨 있는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과 사회정의는 그 안에 열성이 담겨 있지 못하다. 우리가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과 사회정의를 지향할 때 그 자체에 담겨 있지 않은 열성을 의지로 결합시켜야 하는 이유인데, 이는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깨어난 민주시민의 징표가 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자기 몸이 놓이는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 몸이 놓이는 모든 자리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충족시키길 바란다면 그 출발요건은 인권 존중에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끝없는 여정을 요구하는 까닭이 우리 몸이 자리하는 삶의 모든 현장, 곧, 집터, 일터, 배움터에서 우리 모두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면, 학생들의 배움터이며 교사들의 일터인 학교가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 일차적 요건은 거기에 몸 자리를 두는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받는 데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배움터인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난 몸 자리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내 인

권이 존중받을 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중요한 삶의 거처인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를 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 소수자의 인권에 관해 배우고 존중하려면 배움터인 학교에 인권의 가치가 힘차게 살아 숨쉬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이른바 교권과 충돌한다고 보는 일부 주장이 있다. 그것은 우리 근대교육이 군국주의 일제 강점기에 뿌리내린 역사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교사들이 자기 일터인 학교에서 주인 되기를 바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권위적, 관료적 공간으로 남아 있는 학교를 민주적 공간이 되도록 하는 일로서 그것은 학생인권 신장과 같은 선상에 있다. 내가 존중받을 때 남을 존중하듯이, 내가 복종할 때 남에게도 복종을 요구하는 법, 억압에 맞서기보다 복종을 내면화한 교사일수록 교권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투표권이 없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앞장 선다는 점에서 ‘내 자식 이기주의’를 벗어난 ‘세대간 연대’의 멋진 예가 될 것이다. 지금 서울시의회 의 구성으로 볼 때, 시민발의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서울시민들께 청구인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www.sturightnow.net에 접속하여 청구인 명부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정해진 주소로 수신인부담으로 보내면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당신과 내가 믿는 것

뚝코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만세!! 라기 보다는, 새천년을 맞이했다거나 새해가 밝았다는,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뭔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처럼 멍하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만들어졌다. 서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한다, 혹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로 온갖 매체가 들쭉거렸다.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들어지고 주민발의라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주민발의? 만 19세 이상 서울 지역 주민의 1%가 서명을 하고 그걸 시의회에 제출하면……? 참 어렵다. 게다가 서울 주민 수의 1%는 약 8만 2000명, 정말 많기도 하다. 하지만 시의회나 교육청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잘려나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테니, 그것 보다는 우리가 고생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억울하게도 청소년인 나는 서명을 받을 자격이 되는 수임인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거리에서 서명을 받을 때는 언제나 수임인의 보조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소년은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다니, 참 화나는 일이다. 당사자는 쑥 빼놓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모든 것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10월 말에 시작한 서명운동은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2월 초순부터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아침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살인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거리서명, 고도의 심리 기술 마스터하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30초만 서명해 주세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 내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교사도, 학부모도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19살 청소년인 나는, 입춘이 한참 지났는데도 멈출 생각을 않는 칼바람을 맞으며 3시간째 이 멘트를 되풀이 하고 있다. 학부모나 이주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이란 말을 좋아한다. ‘차별’이란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두발복장 자유’라는 말은 엄두도 못 내고, ‘체벌금지’라는 말은 ‘폭력을 없애자’는 말로 대신한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

폭력'이라고 흔히 불리는, 학생 간 폭력 방지하지는 애기인줄 알고 서명하기도 한다. 속으로 '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하고 생각하며 웃음이 나오지만, 웃기는 너무 우울한 현실이다.

주민발의 서명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것도 사람들이 서명하기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칸에서 멈칫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거고, 서울 주민이신지 확인하는 데만



쓰이고, 데이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종이 짚로 시의회에 전달되고 등등 구구절절 절대로 유출되지 않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로 말을 더듬으면 안 된다.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대체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발의를 하라는 건지, 말리는 건지,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서명에 주민등록번호를 흔쾌히 써 줄까? 서명 검토는 이름과 주소만으로 가능하다.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더 편하겠지만, 결국 공무원들 편하라고 우리는 고생고생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거리에서 '학생인권'이 거절당하는 이유들

여기까지는 모두 전단을 보고 한 번이라도 멈춰 선 사람들의 경우이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서명을 하기 위해 펜을 들어주셨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저기에 설명되지 않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찾아 읽어보고, 공감해서 선뜻 서명을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서명용지를 받아간, 그야말로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도 몇 안 되지만 있었다.

서명을 해 주신 분들의 몇 십 배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원천무시하거나, 투명인간취급하거나, 가끔 어떤 분들은 “애들은 맞아야 돼.”라는 어이없는 멘트의 설교를 한다. 지금 바빠요, 시간 없어요, 라며 지나가는 사람들, 원망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1분의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니까. ‘괜찮아요’라면서 전단을 거절하고 말을 자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울고 싶어진다. 저는 안 괜찮아요. 고등학교를 그만 두기 전, 한자교사가 솔뚜껑만한 손바닥으로 애들 등쪽을 패면서 “등이 성감대거든, 다른 데 때려줄게.”라고 말했을 때의 모욕감과 분노를 잊을 수가 없어서 안 기쁘게 괜찮아요. 하지만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학교’는 드디어 출소한 감옥이고, 다시는 꾸지 않을 악몽이기 때문에 다시 그 실태를 듣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지금의 학교는 그렇게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안에서 자신의 불행을 표현할 수조차 없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망해간다. 서명 숫자는 결과를 예측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운동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안을 들여다 보면서 나오는 결론은 ‘망하게 할 수는 없다’이다. 나는 아직 거리에서 눈길을 주는 사람들을 믿고, 펜을 드는 사람들의 손을 믿으며, 신문의 작은 기사 한 줄, 짧은 뉴스 보도 한 장면에서 걱정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그리고 조금 더 바라도 된다면, 그 사람들이 주변 한 사람에게 더 말을 하고, 우리에게 서명을 보내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란다.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지금 해야 할 한 마디는 간결하고 명확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서명을 기다립니다.”

이현주 기자, 『"니네 부모 모자란 사람이냐"...교사들 언어 폭력 '여전』, 뉴시스, 2011. 04. 07.

"니네 부모 모자란 사람이냐"...교사들 언어 폭력 '여전'

"니네 부모가 모자란 사람이냐?" "하마 닳았다. 살 좀 빼라."

서울 중고등학생들 5명 중 1명 꼴로 언어폭력을 1주일에 1~2회 이상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7일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1년 사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겪은 적 없다는 학생들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주일에 1~2회 이상 언어폭력을 겪었다는 학생들도 2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폭력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욕설, 비속어 등 거친 표현'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인격 비하나 모욕' 18.0%, '성적, 외모 등에 대한 차별' 13.3%,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모욕' 9.6%, '성폭력, 성희롱적 발언' 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이 적은 사례를 보면 '니네 부모가 모자란 사람이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등 부모와 관련한 언어 폭력이 적지 않았다.

'너 같은 애는 학교 다닐 필요도 없다', '하마 닳았다. 살쪘다. 살 좀 빼라' 등의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성적인 모욕을 주는 교사들도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A학생은 "남자인 기술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떠들면 자기 입으로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했다"고 전했으며 B학생은 "얼굴 못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술이나 팔아라"는 말을 교사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최근 1년 사이 학교에서 자신 또는 친구가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한 적 없다'가 50.6%였으며 '가끔 당한다' 25.7%, '일상적으로 매우 자주 당한다' 9.0%, '상당히 자주 당한다' 7.6%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차별의 이유로는 성적이 49.4%로 1순위로 꼽혔으며 외모 14.1%, 과거 징계 및 처벌 전적 8.6%, 나이·학년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으며 중학생 145명(남 86·여 59), 고등학생 365명(남 186·여 179) 등 510명이 참여했다.

김도연 기자, 「“중·고생 다섯 중 하나는 매주 언어폭력 당해”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 침해 학교 시교육청에 감사 요청」,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4. 07.

“중·고생 다섯 중 하나는 매주 언어폭력 당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 침해 학교 시교육청에 감사 요청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 5명 중 1명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1~2회 이상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7일 서울의 중·고등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차별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본부가 학생인권 침해의 현실을 점검하고자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언어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은 최근 1년 사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얼마나 겪었느냐는 질문에 21.0%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1~2회 이상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 달에 1~2회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9.2%, 1학기에 1~2회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9.8%로 총 40%의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겪는 언어폭력의 유형은 ‘욕설, 비속어 등 거친 표현’(26.5%)이 가장 많았다. 한 학생은 설문지를 통해 “수학 선생님이 ‘재수 없는 난’이라고 했고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많은 언어폭력 유형은 ‘인격 비하 또는 모욕’(18.0%)이었으며 ‘성적, 외모 등에 대한 차별’(13.3%)이나 ‘가정·가족에 대한 모욕’(9.6%)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또 다른 학생은 “담임선생님이 조그마한 실수에 아이들 앞에서 ‘너가 그러니까 그따위로 살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등 가족을 비하했다”고 말했다.

차별을 얼마나 경험하느냐는 질문에는 ‘일상적으로 매우 자주 당한다’고 답한 학생이 9.0%, ‘상당히 자주 당한다’는 답변이 7.6%로, 16.6%의 학생들이 자주 경험한다고 답했다. 25.7%는 ‘차별을 가끔 당한다’고 답해 10명 중 4명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49.4%)이 성적을 꼽았다. 학생들은 “야자실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성적이 낮다고 거부당했다”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은 벌점도 봐주고 무단지각도 봐주고 출석부에 기재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며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차별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많은 차별사유는 외모(14.1%)였으며, 세 번째는 과거 징계 및 처벌 전적 등(8.6%)이었다. 나이(4.7%)나 장애(4.7%), 성별(4.1%)로 인해 차별받는다는 답변도 각각 4%를 상회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의 중고등학생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언어폭력과 차별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의 문화와 제도 전반을 바꿔나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이날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서울본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제보받은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학생들의 제보에 따르면 여전히 학교 안에서 폭력과 차별, 모욕적인 대우, 두발·복장 규제,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종교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본부는 그중 구체성이 있는 서울소재 중·고등학교 열세 곳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골라 서울시교육청에 감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서울 시내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21개 학교(중학교 8곳, 고등학교 13곳)에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었다.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학생인권,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사회를 여는 첫 걸음” - 서울학생 인권조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각계 대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1. 04. 11.

<보도자료>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학생인권,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사회를 여는 첫 걸음”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각계 대표 기자회견 -

□ 때: 2011년 4월 11일 (월) 오전 11시

□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앞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총서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배경내 (서울본부 집행위원장/인권교육센터 들)

1. 여는 말과 경과보고

- 사회자

2. 각계 대표 결의와 호소

3. 공동 호소문 낭독

- 홍세화(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

4. 질의와 응답

[기자회견 발언 예정자 명단]

■ 교육계

- 이병우 (전교조서울지부 지부장)
- 최석운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 장애학생 학부모)
-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의장)
- 둠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회원)

■ 노동계

- 이재웅 (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 김미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부분부장)
- 조채구 (공무원노조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지부장)

■ 정당계(가나다순)

- 김종민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유의선 (진보신당서울시당 위원장)
- 이선주 (사회당서울시당 위원장)
- 이해경 (국민참여당서울시당 여성위원장)

■ 종교계(가나다순)

- 김현호 사제(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 박승렬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무)
- 정상덕(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 정우식(대한불교청년회 회장)

■ 인권/시민사회(가나다순)

- 김기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
- 이해정(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팀장)

[공동 호소문]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차별과 폭력 없는 교육,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를 향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주어진 6개월의 시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제출 기한인 4월 26일까지 채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송구스럽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교육을 향한 원대한 항해가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유권자 1%인 약 8만 2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본부가 취합한 서명은 3만을 갓 넘긴 상태이다. 이대로는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들의 여론 호도, 교과부의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절차, 당사자인 학생들의 서명 불가 등 서명운동이 확산되지 못한 원인을 따지기에는 남은 여유가 없다. 대신 우리는 호소한다. 절박한 마음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호소한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서울에서도 학생인권과 민주교육의 물결이 굽이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서울시민들이 최선을 다해 동참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은 130만 서울 학생들의 삶과 민주교육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학생 통제와 반인권적 규정, 가난과 성적과 장애 등의 이유로 자행되는 갖가지 차별, 학교장의 독단 등 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폭력과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더 이상 우리 학생들에게 대물림할 수는 없다. 고통과 굴종의 경험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은 사람의 내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 각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육이 배움과 쉬임의 기쁨을 선사하고,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의 교육'으로 성큼 나아가기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성공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일구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인권을 존중받아본 사람만이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인권의 가치와 원리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때 우리 학생들은 인권의 소중함을 몸으로 익힐 수 있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해본 사람들이 민주사회를 여는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깊고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거름을 선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존엄성을 박탈당한 약자들의 삶에 손을 내미는 연대와 우애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믿는다. 남은 16일, 서울시민 유권자 1%의 서명 참여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성공은 물론, 인권과 민주교육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우리 학생과 교사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4월 26일, 서울시민의 힘과 열정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2011년 4월 11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이병우 외,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각계 대표 기자회견 발언록」, 2011. 04. 1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각계 대표 기자회견 발언록

배경내 : 지난 9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통과. 경기도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서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해보자 해서 주민발의 운동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교사들과 학생 당사자의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쉬웠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고,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이 확산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의 의지로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민발의 운동을 택하게 됐습니다.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들의 공세 속에서 학생인권이 반교육적이라거나 요즘 학생들 얼마나 무서운데, 하는 왜곡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에 기초한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의 열망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던 하지만 교육청의 계획에 힘을 실는 한편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주민발의 운동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감까지 보름여를 앞둔 날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래로 서명운동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개악 움직임이 있어서 이 흐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했구요. 그럼에도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구요. 학생인권에 관한 연속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체벌로만 학생 인권이 이해되는 현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언어폭력과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과 보고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구요. 보름여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로 집계된 서명부수는 3만2천에 불과합니다. 8만 2천여명, 서울시민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5만장을 더 조직해야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차례대로 모시고 주민발의 운동이 4월 26일 마감 시한까지 반드시 성공해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게 하지는 결의를 들었습니다.

이병우 : 전교조 서울지부장 이병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모두가 다 주지하듯이, 어른이나 아이나 청소년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또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수 언론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 이야기가 안타깝게 나오고, 엘리트를 죽이는 엘리트 교육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현실을 보면 이들에 한 명씩 우리 아이 청소년들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OECD조차, 정부에서조차도 제대로 통계를 잡기 어려울 만큼 차별과 폭력으로 아이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은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학벌의 최정점에 있

다 해서 그 분들만 조명될 게 아니라 지난 수십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마치 1년에 3천여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는데, 광주에서 2천명이 죽은 것만 부각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폭력 일부 학교에서의 근거없는 폭력, 불과 2, 3년 전이지만,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우리 아이들의 자유와는 관계 없는 강제적인 정규 교과 외의 여러 보충수업.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보장되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함께, 군사독재부터, 입시 위주의 무한 동물의 세계로부터, 이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아이들은 맞으면서 커야 한다, 또 극히 일부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의 혼란 교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복종과 굴종 속에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클 수 없으며 이 사회 민주화는 시작될 수 없음을 제대로 모르시거나, 우리 스스로 내면화된 군부독재나 신자유주의 정글의 세계에서 우리가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함께 4월의 찬란한 봄처럼 민주화와 인권의 출발인 주민발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단체, 시민 분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배경내 :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을 힘들게 만든다, 학생과 교사가 대립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하려 합니다. 장애 학생의 부모님이시자 장애인교육권연대 최석운님을 모시고 장애 학생 부모 입장에서라도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 들으려 합니다.

최석운 : 반갑습니다. 인권이란 것에 대해 새삼스레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강제 당하고 억압당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어가고 색을 입혀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이 인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써앗을 뿌리고 그것이 가치를 제대로 발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기 오는 동안 생각해보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때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단 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학생과 교사 어른과 아이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특히 그 안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놀림의 대상 폭력의 대상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권의 가치가 학교 안에서 퍼져 나갔을 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배경내 : 이어서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이희정 회장이 예비교사로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희정 : 아이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교감하면서 성장하는 학교가 늘어나길 바라는 예비교사로서, 예비교사

동지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수많은 예비교사들은 오늘도 책상에서 하루빨리 교사가 되길 바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면서 참다운 교육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에 힘들어 하거나 반인권적 폭력에 상처 입은 친구들의 버팀목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들 역시 꿈꾸던 학교 생활과 선생님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교사들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학교의 폭력성에 노출된 적이 있던 만큼, 동생들 후배들의 삶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비교사들도 열심히 알려내고 참여하겠습니다. 바라는 학교, 아이들과 대화하는 일, 수업이 오매불망 기다려지는 학교 현장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민주주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교육, 보다 성숙한 시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청사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내 :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소년들의 동참이 가능했다면 이미 10만 20만 넘어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이면서도 법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뚝코 :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에서 활동하는 뚝코라고 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려고 같이 활동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가판을 깔고 수임인들 옆에서 전단지 나눠드리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 분들께 말을 건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은 생각만큼 많이 모아질 않아요. 학생인권이 긴 시간 동안 쟁점이 되고 토론이 되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럴 만한 내용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인간이고 그렇기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시민의 힘으로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겨우 몇 대 안 맞는 걸로 안심하고 머리 안 깎이려고 아동바둥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상상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권자가 아니라 이유로 자기 인권 보장을 위해서 서명 몇 천 몇 만을 모은다 하더라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억울하고 합니다. 어른이 된 모든 분들이 청소년 시기를 보냈었고 학교 다닐 때 부당한 일이나 서럽던 일 많이 당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셨던 학교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들, 그런 걸 떠올리며 서명을 위해 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뭔가 바뀌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으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서명을 통해 목소리를 더하고 조례를 발의 해주시는 건 서울 시민 여러분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손으로 서울 학교에 인권이 살아 있을 수 있게 상식이 있을 수 있게 변화시켜주시십시오. 감사합니다.

배경내 : 노동계에서도 오셨습니다. 노동자들이 왜 학생인권에 관심을 갖는가 연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본부장님 말씀 들겠습니다.

노명우 : 반갑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어느 분야든 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장애인권도 노동인권도 관한 부분도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60, 70년대 독재정권에서 자라온 학교 현장과 지금의 교육강식의 환경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입시에 내몰리고 강제됐던 그 방식이 그대로, 21세기를 향해 달리는 현 시점에서 맞는 것인가 재고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정말 인권이 존중되고 모두가 참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그동안 서명운동 진행해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원들 동지들도 사랑의 매라든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서명의 문제를 뛰어넘어 학생들이 제대로 인권으로 보호받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세대로 피어나는 공간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내 : 전국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님 말씀 들겠습니다.

안효완 :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안효완입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 혜택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죠 자녀가 그 전과 지금 모습이 완전 다른 거 같습니다. 학교 가는 걸 즐거워 하구요 벌써부터 머리부터 복장부터 자유화되는데, 확실히 자녀들이 환경이 달라졌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일제 잔재 교육 문화가 뿌리 깊게 있는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부터 학교 문화가 인권이 없고 매를 들어야 한다, 그런 일제 문화가 뻗속깊이 배어 있는 거 같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이런 일제 문화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이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합니다. 학교 현장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사회 진출하기 위해 인권이 민주주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지부장님들 만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내 :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김미성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김미성 :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존중 받아본 사람이 존중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존중받아서 사회 나와서 스스로 어른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노조 조채구 지부장님 말씀 들겠습니다.

조채구 : 여러분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할 때,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학교 민주주의 학교 민주화가 꽃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가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입니다. 일부 학생만 꿈을 꾸어서는 안 되고, 모든 학생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미래에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일부 학생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 지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내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님 발언 청해 들겠습니다.

김종민 : 워낙 말씀 많이 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요구하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쟁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마지막 남은 기간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과정 중에 일정하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고민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넘어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뒤에 들고 계신 저 간단한 방식으로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내 : 진보신당 서울시당 유의선 위원장님 발언입니다.

유의선 : 지금 필요한 건 절실함인 거 같습니다. 절실함으로 몸과 마음으로 움직여서 학생인권조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설레임인 거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지 꿈꾸며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은, 믿음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서명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경내 : 사회당 서울시당 이선주 위원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선주 : 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 인권은 유보당하고 억압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교과목이 아니라 10대를 넘어 20대를 준비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권과 존중과 공부를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폭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폭력 피해자는 그것이 평생 각인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 모든 걸 바꾸는 출발점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당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내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의 이혜경 님이 발언해주시기로 했는데 긴급한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시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김현호 님 말씀 청해 들겠습니다.

김현호 : 성공회 사제 김현호라고 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대로 못했어요. 제 개인적 고백을 말씀드리면, 강경대라는 학생이 20년 전 죽는 모습을 보았는데, 2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인권이란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상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터라 인권이란 게 뭔지를 몰랐는데, 아이들이 인권이란 게 뭔지 일찌감치 배우게 된다면 강경대라는

억울한 죽음이나, 최근 학생들의 자살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종교계가 많이 보수적이죠? 가장 많이 안 고치는 곳이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 쪽 같은데. 당초 성경 말씀은 보수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권조례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버릇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은 종교인들이 가르침에 근접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반성해봅니다. 열심히 기도할 거구요. 남은 시간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내 : 한국교회인권센터 김은영 목사님 말씀 들겠습니다.

김은영 : 신부님께서 제가 할 말 다 하셔서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서명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 협조해주신 교회, 목사님들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구요. 문전박대한 교회와 목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하시고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경내 :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상덕 교무님 나오셨습니다.

정상덕 : 예 지금 서명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도 우리 사무국 직원부터 다 서명을 받았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명운동에 더 열심히 동참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경내 : 불교계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님 말씀 들겠습니다.

정우식 : 대한불교청년회 26대 중앙회장 정운식입니다. 모든 차별, 특히 종교적 억압이나 강요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에서 사실 뒤늦게 3월 하순경 이걸 접하고 뛰어들어서 아직 많지 않지만, 3만명을 목표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인이 앞장서서 학생들의 미래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내 : 사실 대한불교청년회가 적극 나서주시겠다는 말씀 듣고 날개를 단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톨릭에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지 못했지만 여러 성당에서 청년회에서 활발히 서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구요.

마지막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분들 말씀 들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기식님 발언입니다.

김기식 : 제가 90년대 후반에 일하던 참여연대에서, 아동인권규약에 근거한 아동인권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독립적 인격체로 인권을 가진 주체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없는 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한편에서 보면 어른들의 성찰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배경내 : 인권재단 사람 이사 박래군 님 말씀 들겠습니다.

박래군 : 어제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 자살예방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면서 발표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초중고 학교에서 모두 870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입시경쟁 뿐 아니라 생존 경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꿈을 키우게 아니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은 학교가 전쟁터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전쟁터에서도 한 해 150명 죽어간다면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벌이니 간접체벌이니 무상급식이니 한가한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옥상에 올라간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고 목숨 끊으려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가입한지 20년이 됩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학생들 죽지 않도록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민들이 나서줘야 합니다. 깨어있는 서울시민들 힘으로 주민발의 성공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경내 : 오늘 자리는 못 오셨지만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위해 부지런히 발품 팔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공동 결의와 호소의 뜻을 담은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저희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를 홍세화 선생님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홍세화 선생님의 간단한 말씀 후에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님과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홍세화 : 무엇보다 지금 3만여장밖에 안 돼서 5만장이 지금 필요한데요. 지금 시민들에게 서명을 요청하기 위해 많은 분들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청구인 대표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 계신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이 분들이 다짐한 거에 상응하게 거리 서명에도 좀 더 열심히 단위별로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청구인 대표 자격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소문을 읽겠습니다.

(호소문 낭독)

김도연 기자, 「카이스트의 비극...하지만 청소년들은 더 일찍 죽어간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 보름 동안 5만명 받아야...각계 대표 동참 호소」,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4. 11.

카이스트의 비극...하지만 청소년들은 더 일찍 죽어간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 보름 동안 5만명 받아야...각계 대표 동참 호소

교육, 노동, 정당, 종교, 인권 등 각계 대표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주민발의 마감 시한을 불과 보름 앞둔 11일 서울 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사회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주제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에만 자살한 초중고생 수가 146명으로 이들에 한 명의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남은 보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서울시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교사들을 향한 호소도 이어졌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조차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학생의 인권을 제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학생인권을 제기하는 것은 교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인권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으로 시작해서 교사들의 자긍심과 교권을 완전히 세우자”고 말했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보장을 위해 서명을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많이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둠코 활동가는 “학생인권은 기나긴 시간 동안 쟁점이 되고 토론거리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상식이고 기본”이라며 “서울시민의 손으로 서울의 학교를 인권이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참여한 서울시민은 3만 2천여 명으로 성사 인원인 8만 2천까지 5만여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본부가 매일 거리서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리에서 수거되는 서명지는 하루 천여 장 정도로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존엄성을 박탈당한 약자들의 삶에 손을 내미는 연대와 우애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믿는다”며 “남은 16일, 서울시민 유권자 1%의 서명 참여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성공은 물론 인권과 민주교육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우리 학생과 교사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는 서울본부 홈페이지(www.sturightnow.net)에서 엽서 서명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우편료는 서울본부에서 부담한다.

서울본부는 교육청이 주도했던 지난 경기도 조례제정보다 현장 교사와 학생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주민발의 운동 방식의 조례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오는 26일 마감된다.

정유진 기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서명운동 호소 도보행진」, 경향신문, 2011. 04. 19.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서명운동 호소 도보행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학교를 바꿔주세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소속 시민단체 회원과 청소년 30여명은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국립 4·19민주묘지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서명 참여를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서명운동 마감 기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서명한 시민의 숫자는 4만여명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주민 발의를 성사시키려면 서울시민의 1%인 8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권단체 ‘나다’의 활동가인 전누리씨는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어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교실이 붕괴될 것이라고 호도한 일부 언론 보도의 영향도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청소년 인권단체 '이수나로'의 활동가인 '다영'(19)은 “지난 6개월간 매일같이 거리에 나와 가판을 깔고 전 단지를 나눠주며 선전전을 벌였다”면서 “그러나 서명용지를 찢어 우리 얼굴에 뿌리고 가는 일부 시민들을 볼 때면 학생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는 좌절감이 들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생의 ‘본분’과 ‘인권’이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서명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한 4·19 혁명의 뜻을 기리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대학로를 거쳐 4·19묘지까지 도보행진으로 진행됐다. 서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홈페이지 (www.sturightnow.net)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주의의 비참과 학생인권조례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자가 무려 25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은 원래 마감일을 하루 앞둔 25일까지 법적 요건인 8만2000명조차 채우지 못했다. 선거기간과 맞물려 마감일이 2주 연장됐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민발의 실패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다. ‘서울시민 1%도 찬성하지 않는 진보’라는 보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진보의 무능을 탓하는 일은 두렵다. 가장 참담한 것은 청소년들이 진보와 기성세대의 ‘외면’을 지켜보게 될 일이다. 자기에 관한 일인데도 법적 서명 권한이 없어 기성세대의 동참을 호소할 길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진보와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와 환멸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주민발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학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너도나도 젊은이들의 정치 무관심을 탓한다. 그러나 무려 12년 동안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봉쇄당하는 학생들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독일 대통령이 16살 때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미국에서 18살 고3 학생이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먼 나라 일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마치 중립인 양 오해하는 이들을 대거 양산하는 교육을 내버려두고, 동료 학생이 여럿 죽어나도 서남표 총장의 개혁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우등생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두고 민주주의의 미래는 가늠할까.

모든 역사적 변화는 ‘질문’에서 비롯됐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여성은 왜 교수대에는 오르면서도 연단에는 오를 수 없는가? 교사는 왜 노동자가 아닌가? 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장애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닌가? 애초 위협하기 짝이 없었던 이런 질문들이 진보를 일궈온 거름이었다. 변화를 꺼리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질문을 품는 이들의 출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자고 한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미세혈관을 타고 온몸을 휘돌아 결국 사고를 정지시키도록 만드는 갖가지 규제와도 결별하자고 말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자마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

론들이 ‘촛불’을 떠올린 까닭이다. ‘학생은 공부나 해’, ‘비판적 사고방식은 지금 필요 없다’는 말들이 맹위를 떨치며 침묵과 미성숙을 강요당하는 학교에서 질문이 파릇파릇 피어날 수 없다. 그들은 예민하게 진실을 포착했다.

질문이 봉쇄된 자리에 남은 것은 폭력과 강제의 악순환이다. 지난 24일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공포의 집합’ 장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그 대물림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선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막무가내 구타를 가하면서도 선배는 그 행동을 ‘매’라고 부른다. 후배들은 선배의 ‘가르침’에 감사하다고 답한다. 극소수 대학과 학과에서만 일어나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다. 선도활동을 벌이다 후배를 숨지게 한 고교 학생회장 이야기, 운동부 코치의 훈육으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용인되는 폭력은 도처에 깔려 있다. 학생 사이의 폭력에 대해선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이는 나라에서 폭력의 화수분 노릇을 하고 있는 학교의 폭력에는 그토록 관용적인가.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지는 못해도 변화의 포문을 열리란 건 분명하다. 다시 2주간 역전만 루훤런의 기회가 찾아왔다. 주민발의 방식이 함부로 길을 나선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루어두자. 바로 지금,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서울시민은 주민발의 사이트(www.sturightnow.net)에 접속해 참여하면 되고 이미 서명한 사람은 한 사람씩만 더 모으면 된다. 무장 타오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신뢰할 만한 기성세대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

양새슬, 「김태원의 멍꽂과 학생인권조례 - [기고] 학생인권조례 서명지에 8만 2천 명의 이름을 채워넣자」,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4. 25.

김태원의 멍꽂과 학생인권조례

[기고] 학생인권조례 서명지에 8만 2천 명의 이름을 채워넣자

양새슬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얼마 전 TV에서 록그룹 부활의 김태원 씨가 출연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TV에서 그를 자주 보아 왔던지라, 그가 털어놓을 인생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담담하게 털어놓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선생님이 교실의 앞에서부터 뒤까지 “따귀를 수도 없이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몸이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망가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행냄새) 자체도 싫었다.”, “학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는 학교를 간다고 하고 담벼락을 따라 학교를 돌았다. 영화로 치면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다.”

재치 있는 입담과 상식을 깨는 자유로운 발상이 좋아 김태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학교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응어리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학교가 가한 폭력적인 개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교실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맞아야 했을까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연초록빛 ‘태원’이 얼마나 맞을 것을 했기에 그렇게 맞았어야 했을까요?

스페인의 자유교육 선구자였던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 1859~1909)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검붉은 멍꽂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피어난 멍꽂은 쉽게 지지 않고 세월과 더불어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길들여진 매타작의 그들은 제게도 깊은 음영을 드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며칠 안 맞았더니 몸이 근질근질하지?”라는 선생님의 겁박은 단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전달되는 신경계의 리얼리티였습니다. 며칠 안 맞으니 정말 근질근질하더군요. 매에 길들여진 신체. 하지만 더욱 몸서리쳐지는 것은 그런 폭력의 희생자가 지위와 위치가 바뀌었을 때 또 다른 가해자가

되거나 그런 폭력의 구조를 목도하고도 쉽게 동의하고 방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인 지인이 며칠 전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교사의 체벌에 학생이 대들다가, 출동한 학생부 교사들에게 심하게 맞았다. 우리 딸은 교사의 폭력과 이에 덤덤한 친구들의 모습에 충격을 크게 받은 모양이다. ... 교사폭력을 본 아이는 어젯밤 많이 울었다. 교사가 밋고, 무덤덤한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현실이 억울해서인가 싶었다. 그러나 아이가 온 진짜 이유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비겁하다고 느껴서였다. 나도 그냥 같이 울었다.”

김태원 씨의 기사에는 네티즌들이 몇 천 개의 댓글을 달아 각자의 체벌 경험담을 쏟아놓았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니 우리 기억 속 악몽 같던 학교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안에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겁하다고 느껴서 울었던 아이 대신 자책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서명과 8백 16만의 부끄러움

UN은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이 협약은 1990년 발효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협약에는 놀랍게도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이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동의 결사·집회·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전에 말이죠. 하지만 각종 국제통상과 관련한 협약을 맺으면 그에 발맞춰 국내법을 서둘러 정비하는 이 나라에서 20년이 지나도 아동권리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추겠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민, 청소년, 교육, 종교, 인권 단체 등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 7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을 조직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출범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체벌 금지’ 내용만이 아니라 결사·집회·표현의 자유와 같은 UN 아동인권협약 등이 담지하고 있는 철학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8만 2천 명의 서명을 모아야 했습니다. 서울 시민 8백 2십만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이 서명을 받기 위해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서울시내 여기저기서 ‘동분서주’했습니다. ‘동분서주’라는 단어가 너무 상투적인가요? 이 상투적인 말을 청소년 활동가가 직접 풀어 쓰면 더 생생하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7시간 동안 서명을 받으며 13.5km를 꼬박 걷고 다음날에도 빼근한 온몸을 억지로 스스로 두들겨 깨워 거리서명에 나서는 청소년 활동가들,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해온 서명 받는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끝내 눈물을 흘리는 청소년.

청소년 활동가들이 방시능 비가 내린다는 거리에서 흘린 땀이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서명지로 갈무리 됐습니다. 명품 서명지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4만 명을 갓 넘는 수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습니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은 또래 시절 친구가 매타작을 맞는 걸 보면서 손을 들어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끄러운 건 4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 아닙니다. 인터넷 서명도, 팩스도, 이메일도 아닌 자필로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혹은 직접 건네야만 유효한, 어렵사리 모아진 그 숫자 4만 명은 오히려 자랑스럽고 감사한 숫자입니다. 외려 제가 부끄러운 숫자는 8백 2십만 서울 시민 중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8백 16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제가 보던 힘이 작아서 부끄럽고, 제 주위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부끄럽습니다. 오늘이라도 서울에 사는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열심히 돌려봐야겠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지금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있을 전국의 수많은 ‘태원이들’ 때문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엽기 체벌’이라고 한번 검색해보면 수많은 엽기적 뉴스가 뜹니다. 심했으니 뉴스거리가 됐겠죠. 작곡상도 받고 좋은 노래도 만들 미래의 ‘태원이’가 지금도 학교에 대한 공포, 절망을 느끼면서 어디에선가 학교 담벼락 주위를 빙빙 돌고 있을 것입니다. 자학 속에 멍꽂이 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태원이들 앞에 영영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입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총선 때문에 온통 세간의 관심은 진보대통합이니 야권연대니 보궐선거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1987년 6월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여겨집니다. 2011년의 ‘태원이’도 말할 겁니다.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말합니다. 멍꽂을 몸과 마음에 새겨 넣는 곳, 검붉은 멍꽂을 훈장처럼 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울음을 소리 없이 울어야 하는 곳, 그곳을 학교로, 말 그대로 ‘배움터’로 만들어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멍꽂 대신 매값을 줬다는 어느 체벌과는 달리 우리는 멍꽂 대신 소중한 서명지에 이름자를 채워 8만 2천 명의 숫자를, 아니 10만, 20만, 100만 명의 숫자를 채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6.29를 위해 지금도 거리에서 따가운 봄볕을 맞으며 목청을 높이고 있을 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지금 어른들도 청소년 시기를 보내셨고 학교 다닐 때 부당한 일이나 서럽던 일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하셨던 학교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들, 그런 걸 떠올리며 서명을 위해 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활동가 둠코의 말)

※ 학생인권조례 참여 방법 :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에 접속해 서명지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수신인부담으로 보내집니다. (참고로 애초 4.26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기한이 강남, 중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5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덧붙이는 말 : 양새슬 - 고등학교 시절,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사태를 겪었고 여기 저기 집회 현장을 뛰어다녔던 기억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노동지역사 한나라는 단체에서 일했었고 가끔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과 만나서 연초록 시절을 떠올리며 산다.

황철환 기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2주 연장」, 연합뉴스, 2011. 04. 26.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2주 연장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진보 성향 교육·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기한을 2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 이날 마감할 예정이었던 서명운동 기한을 서울 강남구와 중구 재보궐 선거를 이유로 14일 뒤인 내달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서명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의로 추진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8만2천여명)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서명자는 6만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작년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고 5개월여간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시교육청이 만들 조례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향마당]학생인권조례, 2주간의 ‘희망 고문’ 을 생각하며

이계삼 |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대한민국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 문제일 것이다. 조변석개하는 입시제도와 사교육 열풍을 따라가려면 부모들은 교육 제도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정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교육전문가’라는 우스갯소리마저 생겼다.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도 근래 좀 의아하고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름아닌 주민발의로 진행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 모집에서다. 정족 인원수는 서울시 주민 1%에 해당하는 8만1858명이지만 마감일인 4월26일 현재 7만명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다니, 보수 언론들은 이를 두고 기다렸다는 듯 쾌재를 부르며 “거 봐라~” 하며 몰아칠 태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상 밖이고 의아한 일이다.

내가 보기에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싫어하는 이들은 보수 언론이 아니라 교사 집단이다. 표정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진보적이라 자부하는 교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이자 수난자라고 느끼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 대들거나 통제가 안되는, 교육불가능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 집단이 기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권능이 바로 ‘교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해 주면 결국 교권이 무너진다고 믿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거의 무기력했던 것도 이런 흐름의 반영일 것이다.

“아이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다만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이번 조례제정운동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며, 허위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통제가 안되는 아이를 회초리로 누를 수 있는 권능은 교권이 아니다. 교권이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아이들이 부여해 주는 도덕적 권위이다. 학생인권과 마찬가지로 지금껏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도 없었다. 교권을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4월26일로 종료되었어야 할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 모집 기한이 4·27 재·보선 선거로 두 주가 연장됐다. 대한민국의 미래 동량들이 존중받고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모집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5월11일까지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http://www.sturightnow.net>)를 방문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이는 위기에 빠진 교육현장을 구하는 첫걸음이자 교권과 학생인권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시민 8만5000명 서명 참가

시교육청도 조례안 구상

체벌 금지·두발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와 전교조 서울지부 등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12일 “주민발의의 성사 조건인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1%(8만1855명)를 넘겨 8만50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7일부터 시작된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4·27 재보궐 선거 탓에 원래 종료 예정일인 지난 4월26일에서 2주 연장돼 10일 마감됐다. 지난 4월26일까지도 발의에 필요한 서명인의 숫자를 채우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연장 기간 2주 동안 시민의 참여가 크게 늘어 주민발의에 성공했다.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주민발의의 성공은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는 등의 비판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울본부는 오는 19일까지 청구인 명부 분류·정리를 마친 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서명인 명부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명부를 제출받은 뒤 89일 안에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제 금지 △두발·복장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학교 안팎 집회 개최와 참여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시교육청도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단’을 꾸리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서울본부의 주민발의안을 참고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구상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열리고 있는 지역별 공청회를 마친 뒤 오는 6~7월께 조례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조례안과 주민발의안이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올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 8만5천 명 서명... “학생인권은 이제 시대적 대의”」,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5. 12.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8만5천 명 서명... “학생인권은 이제 시대적 대의”

김도연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8만5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해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서울 지역의 주민발의 성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5월 10일자로 종료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12일, “이날 오전 10시, 서울본부에서 집계한 서명지는 약 8만5천여 명”이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되었다”고 선언했다.

서울본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 성사 조건인 서울시민의 1%, 8만 1855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거리서명, 엽서서명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집계 결과인 8만5천 명은 성사 인원을 3천 명 정도 웃도는 수치로 중복 서명자, 일부 항목 미기재자 등을 제외하면 유효서명 인원은 집계 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되나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명운동과 검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오류로 무효 처리되는 비율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성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또 “현재 법적으로 정해



▲ 지난 4월 19일, 청소년 2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울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광화문에서 국립 4.19민주묘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진 기간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과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서명이 속속들이 우편으로 도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음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참여한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서명이 5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울본부는 이번 주민발의운동을 통해 “학생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민들의 지지 속에 주민발의로 성사됨으로써 학생인권의 시대가 경기도를 넘어 시대적 대세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이 같은 서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는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본부는 “서울에서의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발표한 경남 등 다른 지역 역시 힘을 받을 것이며 학생인권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본부는 이후 10일 동안 구·동별 정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제출 마감일인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명운동 제출 및 주민발의 서명운동 보고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 시민들의 힘으로 꽃피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1. 05. 20.

<보도자료>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 시민들의 힘으로 꽃 피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

□ 때: 2011년 5월 20일 (월) 오전 11시

□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권교육센터 들)

1. 여는 말 및 주민발의 서명운동 경과보고
- 사회자
2.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내용 및 주민발의 성사 의의 소개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이모저모
4.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대 시민 감사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6.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식

[자료 1]

학생인권의 봄날을 열기까지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운동 취지와 경과보고

■ 주민발의운동의 취지

- 경기도 조례 제정의 경험에서 현장 교사와 학생 주체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에 대한 반성. 현장의 준비됨과 교사들의 적극적 협력 없이 조례는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

-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민발의 서명운동 채택.

- 학생인권에 대한 부풀려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 학생인권이 '무서운 학생'의 얼굴이 아니라, '존중과 소통에 기초한 교육'을 꿈꾸는 시민들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학생인권 현실과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견인.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주요 경과

- ▷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구성.
- ▷ 2010년 2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 발표
- ▷ 2010년 5월, 교육감 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협약식' 개최
-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 ▷ 2010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을 계기로 체벌 전면 금지 계획 발표
- ▷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

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과부의 체벌 합법화, 학교규정을 통한 학생인권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상위법 개정 시도 움직임.

▷ 2010년 9월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 2010년 10월 6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 2010년 10월 6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 **2010년 10월 18일, 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지역 학생 1885명, 교사 1478명, 학부모 959명 대상 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6%, 교사들 88.7%, 학부모는 87.6%가 필요하다고 답해.

▷ 2010년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발의안 확정

▷ **2010년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

▷ 2010년 11월 2일, 81돌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 2010년 11월~12월 :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실시 이후, 몇몇 언론들의 '위험한 학생론', '학생 vs 교사 대립' 보도 급증. 서명운동 주춤.

▷ **2011년 1월 17일,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1월말 학교장의 학생 권리 자의적 제한, 간접체벌 허용 등 반인권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입법 예고**

▷ 2011년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120여개교가 학생인권조례 취지와 상반되는 학교생활규정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추진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에 버티기로 일관.

▷ 2011년 1월 2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 주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1년 2월 8일, 영하의 추위를 뚫고 매일 주민발의 서명전 돌입. 주말 집중서명전, 행사장 서명도 이어져**

▷ 2011년 2월 15일, <교과부 인권침해 정책, 청소년 긴급 성토크대회> 개최

▷ 2011년 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한다> 집담회 개최. '학생인권 vs. 교사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질타

▷ 2011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결정.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 발표.

▷ 2011년 3월 6일·7일,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보도, 서울본부 기획 참여.

▷ 2011년 3월 8일 : 서울 중암중 체벌사건 규탄 기자간담회 개최

▷ 2011년 3월 14일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애초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으로 삭제. 그러나 간접체벌 허용의 불씨 남겨.

▷ 2011년 3월 14일~31일,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5회 연속 개최(경향신문·오마이뉴스·한겨레 공동 후원).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범희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교장,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백창우 시인/작곡가 초청 강연.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에 관한 높은 공감대 형성

▷ 2011년 4월 7일,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1주일에 1~2회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 인격 비하 등)을 경험. 16.6%가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하고, 25.7%는 가끔 차별을 당한다고 답해.

▷ 2011년 4월 11일,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2011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

▷ 2011년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애초 4월 26일 마감이었으나 서울 중구, 강남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8만 1885명을 뛰어넘는 **8만 5281명의 서명 취합.**

▷ 2011년 5월 11일~19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2011년 5월 20일 10시 30분,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겨울에서 봄으로!

▷ 2010년 봄의 시작 : 7월 7일 서울본부 출범 이후 교사, 청소년, 시민사회 등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작성.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참고로 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안을 작성. 10월 27일부터 주민발의 운동 시작

▷ 2010년 먼저 찾아온 겨울 : 초기 3개월간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대응과 영하의 추위, 주민발의 운동의 생소함 등 여러 요인들이 얽히면서 서명 운동이 제대로 불붙지 못함. 2011년 1월말

까지 서명이 기대만큼 취합되지 못함.

▷ **2011년 겨울_봄** : 1월말 주민발의운동 방식을 계속할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내부 토론을 전개. 주민발의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 취지대로 주민발의 운동을 지속하기로 재결의. 2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매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거리서명전 진행. 각종 행사장과 시민들의 삶터로 찾아가는 서명 활동, 학생인권 연속 특강,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동참 호소 활동 등을 열정적으로 전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일반 시민은 물론 종교계, 노동계, 언론출판계, 진보정당계 등 각계 동참의 불이 붙기 시작.

▷ **2011년 이른 봄** : 주민발의 종료 시점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서울본부 소속단체들이 열정적으로 서명활동을 전개하기 시작. 4월 4일자 <한겨레>에 실린 홍세화 청구인 대표의 칼럼, 청소년들의 절절한 호소를 다룬 기사 게재 등을 계기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증폭. 서명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 시민들의 거리서명 참여 열도가 높아지는 한편, 우편 서명도 속속 도착.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 서명보다 발품을 팔아 직접 만난 시민들, 학생인권조례의 뜻에 공감한 낯모를 시민들의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 그러나 4월 26일 애초 주민발의 성사 시점에도 8만2천여 명을 채 모으지 못함. 4.27 중구와 강남구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로 인해 중구와 강남 일부에 한해 서명운동이 연장되면서 '10회말 역전만루홈런'의 기회가 찾아옴.

▷ **2011년 늦봄** : 노동절, 어린이날, 시청 앞 축제, 부처님오신날 한마당축제 등 중구에서 여러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서명 참여율이 가파르게 상승. 그 사이에도 속속 우편 서명지들이 도착. 서명 마감일에 이르자 애초 목표 인원보다 3천여 장이 많은 8만 5천여 명으로 집계. 역전만루홈런에 성공.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이후 절차

- * 공표 (5일 이내)
-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 * 심사, 결정 (14일 이내)
- * (유효 서명인이 부족할 경우) 보정(5일 이내)
- *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주민발의 조례안 제출 (60일 이내)
- * 서울시의회 심의 및 의결

■ 학생인권조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인권의 역사

▷ 80년대 말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교육민주화와 더불어 학생인권 보장을 함께 요구. 청소년인권운동의 싹이 텄던 시기.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1년 대한민국 정부 가입**.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1차 협약 이행 권고 발표.

▷ 1995년 최우주 학생(춘천고 1학년)이 '강제 보충·야자는 학생의 인간다움, 방과 후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중고등학생복지회>라는 **최초의 청소년인권단체가 결성**. PC통신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시도**. 당시 교실붕괴 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중단됨.

▷ 2000년 이른바 **'노컷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 온·오프라인 청소년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체를 중심으로 두발자유 서명운동이 전개. 청소년/비청소년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짧은 기간 16만여 명의 서명이 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 권고에 이어 2차 권고 발표**. 1,2차 권고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해지면서 유관단체와 교육계, 시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 계기를 마련.

▷ **2005년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이 개최되는 등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 번 들끓기 시작**. 학내 종교 자유, 선거권 인하, 정보인권 보장,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등 청소년인권 운동의 의제 역시 확산되기 시작.

▷ **2006년 17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면서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의 운동이 전개**. 각계 단체들이 모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의 법 제정 운동,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전국행진 등을 통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요구. 2007년 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신설되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2009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중앙 법률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격화하기 시작. 초·중·등교육법이 담아내지 못한 구체적인 학생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권리회복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 2010년 9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진보교육감이 6개 지역에서 당선.

▷ **2011년 5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성사.** 교육청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 강원, 광주 등을 제외하고, 경남, 충북 등지에서도 주민발의 운동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 밝혀 학생인권이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게 됨.

[자료 2]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주민발의 운동 성사 의미

■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주요내용

○ 주민발의안의 구성(총 5장, 50개조)

장	장의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조례의 목적, 개념 정의, 학생인권보장 일반 원칙, 교육관계자의 책무, 교육관계자의 교육환경개선 노력의무
제2장	학생의 인권	○ 총 10개의 절과 23개 하위 권리조항으로 구성 ○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제4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5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제7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제10절)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의날(제29조), 인권교육과 홍보(제30조~제33조),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인권실천계획 수립(제34조~제35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6조~제37조),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제38조), 시민활동 지원(제39조) 등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제40조~44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제45조~47조) 등
제5장	보칙	학교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제48조) 등
부칙		조례 시행일(제1조), 경과조치(제2조)

▪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도록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합니다. 학생은 몸과 인격을 무너트리는 체벌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과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평화적인 학교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 차별받지 않은 권리와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차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듭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욱더 낮춰질 것입니다.

▪ 학생들의 개성이 꽃을 피우도록

-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함.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규제, 용의복장 규제 등의 지금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하나하나가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임.

▪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건강이 보장되도록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교에서 진행되는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은 학생의 아침밥과 잠을 빼앗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쳤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았음. 학생인권조례는 0교시를 없애고 보충학습과 야간학습을 학생의 선택을 보장함. 즉,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만들 수 있음.

▪ 대화와 소통의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학교규정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만이 아님.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임.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 진행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임.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임.

▪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보장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

-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실천계획 작성,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생인권침해의 당사자이자 방관자였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달라짐.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신장을 위한 계획이 마련·집행되

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음.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겨 학생인권에 전문적인 인사가 학생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 학생인권조례로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성사의 의미

- 유치원과 학교 안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및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주민발의 서명참여라는 직접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연대와 지지의 의지를 확인한 결과임.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는 2004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2009년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세 번째로 성사된 주민발의 사례임. 무엇보다 이전 주민발의안이 발의 조건을 충족하고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수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지역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될 수 있는 것임.

-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의 지지 속에 주민발의로 성사됨으로써 경기도에서 불어온 학생인권의 시대가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시대적 대세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아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발표한 경남 및 충북 등 타 지역 역시 학생인권보장의 흐름이 힘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며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봄.

[자료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이모저모 - 감동의 순간들 -

○ 어느 당당한 시민 분의 한 마디 “아무데나 아무나 다 빨갱이래요?”

은평에서 거리서명을 받던 중의 일입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께서 “이거 전교조에서 하는 거지? 수업은 안 하고 이런 거나 받으러 다니고… 이 빨갱이들. (서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거 서명하면 다 빨갱이 되는 거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자리엔 대학생과 인권활동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전교조 교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판대에서 서명을 하고 있던 어느 중년 여성 분의 말. “학교에서 맞은 사람은 그 상처가 평생을 가요 어디서 아무데나 아무나 다 빨갱이래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혀를 찡찡 찰 뿐이셨죠. 당당한 시민 분의 한 마디였습니다.

○ “경기도 사람이라 미안해서”

4월. 꽃이 활짝 핀 봄이었지만, 그래도 거의 하루 8시간씩 밖에서 거리서명 받는 사람들에게 봄은 아직 추웠습니다. 그 날은 서울대학교 안에서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 한 분이 학생인권조례 설명을 듣더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서명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주소가 경기도시네요. 서울 지역의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만 할 수 있고, 경기도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 아쉬워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그 분이 “경기도 사람이라서 미안하네요”라면서 음료수를 한 이름 사들고 와주셨습니다. 경기도 사람인 게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닌데… ^^;

그밖에도 많은 경기도민, 인천시민 등 서울시민 아닌 분들이 서명을 하려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서명은 못하시고 마음만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한 경기도의 고등학생 분은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학교 다니기 좋아졌어요!”라면서 서울에서도 힘내라고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음료수 몇 캔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비록 서명은 서울시민 분들의 것만 있지만,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그렇게 마음을 보태주신 서울시민 아닌 분들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아이들, 청소년들이 시켜서 하는 서명

여의도공원에서 서명을 받고 있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분이 오셔서 이게 뭐냐고 물

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좋아하시면서 이게 꼭 되어야 한다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서명을 받고 나서 청소년 서명도 모으고 있지만 만19세 이상 어른들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더니, 어디론가 달려가시더라고요 잠시 후, “이리 와서 이거 좀 꼭 해줘요!” 이러면서 같이 공원에 온 어머니 손을 잡아끌고 오셨습니다. 영문도 잘 모르고 끌려오신 어머니께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서명을 받으면서 한 생각.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 손을 잡아끌고 하라고 시키는 서명이 학생인권조례 말고 또 있을까요? 여의도공원에서 말고도 거리에서 만난 많은 청소년 분들이 자기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꼭 서명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What is this? physical punishment?"

명동 등에서 서명을 받다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십니다. 어느 한 외국인 분이 오셔서 저희 사진전과 선전물들을 보시더니 "What is this? Are you against physical punishment?"(이게 뭔가요? 당신들은 체벌에 반대하는 건가요?)라고 물으시고 뭔가 굉장히 빠른 영어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에,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면서도 대답을 어찌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체벌이나 차별, 두발복장규제 등에 반대하는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더니(물론 실제론 거의 단어 몇 개를 나열한 설명이었지만...) "OK. I think so."(좋아요 나도 동의해요)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힘내라고 하고서 가시더군요. 영어가 워낙 빠르셔서 차마 겁나서 서명해달라고 잡지는 못하고... 하지만 다른 외국인 분들도 많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청계광장에서 한 한국어 잘 하는 외국인 분은 서명을 하시면서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루에 8시간 이하로 공부 시간을 줄이게 시위 같은 거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면 자기도 가겠다면서. ^^

○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4월 말 즈음 사무실에 앉아서 서명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으면 많은 시민 분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오십니다.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우편으로 보내기도 귀찮고 돈도 들고 해서 직접 서명을 하러 오셨다는 분들입니다. 한 번은 한 대학생 분이 학교는 충청도에서 다니고 있지만 집이 서울이라고 서울에 오신 김에 서명을 하러 들렀다고 찾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한겨레에 홍세화 청구인 대표님의 칼럼이 나간 4월 초에는 하루에도 10분 20분이 멀다 하고 많은 시민 분들이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고 서명하는 방법을 물어보러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4월 말 즈음에 서명이 아무래도 몇백, 몇천장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룰 때에는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우편 서명만 하루에 400장 500장씩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학생인권이 꽃피는 더 좋은 교육을 바라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입니다.

○ “와줘서 고맙다”

서명 마감일을 며칠 안 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산에서 거리 서명을 받고 있는데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다가 보고는 걸음을 빨리 하며 서명 가판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용 같은 걸 묻지도 않고 서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신문에서 보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아직 못했어. (서명지에 홈페이지 주소를 가리키면서) 그래 이거 sturight. 이 홈페이지까지 들어갔었다가. 여기 서명 받으러 와줘서 고마워요. 깜빡 못할 뻔했네.” 그 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조례 꼭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명 받는 걸 잘 몰라서, 아니면 서명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아직 못하셨겠죠? 8만5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서울시민 분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해주고 계실 겁니다.

[자료 4]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메시지

-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많은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 메시지 중 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함.

■ 시민들이 보내준 우편서명에 담긴 지지 메모

- '전 서울 사람이 아니라 서명을 못해서 직장동료들한테 받아서 대신 보냅니다. 늦지 않게 도착해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송혁 씨)
- '홍세화 칼럼을 읽고 보냅니다. 홍세화 선생님과 학생조례제정운동에 나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허경희 씨)
- '늘 애쓰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우진 씨)
-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관심이 많아서 작은 힘이나 마 보태기위해서 학교 내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50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주 씨)
- '힘 보탭니다!!' (박혁 씨)
-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힘내세요~!!' (○○○ 씨)
- '여기부터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지지와 연대의 의미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나눔문화 유유)
- '(교육공동체) 나다의 메일을 보고 서명 받아 보냅니다. 고생해주셔서 고맙고 죄송합니다. 많은 힘은 아니지만 제대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씨)
- '힘 내시고 수고하세요. 아자아자!!' (○○○ 씨)
- '홍세화 선생님 한겨레 칼럼보고 동참합니다!' (○○○ 씨)
- '학생인권에 애쓰시는 분들, 힘 내십시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4344년 4월 6일' (박용욱 씨)
- '몇 장 안됩니다. 꼭 10만이 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 씨)

- '1.기성세력에게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학생의 인권은 종교의 자유와 폭력에서 해방될 때 가능해집니다. 3. 기성세대가 만든 학생의 일부 일탈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전부 넘기지 마세요.' (안덕상 씨)

- '늦었지만 몇부 더 보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하세요! 꼭 성공할거예요 파이팅!' (이정주 씨)

■ 트위터를 통해 보내준 시민들의 지지 메시지

-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 한분한분의 지지가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학생들은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동생이며 언니이며 오빠이며 아들과 딸들입니다' (@baxtercielo)

- '비록 서울시민이 아니지만 멀리서 응원해 봅니다. 조금 더 상식있는 세상을 바라며... 꼭 발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Jack_Raspberry)

- '어린이가 어디서 폭력을 배웠을까?가정폭력,교사체벌 등 약한 자는 폭력으로,그것도 사적인 감정과 구분되지 않는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배운 것.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약한 자를 때려도 된다는 거.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dangsaja)

- '어제 밤 꿈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명지 1억장 받았다고 하길래 기뻐하는 꿈 꿔다... 얼마 안남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서명해요!' (@burstrides)

- '통조림처럼 같은 라벨, 같은 크기로 주어진것만 아는 우리학생들..왜 자기자식들을 그리 키웁니까! 생각없이 주어진 움직임만 하는 인형으로 우리아이가 자라기싫으시다면 학생인권조례 서명!!' (@saint_sj_66)

- '학생인권조례. 차별과 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꿈인 아이들. 21세기 교육현장에 아직도 차별과 폭력이 있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아이들의 자유와 인권은 탈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고... (@myh0121)

- '학생인권조례 서명 받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하루 종일 끈대들의 욕설에 지치고, 몸이 축나 병원에 실려가고 있단다. 5일 남았고, 목표치에 딱 1만 명 남았다. 걸핏하면 젊은 것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는 분들, 청소년들 울리지 말고 서명들 하시라.' (@leesongheeil)

- '나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말만 많이 했지, 내가 아는 지인, 단골 카페 주인과 그 손님 몇 명 받고, 이게 쉽지 않음을 깨닫고, 이만큼 했으니까 하고 손을 놓았다. 5일 남았고, 1만 명 남았다. 몇 장 더 받자.' (@urbantofu)

- '"매맞은 아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그걸 지켜보아야 했던 다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갈수록 선명해진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아직 서명이 모자라답니다.' (@dwbh4543)

- '한 외국인 유학생의 작문 오류: "어린은 잘못을 했을 때 때리는 게 효과가 있다" 여기서 뭘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는 게 옳을까요? 질문에서 변화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dirty_xijin)
- '학생인권조례발의 성공여부는 곧 이 사회 진보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유권자"들을 향해 외치는만큼이나 "무권자"들의 권리찾기에 힘을보태려는노력은 중요합니다' (@Kong918)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8만명 발의를 못 채워 실패한다면... 20년 뒤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은 지금과 비슷하겠지요. 제가 트윗에 쓰는 글은 아이들을 믿고 존중하자는 것. 동의하시면 (우편용 서명용지) 인쇄후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suhcs)
- '최근 잘한 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서에 서명해서 우편으로 보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으로나마 성원을 보냅니다.' (@branNU_Jay)
- '저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위해 뛰어다닌 모든 청소년 활동가 분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은 단군 이래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 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분의 후배들은 그 열매를 딸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parks9111)
- '학생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대가 열리는군요!' (@jb_1000)
- '기쁜소식(1/2) 학생인권조례서명자가 목표치를 어렵게 채워서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네요. 선거투표때에는 내표가 사표가 될까봐 헛헛했었지만, 이번에는 생(生)표가 되어 더 더욱 기쁘군요. ㅎ' (@SunnyNah)
- '학생인권조례 됐다..... 갑자기 너무 화가난다. 학생인권. 너무 당연한거아닌가? 왜 그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키자고 주장해야하는거고, 그게 통과가안될까봐 맘줄여야 했던걸까. 너무 당연한건데 왜 그럴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왜. 싫다.' (@seminn222)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서울시민이 더는 아니더라는..... 이건 차별이야! 아슬아슬하다 싶어 가슴 조이더니, 다행히 인원이 충족되었다니,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dol7009)

■ 서울본부 홈페이지에 남긴 시민들의 지지 댓글 중

- '서명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권봉열 씨)
- '꼭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 인권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미래 주인공들이 살아갈 숨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김주혁 씨)
-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길빌어요 파이팅!!!!' (강동균 씨)

- '소식 갑자기 듣고 찾아왔는데..서명해야겠네요! 진짜 찬성입니다!' (김현아 씨)
- '꼭!!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수경 씨)
-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인권과는 거리가 먼 초중고교 생활을 보냈으며, 지금도 학생의 인권에 대해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인이자 청년으로써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의 시기는 지났지만 내 후배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인권이 꽃피는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힘내세요' (김일백 씨)
- '학생인권조례 제정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소연 씨)
- '학생인권조례 제정 꼭 이루어지길..핫탕' (김필욱 씨)
- '함께하는분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서울본부 소속단체 모두 언급한 뒤), 개인활동가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데 아직 5만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맥 빠지는 일입니다. 어제 한겨레 보니까 기득권층의 무료급식반대 서명엔 벌써 25만이나 되었답니다. 분발합시다.' (엄기정 씨)
- '자주 못 만나는 지인들이지만 전화번호목록에 있는 분들에게...문자메시지로 서명권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오랫만에 모처럼 전화로 인사도 나누게 되네요^^ 자~여러분들 전화번호 한번 좌악~' (아이디: 알사탕)
- '인권은 학교에서부터 보호하고 가르켜야 받아야합니다.' (문윤기 씨)
- '학생인권조례 서명합니다.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세상' (임수진 씨)
- '주위사람들에게 전단지 돌리며 열심히 홍보하는 친구와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한사람의 서명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생활 1년 남은 학생으로서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수 있도록 기원하며' (아이디: 어떤 학생)
- '서명해요!! 꼭 될꺼예요. 난 못했어도.. 내 자식들은 꼭!' (김국경 씨)
- '인권은 누구나 어디에서든 누릴 수 있어야 해요' (한동균 씨)
-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경기도, 서울..이제 지방으로 퍼져나갈 차례인 것 같아요^^' (장서연 씨)

[기자회견문]

서울시민의 힘으로 꽃피운 학생인권의 봄을 이어가자!

- 8만 5천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에 부처 -

오늘 우리는 선언한다. 찬란한 학생인권의 봄이 열렸음을! 서울시민 유권자의 1%라는 주민발의 성사 기준을 넘는 8만 5281명의 서울시민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에 동참했다. 비로소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음이,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학생인권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이 증명되었다.

물론 학생인권의 봄을 열어내기 위한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수많은 암초들이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교육이란 원대한 정박지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를 방해했다. 교과부의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하는 서명 절차, 당사자인 학생들의 서명참여 불가, 무엇보다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들의 여론 호도가 그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발의 운동이 다소 흔들리고 좌초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민발의 운동이 주저앉지 않고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열망하는 서울시민들의 참여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서명에 참여하고 연대해주신 서울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서명운동에 주어진 6개월의 기간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명참여는 물론, 후원과 홍보, 자원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의 지지를 보내주셨다. 또한 서울이 아닌 타 지역의 시민들 역시 서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주민발의 성사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지지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발판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러 다시 운동화 끈을 쪼여 매는 동력으로, 무엇보다 주민발의 운동과 그 성사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은 서명참여를 통해 학생들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 학생 역시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이제는 학교라는 교육의 공간이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되는 폭력의 공간이 아니라 우애와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소통과 존중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공교육의 현장에 자리 잡아 몸으로 익힐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에도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다는 당연한 진실을 환기시켰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던 교사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 같이 큰 힘이 될 것이다.

한편, 주민발의 운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못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참여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에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인권을 다루는데 있어 정작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상황도 또 어디 있겠는가? 비단 주민발의 문제만은 아니다. 선거권을 포함해 정치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문제는 물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에도 맞지 않는 이 역설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로 넘어간다. 우리는 믿는다. 학생인권의 보장과 학교민주주의의 실현은 물론, 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더 확산되고 뿌리내리길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시의회가 잘 받들 것이라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요구한다. 서울시민들의 서울시민의 뜻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의 기준으로 쓰인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 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길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의회 최선의 선택은 주민발의안의 원안통과 시키는 것이다.

이제 학생인권보장의 흐름은 더욱더 커져나갈 것이다. 이미 광주와 전북 등에서 조례제정이 가시화된 상태이며 경남과 충북에서는 서울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발의 운동을 선언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 보장의 바람이 전국으로 불고 있다. 바야흐로 학생인권의 시대이다. 물론 여전히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를 거스르려 하는 시도들도 있다. 하지만 인

간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비로소 열려진 학생인권의 시대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이젠 느끼자. 마음껏 느껴보자. 우리 함께 서울시민들의 힘으로 꽃핀 학생인권의 봄을 마음껏 느껴보자. 너무나도 찬란한 학생인권의 봄의 시작이다.

2011년 5월 20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구인명부의 표지)

서울특별시학생인권 조례 제정 청구 청구인 명부

서명기간 :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1년 5월 11일까지

(2011년 4월 27일부터 2011년 5월 10일까지 중구와 강남구 일부 지역에 한해 서명기한 연장)

총 서명 주민수 : 85,251명

	구	청구인 수		구	청구인수
1	강남구	2,940명	14	서대문구	3,263명
2	강동구	3,820명	15	서초구	2,507명
3	강북구	2,971명	16	성동구	2,623명
4	강서구	3,440명	17	성북구	4,463명
5	관악구	5,326명	18	송파구	3,991명
6	광진구	3,823명	19	양천구	3,196명
7	구로구	3,584명	20	영등포구	2,864명
8	금천구	1,928명	21	용산구	2,369명
9	노원구	6,499명	22	은평구	4,352명
10	도봉구	3,846명	23	중구	1,630명
11	동대문구	3,066명	24	중랑구	2,611명
12	동작구	3,021명	25	종로구	2,326명
13	마포구	4,792명			
총 서명인 수 : 85,251명					

청구인대표자 홍세화 (서명 또는 날인)

김도연 기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5. 20.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김도연 기자

서울시교육청 현관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며 이내 눈물을 쏟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주민발의 성사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민발의 운동의 성사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거리서명에 나섰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실감이 안 난다”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예술 청소년 활동가는 “전교조도, 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들 (주민발의 성사가) 안 될 거라고 그랬다”며 “그래도 우리는 ‘주민발의 운동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 있겠지’ 하고 했는데 진짜 성사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난다. 너무 좋다”고 말했다.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활동가도 “20일에 이렇게 주민발의 성공했다고 보고대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전했다. 다영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만 2천이 모여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지지해주신 서울시민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현장 교사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주민발의 성사는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게 된 정도의 비중과 의미가 있다”며 “교사들의 일터이자 학생들의 삶터인 학교에서 인권이 꽃피울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8만5천821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거쳐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본부 측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4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2009년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지역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두발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축소한 부분도 바로잡았다”며 “서울시민의 뜻으로 쓰인 서울학생인권조례제

정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아직 못 만난 시민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청구인명부가 담긴 상자를 시교육청으로 나르고 있다.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 시민들의 힘으로 꽃피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뉴시스 소장사진, 2011. 05. 20.







정유진 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죠” 」, 경향신문, 2011. 05. 20.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죠”



·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배경내씨

“학생인권은 단순히 법을 만든다고 해서 지켜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주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주민발의라는 어려운 길을 택한 이유입니다.”

20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배경내 집행위원은 서명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지난해 10월27일 이후 6개월여 만에 모처럼 활기찬 표정을 지었다. 이날 서울본부는 주민발의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8만1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넘긴 8만5281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무모한 도전이라며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정당이나 큰 단체의 조직적인 지침 없이 서울시민 개개인으로부터 8만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배경내 집행위원을 비롯한 서울본부 회원들은 지난 반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 어린이대공원, 지하철역, 성당, 동네 공원 등 시민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그러나 서명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서명운동 마감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초까지만 해도 4만여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했다. 배 집행위원은 주민발의가 실패할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움직임에까지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애가 탔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명동에서 거리 서명운동을 할 때 만난 한 소녀가 가져다준 캔커피를 아직도 소중한 기억으로 꼽고 있었다. 자신을 경기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그 학생은 “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돕고 싶다”며 수줍게 캔커피를 내밀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발의 방식이 아닌 관 주도로 지난해 조례가 마련됐다.

봄이 되고 날이 풀리면서 서명운동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소식을 알게 된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서명용지를 담은 해외우편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민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우호적으로 바뀌

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전 만루홈런이 터졌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명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시민발의에 필요한 인원을 채운 것이다. 배 집행위원은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향상을 위한 바로미터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본부의 조례안은 중복 서명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승훈 기자, 「성숙한 청년, 끈대들을 타이르다 - [사람과 사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도운 청소년인권운동가 공현씨... 고3부터 시작한 운동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젊음의 단단함」, 한겨레 21, 2011. 05. 30.

성숙한 청년, 끈대들을 타이르다

[사람과 사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도운 청소년인권운동가 공현씨...

고3부터 시작한 운동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젊음의 단단함

서울에서도 학생 인권의 꽃망울이 무르익고 있다. 지난 5월12일 참고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4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주민발의의 성사 조건인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1%(8만1855명)를 넘겨 8만5천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체벌금지와 두발 자유화 등을 담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된 것이다. 이로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진일보한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지난해 10월27일 시작돼 지난 5월10일 마감됐다. 원래 종료 예정일은 지난 4월26일이었으나 재·보궐 선거로 2주 연장돼 시간을 벌었다. 4월 말까지만 해도 발의에 필요한 서명인이 2천~3천 명이나 부족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나 연장 2주 동안 하루 최대 1천 통에 이르는 시민들의 서명용지가 답지해 주민발의에 성공했다.

서명운동의 성공에는 청소년 인권운동가 공현(24)씨의 구실도 컸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아름답고 수줍은 나의 로망스’의 줄임말)가 아니라 무라카미 류의 소설에 나오는 나무 이름이란)를 이끌며 청소년 인권운동을 해온 그는 이번 주민발의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서울본부에서 만난 그는 큰일을 마친 사람이 가질 법한 흥분분함 대신, 주소지별로 서명지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여전히 분주해 보였다. 먼저 조례 제정까지 앞으로 남은 일에 대해 물었다. 그는 “5월19일까지 청구인 명부 분류·정리를 마



»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청소년 인권운동가 공현씨가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앞에 두고 밝게 웃고 있다.

친 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서명인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명부를 제출받은 시교육청은 89일 안에 공표, 열람 및 이의 신청, 심사 및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갈 길은 멀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제 금지 △두발·복장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학교 안팎 집회 개최와 참여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럼 서울 주민발의안은 기존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과 무엇이 같고 다를까. 그는 “큰 틀에선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선 차이를 보인다”며 “두발규제 금지와 집회·정치활동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안에 비해, 경기도안은 모호하게 처리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머리 길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식의 단속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고, 집회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선 양심의 자유로 두루뭉술하게 처리했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못박은 이유에 대해선 “학칙에 정치활동 금지를 담고 있는 학교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성소수자·장애인 관련 조항이 보완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덧붙여 서울 주민발의안에 대한 자부심을 엿보게 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에선 시민들이 직접 나선 발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일보한 학생인권조례안이라도 서울 시민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빛을 볼 수 없었을 터.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서명운동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았다. “지난해 11월부터 거리 서명운동을 다녔는데 너무 추워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갔어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녔죠 서울시 전역을 돌았죠 오전 10부터 저녁 6시까지 서명을 받았는데 한번은 술 취한 아저씨들이 와서 서명 용지를 찢고 행패를 부려 청소년 활동가들이 우는 일도 있었어요 연신내역 앞에서 서명을 받을 때였는데 휴가 나온 해병대 군인이 ‘이거 전교조가 하는 거 아니냐’며 ‘빨갱이 전교조가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아무나 보고 빨갱이, 빨갱이하는 당신이 문제’라며 혼냈죠 임자 만난 거죠 (웃음) 서슬 퍼런 아주머니를 보더니 해병대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아줌마의 힘’을 확인한 순간이었습시다. (웃음) 명동에서 서명을 받을 때는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여학생이 인권조례가 생겨서 학교가 정말 좋아졌다며 수고한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고 간 일도 있었어요 뿌듯했죠”

고3 때 시작한 청소년 인권운동

지지와 격려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다. “노점상 아저씨가 와서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할 때도 있었고, 백화점이나 주상복합 관리인 아저씨가 건물 앞에서 하지 말고 치우라고 호통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힘들었던 때를 복기하면서도 그는 자주 웃었다. 그 웃음에 고단함이 언뜻언뜻 비쳤다. 모든 운동가가 그러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도 그가 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일은 없어 보였다. 그는 왜 한 푼의 활동비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이해와 무관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하고 있을까. “그냥 관성적으로 해오다 보니 계속하게 됐어요 (웃음) 제 일이 청소년 인권운동가니까요 (웃음) 그리고 누군 위해 운동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저를 위해 하는 거죠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인데다 다른 운동에는 없는 새로운 운동이 주는 매력도 있죠”

사실 그의 학생인권운동 경력은 전북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18살 때 시작됐다. “운동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두발 단속과 체벌, 야자에 대한 반대 등을 담은 유인물을 혼자 만들어 학교에서 뿌리다 징계도 당하고 했어요” 대입 준비에도 바쁠 고3 시절을 그는 그렇게 보냈다. 공부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조숙한(?) 수험생이던 그는 부모님의 설득 끝에 대학(사회학과)에 진학했으나 지금은 휴학 중이다. 학과 공부는 재미있지만, 대학을 꼭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그는 “등록금도 비싸고,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 중”이라며 “남들처럼 취업해서 먹고살 거 아니니까 졸업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은 없을까. “그런 걱정은 별로 해본 적 없어요. 지금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지 않을까 싶어요. (웃음)”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셋이 한집에서 비범한 동거(?)를 하고 있는 그에게 골칫거리가 있다. 소송 때문이다. 2009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집회가 열렸다. 집회 전 공현씨를 비롯한 청소년 인권운동가 10여 명이 플래시몹(블랙정 다수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을 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이 몇 명을 불법집회 참가자라며 연행했다. 불법집회가 열리기도 전이었다. 그는 여고생을 연행하는 경찰에게 항의했고, 경찰은 그마저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했다. 연행된 날 저녁 여고생은 훈방됐고, 공현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두고 여전히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래저래 번거롭고 오라 가라 귀찮은 건 어쩔 수 없다.

또래와는 분명 다른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기상조로 여기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는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예요 우리나라만 그게 없으면 학생들 통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인종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해요. 한국 학생들은 때리고 규제해야 통제가 되는 저열한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체벌과 두발단속이 있을 때 학교가 붕괴됐다는 소리는 나왔어요.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가 붕괴될 것처럼 말하는 건 본말 전도죠”

경험의 기회가 성숙을 낳아

군대에 가야 하는 그는 병역거부를 생각하고 있다. 거창한 뜻이 아니라, 이미 전과도 있겠다 군대보다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짧겠다 싶어 고민 중이란다.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포장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그는 이처럼 자신을 꾸미지 않는 건강함으로 단단했다. “성숙과 미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경험과 기회 유무에 따라 갈리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란다”는 그의 말은 자신의 경험담이자 청소년을 신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시대의 ‘꼰대들’에게 보내는 성숙한 인간의 타이름만 같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검토 결과 안내〉 취재요청서, 2011. 06. 13.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 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발신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제목 : [취재요청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검토 결과 안내

날짜 : 2011. 6. 13

문의 : 전누리 (언론담당 / 010-3297-980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검토 결과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5월 20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서명 8만 5천 여장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3. 그러나 제출된 서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심사결과 **유효한 서명지는 (추정) 약 7만 1천 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시 미 거주, 중복서명 등으로 약 1만 4천 여장의 서명이

무효화된 결과입니다.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서울시민의 1%, 8만 1천 885명에 비해 약 1만 1천 장의 서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법제처의 서명조회 등을 거쳐 20일 경에 확인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4. 현재 서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바로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명이 부족한 경우,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보정기간이 5일 동안 주어집니다. (첨부된 법제처 해석 참고) 보정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 입니다.

5. 5일 동안 주어지는 보정기간 동안 서울본부는 서명 오류율을 감안해 약 1만 5천 정도의 서명취합을 목표로 서울전역에서 거리서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서울본부는 주민발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막판 서명참여를 시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은 물론 주민발의 성사를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참고자료>

보정기간 중 추가 서명 관련 법제처 해석

행정안전부 - 조례의 개정청구 등에 필요한 서명자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관련)

안건번호10-0005회신일자2010.03.051. 질의요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 회답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 일정한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조례개폐청구”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조례개폐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조례개폐청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는 조례개폐청구를 위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제1항), 서명요청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청구의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4항).

또한,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는 10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게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부터 제5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정기간 동안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언의 내용과 보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당초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금지하거나 당초 청구인명부에 등재된 서명으로서 무효로 결정된 서명만을 보정하여 조례개폐청구의 요건을 갖추도록 보정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서명의 무효 사유를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에 미달되면 조례개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소수 주민의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면 청구인명부에 유효한 서명을 한 다수 주민의 의사를 사장(死藏)시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한편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더라도 다수 주민은 언제든지 동일한 내용의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례개폐청구가 다시 반복되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명부의 서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그 요건이 미흡하더라도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정기간을 부여하여 청구인명부의 흠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명부의 흠결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청구인명부의 서명만을 보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같은 영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명요청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보정기간은 원래의 서명요청기간(시·도의 경우 6개월 이내, 시·군·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비하여 단기간이므로(시·도의 경우 5일, 시·군·자치구의 경우 3일) 서명요청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5일이나 3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흠을 이유로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당초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던 주민의 새로운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지방자치법 제15조제11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자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청구인 서명 심사 결과 및 보정 일정 통보

1. 관련 : 책임교육과-11888(2011.5.20)
2. 법제심의위원회(2011.6.17)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가. 총 서명자 수 : 85,498명
 - 나. 무효 서명자 수 : 13,995명
 - 다. 유효 서명자 수 : 71,503명
3.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의 보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가. 통보 대상 : 홍세화(대표 서명자)
 - 나. 통보 내용
 - 보정해야 할 인원 : 10,382명
 - ※ 법정 청구수리 최소 인원(81,885명) - 유효 서명자 수(71,503명)
 - 보정 기간 : 6.22-6.26(5일간). 끝.

서울특별시교육감



장학사	신선호	학생인권조례 제정지 모임담당자	방승호	책임교육과장	전달 06/17 최병갑
협조자					
시행	책임교육과-13889	(2011.06.18.)	접수		()
우	110-781	서울시 종로구 소월길 48 (신문로 2가 2-77)	/		
전화	02-3999-551	전송	02-3999-754	/ meoru67@seoul.go.kr	/ 공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서울교육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추가서명〉 홍보용 이미지, 2011. 06. 22.

SOS

**5일안에 추가서명
1만5천장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기회, 힘을 모아주세요!**

서명지 바로 다운받기! 클릭

참세상 편집팀, 「“학생인권조례 추가서명 받아요...딱 5일만” - 위기의 학생인권조례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 민중언론 참세상, 2011. 06. 23.

“학생인권조례 추가서명 받아요...딱 5일만”

위기의 학생인권조례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

좌초 위기에 놓인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서명기간이 주어졌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6일까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2차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서명 숫자가 법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닷새 동안 보정기간을 두어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본부는 약 15%의 오류율을 감안하여 1만 5천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매일 4곳 이상의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주말인 24, 25일에는 동시다발집중캠페인의 날로 10곳 이상의 장소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서명 장소는 서울본부 트위터 @sturight를 통해 공지한다.

우편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서울본부 홈페이지(www.sturightnow.net/page.php?id=sign)에서 서명지를 다운 받아 자필로 작성한 뒤 서울본부 사무실로 5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서울본부는 서명기간이 끝난 27일부터 10일 동안 취합된 서명 분류작업 기간을 가진 뒤 7월 6일 서명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8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성사’를 선언했으나 서울시교육청 심사 결과 유효 서명자 수가 7만1천여 명으로 나타나 닷새 동안의 보정기간을 얻게 됐다.

김태균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연합뉴스, 2011. 07. 0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활동가들이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주민발의 청구서와 서명인명부 상자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본부는 이날 청구서와 유권자 8만5천여명의 명단을 제출했으며 시교육청은 오는 7월까지 명부의 유효성을 심사해 주민 발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1.5.20. tac@yna.co.kr (자료사진)

최소 1만9천여장...이르면 4일 서울교육청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가운데 무효 처리된 부분을 채울 만큼 추가서명을 확보했다.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지난달 22일부터 닷새간 추가 서명을 받은 결과 거리 서명과 우편서명,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단체가 받은 서명 등으로 최소 1만9천여장을 확보했다"고 1일 설명했다.

이어 "단체에서 받은 서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2만장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서명 오류율을 감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본부는 총 8만5천장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으나 그중 16.4%(1만4천장)

가 무효처리돼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채우려면 1만1천장 가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서울본부는 이르면 4일 시교육청에 추가 서명을 받은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췄으면 60일 이내로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10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세화, 「서울특별시학생인권 조례 제정 청구 보정 청구인 명부」, 2011. 07. 05.

(청구인명부의 표지)

서울특별시학생인권 조례 제정 청구 보정 청구인 명부

보정서명기간 : 2011년 6월 22일부터 2011년 6월 26일까지

총 서명 주민수 : 28,939명

	구	청구인 수		구	청구인수
1	강남구	1,040명	14	서대문구	790명
2	강동구	1,376명	15	서초구	919명
3	강북구	1,197명	16	성동구	783명
4	강서구	1,166명	17	성북구	1,592명
5	관악구	1,217명	18	송파구	1,880명
6	광진구	1,135명	19	양천구	1,282명
7	구로구	844명	20	영등포구	1,326명
8	금천구	312명	21	용산구	527명
9	노원구	2,550명	22	은평구	1,385명
10	도봉구	2,248명	23	종로구	645명
11	동대문구	1,137명	24	중구	615명
12	동작구	848명	25	중랑구	752명
13	마포구	1,373명			
총 서명인 수 : 28,939명					

기 제출했던 청구인 명부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력 실수 등으로
무효 판정된 것에 대해 이의 제기 1,964명

보정기간 서명으로 총 30,903명 제출

청구인대표자 **홍세화** (서명 또는 날인)

이현주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추가서명 3만여장 제출, 뉴시스, 2011. 07. 05.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추가서명 3만여장 제출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5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추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

서울본부는 시교육청에 총 3만903장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25일 서울 곳곳에서 모은 거리서명 2만8939장과 지난 5월 1차로 제출한 서명 중 시교육청의 입력 실수 등으로 무효판정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 1964장을 합친 결과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약 15~16%의 서명 무효율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발의 성사에 필요했던 1만1000장을 넘는 충분한 결과"라고 전했다.

서명 제출 이후에는 공표(5일 이내),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10일간), 명부에 대한 심사 결정(14일 이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60일 이내로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서울본부는 5일 시교육청에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서울시민의 1%, 8만1885명보다 3000여장 많은 8만5000여장을 제출했으나 1만1000여장이 무효로 처리돼 다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청구 요건 심의 결과 통보」 공문, 2011. 08. 10.

함께해요 울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자 홍세화(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대표)
(경유)

제목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청구 요건 심의 결과 통보

1. 관련 : 책임교육과-11888(2011.5.20), 법제심의위원회-27(2011.8.4)
2.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11.8.3)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에 대한 청구 요건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심의 안건 명	심의 결과	주관 부서
제2011-31호	주민 청구에 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청구 요건 심의안	청구 수리	책임교육과

끝.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신선호 학생인권·생활지 방승호 책임교육과장 전결 0870 최병갑

형조자

시행 책임교육과-19036 (2011.08.10.) 접수 ()
 우 110-781 서울시 종로구 소월길 48 (신문로 2가 2-77) /
 전화 02-3999-551 전송 02-3999-754 / meoru87@sen.go.kr / 공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서울교육』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 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인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 광노현 서울시교육감님

참조 :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제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서

날짜 : 2011년 8월 18(목)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017-214-3550)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서

1. 무더운 여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앞두고 더더욱 노고가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탈하신지요?
2.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아래 서울본부)는 지난 8월 1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가 최종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유효 청구인 수 97,702명). 처음 서울본부가 주민발의 서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공감대가 크고 넓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인권이 행복교육의 시작'이라는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두터워졌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학생인권조례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광노현 교육감님도 주민발의 성사의 감격을 함께 만끽하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3. 저희 서울본부는 향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과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에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서둘러서 서울시의회에 부의해 주시고, 교육청 자체의 학생인권조례안은 만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

다. 지난해 말부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해 오셨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저희가 드리는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1)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육청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직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빌미 삼아 교육감님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에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추진 일정을 밝을 경우, 주민투표의 결과에 상관없이 교육감님을 상대로 또다시 맹비난을 퍼붓는 흐름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위협한다.’는 기획 보도도 또다시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벌어진 틈새를 뚫고 차별금지 정책 이후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사들이 교육청에 대거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주민의 뜻을 받는다.’는 취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서 보완할 점만 의견을 덧붙여 시의회에 넘길 경우에는 정치적 공격의 화살이 교육감님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반감을 갖고 있는 현장교사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민의 뜻을 모아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대놓고 거부하기 힘들 것입니다. 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자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들인 노고가 아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자문위원회의 역량을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화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면, 조례 추진 자체를 둘러싼 논쟁에 대응하느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례 추진 방안을 변경하더라도 교육감님의 공약은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3주체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인 서울본부는 조례 제정 자체에, 교육청은 조례의 현장 안착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2) 조례 제정 시기를 앞당기고 시행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 일정을 보면 빨라도 10월 초에나 조례 최종안이 나올 것이고 입법예고 기간까지 거치자면 더 많은 시일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이미 성사된 주민발의안은 교육청안이 넘어 올 때까지 의회에서 2개월 가까이를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병합 심의까지 가다보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 추진 일정이 하반기로 늦추어지면 질수록 여러 정치 일정에 쫓겨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도 빚어질 수 있고, 교육청도 조례 제정 이후를 준비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올해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 매우 조급한 일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례가 시급히 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방안을 변경하되, 하반기에는 내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는 데 교육청의 힘을 모으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주민발의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과 교육청안이 함께 제출될 경우, 서울시의회에서는 통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무상급식조례, 광장조례에 이어 3번째로 주민발의운동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은 교육청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 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모아 추진할 때 조례 제정의 본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민발의 서명에 함께 한 서울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는 자부심이 매우 크고, 주민발의안에 대해 교육청과 의회가 보이는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교육청이 받드는 자세를 취한다면, 교육 민주주의도 한 단계 진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일정으로 마음도 몸도 매우 부산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저희가 드린 제안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24일 이후 면담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으면 합니다.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연정 기자, 「집회허용·복장자유..학생인권조례 논란예고」, 연합뉴스, 2011. 09. 07.

집회허용·복장자유..학생인권조례 논란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7일 공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집회허용, 두발·복장 자유, 체벌금지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 확정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하면 민감한 내용이 더 추가됐지만, 시민단체가 주민발의로 내놓은 인권조례안에 비해서는 온건한 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일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제시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여지를 뒀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광노현 교육감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그는 2학기에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광 교육감의 검찰 수사와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적용 범위를 초중고교뿐 아니라 학원,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학부모도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 지도의 수월성을 보장하려고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을 함께 내놓은 점이 특징이다.

◇집회 허용 = 조례안 제19조 4항은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규 교육과정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교내·외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한 것이다.

다만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집회와 학습권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집회의 자유는 애초 시민단체 연합체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제안했을 때도 사회적 파급력이 커 일부 교원, 보수 교육단체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도 처음 포함됐다가 논란이 일면서 결국 제외되기도 했다.

◇두발 및 복장 자유화 =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원칙을 정했다.

다만 학생이 참여해 제·개정된 학교 규정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 복장, 두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됐다.

이 조항 역시 경기교육청 조례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삭제됐던 내용인데다가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금도 두발·복장에 대해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심·종교의 자유 = 특정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한 입학·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보장했다. 또 종교와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교의 건학 이념과 충돌할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연관돼 있어 학교 배정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체벌 금지 = 제8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 학원에서도 모든 체벌을 금지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학교,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보완 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광교육감이 작년 취임한 후 얼마지 않아 내놓은 원칙을 유지한 것이지만,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린 것과는 충돌한다.

이와 동시에 교권침해를 방지하고자 교육감, 학교장은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습에 관한 권리 등 =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과도한 선행학습 실시·요구를 금지했으며,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강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성명서, 2011. 09. 13.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곧 진행될 검찰의 기소로 교육감의 직위가 정지되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운명과는 별개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진행되어 온 교육개혁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직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부당한 외압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향후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과 “학교에서 학생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인권조례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 물결을 막고자 온갖 꼼수를 써왔던 교과부가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정지 사태를 계기 삼아 이 같은 외압을 다시금 일삼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교과부와 일부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학생인권 보장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미 지난해 교육감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의 다수 지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미 지난 8월초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발의까지 성사되어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해 온 것은 서울시민과 교육주체들의 뜻을 받들고 선거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정책 추진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이미 1년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광주, 전북 등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의회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시기 상조이고 왜 서울에서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뒤늦게 꽃핀 학생인권 시대에 발맞추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반대

와 부당한 외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학생도 인격체’라는 당연한 진실에 대한 부정이며, 학생인권을 지지해온 시민들의 연대에 대한 부정이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부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구속과 직무정지 사태에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지난 1년간 준비해왔고 서울시민에게 연거푸 약속해 왔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학생인권의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서울시민과 교육주체들의 염원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오는 9월 20일 입법예고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수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역시 서울지역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지지를 받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늦어도 10월 4일까지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여 정치적 고려나 외압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발을 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주민발의에 참여하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열망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1년 9월 1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니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제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에 대한 의견

날짜 : 2011년 9월 16(금)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변춘희(010-7744-4853), 배경내(017-214-3550)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

1.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아래 서울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 발표와 제정 추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본부는 지난 8월초 조례제정 청구인 97,702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뜻을 모으고 서울 시민들이 지지를 보여준 주민발의안이 그 의의를 살려 서울시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 자체 안을 발표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대해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관심과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깊은 고민과 연구가 반영된 진전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조 학습권 등이 그런 조항입니다. 서울본부는 그런 내용들이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내용상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분량 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적겠습니다.

2-1. 3조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인권 침해할 정당화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의 제한은 다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나 구체적인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인권의 원칙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면 학생의 인권 기준을 선포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존중·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조의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2-2. 5조에서 2안, 학생의 책무 조항에서 학생이 학교의 생활교육방침과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한 것 역시 무조건적으로 규칙 준수를 요구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방침과 규율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수단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학교의 교육방침과 규율이 많은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교육방침과 규율이 변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라는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듯한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2안 모두에 포함된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조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학생에게만 그러한 책무를 부과할까요? 또한 교육기관인 학교의 특성상 '법령에 따른 책임'을 적용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 책임과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한 지도'라는 인권조례의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지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책무에 관한 5조의 내용은 삭제하되, 교육감 등 다른 주체들의 책무를 규정한 4조에 합쳐 균형 있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3. 7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 예시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성소수자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 및 재생산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에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 한 다양한 폭력 및 혐오, 차별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학생들의 가출, 잦은 결석, 자퇴, 우울, 자살사고와 자살 시도 등의 실태는 여러 국내외 논문들을 통해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차별 받지 않

을 권리에서 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에도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 사유입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과 광주의 입법예고안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도 더 후퇴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21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조항에서도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시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4. **14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그 내용이 충분치 않으며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안과 같이 두발복장의 자유를 학생이 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두발복장규제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는 2000년, 처음으로 두발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을 무렵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지침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학생회 차치규제를 명시한 2안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발복장의 자유는 학생 일반이 아닌 '개인'에게 속하는 개성실현권으로, 이를 제한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이 학칙 또는 학생회 규제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인권적입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는 자의적 두발복장규제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큽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역시 두발복장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적어도 두발의 길이 규제만이라도 분명하게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유를 그나마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14조의 내용은 이러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2-5. 셋째, 15조 사생활의 자유에서 4항,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와 관련된 조항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4항의 1안에서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교육활동과 수업권 보장이라는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순 없고 수업시간 중 사용에 관해서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게 한 주민발의안이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도 불합리한 안입니다. 이는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전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조차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던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를 허용하고, 그 사용은 수업시간과 같은 경우에만 필요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6. 19조 4항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도 1안은 자의적 제한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1안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교육상 목적을 위해"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자의적으로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허가제 운영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위법으로서 아동의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UN아동권리협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제한이 가능한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2-7. 21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조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규정의 제·개정과정에서 '의견제출권'을 보장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제출권은 대단히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을 정당하게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재 학교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제출권과 함께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학생대표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의견 제출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학생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삽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서는 '학칙 등 학교규정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생대표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밝을 것'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2-8. 학생자치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더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35조 학생자치의회 조항에 따르면 학생자치의회는 초중고에서 각 1인씩, 학생회 중에서 뽑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1200여명의 학생들이 학생자치의회를 구성하며, 재적의 과반인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야 학생자치의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간, 재정 등 여러 여건상 이런 조건으로는 학생자치의회가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연 1회 정기회의의 외에는 제대로 회의를 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에서 학생자치의회가 실질적인 참여 기구가 아니라 소수 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는 들러리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느낍니다. 학생자치의회가 실질적인 참여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과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거나, 의원 수 조정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아니면 학생참여위원회의 형식으로 학생자치의회를 대신할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학생자치의회 의원들을 학생회 임원들 중에서 뽑다보면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과대표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의원 수를 배당하여 다양한 소수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

을 것입니다.

3. 서울본부는 조속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주민발의 성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민들의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지지와 열망이 물거품이 되어선 안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러한 뜻을 반영하여 좀 더 학생들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수도 서울이 갖는 위치의 막중함을 고려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교육청안이 여러 기대와 염려를 뒤로 하고 부족한 조례안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주민발의 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더욱 성숙해진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그 끝이 아닐 것입니다. 이후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고, 서울 교육이 인권이 꽃피는 학교, 학교 구성원들 상호간의 존중이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기대하고, 또 저희도 약속드립니다.

2011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김연정 기자, 「 ‘주민발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 이송 」, 연합뉴스, 2011. 09. 30.

‘주민발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 이송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교내집회 허용,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담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30일 서울시의회로 넘겨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에는 전교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체벌 금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일기검사 금지, 종교행사 강요 금지, 소수학생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본부는 지난 5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넘긴 8만5천281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청에 제출했으나 일부 서명이 무효 처리돼 추가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안은 지난 8월초 최종적으로 9만7천70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 조례 제정 청구 수리가 결정됐다.

서울교육청도 지난 7일 자체적으로 만들어 초안을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확정,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와 협의해서 조례안을 내야 하므로 정확한 제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 결국 삭제된 집회 허용이나 두발·복장의 자유화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발표 당시 논란이 일어났다.

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주민발의 조례안과 교육청 조례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조례는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적용된다.

‘도가니’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반성문이다

교육현장의 짓밟힌 아이들에게 내미는 최소한의 반성문이다

영화 한편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사들, 그리고 누구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법정의 결론. <도가니>를 본 관객들은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격분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는다. 원작인 소설이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정치권에서는 ‘도가니법’ 제정이 추진되기까지 한다. 대법원장이 영화를 봤고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언론에 해명을 했다. 검찰총장도 이 영화에 대한 질문이 예상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화가 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보여준 점도 있어서 사법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는 대법원장의 발언이 나왔고,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재판장의 해명이 있었지만 성년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턱도 없는 것 같다. 원작자인 공지영이 썼듯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구나 가시에 찢린 듯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앞에서 법 규정의 미비나 부모의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잘못된 법을 내버려두고 있던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좀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접해주지 않는 풍토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바탕이 된 것이다. 소설 속에서 자애학원의 생활지도교사는 학생의 손을 돌아가는 세탁기 통에 넣는 체벌을 하려고 하다가 동료 교사가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한다. “교육중입니다.” 물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 금태섭 변호사

과연 우리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기분풀이 대상이나 더 나아가 노리개로 다루어지는 영화 속 장면이 정말로 낯익은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다음달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안들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것으로서 체벌 전면 금지, 교내 집회, 두발·복장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허용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도대체 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영화 <도가니>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어디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의 조례를 만드는 일에 그렇게까지 어깃장을 놓아야 하는 걸까.

인화학교 사건에 실제로 관여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만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체벌은 필요하고 학생은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낳은 괴물 같은 사건이 인화학교 사건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곳도 아닌 교육 현장에서 짓밟힌 아이들 앞에 어른들이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문이다. 영화 <도가니>를 보고 나서도 아이들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1주년, 광주는 오늘! 서울도 서두르자!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1. 10. 05.

<보도자료>

경기도는 1주년, 광주는 오늘!

서울도 서두르자!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 때: 2011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 곳: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코리아나호텔 옆)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권혜진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경과와 학생인권조례 전국상황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참가자 발언

1) 학생인권·교육자치 후퇴 부채질하는 교과부 규탄

- 김옥성(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2) 학생인권조례, 서둘러 학교현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 김두림(전교조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년의 경험과 서울학생인권조례

- 혜원(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 공동기획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4)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

- 이종걸(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3. 기자회견문 낭독

[자료 1]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경과와 현재 상황

■ '학생인권조례' 제정 흐름이 전국화하기까지

▷ 80년대 말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움트기 시작.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1년 대한민국 정부 가입.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1차 협약 이행 권고 발표.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시도. 당시 교실붕괴 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중단.

▷ 2000년 이른바 '노컷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 온·오프라인 청소년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체를 중심으로 두발자유 서명운동이 전개. 청소년/비청소년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짧은 기간 16만여 명의 서명이 모임.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 권고에 이어 2차 권고 발표. 1,2차 권고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해지면서 유관단체와 교육계, 시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 계기를 마련.

▷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미션스쿨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교과부 지침이 보완되기 시작.

▷ 2005년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이 개최되는 등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 번 들끓기 시작. 학내 종교 자유, 선거권 인하, 정보인권 보장,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등 청소년인권 운동의 의제 역시 확산되기 시작.

▷ 2006년 17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면서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의 운동이 전개. 각계 단체들이 모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의 법 제정 운동,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전국행진 등을 통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요구. 2007년 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신설되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2008년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에 관련된 교과부 지침이 모두 폐지되고, 교육청 차원의 자율 지침으로 변경.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은 물론,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여건 조성

▷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이 담아내지 못한 구체적인 학생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권리회복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

▷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 당선. 서울, 광주, 전북 등 교육청 산하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구성

▷ 2011년 8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최종 성사. 교육청 발의를 기대하기 힘든 경남에서도 주민발의운동 전개. 충북에서도 주민발의운동을 결정하고 조례안을 만들고 있음. 기타 여러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주요 경과

▷ 2010년 5월, 교육감 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협약식’ 개최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 2010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을 계기로 체벌 전면 금지 계획 발표

- ▷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과부의 체벌 합법화, 학교규정을 통한 학생인권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상위법 개정 시도 움직임.
- ▷ 2010년 9월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 ▷ 2010년 10월 5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 ▷ 2010년 10월 6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 ▷ 2010년 10월 18일, 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지역 학생 1885명, 교사 1478명, 학부모 959명 대상 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6%, 교사들 88.7%, 학부모는 87.6%가 필요하다고 답해.
- ▷ 2010년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발의안 확정
- ▷ 2010년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
- ▷ 2010년 11월 2일, 81돌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 ▷ 2010년 11월~12월 :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실시 이후, 몇몇 언론들의 '위험한 학생론', '학생 vs 교사 대립' 보도 급증. 서명운동 주춤.
- ▷ 2011년 1월 17일,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1월말 학교장의 학생 권리 자의적 제한, 간접체벌 허용 등 반인권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입법 예고
- ▷ 2011년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120여개교가 학생인권조례 취지와 상반되는 학교생활규정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추진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에 버티기로 일관.
- ▷ 2011년 1월 2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 주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2011년 2월 8일, 영하의 추위를 뚫고 매일 주민발의 서명전 돌입. 주말 집중서명전, 행사장 서명도 이어져
- ▷ 2011년 2월 15일, <교과부 인권침해 정책, 청소년 긴급 성키토키대화> 개최
- ▷ 2011년 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집담회 개최. '학생인권 vs. 교사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질타

▷ 2011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결정.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 발표.

▷ 2011년 3월 6일·7일,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보도, 서울본부 기획 참여.

▷ **2011년 3월 8일 : 서울 중압중 체벌사건 규탄 기자간담회 개최**

▷ **2011년 3월 14일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애초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으로 삭제. 그러나 간접체벌 허용의 불씨 남겨.

▷ 2011년 3월 14일~31일,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5회 연속 개최(경향신문·오마이뉴스·한겨레 공동 후원).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범희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교장,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백창우 시인/작곡가 초청 강연.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에 관한 높은 공감대 형성

▷ **2011년 4월 7일,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1주일에 1~2회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 인격 비하 등)을 경험. 16.6%가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하고, 25.7%는 가끔 차별을 당한다고 답해.

▷ **2011년 4월 11일,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2011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

▷ **2011년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애초 4월 26일 마감이었으나 서울 중구, 강남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8만 1885명을 뛰어넘는 **8만5281명의 서명 취합.**

▷ 2011년 5월 11일~19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2011년 5월 20일 10시 30분,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 **2011년 6월 22일~26일 주민발의 보정(추가 서명) :** 유효 서명지가 7만1천여 장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닷새 간 추가 서명과 정보가 누락된 서명지에 대한 보정 작업 진행. 1만5천여 장을 목표로 추가 서명을 받았으나 3만장이 넘게 서명지가 모임.

▷ 2011년 6월 27일~7월 4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2011년 7월 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추가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제출**

▷ **2011년 8월 4일, 법제심의 거쳐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 수리.** 유효 서명인 수 총 97,702명으로

확정

▷ 2011년 9월 7일, 광노현 교육감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 2011년 9월 8일, 교육감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공청회 개최. 주민발의안에 비해 상당수 후퇴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본부 이름으로 강력한 수정 요구

▷ 2011년 9월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 재검토 필요하다’며 외압 행사

▷ 2011년 9월 1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불필요한 반대 중단 촉구.

▷ 2011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초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 인권의 원칙에 근거한 조례안 마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 책무 확인.

▷ 2011년 9월 2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학생들 여러 명의 얼굴에 대결레를 문지르는 ‘대결레 체벌’ 사건 발생. 이튿날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해당 교사의 사과가 있었지만, ‘훈육 차원에서 했던 일’이라며 문제를 축소.

▷ 2011년 9월 21일,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기소. 교육감 직무정지.

▷ 2011년 9월 28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의제에 대하여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지속 추진과 지연, 무산까지 다양한 해석 나와.

▷ 2011년 9월 2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 11곳,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체벌 금지 정책 등을 방조해 온 임승빈 권한대행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교과부에 경질 촉구.

▷ 2011년 9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로 송부.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입법 예고는 언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 2011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

■ 학생인권조례제정 전국 현황

- **경기도** : 2010년 제정. 2011년 본격 시행
- **서울** : 2011년 8월 주민발의 성사. 9월 30일 의회 송부. 서울시교육청은 10월 중 조례안 제출 계획을 갖고 있으나 변동될 가능성 있음.
- **광주** : 2011년 8월, 광주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9월 26일 시의회 교육상임위 통과. 10월 5일 본회의 통과 예정
- **전북** : 전북교육청에서 6월 말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지시 서명운동 진행 중.
- **강원** :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반기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계획.
- **전남** : 전남도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인권조례로 추진 중. 8월말 조례안 초안이 발표되고 2차례 의견 수렴 공청회가 개최. 이에 대해 교육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규정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 단체들의 비판이 상당한 상태.
- **경남** : 2011년 5월말 경남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시작. 현재 주민발의 서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 **경북** : 2011년 2월, 전교조경북지부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 발표. 학생 체벌과 강제학습 등 문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교사, 학생 모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높은 동의를 나타냈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모색 중.
- **충북** : 시민단체들이 '충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내부 교육과 간담회와 함께 주민발의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
- **울산** : 울산인권운동연대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 사전 작업으로 학교들의 개정학칙(체벌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학칙을 개정했음)에 대한 조사 작업, 학생인권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음.
- **대구** : 대구교육청에서 '교육권리현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대구학생인권연대 스텝'(이수나로, 반딧불이, 전교조, 참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권리현장에 대한 비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할지 여부는 미정.
- **충남** :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추진 준비 단계.
- **인천** : 여러 단체가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난 9월 29일 '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먼저 의원입법 형태로 인천시의회 통과.

- 제주 : 2011년 초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에 관한 도민 요구조사를 진행. 조례 제정에 대한 도민 요구는 높게 파악되고 있으나, 주민발의 여부는 미정.
- 부산 : 움직임 없음.
- 대전 : 움직임 없음.

[자료 2]

[기자회견문]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화답할 차례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부쳐

거센 격랑을 뚫고 종착지에 도달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지난 9월 30일 마침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교육을 향한 서울시민의 열망에 거슬러,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역풍이 또다시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도 뜨겁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단지 교육감 개인이 갑작스레 내놓은 작품이 아니라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로부터 우려나온 정책이다. 사람으로 존중받으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고 환대받을 수 있는 교육, 민주주의의 참뜻을 몸소 익히는 교육,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 집약된 정책이다.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온 법적 현실을 교육자치를 통해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다. 적게는 서명에 참여해준 서울시민 10만의 지지를, 넓게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에 관한 서명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 마음을 졸였던 청소년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서울교육감의 부재리는 공백을 틈타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고자 부당한 음해를 일삼는 교과부와 일부 보수세력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기본적인 상식과 염치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최후의 열쇠는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때마침 광주시의회에서도 교육청이 발의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교육청 발의보다 더 깊고 큰 뜻을 지닌 주민발의로 마련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의 봄이 만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심의·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 하의 서울교육청이 눈치보기 행보에 빠지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를 서두를 수 있도록 의회가 견인해야 함도 물론이다.

서울시의회는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본디 취지와 서울시민의 뜻을 살려 조례안을 심의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갖대로 충실히 써내려간 시민입법의 결실이다. 앞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척하면서 갖가지 위헌적 의무의 족쇄로 권리를 질식시켜온 학교

의 고압적 권위주의로부터, 학생의 폭력은 문제삼으면서 학생에 대한 폭력은 도외시해온 교육의 모순으로부터, 장애와 성적 지향, 빈곤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자행되어 온 차별과 배제로부터, 특정 종교를 강요하며 학교를 선교의 텃밭으로 삼으려는 이기심으로부터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지혜의 소산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몹시도 길었던 장마와 태풍에도, 때이른 추위에도 벋는 고개를 숙이고 과실은 익는다. 학생인권과 민주교육을 향해 무장 타오르고 있는 시민의 열망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화답할 차례다.

2011년 10월 5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 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 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참고자료]

학교안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실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지난 9월 20일, 서울시 교육청이 초안 발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권리조항이 제외된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상담소에서는 그간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접수한 차별 사례들을 공개함으로써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이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당하고 근거없는 동성애 혐오는 다양한 형태로 학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교사의 혐오발언 / 집단 따돌림 / 입학 거부 / 폭언 및 폭행 / 공공연한 아웃팅 문제로 나뉘보는 상황들은 여전히 학교 안의 십대 청소년들의 열악한 인권 침해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래의 차별 사례들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게시판에 실제로 게시된 내담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차별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지역/나이(학년)/학교 유형 등의 구체적 정보는 모두 삭제 또는 수정되었음을 밝힙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는 항목을 요구하는 바이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이 같은 차별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1. 교사의 혐오 발언

[사례 1] 2011월 4월

며칠 전 수업 시간에 나이 지긋한 선생님께서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여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교육을 잘못 받는 건 참 나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자 “그 왜, 동성연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하지 말고 교육의 피해자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해요”라고 했어요. 동성애자들을 동정하는 시선을 가진 선생님의 발언이 매우 불편했어요. 이런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례 2] 2010년 09월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드라마 <인생을 아름다워>를 얘기하면서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동성애가 정신병이라고 하면서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했더니 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러더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두렵습니다.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누군가 내가 이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웃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사례 3] 2010년 09월

저는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은 악마의 유혹이며,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고 해요. 상담소 FAQ에는 성경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대충 그렇게 써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나쁜 것이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면, 동성애는 혹시 나쁜 것은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선생님께서 틀리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미치겠습니다. 저는 악마인 건가요? 너무 괴롭습니다.

[사례 4] 2009년 9월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호모들이 왜 에이즈에 걸리는 줄 아니? 똥독이 올라서 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아이들은 웃었고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말을 한 사람은 젊은 여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는 선생님들에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5] 2005년 8월

제 애인의 담임 선생님께서 (남자 선생님인데)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정말 친한 두 애가 있어요. 저희 반은 따로 다 떨어져 앉는데 그 둘만 붙어서 매일 장난하는데, 둘이 워낙 친구 사이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을 보시고 “딴 애들은 다 떨어져 앉아있는데 너희 둘만 붙어있네. 요즘 애들 다 왜 그러냐.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고, 매일 같이 다니고, 너희 둘 레즈 아니냐? 정신병원에 가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검사 좀 받아봐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레즈비언이 잘못된 겁니까! 레즈비언이 다 정신병자입니까? 소리 지르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2. 집단 따돌림

[사례 1] 2011년 3월

저는 여교에 다니는 동성애자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학교에서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저의 학교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절 자꾸 쳐다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밥도 먹질 못합니다. 정말 학교 가기 싫고,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2] 2010년 6월

제 절친한 친구가 반 아이들에게 제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직접 소문을 퍼트렸어요. 문자 메시지를 애들끼리 돌려 읽었다네요. 학교에서 소문이 그냥 잠깐 돈 줄 알았는데, 애들한테 몸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욕먹고 인상 쓴 표정을 지어서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겁났지만 소문이 차츰 가라앉았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문이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여자한테 돈 받고 몸 파는 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서, 저 혼자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낸 애들까지 욕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겁이 나고, 다른 어른들께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너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자퇴입니다. 하루가 일 년 같이 느껴져요. 이런 결정 이런 생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어머니께서 참으라고 버티라고만 하시니 정말 미쳐 버릴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입학거부

[사례 1] 2009년 12월

저는 FTM 트랜스젠더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었고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와 제 가족들 모두 너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입학을 준비하며 저는 제가 활동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학교에서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트랜스젠더인 학생은 입학할 수 없다, 그러니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보니, 그 학교에 합격한 다른 학생의 부모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제 글을 보고는 학교 측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저런 애를 자기 딸과 같은 기숙사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교라서 입학하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든요.

엄마는 지금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고 저더러 이게 사실이라고 다그치고 이런 일로 인해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고 하십니다. 전 학교에서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려봤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세요. 학교에 가서 제가 여자인 게 맞는 거라고 말하러는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학교에 꼭 가고 싶어요.

4. 폭언 및 폭행

[사례 1] 2008년 12월

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A, B가 있습니다. A와 B는 둘은 서로 친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둘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제게 해코지를 하네요. 몇 주 전부터 우리 반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반 애들도 절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군요. 며칠 전 다른 반 친구를 통해서, 그게 B라는 아이가 제 이야기를 애들에게 다

떠뜨려서 그런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월 들어서부터는 야자 시간에 야자를 하러 지습실에 올라가면 제 책상만 빼놓아져 있고, 책상 앞 부분에 책상을 발로 마구 찬 발자국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옆에 달린 사물함을 열어보면 제 책이 엉망이 되어 있고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전 '뭐 이번 한 번만 이러는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오늘까지 이러네요. 정말 요즘에 학교 너무 가기 싫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선생님에 의한 공공연한 아웃팅

[사례 1] 2006년 05월

여고생입니다. 중2 초에 처음으로 이반이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정체성 문제 때문에 힘들어 짧은 시간 자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알아버렸습니다. 부모님들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생님이 알렸죠. 저는 고1 중간고사도 채 마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하셨는지, 충격이 크셨습니다. 반년은 요양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만, 한 달 후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 선배들, 선생님들, 모두 싸늘한 눈초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학 중입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애가, 한국 생활을 벗어나 좀 더 넓은 곳에 가면 바뀔 거야. 글썄요. 저도 그러길 원했지만 이렇게 또 상담소를 찾아 왔습니다.

[사례 2] 2007년 10월

중학생이고, 사귀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둘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시곤 노발대발하시며 학교에 연락은 물론 제 여자 친구를 전학 보내겠다는 말을 하시며 겁도 주셨습니다. 그래도 꾀꾀이 버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선생님께 연락을 한 거 같아요. 선생님이 유난히 저희를 지적하고 갈라놓으니, 학교 애들이 알게 됐는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둘이 사귀다, 레즈넨이다, 변태다, 키스하는 걸 봤다는 등 별의별 소문이 돌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가만 계실 수 없었는지, 선생님들마저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며 떼어 놓으려 하고 계십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제게 남아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울학생인권조례 자문委, '학칙으로 인권 제한' 삭제

19일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근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3조 3항에 있던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제·개정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구절이 빠진 것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제외했다"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셌던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 조항이 추가됐다.

한 교수는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안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육기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무안을 주고 다른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는 등 교육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옳다 그르다 판단할 문제가 아닌,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자문위로서 교육청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지만 이 조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최종 결정은 교육청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청은 내부·관련기관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서울시의회에 최종안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로 이송됐다.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지난달 공개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 규정으로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윤근혁 기자, 「'저주' 받는 서울시의원들 "기독교단체들이..." - 서울학생인권조례 반대자들 막말 문자 폭탄, '인권탄압' 맞네」, 오마이뉴스, 2011. 11. 23.

'저주' 받는 서울시의원들 "기독교단체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반대자들 막말 문자 폭탄, '인권탄압' 맞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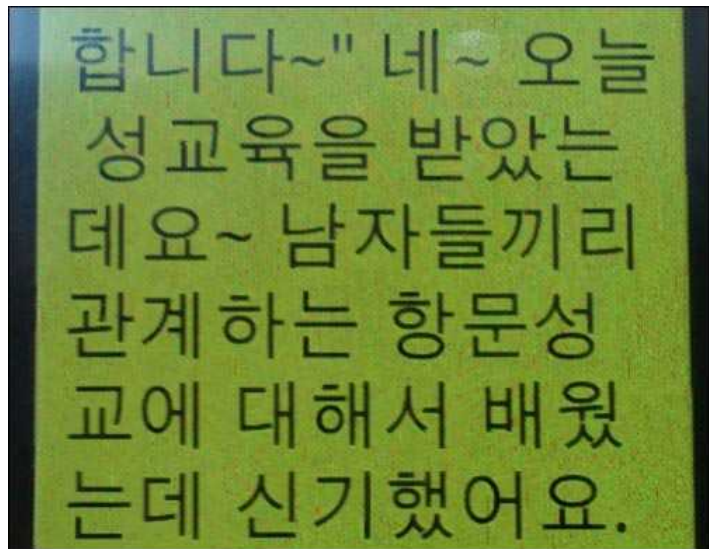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를 앞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자 폭탄에 따른 '대상'을 호소하고 있다. 항의 문자는 한 달 전쯤부터 시작됐지만, 21~22일 이틀 새에 150여 통을 받은 의원이 있을 정도로 부쩍 심해졌다.

이틀 새 150통 '막말' 등 문자에 서울시의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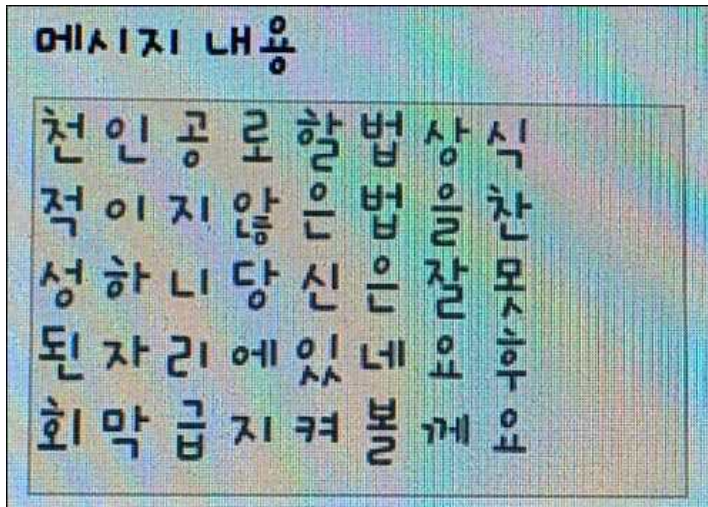
여러 권리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함께 들어 있는 주민발의안을 겨냥해 일부 기독교 단체들

이 문자 공격을 시작한 것이라는 게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기독교 인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서울시 교육위 의원 15명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찬반 성향 등을 공개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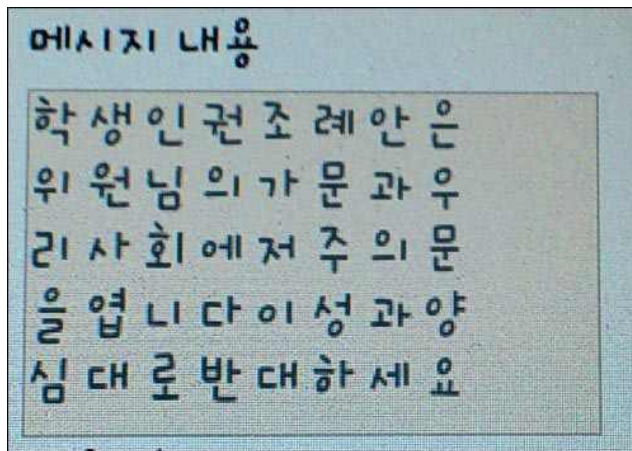
기자는 22일 오후 김형태 교육의원과 윤명화 시의원(민주당)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살펴봤다. 핸드폰 창에 적힌 문자에는 '항문성교, 저주, 천인공노' 등 인권탄압과 협박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은 그 내용 가운데 일부다.



▲ 서울시의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 © 윤근혁



▲ 서울시의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 © 윤근혁



▲ 서울시의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 © 윤근혁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어느 날 의원님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끼리 관계하는 항문성교에 대해 배웠는데 신기했어요"

"내 자녀를 동성애자로 만들고 어린 애들에게 임신을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즉시 무효화시켜 주세요"

"학생인권조례안 찬성하면 의원님 자손은 끝납니다. 남자 머느리 보게 될 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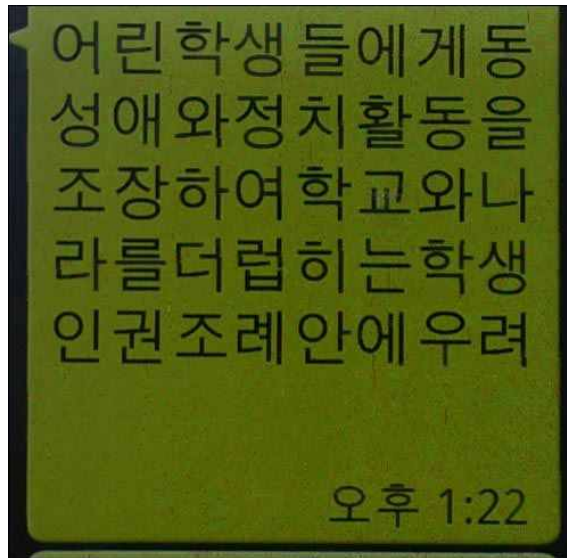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정치활동을 조장하여 학교와 나라를 더럽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우려를 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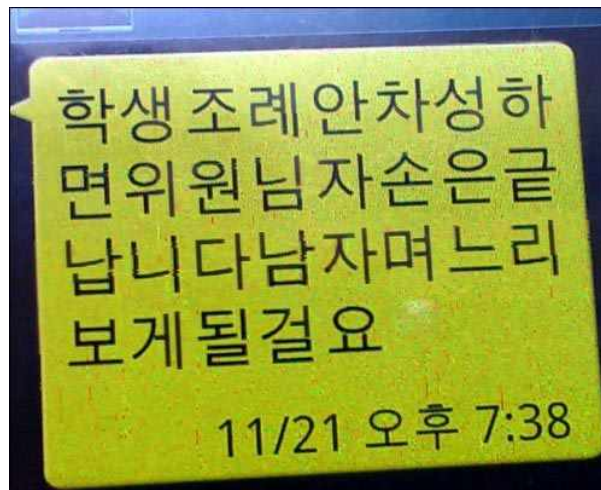
"천인공노할 법을 찬성하니 당신은 잘못된 자리에 있네요"

"학생인권조례안은 의원님의 가문과 우리 사회에 저주의 문을 엽니다."

"학생인권조례안 결사반대!!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낙선을 위해 전국을 돌며 힘써 싸우겠습니다."



▲ 서울시의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 © 윤근혁



▲ 서울시의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 © 윤근혁

김형태 의원은 "새벽에도 문자가 오고 그 내용 또한 거의 성적 테러 수준"이라면서 "문자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항의문자도 기본 품격이 있는 법"이라고 하소연했다.

윤명화 의원도 "협박하는 문자는 물론 항의전화도 오고 있는데 공손하게 받으려고 하지만 화가 날 때가 많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부 종교단체의 왜곡된 정보만 갖고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동성애 조장론은 왜곡선전"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글귀를 악용해 동성애 조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병원을 신설한다고 환자를 조장한다고 말하는 격"이라면서 "이들은 '특정 종교교육 강요 금지' 등이 들어간 학생인권조례안 전체를 반대하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왜곡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개최하고 다음 달 19일 폐회하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지난 9월 30일 시의회로 보낸 바 있다.

최근 이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회부됨에 따라 이 발의안을 뼈대로 일부 내용을 손질해 학생인권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협박성 '문자 폭탄'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교육시민사회단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2011. 11. 23.

의 견 서

- 발 신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외 교육시민사회단체
- 수 신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 일 시 : 2011년 11월 23일(수)
- 제 목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 문 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
017-214-3550, hrs3388@gmail.com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이렇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올해 유난히도 굴곡이 많았던 서울교육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서울시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는 아직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항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에 쏟아진 우려와 폄하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새로운 교육’,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와 열정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올해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차례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조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열망으로 빚어낸 주민발의안을 지켜주십시오

■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불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던 주민발의운동이 10만에 이르는 서울시민의 지지 서명으로 기적처럼 성사되었습니다. 급식조례, 서울시청광장조례에 이어 3번째로 서울에서 주민발의가 성사된 조례안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기준, 국내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낡디 낡은 학생인권의 현실과 새로운 교육을 열망하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한땀 한땀 소중히 모은 주민발의 서명지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모습

■ 새로 만들어진 법은 과거의 법보다는 좀더 나은 것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보다 더 진전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광노현 교육감도 일관되게 공약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지역마다 들쭉날쭉 편차가 심해서도 안 됩니다. 악의적 왜곡이나 부풀려진 오해로 인해 조례의 취지가 훼손되고 기준이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최근 논란이 된 몇몇 조항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권고 등 국제사회는 일관되게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유엔 기준들은 또한 “교실과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적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논란은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부러 선택한 악의적 왜곡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니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지었는데 마치 병원이 생겨서 환자가 생긴다고 말하는 꼴”이라며 일갈한 바 있습니다.

1.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반드시 명시되어야

■ 40명 학급당 적어도 2~4명 정도의 성소수자 학생이 존재하고 있음이 국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모욕과 구타, 차별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자살 위험에 내몰리거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4>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CRC /C/KOR/CO/3-4, 28~29항).

■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정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학교의 의무와 구제수단 등을 담은 교육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의 평등법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에게 포용적 학교환경을 조성할 교육당국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는 ‘비차별의 원칙은 권리의 인정과 실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편견에 맞설 때에야 비로소 폭력은 멈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별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맞설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거나 차별을 묵인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차별을 부르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주민발의안에 담긴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조항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광주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발의안은 여기에 ‘성별정체성’을 추가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보장하였습니다.

2.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교과부도 수용한 정책 방향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미혼모 가운데 84.9%가 학업을 중단했고, 절반 이상(54.5%)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 등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미혼모 중 60% 가까이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06)에 따르면, 전체 미혼모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24.9%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53.5%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비혼 상태로 부모가 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임신과 학업 중단은 장기적으로 실업과 빈곤으로, 그리고 다시 자녀의 빈곤과 사회적 방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미혼모(아직 출산하지 않고 임신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과학

기술부 등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과부**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 마련하기로 하고, 일선학교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조례로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CRC/C/KOR/CO/3-4, 28~29항).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구별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하거나 휴학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집회의 자유 조항 명시되어야

■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재단비리 해결’, ‘급식 개선’, ‘비민주적 학교생활규정 개악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체벌이나 부당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학교가 학생의 ‘집단행동’을 엄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체벌을 당하거나 학생회장 출마를 저지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부당 징계나 처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집회 개최나 참여를 부추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생들이 학내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 이유는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교가 정치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대다수 학내 집회의 사유는 학생인권 문제나 학교비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굳이 집회를 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가 이러한 운영 원칙을 저버렸을 경우에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 근거가 없는 비판입니다. 집회의 목적이나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열리는 학생조회도 집회의 일종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학내 집회를 교육 경험의 일환으로 받아**

들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최, 기획,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가’와 ‘불허’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칩묵이나 피켓팅,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평화로운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 활동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부의 지침, 교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CRC/C/KOR/CO/3-4, 40~41항). 지난 2008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내 집회를 학교측이 강제해산하고 체벌 등을 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학교구성원의 안전이나 학습권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제한 조항을 삽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종교 자유 조항은 이미 확립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일 뿐

■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서울 유·초·중·특수학교 가운데 종립학교는 무려 256개에 이릅니다. 이 중 기독교 설립 학교는 150개로 60%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기독교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자유 조항에 대해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션스쿨의 근본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학생에게 종교 의식이나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이미 교육당국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입니다. 특히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단식농성으로 ‘강요 금지’의 원칙은 재확립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종립학교들도 이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종립학교들이 관리·감독의 공백을 틈타 종교의식 참여를 거부하거나 대체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왔고, 학생의 신앙을 이유로 학생회 활동 등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한 학교가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의무 참여를 요구하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2011.2.11 BBS 기사 참조).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자유 조항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기준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고 있을 따름이지, 새로운 기준을 종립학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종립학교들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실제적으로 제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면서 현재의 조치로는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CRC/C/KOR/CO/3-4, 38~39항).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위상은 남다른입니다. 경남, 전북, 강원, 인천, 전남,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모델 삼아 조례 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서울본부와 서울교육의 혁신을 바라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민주시민들의 열망과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녹색당당준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별첨 1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해설

※ 별첨 2 : 3,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교총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 연대 결성

학부모단체 등과 공동 추진

23일 전북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하면서 보수진영 교육단체들의 학생인권조례 저지 운동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개 시립도 교총과 대한민국교원조합(대교조), 자유교원조합(자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사회단체와 연대해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연대` 결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교총이 다른 보수 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 연대` 결성과 추진에 대해 25일 오후 2시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대회 의장에서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의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 연대 결성(안)`이 대의원회에 추진되면 16개 시립도교총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교조), 자유교원조합(자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사회단체와의 연대 제의를 통해 기구를 구성할 전망이다.

교총은 기구 구성후 추진되고 있는 시립도의회에 공개서한 전달, 시립도의회 교육위원 대상 방문활동 전개, 조례 제정 반대 청원서 전달,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 입법청원 서명 결과 전달을 할 계획이다.

교총 측은 "전북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법률적, 학교 현장적 접근에 따른 올바른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여타 시립도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은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조례보다는 `현장`과 `선언문`으로 규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논의해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을 제정해 지키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침해현황 전수조사를 인용해 "올해 1학기에 만 총 1795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 현황을 다 합한 1214건을 훌쩍 뛰어넘었고, 그중 39%가 광노현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지시한 서울에서, 26%가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경기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내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여부 이번주 결정

16일 시의회 안건 상정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대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지가 이번 주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조례 제정 여부와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로 이송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6일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 여부를 정한다.

교육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결론이 안 나면 다음 회기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류 상태'로 두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번에 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게 교육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부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조례안 자체는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교육위 의원은 "조례 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 유보 의견이 대등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주에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하면 서울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시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조례 공포를 거부할 것인가'라는 시의원의 질문에 "시의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답변했었다.

현재 교육위원회 다수를 이루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교육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적(性的)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내 집회 허용을 담은 조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어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30일 시의회로 넘겨진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교내집회 허용,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소수 학생 권리 보장 등을 담아 내놓았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가 주민발의안을 상정할 때까지 조례안을 이송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조례안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교육청 자문위가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0월 학칙으로 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구절을 삭제하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동성애 조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교권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교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보수, 진보 관계없는 교육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 발 신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수 신 : 서울시의회 의원 및 각 언론사
-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 제 목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훼손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 문 의 : 배경내(017-214-3550), hrs3388@gmail.com

[성 명]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훼손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 인권·성소수자 단체들의 의회 농성을 지지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코앞에 다가 왔다.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은 급식지원조례, 시청광장조례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주민발의로 성사된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교육을 향한 서울시민의 열망은 이미 주민발의의 성사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갖가지 음해로 조례 제정을 좌초시키려는 역풍이 만만치 않다.

13일 보수단체들이 결집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조례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일부의 소수 단체들이 비상식적 주장을 앞세워 서울시민 10만과 교육계 안팎의 지지를 받아 성사된 주민발의안의 훼손과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도 최소한의 염치도 찾아보기 힘든 행태이다. 더구나 지금 학생인권조례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무상급식 반대를 목 놓아 외쳤던 이들, 학생·교사의 인권과 학교 민주주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권위주의적 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이들, 특정 종교를 강요하며 학교를 선교의 텃밭으로 삼으려는 이들, 교육과 종교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모욕을 지속시키려는 이들이 아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잣대로, 위헌적 교칙의 족쇄로 질식돼 온 학생인권의 현실로부터 꺼내려간 시민 입법의 결실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부 단체의 부당한 음해에 휘둘러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주춤거리거나 조례 내용을 가위질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도 이미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보장을 촉구한 권리를 서울시의회가

외면함으로써 형평성을 해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조례안의 원안 통과, 차별없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 인권·성소수자 단체들이 긴급 농성에 들어갔다. 부당한 음해와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 조례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 올 상반기 서울시민의 뜻과 열망을 모아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던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이들의 간곡한 뜻을 받아 들여 어떠한 훼손도 없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11년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 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박수진 기자, 「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해야” 」, 뉴시스, 2011. 12. 14.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해야”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14일 “서울시의회는 성적 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키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 괴롭힘,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있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학생인권조례안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30일 시의회로 넘겨진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안은 학생은 성별, 임신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공동행동은 이날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사례보고회’를 개최하고 ▷동성애를 이유로 강제로 전학을 보내거나 취업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등 전국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접수된 46가지 차별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9월30일 시의회로 넘겨진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교내집회 허용,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소수 학생 권리 보장 등을 담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원·학부모 단체들은 “학교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권리를 인권으로 용인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천용길 기자, 「16일 심사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요구 높아 - 폐지 요구한 보수단체들, 점거농성중인 활동가들에게 고성 질러」, 민중언론 참세상, 2011. 12. 15.

16일 심사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요구 높아

폐지 요구한 보수단체들, 점거농성중인 활동가들에게 고성 질러

14일 성소수자와 지지자, 인권활동가 30여 명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점거 당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보수집단은 주민조례안 중 차별금지 조항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하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임신출산을 허용한다는 사실무근의 왜곡선동으로 인권조례안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한다면 일부 기독교, 보수집단은 함부로 ‘인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차라리 학생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라”고 지지를 보였다.

896명의 기독교인들도 15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 선언’을 발표하며 농성자들을 지지했다. 선언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며 “차별 없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만들어지더라도 위의 중요한 조항들이 삭제되는 것은 결코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학생인권조례 폐기 요구가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국제적인 서명 운동 사이트인 change.org에 게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 촉구 서명 운동에도 15일 17시 현재 521명이 참여했다.

사회당도 15일 논평을 통해 “성적 지향 등의 표현을 삭제하지는 주장은 인권에 예외조항을 두지는 것으로



[출처: 비마이너]

학생인권조례를 '반인권조례'로 전락시킬 뿐이다.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며 점거농성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주민발의안 폐지를 요구하며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충돌을 빚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15일 오전 11시 보수단체들(참교육 어머니전국모임 등)은 서울시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초중고 동성애 허용하므로 어린이 동성애를 조장, 초중고생 임신과 출산을 확산, 종교사학의 학교 존립 위협, 학생을 전교조 시위 전위 부대로 이용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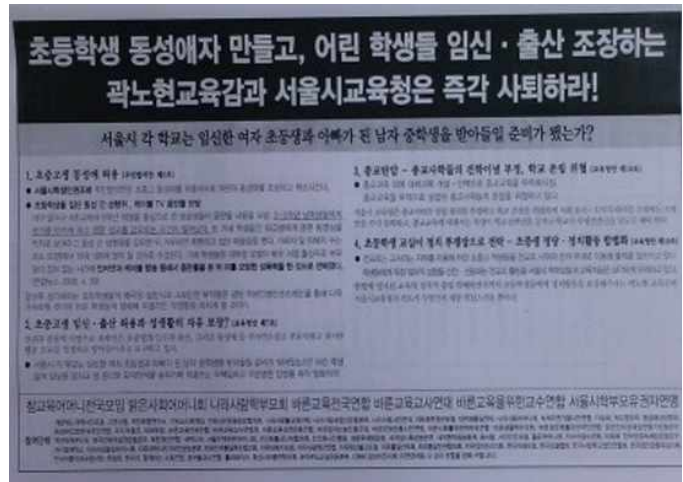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들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은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진행중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전교조 홍위병이 될거다”, “학생들 동성애자로 만들거나”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인권조례서울본부)는 “보수단체들이 성소수자 인권 옹호 피켓을 두고 조롱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침묵으로 임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점거농성과 함께 서울시청별관 앞, 대한문 앞 등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저녁 7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시민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수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보수단체들이 배포한 유인물

전혜원, 「서울학생인권조례, '애정남'이 결정한다고? - [서울시학생인권조례①] 인권조례, 원안 그대로 제정돼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2011. 12. 15.

서울학생인권조례, '애정남'이 결정한다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①] 인권조례, 원안 그대로 제정돼야 합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글을 2회에 걸쳐 실습니다. [편집자말]



▲ 지난해 7월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발족식 및 토론회를 열었다. © 최인성

세상에는 참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애매한 인간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1993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처럼 저 역시 19살의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3은 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중·고 시절을 12년에 걸쳐 마치지만 저는 그냥 10년 4개월 만에 끝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상처를 많

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지만 내년에는 대학생이 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명문대. 이렇게 애매한 나의 정체성을 정리해줄 단어들 있습니다. 자퇴생, 검정고시생, 탈학교 청소년, 예비 대학생, 혹은 잉여.

대학생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제가, 이제는 '고딩'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조금 어색해진 제가, 나이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달고 다닐 날도 20일밖에 안 남은 제가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가방끈도 짧은 데다,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한지라 글의 앞부분만 읽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실 듯하여,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딱 한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원안 그대로, 훼손 없이, 당장 제정하라.'

여기까지만 읽어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 잉여의 19살 청소년이 왜 이를 악물고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궁금하다면 조금 더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에 다녀 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를 기억하며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이 행복했다면 왜 행복했는지를 떠올리며, 그 시절이 불행했다면 왜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곱씹으며 제대로 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조례에 담긴 9만7702명의 마음

여기에 9만7702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민 1%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중 유효판정이 난 서명자의 수가 9만7702명이었습니다. 무효 서명까지 더한다면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인 '경기학생인권조례'가 놓친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며, 국제인권기준과 국제법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조례를 적용받는 학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제한요건의 삭제 등으로 '경기학생인권조례'보다 한 발 더 진보한 조례안이 탄생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학생인권보장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첫 제도적 성과라는 의미가 큼니다. '학생인권조례' 없이는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든 부끄러운 세상에서, 어디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런데, 낡은 교육의 변화를 원하는 10만여 명의 서울시민들, 오랫동안 학생인권을 위해 땀 흘려온 사람들, 교육주체들, 그리고 130만 서울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려 왔을 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들을 나열해 놓은 조례안이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다른 이들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63개 보수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지난 13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부결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게다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1절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에서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서울학생인권 주민발의안은 오는 16일에 있을 교육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 본회의(19일)에 상정조차 될 수 없습니다.

너덜너덜해질 인권조례,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 중요성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올해 처리되지 못한다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낡디 낡은 교육의 변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던 10만 서울시민들의 요구와 130만 서울시 청소년들의 열망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힐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으로서 감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합니다. 단체로 난독증에 걸리기라도 하셨나 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하라는 말과 같은 것인가 봅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단체로 성소수자가 되지는 말과 같은 것인가 봅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학생들을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내몰지 않게 만들어야 할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조항이 빠진 상태로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 스스로가 차별을 재생산해 낼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차별로 얼룩지고 너덜너덜해질 학생인권조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3만 원을 내야 할지, 5만 원을 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애인의 관심과 집착의 기준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허나, 학생을 향한 매와 사랑을 구분하는 것은 애매해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권'은 애매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어떤 단서 조항도 달지 않은 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기에, 그것은 더 확고해지고 명확해져야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 애매함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동안 세상과 학교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만 지워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살아 숨쉬며 존재하지만 마치 태초부터 없던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가두고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지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롱한 빛들이 제 색을 잃은 채 바래져만 갈 것입니다.

그 어떤 학생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던 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내 친구들의 존재를, 이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대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훼손 없는 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합니다

학교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져야 했던 시간들을 지나, 10대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마주할 수 있었던 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오늘날 학교에 다니고 있을 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종교의 이유로, 성적을 이유로 그렇게 그 견고한 기준과 고정 관념, 통제와 폭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존재를 부정해 왔을지도 모를 당신이 그때의 내 자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초의 참회록이자, 기성세대로서의 당신이 지금의 우리에게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문입니다.

학교 안에서 단 한 순간도 온전히 '내 자신'일 수 없었던 시간들을 보내며 끝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들어야 했던 순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는 그렇게 지워져도 되는 것이었냐고 학생 주제에 '감히' 임신을 하고 출산을 선택하는 순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나'는 그렇게 지워져도 되는 것이었냐고 벽장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별받지 않을 나'는 그렇게 지워져도 되는 것이었냐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권리를 줘야 할지, 그것이 부여해도 괜찮을 권리인지 저울질할 자격이 그 누구에게 있는가. 장황한 설명과 변명은 절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훼손 없는 서울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박소라, 「'소수자' 차별하는 학교가 '미친학교'다 - [서울시학생인권조례②]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다」, 오마이뉴스, 2011. 12. 16.

'소수자' 차별하는 학교가 '미친학교'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②]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글을 2회에 걸쳐 실습니다. [편집자말]

학교와 교사들은 참 오지랖이 넓다. 그들은 입시를 위해 학생들의 성을 억압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성 규범을 벗어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렇게 행해지는 폭력들은,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되고 심지어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여겨진다. 특히나 청소년 성소수자와 임신·출산 청소년 등에 대한 혐오범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와 임신·출산 청소년들의 입지는 매우 좁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수업 중 교사들의 발언, 교과서 내용, 학생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주위엔 당연히 없는' 존재이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소수성이 학교에 알려지는 순간, 학교로부터 또 같은 학생들로부터 온갖 직·간접적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아웃팅 당해서 학교전체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기도 하고, 퇴학당하거나 자퇴를 권고받기도 한다. 굳이 그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임신·출산 청소년들은 대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육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물론 자퇴생·퇴학생들 중에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성소수자인 내가 학교를 박차고 나온 이유

나는 탈학교 레즈비언 청소년이다. 내가 학교를 그만둔 데엔 교사들의 이런저런 폭력, 말도 안 되는 온갖 교칙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적이거나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교육과, 호모포비아인 교사들과 학생들도 한몫 했다.

학교에서의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은 차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으니, 커밍아웃은 상상도 못 하고 이성애자인 척하면서 생활했다.

10년 가량을 그러고 살았더니, 이게 내 삶인가 싶고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 자퇴를 결심했다.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면서 내 돈을 안 들이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변한다면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보수 단체들이 "학생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임신·출산시키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코웃음이 나온다. 동성애자와 임신·출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차치하더라도, 어쩌서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말'이 '다 같이 소수자가 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말에, 혹은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는 말에, "그럼 나보고 장애인이 되라는 이야기냐", "그럼 나보고 성전환수술 받아서 여자가 되라는 말이냐"라는 식으로 발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바뀌어야 하는 것은, 폭력적인 '미친 학교'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은 학교를 다니는 성소수자 청소년, 임신·출산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진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그나마 만들어지는 안전망이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신·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이 사회의 편견과 청소년 보호주의에 근거한 보수 세력들의 주장들에 의해 사라진다면, 학교를 다니고 싶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 말인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임신·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없느니만 못하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해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교내의 성소수자들과 임신·출산 청소년들이 아니라, 현재의 폭력적이고 다수자 중심적이고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미친 학교들이다. 그러한 학교들을 바꾸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성소수자, 임신·출산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은 들어가야만 한다.



▲ 지난해 7월 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최인성

홍권호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라"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비공개 심의 중... 결과 기다리며 3일째 농성 이어가」 민중언론 참세상, 2011. 12. 16.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비공개 심의 중...결과 기다리며 3일째 농성 이어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심의하는 16일, 학생인권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3일째 농성 중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 지향' 등을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비공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에 들어갔으며, 성소수자들의 의원회관 로비 점거농성은 3일째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이루 청소년 인권활동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를 위해 활동가들은 엄동설한에 하루 12시간씩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라면서 "하지만 이렇게 발의한 조례가 누더기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 몇 명의 의원들이 바꿀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 대표는 "처음에 주민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시민들은 '무슨 학생인권조례냐?'라는 반응이었지만, 나중에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가까이 서명을 해주었다"라면서 "따라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담긴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며, 그래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경기와 광주를 보면 될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심의하는 16일, 학생인권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3일째 농성 중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 성소수자 공동행동 주리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임신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연애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학교에 적합하지 않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등으로 사람을 나누며 배제와 따돌림을 통해 인권을 짓밟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리 활동가는 "그래서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성적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으나 더는 물러설 수 없어 처음으로 입법기

관과 얼굴을 마주하며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만약 오늘 교육위원회가 성소수자학생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를 담은 주민발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주민발의를 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사람들은 의원회관 로비 농성장으로 이동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서울시청별관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 교육위원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참가자들.



▲ 같은 시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의회 로비 점거농성장에서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농성을 이어가는 사람들.

김영민 기자, 「[포토뉴스]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사 보류」, 경향신문, 2011. 12. 16.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사 보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회원들이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시의회 별관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민발의안 심사를 시작했으나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김상현 위원장은 “19일 오전 9시에 안건을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민주당에 묻는다 - 민주시민의 뜻,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무산시킬 것인가」, 2011. 12. 17.

[성명]

민주당에 묻는다

- 민주시민의 뜻,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무산시킬 것인가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19일로 심의를 연기하였다. 서울시민 10만의 서명과 교육계 안팎의 지지, 학생들의 열망이 담긴 주민발의안은 19일 오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참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의 책임을 일차적으로는 비상식적, 반인권적 논리를 들이대며 소모적으로 논의를 지연시킨 한나라당 정문진 의원을 비롯한 보수 교육위원들에게 묻는다. 이들은 보수단체들이 권위주의적 교육으로의 복귀와 정치적 목표를 위해 억지스레 만들어낸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노라 민주교육과 학생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보수 교육위원들은 그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정도의 해피망측한 망언을 일삼으며 학생의 존엄과 소수자의 인권을 공격했다. 이들에게 서울 교육의 운명이 내맡겨져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당론조차 결정하지 않은 민주당과 말을 바뀌가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심의의 보류를 결정한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한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박재웅 교육위 부위원장은 한나라당과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반민주, 반인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결집된 것이다. 애초 인권과 교육의 논리로 만들어가야 할 이 조례안은 보수단체들의 억지와 총공세 속에 피할수 없이 ‘민주 대 보수’의 구도 안에 빨려 들어가 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무참히 할퀴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이들, 학생·교사의 인권과 학교 민주주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권위주의적 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이들, 특정 종교를 강요하며 학교를 선교의 텃밭으로 삼으려는 이들, 교육과 종교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모욕을 지속시키려는 이들이 아닌가.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무산 위기에 즈음하여 민주당에게 묻는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교육을 바라는 서울시민의 뜻을 저버릴 것인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한 보수들에 휘둘러 학생인권조례 무산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교육혁신의 후퇴로 가는 교두보를 넘겨줄 작정인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경기도와 광주에도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 시민의 뜻이 결집된 주민발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한 가위질로 민주시민의 뜻을 왜곡,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만약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거나 개악된 내용된 제정된다면 그 결정에 함께 한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의 결단을 기대한다.

2011년 12월 1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내년 시행 무산 위기

· 민주당 당론조차 못 정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연내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미루면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잇달아 열리는 교육위와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내년 시행은 사실상 무산된다. 주민발의안을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서울본부) 측에서는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차별 금지와 학생들의 집회 허용, 종교·임신·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당초 16일 교육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19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서울본부 측은 18일 “서울시민 10만명의 서명과 학생들의 열망이 담긴 주민발의안이 19일 오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참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교육위원들에게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당론조차 결정하지 않은 민주당과 말을 비껴가며 심의 보류를 결정한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거나 개악된 내용이 제정된다면 그 결정에 함께한 의원들을 ‘주민소환’하고 민주당 심판 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에서 1년 넘게 고생해서 의원들이 할 일인 주민발의안을 대신 올린 셈인데, 의원들이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성소수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달라 혼란이 있었고, 종교계까지 움직이니 의원들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형태 시의원은 “교육위원 15명 중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5명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중 성소수자, 임신 또는 출산 등의 구체적 언급을 빼고 원칙적 입장이 담긴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이 안이 교육위에서 처리되면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변수가 많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권조례는 무상급식에 못지않은 진보진영의 상징적 정책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의 미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을 훼손하지 말라」, 2011. 12. 19.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의 미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훼손하지 말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과 간절한 희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오늘로 조례 심의를 연기하였다. 주민발의 서명에 참여했던 서울시민 10만과 교육계 안팎의 지지, 나아가 130만 서울학생의 열망이 담긴 주민발의안은 오늘도 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참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밑받침하며, 지난해 겨울에서 봄, 다시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진 서명운동의 땀과 눈물로 지어낸 결실이다. 학생인권이란 주변적 의제로는 주민발의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성사된 시민입법의 결실이다. 갖가지 위헌적 의무와 권위주의의 족쇄에 묶여 질식돼 온 학생의 존엄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성과 평등, 자유의 공기 속에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의 선택이다. 민주주의의 참뜻을 몸소 익힐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서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는 지혜의 소산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해피망측한 논리를 앞세운 수구세력의 외압에 휘둘러 민주시민의 뜻을 무참히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퐁퐁 언 대지를 녹이고도 남을 만큼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매섭다. 우리는 오늘 교육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 과정과 결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수구세력이 억지스레 만들어낸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고 학생의 존엄과 소수자의 인권을 무참히 공격해대는 이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거나 주민발의안이 부당한 가위질로 훼손될 경우, 그 누구보다 서울시의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선포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의 미래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 민주시민의 뜻이다. 주민발의안의 후퇴와 훼손에 반대한다!
- 경기도 조례와 광주 조례는 마지노선이다. 서울시의회는 경기도, 광주보다 더 진전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 경기도도, 광주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했다. 차별 금지 조항을 원안대로 제정하라!

2011년 12월 19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김민경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의회 통과 」, 한겨레, 2011. 12. 19.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의회 통과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 서 시위를 벌이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학생과 회원들이 원안과 유사한 수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김 정효 기자 hyopcl@hani.co.kr

전국 3번째...‘집회 자유’ 첫 포함

‘성적 지향 차별금지’ 원안 그대로

집회의 자유 보장,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성 54표, 반대 29표, 기권 4표(재석 의원 87명)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 광주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시민 9만7000여명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동의안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그동안 보수단체들이 반대해 논란이 됐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주민발의안의 ‘학생은 …<중략>…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그대로 포함됐다. 학교 규칙으로도 두발을 규제할 수 없게 해 두발 자유화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등 일부 권리에 대해선 제한 규정을 뒀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지난 주말 민주당 중앙당 쪽에서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요구했고 이날 오전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장단이 참여한 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서 논의가 급진전했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두발의 자유 전면 보장,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담고 있어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른 지역의 인권조례 제정과 상위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의회에서 현장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의결한 인권조례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학생 학습권 침해, 교사 지도권 위축으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우려가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며, 조례안이 공포되면 일선 학교들은 조례에 맞게 학칙과 생활규정을 고쳐야 한다.

윤근혁/홍현진, 「'성적지향' 명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 -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성적 지향-임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그대로」, 오마이뉴스, 2011. 12. 19.

'성적지향' 명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성적 지향-임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그대로

[최종신 보강: 19일 오후 8시 45분]

19일 오후 6시 40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알리는 방망이 소리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재석의원 87명 가운데 54명이 찬성했고, 29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정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다. 하지만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주민조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았다. 이날 처리된 안건 총 52건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안은 51번째로 상정됐다. 학생인권조례 처리를 앞둔 오후 4시 20분께, 민주당 시의회는 '정회'를 선언하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날 오전 상임위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반발한 일부 시의원들이 '소신투표'를 주장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 끝에 민주당 시의회는 이날 오전 교육위가 통과시킨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성적 지향, 임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그대로

이번 조례안은 19일 시의회 교육위의 김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다. 하지만 주민조례안 원안의 핵심 줄기는 그대로 살렸다는 게 시의원들의 평가다. 학교 적용은 2012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5장 51조에 걸쳐 학생인권 보호 방법과 내용을 담았다.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이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2장에서는 10개 절에 걸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을 펼쳐보였다.

조례안 반대 단체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것은 '제1절 제5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였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동성애와 임신조장론 등 보수단체의 반발에 밀린 일부 교육위 소속 야권 시의원들이 21개 종류로 나열한 차별의 이유를 몽뚱그려 표현하는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막판에 원안을 살리기로 했다. 성적소수자단체의 농성이 이어지는 데다 민주통합당도 원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내용은 이미 경기도와 광주시 조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국제표준에 맞는 내용이었다는 게 찬성 쪽의 생각이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신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9.4%였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신이나 출산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은 모두 6명(임신 2명, 출산 4명)이었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수정안에서는 학교 교직원들의 우려를 의식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두발은 자유권을 완전히 인정했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는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종교교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일부 사학과 종교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도 논란이 됐다. 이 내용은 수정안에서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례안 "학생은 교사 인권 침해해선 안 되고 규범 존중해야"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논란이 된 내용 말고도 ▲ 학생자치 조직의 권한 실질화 ▲ 여학생 생리로 인한 결석 보장 ▲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와 인권옹호관 신설 ▲ 서울 학생 인권의 날 지정 ▲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조례안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 말고도 학생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제4조(책무)가 그렇다.

"⑤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1신 대체 : 19일 오전 11시 45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 '임신 및 출산'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김형태 교육의원 발의)을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19일 통과시켰다. 당초 보수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성적지향, '임신 및 출산' 등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인 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에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윤기 시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과 거의 다른없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학습권·안전 보장을 이유로 시간·장소·방법 등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 ▲ 두발·복장의 자유를 보장하되, 복장에 한해서는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원안과 달라진 점이다. 종교의 자유는 원안대로 보장되었다.

"원안통과"- "조례폐기" 시의회 별관 이수리장

당초 예상을 깨고 '사실상 원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민주당의 '결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욱 시의원은 "오늘 열리는 교육위 회의와 본회의에서 사실상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민주·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집토끼를 잡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주장하며 지난 14일부터 시의회 별관 1층에서 농성을 진행해온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교육위 조례 통과 소식을 듣자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시의회 1층 별관 일대에서는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측과 조례폐기를 주장하는 측 사이의 충돌이 빚어졌다. '학생인권조례 지지 범국민연대' 50여 명은 별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농성장에 난입해 "나쁜 조례, 폐기하라"고 외쳤다.

이들의 손에는 '동성애 허용, 창궐하는 AIDS, '우리엄마는 초등생! 우리 아빠는 중등생!'이라고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다. 한 회원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을 향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이념교육 시키려는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하다"라면서 "학교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덕영 교육의원은 교육위 회의에서 "임신·출산, 성적지향을 보장하게 되면 '선생님, 저 임신했거든요. 저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이런 이동 때문에 서른 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못 받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성애를 하게 되면 48%가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른들도 싫어하고 쉬쉬하고 감추는 것을 왜 학교사회에서 당연시하는 것인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토론을 펼쳤다.



▲ 19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외치고 있다. © 홍현진



▲ 19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이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현진

천용길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가결, 내년 3월 발효 예정 - 차별금지조항 원안대로 통과, 집회·복장 규제 등 일부 조항 수정」, 민중언론 참세상, 2011. 12. 19.

서울학생인권조례 가결, 내년 3월 발효 예정

차별금지조항 원안대로 통과, 집회·복장 규제 등 일부 조항 수정

서울시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돼 2012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서울시 본회의에서 52개 안건 중 51번째 상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오후 6시 40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4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은 경기, 광주에 이은 3번째다. 경기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 주도였던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주민발의에 의해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

인다. 더불어 통과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서울시의원들은 행정구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 수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시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과 무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다. 시의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애매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으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채택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주민발의안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있지만 핵심 쟁점이 됐던 차별금지 조항은 원안대로

2011. 12. 19 (월) 18:37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재석	출석
				113	101
5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투표결과					
재석	86 명				
찬성	54 명				
반대	28 명				
기권	4 명				
결과	가결				

▲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 4. 의원 1명은 통신 혼란으로 종이 투표해 투표결과에 포함됐다. [출처: 서울시의회방송 캡처]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수정된 내용은 16조 3항의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학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 복장·두발 규제 제한 조항 중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한 김덕영 교육위원은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권 보장을 강조했다.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 사회에서 부정하는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학교가 무슨 실험집단인가, 동방의 순수한 백의민족을 에이즈 파탄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호소했다.

더불어 한학수 교육위원은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조례”라며 “임신, 출산, 동성애 조장과 집회 결사의 자유, 두발과 복장 자유 등은 학교와 교실을 붕괴 시키는 독소조항이라 빼야한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이에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은 “학교 교실 붕괴는 학생 인권이 올라가서, 교권이 무너져서 붕괴된 것도 아니고 지옥같은 경쟁교육 때문에 붕괴했다”며 “임신, 출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게 조례안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헌법 21조 1항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에 근거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했다. 학생 정치적 자유 제한은 유관순 누님이 고등학교 때 데모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태 교육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학생은 지금껏 인권의 주체인 사람이라기보다는 훈육과 관리의 주체였다. 학생은 주체가 아닌 객체였다. 학생의 인권이 바로 서야 교사의 인권도 바로 설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원안 발의를 촉구하며 서울시 의원회관 로비에서 6일째 농성을 벌였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오후 7시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조례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김덕영 교육위원 [출처: 서울시의회방송 캡처]



▲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 [출처: 서울시의회방송 캡처]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 우려 표명」, 2011. 12. 19.

보도 참고자료 2011.12.19.(월)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 - 6580	

<자료문의> ☎ 02-2100-6642 학교문화과장 : 오승걸 사무관 : 이진영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 우려 표명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12.19(월) 서울시 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63개 단체)”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학생인권조례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으로 학교에서 학생 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압박’

“시교육청 수용땀 재의 권고”...시의회 재의결 불가피

대법에 제소 가능성도...“지방자치 흔들기 월권” 비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할 경우 시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2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용하면 재의 요청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청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교과부의 의견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를 시교육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인권조례가 통과된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시교육청에 이송됐으며, 시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교육청은 자동적으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 뒤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인권조례를 다시 통과시키면 조례가 확정된다. 그러나 19일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일부 시의원이 이탈해 찬성(출석의원 87명 중 54명)이 3분의 2가 안 됐다. 재의결 되더라도 교과부장관이나 시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과부 재의 방침이 알려지자, 인권조례에 찬성한 시민단체와 시의회 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22일 성명을 내어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재심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뒤 일정

12월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의회 의결 (87명 중 54명 찬성)
5일 이내	서울시교육감에게 이송
20일 이내	시교육감 공포 또는 재의요구 (※재의 요구시 시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확정)
20일 이내	시교육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

형태 서울시 교육의원도 “경기와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서울에만 문제를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대영 시교육청 권한대행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행정감사 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근혁, 「"학생인권조례 재의? 의원들 똘똘 뭉쳐야"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장 첫 공식 발언, "역사적 의미 있는 조례 통과에 가슴 뿌듯"」, 오마이뉴스, 2012. 12. 27.

"학생인권조례 재의? 의원들 똘똘 뭉쳐야"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장 첫 공식 발언, "역사적 의미 있는 조례 통과에 가슴 뿌듯"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대표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윤근혁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27일, 여권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재심의) 요구 움직임에 대해 "재의가 왔을 때 서울시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연 감사패 증정식 발언에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교육청 주민조례를 성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허 의장을 비롯한 김명수 운영위원장, 김상현 교육위원장 등 10명의 의원들은 이날 39개 단체가 모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대표들이 준비한 감사패를 받았다.

허 의장은 "재의 요구가 예상되어 고민하고 있다. 3분의 2가 찬성해 재의결하려면 아슬아슬한 상태"라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승 뿌듯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 의장이 여권의 재의 요구 움직임에 대해 공식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홍이 의원(교육위)도 "통금을 강요한 군사독재정부의 명분은 안보와 사회 불안이었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판정승보다는 KO승이 낫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 시민 10만 명의 주민발의로 시작되었고, 서울시의회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인권조례를 무효화하려는 행동은 교육과 주민 자치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이라면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시도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검토에 관한 질의서」 2012. 12. 29.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진보통합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수 신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이대영
 - 제 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검토에 관한 질의서
 - 일 시 : 2011년 12월 29일(목)
 - 문 의 :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017-214-3550), hregang@hanmail.net
-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성사시키고 제정을 위해 힘써왔던 단체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저희 조례본부 공동대표단과 각계 대표들이 이대영 부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은 질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재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로 성사된 조례안과 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안까지 신중히 검토한 끝에 수정된 조례안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재의'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까, 아니면 '조례 공포'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까?

2. 지난 11월 21일, 서울시의회가 진행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원안통과든 수정통과든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받아들이고 공포하겠느냐'는 서윤기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대영 부교육감님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습니까?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시의회 결의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공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또는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4. 부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은 현재 공석에 있는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교육감이 시민에게 약속하고 집행하고 있던 정책의 방향을 뒤집거나 중단시키는 것은 아닐 터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 일부 단체들의 정도를 벗어난 주장을 이유 삼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단체는 물론이고 서울교육을 사랑하는 각계 대표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한 로드맵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때이며 불필요한 절차로 사회적, 교육적 에너지를 낭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의 답변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보내실 곳 : h3388@gmail.com 또는 Fax. 02)365-5364

(끝)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검토 질의에 대한 답변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 2012. 01. 06.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검토 질의에 대한 답변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2012. 01. 06(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검토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검토 진행의 의도는?

【질의 2】

2011년 11월 21일 교육청 행정감사 시 서윤기 시의원 질문 -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학생 인권 조례 존중하겠다고 부감님이 답변 - 지금도 유효한가, 변화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가?

【질의 3】

조례안에 대한 재의 사유는 '공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또는 '상위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뿐인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가?

【질의 4】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위와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주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되나」, 뉴시스, 2012. 01. 05.

서울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되나



9일 이대영 서울 부교육감 재의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지난달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여부가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의 마감 시한인 9일 안으로 이 부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사실상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보수 교육단체들의 모임인 학생인권조례제정저지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5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범국민연대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와 제10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등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만약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 부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학칙으로 정해야만 할 사안을 조례로 정하고 강제성을 띄게 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앞으로 교실 붕괴, 교권 침해 등을 점점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진보 교육단체들은 재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행동대책위(이하 곽노현공대위)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오전 11시30분 시교육청 앞에서 이 부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곽노현공대위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당하게 통과됐으므로 이를 공표해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이 부교육감이 재의해도 19일 곽 교육감이 출소하게 되면 이를 다시 철회할 것"이라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도 아닌 부교육감이 무리하게 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만든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며 "역사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교육감이 9일 안으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성적(性的) 지향', '임신·출산'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종교 자유, 두발 자유,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학생 집회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서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시대착오’ - 본회의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조속히 시행되길」, 여성주의저널 일다, 2012. 01. 05.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시대착오’

본회의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조속히 시행되길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그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 차별사유 중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 등이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보수언론은 연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목소리를 신고 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심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긴 학생인권을 교육현장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례 제정 시작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앞으로 더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을 되짚어 보며 학생인권조례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자 장서연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의 변호사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성소수자가 들어가면 조례 통과 못한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앞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발의 원안에 있던 소수자 학생 권리보장 조항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삭제된 수정동의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내가 항의하자, 한 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가 들어가면 조례가 통과는 못한다.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되더라도 괜찮냐.”

그 의원의 말은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5명 중 한나라당 시의원 1명, 보수 성향의 교육의원 5명은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진보성향의 교육의원 3명과 민주당 시의원들 6명을 설득해야 하는데,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들어가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위원회 통과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전 서울시의회 앞에 내걸린 현수막. ©장서연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매일 400-500통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동성애혐오 문자와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구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는 12월 16일, 또 서울시의회 본회의의 2011년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 정국 때문에 사실상 제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주민 발의한 조례안이었다. 앞서 제정된 광주와 경기도의 조례안과 다른 점이다. 청소년활동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서 2010년 7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주민발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필사적으로 총 97,702명의 유효서명을 확보하여 주민발의 청구한 조례안이었다.

성소수자 조항 때문에, 어렵게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돼도 괜찮은지, 묻는 말 앞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의원님들은 이 조례 때문에 잠깐 괴롭힘 당하는 것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는 평생 차별과 혐오에 시달린다. 이렇게 통과되면 하자있는 조례가 되고, 다른 지역, 차별금지 입법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왜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려고 하느냐, 왜 성소수자를 수정동의안에서 먼저 지워버리려고 하느냐, 상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삭제되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 회의록으로 공식적인 기록이라도 남는데 수정동의안 자체에서 지워버리면 의원님이 개인적인 책임을 질것이나.”

나의 이런 의견에 의원들은 난감해했다. “동성애지는 정신병자”라는 노골적인 혐오의 말들보다, 진보입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걸림돌로 여기게 된 상황이 비수가 되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학생인권조례 조직적 공격에 나선 보수단체들

학생인권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진보교육의 핵심적인 의제이자 공약이었다. 보수단체 쪽에서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을 동성애자 만들고, 어린 학생 임신·출산을 조장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보수단체들의 반대운동은 조직적이고 공세적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해, 2011년 8월 주민투표를 강행시킨 즈음, 당시 보수단체 쪽에서는 대형교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되면”, “미션스쿨 무너지고”, “초중고생 동성애 충만해지고”, “초중고생 정당활동 한다며 광우병 때처럼 시청 앞에 뛰어나가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됩니다”라는 식의 괴문자가 돌기도 하였다.

결국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과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겪으며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 이에 따라 ‘동성애 논란’을 회피하려고 2011년 9월 7일 초안을 발표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만 삭제하게 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특정 소수자집단의 청소년을 배제한 ‘정치적’ 결정은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네트워크가 긴급하게 결성이 되었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전화나 이메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 의견을 표시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적으로 채택한 최종안에는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보수성향의 주류언론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와 우려를 제기하는 여론몰이를 시작하였다. 국민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사설 및 기사를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실었다.

보수단체들의 터무니없는 공격은 유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감 권한대행권자인 부교육감(이대영)을 교체하면서, 교육청이 준비하던 학생인권조례를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도 상임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으며, 원안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등 대폭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정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 등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했던 주민발의 원안과 달리, ‘성적지향’ 등이 삭제되고 대신 ‘모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론 차별받지 않는다’는 식의 추상적인 문언으로 차별금지조항이 수정될 것이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장서연

라는 소식이 들렸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만약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이 폭력적인 성소수자혐오 주장 때문에 수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차별금지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여러 고민 끝에, 지더라도 이러한 절박함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고 결의했고, 서울시의회 접거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성소수자 서울시의회를 점거하다

2011년 12월 14일,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서울특별시의회별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하였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역사에서 성소수자들이 입법기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농성장을 지키러 모여 들었고, 많은 단체들이 지지방문과 지지성명을 내고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이후 쌓아온 운동의 성과와 자원들을 농성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외국의 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조직하였다. 유엔 산하의 국제인권조약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성적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이후 NGO 단체들이 국제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들이었다.

점거시위를 시작하고 가까워서 보니, 서울시의회의 내부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진행이 되었다. 공식방청이 되지 않아서, 한 의원실에서 모니터로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의원들의 인권의식은 천박한 수준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정문진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 동성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구강기 단계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다. 요즘에는 돈을 벌기 위해 임신하는 경우도 많은데, 학생 때 임신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 15명 중 8명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 다수가 교장관료 출신으로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명화, 서윤기, 김종욱 시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지만,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당일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



▲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원안 통과를 위해 2011년 12월 14일 서울시의회 별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 장서연

되었다.

관건은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결정이었다. 2011년 11월,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학생의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의 이상현 교육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2011년 12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전날인 일요일 오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긴급하게 대표단을 꾸려 국회를 찾아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조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진표 대표는 다른 의원들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서울시의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차별금지조항을 포괄조항으로 수정하면 안 되는 이유와 원안통과를 요구하는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19일 새벽까지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차별금지조항이 수정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했다. 농성기간 동안 성소수자 공동행동 사무국 활동가들은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다음날의 대응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준비해왔다.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이라고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운동과정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저주와 혐오발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육우당이 생각나는 밤들이었다.

‘성적지향’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상황이 반전된 것은, 당일 오전 8시경이었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차별금지조항 원안대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미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조항 보다 후퇴한 조례안은 차라리 만들지 말라는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렇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이 주민발의 원안대로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

그러나 아직 본회의의 통과가 남아있었다. 농성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 회의과정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찬반토론과정에서 김형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형태 교육의원의 찬성 토론을 감명 깊게 지켜봤다.

특히, 김형태 교육의원은, “기독교인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무지개걸개를 들고 대규모로 운집했다. © 장서연

땅에 지금 살아 계시다면 과연 그분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라고 하실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실까. 적어도 제가 믿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까지도, 그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했다.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인 태도와 보편 인권이 대립할 때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라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찬성토론을 마쳤다.

한국 역사에서 입법기관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이 쟁점이 되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입법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표결결과, 재석 86명 중 찬성 54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 순간 농성장에 있던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근거 없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되어야

성소수자들에게 이번 서울시의회 접거시위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성소수자혐오와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었다. 특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물 나도록 힘겨웠지만, 값진 승리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재의’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흔들고 있다. 재의요구가 되면,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가 찬성해야 조례가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광노현 교육감 사건의 선고가 연기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통과에 대한 환영 논평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헌법 제28조 제1항의 재의 요구 제도는 시·도의회가 권력을 남용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견제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교육·학예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적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 국제인권규약, 초·중등교육법령 등의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규로서 공익에 부합하므로, 애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실제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하루빨리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신준희 기자, 「학생인권조례 속히 공포하라」, 연합뉴스, 2012. 01. 05.

'학생인권조례 속히 공포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광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학생인권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공포하라"고 촉구하며, "10만 서울 시민이 발의한 주민조례안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의회,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1.5

이상원 기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서울인권조례지지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 서한..."청소년 권리 보장 환영」, 민중언론 참세상, 2012. 01. 06.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서울인권조례 지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 서한..."청소년 권리 보장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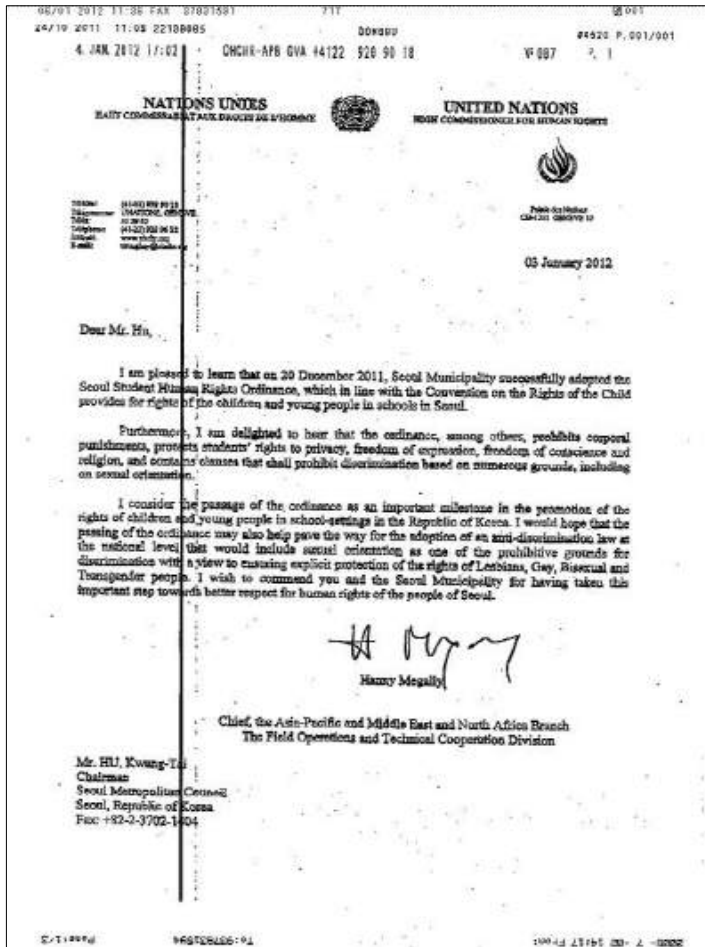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공포일이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승시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어른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소식이기도 했다.

5, 6일 연이어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어른들이 인권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지난 3일, 해니 메걸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는 서한을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니 메걸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 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메걸리 대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시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국가차원적인 채택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닦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 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양산시킨다고 주장하는 일부 어른들을 무안하게 만들었다.

해리 메걸리 대표의 서한에 대해 진보교육연구소, 이수나로, 학벌없는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보수적인 단체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려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살 일” 이라고 밝혔다.



▲ 해리 메갈리 대표가 보낸 서한 원본 [출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 찬반 갈등 격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8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의 요구를 하자, 찬·반 단체들은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는 입장과 '교육감 권한대행의 무리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0여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즐기치게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교육청이 수용한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교육청의 재의요구 수용은 지난번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과정, 결과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다"며 "재의 과정에서 시의회 차원의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조례가 통과된 문제점을 자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교육구성원이 스스로 학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활동, 사이버시위, 서명운동,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리고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도 "재의 요구는 당연하다"며 "집단지행 등 학교폭력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쉽지 않은 만큼 인권조례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요구해 온 '곽노현교육감 석방·서울혁신교육지킴이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설마 설마 했는데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교육청의 재의요구 철회와 시의회의 조례 재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 권혜진 상황실장은 "10만 서울 시민이 서명한 주민발의안을 시의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켰고 유엔에서도 조례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해왔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모든 명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이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교육청이 다시 재의 철회하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광노현 교육감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최악의 상황이 오면 시의회에서 당당하게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전누리 활동가도 "교육감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 결정을 할지 알았다.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뛰겠다"며 "시의원들에게 약속한 것을 부교육감이 뒤집은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니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진보통합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 제 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규탄 성명
- 일 시 : 2012년 1월 9일
- 문 의 :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017-214-3550), 전누리 언론담당(010-3297-9803)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성사시키고 제정을 위해 힘써왔던 단체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 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여러 장치를 통해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복지의 신장은 물론 민주적 학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수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이대영 부교육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은 물론, 교육의 기본적 목표와 가치까지도 거부한 반교육적 행위를 선택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의 요구는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발의되고, 시의회에서 숙고를 거쳐 제정된, 가장 민주적이고 적법한 조례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무상급식 시행을 거부하고 서울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보다도 더한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허용한 재의 요구의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난 바 있다. 또한 공익을 오히려 드높이는 학생인권 보장 조례가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것 역시 중대한 오독이다. 지난 1월 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역시 서울시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대영 권한 대행은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로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이대영 부교육감이 내세운 재의 사유가 논리적으로라도 타당한지 살펴보자.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의 사유로 ▲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 ▲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우려가 있음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각각의 논리들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학칙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칙이 지켜야 할 기본 선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8조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전혀 상위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빈약하다. 근거로 든 헌법 제117조 1항이나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살펴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란 조항이 있을 뿐인데, 학생인권조례는 주민(학생)의 권리 보장,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업무를 자문·보조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은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서 이미 이러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

그밖에 이대영 권한 대행이 든 재의 요구의 이유들은 모두 인권에 대한 무지와 시대착오적 거부감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집회의 자유,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개성실현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우려된다는 건데, 이러한 권리들은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온 사안들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차별금지, 두발자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허용, 학내 집회자유 보장 등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경기도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재의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의 경우에도 교육청 자문위원회가 논란 끝에 제외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외려 교육청 자문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친 이후 성적 지향을 명시한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반교육·반인권·반민주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번 재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이대영 부교육감의 결정 뒤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끊임없이 제동을 걸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버티고 있음을 확신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환영하며, 설령 재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다시금 가결될 것임을, 그것도 더 높은 찬성표를 받아 가결될 것임을 믿는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정략적 소모전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올 신학기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의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철회하지 않을 시 우리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 요구를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공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단호히 밝힌다.

2012년 1월 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이지현 기자, 「제1회 이돈명인권상'에 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 연합뉴스, 2012. 01. 09.

'제1회 이돈명인권상'에 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

(서울=연합뉴스) 이지현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일 '제1회 이돈명 인권상' 수상자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운동본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청소년이 교육현장의 중심이며 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정 사유를 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지난해 8월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가 수리될 때까지 6개월간 시민들을 만나며 설득했다. 또 지난달 14~19일 서울시의회에서 추운 날씨 속에 농성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평생을 인권운동에 투신하다 지난해 1월 작고한 이돈명 변호사를 기려 지난해 11월 '이돈명 인권상'을 만들었다.

이 변호사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부터 시국사건을 도맡는 등 국내 인권운동의 대부로 활동해왔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 변호사 1주기 추모미사와 함께 열린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하라"(종합2보)

시의회 교육위 의원·주민발의 추진 시민단체 강력 비판

시의회 한나라당協 "재의 요구 당연...적극 지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위원들은 9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한 교육위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익 침해 요소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자가 없다는 내부 검토 결과도 묻어두고 공포 시한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교육차지와 민주시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부교육감이 교과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부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답해놓고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우리 의회는 그를 더는 신뢰할 수 없으며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음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부교육감 사퇴!" (서울=연합뉴스) 임현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대해 공식적으로 재의 요구를 하자, 이를 놓고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최보선(왼쪽부터), 최홍이, 김형태, 김명선, 윤명화, 서윤기 서울시의원들이 서울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과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2.1.9 kane@yna.co.kr

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이대영 부교육감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해 의결하는 등 강력하게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성명을 내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며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학생인권조례는 공익을 오히려 드높이는 것이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내부 법률 검토에서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나온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의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교육감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학교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교육감이나 시의회가 조례 등의 방법으로 인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헌법 제117조 1항에 어긋난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추상적 문구를 구체화한 것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수결의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가결시켰다"며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한 만큼 추후 깊이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천만 시민 모두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요구 (서울=연합뉴스) 임현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대해 공식적으로 재의 요구를 하자, 이를 놓고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최보선(왼쪽부터), 최홍이, 윤명화, 김명신, 김형태 서울시의원들이 서울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과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2.1.9 kane@yna.co.kr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 학교폭력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촉구 집회〉 웹자보, 2012, 01. 16.

학교 폭력, 학생인권조례가 답이다! 반인권적 학교가 비극적 죽음을 잉태한다!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학교폭력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촉구 집회

2012년 1월 16일(월) 오후 6시 30분
광화문 원표공원 (동화면세점 옆)
1부 추모제 및 증언대회 / 2부 규탄집회

주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정치 검찰 규탄 광노현 교육감 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 국화와 피켓을 손수 마련해 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시의회 농성에 함께 하셨던 분들! 다시 뵙고 싶어요!



이상원 기자, 「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 “네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탓도 아니야” 」, 민중연론 참세상, 2012. 01. 16.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네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탓도 아니야”

매미, 수수, 주리가 청중을 마주보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들 뒤로는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라고 적힌 펼침막이 거치대에 설치되어 있다. 16일, 저녁 6시 30분 동화면세점 옆 원표공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추모하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너 그거라며? 그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제일 먼저 마이크를 쥔 매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친한 여자 친구들에 의해 아웃팅을 당했다. 친한 여자 친구들에게 자신의 정

체성을 이야기 했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들어오니 반 분위기가 이상했다. 다른 친구가 다가와 그에게 물었다. “너 그거라며?” 순간 그는 형용할 수 없는 낭패감을 느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이후로 반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반 친구들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욕하고, 이유없이 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흔히 말하는 왕따였어요” 그는 왕따였다고 고백했다.

“정말 지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떨리기 시작했다. “어느날 하교를 하는데 다른 애들이 뒤에서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집에 돌아가서 등 뒤를 보니 ‘저는 호모입니다’ 같은 욕설이 쪽지로..” 이윽고 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흠흠, 목소리를 가다듬은 그가 말을 이어나갔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책상에 말 못할 욕설들이 칼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다. “네가 들키지 않았어야지.” 선생님은 오히려 그에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논리가 기껏해야 더럽



▲“반인권적인 학교가 비극적인 죽음을 잉태한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

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사회가 편견과 차별, 오해로 만들어놓은 논리를 그대로 흡수하고 표출하는 것뿐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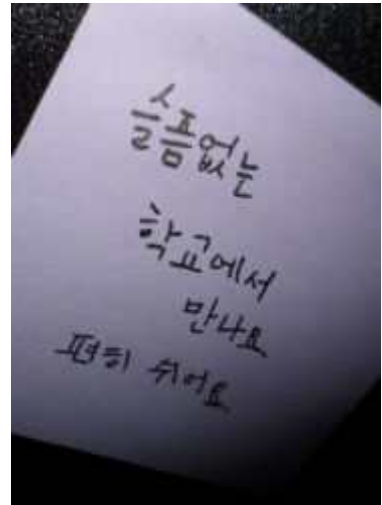
그는 우리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조례는 꼭 공포되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친구의 마지막 부탁은 자기를 잊지 말라는 거 였어요”

수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잃었다. 친구는 중간고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미니홈피에 유서를 남긴 채 17층에서 뛰어내렸다. “친구는 유서에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썼어요.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많이 배웠는데 잘 모르겠다고 썼더라고요”

그녀는 친구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 친구는 친구도 많았고, 가족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이미 원하는 고등학교에 합격도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친구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수나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폭력이 너무 익숙하게 일상이 되어버린 학교에서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라며 그녀는 친구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었다. “친구가 남긴 마지막 부탁은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 였어요” 수수는 자신의 친구와 같은 학생들이 더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권조례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물 없는 학교에서 만나요, 편히 쉬어요” 누군가 남긴, 추모 메시지.

“네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탓도 아니야”

속연한 분위기 속에서 집회가 이어졌다. 이명란 영림중학교 선생님이 추모사를 할 때에는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추모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눈물이 너무 나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며 이 선생님은 바람이 되어 집회 현장에 와 있을 피해자에게 조용, 조용히 말을 건넸다.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난 그 아이들(가해자)도 사랑한다”며 그녀는 “네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탓도 아니야”라고 참석한 모두를 위로했다.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프랑스 망명 시절 이야기를 보태었다. “하루는 여섯 살 난 딸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더니 ‘왜 여기 애들은 나를 때리지 않는거지?’ 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말이 통해도 때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말

도 통하지 않는데 자신과 잘 놀아주더라는 거지요, 아직도 그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라며 홍 대표는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교육 환경을 규탄했다.

모든 집회 순서가 마무리 되고 마지막으로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집회장에서 멀지 않은 서울특별시의회 앞까지 행진하여 국화를 헌화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했다. 한 손에는 촛불과 한 손에는 국화를 든 대열이 인도로 나서자, 경찰이 길을 막아섰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손

에 든 피켓과 깃발을 내려놓고 행진할 것을 요구했고, 참석자들이 피켓과 깃발을 내려놓자, 촛불도 끌 것을 요구했다. 10여분을 실랑이 끝에 참석자들은 촛불을 끄고 시의회 앞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까지 행진 중인 집회 참가자들.

조성봉 기자,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 집회 사진 모음」, 뉴시스, 2012. 01. 1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원표공원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회원들이 이대영 부교육감 퇴진!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화꽃과 촛불을 들고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청소년들을 추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원표공원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회원들이 이대영 부교육감 퇴진!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화꽃과 촛불을 들고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청소년들을 추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원표공원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회원들이 이대영 부교육감 퇴진!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화꽃과 촛불을 들고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청소년들을 추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원표공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회원들이 이대영 부교육감 퇴진!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화꽃과 촛불을 들고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청소년들을 추모했다. suncho21@newsis.com

정치적 논리로 시민·의회 결정 무시

● 반대

폭력 없는 '인권 학교' 만들 기회 저버려

李부교육감 재의 요구 철회하고 학생들에 진심어린 사과를

지난 9일, 서울시교육감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10만 여명이 참여한 주민발의를 거쳐 시의회가 숙고 끝에 탄생시켰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이다. 더불어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로의 변화를 열망하고 그 가치를 지지한 시민들과 시의회의 뜻을 부정한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독단이다.

시의원들 앞에서 조례제정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단 49일 만에 뒤집으면서까지 재의요구를 강행한 이 부교육감이 내세운 이유는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 두발 자유 및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등 내용에 대한 우려 등이었다. 하지만 이 유들은 하나하나 그 논리 자체가 부족했다.

우선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유엔아동권리 협약, 초·중등교육기본법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조례는 그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돌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교육청 자체의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두발자유 및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우려 역시 근거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국제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는 시교육청 산하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에서도 보장된 내용이었다. 또한 조례의 제정 과정 중에서도 교육



전누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활동가

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와서 우려를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유는 근거조차 부족한 재의 결정을 이 부교육감이 강행한 것은 진보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며 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부교육감의 정치적인 결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간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발목을 잡았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강화로만은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체벌 등 폭력으로 뒤덮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폭력을 학습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폭력으로 뒤덮인 야만의 공간을 인권과 소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학교가 폭력이 아닌 인권과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부교육감의 정치적인 선택으로 놓치게 된 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 부교육감이 자신을 민주사회를 살고 있는 교육자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다면, 정치적인 논리로 반교육적,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길 바란다. 특히 이 부교육감은 조례제정을 통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을 거부하고 방기하면서 직무유기를 자행했다. 또한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교육감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채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권한남용을 저질렀다. 나아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도 환영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거부해 국제적인 망신까지 가져왔다. 이 부교육감은 조례 재의의 철회는 물론 사퇴를 통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조례의 재의요구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학생들의 존엄성이 또다시 모욕당했다는 것이다. 이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을 앞장 서 거부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군의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성인처럼 소중한 인격적 존재인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들이 1970~80년대 인권을 짓밟은 군사독재시절의 사고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되면서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따름이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권 역시 존중 받을 수 없다'는 상식을 충고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은 학교의 교문 앞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과 이제 학생인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을 부디 인정하길 바란다.

배경내, 「두 번의 기적과 어이없는 추방... 감사합니다 - 학생인권조례 운동, '이돈명인권상' 받아... "청소년활동가들이 큰 노력"」, 오마이뉴스, 2012. 01. 20.

두 번의 기적과 어이없는 추방... 감사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이돈명인권상' 받아... "청소년활동가들이 큰 노력"

2011년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려는 임금 세종과 어리석은 백성에게 글자라는 위험한 무기를 안겨줄 수 없다는 양반 세력과의 쟁투가 긴장감 높게 그려졌습니다.

한글을 반포하려는 세종에게 어리석은 백성이 글자를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지배 세력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비웃음을 전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종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승리가 예정돼 있지 않을지라도, 패배할지라도 "백성들은 그들의 지혜로 길을 모색할 것이고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라고 말이지요.

엄청난 고난 끝에 마침내 한글이 반포되었을 때, 양반 세력은 그 글자를 하찮은 신분이나 여자들이 사용하는 비천한 존재로 만들면서 다음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한글을 둘러싼 쟁투는 어쩌면 그리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투와 닮았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투

학생인권조례는 어느날 갑자기 진보교육감이 준 선물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움트기 시작한 학생인권운동은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보장의 목소리는 늘 주변부에 머물렀고, 학교 현장의 변화나 사회적 논의 수준은 답답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노력 끝에 결실을 본 것이, 고작 2007년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



▲ 2010년 7월 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발족식 및 토론회를 열었다. © 최인성

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가 들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되어 왔던 학생인권 관련 지침들이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미명하에 죄다 폐기됐습니다. 어떻게 이 국면을 돌파할 것인가라는 모색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었습니다.

2010년 진보교육감이 여러 지역에서 당선된 이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촉구 촛불집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빌딩앞 원표공원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 광노현교육감 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범대위 등 청소년·인권·교육관련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가운데, 흰 국화와 촛불을 든 참가자들이 학교폭력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권우성

"학생인권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에서부터 "교육이 이수라장이 된다" "좌빨'들이 애들을 망친다"라는 터무니없는 공격까지.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온 공격들에 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인권과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보여주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역전 만루홈런을 치다

서울시민 유권자 1%(8만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내야 하는 주민발의에 주어진 시간은 단 6개월. 하루 중 일 차가운 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며 설득해도 주민등록번호까지 자세히 기입해야 하는 서명지를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운동사회 안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고민을 미처 해보지도 않았거나 인식의 차이가 커서 조직 서명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이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오자, 교사들의 마음도 얻기 어려웠습니다. 서명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서명자가 채 1만 명도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때는 무척이나 참담했습니다.

'패배하더라도 덜 초라하게 패배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운동화 끈을 조였고, 놀랍게도 서명기간 종료를 얼마 앞두고 역전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덜 초라한 패배'를 꿈꾸었던 우리는 마침내 학생인권이란 '변방'의 의제로 주민발의를 성사시켜내는, 역전 만루홈런을 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주민발의는 성사되었지만, 조례안이 과연 의회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특히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황은 더욱 암담해졌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달갑지 않은 손님처럼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고, 교육위원들도 논란과 저항이 심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감을 표했습니다.

그 틈을 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조례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까지 나서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면 낙선시키겠다'는 협박으로 의원들을 하나하나 압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안에서 '조례안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이번엔 통과되기를 원한다면 조례 내용을 후퇴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집중 포화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의회 점거농성까지 전개하고 절박한 호소를 전한 끝에 마침내 의회 다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활동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제정된 것이지만, 수도 서울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주민발의를 통해 입법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이라는 변방의 의제로, 그것도 소수자의 인권을 앞세운 조례가 주민발의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많은 이들의 염려와 불신을 딛고 우리는 주민발의 성공이라는 기적을 이루 어냈습니다.



▲ 광노현 교육감 업무복귀 첫 출근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구속된 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하게 된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권우성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감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회 다수가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또 한 번의 기적입니다. 사실 너무도

극적이었던다는 점에서는 '기적'이라 불릴 만하지만, 돌아켜보면 그 기적은 학생인권조례를 응원했던 이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 활동가들입니다.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이 온몸으로 추진했던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던 이들.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뺨'도 없고, 힘도 없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이들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진정 어린 호소와 집념어린 활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명을 모아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전국을 움직이는 중심적인 의제로 기필코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명한 이대영 부교육감이 올 초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회까지 통과한 조례의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조례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다시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꼴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19일 광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부교육감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 교육감의 무죄를 믿어온 이들에게 선고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일단은 직무에 복귀한 건 큰 다행입니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우선 시간을 벌었으니, 서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대표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정착시키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분노와 허탈감이 휩싸여 있을 무렵, 광노현 교육감의 선고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당시, 조례본부가 '이돈명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회에게 모욕당한 이들, 차가운 거리로 내쫓기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던 이들을 변호하는 데 아낌없이 헌신하셨던 그분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돈명인권상'이기에, 그 상을 수상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품에 안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해 주민발의운동을 이끌며 온갖 수모와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청소년활동가들, 이제야 겨우 인권운동의 한켠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청소년활동가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기뻐할 두 손 모아 큰 감사를 전합니다.

추신)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고 이돈명 변호사님의 인권운동에 대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제정했습니다. 이 글은 1회 수상자로 선정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의 소감문입니다.

덧붙이는 글 | 배경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이 기사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 소식지 <교회와 인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기획안, 2012. 01. 25.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모십니다.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해법에 다가서는 접근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문제, 차별과 폭력 문제, 인권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신 단체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담회 기획안]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 때: 1월 25일(수) 오후 2시~5시

■ 곳: 홍사단 강당

■ 공동주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화·김형태 의원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 구성

: 집담회는 참석자 모두가 심층적인 분석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간략 발제를 요청한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참석자들의 의견과 상호 토론을 통해 퍼즐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 사회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1부. [진단] 학교 안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괴물인가? 누가 왜 표적이 되는가? 학교 안 힘의 위계질서와 차별이 낳는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의 악순환을 진단한다.

: 집담회 참가자들의 진단을 들어보면서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에서 ‘폭력 학교’(폭력적 학교구조와 학교문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중요함을 살펴본다.

1)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경쟁교육, 폭력적 학교문화 진단

- 이희진(교사, 대구학생인권연대)

2) 폭력학교를 피해 짐을 싣은 사람들

- 문한희(학교폭력 피해 학생)

3)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 ‘도가니’와 대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을 중심으로

- 최석윤(서울장애인부모회)

4)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 아웃팅과 집단폭행, 자살에 내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 호림(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차별사레팀)

5) 국제결혼가정, 이주가정 학생에 대한 폭력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6) ‘학교 실적’이 만들어낸 피해자들 : 학교 실적을 위해 죽음의 공장으로 내몰린 현장실습생들(학생 운동선수 인권문제와의 유사성도 포함)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실업위원회)

2부. [해법 모색을 위한 쟁점토론] ‘폭력의 학교, 죽음의 학교’를 넘어서기 위하여

: 학교폭력 문제의 해법을 찾는 접근방식의 근본적 관점을 점검하는 쟁점토론을 위주로 집담회를 진행한다.

: 입시경쟁교육의 문제, 폭력적 사회문화가 학교폭력의 밑불이 되고 있음은 전제로 하고, 그 이상의 구체

적 논의를 진행한다.

: 사회자가 쟁점별로 먼저 말문을 열어줄 사람을 초대해서 입장을 들어본 다음, 전체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주요 쟁점

1. 학교폭력에 대한 침묵과 방관, 악순환 구조, 어떻게 깬 것인가
2. 가해자 처벌 위주의 해법과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지원 중심의 대책은 어떤 차이를 만드나
3. 학교폭력 해법에서 교사, 학생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무력한가
5. 학교를 넘어선 지원망 확충과 성찰적 사회문화 어떻게 만들까

<각 쟁점별 토론을 열어주실 분들>

-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실)
-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뚝코(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선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
- 이정희(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 유정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해결책 될 수 있어”

· 교사·학생·학부모 집담회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교실문화 형성이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홍사단 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탈바꿈시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의 둠코(본명 김해솔) 활동가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살아남는 지금의 학교에서 남보다 우위에 선 학생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절대권력자로서 교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무력감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무턱대고 반대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제지할 권한을 줌으로써 스스로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이나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상습폭력 피해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기 위해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석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는 “교실에서 ‘놀잇감’으로 여겨질 정도로 차별받는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사회적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학생에게 인권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의 호림 활동가는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성 소수자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집담회 참석자들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경찰이 내놓은 대책들이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가시적·단기적 효과를 내는 데 급급하다”며 학교폭력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김선혜 팀장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에게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친구에게 고통을 준 행위가 잘못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탁 참교육연구소 기획실장은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가해 학생들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와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강혜란, 「"일진 해체시키면 뭐하나... '특진' 있는데" -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집담회 개최...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에 비판 목소리 높아」, 오마이뉴스, 2012. 01. 26.

"일진 해체시키면 뭐하나... '특진' 있는데"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집담회 개최...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에 비판 목소리 높아

"어른들은 일진을 뿌리 뽑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잡혀오는 일진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개네는 조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행동대장 격이죠. 그 위에 '특진'들은 안 잡힌다니까요."

문한피(17)씨가 말하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학교폭력이 조직폭력과 비견될 만큼 구조화돼 있다는 심각한 증언이었지만, '특진'이라는 생소한 단어에서 실소가 번졌다. 그러나 문씨는 웃지 않았다. 그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였다.

최근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경찰은 "일진회를 해체 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나섰다. 정부와 교육당국, 경찰까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터무니없게만 느껴진다.

지난 25일 오후 2시 대학로 흥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 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에 참석한 문씨는 "일진을 잡는다고 폭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어른들의 대책에 실효성이 없음을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등 총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집담회는, 1부에 '학교 안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2부에서 '폭력의 학교·죽음의 학교를 넘어서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폭력근절'이 아니라 '평화' 강조해야"

"최근 대구는 연달아 터진 학교폭력으로 비상이에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교로 폭력대책을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죠. '나 홀로 학생'을 찾아서 교육하고 선도하래요. 그런데 저는 나 홀로 학생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방과 후에 혼자 있으면 나 홀로 학생이러는데 요즘 애들 집에 가면 다 혼자 있잖아요. 근데 또 학원을 다니면 아니래요. 학원 선생이 같이 있으니까..."

대구 칠성초등학교 교사 이희진씨는 이러한 나 홀로 학생을 조사해 보고하려면 "방학에도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윗선에서 이런 대책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내려보

낸 건지 의문이다"라며 "해결할 의지와 생각이 없는 대책이 너무 많다"고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을 비판했다.

정부대책을 성토했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대책은 폭력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처벌이나 학적부에 빨간 줄을 긋는 것, 자퇴를 권유하는 것은 가해자들과 사회의 단절을 야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지난 25일 서울 대학교 흥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 최지용

최근 박영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교육현장에 여교사가 과도하게 많아서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진단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폭력의 원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크게 구조적·사회적·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 가해자 처벌과 같은 제도적 문제,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진다는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교폭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자들이 흥미로워한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 경계가 모호한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폭력을 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가해자가 되길 바란다는 진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학교에서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교실'로 학교폭력 해결방법의 지향점을 뒤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뇌출혈로 쓰러진 고3 실습생도 피해자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잠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장애학생에 가해지는 폭력과 함께 성소수자와 이주거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씨는 "학교 안에서 먹이사슬이 있다면 장애인들은 그 구조 가장 아래에 있으며 늘 피해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조차 '참아라, 안 참을

거면 도망가라는 식으로 사건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며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 자체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성 소수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아웃팅'의 문제가 주요한 학교폭력의 사례로 뽑혔다. 아웃팅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타의에 의해 커밍아웃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점점 늘어나는 이주가정 학생의 경우, 이들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 이날 집담회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최지용

최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무리한 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한 고 3실습생 또한 '학교실적이 만들어낸 또 다른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현장실습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하인호씨는 "학생들은 교과부가 취업률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학교에 의해 내몰리고 산업체에서는 단순노동대체인력으로 치부되며 실습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신분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1982년 노르웨이에서 10대 초반의 소년 3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학교폭력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죠. 그런데 사회가 발각 뒤집혔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고 1년간 사회적 토론을 거쳐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교실단위, 학교단위로 학교폭력 대책 프로그램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 결과 학교폭력이 50-70% 줄었어요"

한 발제자가 발표한 사례다.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불거진 것은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청소년들의 자살 때문이었다. 누군가 죽어야만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논란이 된다는 것에 참가자 모두 깊은 회의감을 보였다.

이 논란도 한동안 들끓다 언제 사그라질지 모를 일이었다. 참가자들은 이제까지 논란은 있었지만 해결책이 없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지를 촉구했다.

권우성/윤근혁, 「교과부 태클 걸었지만...인권조례 공포 - 시의회 조례 통과 38일 만에 공식 공포... 교과부·교총 반발이 변수」, 오마이뉴스, 2012. 01. 26.

교과부 태클 걸었지만...인권조례 공포

시의회 조례 통과 38일 만에 공식 공포... 교과부·교총 반발이 변수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26일 오후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자문위원,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권우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박노현)이 26일 오후 2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공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지 38일 만의 일이다. 이로써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가 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공포됐다. 1월 9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재심의) 요구를 했지만, 일선에 복귀한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빛을 보게 된 것. 허

광태 서울시의회 의장도 25일 '재의 요구 철회를 받아들일것'다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는 등 공포 절차에 협조했다.

하지만 1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철회 1~2시간 만에 재의 요구를 요청한 교과부는 26일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맞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8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낸 방식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새 학기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진행이 불투명했듯 올 3월 새 학기 학생인권조례의 안정적 적용이 불투명하게 됐다.

교권조례도 교원단체와 협의해 추진 예정

26일 공포 기자회견에서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나온대로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교권보호조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맞춰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교권조례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이를 위해 시의회와 교육계, 특히 교원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학생인권조례 준비기획팀을 만들기로 했다. 이 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후속 규칙 제정과 조례 해설서 제작 등을 맡게 된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에 대한 밀그림도 이곳에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 활짝 웃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춘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본부 공동대표, 청소년 인권활동가 '수수',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다. © 권우성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칙 개정 작업에 나선다.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 소 위원회를 만들어 되도록 3월 전에는 학칙 개정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이 학칙 개정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해 일부에서는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전의 교칙이 일방통행이라면,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학생이 학칙 개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찰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재의 요구 시한 20일 동안 장관의 재의 요청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교과부가 뒤늦게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상위법 위반' 소송에 서울시교육청 "자신 있다"

교과부는 26일 조례 무효확인소송 보도자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교과부는 이미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방관했다"며 "상위법 위반이라는 교과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교과부의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은 1년의 조례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안팎의 법률 전문가에게 수도 없이 검토를 맡겼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카를 위하여

조카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뒀다. 그러곤 입을 단았다. 귀동냥한 사연은 이렇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돕다가 왕따가 될 처지에 몰렸다.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사정은 악화됐다. 자퇴 결심을 학교에 알렸다. 학교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조카가 마음의 문을 닫은 뒤다. 조카는 요즘 집 근처 도서관으로 통학한다. 조마조마하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가끔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잡담을 하다 교양도서 따위를 안겨주는 게 전부다. 어쭙잖은 ‘조언’이라도 하고 싶은데, 조카는 ‘그 얘기’를 꺼내길 꺼린다. 참고 기다릴 수밖에. 어차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제 갈 길을 걸어갈 주체는 조카 자신이니까. 언젠가 조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외삼촌도 옆에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을 뿐이다.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조카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관계의 망에 사랑과 배려가 더 많이 깃들수록 좋다. 그날이 머지않기를.

이 얘기를 꺼낸 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학교 폭력 ‘문제’가 가슴을 후벼파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학교는 통제불능의, 아비규환이다. 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정글식 상대평가는, 또래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나 적으로 대하라고 강요한다. 흡수적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다. 엄마-아빠는 돈 버느라 바빠 자식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다. 청소년들이 고립돼 있다. 관계의 망이 끊긴 지 오래다. ‘학교 폭력’의 토양이다. “장남 삼아 했다”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가해 학생’을 격리하고 처벌하면 학교 폭력이 사라지나. 웹툰을 검열하고 인터넷 게임 ‘셋다운제’를 강화하면 학교 폭력이 사라지나. 미국처럼 ‘스쿨 폴리스’를 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들이면 학교 폭력이 사라지나. 다들 안다. 단속과 처벌, 경찰과 감옥으로는 학교와 학생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느낄 수 있다.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동은, 이른바 ‘어른들’이 그들의 자식이거나 손주일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대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음을 드러낸다. 과장이 아니다. 지난해 12월1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발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이대영씨는 1월9일 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 의견 존중하겠다”던 이대영씨가 약속을 뒤집고 밝힌 ‘재의 의견’이 가관이다. 조례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며, 조례의 ‘학생인권위원회’가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집회의 자유’ 규정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학생에게 인권은 사치이며 ‘교육 목적(?)의 차별과 제한’이 지속돼야 한다는 노골적 주장이다.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을 강조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이들에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잡소리다. 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지 않으면 무산될 처지에 몰렸다.

이대영씨가 재의를 요구한 날,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이 교육현장의 중심이며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우리 사회의 인권 옹호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를 ‘제1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학교 폭력을 방치·조장하는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교과부와 이대영씨인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천주교인권위원회인가.

이제훈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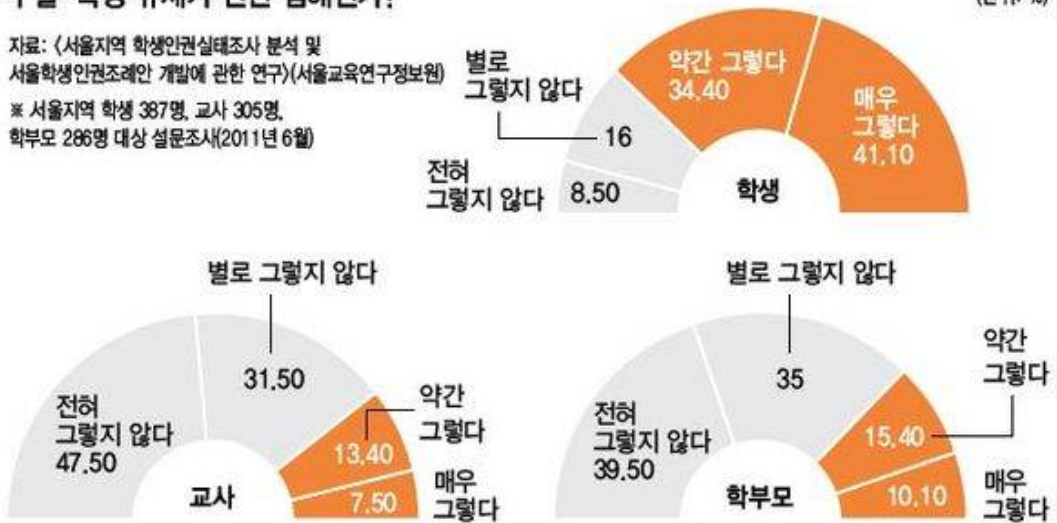
김민경 기자, 「“머리라도 내맘대로” - “머리 풀리면 무방비” 」, 한겨레, 2012. 01. 31.

“머리라도 내맘대로”-“머리 풀리면 무방비”

두발·복장 규제가 인권 침해인가?

(단위: %)

자료: <서울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교육연구정보원)
 ※ 서울지역 학생 387명, 교사 305명, 학부모 286명 대상 설문조사(2011년 6월)



학교, 두발자유 ‘한랭전선’
 “인권침해, 맞다 아니다”
 학생·교사·학부모 ‘극과 극’
 자유화면 갈등 줄어 의견도

“두발이 자유화되어서 친구들은 축제 분위기예요”

서울 B중학교 2학년 O(15)군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가능해진 두발 전면 자유를 크게 환영했다. O군의 학교는 앞머리는 눈썹 위까지, 뒷머리는 3cm까지만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염색·파마는 금지했다. O군은 “두발 단속 규정 때문에 답답했는데, 규제가 풀려서 속이 후련하다”며 “이젠 내 개성대로 멋있게 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 가운데 학생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은 머리 길이는 물론

염색·파마의 제한을 없앤 두발자유 조항이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해 6월 중고생 3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5.5%가 두발·복장 제한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다. 지윤섭 서울 영훈고 교사는 “학생들이 인권 조례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두발 자유화는 자유를 남용하는 신호탄이 되고 교사들의 역할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뒤 머리 길이 제한은 없애고 염색·파마를 부분 허용한 경기 산본공고의 사미경 교사는 “두발 자유화 뒤 두발 문제로 학생들과 실랑이를 하지 않아도 돼 갈등이 크게 줄었다”며 “규제가 없어지니까 학생들이 전보다 여유있게 교사의 지도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교사 3778명, 중고생 273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권조례 시행 뒤) 두발·복장 문제로 교사와 갈등이 줄었다’는 데 교사 56.4%, 학생 72.7%가 동의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머리 길이 제한은 없었으나, 염색·파마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논리도 여전히 견고하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은정(44)씨는 “길이는 몰라도 파마·염색까지 허용할 경우, 교복을 벗으면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 사회가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머리가 단정해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고, 입시를 앞둔 중고생은 머리 보다는 학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D고 2학년 김 아무개(18)양은 “두발과 생활·학습 태도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개성있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건데, 교복도 같은데다 머리까지 똑같이 까만 생머리이면 답답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선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과거와 같은 스포츠형 머리 규제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학부모 요구도 있기 때문에 학교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두발 관련 규정을 정해야지 조례로 일률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배경내 집행위원장은 “신체·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학생의 두발 자유도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교사·학생·학부모의 협의에 맡겨두면 학교의 권력구조상 학생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은빛,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①」, 인권오름 제 28호, 2012. 01. 04.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①

검은빛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편집인 주] 작년 12월 19일, 십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인권오름>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토크아보려고 한다. 하나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가 풍부해지기를, 그래서 제정 이후의 과제가 더욱 투명해지기를 바란다.

‘차별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직까지도 선전전에 나가면 무조건 튀어나오는 문장이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건만, 그 긴 기간 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문장들은 아직까지도 내 입가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게 습관이 되어버린 이 문장을 나는 시의회 앞에서 다시 한 번 떠올렸다. 시의회에서 한참을 마음 졸이며 통과 소식을 기다리던 그때, 나는 다시 한 번 떠올렸다. 그것은 내게 질문을 던졌다. 많은 활동가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면서 인간힘을 쓰고 받아온 이 서명들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어떤 의미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뛰어다녔나?

민주주의. 고민이 남긴 답은 매우 간단했다. ‘진짜 민주주의’를 나는, 우리는 꼭 피우고 싶었다.

내리막길 민주주의와 시민 정치

정치는 국가의 주권자가 그 사회를 통치하는 행위이다.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 정치는 특정 신분계급의 전유물이었다. 이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정치를 국민에게로 가져온 것은 세계 역사에 그리 멀지않은 과거

다. 특히 신분제가 무너진 해방 이후에 여러 번 독재 암흑기에 잠식해있던 한국 정치 역사에서는 더욱 오래되지 않은 근래의 사건이다. 이러한 오래되지 않은 사건을 통해 얻어낸 것이 바로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것,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다. 특정 신분계급에게 몰려있던 정치를 국민으로 가져오는 민주주의를 꿈꾸었지만, 국가의 거대함과 다양함이라는 큰 현실에 부딪혔다. 이 현실의 장벽 앞에 멈추어선 민주주의에, 현실을 가미하여 장벽에서부터 구출해내는데, 여기서 탄생한 것이 ‘간접 민주주의’이다. 의회 정치라는 이름으로 다수라는 거대함을 소수로 압축시키고, 압축된 소수에게 정치를 쥐어줌으로써,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전제는 다수의 소수에 대한 통제와 감시였다. 그렇기에 이를 위한 많은 장치들을 체계 안에 마련해놓았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 각종 정략 등에 의해 외면당했다. 이렇게 방치되어온 소수의 정치는 전제정치와 심적으로 다르지 않아, 정치와 국민 사이에 큰 장벽을 쌓았고, 이것이 지속되자 민주주의의 후퇴는 점점 더 가속화 되었다.

민주주의의 후퇴 속에서 다수는 2008년 촛불 이후 변화를 접하게 되고, 의회 정치의 약점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시민정치’, ‘거리정치’라는 또 다른 정치 방식을 끄집어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가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낯선 이것은 매우 당연히도 기초는 빈약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거리정치’가 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고 굴러가려면 그 기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의미는 출발한다.

지반과 양분, 학생인권조례와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주된 내용은 학교 안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압축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학교 안에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시민정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 대부분 사회구성원의 시작점인 학교와 교육에 민주주의가 꽃핌으로써,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정치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정치와 주체 사이의 심적 거리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시민정치의 기초는 완성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민정치의 기초는 이렇게 학교와 교육의 민주주의로써 완성된다. 그렇기에 시민정치가 살아 있을 수 있는 단단한 ‘지반’을 학생인권조례는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 방법으로 택한 주민발의는 시민정치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더한다.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등의 주민참여제도는 간접 민주주의라는 직접 민주주의보다 후퇴한 체계 안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남겨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간접 민주주의 안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다수가 이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매우 능동적인 정치 참여 도구라는 점에서

국민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골자로 하는 시민정치와 그 맥락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정치의 경험을 마련하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다. 시민이 직접 자기가 거주하는 시정에 참여하는 경험, 그 경험은 시민 정치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이 시민정치에 대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고로 주민발의는 지금의 시민정치에 ‘양분’인 셈이다.

학교와 거리에서 민주주의가 피어나기를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의미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시민정치의 기초를 만드는 것과 시민정치에 경험을 마련하는 것, 그 두 가지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가진 의미이다. 이 두 가지 의미의 조합은 어쩌면 처음부터 당연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시민정치 부흥에 대한 갈망과 고민에서 비롯되었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면 말이다.

그렇기에 이 두 가지 조합의 성공은 더욱 아름답고 값지다. 곧 이 성공은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 씨앗을 뿌리고 거리에서 민주주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머지않아 각자의 장소에서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면 이 사회는 마침내 민주주의의 꽃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온전히 남아야 한다. 주민발의는 성사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가 하루빨리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해서 하루빨리 학교와 거리에서 민주주의 피어날 수 있도록 하자. 진정으로 이 사회가 민주주의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주리, 「 ‘청소년 성소수자’ , 그 부대낌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야기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돌아보기 ②」, 인권오름 제 282호, 2012. 01. 11.

‘청소년 성소수자’, 그 부대낌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야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돌아보기 ②

주리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방금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 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재의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카페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인권이 재심의 당하는 세상이라니.

누가 무엇을 심의하는가

중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후 고등학교에 복학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면 거의 힘이 없는 노동자들 이지만 학생들은 절대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이들이 교사들이라는 사실과 마주했다. 복학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자퇴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던,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존재라는 그 깨달음을 무기 삼아, 한 번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기대는 어긋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날부터 학교라는 공간이 논리도 이성도 감수성도 통하기 힘든 곳이란 것을 체험해버렸다.

“너 이 새끼 화장했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설을 내뱉던 그 사람에 경악해서, 멍하니 그 얼굴을 쳐다보았더니 ‘뭘 똑바로 쳐다보냐’, ‘반항하냐’는 말이 이어졌다. 그럼 내가 그 욕설 앞에 머리를 꼭 숙여야 한다는 말인가. 무슨 이유로? 묻고 싶었지만 웬지 모르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학생이고 그 사람은 교사라는, 우리는 결단코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다. 학교에 들어온 이상 나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떨떠름하게 화장실 거울을 바라보았다.

2박 3일간 이어지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같은 반에 배정되었던 사람들은 밤만 되면 ‘팬픽’ 이야기를 해댔다(팬픽은 ‘fan fiction(팬이 쓰는 소설)’의 줄임말인데, 대개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장르가 주를 이룬다). 동방신기 누구는 공이네 누구는 수네(케이 섹스의 포지션을 말하는데, 동성애물을 즐겨 보는 이들이 주로 쓰는 용어다) 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네들은 얼마나 게이들을 좋아하는지, 내가 왜 동성애물을

보냐고 묻자 ‘동방신기가 여자랑 사귀는 거 읽으면 너무 질투 날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는 시크함이란. 그러면서 레즈비언은 더럽고 역겹단다. 그 말을 하던 여자사람이 참 호감 간다고 생각했던 레즈비언인 나는, 그저 입을 다물었지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0교시 거부 문제로 온 학교 교사들과 싸우고, 선배한테 인사 안 한다고 2학년생들에게 왕따 당하다가 학교를 점점 안 나가게 되었다. 한 달 후 자퇴를 선언하면서 (당시 나는 이모네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내 애인을 불러다가 ‘동성애는 전두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던 이모부를 피해 탈가정을 했고, 청소년 공동생활 공간에 살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혁명이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랬다. 당연한 듯 옳으리라 믿고 옳으려 맞았고, 머리카락이 갈다고 자르라고 하면 밤새 잘라야 하나 고민하다가 다음날 학교에서 또 혼나고, 손바닥에 자해를 한 날도 지각했다고 피딱지도 덜 맺힌 손바닥을 맞았고, 수업 중에 동성애 비하 발언이 나오면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고, 교사가 체육시간에 몰래 내 가방을 뒤졌다는 사실을 알아도 아무 말 못했던 학교에서의 나날들을 모조리 뒤엎어줄 것만 같은 언어들이었다.

체벌금지, 두발복장자유, 집회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차별금지 조항까지.

내가 합류했을 때는 서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고, 채워야 할 서명 수는 한참 남은 상태였다. 마지막 날 서명 1만장을 받는 기적을 이뤄내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비 오는 밤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는데 계속 눈물이 나왔다. 더 일찍부터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고, 이렇게 고생해야 조금이라도 바뀐다는 게 한스러우면서도 행복했다. 이후 상당수의 서명지가 무효로 나왔고(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부러 틀리게 쓴 사람이 많은 것 같았다), 5일간의 주어진 시간 동안 그만큼의 서명을 더 받아 숫자를 채워, 주민발의에 성공했다.

그때부터인가, 네이버 검색창에 ‘학생인권조례’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가 나왔다. 몇몇 언론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기사를 발표했고, 자생적인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던 나와 몇몇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시작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을 꾸려가 보자는 결의를 했다. 아나나 다를까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뜬금없이 ‘학생의 책무’ 조항을 끼워 넣는 등 주민발의안보다 후퇴시켜 발표했고, 성소수자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동행동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발언대회를 개최하며, 그들이 학교 안팎에서 받는 차별을 조사하여 사례집을 만들었다. 몇 차례의 항의와 선전전 끝에 교육청이 후퇴를 철회시켜 최종안을 내었다. 그러나 심의의 권한이 의회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 급박해지

고 악화되었다.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의원회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차별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외치며 농성에 돌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두를 위한 것

교육위원들과 의원들은 잔인하게도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성적지향,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보수 측의 공격이 많아 부담스럽다.’는 답변들을 해왔다. 성적 지향과 임신 출산이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방해물로 작용하게 되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조항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민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바꿀 수 있는 학교 현장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차별 없는 학교, 두발복장규제 없는 학교,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종교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학교, 학생이란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을 겪지 않게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조례.

그러나 차별 금지 사유들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삭제시킨다는 것은 ‘누군가는 차별 금지 대상이 아니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모욕감과 동시에 비참했다. 단지 동성과 정신적이고 성적인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세상과 뚝 떨어진 채 스스로 갇혀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누구에게도 내가 왜 괴로운지 이야기할 수 없어서 느껴야 했던 외로움이, 도무지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 걸 깨닫고 마주했던 절망들이 ‘넌 그런 폭력들을 당해도 되는 존재였어’라고 모조리 결론지어진 듯했다. 그렇게나 아팠다.

저 ‘위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논의가 오고 가는지 갈팡질팡하며 농성이 이어졌고, 힘든 나날이 반복되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양한 단위가 참여한 운동이니만큼 학생인권조례 속에도 서로가 중요시 여겼던 부분과 주목했던 지점들은 달랐다.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동성애와 임신을 타겟으로 잡고 압박해왔다. 오랫동안 학생인권을 위해 싸워 왔고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은 후퇴된 조례안이라도 조례 통과를 기원해야 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되었다. 성소수자들은 법이 제정될 때마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항목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삭제되었던 역사가들이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다.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지는 상황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적지향과 임신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하라고 외치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어느새 함께 서명을 받았던 청소년인권 활동가들이 저만치 떨어져 있고,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함께 농성을 지속하면서도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다. 내가 ‘청소년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청소년 성소수자 의제가 가시화되고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길 바랐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는 약자 중의 약자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나날이 되풀이될 뿐이었다. 혼자 ‘청소년 당사자’로 공동행동에 있던 나의 역할은 ‘당사자의 대표발언’ 정도로 한정된다는 느낌에, 왜 주체적으로 운동하지 못하나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나의 경험 부족과 무능력이 걸림돌이라고 체감될 때면 좌절하기도 했다. 기존 성소수자 운동 진영과 함께 농성에 참여하였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누가 ‘당사자’이나

아니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정말 의외의 결과인, (주민발의 원안은 아니었지만)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이 명시된 채로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을 모색하고 이끌어왔던 활동가들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눈물은 감격과 환희와 슬픔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던, 그런 것이었다.

끝나지 않아야 할 이야기

그렇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농성이 끝나고, 원인 모를 허무함에 허우적대며 며칠을 보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불편한 지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마녀사냥하지 않고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귀결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십대의 성적 권리 찾기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아직도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던 운동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뒤흔들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 당연했던 것이 폭력임을 드러내고, 더 많은 차별들을 발견하고, ‘누군가도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권운동인 것 같다. 조금 더 넓은 의제를 상상하고, 시야를 확장시키고, 주위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연대는 공감에서 나온다. 내부의 공감 능력을 키우고, 다른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무사히 서울에서 정착되기를, 다른 지방에서도 제정되어 드러나지 않았던 억압과 차별을 가시화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성소수자들의 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돌아보기 ③

오리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래 이게 맞을 듯.

나는 호모일까? 느끼한, 하느님이 바라지 않는 사람일까? 결국에는 누가 이것을 본다면 그를 죽일 것이다. 내 동생이야 순수하니까 괜찮지만 난 너무 더러워. 슬퍼. 이젠 저 글씨와 내가 증오스럽다. 그걸 쓴 내가 증오스러워.

내가 청소년기에 쓴 일기장의 한 부분이다. 겨우 몰래 숨어서 쓴 것 가지고, 그토록 자신을 증오했었다니. 혐오스러운 자신이 싫어서 그 누군가를 죽일 생각까지 했었다니. 시간은 흘러 흘러 자긍심은 이미 한번 흘러 넘쳤고, 이젠 더 이상 게이란 게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나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내가 가끔씩 말을 건다. 그건 아마 아직도 세상은 성소수자가 자신을 혐오하도록 만들고 그런 ‘나’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일 거다.

힘들어하는 ‘나’들

2007년 어느 날 핸드폰으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도 있다가 빠졌다는.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졌다. 정말 너무들 했다. 1인시위도 하고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대응에 함께했다. 그리고 2011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조항에서 또다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짜증이 밀려왔다. 지켜온 것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었다.

농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가방에 청소년기에 썼던 일기장을 집어넣었다. 넣으면서 왠지 남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넣었다.

모르겠다. 안쓰러우니까 울지 말고 화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나는 또 눈물부터 난다. 다들 그랬던

것 같다. 너무나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정보를 얻고, 로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하던 사무국 사람들. 의원들을 설득하러 간 자리에서도 울고, 짧은 잠이나마 자고 일어나 서러워서 한바탕 울고, 잠깐 불 일 때문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울고, 모르겠다. 괜한 오버일지도 모르겠지만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받아 왔던 그리고 받고 있는 차별과 혐오가 떠올랐다. 아님 내가 받는 차별과 혐오인지도 그래서 더 눈물이 난 건지도 모른다.

농성장에 왔던 많은 사람들. 그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집에 가려다 마음이 불안해 다시 돌아온 사람들. 트위터에 인터넷에 소식을 나르던 사람들. 가보지는 못하고 후원이나마 해야지 했던 사람들. 노래를 불러주었던 사람들. 집에서 먹을 걸 맛있게 만들어온 사람들. 그 시간들. 마음들. 그리고 또다시 괜한 오버인지 나는 그들이 받아왔던 그리고 받고 있는 차별과 혐오가 떠올랐다.

차별 앞에서 타협할 수 없었다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차별이었고, 빼야한다는 그들의 논리가 혐오였다.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몇몇 항목들은 협상거리가 되어야 했다. 혐오를 내뱉는 이들의 표가 무서워 곤란하다는 의원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게이, 레즈비언이라고 온갖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다고 말했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24개의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5조를 포괄조항으로 하자는 타협안이 나오기도 했다. 성적지향이든 성별정체성이든 일일이 다 나열하지 말고 그냥 “차별하지 말자” 정도로만 명시하지는 거다.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뒤흠겠다는 건지.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동의한다. 뭐가 차별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원래는 차별금지 항목에 나열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성적지향, 임신출산을 빼라고 해서 결국 포괄조항으로 바뀐 거야”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성소수자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었다. 애당초 타협할만한 것이 없었다. 자신의 존재를 타협할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는 이겼다. 단서조항들이 붙고 서울시 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농성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확실하다.

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만들 때도 명분이 없으면 빼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그 명분은 뭐로 포장하던 간에 명백히 혐오와 차별이다.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 뺄 수 없다. 이젠 우리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우아하게 차별할 수 없다. 유치하고 허접한 혐오의 언어를 드러내라.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성별정체성은 대한민국 법으로는 처음 들어갔다고 한다. 성적지향이 누구를 좋아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

다면 성별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별이분법(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하고)이 너무나 강력한 지금 사회에서는 아마 두발 규제가 풀려도 성별로 다른 머리 스타일을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성별은 나도 모르게 서류상 적혀있는 성별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신이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성에 따라서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트랜스젠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남자애가 무슨 기지배같이.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차별과 폭력들은 이성애/동성애에 관계없이, 트랜스젠더/트랜스젠더 아닌 사람 관계없이 성별이분법에 기대고 있다. 남자답지 못한 ‘남성’, 여성스럽지 못한 ‘여성’은 더 쉽게 괴롭힘 당한다. 성별정체성의 포함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앗싸~

멋졌다. 멋지다. 멋질 거다.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 많다. 학생인권조례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이, 성소수자 청소년이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우리 눈치를 볼 수 있도록.

인권은 함께 만드는 것

농성장에서 느꼈지만 차별금지사유를 하나씩 뺀다는 것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빼는 것과 같았다. 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빠지는 것에 분노해서 함께했지만 어떤 이들은 집회의 자유에 더 분노했고, 우리는 같이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외쳤다. 농 성장에 찾아온 비정규직 노동자, 병역거부자, 노숙인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 일일이 적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차별에는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분들에게 감동했다. 인권은 무언가를 버리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라 느꼈다. 그렇기에 앞으로 할 것이 많지만 나는 신난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서. 새롭게 만날 당신이 기대돼서.

호림, 「공격의 도구가 된 에이즈를 바라보며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훑아보기 ④」, 인권오름 제 282호, 2012. 01. 10.

공격의 도구가 된 에이즈를 바라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훑아보기 ④

호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동방의 빛, 동방의 순수한 우리 백의민족을 에이즈로써 파탄국가를 만들어 불치의 병인 에이즈의 온상이 되어 학생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인 학교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2011. 12. 19. 서울시의 회 본회의장에서, 이덕영 교육의원.

HIV/AIDS* 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활동가로서, 동시에 한 명의 레즈비언으로서, 가장 답답하고 고민스러운 순간은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HIV/AIDS를 마주할 때다. 대형 보수 교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이 앵무새같이 반복하는 말들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편견과 낙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머릿속에서 빙빙 돈다. “동성애→항문섹스→에이즈→죽음”이라는 도식은 너무나 단순명쾌한데, 제대로 이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언어는 왜 이렇게 길기만 한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는 레즈비언인데 요즘 내 머릿속에는 항문섹스랑 에이즈 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성적지향과 HIV/AIDS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내게 커다란 숙제다.

공격의 도구가 된 에이즈를 바라보며

일주일간의 서울시 위원회관 점거농성 기간 동안, ‘에이즈’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저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농성장에서 마주한 보수단체 사람들의 발언으로, 그들의 피켓에 적힌 섬뜩한 붉은 글자로, 급기야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시의원의 연설까지. 농성 중 ‘에이즈’라는 단어를 듣거나 보지 않고 지나간 날은 드물었다. 예상치 못한 건 아니었다. 성소수자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언제나 제일 앞에 등장하는 건 “현대의 흑사병”, “게이 돌림병”인 에이즈였으니까. 마침내 본회의의 장에서 “동방의 빛, 동방의 순수한 백의민족”을 에이즈가 파탄 낼 것이라는 이덕영 교육의원의 연설이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쓴 웃음과 함께 앞으로 갈 길의 험난함

에 대해 생각했다. 비과학적인 편견과 오해에 둘러싸인 이 질병은 학생인권조례 이후에도 반차별 입법 운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격의 도구로 등장하게 될 터였다.

‘저들’이 성적지향과 HIV/AIDS를 관련짓는 건, 성적지향과 HIV/AIDS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HIV/AIDS 발견 직후의 역사적 맥락이 담겨있다. 80년대 초반 샌프란시스코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HIV/AIDS가 처음 발견된 이후 미국의 보수 정부와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은 이를 동성애자의 질병으로 낙인찍으며 성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했다. HIV/AIDS에 대한 공포로 사회를 통제하고, 보수적인 성규범을 강화하기에 매우 유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인 HIV/AIDS 감염인 모두를 주변화 시키는 반 인권적인 논리는 참으로 간단명료한 덕에 쉽게 전파되어 나갔다. HIV/AIDS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이 규명된 지금까지도 이에 기인한 성소수자와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이 아니다?

HIV/AIDS는 성적지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이 아니다’라고 쉽게 선을 긋고 밀어낼 수는 없다. LGBT(엘지비티,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섹슈얼) 커뮤니티가, 성소수자 운동이 에이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성소수자가 에이즈로 공격받기 때문만이 아니다. 성소수자인 HIV/AIDS 감염인이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MSM(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남자)과 트랜스젠더는 HIV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더불어 마약사용에 의한 감염비율이 극히 낮고, 여성 감염인의 수가 적은 한국의 상황에서 많은 HIV/AIDS 감염인들은 게이나 바이섹슈얼의 정체성을 가진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가 비가시화 된 존재이듯, 이들은 사회는 물론 LGBT 커뮤니티에서조차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HIV/AIDS와 성소수자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언술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눈앞의 공격을 당면할 때, 이 점을 유념하며 되받아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위터에는 눈에 밟히는 글이 참 많았다.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내용부터, ‘에이즈 걸리는 게 문제면 여자들은 다 레즈비언이 되면 안전하겠따’며 보수단체와 시의원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비꼬는 내용까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이들의 글이었다. HIV/AIDS 인권운동을 고민하는 관점에서, 호모포비아를 넘어서기 위해 에이즈와 경계를 치고 에이즈포비아의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는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은 복잡했다. 그렇다고 에이즈포비아와 호모포비아에 동시에 대항할 수 있는 분명한 언어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지난 1월 3일 나누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평을 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에이즈포비아에 우려를 표한다’라는 제목의 글은 내가 나누리+에 들어와서, 나누리+의 이름으로 처음 쓴 글이다. 이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바로 이 HIV/AIDS와 성적지향의 관계

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지만, 단체의 이름으로 내는 논평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애둘러 간 측면이 없지 않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활동가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최근 청소년 감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동하는 친구와 동성애자이자 감염인 활동가인 가브리엘은 밤늦은 시간 전화로도 여러 번 괴롭혔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이 진행 중인’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보니, 이 숙제는 나만의 것이 아닌 HIV/AIDS 운동의 한 의제로 계속 가져가야 할 과제인 것 같다.

또 다른 과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에이즈 편견 없애기

에이즈 인권활동가들이 늘 반복해야 하는 말들이 있다. “HIV는 감염원인과 감염경로가 명확하며, 감염 확률이 다른 감염성 질병에 비해 높지 않다. HIV는 일상생활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90년대 중반, 카테일 요법이 개발된 이후 HIV/AIDS는 당노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되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HIV/AIDS 감염인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HIV/AIDS 이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겨울 정도로 당연한 내용이지만 HIV/AIDS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뿌리 깊은 한국사회에서 이 말은 여러 번 반복해도 사람들의 귀에 가닿기 어렵다.

그러나 사실 HIV/AIDS와 관련한 차별과 낙인을 제거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차별받지 않고 누릴 것(아동권리 협약 제2조)을 보장할 의무”를 당사국이 지닌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러한 근거는 청소년의 성적지향과 건강상태(HIV/AIDS와 정신보건상태를 포함)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논평 3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서는 “차별은 HIV/AIDS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HIV에 감염된 아동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HIV/AIDS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 증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조 6항은 이 조례의 “학생 인권”의 정의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가 당연히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HIV/AIDS는 빠지지 않는 주제다. 그러나 학교의 성교육에서 가르치는 건 “HIV/AIDS는 성관계에 의해 전염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 뿐이다. 학교라는 공적인 교육공간에서 편견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인 ‘병력’에 의한 차별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의 한 측면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고려한 평등한 교육이다. 특히,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과 성적체성’, ‘임신과 출산’처럼 성과 관련한 이슈에서 학생인권의 보장은, 이들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이들 사유를 고려한 올바른 성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HIV/AIDS라는 ‘병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에이즈 인권운동의 입장에서 ‘HIV/AIDS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제거’라는 국가의 의무를 교육당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에이즈가 공격의 도구가 되지 않을 그날

이 글을 쓰는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확실시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잘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교육청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통과된 조례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 보장의 역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으며, 결국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고 시행될 것이다. 나는 지금 비판 없이, 조례의 시행이 어떻게 하면 에이즈포비아를 없애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려 한다.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에이즈 인권활동가들이 같은 이야기를 입 아프게 반복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좀 덜어질 날이 오지 않을까? 에이즈를 도구로 한 공격이 힘을 잃게 될 그날이 어서 오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HIV(에취아이브이)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HIV 감염인은 HIV에 감염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AIDS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으로, HIV에 의해 면역력이 약화되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AIDS환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는 구분해야 하지만, 사회적 의미가 분리될 수만은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HIV/AIDS'로 병기합니다.

** HIV 취약계층(HIV Key affected populations) ;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높은 HIV 유병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HIV-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포함해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 이주민, 성노동자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취약한 집단이 이에 포함된다. 질병이 사회적 안전망과 인권의 보장 수준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쓰, 「학생인권조례의 훼손은 내 경험에 대한 훼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돌아보기 ⑤」, 인권오름 제 283호, 2012. 01. 18.

학생인권조례의 훼손은 내 경험에 대한 훼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돌아보기 ⑤

어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몇 가지 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우울해지는, 가능하면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생에 만약이란 없었지만 이왕이면 겪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도 그 중 하나다.

“넌 뭐 하고 살아?”

친구들, 친척들, 알바 동료까지.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다. 스무 살도 넘은 애가 대학도 안가고 벌벌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그들로서는 많이 궁금한 것 같다. 그러면 생각한다. 난 뭐 하고 살고 있지?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는 슬슬 질리지만 한 번 더 말해보자면, 나는 열일곱 살에 학교를 자퇴한 후 대안학교에 다니다가 지금은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이다. 스무 살이 넘어서 지금까지 과연 나를 청소년이라고 칭해도 될까 헛갈리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감히 나를 활동가라고 말해도 될까 주저되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우겨보자면, 나는 청소년 활동가다.

하지만 저 질문을 들을 때 마다 항상 이 긴 설명을 주절대지는 않는다. 대개는 귀찮아서 “뭐 그냥 살아요”라거나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어요” 같은, 나에게 대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내뱉기 마련이다. 애초에 몇 마디 말로 될 하고 사는지 설명하는 게 가능하거나 한 일일까?

하지만 한 때, 누군가가 요즘 뭘 하고 사냐고 물어볼 때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학생인권조례 운동 한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땐, 그랬다.

주민발의 잔혹사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다. ‘매일 매일’, ‘하루 종일’이라는 똥아빠진 수식어가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손이 얼어버릴 것 같은 겨울부터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까지, 보정에 보정을 거쳐 서명을 받았다. 첫 번째 제출 때는 정말 70시간 정도 한 숨도 안자고 서명지만 정리하기도 했다. 며칠 밤을 새고 잠깐 쪽잠을 자러 들어간 활동가를 30분도 지나지 않아 억지로 깨우기도 했고 (그 활동가는 잠시 정신을 못 차리다가 화장실에 가서 한바탕 개워낸 뒤, 서명지를 정리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캐리어에 옷을 바리바리 싸들고 합숙을 오기도 했다. 9박 10일의 ‘농활’을 사무실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싫어하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찌고 하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해냈고, 눈앞에서 서명지를 찢어 얼굴에 던지고 가는 사람 앞에서 웃어야만 했다. 서명을 부탁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시끄럽다고 짜증내는 사람들, 붙잡고 뭐라 뭐라 훈계하는 사람들, 멈춰서 호통 치는 사람들보다 더 상처였던 것은 무심히 지나가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

법도 아니고 고작 조례로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는 생각. 이렇게 활동가들을 거의 죽여가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냐는 생각. 청소년/학생을 위한 조례임에도 그들은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생각.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 생각, 생각. 수많은 생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받았다. 그렇게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

그러니까, 그랬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나에게 학생인권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훼손은 내 경험에 대한 훼손이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내 기억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독 오른 고양이처럼 날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몇 번 정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생각한 순간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서명지를 제출했을 때도, 연장 서명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보정기간을 거쳐 두 번째 제출을 했을 때도. 하지만 마음을 놓을 만하면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나를 찾아와 괴롭혔다.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안의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또야?’ 정도였던 것 같다. 부끄럽게도, 그랬다.

그래서, 그랬다. 농성에 돌입했다는 걸 알면서도 밤이 늦어서야 농성장으로 향했고, 처음 농성 며칠간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사무실 이사 문제로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그 일로는 변명이 되지 않을 만큼, 별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서명을 받을 때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갔다 버렸는지, 어이없을 정도로 미적지근하게 생각했다.

그 때 왜 그랬을까, 조금 나중에야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주민발의로 지켜있던 몸과 마음을 아직 추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서명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신발끈을 묶고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눈을 돌리고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안 됐다. 왜 그러면 안 됐는지 설명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인권이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 존재가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 더 이상 뭐라 길게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안 됐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청소년 인권 운동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 하지만 나는, 음, 그랬다.

그래서, 그랬다. 농성장 앞에서 시의회 압박 기자회견을 다섯 번쯤 할 때도, 보수 단체 회원들 앞에서 침묵 농성을 할 때도, 모두 함께 모니터로 본회의를 초조하게 지켜볼 때도, 많이 부끄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차별 금지 조항의 훼손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된 뒤, 그래서 안도했다. 내 경험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았다는 생각이 반, 그리고 처음부터 농성을 이끌고 함께해온 사람들의 경험이 보상받았다는 느낌이 나머지 반. 그렇게, 내 스무 살을 지배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지나갔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이 모든 게 이미 작년의 일이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하지만 2012년이 된 지금도 재심이니 뭐니 하면서 끝나지 않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더욱 더 믿기지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뭐라 해줄 말도 없는 저들의 유치찬란한 공격 앞에 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묶어야 할 때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조금 기대해보자면, 이제부터의 싸움은 지금까지처럼 헤매지 않길, 주저하지 않길, 서로를 원망하지 않길, 싸워야 할 장소를 헛갈리지 않길. 그래서, 설령 지금까지 우리가 ‘연대’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거나 혹은 미안해하지 않길. 그렇게, ‘함께’ 싸울 수 있길 바란다고, 부끄럽지만 한 번 말해 본다.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분노와 정의가 만난다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⑥

채효정 (학벌없는 사회)

동물사육장과 학교

보신탄이 되기 위해 사육되는 개들은 종종 서로 죽을 때까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일이 있다. 자연적 생태계를 잃어버린 채 모피가 되기 위해 사육되는 밍크는 새끼 밍크를 잡아먹고, 여우농장의 여우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약한 동료를 공격하거나 자해하고 충족되지 않는 운동욕구로 인해 반복적인 이상 행동을 보인다. 대규모 공장식 양계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서로 쪼아대는 닭들 때문에 병아리 때부터 부리를 자른다.

최근의 학교폭력사건들과 왕따, 자살 사건들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내 머리 속에 연상되는 학교 교실의 모습에는 위의 동물사육장이 오버랩 된다. 오늘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보신탄이 되기 위한 개나 모피가 되기 위한 밍크처럼, 보다 높은 등급의 상품이 되기 위해 교육이란 이름으로 사육당하고 있지 않는가?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연적 생태계와 사회적 생태계를 잃어버린 채, 어찌할 수 없는 분노를 자신이 표할 수 있는 대상인 약한 교사와 약한 친구들을 향해 맹렬히 터뜨리고 있는 아이들, 그조차 가능하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 자신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아이들, 만약 그것이 학교 폭력의 본질이라면 그것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가능할까?

동물사육장에서 쓰는 방법은 가해 동물과 피해 동물을 사육장에서 쉼 내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들의 공격적 이상행동은 그치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이 동물들이 아니라 사육장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단죄와 엄벌은 문제원인을 학생에게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농장에서 그러했듯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를 떠난다고 폭력과 죽음의 행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은 사육장이 된 학교를 바꾸는 일에서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밖 청소년, 사육장을 벗어난 아이들

내가 활동하는 학벌없는사회는 2010년부터 이 사육장을 벗어난 아이들, 학교밖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닐 나이에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교 밖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학생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아닌 누군가, 학교밖 청소년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이 더 나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기본적 생존권, 노동권, 학습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보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뉴스를 보고 깜짝했다. 왜 개네들만 밥 주냐고! 우리가 더 급한데! 우리 부모님도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서울의 한 쉼터에서 만났던 학교밖 청소년 K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무상급식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K는 국민의 세금으로 함께 밥을 먹이는 일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제외되어야 하냐고 따질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오히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움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정당한 공적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시기 먹고 입고 자고 배우는 일은 최소한의 기본권에 속하며 그것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생인권이 개선될수록 더욱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당장은 학교 안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학생 청소년의 인권 현실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내가 학생인권조례운동에서 깊고 싶은 중요한 의미와 한계는 좀 다른 지점에 있다. 우선 중요한 의미는 이 운동이 교사와 학부모가 주도해온 기존의 교육운동과 달리 청소년들 자신이 대상화되지 않고 깊이 개입하여 주도하였다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한계점은 여전히 학생 청소년들이 완전한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실천적 운동의 형태는 아니지만 도저히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나오는 ‘탈학교 현상’ 속에서 오히려 기존의 학교질서에 저항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사육장을 벗어나 이후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교사도 부모도 아닌, 청소년 자신이기 때문에.

학교를 거부하거나, 학교에서 거부당하거나

아이들은 왜 학교를 나오는 것일까? 한편에서는 학교를 거부한 아이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학교에서 거부당한 아이들이 있다. 전자가 ‘때려치운 아이들’이라면, 후자는 ‘잘리거나 밀려나온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때려치운 아이들’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포기한 아이들이다. 이 친구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한 분노의 순간이 남아 있었다. 노예 공부에 대한 저항, 교사와의 마찰, 학교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거부, 그 모든 억압되었던 것들이 발화된 시점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폭력 사태가 함께 따르곤 했다.

‘잘린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분노와 함께 억울함과 서러움이 묻어났다. 잘린 아이들은 학교 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채로 학교 안에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이들이었다. 관리와 통제라는 학교 측 입장

에서 보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은 없는, 가장 골치 아픈 존재들이기도 했다. 학교가 이들을 잘라내는 방식은 다양했다. 노골적인 종용부터 강제전학, 유도지퇴, 퇴학 등의 방식까지. 하지만 어떤 경우든 아이들은 자신이 거부당한 존재임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학교를 나오는 과정은 그 자체가 커다란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자신을 잘라낸 학교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았다. 가장 걱정스러운 유형은 나머지 아이들, ‘밀려 나온 아이들’ 이었다.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용히 학교에서 사라져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두고도 알바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를 치는 대신,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 꼼짝도 않는 아이들의 분노도 슬픔도 없는 그 무거운 입이 내게는 가장 힘들었다. 이 아이들이 다시 새로운 배움터를 찾고 힘들지만 자기만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종종 그동안 학교에서 표출되지 못했던 공격성,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럴 때면 학교밖 배움터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긴 침묵을 깨트리는 폭력과 자신을 가두었던 세상을 향한 분노를 오히려 반가워했다. 그건 다시 살겠다는 의지, 변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다는 내적인 힘의 약동이었으니까.

분노의 힘

그런데 나는 바로 그 힘, 얌전히 학교질서에 순응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사육장 안에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며 그 질서를 깨트리는 그 힘 속에 청소년들 자신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교사도 학부모도 아닌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 오늘 학교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폭력들도 실은 그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분노의 힘, 거부의 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들도 실은 그 속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다. 물론 분노는 때로 우리를 옳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게도 한다. 하지만 분노가 정의와 함께 할 때는 가장 위대한 것을 이룬다. 그러나 제대로 분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불의 앞에 굴하지 않는 정의,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연민과 사랑, 비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그러한 현실과 마주칠 때 직접 몸으로 행동하고 부딪쳐봄으로써 깨우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역시 그것이 한낱 명문화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 학생들 자신이 자신의 삶터인 학교 현장에서 그 정신에 반하는 모든 반인권적 억압과 행위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함으로써 실제적인 힘으로 쟁취해내야만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상의 뜻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반민주적, 반공화적 정치에 대해 저항하는 시민의 행동에 있듯이 말이다. 분노와 정의의 결합, 즉 폭력성의 형태로 드러나는 내적인 분노의 에너지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결합한다면, 이는 학교를 사육장에서 민주주의의 학습장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관건이 될 것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

교사운동도 학부모운동도 그 어떤 사회운동도 오늘날 청소년 학생 자신이 처한 고통의 현실을 해결해줄 수는 없다. 아무리 학교가 지옥이라 해도 그 때문에 죽는 사람은 교사도 학부모도 아니다. 68년 유럽에서 상층 사회귀족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지식권력의 독점기관인 대학을 개혁하여 노동자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도록 무상화 평준화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그 교육에 의해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인 중고등학생들이었다. 2011년 칠레에서 시작되어 남미 전역으로 번진 무상교육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교육투쟁의 주체 역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남은 과제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그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온갖 시도에 맞서 현실화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나는 학생인권조례의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은 이제 자신이 괴물이 되는 대신 괴물과 싸우기를 선택할 것이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학교의 질서와 정의를 스스로 만드는 학교의 주인이 될 것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고 쟁취하고 지켜내게 될 것이며 학생과 청소년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학생조직을 건설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 행위를 실제 삶 속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가 아직 사육장의 오명을 벗지 못한 곳에서 누군가 또다시 죽음에 이를 때, 학생들은 내 친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수업거부를 선언할 것이다. 입시철이면 교문 위에 자랑스럽게 내걸리는 명문대 합격자 축하 플래카드도 학생들 자신의 손으로 찢어버릴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를 부정하고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워할 일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성취일 것이다.

공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⑦」, 인권오름 제 283호, 2012. 01. 18.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⑦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 보장, 그러나 복장의 한계

우선 학생인권운동이 가장 오랫동안 제기해온 이슈 중에 하나이자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두발자유”, 나아가 용의복장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에 대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력하게 천명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두발자유에 관해서 길이 외에 다른 부분은 규제할 수 있다는 듯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두발자유 등 개성 실현권에 관해서 완전하게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에도 단서 조항이 붙었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다. 교복폐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도 두발의 경우 완전한 보장을 하려 하지만, 복장에 관해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문이 더 문제가 많다. 광주에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교복 외의 용의 복장 부분이나 교복의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복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매우 자의적이고 포

팔적인 복장 규제가 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상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장은 여러 자의적 용의복장 규제들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심각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진보된 학습권 조항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비교적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 중 하나가 학습권에 관련된 조항이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는 주민발의안에 들어갔던 내용에 더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원회가 냈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있던 것을 합하여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원안은 아니더라도 더 진전된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학습권을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로 명시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과 학습권 및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담았다. 또한 부당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 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포함시켰고,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교육권에 관련해서 권고했던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학습권 침해로 보고 금지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과정에 맞는, 적절한 시간을 들여 배울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 조항은 다소 개략적이고 추상적으로 “배울 권리”, “학습에 참여할 권리”, “공부할 권리”로만 학습권을 파악하던 풍조에서 벗어나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평가·경쟁·선행학습 등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학습권(교육권) 침해를 다룬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학생들이 학습에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배제당하거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등의 문제에 관해 명확하게 학습권의 차원에서 보장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일이다.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명시된 집회의 자유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확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이다. 이 조항에서는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도 집회의 자유 조항은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이 된 집회의 자유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안을 발의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의사표현의 방법 중에 집단적 표현으로서 집회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를 놓고 “학생들 교내에서 집회 못한다”라고 표제를 뽑아서 보도하는 등 사람들 사이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이 퍼졌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말이 맞긴 하다. 만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면,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러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했다. 여기에서 집회의 자유는 교내에서 집회를 열 권리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집회에 참여할 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고 말았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이다.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는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인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집회를 규제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학교 안의 어디에서 열린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니까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던? 좀 더 명확한 조건 명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꼼꼼하고 촘촘하게 구성한 권리들

그밖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애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순히 종교의식을 드리는 수업에 대한 선택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및 각종 차별 등을 포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명시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자치활동에 관한 권리가 있다.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에서는 학생자치조직과 학생회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임원 선출, 회의 개최, 예결산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학생자치조직들이 말뿐인 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세심한 연구와 고려가 엿보이는 조항이다.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에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이 조항에서는 8개 항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으로만 예시하고 있는 데 비해, 서울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라고 하여 좀 더 많은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촘촘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중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는 성소수자에 관해 이런 조항이 있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본래 보호자/친권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 동의 없이 알릴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보호자/친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성소수자 학생들을 더 많은 폭력

과 차별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내 자식이 동성애자인 걸 부모인 나한테도 알려선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보호지는 제외한다”라는 조문을 넣고 말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각계에서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최대한 꼼꼼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퇴는 더더욱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증진 및 구제 제도 개선

경기도·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인권의 증진에 관한 부분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시행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실효성 있게 규정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 역시 서울시 교육청 자문위원회가 공들여 만든 부분에서 많은 부분 가져와서 더 나아지도록 교육상임위가 수정한 부분이다.

우선은 인권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도 준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다. 홍보에 관해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교육감은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서울의 조례는 이에 더해서 조례 전문을 알리도록 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역시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추진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 업무, 위상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이는 경기도의 시행 경험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가 교육청에 따로 없고 기존의 장학사 등 교육 관료들은 학생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왕왕 보이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교육청 안에서의 위상이 다소 불안정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나아가서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대해서 상세한 의무, 조건, 절차, 권한을 명시한 것은,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개정심의위, 학생의 규정 개정 참여 문제

마지막으로, 내가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문제이다. 이 위원회는 경기도·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모두 두고 있는 기구인데, 서울에서만 제외되고 대신에 학교운영위원회 밑에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주민발의안 원안에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교육상임위에서 수정된 안이다. 아마도 기존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및 위상 설정이 애매하다는 법적 의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이러한 수정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냐 학교규칙소위원회냐 하는 이름의 차이만이 아니라는 데 있

다. 본래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학생 대표와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규칙 개정을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들이 규칙 개정에 반드시 의미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이러한 학생 대표의 참여에 관한 명문화된 부분이 없다. 학교규칙소위원회를 어떤 구성원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도 없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에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조례가 명시한 대로 제대로 꾸리지 않은 학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학생 대표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규칙 개정에 의미 있는 존재로 개입할 길을 확보한 의미는 있었다. 서울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를 명시하지 않아서, 결국 규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제출이 들러리만 서는 게 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조례는 지렛대일 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만여 명의 참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시민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두발의 완전한 자유와 집회의 자유 명시 등,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분명 10~15년 가량 이어온 학생인권 운동의 커다란 성과이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 역시 어렵고 고비가 많았던 만큼 의미가 있었다. 동성애자, 임신·출산한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 하고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인권적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것이다. 비록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있었으나, 이 조항은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서울에서 반인권적 공세를 이겨내고 통과됨으로써, 차별 금지 조항은 역설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차별금지외 관련된 쟁점이 과잉 부각되면서, 앞서 언급한 학습권 부분을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한층 더 나아간 내용들이 잘 부각되지 못한 것이나, 규정개정심의위 삭제 문제 등 심각하게 수퇴된 부분들을 놓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서글픈 일이라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미 만으로 1년이 넘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본 경기도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온전하게 입학한 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일부, 두발 길이 자유화나 체벌금지, 자율보충학습 강제 금지 등만 그나마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인권에 관해서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등 학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한계들이 군데군데 있다. 이는 결국 교육청이 조례에 관해서 해설하여 전달하는 지침,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의지에 의해 좌우될 부분들이다. 물론 조례의 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보호자에게는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아웃팅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규정개정심의회와 관련된 것도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버리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하나의 지렛대일 뿐이다. 그 지렛대를 눌러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다. 이 경우에 지렛대를 움직일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고, 두 번째는 교직원 및 보호자일 것이며, 세 번째로는 교육청과 지역 사회의 시민들일 것이다. 그런 지렛대 하나 놓으려고 주민발의를 하고 재의를 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하는 등, 여러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겪고 넘어야 하니 참으로 한숨이 폭폭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놓은 지렛대를 이렇게 꼼꼼하게 찬찬히 뜯어볼 때면 좀 뿌듯한 것도 사실이다. 학생인권, 이제 또 다른 출발점이다.

조성범,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보기 ⑧」, 인권오름 제 283호, 2012. 01. 18.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보기 ⑧

조성범 (경기인권교육연구회, 산본공고 교사)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일 년이 되었다. 이어 광주와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그 원인이 인권조례에 있다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보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란단다. 이를 기회삼아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을 연계시키려는 이념쟁이들의 정치적 꼼수가 점입가경이다.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려보겠다는 그들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세간의 논쟁이 되는 상황에서 왜 굳이 ‘학생인권조례’이어야 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인데 굳이 ‘학생’으로 한정하면 오히려 인권의 범주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학교구조의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의 학교문화는 철저하게 수직적인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소수자, 즉 약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빼앗겼던 권리를 그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일 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의 지난 일 년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드는 등 학교문화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교사의 권위가 떨어져 학생을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을 매개로 학교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학교는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억압적인 교문지도와 두발 단속이 사라

졌다.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강제 보충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도 사라졌다. 퇴학이나 강제전학도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업 중단학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이런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감하기가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교사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기보다는 변화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교육청의 인권감수성, 인권적 업무처리, 인권교육 등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인권정책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것도 학교 현장의 당혹감을 줄이는데 실패한 원인의 하나다. 반면에 인권조례를 학교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탐색하는 노력도 일부에서 진지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권교육과 자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정착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다. 인권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교직원, 교육청 공무원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지금의 인권교육은 학생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많은 학생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방식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감수성과 식견을 갖춘 강사진의 확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시간을 활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 모든 것이 인권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두발과 체벌에 머물러 있는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권담론을 확장시키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조금씩 시행되기도 강사를 양성하고 교재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의 참여와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학생회 활동은 수동적이었다. 지도교사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와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자치와 참여 기회 확대는 권리 담론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학교문화의 근본적인 변화

학교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는 필연적으로 인권침해가 뒤따른다. 한쪽의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없다. 권력 관계에서 약자는 늘 침해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획일적이고 통제 중심의 수직적 학교 문화가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수평적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때 조례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권리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리는 학생의 권리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전문성, 참정권, 노동권, 교무회의에서 발언할 권리,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이 교사의 권리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 원인을 찾고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부에서 학생인권과 대립적 개념에서 ‘교사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일부의 권리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근거를 들어 권리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보다 더욱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희망을 건다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교를 보는 시민사회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청소년 유관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시민사회 진영은 교육청과 협력 및 감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실천계획이 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별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상·별점 제도는 위기의 학생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별점은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해 문제가 되는 학생을 걸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학교폭력과 인권조례를 연계시키는 보수 세력들의 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나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의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경기도 몇 학교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하면서 학교폭력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조례 하나만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이라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인권친화적인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소통과 공감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고양시의 ㄷ중, 의왕시의 ㄷ중, 의정부시의 ㄱ여중, 시흥시의 ㄱ중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더 큰 희망을 걸어본다.

배경내,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보기 ⑨」, 인권오름 제 284호, 2012. 02. 01.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보기 ⑨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지난 1월 26일 마침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기쁨도 잠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또다시 요동칠 처지에 놓였다. 오랜 산고 끝에 기적처럼 태어난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다시 사람이 맞느냐는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꼴이니, 꼬박 1년이 넘게 노심초사 조례의 탄생을 일구어온 이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그나저나 대체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기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던 교과부가 순식간에 말까지 바꾸면서, 웅색하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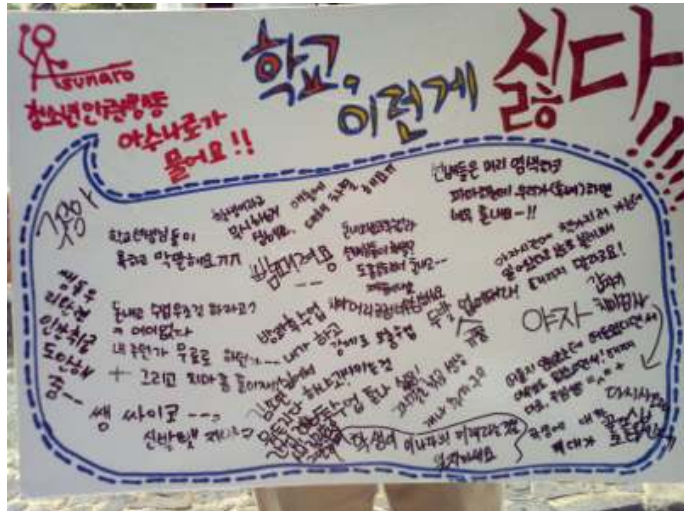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 너는 누구였느냐

2010년 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직후 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규정개정위원회 회의과정에 참관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규정개정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자 대체 회의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지켜보기라도 하지는 소박한 바람이 낳은 요구였다. 그 요구를 불허하면서 학교 측이 내놓은 대답이 걸작이다.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사, 학부모 위원들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은 ‘근조 정의, 근조 인권’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까지 감행하면서 기어코 참관권을 얻어냈고, 결국 학교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일은 1년 내내 학교에 지각만 하던 한 학생이 이날의 침묵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만은 학교에 올 맛이 났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참관을 요구했을 때 학교가 느꼈던 위협감(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 있어 학교 올 맛이 났다

던 학생. 학생인권조례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의 핵심을 이 둘은 잘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가르침을 주어야 학생들이 배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배움이 먼저 일어나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해진다. 우리는 흔히 교사를 두려워해야 학생들이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침묵이지 경청이 아니다. 배움과 경청은 질문을 가진 이들에게만 가능한 행위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질문을 던질 자유가 없이는 배움도, 교육도 불가능하다. 처음으로 학교에 올 맛이 낫



▲ [사진 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다던 학생은 처음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교육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비로소 학교가 내 삶이 펼쳐지는 장소가 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결정권도 아니고 고작 참관권을 요구했을 뿐인데도 학교가 위협감을 느꼈던 이유도 바로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삶을 외면했던 학교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역사적 변화가 이 같은 ‘질문’에서 비롯됐음을 알고 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여성은 왜 연단에 오를 수 없는가? 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장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교사는, 판사는, 소방관은 왜 노동자가 아닌가? 대표를 뽑고 난 다음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애초 위협하기 짝이 없었던 이런 질문들이 진보를 일궈온 거름이었다. 변화를 꺼리는 이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변화의 방향을 고정시키고 싶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질문을 품은 이들의 출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질문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자고 말한다. 학생들이 자기 몸이 놓인 자리에서 문제를 응시하고 해결을 모색하며 타인을 환대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인권이고 교육이라고 말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 맹렬히 떨쳐 일어선 이들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싸움이 결국 교육의 본질을 되묻는, ‘진보’의 오늘과 내일을 묻는 정치적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의 파노라마

학생인권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학생인권이란 의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이 ‘하면 좋은 것, 그러나 결코 오지 않을 내일’이었을 때는 학생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논쟁조차 불붙지 못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곧 도래할 오늘의 현실’로 육박해 들어오자 학생인권에 관한 수많은 논쟁들이 불붙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둘러싸고 펼쳐진 수많은 논쟁의 파고를 넘는 과정은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 인식이 얼마만큼 여물었고 또 어느 지점에서 여지없이 허물 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무대이기도 했다.

학생과 인권의 만남은 청소년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학생이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 ‘학생에게 인권은 있지만 인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으므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에게는 인권보다 배움과 보호가 우선이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변주되는 사이, 학생인권 주장은 늘 시기상조로 취급되어야 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학생인권을 전면 부정하거나 시기상조를 내세우는 논리가 상당히 미약해졌음이 이번 논쟁과정에서 확인됐다. 과거에는 ‘학생이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라는 식의 어법이 강세였다면, 지금은 부분적 제한을 주장하는 어법이 더 자주 사용된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 학생이라는 신분의 특수성만으로 인권을 제한할 명분을 삼기에는 그 사이 학교의 추악한 모습이 너무 많이 알려졌고, 청소년인권운동의 약진으로 인권과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결과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두 번째 논쟁은 ‘교육 vs. 정치’의 구도 위에서 펼쳐졌다.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진보교육감이 우리 아이를 망칠 권리는 없다.’ ‘진보교육감의 홍위병을 양산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진보교육감의 학생 선동 조례로 규정짓는 이 같은 주장들은 당연하게도 조례의 수많은 조항 중 집회의 자유를 골라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2008년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보여준 놀라운 활약상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뒤였기에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게다가 시민들은 이제 알고 있다. 어른들의 부채질에 놀아나는 존재로 집단적으로 형상화되기에는 ‘개념찬 학생들’이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교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규범적 정당성이 더 이상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세 번째 논쟁은 ‘성적(性的) 보수주의’와 ‘호모포비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에 열거된 여러 차별금지 사유들 가운데 ‘성적 지향, 임신·출산’이란 문구만 따로 떼어내어, 조례가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고 초등학교 임신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 조례의 의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불을 뿜었다. 이는 2008년 촛불의 거리에 청소년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자, 우익논객 조갑제가 광화문을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에게 촛불집회를 보여주는 것은 포르노를 관람시키는 것과 같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과 동일한 전략이다.

이 주장의 허무맹랑함과 졸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학생인권 가운데 가장 기반이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 조례의 지지세력들 내에 분열을 조장했음은 분명하다. ‘체벌 금지, 두발 자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에게 성(性)적 권리가, 동성애가 웬말인가.’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절절한 호소, 보수가 친 뒷에 걸려들어서는 계속 밀리게 된다는 정치적 위기감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간신히 차별 금지 조항도, 조례 제정도 지켜 낼 수 있었지만, 이 지점은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마지막 논쟁은 ‘위험한 아이들’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자, ‘학생인권조례는 괴물(가해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의도적으로 제기됐다. ‘위험한 학생’과 ‘내 아이’를 구분 지으면서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반대해야 하며 교사에게 강력한 지도권을 쥐어주어야 한다는 식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학생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자, 이제는 ‘학생인권 vs. 내 아이의 안전’을 본격 부각시킴으로써 ‘적의 적은 동지’라는 선택을 하도록 사람들을 내모는 형국이다.

그러나 반인권적인 학교문화가 학교폭력의 회수분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성공한 혁신학교의 사례들이 공감을 얻으면서 이 주장 역시 세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위험한 아이들’의 인권이 학생인권의 지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모호한 것은 청소년 인권운동의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 [출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너머에서 새롭게 만나야 할 질문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학생도 사람이다!’라는 목소리는 이제 한국사회의 중심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학생인권조례의 파란만장한 운명엔 청소년인권운동이 걸어온 설움과 희망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도 교육부가 채택하려고 했던 학생인

권선언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고 2000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두발자유운동(이른바 ‘No Cut’(노컷)운동) 역시 ‘학교별 토론을 거쳐 두발규정을 개정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얻어내는 데 그쳤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권 아래서도 초·중등교육법 안에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삽입하려 했던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이 역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양상한 조항 하나가 삽입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미흡하나마 학생인권의 보호막 구실을 해왔던 교육부의 지침들마저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대거 폐기되면서 학생인권은 광폭한 정글에 내던져졌다.

이와 같은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희망의 두레박이 바로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었다. ‘가능한 교육자치체에서부터 교육청과 학교에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지우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전국적 그물망을 짜들어감으로써 중앙정부와 법률을 포위한다.’ 그 시도가 이제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 성공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이란 소수자 인권을 전면에 내걸고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시민들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용광로를 만들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과 인권의 만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진정한 민주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이라는 인식도 좀 더 탄탄해졌다.

20여년 가까이 지겹도록 반복되어 온 체벌금지, 두발금지, 표현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 학생인권의 대표적인 의제들이 기본 상식 수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이 깊어져야 할 몫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학생이 과파가 웬말이나, ‘엎드려 배켜내쳐’도 못 시키냐는 해묵은 아우성과 저항감이 강고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청소년인권운동은 학생인권의 의제를 확대하고 구조적 문제와 연결한 세밀한 전망을 내놓아야 할 책임도 부여받고 있다.

보충수업과 야간수업을 강요하지 않으면, 교사 수를 늘이면, 급식 질이 좋아지고 무상으로 제공되면 공부할 권리는 완성되는 것인가. 학교에서 밀려난 혹은 학교를 밀어낸 이들에게 학생인권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미 성적표가, 다니는 학교가 계급이 되어 있고 계급에 따라 인격의 값도 달라지는데 학생인권이 이 문제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청소년인권운동이 제대로 던져보지 못한 것들이다. 이처럼 묵혀진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이 학생인권이라는 의제를 넘어 새로운 의제들 속으로 본격 진입할 수 있는 도약점에 이른 것도 분명하다. 성(性), 성정체성, 노동, 밤(夜), 정치, 비어 있는 시간, 지역사회 등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것들, 이제껏 청소년의 권리로서 적극 주장되지 못했던 변방의 의제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

맞지 않을 권리, 자기 머리모양은 알아서 결정할 권리 등 청소년들이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얻어내는 데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연한 것들조차 버젓이 모욕당하는 사회에서,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의 도전은 더더욱 벽찰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 너머를 열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힘차게 펼쳐야 한다.

진냥, 「방방곡곡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지역별 조례 제정운동이 가지는 의미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⑩」, 인권오름 제 284호, 2012. 02. 01.

방방곡곡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 지역별 조례

제정운동이 가지는 의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⑩

진냥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보수의 도시. 파란 파란 곳. 고담대구. 그렇다. 나는 대구에서 ‘꿈’만 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있다. 사실일 리 없지만 경기도나 광주, 서울같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에 가면 뭔가 공기부터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한번은 토론회에 가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대구에서 한다고 날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에고, 전국에서 제일 오래 (학생인권조례) 운동할 사람이네.” 하신 일도 있었다. 서운한 말이기도 했지만 공감이 가기도 해서 웃었다.

“억울하면 경기도 가라”

대구에서는 종종 두발단속이나 체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청소년이 “억울하면 경기도 가라.”라든지 “로마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여기는 대구야.”라는 말을 듣는다. 청소년 스스로도 교사에게 맞고 난 후에 “에잇, 경기도로 전학 갈까?”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즉, 인권에서 지역별 격차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이랄까?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보편성’인데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된다는 형식 상 보편성을 담보해낼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 수준, 관심 영역이 지역별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활동가가 경기/광주/서울 등의 지역에 가서 토론회를 하면 가슴이 갑갑해지고 소통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경기의 활동가가 비(非)제정지역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어지고 있기도 한다. 심지어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쯤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 덜컥 겁이 날 때도 있다.

이쯤 되니 대구에서는 조례 말고 전국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인권 법률을 제정하지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난 조례가 더 좋다! 전국적인 학생인권법보다는 대구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꼭!

‘다른 지역도 하는데가 아니라

대구 학생인권조례운동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옳은 일이라는 당위성이나 전국적인 움직임이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될 내용도 경기도처럼, 서울의 조례안에서 쟁점이 된 부분 중에 이 정도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하지는 식으로 고민된 적도 많았다. 아마 다른 지역들 중에도 이런 지역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학생 간 폭력이 여러 사건들로 부각되고 학교 내 폭력에 대한 고민이 각각의 대구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대구지역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 다 하는데 우리도’가 아니라, 모든 폭력이 금지되는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꿈꿀 수 있는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역에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으로 만들어질 대구학생인권조례에는 폭력에 대해 저항하고 평화와 인권, 교육이 어떻게 맞닿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게 될 것이다.

또한, 대구는 장애인권운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고담대구라고 하지만 장애인권운동에 있어서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 수도,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의 수도 많고 그 성과나 진정성도 지역의 자부심을 갖게 할 만큼 든든하게 있다. 그래서 이후에 생길 대구학생인권조례에는 장애인권에 대한 내용이 다른 지역 조례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근본적으로 담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꿈꾸고 있다.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대구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설렘 지경이다.

그렇게 평화권과 장애인권에 대한 고민이 담긴 대구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다른 지역들은 그 내용들을 더하기 위한 개정운동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과정을 보며 경기학생인권조례 개정운동이 논의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동일한 이슈, 동일한 요구로 전국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두루두루 보장되도록 하는 운동임에 동시에 각 지역의 고민과 그간의 노력들이 반영되어 인권의 개념을 점점 확장시켜나가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례 제정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이자 역사적 경험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 발의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이 집중된다. 즉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학습이 되고 있고 역사적 경험으로써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 번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사회적 학습과 역사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비록 교육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적 영역이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라 할지

라도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각 지역에서 개개인들이 논쟁하고 찬/반을 표하고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찾기 쉽지 않다. 교육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는 최초이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 특히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학생인권조례운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구가 꼴찌가 아니기를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받침돌을 만들기 위해 아등바등 난리법석을 떨어낼 테지만, 대구가 전국 학생인권조례를 꼴찌로 제정하게 될 지라도,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대구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더라도, 교사인 내가 가장 오랫동안 폭력의 대리인 역할을 강요받더라도 나는 ‘조례’를 지지한다. 그리고 꿈꾼다. 대구의 학생인권조례를 보고 전국이 깜짝 놀라 학생인권조례 제·개정 운동을 시작하게 될 그날을. 후훗.

서울발 학생인권조례 논쟁 4·11 총선 이슈로 ‘전국화’

전국 시도 학생인권·교권조례 제정·추진현황

교육청	조례 구분	제정(공포), 추진	주요 내용
경기	학생인권조례	2010년 10월5일	체벌 금지, 복장·두발 자율화 등
	교권보호현장	2010년 4월	교권 보호, 전문성 보장 등
광주	학생인권조례	2011년 10월5일	체벌 금지, 복장·두발 자율화, 학습선택 자율 등
서울	학생인권조례	2012년 1월26일	체벌 금지, 강제자율학습 금지, 집회 보장 등
	교권보호조례	추진중	
전북	학생인권조례	올 상반기 재상정	체벌 금지, 집회 허용 등
	교원권리제한조례	*	교권보호 등
경남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서 제출	학생 자율권, 평등권, 교육복지권 보장 등
충북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위한 서명운동중	체벌 금지, 집회 참여,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제주	학생인권조례	추진중	간담회 개최중
대구	대구교육권리현장	추진중	학생, 교사 권리와 책임 규정
강원	학교인권조례	추진중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 책임, 참정권 보장
전남	교육공동체인권조례	입법예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권리와 책임 보장, 두발 등은 학칙 제한
인천	학교인권조례	추진중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 두루 보장 등
부산	교사인권조례	3월 시의회 상정 예정	행정업무 경감, 폭력으로부터 자유, 차별 금지 등

곽노현·교과부 대립각 촉발 충북·전남 등 찬반공방 가열 교총선 “지시후보 낙선운동”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논쟁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충북, 전남 등 몇몇 지역에서는 4·11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서울이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돌아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학칙 개정을 지시

하자, 교과부는 지시를 유보하라는 시정 명령을 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충북, 경남, 제주와 학생 인권에 교권 보장까지 덧댄 교육공동체 조례를 제정하려는 전남, 강원, 인천, 대구 등에서도 적잖은 마찰이 일고 있다. 전북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됐으며, 경남은 주민 3만6000여명이 경남도교육청에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를 냈지만 고영진 경남교육감의 반대에 부딪혔다.

충북에서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을 두고,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교권이 실추되고 학교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총선 쟁점으로 번질 분위기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관련 찬반 의견을 물은 뒤, 그 결과를 공개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간지 <충청투데이>가 지난달 30일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등 34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견 조사를 보면 조례 찬성이 9명, 반대 12명, 태도 유보 13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전남에선 도교육청이 지난 9일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비판하고 있다. 박기철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복장과 머리카락 형태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경기·광주·서울보다 훨씬 퇴보했다”며 “다음달 전남도의회 심의 때도 미진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4·11 총선 후보들한테 의견 조사를 하는 등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안양옥 회장도 1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등 편향되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거나 지지하는 후보는 이번 총선과 연말 대선 때 낙선운동으로 심판하겠다”며 “전국 지부별로 교육정책 감시단을 꾸려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등 정책을 놓고 유권자들이 지지·반대를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입법 과정의 주요 통로이며, 권장할 만하다”며 “다만 집단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규탄 기자회견 자료」, 2012. 0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규탄 기자회견 자료]

이명박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은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화에 대한 폭력이다!

일시: 2012년2월23일(수) 오전11시

장소: 교육과학기술부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권혜진(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규탄발언 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규탄발언 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탄발언 ③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성명서낭독

기자회견 자료 순서

3 ~ 4p

성명서

5p

참여 단체 안내

7~11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이명박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은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화에 대한 폭력이다!

지난 2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학교에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교과부 스스로 ‘학생생활지도는 조례가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시행령 개악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상위법 위반 논란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서 비롯됐다. 입법예고 후 교과부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행령이 허용한 학칙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제한하면 시행령 위반’이라며, 벌써부터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행태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을 뿐더러, 전국적 제정 물결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들어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교육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발악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자 부교육감을 사주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 아예 두 팔 벗고 나서 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고 나섰다. 입시경쟁으로, 폭력적 학교문화 속에서 희생된 학생들이 잇따라 죽음을 택하는 이 때,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일에 교과부가 이토록 집착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학교 관리자들과 보수단체들에게 조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제공해주려는 저열한 속셈은 아닌가.

두발·복장규제는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는 하나,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 학칙을 통한 두발·복장 규제가 최초로 합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로 지적해왔던 문제가 바로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였다. 특히 두발 규제는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의 성장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와중이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시행령을 개악

하려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게다가 교과부는 시행령의 내용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악안에는 ‘학칙 제·개정시 학생 의견의 수렴 방안을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0년과 2005년, 두발 자유와 학생인권 보장을 향한 학생과 민주시민의 함성이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도 교과부(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칙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학생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학생인권에 관한 기본적 감수성도 없는 학교문화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시궁창에 처박히거나 ‘민주적 절차’로 위장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매우 비교육적인 일들이 학교현장에는 되풀이되어 왔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칙을 통해서도 건드릴 수 없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서 재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비로소 꽃피우기 시작한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화를 ‘교과부 장관의 모호한 지시’로 퇴보시키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인권은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교과부가 보장하기 위해 애써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자 목표 중 하나이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형성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땅히 교과부의 역할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요즘 입만 열면 학교폭력 근절을 근엄하게 외쳐대고 있는 교과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스스로 학생의 존엄과 학교 민주화를 거스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번 시행령 개악 시도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인권과 교육자치를 훼손해온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통해 입법된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산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민주화의 물결을 무력화하는 한편 민선 교육감의 권한마저 박탈하려는 것은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폭거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학생인권조례 흔들기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적 요구조차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게 확실하다. 기본도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2012년 2월 23일

[주최/연명 단체 안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

: 인천 YMCA,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 일제고사를 반대한 학부모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지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운수버스경인본부, 현대제철지부, GM대우차지부, 가톨릭청년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회당인천시당, 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노동문화체조직위원회,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연대, 인천지역교대위,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통일아침, 다함께인천지회, 인천사노준, 전국노동자회인천위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 총 42개 단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등 23개 단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

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

:21C청소년공동체희망, 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다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초 · 중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2012. 2. 16.

**교 육 복 지 국
(학교문화과)**

1. 제안이유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생활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자 함

또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습활동 보호,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감의 진단상담치유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학생상담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9조제1항제8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나. 학생생활규칙 제정 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 제9조제4항, 제5항)

1)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안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학칙 제·개정시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포상·징계, 용모·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의 사항을 별도의 학칙인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규정 및 동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안 제54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대상학생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의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를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 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 제>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p> <p>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7호 생략)</p> <p><신 설></p> <p>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p> <p>9. 학칙개정절차</p> <p>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u>학생의 의견을 들어</u>야 한다.</p> <p><신 설></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p> <p>① ----- ----- -----.</p> <p>(1-7호 생략)</p> <p>8. <u>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u></p> <p>9-11호는 현행 8-10호와 같음.</p> <p>④ ----- <u>제10호</u> ----- ----- ----- ----- <u>—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u></p> <p>⑤ <u>학교의 장은 제4항의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도의 학칙(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⑥ <u>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u></p>

<p><신 설></p>	<p>31조의5(학생 등의 권리보장)</p> <p>① <u>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p>② <u>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p> <p>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p> <p>① ~ ③ 생략</p> <p>④ <삭 제></p>

<신 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다산인권센터,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성명서, 2012. 04. 17.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이 말은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위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슬러 마음껏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하여 이번 개악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선포된 기준과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과정을 교과부의 손아귀 아래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행령은 두발·복장에 관해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형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그 상위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월권 해석이요,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드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의 폭행으로 쓰러지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중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교육이 이 모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교과부는 학생의 용모를 규제하지 못해 안달만 부릴 셈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청과 힘겨루기만 버릴 셈인가.

입만 열면 상위법 위반을 들먹이는 교과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시궁창에 내팽개쳐진 학생인

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혹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

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다산인권센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거리 서명전〉 소장사진, 2010. 10. 27~2011. 05. 10.





